

2020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I)

2020. 9.

기 획 재 정 부
보 조 사 업 평 가 단

목 차

제1부 서론

■ 제1장 국고보조금의 개요

1. 국고보조금의 의의	3
2. 국고보조금의 기능	5
3. 국고보조금의 유형	6
4. 국고보조금 근거 법률의 주요 내용	10

■ 제2장 국고보조사업 현황

1. 국고보조사업의 규모	13
2. 국고보조금의 대상사업 및 보조율	14
3. 보조사업 운영·관리체계	14
4. 2020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지침	15

■ 제3장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의 근거 및 방법

1. 법적근거	23
2. 2020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주요 특징	23
3. 2020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일정	24
4. 2020년 평가단 구성	27
5. 평가 절차	29
6. 평가 기준	31

제2부 평가결과 분석

■ 제1장 최종 판정 결과 총괄 분석

1. 사업건수별 최종 판정 결과	35
2. 예산규모별 최종 판정 결과	35
3. 판정유형별 국고보조금 감축 규모	36

■ 제2장 부처별 판정 결과

1. 부처별 최종 판정결과	37
2. 부처별 세부사업 최종 판정결과	40

■ 제3장 보조사업 재평가 결과

1. 보조사업 재평가 개요	52
2. 보조사업 재평가 결과	52

제3부 기관별 · 사업별 평가의견서

1. 기획재정부	61
2. 교육부	103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59
4. 외교부	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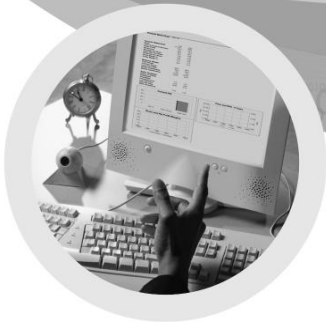
5. 법무부	229
6. 행정안전부	237
7. 문화체육관광부	289
8. 농림축산식품부	533
9. 산업통상자원부	671
10. 보건복지부	779
11. 환경부	1035
12. 고용노동부	1185
13. 여성가족부	1239
14. 국토교통부	1347
15. 해양수산부	1411
16. 중소벤처기업부	1525
17. 국가보훈처	1563
18. 식품의약품안전처	1629
19. 방송통신위원회	1647
20. 공정거래위원회	1665
21. 금융위원회	1673
22. 소방청	1683
23. 문화재청	1697
24. 농촌진흥청	1705
25. 산림청	1733
26. 특허청	1761

제1부 서론

제1장 국고보조금의 개요

제2장 국고보조사업 현황

제3장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의 근거 및 방법





제1장 국고보조금의 개요

1. 국고보조금의 의의

- ☐ 국고보조금 제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하여 재원을 교부하는 제도임
 - 이러한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이외에 부담금, 교부금, 조성비, 장려비, 위탁금 등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음
 - 이러한 명칭은 개별 실정법상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실무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보조금을 지칭하고 있음
- ☐ 국고보조금의 목적은 보조사업의 성격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
 - 전국적 수준의 공공서비스 확보(복지 분야의 서비스)
 - 재정자금의 계획적·중점적인 투입(도로, 항만 사업 등 건설사업)
 - 재해 지역에 대한 재정구제 실시(재해 복구 사업)
 - 신규 사업의 보급·장려(협오시설 또는 주민기피시설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원조
(재정자립기반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재정적인 지원)
 - 국민의 편리를 위한 사무위탁(국가사무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위임에 따른 경비부담)
 - 보조사업과 단독사업의 균형유지(보조금에 수반되는 지방의 부담금이 높은 상황에서는 단독사업의 실시가 곤란하므로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보조사업과 단독사업의 균형 유지 가능)
- ☐ 정부 간 재정관계라는 측면에서 볼 때, 보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일반적인 이유는 ① 국가적 이해관계 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상호 이해관계를 갖는 사업들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 ② 정부 간에 존재하는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것임



- 전자의 이유는 주로 국고보조금에 해당함
- 후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존재하는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시정하는 동시에 지역 간 세원편차로 인해 발생하는 지방정부 간 수평적 재정불균형을 시정하여 지방정부가 최소한의 행정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보장해 주는 (지방)재정교부금의 존재 이유임
-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의 재정적 이전이 이루어지는 정부 간 재정 관계의 수단이 되고 있는 국고보조금과 지방재정교부금(지방교부세) 제도가 있는데, 이들 제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1-1>과 같음
- 국고보조금 제도
 - 국가와 지방 간 서로 이해가 얹혀 있거나 서로 협력하여 사무(사업)를 실시할 때, 일정한 행정수준의 확보나 특정한 시책의 장려 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그에 소요 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에 지원(교부, 부담, 보조)하는 제도
- 지방교부세 제도
 - 국가수입 중 일부를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교부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하려는 제도

<표 1-1>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의 비교

구 분	국 고 보 조 금	지 방 교 부 세
근 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목 적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사업 지원	지방자치단체 재원보장 및 재정불균형 완화
재 원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예산	내국세의 19.24%
재원성격	특정목적 재원	용도 지정 없는 일반재원
배 분	사업별 용도지정, 지방비확보 의무	재원부족액 기준배정



2. 국고보조금의 기능

- 국고보조금은 국가의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사업, 특히 지방정부의 행정구역을 넘어서 공공재의 외부효과(External Effects)나 파급효과(Spillover Effects)가 있는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다음과 같은 일반적 기능을 수행함
 - 특정 공공재에 대해 지방정부로 하여금 국가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지나치게 저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수준 이상을 공급하도록 보장함
 - 지방정부의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외부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국가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의 추진을 가능케 함
 - 지방정부의 세입과 세출 간 불균형 해소 및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에 기여함
- 이러한 국고보조금 제도에 대한 중앙정부의 입장과 지방정부의 입장을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중앙정부 입장은 다음과 같음
 - 의무교육, 사회보장 등 국민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되는 행정에 대해 국가적으로 일정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음
 - 산업의 발전이나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공공시설 정비를 중앙정부가 별도의 지방단위 행정조직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관리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서비스를 권장하여 조장하고자 하는 사무·사업의 보급향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음
 - 국가가 실시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국민의 이익에 합치하고 통제의 효율화를 확보할 수 있음
- 국고보조금 제도에 대한 지방정부 입장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음
 - 국고보조금의 지출대상에 대한 조건을 부여하여 교부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재정운영을 저해할 수 있음
 - 보조금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성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보조금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심한 경쟁과 불신을 초래하는 병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는 사업일지라도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함으로, 적절한 시기에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여 투자의 비효율성과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긴급히 실시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지만, 보조금이 있으면 이 사업에 대해 가치판단을 하지 않은 채 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
 - 이와 같은 끈끈이 효과(Flypaper Effects)로 인해 지방재정이 필요이상으로 팽창하여 방만한 재정운영 관행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에서 부과하고 있는 수준의 지방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약화시킬 수도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과중한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여 지방재정 운영을 경직화시킬 수 있음

3. 국고보조금의 유형

- 보조금의 유형은 다양한 기준에 의거하여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① 보조금 사용 용도의 제한성 유무, ② 보조금 지출 상 일정의 지방비부담(Matching Fund) 방식의 차이, ③ 보조금 규모의 제한성 여부, ④ 법적 근거와 경비부담 기준 ⑤ 보조율의 차등 여부, ⑥ 보조금의 교부조건, ⑦ 보조금 시행주체, ⑧ 보조금의 신청 여부, ⑨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의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

(1) 보조금의 사용용도의 제한성 유무 : 특정보조금과 일반보조금

- 특정보조금(Specific Grants) : 보조금의 사용용도가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은 이에 해당함
 - 이러한 특정보조금은 보조금을 수령하는 기관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특정의 활동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기능적 보조금(Functional Grants)을 의미함
- 일반보조금(General Grants) : 보조금의 사용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이 없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교부세가 이에 해당함

(2) 지방비 부담방식 기준: 정률보조금과 정액보조금

- 정률보조금(Matching Grants) :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는 국고보조사업비의 일정비율 금액을 국가가 보조하는 것으로, 현재 국고보조금의 원칙적인 지출형태임



- 우리나라의 경우 정률보조금의 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해져 있기도 하나,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이 설정되어 있기 보다는 국가의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경우가 많음
- 정액보조금(Lump-Sum Grants) : 특정한 사무, 사업의 실시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교부하는 것임.
 - 정액보조의 방법은 보조대상이 되는 사무·사업의 양을 표시하는 일정한 수량에 일정한 단가를 곱한 금액을 교부하는 방법과 개개의 사무나 사업마다 일정액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3) 정률보조금 규모에 대한 제한 여부 기준 : 개방형보조금과 폐쇄형보조금
 - 개방형보조금(Open-Ended Grants) : 중앙정부가 분담할 비중만을 결정하고 총액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일정비율을 보조하는 비용부담 보조금의 한 유형임
 - 이 경우 보조금을 교부하는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부담을 하는 한 어떤 공급수준이라도 보조금의 상한을 제한함이 없이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됨
 - 폐쇄형 보조금(Closed-Ended Grants) : 보조금총액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으로 비용부담 보조금이지만 보조대상이 되는 지방공공서비스가 일정한 공급수준을 초과해서 과잉공급 되는 경우에는 일정수준 이상의 공급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거나 모든 보조금의 교부를 중단할 수 있음
 - 따라서 폐쇄형 보조금은 재원사용의 효율화와 부당한 보조를 제한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될 수 있음
- (4) 법령 근거 및 경비부담 기준: 부담금, 교부금, 협의의 보조금
 - 부담금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또는 그 기관에게 법령에 의하여 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보조금의 일종임
 -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에 대해 전국적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나아가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국민경제에 적합하게 종합적으로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실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법령에 정한 사업에 대하여 지출하는 경비로서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의의 국고보조금임



- 교부금 : 국가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사무를 국민의 편의, 경비의 효율성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를 위해 교부되는 보조금임
 - 따라서 관련 소요경비는 당연히 국가가 그 전부를 부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경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음
- 협의의 보조금 : 국가가 특정한 행정사무의 집행을 장려, 조장하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원하는 경비로서 장려적 보조금이라고도 함

(5) 보조율의 차등 기준 : 일률보조금과 차등보조금

- 일률보조금 :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동일한 보조율을 적용하는 보조금을 의미함
- 차등보조금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또는 기타 특별한 필요성에 의해서 상이한 보조율을 적용하는 보조금임
 - 차등보조의 방법에는 기준보조율에 일정률(10%, 15%, 20% 등)을 가감하여 인상·인하 보조율을 적용하는 2가지 방법이 있음
 - 차등보조금에 대해서는 지역 간 재정적 격차문제를 완화해 줄 수 있어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재원의 균등화는 지방교부세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보조금을 통한 재정균등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6) 보조금의 교부조건 여부: 특정보조금과 포괄보조금

- 특정보조금(Specific Grants) : 보조금 교부 시 국가가 지방정부의 준수를 제시하는 교부조건(예컨대, 지방비의 일정액(율) 부담 의무화, 보조금 사용목적의 한정, 보조대상 행정수준에 대한 규제 등)이 있는 보조금임
 - 따라서 특정보조금은 특정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원조하기 위하여 그 사용처를 한정하여 지출하는 보조금으로서 이미 국가로부터 교부되는 시점에 그 용도가 지정되어 있음
- 포괄보조금(Block Grants) : 보조금을 교부할 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준수를 요구하는 교부조건이 포괄적으로 설정되는 보조금임
 - 포괄보조금은 일정한 범위 또는 지역의 사업이나 일정한 효과가 있는 사업의 촉진에 도모하기 위하여 그러한 취지에 맞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재원에 충당할 포괄적인 조건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임



- 따라서 포괄보조금은 보조금의 교부에 있어서 그 총액과 비도의 범위만을 지정해 주고 보조금을 충당할 경비의 세목, 수량, 단가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집행을 기하는 동시에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 있음

(7) 보조금의 시행주체 기준: 직접보조금과 간접보조금

- 직접보조금 : 국가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집행하는 경우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보조금이 여기에 속함
- 간접보조금 : 국가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단체)이나 타 기관에 재교부되는 보조금을 말함
 - 우리나라의 경우, 공동양식어장사업비, 일반경지정리사업비 등과 같이 실수요자가 주민인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고 이를 주민(마을)에게 재교부하여 집행케 하고 있음

(8) 보조금의 사전신청 여부: 신청보조금과 무신청보조금

- 신청보조금 :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보조하려는 자에게 관계법령 및 지침 등에 의하여 예산계상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받는 보조금임
 - 보조금 신청제도가 갖는 의의는 지방정부의 계획과 의사가 보조사업에 반영되고, 보조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수행되도록 유도하며, 각 지방정부가 스스로 사업필요성, 지방비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신청함으로써 건전재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데 있음
- 무신청보조금 : 지방정부의 보조금 신청이 없더라도 재해발생 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기타 중앙정부가 국가의 주요 시책 수행 상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교부되는 보조금 등임

(9)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따른 분류

- 이밖에 보조금의 지원대상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자치단체보조금과 개인 또는 법인의 시설운영이나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는 민간보조금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그리고 보조금의 지원내용을 기준으로 인건비, 운영비, 여비, 용역비 등 물건비성 경비에 대한 경상적 지원을 위한 경상보조금과 토지매입비, 시설건축비, 자산취득 등을 위한 자본적 경비를 지원하는 자본보조금으로 구분할 수 있음



4. 국고보조금 근거 법률의 주요 내용

- 국고보조금의 효율적 예산편성과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보조금 예산의 편성·교부신청·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보조금 신청주의 도입(동법 제4조)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매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보조금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함
 - 이러한 신청주의는 보조금 예산편성에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반영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것임
 - 지방비부담 협의 및 의무(동법 제7조, 제13조) :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의 예산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보조사업계획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함
 - 지방비협회의 필요성은 중앙 각 부처로부터 지방비부담이 수반되는 사업 등이 자의적으로 편성 운영되는 경우 타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는 지방비 부담이 과중하게 될 수 있으므로, 사전협의를 통해 적법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국가와 지방의 부담비율을 정하기 위한 것임
 - 보조금의 기준보조율 설정(동법 제9조 및 시행령 제4조) : 보조금은 그 지급의 대상사업·경비의 종목·국고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해지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대상사업의 범위와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보조금의 기준보조율은 최근 2016년 12월 기준, 122개 사업유형별로 정해져 있음
 - 기준보조율은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성 있는 보조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을 적정화를 위해 설정된 것임
 - 보조율은 당해 회계연도의 국고보조금, 지방비부담액, 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된 금액 및 수익자가 부담하는 금액,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 중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 차등보조율제도 도입(동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5조) :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차등보조율은 기준보조율에 일정률(20%, 15%, 10%)을 가산하는 인상보조율과 기준보조율에 일정률(20%, 15%, 10%)을 차감하는 인하보조율로 구분할 수 있는데, 차등화의 기준은 적용대상 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분야별 재정지출지수 등임
 - 인상보조율은 재정사정이 특히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 출연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부제한(동법 제14조) : 국가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하여는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음
 -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업 수행 상 특히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동법 제15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 외의 모든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평가를 위하여 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음
 - 의무지출사업(국가재정법 제7조),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지방재정투자 심사결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되어 진행 중인 계속사업(국가재정법 제38조,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가능
- 보조금의 교부조건(동법 제18조)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영세·유사보조금의 통합운영(동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8조)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할 때 보조사업의 내역을 세분함으로써 보조금의 규모가 영세하여질 경우에는 단위사업내의 유사한 수개의 경비내역을 합하여 교부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소규모의 유사한 영세보조금의 통합은 영세보조금 사업의 수행으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와 재원의 비효율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임



- 보조금의 용도제한 및 반환(동법 제22조, 제31조 및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특히, 국가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단체)이나 타 기관에 재교부되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과 간접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보조금 초과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유사한 목적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보조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에 의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①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 ② 당초 예정된 공정 및 집행방법을 개선하여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 ③ 일상 업무 추진방법을 개선하여 정상적 성격의 경비를 절감한 경우, ④ 보조금을 절약 집행하여 집행 잔액이 소액인 경우 등)임
 - 여기서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이란 동일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한 보조사업 중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같은 부문에 속하는 사업을 말함



제2장 국고보조사업 현황

1. 국고보조사업의 규모

- 2020년의 경우,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는 국고보조금의 규모는 86.7조원이 지원되고 있음
- 최근 5년간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2020년의 경우에는 2019년 대비 8.8조원 증가하였음. 정부 총지출 규모는 연평균 증가율이 7.3%이나 국고보조금의 규모의 평균 증가율은 9.0%로 나타나고 있음

<표 1-2> 국고보조사업의 규모와 정부총지출(예산기준) 추이(2016~2020)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증가율
○ 보조금 규모(조원)	61.4	59.6	66.9	77.9	86.7	9.0%
· 자치단체보조	46.7	46.4	50.2	58.8	65.6	8.9%
· 민간보조	14.7	13.2	16.8	19.1	21.1	9.5%
○ 정부 총지출(조원)	386.4	400.5	428.8	469.6	512.2	7.3%
○ 정부 총지출 대비 보조금 비율	15.6%	14.9%	15.6%	16.6%	16.9%	2.0%

자료 : 기획재정부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 국고보조금을 지급대상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020년의 경우 민간보조는 전체 보조금의 약 24.3%(21.1조원), 자치단체보조는 75.7%(65.6조원)를 차지하고 있음
- 민간단체 보조금의 경우 자치단체 보조금보다 전체 비중은 낮지만, 일단 지원되고 나면 민간보조사업자들이 기득권으로 인식하고 있어 국가재정 여건의 변화와 관계없이 축소 또는 폐지가 어려우며, 이는 국고보조금의 효율적 운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국가재정지출 증가율보다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보조사업의 목적달성 여부에 관계없이 국고보조사업 수는 일정수준을 유지하여 국가재정 운용의 경직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에 있음
- 이와 동시에 국고보조금의 급증은 국가부채 증가의 원인으로도 작용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할 수도 있음



2. 국고보조금의 대상사업 및 보조율

- ☐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경비의 종목, 국고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 및 관련 법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의 범위와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보조율(기준보조율)이 설정되어 있음
 - 보조금 지급제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 ☐ 동법 시행령(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및 기준보조율은 122개 사업 분야에 적용되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는 사업의 수행근거 법령 및 성격에 따라 국고보조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음
 - 따라서 국가가 마련하는 예산안편성지침에서 이들 국고보조의 대상사업명과 기준보조율을 명시하거나 매년 예산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3. 보조사업 운영·관리체계

- ☐ 최근 국고보조금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부적정한 지출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강화 및 정보공개 확대가 요구됨
 - 보조사업 운영·관리 시스템 부재, 보조사업 심사제도 미비, 보조사업자 감시·감독 미흡, 집행 및 사후관리 절차 미흡 등이 부정수급의 4대 요인으로 분석됨
 - 부정수급의 발생은 공공자원의 비효율적 사용, 가용재원의 누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신뢰성 상실 등과 같은 문제점을 유발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 ☐ 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4대 원인별로 부정수급 및 재정누수를 초래하는 부정·부적정 지출에 대한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마련함



- 컨트롤타워 및 인프라 구축 : 컨트롤타워로서 ‘국고보조금관리위원회’ 신설, IT 인프라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인프라 구축, 보조사업 관리 규정의 체계화 및 교육 강화
- 보조사업에 대한 심사·평가 강화 : 신규 보조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제’ 도입, 유사·중복 보조사업에 대한 통폐합 심사 강화, 3년 주기의 국고보조사업 ‘일몰제’ 도입, 부정수급 대책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 평가제도 개선
- 보조사업자 감시·감독 및 벌칙 강화 : 부적격자 배제를 위한 보조사업자 선정제도 개선, 보조사업자에 대한 정보 공시 의무화, 일정규모 이상 보조사업자 외부회계감사 도입, 보조사업자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 강화
- 집행점검·정산 등 사후관리 개선 : 부처별 보조사업 집행점검 체계 구축 및 보고, 실시간 모니터링체계 구축 등 투명성·효율성 강화, 보조사업 정산절차 개선, 부기등기 도입 등 사후관리 절차 강화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실행을 위하여 보조금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뿐만 아니라 보조사업 통합관리지침, 적격성심사 기준, 정산보고서 작성 및 검증지침, 보조사업 평가지침, 회계감사 세부기준, 정보공시 세부기준 등 통합되고 체계적인 지침을 마련함

4. 2020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8조의2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연장평가가 대상사업, 수행체계, 평가방법, 사후조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장평가의 정의)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재정지원 필요성을 평가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보조금 존속기간의 연장여부를 결정하는 사후적인 평가를 말한다.

제3조(연장평가의 목적)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기존 보조사업의 실효성과 재정지원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보조사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보조사업 연장평가 대상사업

제4조(평가 대상)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시한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해당하는 보조사업 중 동법 제15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사업
2. 기타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평가 면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보조사업 연장평가의 대상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제외될 수 있다. 다만, 정부의 재정 여건 변화, 보조사업 운용정책의 기본방향 변경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다.

1.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의무지출사업
2.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되어 진행 중인 계속사업
3.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
4. 그 밖에 존속기간 설정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3년 이내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3장 보조사업 연장평가 수행체계

제6조(보조사업 평가 전문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사업 평가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보조사업 평가의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평가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도록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 장관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 평가 전문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 평가 전문기관은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하여 평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선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보조사업평가 행정 지원
2. 평가 운영 및 제도개선 지원
3. 기타 평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보조사업 평가의 관리·감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사업 연장평가 전문기관의 평가 업무와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보조사업 연장평가 지침의 준수여부
2. 보조사업 연장평가 관련 자료 관리 및 보관 현황
3. 그 밖에 보조사업 연장평가 운영 및 절차와 관련한 사항

② 보조사업 연장평가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시 또는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즉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조치 완료 후에는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사업 평가단의 구성) ①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조사업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함에 있어서 평가위원을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 연장평가 전문기관, 학술학회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다.

- ② 평가단은 단장, 분과장, 분과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 및 분과위원의 수는 평가대상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정한다.
- ③ 평가단은 평가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행을 위해 총괄팀을 둘 수 있다.
- ④ 평가단은 평가결과를 검증하고 쟁점사항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평가단 위촉) ① 평가위원과 분과장의 임기는 매년 체결하는 계약기간으로 하되 위촉 횟수는 최대 3회로 한다. 다만, 평가의 연속성과 전문성 유지를 위해 기재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최대 3회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 ② 단장의 임기는 매년 체결하는 계약기간으로 하되 위촉 횟수는 최대 3회로 한다.
- ③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임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④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새로 위촉되는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평가단의 책무) ① 평가단은 관련 부처가 제출한 평가자료 및 의견을 바탕으로 동 지침 제18조(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기간 내에 평가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은 평가대상 보조사업 운용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제언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은 평가 종료 후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기한 내에 평가결과 및 정책제언을 반영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총괄팀의 구성과 사무) ① 총괄팀은 평가단의 단장과 분과장, 보조사업 연장평가 전문기관의 관리자로 구성한다.

② 총괄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평가의 운영 및 관리
2. 단계별 평가결과의 종합 및 분석, 평가방향 제시
3. 기타 평가의 운영 및 관리에 관련한 사항

제12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사무) ① 조정위원회는 평가단의 단장과 분과장, 각 분과장이 추천하는 분과위원, 보조사업 연장평가 전문기관의 관리자로 구성한다.

② 평가단의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분야별, 유형별 검토를 통한 평가결과의 일관성 검증
2. 쟁점사항에 대한 조정 및 대안 제시
3. 사업폐지 판정에 대한 재검토
4. 기타 평가결과와 관련한 사항

제13조(평가 기간)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매년 1월에서 4월 간 실시한다. 다만,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기획재정부와 보조사업 연장평가 전문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평가 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4장 보조사업 연장평가 방법

제14조(평가자료 제출) ①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연장평가를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및 평가단이 요청하는 평가자료 및 의견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은 보조금 시스템에 축적된 부정수급 관련 등 각종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평가 내용)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다음 각 호의 평가내용에 대해 각각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의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1. 보조사업의 타당성(별표 1)
2.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별표 2)

제16조(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① 평가단은 제15조에 따른 결과를 종합하여 보조사업의 즉시폐지, 단계적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변경, 정상추진으로 최종판정을 도출한다.

② 평가단은 도출된 각 판정결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다.

1. 즉시폐지 : 해당 보조사업의 다음 년도 폐지
2. 단계적폐지 : 즉시폐지는 아니나,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일몰기한을 설정하여 폐지
3. 통폐합 : 유사사업 및 관련사업과 통합
4. 감축 : 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원 적정 규모가 감소한 경우 감액
5. 사업방식 변경 : 사업 방식이나 보조율 변경 등
6. 정상추진 : 적정 소요 지원

③ 항목별로 평가한 결과, 세부항목별 점수의 합이 85점 이상인 경우에 정상추진으로 간주한다.

④ 평가단은 종합평가 이외에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의 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보조사업 운용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사항들을 제시할 수 있다.

제17조(규모별 평가) 보조사업 연장평가의 대상사업을 규모에 따라 유형화 하고 별표 1의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평가항목은 규모별로 평가기준을 달리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규모에 따른 유형화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분류 기준
소규모 사업	사업 규모 50억 이하 사업
중규모 사업	사업규모 50억 초과 200억 이하 사업
대규모 사업	사업규모 200억 초과 사업

제18조(평가 절차) ① 분과위원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평가를 실시하고, 각 단계별로 평가 결과 및 판정사유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 및 평가단의 총괄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1단계 평가(서면평가)
2. 1차 조정위원회
3. 2단계 평가(1차 대면평가)
4. 2차 조정위원회



5. 3단계 평가(2차 대면평가)
6. 3차 조정위원회
7. 추가 심사
8. 최종 조정위원회
9. 최종 평가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제19조(최종 평가보고서의 제출) 평가완료 후 평가단은 최종 평가보고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기한 내에 기획재정부 장관 및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보조사업 연장평가 사후조치

제20조(결과의 통보)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가 예산편성 및 보조사업 운용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결과를 해당 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재평가) 보조사업 연장평가의 최종결과에 대해 보조금관리위원회, 기획재정부장관, 사업담당자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해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는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제22조(예산편성 및 기타 재정운용과의 연계)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 예산을 요구할 때 반드시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관련 조치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평가결과를 반영하지 못하였을 때는 반드시 타당한 사유에 대한 자료를 예산요구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사유의 타당성 여부는 보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보조사업과 관련한 기타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제23조(결과의 공개) 평가단 및 보조사업 연장평가 전문기관이 최종 평가보고서를 기획재정부 장관 및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때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및 해당 중앙관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별표 1 >

보조사업 연장평가의 평가항목 및 배점

1. 보조사업의 타당성(80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10점)		① 보조사업과 관련한 법령과 규칙 등 보조금 지급 근거가 명확하고 타당한지를 고려
		② 국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등 목적이 명확하고 타당한지를 고려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30점)		① 보조사업의 내역사업 및 기간, 규모 등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고려
		② 보조사업이 당초에 계획대로 집행하고, 계획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는지 고려
		③ 보조사업이 상위 정책목표 달성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는지 고려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10점)		① 보조금 외 다른 정책수단은 없는지, 유사·중복되는 다른 재정사업은 없는지 고려
		② 보조사업의 실수혜자 및 잠재적 수혜자가 명확하고 광범위하여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지 고려
1-4 재정 지원 규모의 적정성* (10점)	소규모	(50억 미만 사업만 해당) ① 보조금의 규모가 행정비용을 감안할 때 목표달성에 실효성이 있는지 고려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전체사업) ② 현행 보조율이 「보조금법 시행령」 상 기준보조율을 준수하는지를 고려하고, 「보조금법 시행령」 상 기준보조율이 없는 경우에는 현행 보조율이 합리적인 보조율 산정기준에 근거하는 지를 고려
	대규모	(200억 이상 사업만 해당) ③ 단기(0~3년), 중기(3~6년), 장기(7년 이상) 사업들에 대한 재정소요액 추계가 되어있으며 적정한지를 고려
1-5 사회적가치 실현 (가산점 최대 3.0**)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지를 고려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18.3)

* 중규모 사업은 1-5-②만 평가

** 보조사업의 타당성 지표 배점 80점내에서 가점 부여 가능(최대 3.0점)



< 별표 2 >

보조사업 연장평가의 평가항목 및 배점

2.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20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점)	지자체 보조	① 보조사업 선정 및 교부절차 등에 대하여 지자체 비용부담능력의 적정성,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이 포함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 사업자를 적절하게 선정하는지 고려
	민간 보조	① 민간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절차 등에 대하여 공모절차 준수여부,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 제시, 교부조건 충족 검토 등이 포함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 사업자를 적절하게 선정하는지 고려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점)		① 보조사업 집행현황, 점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 적절하게 집행하는지 고려
		②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정보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 적절하게 관리하는지 고려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점)		① 적절한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고려
		②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고려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가산점 최대 3.0*)		사업관리를 위한 자체 점검 노력이 우수한지 고려 - 부정수급 자체적발 실적이 외부적발 실적보다 많은 경우 등

*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 지표 전체 20점내에서 가점 부여 가능(최대 3.0점)



제3장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의 근거 및 방법

1. 법적 근거

- 보조사업에 대한 심사·평가 강화를 위해 근거조항을 보강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5년 12월 31일 국회 통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6.4.29.] [법률 제13931호, 2016.1.28., 일부개정]

- 제15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존속기간이 연장된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국가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2020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주요 특징

- 금년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일몰제 실시에 따라 20년말을 기점으로 3년의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함.
- 2017년 보조사업 평가를 받은 사업 및 18년에 신설된 사업
- 국고보조금 규모에 따라 보조사업을 유형화하여 유형별 평가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정량평가를 도입하여 평가방법 및 결과의 객관성을 제고하였음.
- 소규모 사업: 50억 이하, 중규모 사업: 50억 ~ 200억 이하, 대규모 사업: 200억 초과
- 소규모 사업은 보조사업에 따른 행정비용의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대규모 사업은 향후 장기간 재정추계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였음.
- 또한, 정량평가 도입에 따라 평가지표 총점 기준으로 85점 미만일 경우에는 폐지 또는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변경 결과를 부여하였음.



3. 2020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일정

- ☐ 기획재정부의 예산 심의 일정에 맞추어 일정을 관리하면서 진행함
- ☐ 서면평가는 설정된 평가방향에 따라 미진했던 자료보충을 위한 추가 제출자료 및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확인한 후 심층적으로 평가결과를 도출함
- ☐ 서면평가에서 추가로 확인할 사업을 중심으로 부처 보조사업 담당자들과 2단계에 걸쳐 대면 심사를 진행함
 - 서면평가를 통해 도출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부처의 소명의견을 개선하는 형식으로 실시
- ☐ 각 단계별 평가가 종료된 이후에는 평가위원들이 제기한 쟁점사업, 평가결과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한 사업 그밖에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분과별 회의와 총괄·조정 위원회 회의를 개최함
 - 분과별 회의는 각 분과장 주재로 분과 내 모든 사업에 대해 유사중복 검토, 주요 쟁점사항 조정을 위해 분과별 각 3차례 진행
 - 평가단장, 각 분과별 분과장, 분과별 조정위원들 그리고 필요시 기획재정부 담당자가 참석하는 조정회의를 4차례 진행함
 - 조정위원회는 평가단장 1인, 분과장 5인, 각 분야별 전문 평가위원 4인 그리고 한국조세 재정연구원 사업담당자 1인으로 총 11인으로 구성



〈그림 1-1〉 2020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일정

일 정	추진 내용
12월 중순	평가편람 확정 및 부처 통보 ○ 기획재정부: 평가편람 및 평가대상 부처 통보
20년 1월 6일	부처별 기초조사보고서 제출완료 ○ 제출처: 사무국_한국조세재정연구원 평가제도팀
1월 6일~ 1월 20일	기초조사보고서 사전 검토 ○ 사무국: 평가매뉴얼 배포(1월 6일) ○ 평가위원: 추가요청자료 및 질의사항 제출(제출처 및 기한: 사무국, 1월 20일)
1월 18일	제1차 평가단 설명회 (대상: 평가단 전원) ○ 기획재정부: 평가취지 등 설명, 위촉장 수여 ○ 총괄팀: 평가단 소개, 평가방법 및 평가 주요 착안사항, 행정사항 등 설명
1월 20일~ 1월 31일	서면평가 ○ 부처: 추가자료 및 질의사항 답변 제출(제출처 및 기한: 사무국, 1월 23일) ○ 평가위원: 서면평가 실시
1월 31일~ 2월 6일	제1차 분과회의 ○ 분과장: 분과별 회의 실시(1월 31일 ~ 2월 5일) ○ 평가위원: 서면평가 결과 제출(제출처 및 기한: 사무국, 2월 6일) - 산출자료: 평가보고서, 평가표
2월 8일	제1차 조정위원회 개최 ○ 서면평가 결과 분석 및 평가 방향 논의 제2차 평가단 설명회 (대상: 평가단 전원) ○ 서면평가 결과 검토 및 향후 평가 방향 설명회
2월 10일~ 3월 6일	1차 대면평가 ○ 부처: 서면평가 결과에 대한 소명의건서 제출(제출처 및 기한: 사무국, 2월 14일) ○ 평가위원: 1차 대면평가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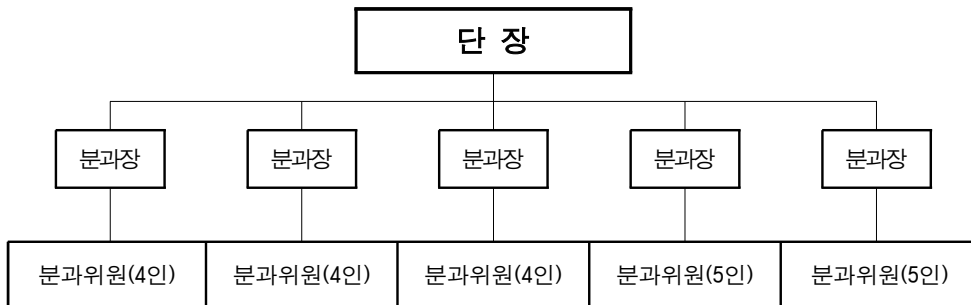
일 정	추진내용
3월 6일~ 3월 12일	제2차 분과회의 ○ 분과장: 분과별 회의 실시(3월 6일 ~ 3월 11일) ○ 평가위원: 2차 대면평가 결과 제출(제출처 및 기한: 사무국, 3월 12일) - 산출자료: 평가보고서, 평가표
3월 14일	제2차 조정위원회 개최 ○ 1차 대면평가 결과 분석 및 평가 방향 논의
3월 16일~ 4월 3일	2차 대면평가 ○ 부처: 1차 대면평가 결과에 대한 소명의견서 제출(제출처 및 기한: 사무국, 3월 20일) ○ 평가위원: 2차 대면평가 실시
4월 3일~ 4월 9일	제3차 분과회의 ○ 분과장: 분과별 회의 실시(4월 3일 ~ 4월 8일) ○ 평가위원: 2차 대면평가 결과 제출(제출처 및 기한: 사무국, 4월 9일) - 산출자료: 평가보고서, 평가표
4월 11일	제3차 조정위원회 개최 ○ 2차 대면평가 결과 분석 및 평가 방향 논의 제3차 평가단 설명회 (대상: 평가단 전원) ○ 최종보고서 작성 방법 설명회
4월 17일~ 4월 22일	추가심사 ○ 부처: 예외적인 사업*에 한해 이의제기 제출 (제출처 및 기한: 사무국, 4월 16일) * 폐지 및 통합합 수용불가 사업, 사실관계 다른 보고서 서술내용 등을 대상으로 유·무선 진행
4월 23일	제4차 조정위원회 개최 ○ 최종평가보고서(안) 분석
4월 23일~ 5월 7일	최종보고서 작성/제출 ○ 총괄팀 : 종합보고서 작성 ○ 평가위원 : 사업별 최종보고서 작성



4. 2020년 평가단 구성

- 금년도에는 평가단장 1인, 분과장 5인, 평가위원 22인으로 총 28인으로 평가단을 구성함
 - 교차검토는 해당 분과장(1차 검토) 그리고 평가결과에 대한 조정이 최종적으로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평가대상사업 조정위원회(2차 검토)에서 수행하는 2단계로 진행
- 평가단장 및 5인의 분과장이 평가진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그림 1-2> 2020년 평가단 구성 조직도





<표 1-3> 2020년도 평가위원

직책	성명	소속
평가단장	최진욱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제1분과장	하연섭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제2분과장	김재훈	한국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제3분과장	권오성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4분과장	류덕현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제5분과장	김미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분과위원	강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분과위원	김윤영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분과위원	김효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분과위원	최유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분과위원	김성훈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분과위원	박정윤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분과위원	이수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분과위원	이수형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분과위원	권남호	숭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분과위원	박소영	인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분과위원	오선정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분과위원	유승현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교수
분과위원	김주영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분과위원	송화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
분과위원	안준모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분과위원	임성묵	동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분과위원	정장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분과위원	백은영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분과위원	오형나	경희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분과위원	이명현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분과위원	이상현	강원대학교 원예농업자원경제학부 교수
분과위원	한혜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5. 평가 절차

□ 평가방법

- 세부평가항목별로 평점을 부여하고, 평가점수의 총합이 85점 이상인 경우에만 ‘정상추진’
 - 평가위원(1차 평가), 분과회의(2차 검증), 조정위원회(3차 재검증)

□ 평가절차

- 서면평가 → 1차 대면평가 → 2차 대면평가 → 추가심사의 단계를 거쳐 최종결과 도출

□ 1단계 심사(서면평가)

- 부처가 작성한 「기초조사보고서」([양식1]) 및 제출자료를 근거로 서면심사 결과 도출
 - 평가위원이 1차 평가하고, 분과회의 검증 및 조정위원회 재검증을 거쳐 결과 도출
 - 평가단은 평가보고서 및 평가표를 작성하고 다음의 평가결과를 도출하여 부처에게 통보
 - ① 즉시폐지, ② 단계적폐지, ③ 통폐합, ④ 감축, ⑤ 사업방식변경, ⑥ 정상추진
 - 부처는 평가보고서에 대한 「1차 소명의견서」([양식2])를 작성하여 제출

□ 2단계 심사(1차 대면평가)

- 서면평가 결과 및 「1차 소명의견서」를 바탕으로 평가대상별 1차 대면평가 실시
 - 평가단은 평가보고서 및 평가표를 작성하고 다음의 평가결과를 도출하여 부처에 통보
 - ① 즉시폐지, ② 단계적폐지, ③ 통폐합, ④ 감축, ⑤ 사업방식변경, ⑥ 정상추진
 - 부처는 평가보고서에 대한 「2차 소명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
 - 2차 대면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차 소명의견서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나 자료는 제외하고 작성하되, 언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주만으로 설명



□ 3단계 심사(2차 대면평가)

- 1차 대면평가 결과 및 「2차 소명의견서」를 바탕으로 평가대상별 2차 대면평가 실시
 - 평가단은 평가보고서 및 평가표를 작성하고 다음의 평가결과를 도출하여 부처에 통보
 - ① 즉시폐지, ② 단계적폐지, ③ 통폐합, ④ 감축, ⑤ 사업방식변경, ⑥ 정상추진

□ 추가심사

- 3단계 심사결과(즉시폐지·단계적폐지·통폐합만 해당)에 심각한 이견이 있거나 평가보고서에 기술된 내용이 사실과 달라 총괄반이 추가심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가심사 실시
 - 평가단은 최종 이의제기를 바탕으로 최종 평가보고서(안)을 작성하여 총괄팀에 제출(1일 이내)



6. 평가 기준

□ 평가지표별 착안사항은 다음과 같음

1. 보조사업의 타당성 분석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① 보조사업과 관련한 법령과 규칙 등 보조금 지급 근거가 명확하고 타당한지를 고려
- ② 국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등 목적이 명확하고 타당한지를 고려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① 보조사업의 내역사업 및 기간, 규모 등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고려
- ② 보조사업이 당초에 계획한대로 집행하고, 계획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는지 고려
- ③ 보조사업이 상위 정책목표 달성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는지 고려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① 보조금 외 다른 정책수단은 없는지, 유사·중복되는 다른 재정사업은 없는지 고려
- ② 보조사업의 실수혜자 및 잠재적 수혜자가 명확하고 광범위하여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지 고려

1-4. 재정지원 규모의 합리성

- ① 보조금의 규모가 행정비용을 감안할 때 보조사업 목표달성에 실효성이 있는지 고려
- ② 보조사업 규모가 사업목표 달성에 적절한지 여부, 사업비가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를 고려
- ③ 현행 보조율이 「보조금법 시행령」 상 기준보조율을 준수하는지를 고려하고, 「보조금법 시행령」 상 기준보조율이 없는 경우에는 현행 보조율이 합리적인 보조율 산정기준에 근거하는 지를 고려
- ④ 단기(0~3년), 중기(3~6년), 장기(7년 이상) 사업들에 대한 재정소요액 추계가 되어있으며 적절한지를 고려

1-5. 사회적가치 실현

- ①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지를 고려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18.3)



2.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 분석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① 공모절차 또는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시, 교부조건 충족 검토 등 적절한 사업자 선정 및 교부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를 고려
- ② 선정 및 교부절차를 준수하여 법적합성, 적정성, 자부담 능력을 검토하여 적절한 보조사업자에게 재원을 집행하였는지 고려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① 보조사업 집행현황, 점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 적절하게 집행하는지 고려
- ②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정보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 적절하게 관리하는지 고려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① 적절한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고려
- ②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고려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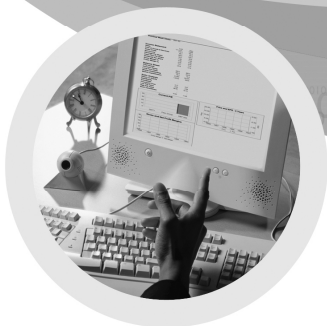
- ① 사업관리를 위한 자체 점검 노력이 우수한지 고려
 - 부정수급 자체적발 실적이 외부적발 실적보다 많은 경우 등

제2부 평가결과 분석

제1장 최종 판정 결과 총괄 분석

제2장 부처별 판정 결과

제3장 보조사업 재평가 결과





제1장 최종 판정결과 총괄 분석

1. 사업건수별 최종 판정 결과

□ 2020년도에는 17년 보조사업 평가를 받은 사업 및 존속기한 3년 도래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타 기관에서 평가를 받는 사업 등을 제외하고 241개의 세부사업에 대해 평가 실시

○ 평가결과 ‘정상추진’ 24개 사업 (10.0%), ‘즉시폐지’ 2개 사업 (0.8%), ‘단계적 폐지’ 12개 사업 (5.0%), 통폐합 5개 사업 (2.1%), 감축 68개 사업 (28.2%), 사업방식변경 130개 사업 (53.9%) 임

<표 2-1> 사업건수별 최종 판정결과

구분	즉시폐지	단계적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변경	정상추진	합계
사업수(개)	2	12	5	68	130	24	241
비율(%)	0.8	5.0	2.1	28.2	53.9	10.0	100.0

2. 예산 규모별 최종 판정 결과

□ 2020년에는 241개 평가대상 사업의 총 예산규모는 약 8조 5,526억 원임.

○ ‘정상추진’ 판정을 받은 사업의 예산 규모는 약 9,112억 원(10.7%), ‘즉시폐지’ 판정을 받은 사업의 예산 규모는 약 39억 원(0.05%), ‘단계적폐지’ 판정을 받은 사업의 예산 규모는 약 1,540억 원(1.8%), ‘통폐합’ 판정을 받은 사업의 예산 규모는 약 527억 원(0.6%), ‘감축’ 판정을 받은 사업의 예산 규모는 약 2조 255억 원(23.7%), 사업방식변경 판정을 받은 사업의 예산 규모는 약 5조 4,054억 원(63.2%) 임.

<표 2-2> 예산규모별 최종 판정결과

구분	즉시폐지	단계적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변경	정상추진	합계
예산(억원)	39	1,540	527	20,255	54,054	9,112	85,526
비율(%)	0.05	1.8	0.6	23.7	63.2	10.7	100.0



3. 판정유형별 국고보조금 감축 규모

- 국고보조금을 향후 3년 동안, ‘즉시폐지’ 약 39억 원, ‘단계적폐지’ 약 1,540억 원, 통폐합 약 527억 원, 감축 약 1,265억 원 등 총 3,371억 원 감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함
- ‘감축’ 판정을 받은 68개 세부사업(’20년 예산 20,255억원)은 평가결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년 예산 대비 목표 감축범위를 적용하여 산정함.
- 감축사업의 경우 향후 3년간(’21~’23년) “높은 수준”의 감축과 “일정 수준”의 감축, 두 단계로 제시하여 예산편성과정에서 활용(단계별 구체적인 감축규모는 편성과정에서 결정하되, 높은 수준은 최소 ’20년 예산대비 10% 이상의 감축이 필요함).
 - 예상 감축규모 산정을 위해 “높은 수준”의 감축은 최소수준인 10%를 적용하고, “일정 수준”의 감축은 5%를 적용하여 감축규모 산정하여 추정함.
 - 이에 따라 “높은 수준”의 감축이 필요한 사업은 28개 사업(41.2%, ’20년 예산 5,051억원)으로 505억 원 감축할 것을 제안하며, “일정 수준”의 감축이 필요한 사업은 40개 사업(58.8%, ’20년 예산 15,203억원)으로 760억 원 감축할 것을 제안함.

<표 2-3> 최종 판정결과별 국고보조금 감축규모

(단위 : 억 원, %)

구분	즉시폐지	단계적폐지	통폐합	감축		합계
				높은 수준	일정 수준	
예산(A)	39	1,540	527	5,051	15,203	85,526
감축규모(B)	39	1,540	527	505(추정)	760(추정)	3,371(추정)
감축비율(B/A)	100%	100%	100%	10%	5%	3.9%



제2장 부처별 판정 결과

1. 부처별 최종 판정 결과

- 2020년 평가대상은 세부사업 기준으로는 26개 부처 241개 사업으로 총 예산은 8조 5,526억 원이며, 고용노동부가 2조 3,327억 원으로 가장 많고, 소방청이 4억 원으로 가장 적음.
- 5개 이상 사업을 평가한 부처 중 정상추진 판정을 받은 사업의 비율이 높은 부처는 행정안전부(50.0%, 총 8개 사업 대상), 국토교통부(33.3%, 총 9개 사업 대상), 해양수산부(28.6%, 총 14개 사업 대상)·고용노동부(28.6%, 총 7개 사업 대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28.6%, 총 7개 사업 대상) 순이었음.
 - 사업 개수 기준으로는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가 4개,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가 2개 순으로 정상추진 판정을 받은 사업의 개수가 많았음.
 - 예산규모로 볼 때 100억 이상 인 부처 중 정상추진 판정을 받은 사업의 예산 규모 비율이 높은 부처는 행정안전부(96.6%), 해양수산부(48.2%), 농림축산식품부(42.2%) 순이었음.
- 국고보조금 폐지(즉시폐지 및 단계적폐지) 판정을 받은 사업은 10개 부처, 14개 사업이며 2023년 이전까지 폐지하여야 할 규모는 1,540억 원(전체 평가대상 예산 대비 1.8%) 임
 - 사업 개수 기준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환경부가 각 2개 사업이 폐지 판정을 받았고, 예산규모로 볼 때 문화체육관광부(1,031억원, 14.5%, 1개 사업), 산업통상자원부(248억원, 8.9%), 해양수산부(163억원, 27.2%) 순임
- 전체 평가대상 중 19개 부처, 68개 사업이 감축 판정을 받았으며, 사업 개수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11개, 문화체육관광부 10개, 농림축산식품부 9개 사업 순으로 사업의 개수가 많았으며, 예산 규모로 볼 때 농림축산식품부 5,572억원, 국토교통부 3,639억 원, 보건복지부 3,308억원 순으로 감축 대상이 되는 예산규모가 컸음.
 - 목표 감축범위가 높은 수준(10% 이상)의 감축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정 받은 사업은 12개 부처, 28개 사업이고 일정 수준의 감축이 필요한 사업은 15개 부처 40개 사업임.
 - 높은 수준(감축대상 금액): 보건복지부(1,413억원, 10.0%), 환경부(920억 원, 13.7%), 고용노동부(909억원, 3.9%)
 - 높은 수준(감축대상 사업): 보건복지부(5개, 12.5%), 산업통상자원부(4개, 30.8%), 환경부(3개, 13.0%)



<표 2-4> 부처별 최종 판정 결과(사업 수)

(단위 : 개, %)

구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추진		합계
	사업 수	비율	사업 수	비율	사업 수	비율	사업 수	비율	사업 수	비율	사업 수	비율	
[11]기획재정부							4	66.7%	2	33.3%			6
[12]교육부							1	12.5%	7	87.5%			8
[13]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14.3%			2	28.6%	2	28.6%	2	28.6%	7
[14]외교부							1	100.0%					1
[16]법무부									1	100.0%			1
[18]행정안전부			2	25.0%			1	12.5%	1	12.5%	4	50.0%	8
[19]문화체육관광부			1	2.7%	1	2.7%	10	27.0%	24	64.9%	1	2.7%	37
[20]농림축산식품부							9	47.4%	9	47.4%	1	5.3%	19
[21]산업통상자원부			2	15.4%	1	7.7%	7	53.8%	3	23.1%			13
[22]보건복지부			1	2.5%			11	27.5%	26	65.0%	2	5.0%	40
[23]환경부	1	4.3%	1	4.3%			6	26.1%	14	60.9%	1	4.3%	23
[24]고용노동부					1	14.3%	2	28.6%	2	28.6%	2	28.6%	7
[25]여성가족부			1	5.6%			3	16.7%	14	77.8%			18
[26]국토교통부	1	11.1%					3	33.3%	2	22.2%	3	33.3%	9
[27]해양수산부			2	14.3%			1	7.1%	7	50.0%	4	28.6%	14
[28]중소벤처기업부							1	25.0%	3	75.0%			4
[29]국가보훈처			1	11.1%	2	22.2%	3	33.3%	3	33.3%			9
[32]식품의약품안전처									1	33.3%	2	66.7%	3
[34]방송통신위원회									2	100.0%			2
[35]공정거래위원회							1	100.0%					1
[36]금융위원회							1	100.0%					1
[46]소방청									1	50.0%	1	50.0%	2
[47]문화재청									1	100.0%			1
[48]농촌진흥청									3	100.0%			3
[49]산림청							1	33.3%	1	33.3%	1	33.3%	3
[50]특허청									1	100.0%			1
총계	2	0.8%	12	5.0%	5	2.1%	68	28.2%	130	53.9%	24	10.0%	241



<표 2-5> 부처별 최종 판정 결과(예산 규모)

(단위 : 백만 원, %)

구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추진		합계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11]기획재정부							56,945	70.0%	24,374	30.0%			81,319
[12]교육부							800	2.1%	38,164	97.9%			38,964
[13]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69	12.8%			1,393	15.3%	2,950	32.3%	3,608	39.6%	9,120
[14]외교부							1,100	100.0%					1,100
[16]법무부									31,202	100.0%			31,202
[18]행정안전부			3,000	1.4%			2,247	1.0%	2,200	1.0%	209,892	96.6%	217,339
[19]문화체육관광부			103,112	14.5%	1,156	0.2%	253,861	35.7%	320,619	45.1%	32,595	4.6%	711,343
[20]농림축산식품부							557,194	43.7%	179,648	14.1%	538,136	42.2%	1,274,978
[21]산업통상자원부			24,848	8.9%	2,355	0.8%	172,889	61.8%	79,773	28.5%			279,865
[22]보건복지부			877	0.1%			330,773	23.5%	1,054,865	75.0%	19,881	1.4%	1,406,396
[23]환경부	80	0.01%	1,131	0.2%			109,340	16.3%	546,090	81.3%	15,000	2.2%	671,641
[24]고용노동부					840	0.04%	90,876	3.9%	2,229,145	95.6%	11,861	0.5%	2,332,722
[25]여성가족부			3,501	1.2%			13,916	4.6%	282,623	94.2%			300,040
[26]국토교통부	3,829	0.4%					363,927	42.7%	434,960	51.0%	49,315	5.8%	852,031
[27]해양수산부			16,308	27.2%			2,430	4.1%	12,335	20.6%	28,885	48.2%	59,958
[28]중소벤처기업부							61,538	42.2%	84,314	57.8%			145,852
[29]국가보훈처			34	0.04%	48,310	60.5%	3,229	4.0%	28,287	35.4%			79,860
[32]식품의약품안전처									484	40.9%	699	59.1%	1,183
[34]방송통신위원회									713	100.0%			713
[35]공정거래위원회							1,306	100.0%					1,306
[36]금융위원회							505	100.0%					505
[46]소방청									90	22.8%	304	77.2%	394
[47]문화재청									2,910	100.0%			2,910
[48]농촌진흥청									24,034	100.0%			24,034
[49]산림청							1,225	15.7%	5,582	71.5%	999	12.8%	7,806
[50]특허청									20,051	100.0%			20,051
총계	3,909	0.05%	153,980	1.8%	52,661	0.6%	2,025,494	23.7%	5,405,412		911,175	10.7%	8,552,630



2. 부처별 세부사업 최종 판정결과

□ 각 부처별 세부사업에 대한 판정결과는 다음과 같음

- 2020년에는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평가함에 따라 내역 사업별 판정결과에 따라 판정결과는 복수판정이 도출될 수 있으며 이때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가장 적합한 판정결과를 최종 판정결과로 판단하였음

<표 2-6> 부처 사업별 최종 평가결과

(단위 : 백만 원)

소관부처	세부사업명	세목	20년 예산	판정결과
기획재정부	소비자물가관리	민간경상보조	919	감축
기획재정부	아동복지시설아동치료, 재활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1,581	사업방식변경
기획재정부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32,096	감축
기획재정부	요보호아동그룹홈운영지원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22,793	사업방식변경
기획재정부	입양아동가족지원	지자체경상보조	18,042	감축
기획재정부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	지자체자본보조	5,888	감축
교육부	전문대학자율역량기반조성	민간경상보조	915	사업방식변경
교육부	대학평가맞춤형	민간경상보조	1,927	사업방식변경
교육부	미래교육환경대비교육콘텐츠진흥육성	민간경상보조	2,920	사업방식변경
교육부	글로벌교육교류사업(비ODA)	민간경상보조	7,924	사업방식변경
교육부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	민간경상보조	3,278	사업방식변경
교육부	법학전문대학원교육역량강화	민간경상보조	200	사업방식변경
교육부	평생교육검정고시지원	민간경상보조	800	감축
교육부	초등돌봄교실시설확충	지자체경상보조	21,000	사업방식변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경쟁및이용자보호환경조성(방발) (정보화)	민간경상보조	588	감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장비산업인프라구축(정보화)	민간경상보조	1,169	단계적 폐지



소관부처	세부사업명	세목	20년 예산	판정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	민간경상보조	2,785	정상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평가기반조성	민간경상보조	823	정상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정보사회이용자보호기반조성	민간경상보조	800	사업방식변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경력과학기술인활용지원	민간경상보조	2,150	사업방식변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기술사육성관리지원	민간경상보조	805	감축
외교부	공공외교역량강화	민간경상보조	1,100	감축
법무부	성폭력피해자지원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31,202	사업방식변경
행정안전부	부마민주항쟁명예회복지원	민간경상보조	2,200	사업방식변경
행정안전부	섬발전협력사업추진	지자체자본보조	2,000	단계적 폐지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기반조성및역량강화	지자체경상보조	1,000	단계적 폐지
행정안전부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지자체자본보조	173,409	정상추진
행정안전부	위험도로구조개선	지자체자본보조	34,331	정상추진
행정안전부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제주)	지자체자본보조	1,902	정상추진
행정안전부	위험도로구조개선(제주)	지자체자본보조	2,247	감축
행정안전부	전직대통령및유족예우	민간경상보조	250	정상추진
문화체육관광부	3대문화권생태관광기반조성 (지역지원)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103,112	단계적 폐지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교류지원	민간경상보조	17,652	감축
문화체육관광부	뉴스미디어진흥	민간경상보조	2,100	사업방식변경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	18,692	감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단체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	85,740	사업방식변경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산업기반구축	민간경상보조	2,048	사업방식변경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28,382	사업방식변경



소관부처	세부사업명	세목	20년 예산	판정결과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창작활동지원	민간경상보조	8,268	사업방식변경
문화체육관광부	전국(소년)체전지원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32,595	정상추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예술지원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6,297	사업방식변경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신문발전지원	민간경상보조	4,428	감축
문화체육관광부	초등학교스포츠허브장사배치지원	지자체경상보조	11,586	사업방식변경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산업육성	민간경상보조	24,252	감축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지원	민간경상보조	22,665	사업방식변경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캠핑장조성(보조)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5,550	감축
문화체육관광부	뉴스유통구조개선	민간경상보조	2,765	사업방식변경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개발및서비스환경개선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2,660	사업방식변경
문화체육관광부	도평방지활동지원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7,676	감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중심도시육성(지자체)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35,882	사업방식변경
문화체육관광부	회원종목단체및지회지원	민간경상보조	36,742	감축
문화체육관광부	관광특구활성화지원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914	사업방식변경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대회국내 개최지원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10,690	사업방식변경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지원	민간경상보조	10,953	사업방식변경
문화체육관광부	언론공익사업	민간경상보조	4,903	사업방식변경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의전당지원	민간경상보조	9,412	사업방식변경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도서관관운영	지자체자본보조	200	사업방식변경
문화체육관광부	인문정신문화사회적확산지원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9,760	사업방식변경
문화체육관광부	태권도진흥재단운영(보조)지원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23,443	감축



소관부처	세부사업명	세목	20년 예산	판정결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학번역원지원	민간경상보조	10,962	사업방식변경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독서문화증진지원	민간경상보조	7,177	사업방식변경
문화체육관광부	한국형생태녹색관광육성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민간자본보조	20,116	사업방식변경
문화체육관광부	광고산업활성화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2,306	감축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문화재단지원	민간경상보조	2,830	사업방식변경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선수양성지원	민간경상보조	113,120	감축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콘텐츠활성화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17,241	사업방식변경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예술진흥기반조성	민간경상보조	7,067	사업방식변경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보다부처연계서비스플랫폼구축 (정보화)	민간경상보조	1,156	통폐합
농림축산식품부	배수개선	지자체자본보조 민간자본보조	308,845	감축
농림축산식품부	농작물재해보험운영비지원	민간경상보조	111,846	감축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수급관리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71,156	사업방식변경
농림축산식품부	한발대비용수개발	지자체자본보조	11,300	사업방식변경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지자체자본보조	51,238	사업방식변경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유통및소비촉진제고	민간경상보조	1,504	감축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용수관리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82,857	감축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고용인력지원	민간경상보조	2,960	사업방식변경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및복지대책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4,566	사업방식변경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가치및소비촉진제고	민간경상보조	4,377	감축
농림축산식품부	소규모도계장설치지원	지자체자본보조	520	감축



소관부처	세부사업명	세목	20년 예산	판정결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4,780	감축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22,167	사업방식변경
농림축산식품부	노지스마트농업시범사업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8,840	사업방식변경
농림축산식품부	지역단위푸드플랜구축지원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5,050	사업방식변경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민간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17,385	감축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다원적자원활용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2,371	사업방식변경
농림축산식품부	고품질쌀유통활성화	민간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25,080	감축
농림축산식품부	수리시설개보수	민간자본보조	538,136	정상추진
산업통상자원부	기후변화협약대응	민간경상보조	8,481	감축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시설안전관리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2,355	통폐합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홍보	민간경상보조	2,487	감축
산업통상자원부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4,518	감축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산업전주기제품안전성지원센터 구축	민간자본보조	2,640	단계적 폐지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지원사업(발전소주변지역)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63,951	사업방식변경
산업통상자원부	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	민간경상보조	104,124	감축
산업통상자원부	무연탄발전지원	민간경상보조	15,072	사업방식변경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패션산업활성화기반마련	민간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25,342	감축
산업통상자원부	어린이제품안전관리생태계조성	민간경상보조	750	사업방식변경
산업통상자원부	세계엑스포참가지원	민간경상보조	22,208	단계적 폐지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에너지절약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20,177	감축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플랜트진출확대	민간경상보조	7,760	감축



소관부처	세부사업명	세목	20년 예산	판정결과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9,445	사업방식변경
보건복지부	음주폐해예방관리	민간경상보조	969	사업방식변경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전공의수련보조수당지원	민간경상보조	877	단계적 폐지
보건복지부	의료및분만취약지지원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13,300	감축
보건복지부	장사시설설치	민간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46,713	감축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29,968	감축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지원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141,499	사업방식변경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6,534	사업방식변경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지원	민간경상보조	8,918	사업방식변경
보건복지부	해외환자유치지원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5,458	사업방식변경
보건복지부	노인단체지원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39,200	사업방식변경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시설확충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86,401	감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개발지원등	민간경상보조	300	감축
보건복지부	영주귀국사할린한인정착비및시설 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1,665	사업방식변경
보건복지부	장애인단체	민간경상보조	7,338	사업방식변경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32,295	감축
보건복지부	제대혈공공관리	민간경상보조	1,600	감축
보건복지부	혈액안전관리	민간자본보조	10,012	감축
보건복지부	글로벌화장품육성인프라구축	민간경상보조	5,440	사업방식변경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371,118	사업방식변경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	지자체경상보조	27,721	사업방식변경



소관부처	세부사업명	세목	20년 예산	판정결과
보건복지부	검역관리	민간경상보조	15	사업방식변경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기지원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3,559	사업방식변경
보건복지부	지역거점병원공공성강화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민간자본보조	122,117	사업방식변경
보건복지부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133,926	사업방식변경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4,337	사업방식변경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지원사업	지자체경상보조	2,731	사업방식변경
보건복지부	감염병예방관리및지원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380	사업방식변경
보건복지부	공공어린이재활병원건립	민간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16,500	사업방식변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의료비지원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36,366	사업방식변경
보건복지부	한국한의약진흥원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	9,148	사업방식변경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사업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26,225	사업방식변경
보건복지부	119구급대지원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17,837	정상추진
보건복지부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육성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24,705	감축
보건복지부	중증의상전문진료체계구축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61,048	사업방식변경
보건복지부	고위험산모·신생아지원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10,680	감축
보건복지부	권역별심뇌혈관센터설치지원	민간경상보조	7,518	사업방식변경
보건복지부	신종감염병입원치료병상확충유지	지자체경상보조	2,044	정상추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종사자대체인력지원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5,690	사업방식변경
보건복지부	어린이집확충	민간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74,799	감축



소관부처	세부사업명	세목	20년 예산	판정결과
환경부	환경기초시설탄소중립프로그램	지자체자본보조	6,550	사업방식변경
환경부	환경보건기반강화협력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3,939	사업방식변경
환경부	환경오염감시제도운영	지자체경상보조	80	즉시폐지
환경부	노후상수도정비(지역지원)	지자체자본보조	458,013	사업방식변경
환경부	비점오염저감사업	지자체자본보조	76,654	감축
환경부	생태관광자원이용기반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2,000	사업방식변경
환경부	습지보전관리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6,897	사업방식변경
환경부	온실가스관리인프라구축	지자체자본보조 민간자본보조	6,113	사업방식변경
환경부	기후변화적응및국민실천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6,895	감축
환경부	노후상수도정비(제주)	지자체자본보조	9,942	감축
환경부	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9,250	감축
환경부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	지자체경상보조	10,861	사업방식변경
환경부	생태경관보전지역및특정도서관리	지자체자본보조	300	사업방식변경
환경부	위해우려매립시설오염확산방지및 안정화	지자체자본보조	1,131	단계적 폐지
환경부	친환경소비생활및저탄소생산기반 구축지원	지자체경상보조	6,067	감축
환경부	생물다양성보전및관리	민간경상보조	390	사업방식변경
환경부	자연보전단체	민간경상보조	532	감축
환경부	국토생태네트워크구축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11,110	사업방식변경
환경부	야생동식물보호및관리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14,114	사업방식변경
환경부	어린이통학차량LPG차전환지원	지자체자본보조	15,000	정상추진
환경부	친환경청정사업지원	지자체자본보조	24,181	사업방식변경
환경부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	지자체경상보조	869	사업방식변경
환경부	수질오염방지지설운영지원	지자체경상보조	753	사업방식변경



소관부처	세부사업명	세목	20년 예산	판정결과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	민간경상보조	2,111,640	사업방식변경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미적용자등능력개발지원	민간경상보조	786	감축
고용노동부	미래유망분야고졸인력양성	민간경상보조	840	통폐합
고용노동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민간경상보조	117,505	사업방식변경
고용노동부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	민간경상보조	5,110	정상추진
고용노동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지원	민간경상보조	6,751	정상추진
고용노동부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	민간경상보조	90,090	감축
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6,442	사업방식변경
여성가족부	성매매방지및피해자지원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15,245	사업방식변경
여성가족부	지역청소년활동정책진흥사업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3,501	단계적 폐지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성폭력재발방지사업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1,239	사업방식변경
여성가족부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62,494	사업방식변경
여성가족부	청소년참여지원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2,950	감축
여성가족부	가정폭력피해자지원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31,255	사업방식변경
여성가족부	건강가정맞다문화가족지원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84,825	사업방식변경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범죄예방교육및피해자 치료재활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5,568	사업방식변경
여성가족부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25,096	사업방식변경
여성가족부	청소년쉼터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23,600	사업방식변경
여성가족부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및자립지원	지자체경상보조	4,029	사업방식변경
여성가족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운영	민간경상보조	6,285	사업방식변경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6,602	사업방식변경



소관부처	세부사업명	세목	20년 예산	판정결과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6,190	감축
여성가족부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6,089	사업방식변경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지원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3,854	사업방식변경
여성가족부	청소년국제교류지원	민간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4,776	감축
국토교통부	PSO보상	민간경상보조	352,800	감축
국토교통부	해안및내륙권발전사업지원	지자체자본보조	7,425	감축
국토교통부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그린홈)	지자체자본보조	18,000	정상추진
국토교통부	교통사고예방지원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3,702	감축
국토교통부	환승센터구축지원	지자체자본보조	25,700	정상추진
국토교통부	대전산성-구례광역도로건설	지자체자본보조	3,829	즉시 폐지
국토교통부	도시철도노후시설개선지원	지자체자본보조	92,900	사업방식변경
국토교통부	광역BRT구축	지자체자본보조	5,615	정상추진
국토교통부	다가구매입임대출자	지자체자본보조	342,060	사업방식변경
해양수산부	수산업창업투자지원	지자체경상보조	4,500	사업방식변경
해양수산부	연안관리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1,400	사업방식변경
해양수산부	피해보전직불금	지자체경상보조	2,430	감축
해양수산부	내항여객선운임보조(지자체)	지자체경상보조	14,595	정상추진
해양수산부	산지유통시설지원	지자체자본보조	2,268	사업방식변경
해양수산부	폐업지원금	지자체경상보조	900	단계적 폐지
해양수산부	해상안전국제협력	민간경상보조	560	사업방식변경
해양수산부	해양보호구역관리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4,296	정상추진
해양수산부	갯벌생태계복원사업	지자체자본보조	4,913	정상추진



소관부처	세부사업명	세목	20년 예산	판정결과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계서식처기능개선복원사업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1,793	사업방식변경
해양수산부	어촌발전기반조성지원	민간경상보조	340	사업방식변경
해양수산부	세월호인양및추모사업지원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5,081	정상추진
해양수산부	친환경고효율선박확보지원	민간경상보조	15,408	단계적 폐지
해양수산부	청년어촌정착지원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1,474	사업방식변경
중소벤처기업부	기업인력애로센터활용취업지원	민간경상보조	3,670	사업방식변경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기반구축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80,544	사업방식변경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인프라지원	민간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민간자본보조	61,538	감축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인프라지원(세종)	민간경상보조	100	사업방식변경
국가보훈처	보훈단체운영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44,321	통폐합
국가보훈처	보훈단체선양활동등	민간경상보조	3,989	통폐합
국가보훈처	지방보훈회관건립	지자체자본보조	2,250	감축
국가보훈처	보훈병원재활센터확충	민간자본보조	18,832	사업방식변경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사회복지지원	민간경상보조	1,079	사업방식변경
국가보훈처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	민간경상보조	508	감축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등위로격려	민간경상보조	34	단계적 폐지
국가보훈처	재향군인회지원	민간경상보조	8,376	사업방식변경
국가보훈처	참전유공자지원	민간경상보조	471	감축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영양안전관리	민간경상보조	484	사업방식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및관리	지자체경상보조	639	정상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안전관리	지자체경상보조	60	정상추진



소관부처	세부사업명	세목	20년 예산	판정결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분야재난관리지원	민간경상보조	570	사업방식변경
방송통신위원회	안전한위치정보이용환경조성(정보화)	민간경상보조	143	사업방식변경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권익증진지원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1,306	감축
금융위원회	금융관련국제협력및금융중심지추진	민간경상보조	505	감축
소방청	119시민수상구조대운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304	정상추진
소방청	의용소방대및소방의날기념행사지원	민간경상보조	90	사업방식변경
문화재청	무형유산원운영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2,910	사업방식변경
농촌진흥청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보조)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11,281	사업방식변경
농촌진흥청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보조)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2,355	사업방식변경
농촌진흥청	스마트영농지원체계구축(보조)	지자체자본보조 민간자본보조	10,398	사업방식변경
산림청	산림공간정보기반조성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999	정상추진
산림청	산림휴양등산증진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1,225	감축
산림청	지진및해일대응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5,582	사업방식변경
특허청	특허기술의전략적사업화지원	민간경상보조	20,051	사업방식변경



제3장 보조사업 재평가 결과

1. 보조사업 재평가 개요

- ☐ 보조사업 연장평가 이후 소관부처가 평가의 최종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해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2020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지침>

제21조(재평가) 보조사업 연장평가의 최종결과에 대해 보조금관리위원회, 기획재정부장관, 사업담당자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해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는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 ☐ 연장평가 결과이행의 귀속연한이 3년인 점을 감안하여 '18년~'20년에 연장평가를 받은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이 중 평가 지적사항을 이행하거나 국회·감사원 지적, 정부정책의 중점추진 등 사정 변경이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신청 받아 재평가를 진행하도록 함.
- 재평가를 신청한 사업 중 사업성과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지적사항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총 3개 부처, 6개 사업에 대해 실시함.
- 재평가는 2020년 보조사업평가단의 검토를 거쳐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였음.

2. 보조사업 재평가 결과

- ☐ 재평가 실시 결과에 따라 '21년 예산안 편성 시, 기존 평가결과를 따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2개 부처, 4개 사업에 대해 평가결과를 조정함.
- ☐ 국토교통부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사업
 - (기존 평가결과, '18년 실시) 감축(10%)
 - 이용자 만족도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2011년 ~ 2015년의 성과지표 달성 수준도 다소 미흡하고, 2016년 실집행률은 70.9%로 매우 저조함.
 - 보조사업 지원 시, 지자체 부담 비율(현재 53.6%)을 확대하고 저상버스 도입지원의 경우, 운송업자의 자부담을 확대하는 등 재정조달 계획의 개편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재평가 결과) 감축 ⇒ 사업방식변경

- 제작사 파업, 지방비 미확보 등으로 인해 최근 몇 년간 실집행률이 저조하였으나, 집행 점검회의 등 집행 제고 노력을 통해 '19년 실집행률이 91.7%를 달성하는 등 실집행 부진이 해소되었으며, 장애인 이동 보장강화를 위해 제5차('18~'22) 장애인정책 종합 계획('18.3월)에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확대 대책이 포함되었고, 국회, 인권위원회 등에서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률 저조 지적, 대책마련 및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등 감축은 곤란하다고 판단됨
- 다만, 성과지표를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전반에 대한 것 대신 특별교통수단과 저상버스 관련 만족도 조사로 개편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운송업자의 자부담 확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토교통부 - 국토공간정보인력양성 사업

○ (기존 평가결과, '18년 실시) 감축, 사업방식변경

- 인력양성 구조를 특성화고-전문대-융복합-온라인교육으로 수직통합하고 있으며 연구용역 예산까지를 포함하여 보조하고 있는데, 연구용역예산은 일정기간 연구내용이 축적되고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므로 단계적으로 감축(19년: 0.8, 20년: 0.4, 21년: 0.0) 하고 필요한 경우 재정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할 필요가 있음.
- 보조금법 시행령에 의해 정해진 기준보조율은 없으며,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의 공공적 성격 등을 이유로 사업비의 100%를 보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내역사업의 특성에 따라 보조율을 차등화 하여 보조사업자, 교육기관, 지자체 등과의 매칭구조 구축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재평가 결과) 사업방식변경 ⇒ 일부 내용 수정

- 사업을 단순 위탁·관리중인 보조사업자 특성 상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은 적절하지 않으며, 교육기관 등에 부담을 부과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고 판단됨.
- 감축대상 연구용역 예산 규모 수정(단순 사실관계 오류 수정, 1.2억 → 0.8억)
- * 감축대상 연구용역 예산은 '19년 예산에서 전액 감액하여 이행을 완료하였음



□ 문화체육관광부 - 대한체육회 운영 지원

○ (기존 평가결과, '20년 실시) 감축(높은수준), 사업방식변경

- 재정지원의 규모가 비교적 큼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에 따른 성과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17년 보조사업 결과 지속적 재정자립 노력을 통해 5년 내에 인건비 및 기관 운영비의 자부담율을 50%까지 높일 것을 권고 받았으나 현재시점에서 달성하지 못함.
-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사업의 성과를 관리 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재정자립을 위하여 자체사업 발굴하여 운영 필요함.

○ (재평가 결과) 감축 ⇒ 삭제, 사업방식변경 ⇒ 일부 내용수정

- 대한체육회운영지원 사업은 법정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건비 등의 경직성경비 지원사업으로 예산 조정이 용이하지 않으며, 연장평가 시 자부담율 상향(50%) 의견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공동 마케팅 수익금 배분으로 자체수입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에 근거한 것으로 '21년 동 수익금 전액 소진이 예상되는 등 재정여건 감안 시 추가적인 자부담율 상향은 어렵다고 판단되어 감축의견 수정
- 다만, '19년까지 '고객만족도' 지표로 성과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목표 도전성이 낮아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20년부터 변경된 '기관사업 만족도' 설정 등을 포함,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중장기적으로 대한체육회의 재정자립을 위한 자체사업 발굴 노력 등은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 도핑방지활동지원 사업

○ (기존 평가결과, '20년 실시) 감축(일정수준), 사업방식변경

- 실질적 수혜자에 비하여 재정 지원규모가 과다하고, 2020년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증액 및 비용 산정근거가 타당하지 않음. 집행률을 100% 달성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규모를 재산정 할 필요가 있음
- 도핑방지 인지도 조사를 대표 성과지표로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로 도핑방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예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등 예방활동이 효과적으로 실행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재평가 결과) 감축 ⇒ 삭제, 사업방식변경⇒ 일부 내용 수정

- 사업의 집행률이 높은 수준이며(3년 평균 실행률은 95%), '20년 예산은 전문체육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되던 도핑방지활동 대상범위가 생활체육까지 확대됨에 따라 생활체육 도핑 실태조사 및 교육, 홍보 관련 사업비가 추가 반영되는 등 타당한 근거에 따라 증액된 점 등을 감안하여 감축 조치 삭제
- 도핑방지위원회가 공익적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나 법령 상 수익사업도 가능하므로 향후 이를 감안한 재정지원을 할 필요가 있으며, 실태조사 및 사전연구, 홍보 관련 사업의 향후 추진 성과에 따라 예산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표 3-1〉 보조사업 재평가 사업별 결과

소관	세부사업명	평가연도	평가결과	평가 시 지적사항	재평가 내용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	2018	<u>감축(10%)</u>	• 10% 감축 • 이용자 만족도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2011년 ~ 2015년의 성과 지표 달성수준도 다소 미흡하고, 2016년 실적행률은 70.9%로 매우 저조함. • 보조사업 지원 시, 지자체 부담 비율(현 53.6%)을 확대하고 저상버스 도입지원의 경우, 운송업자의 자부담을 확대하는 등 재정조달 계획의 개편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평가결과 조정〉 <u>사업방식변경</u>(감축 삭제, 사업방식변경 추가) • 실집행 부진을 해소하고, 장애인 이동 보장강화를 위한 저상버스·특별교통 수단 확대 요구 등을 감안하여 감축 삭제 • 성과지표를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전반에 대한 것 대신 특별교통수단과 저상버스 관련 만족도 조사로 개편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운송업자의 자부담 확대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부	국토공간 정보인력 양성	2018	<u>감축(1.2억원)</u> <u>사업방식변경</u>	• 연구용역예산은 일정기간 연구내용이 축적되고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므로 단계적으로 감축(19년: 0.8, 20년: 0.4, 21년: 0.0)하고 필요한 경우 재정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보조율이 100%인데 보조사업자의 재정여력이 갖춰질 경우 이를 내역사업별로 차별화 하고 매칭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평가결과 조정〉 <u>감축</u>(0.8억원), <u>사업방식변경</u>(내용 조정) • 감축대상 연구용역 예산 규모 조정(1.2억원 → 0.8억원) * 감축대상 연구용역 예산은 '19년 예산부터 전액 감액하여 이행 완료함 • 사업을 단순 위탁·관리 중인 보조사업자 특성 상 자부담은 적절하지 않으며, 교육기관 등에 부담을 부과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고 판단됨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 자부담 내용 삭제



소관	세부사업명	평가연도	평가결과	평가 시 지적사항	재평가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운영지원	2020	<u>감축(높은수준)</u> <u>사업방식변경</u>	- 재정지원의 규모가 비교적 큼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에 따른 성과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음. 또한 17년 보조사업 결과 지속적 재정자립 노력을 통해 5년 내에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의 자부담을 50%까지 높일 것을 권고 받았으나 현재시점에서 달성하지 못함. -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사업의 성과를 관리 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재정자립을 위하여 자체사업 발굴하여 운영 필요함.	<평가결과 조정> 사업방식변경(감축 삭제, 사업방식변경 조정) - 대한체육회 일시적 자체수입 증가분 소진 등 재정여건변동을 감안하여 감축 삭제 '19년까지 '고객만족도' 지표로 성과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목표 도전성이 낮아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20년부터 변경된 '기관사업 만족도' 설정 등을 포함,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으로 대한체육회의 재정자립을 위한 자체사업 발굴 노력은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문화체육관광부	도평방지 활동지원	2020	<u>감축(일정수준)</u> <u>사업방식변경</u>	- 실질적 수혜자에 비해 재정 지원 규모가 과다하며 증액의 내용이 실태조사 및 사전연구, 홍보 등의 내용이므로 일정수준 감축 가능함 2020년 예산이 증가하였으나 비용 산정 근거의 타당성이 미흡함. 집행률을 100% 달성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규모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 도평방지 예방과 관련한 새로운 성과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도평방지위원회가 공익적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나 법령상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향후 이를 감안하여 재정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평가결과 조정> 사업방식변경(감축 삭제, 사업방식변경 조정) 3년 평균 실행률은 95%로 높은 수준이며, 도평방지 활동 범위가 생활체육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20년 예산이 증액 산정된 점 등을 감안 감축 삭제 - 본 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나 법령상 수익사업도 가능하므로 향후 이를 감안한 재정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실태조사 및 사전연구, 홍보 관련 사업은 추진 성과에 따라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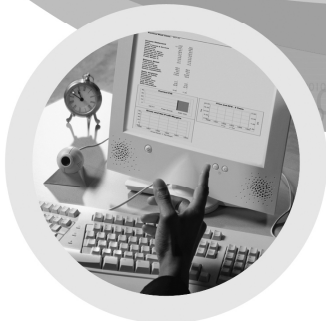


소관	세부사업명	평가연도	평가결과	평가 시 지적사항	제평가 내용
여성가족부	미래여성 인재육성	2019	<u>단계적폐지</u> (2021년)	- 정부차원에서 추진할 필요성이 크지 않으며,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한 사업임. - 단 지역의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21년 말까지 단계적 폐지로 연장함. '20년 '21년은 교육비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부터 예산을 감축함 - 여성 아카데미 사업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기보다는 개인이 다양한 교육기관 등에 설치되어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개인의 부담에 의해 정부 지원없이도 추진될 수 있는 사업임	<원안 유지> 단계적폐지(2021년) - 세부사업 목적 ①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 확대, ② 여성인재 역량강화 사업운영, ③ 여성 인재풀 확충과 기업에서 필요한 여성인원 육성과의 관계성을 검토하면, 직접적이지 않음. -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요구되는 대기업 여성인원 육성은 대기업 스스로가 자체비용을 통해 선발·육성하도록 하는 메카니즘을 구축하여 충족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대기업 이사회 의사결정 역량강화(여성인원의 보강을 통한 다양성 증진 등)를 위해 세금으로 총당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은 형평성차원에서 적절하지 않음.
여성가족부	청소년 참여지원	2020	<u>감축(일정수준)</u> <u>사업방식변경</u>	- 청소년 참여지원 사업에서 청소년의 직접 참여를 도모하는 사업은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며 유사중복 사업이 없으며 청소년 역량 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함. 청소년 참여 촉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단순한 행사성 사업이 내역사업으로 포함되어 사업의 합리성과 효과성을 감소시킴. - 성년의 날 기념행사, 청소년계 신년 인사회 등 청소년 참여 지원에 기여도가 낮은 일회성 행사사업 예산은 2022년부터 감축하여 사업 구성 정비함. - 법정 단체이기는 하지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운영비 사용을 목적으로 한 수 입사업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바, 한 국청소년단체협의회 경비지원 비을 합리 적 조정 필요.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사업 에 대해서는 청소년 역량 강화 목표에 조응 하는 성과지표 설정과 관리 필요.	<원안유지> 감축(일정수준), 사업방식변경 - 부처가 제시한 평가내용의 조치결과: 20년 평가에 대한 현재 조치로 이러한 조치결과에 근거하여 20년 평가 결과를 변경하는 것은 프로세스 상 맞지 않음.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경비 지원비용 조정은 코로나19 등에 따른 사정변경 사항이 있어 당장의 감축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평가결과에서도 21~23년 내 일정수준 감축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평가결과를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됨.

제3부 기관별 · 사업별 평가의견서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소방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기관별 · 사업별 평가의견서

기획재정부

소비자물가관리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
아동복지시설아동치료,재활지원사업
요보호아동그룹홈운영지원
입양아동가족지원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기획재정부
사 업 명	소비자물가관리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69.5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4.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1.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18.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5.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 감축, 사업방식변경 · 동 세부사업은 2021년 ~ 23년 안에 일정 수준의 감축이 필요함. · 본 사업은 물가조사 활동과 관련하여 소비자단체협의회와 소속 소비자단체에게 경 상비용과 물가조사사업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물가조사 활동을 소 비자단체에 한정하여 보조사업으로 진행해야할 법적, 실제적인 근거가 미비함. · 일상적인 물가조사활동이나, 물가 관련 연구에 소비자단체 이외 다른 공공 및 민 간 연구기관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상시적으로 필요한 물가조사 업무는 온라인 구매 증가 등 최근의 소비현상을 반영하 여 방문조사 중심 물가조사 방식에 온라인 물가조사를 추가하는 등 효율화 방안을 모 색할 필요가 있음.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본 보조사업은 특별물가조사, 물가감시센터, 및 이에 수반하는 행정성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기초조사보고서에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 1조, 소비자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32조에 근거한다고 보고하고 있음.
- 그러나 해당 법령은 기획재정부로 하여금 특별물가조사나 물가감시센터를 통하여 물가안정을 달성하라는 명시가 없고, 이들 기능이 필요하다라도 소비자단체협의회에 위탁하여 집행할 수 있다는 구체성이 결여됨.
- 또한 본 보조사업은 법령상 강제성은 없음.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조 >

이 법은 물가를 안정시킴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소비자기본법 제28조 >

1항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2. 물품등의 가격, 품질, 안정성, 환경성에 관한 시험, 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관한 조사, 분석.

< 소비자기본법 제32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2020년 1월 제출된 기초조사보고서에서는 소비자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서민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동 보조사업이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의 세부내역은 특별물가조사를 위한 용역비 (연 15과제, 과제당 3천만원 수준)와 물가감시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후자의 비중이 50%를 약간 상회함.



- 후자의 활동은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활동과 관련되어는 있으나, 동 사업의 결과물처럼 개별 제품별로 소비자 가격이 시계열로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복의 우려는 없음.
- 통계청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작성하기 위하여 통계조사원들이 표본으로 선정된 상점을 방문하고 가격정보를 조사하여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음 (2020년 소비자물가조사 지침서, p55).
- 이들 결과는 소비자물가지수의 형태로 일반에게 공개되어 있고, 품목(예, 라면)에 대해서는 연도, 월, 시도 별로 실제 가격이 공개되어 있음.
- 그러나, 통계청이 수집한 원자료는 소비자 물가지수 작성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만큼, 개별제품의 가격을 소비자 단체 및 일반 대중에 공개하는 것은 통계법 30조 2항에 저촉될 우려가 있음.

< 통계법 제 30조 >

-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통계작성기관에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른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라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때에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의 표본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때에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식별되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
 2.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후 그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예비적으로 실시하는 조사
 - ③ 제2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자료는 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통계자료의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만, 물가조사나 조사연구 활동은 소비자단체협의회 이외의 다른 기관에서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단체 이외 다른 공공 및 민간 연구기관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사업은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활동과 조사대상에 있어 일부 중복되는 점은 있으나, 사업의 목적과 조사방식, 산출물의 형태 및 일반 대중에의 공개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어 중복의 우려가 크지 않음.
- 상시물가조사의 경우 통계청의 소비자 물가조사 원 자료는 통계법상 외부공유가 불가능한 사항임.
- 다만, 최근 활용되고 있는 조사방법(예, 온라인 자료 수집)을 통하여 별도의 예산절감과 행정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특별물가조사의 경우, 조사의 사유 및 조건, 조사 목적을 미리 설정하여 보조사업의 투명성(transparency)과 책임성(accountability)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동 보조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물가감시센터 근무자 및 이를 운영하는 소비자단체협회, 특별물가조사를 수행하는 10여개의 단체에 불과하여 수혜자의 범위가 협소함.
- 기초조사보고서에서는 간접 수혜자를 전 국민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물가 정보 수집이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므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입증하기는 어려움.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사업의 사업비중 물가감시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 경상비의 지원으로 50% 이상을 차지함.
- 최근 3년간 예산 집행률은 물가감시센터 지원의 경우 90%를 상회하고 있으나, 특별물가조사의 실집행률은 2017년 99%에서, 2018년 97%, 2019년 88%로 낮아지고 있음.
- 특별물가조사 실집행률의 시계열 추세를 볼 때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보임.
- 중장기 재정추계는 2020년 수준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작성되어있음.
- 2021년부터 2026년까지 특별물가조사는 445백만원, 물가감시센터는 465-470백만원으로 계상됨.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직접적인 관련성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기획재정부 소관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적용하여 사업자 선정 등에 이용하고 있음.
- 단, 해당 지침은 일반적인 규정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특별물가조사를 소비자 단체만을 사업자로 특정하지 않고 있으나, 매년 특별물가조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사업 집행 규정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적용하고 있음.
-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집행점검 및 정보공시를 시행중임.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적용하고 있음.
- 연간 사업규모 10억원 이하의 소규모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자 1개 기관, 보조금 수령자 10개 내외의 사업으로 현황 파악이 용이하다고 판단됨.
- 사업비 내역이 연구과제비 (건당 약 3천만원)와 센터 인건비 등으로 분리되어 있어 부정수급의 가능성 자체가 크지 않음.
- 현재까지 부정수급 적발 사례도 전무함.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특기 사항은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보조사업은 특별물가조사, 물가감시센터, 및 이에 수반하는 행정성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조, 소비자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32조에 근거하여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특별물가조사사업이나 물가감시센터 운영을 특정하지는 않고 있어 법률상 근거가 강하다고 보기 어려움.
- 거시정책 수행을 위하여 특별한 경우 물가조사가 필요할 수 있어 그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됨.
- 물가 관련 연구에 소비자단체 이외 다른 공공 및 민간 연구기관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3-2 정책 제언

- 상시적으로 필요한 물가조사 기능은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조사와 협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별도의 예산절감과 행정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는 있음.
- 또한, 소매업의 온라인 구매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온라인 가격을 알고리즘을 통해 스크롤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자동화방법을 통하여 가격 정보를 Database(DB)화 하는 사업체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존재하여, 지금까지의 방문 조사에 의존하는 물가조사 사업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특정 회사(아마존)의 상품가격을 시계열로 모니터링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 존재함.
- * <https://camelcamelcamel.com>
- 비정기적으로 특수한 품목이나 지역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경우, 보조사업자를 소비자단체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 및 민간 연구기관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기획재정부
사 업 명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
보조유형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69.2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2.2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5.2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8.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7.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0.0
1-5.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7.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감축 · 동 세부사업은 2021년 ~ 23년 안에 높은 수준의 감축이 필요함 ·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 규모 및 관리의 적정성 측면에서 많은 개선이 요구됨 · 정확한 사업수혜자 파악, 합리적인 재정주계분석이 요구되며 '18년 이후 실집행률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낮은 편으로('15년 64.3% → '16년 45.4% → '17년 46.5% → '18년 52.1% → '19년 66.3%) 향후 보조금 규모는 축소될 수밖에 없음 · 현재 설정된 성과지표('환경개선 만족도')는 객관성이 낮으므로 보조지표로 활용하되 추가 주요지표를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만성적인 집행을 저조를 해결하고 지역별 집행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사업관리 노력이 요구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59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비용지원 규정 역시 존재하여 법적근거가 명확하다고 판단됨
-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이라는 1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법적 근거의 내용이 일치함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59조 >

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2. 보호대상아동의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 보호에 따른 비용
3. 아동복지사업의 지도, 감독, 계몽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4. 삭제
- 4의2. 제26조에 따른 신고의무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 4의3. 제29조의7제2항 각 호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5.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에 필요한 비용
6. 제38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비용
7.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8. 제58조에 따른 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에 필요한 비용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 >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개수·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국가적 책무성이 분명하며,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지자체별 지방재정여건, 정책우선순위 등으로 인한 지역적 편차를 완화하고 국가적으로 균일한 최소 적정수준의 서비스가 확보되기에 사업의 공공성 역시 크다고 보임
- 연계된 국정과제는 없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의 목적은 ‘노후한 아동복지시설의 개축, 개보수 및 장비보강을 통해 요보호아동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지원’이라고 제시되어 있으며, 내역사업 역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1개로 구성되어 있음
 - 내역사업의 내용을 보면 ① 노후 아동복지시설의 시설환경 개선 및 ② 시설의 다기능화로의 전환으로 구분됨
 - 시설의 다기능화가 사업 목적에 있어 시설 아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양육시설의 기능을 전문화·다양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두 사업은 일면 상이해 보임.
 - 그러나 실제 사업 내용을 보면 시설의 다기능화 역시 다기능화 지원을 위한 시설 기능 추가(예: 시설 안에 도서실, 놀이치료실 등을 설치하여 다기능 권장)라는 점에서 두 사업이 분리될 필요성은 낮다고 보임
- 현재 작성되는 성과지표는 ① 환경개선 만족도와 ② 기능전환 및 다기능화 비율로 사업의 주요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됨.
 - 그러나 ‘환경개선 만족도(점)’는 기능보강이 완료된 시설의 아동을 대상으로 측정되기에 주관성이 강하고, 결과 역시 ‘16년 77.2점, ’17년 88.9점, ’18년 86.6점 등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남. 본 사업의 목적이 시설환경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해당 지표는 사업의 질을 측정하는 중요 지표임.
 - 이에 해당 지표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적정 수준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음. 다만, 상기 제시한 한계들로 주요지표보다는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활용가능한 주요 지표로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확충률(% , 기능보강 시군구 수/목표 기능보강 시군구 수*100)’을 제안함
 - 유사 사업들의 경우 확충률 지표를 활용함에 있어 전체 시군구를 기준으로 잡고 있으나, 본 사업의 경우 노후 시설에 대한 수요가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므로 목표 기능보강 시군구가 기준이 될 수 있음
 - 또한 기능보강이 편성된 예산 범위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고려하여, 목표 기능보강 시군구는 예산 범위 안에서 아래의 사업추진실적을 참고하여 설정될 수도 있고, 전년도 상반기 수요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도 있음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6	증개축(6개소), 개보수(51개소), 장비보강(15개소)
2017	증개축(6개소), 개보수(35개소), 장비보강(5개소)
2018	신·증·개축(10개소), 개보수(41개소), 장비보강(25개소)
2019	신·증·개축(8개소), 개보수(32개소), 장비보강(6개소), 공기청정기 1800여대

- 이러한 성과지표 설정을 통해 기능보강에 대한 목표가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된다면 해당 지표는 집행을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아동인구의 감소로 보호아동의 수 역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아동학대 및 위기가정 증가 등으로 새로운 아동문제가 발생,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예상되므로 보조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 본 사업의 1차 수혜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요보호아동이며, 2차 수혜자는 시설 종사자로 제시되어 있음. 그 외 관련 사회문제의 예방 측면에서 전체 국민 역시 간접 수혜자가 될 수 있지만 관련성은 다소 미흡함
-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은 없음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금법 시행령」 상의 '91. 사회복지보장시설 및 장비지원'의 기준보조율(50%)을 적용함
- 본 사업은 지속적으로 예산이 삭감되고 있음
 - * 7,630백만원(2016년) → 6,867백만원(2017년) → 6,524백만원(2018년) → 6,198백만원(2019년) → 5,888백만원(2020년)
- 그럼에도 본 사업의 실집행률은 '17년 46.5%, '18년 52.1%, '19년 53.0%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실집행률과 관련해서는 여러 타 평가 및 결산 심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음
- 본 사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사업 규모 및 관리의 측면에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함
 - 사업수혜자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관리가 필요함



<연도별 사업수혜자 현황>

(단위: 명)

구분	직접 수혜자				간접 수혜자			
	17년	18년	19년	20년	17년	18년	19년	20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15,600	15,600	15,600	15,600	7,800	7,800	7,800	7,800

- 저조한 실집행률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관리 노력이 요구됨. 부처에서 제시한 사유 및 개선 노력(조기집행 독려 공문 시행, 현장 방문을 통한 독려 등)에 대해 일정 부분 타당성이 인정되나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실집행률이 낮게 나타나 추가 개선 노력이 요구됨
- 사업효과에 대한 정량평가에 근거하여 사업규모를 조정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추계를 해 볼 필요가 있음. 현재와 같이 단순히 사업환경변화(사업 예산의 지속적 감소, 보호 아동수의 지속적 감소, 보호시설 수의 증가, 시설 형태의 소규모화)에 근거한 재정추계는 합리성이 부족함. 시설 노후화 비율 등에 대한 정확한 산출이 요구됨

<중장기 재정추계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5,888	5,888	5,888	5,888	5,888	5,888	5,888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가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아동에게 쾌적한 환경을 지원해주는 것은 주거생활 보장 등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사회적가치에 부합하는 사업임
- 사회적가치 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행복추구권, 평등권, 알권리, 직업의 자유, 안정적 주거생활 보장 등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 보장
- 사회적가치 ③.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인간다운 생활의 기본조건으로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를 국가에 요구하고 국가는 이를 제공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침 및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집행의 적정성을 위한 규정이 자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사후관리 절차 등에 관해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되며 이를 준수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과 관련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을 바탕으로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최근 3년 부정수급 적발 이력은 없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국가적 지원의 타당성과 필요성은 분명하나 사업 규모 및 관리의 측면에서 많은 개선이 요구됨
 - 사업 예산의 실행행률이 지속적으로 저조하여 향후 보조금 규모는 축소될 수밖에 없음
 - 사업수혜자 파악, 사업 부진 사유 분석, 합리적인 재정추계분석에 관한 철저한 사업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3-2 정책 제언

- 현재 설정된 성과지표(‘환경개선 만족도’)는 객관성이 낮으므로 보조지표로 활용하되 추가 주요지표를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사업의 특성 상 만성적인 집행 지연이 나타나 보다 적극적인 사업 관리 노력이 요구됨. 추가 제출자료에 따르면, 수요사전과약, 간담회를 통해 조기집행 관련사항 전달, 시설 현장 방문을 통한 독려 등의 개선 노력을 볼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단기적인 개선 방안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
 - 지자체별 실행행률의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 서울의 경우 실행행률이 75.0%인 반면 부산은 1.3%, 대전은 7.7%에 불과함(‘17년 결산 심사 내용 참조). 본 사업의 목적이 지역별 편차를 완화하고 국가적으로 최소 수준의 서비스를 확보한다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별 집행률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사업관리 노력이 요구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기획재정부
사 업 명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 재활지원사업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1.2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3.6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4.6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1.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7.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10.0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7.6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1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변경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수행되기 어렵고 지자체가 수행할 경우 지자체별 편차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 지원이 필요함 ·사업 관리의 측면에서 절차를 준수하며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됨 ·다만 합리적인 재정추계를 위한 노력과 시설종사자 교육이 사업 목적의 범위 안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아동복지법」 제3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하고 있음
 - 보조사업 수행에 관한 별도규정은 없으며,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사업’ 1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법적 근거의 내용이 일치함

< 아동복지법 제35조 >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5조 >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예방접종, 건강검진 및 건강교육 서비스
2.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정신건강 관련 검진, 상담 및 교육 서비스
3.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급식지원, 식습관 개선, 영양 교육·관리 서비스
4.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비만 방지, 기초체력 측정, 신체활동 증진 및 체험활동 지원 서비스

- 본 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의 보호 아동 중 문제행동이나 정서불안을 보이는 아동에 대해 치료 및 재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수행되기 어렵고 지자체가 수행할 경우 지자체별 편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임
 - 연계된 국정과제는 없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사업의 주요 내용은 사전검사 및 사후검사, 치료 프로그램 운영, 시설종사자 교육 등으로 구분되는 반면 내역사업은 1개로 구성됨. 본 사업의 소규모 예산 규모를 고려할 때 타당한 구성이라 판단됨



- 다만 시설종사자 교육의 경우 사업 목적과의 연계성이 낮아 보이나, 교육 내용을 토대로 볼 때 종사자 교육 역시 아동의 치료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교육내용: 아동치료에 대한 인지,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사례관리 등) 종사자 보수교육과는 그 대상 및 내용에 있어 차이가 분명하여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 성과지표는 ‘시설아동 문제행동 치료율(%)’ 및 ‘아동과 원가족의 관계 개선도(점)’로 설정되어 있으며, 본 사업의 목적이 대상 아동의 치료재활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됨
- 성과지표는 대체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나 연도별 달성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며, 사업의 특성상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에 한계가 있음은 인정되나 실적치 대비 목표치를 좀 더 도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구분	성과지표 단위	구분	17년	18년	19년	측정 산식(측정 방법)
시설아동 문제행동치료율 (단위: %)	단위사업	목표	28.6	36.5	37	k-CBCL 정상범위 아동수/사업참여자수*100
		실적	36.1	33.9	44.13	
		달성도	126.2	92.9	119	
아동과 원가족의 관계 개선도 (단위: 점)	단위사업	목표	20	27	28	프로그램 적용 전후 효과성 평가 척도를 통한 점수 비교
		실적	26	28	37.3	
		달성도	130	103.7	148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을 통해 사업대상자인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이 직접적으로 사업의 수혜를 받게 되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역시 수혜자에 포함됨
- 부처에서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간접 수혜자로 제시하고 있으나 종사자를 위한 별도의 교육이 운영되는 바, 종사자 역시 직접 수혜자로 볼 수 있음
- 수혜자의 범위는 광범위하지는 않으나 아동복지시설의 지역적 범위가 광범위하고 평균적으로 아동복지시설 생활 아동의 40% 정도가 우울, 불안, 정서장애 등의 정서적 문제를 보이며, 28%는 심각한 수준의 정서적 문제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본 사업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단위: 명)

직접수혜자				간접수혜자			
17년	18년	19년	20년	17년	18년	19년	20년
600	725	895	1,200	633	821	950	1,000



- 주요 대상이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및 종사자 등으로 한정되는 바,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은 없음
- 사업 폐지 시 직접적인 재정 손실은 없으나,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적 비용 및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금법 시행령」 상의 기준보조율 100%를 적용하고 있으며, '19년 총 예산 1,218백만원 중 행정비용은 62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1%에 해당함
- 본 사업의 예산은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지난 3년간 실행률 100%를 보이고 있음
- 중장기 재정추계에 따르면 '21년 예산 규모가 두 배 이상으로 확대 추계되고 있으나('20년 1,581백만원 → '21년 3,408백만원) 시설의 보호아동 수가 감소 추세에 있음('14년 17,200명 → '17년 15,600명)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추계가 이루어졌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전체적으로 재정추계액을 개략적으로 추정하고 있어 중장기 재정추계의 타당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아동의 건강한 생활 및 성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이라는 사회적가치에 부합하는 사업임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제5조), 보조사업자 공모(제9조), 보조금 교부조건(제12조) 등 사업자 선정 및 교부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 사업 시행 이후('12년) 계속해서 동일 기관이 선정되고 있으나 절차의 적정성은 인정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별도의 규정 없이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집행점검(제26조), 보조사업 사후관리(제22조, 제23조, 제32조), 보조금 정산 및 반환(제19조) 등 집행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회계연도마다 외부감사를 시행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부정수급 관련 적발 이력은 없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아동복지시설의 보호 아동 중 문제행동이나 정서불안을 보이는 아동에 대해 치료 및 재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에서 수행되기 어렵고 지자체별 적정 수준의 지원 제공을 위해 정부 보조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3-2 정책 제언

- 본 사업은 사업 관리의 측면에서 절차를 준수하며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됨. 다만, 합리적인 재정추계를 위한 노력과 시설종사자 교육이 사업 목적의 범위 안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기획재정부
사 업 명	요보호아동그룹홈운영지원
보조유형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9.8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2.8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10.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4.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1.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5.8
1-5.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7.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사업방식변경 · 사업목적의 타당성 및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사업 운영이 아동 중심으로 변경·체계화될 필요가 있음 · ‘요보호그룹홈운영’ 사업은 기존 종사자 처우 중심의 논의에서 발전하여 사업성과 중심으로 논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및운영’ 사업은 효과성 제고를 위해 타 사업과의 연계를 고려해 볼 수 있음 · ‘아동학대피해자보호및지원’ 사업과 연계되어 운영된다면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응급조치(‘아동학대피해자보호및지원’) → 피해아동보호 및 치료(‘아동학대피해자보호및지원’,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및운영’) → 사후관리(‘아동학대피해자보호및지원’)의 과정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사후관리가 기대됨. 다만, 두 사업의 예산 편성 구조 등 현실적인 연계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업 간 연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음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아동그룹홈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 해당되며, 동법 제59조제1호에 보조금 지급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음
- 본 사업의 2개의 내역사업 역시 동법에 근거함
 - * 요보호아동그룹홈운영지원 사업: 동법 제59조제1호, 제50조
 - *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및운영 사업: 동법 제59조제1호, 제22조, 제53조의2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59조, 제50조, 제22조, 제53조 >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④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장원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2.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3.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4.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5.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6.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④ 보장원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8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

- 국가는 아동복지의 최소 수준을 보장해 줄 책무가 있으며 이는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어야 함. 민간부담으로 추진할 경우 이러한 책무성과 지속성이 보장되기 어려우며, 지자체부담으로만 추진할 경우 지자체별로 지원규모 등이 상이하여 복지 수준의 질적 저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지역별 형평을 고려한 국가 지원이 요구되는 사업임
- 국정과제 '48: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의 세부과제(48-5: 아동학대근절 및 보호가 필요한 아동지원 강화)'에 해당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에 목적이 있음. ① 요보호아동그룹홈운영(지자체경상보조) 과 ②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및운영(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으로 구성되어 있고, 두 내역사업 모두 사업의 목적 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요보호아동그룹홈운영 사업은 부모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을 가정과 유사한 환경인 그룹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를 보조하는 사업임.
- '20년 예산 16,860백만원 중 시설 운영비(제세공과금, 관리비 등)는 761백만원(4.5%), 인건비는 16,099백만원(95.5%)로 인건비(시설장1인, 보육사2인)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일상적인 예산 집행 중심임



-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및운영 사업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보호자로부터 분리·보호하여 학대피해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시설 운영비와 시설 종사자 인건비, 사업비, 신규설치비로 구성됨.
- 요보호아동그룹홈운영과 생활 형태는 동일하나 상담 및 치료 지원을 위해 심리치료전문 인력이 1인 배치되어야 함
- 성과지표는 공동생활가정의 보호아동 비율(%), 쉼터아동 심리치료 효과성(%), 학대피해아동지원실적(건)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비교적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나 좀 더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이 요구됨
- 사업목적 및 예산배분에 비추어볼 때 사업 내용의 중점은 요보호아동그룹홈운영에 있는 반면 성과지표는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및운영에 집중되어 있음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의 내역사업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및운영’은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피해자보호및지원’ 사업(세부사업)과 유사해 보임
- 두 사업 모두 학대피해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한다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지원대상이 유사하고 사업 내용에 있어 보호의 기능이 강함
- 그러나 ‘아동학대피해자보호및지원’ 사업은 아동학대예방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대상자에 피해자 가족이 포함되는 반면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및운영’ 사업은 피해아동을 보호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한다는 점,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및운영’의 사업집행절차가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쉼터로 계층화되어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복성은 낮다고 판단됨

부처	사업명	회계	대상	관련시설	사업내용	보조사업
보건 복지부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및지원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	만18세미만 학대피해 아동 및 피해자 가족	지역아동 보호전문 기관	1) 지역아동보호전문 기관설치및운영 2) 국가아동학대정보 시스템운영	O
보건 복지부	요보호아동 그룹홈운영 지원	복권기금	18세 미만의 학대피해 아동	공동생활 가정 학대피해 아동쉼터	1) 공동생활시설 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인 건비 지원 2)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지원	O



○ 사업의 수혜자 범위가 비교적 광범위함

- 직접 수혜자는 전국의 보호대상아동이며, 전체 아동수가 증가하지는 않지만 아동학대로 인해 분리, 보호되는 피해아동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피해아동 보호 현황>

(단위 : 건, %)

연도	계	초기 보호조치			최종 조치결과			
		원가정 보호	분리 보호	사망	원가정 보호	분리 보호	분리후 가정복귀	사망
2011	6,058	4,451	1,606	1	3,956	1,676	413	13
2012	6,403	4,542	1,856	5	4,079	1,937	377	10(8명)
2013	6,796	4,949	1,839	8	4,376	1,944	454	22(17명)
2014	10,027	7,362	2,649	16(13명)	6,666	2,610	734	17(14명)
2015	11,715	8,588	3,110	17(15명)	7,760	2,772	1,164	19(16명)

- 간접 수혜자는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임. 부처에서는 직접 수혜자를 시설 종사자로, 간접 수혜자를 보호대상아동으로 보고 아래와 같이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나 사업의 목적에 비추어볼 때 본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보호대상아동임

<수혜자 현황>

(단위: 명)

구분	직접 수혜자				간접 수혜자			
	17년	18년	19년	20년	17년	18년	19년	20년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	448개소	466개소	482개소	491개소	2,636명	2,811명	2,872명	2,917명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	63개소	68개소	73개소	77개소	228명	325명	365명	385명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금법 시행령」 상의 '121. 학대아동보호쉼터 설치 및 운영'의 기준보조율(40%)을 적용함
 - 최근 실행행률을 보면, 경상보조의 집행률은 높게 나타나나 자본보조의 집행률은 '17년 72.6%, '18년 83.5%로 낮게 나타남.
 - 그 사유에 대해서는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신규설치 지연으로 설명되어 있으나, 현재 쉼터의 공급부족이 지적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타당한 사유라 판단되지 않음
- 본 사업은 예산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 규모 확대는 주로 종사자의 인건비 증가에 따른 결과이며, 이는 본 사업이 2011년~2018년까지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선정, 그룹홈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주요 문제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그룹홈 종사자의 인건비는 '11년 18,517천원 → '12년 18,517천원 → '13년 19,073천원 → '14년 19,607천원 → '15년 20,195천원 → '16년 21,919천원 → '17년 22,554천원 → '19년 26,189천원 → '20년 27,577천원으로 증가해 왔음
- 종사자의 처우가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 동안의 사업내용 및 예산변화를 볼 때, 본 사업은 과도하게 종사자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음
- 종사자의 처우는 일자리 측면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사자의 처우에 따라 아동이 받는 복지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임.
- 그러나 현재 제출된 자료로는 처우 개선에 따라 복지서비스의 질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그 성과를 확인하기는 어려움

○ 대규모 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중장기 재정추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 속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은 가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아동에게 쾌적한 환경을 지원해주는 것은 주거생활 보장 등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사회적가치에 부합하는 사업임
- 사회적가치 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행복추구권, 평등권, 알권리, 직업의 자유, 안정적 주거생활 보장 등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 보장
- 사회적가치 ③.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인간다운 생활의 기본조건으로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를 국가에 요구하고 국가는 이를 제공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교부절차를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침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 및 정산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과 관련한 지침은 제시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모니터링 기준은 없으며, 위원회도 운영되지 않고 있음. 후원금 등 부정수급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가 예상되는 바, 부정수급 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최근 3년 부정수급 적발 이력은 없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부처에서 제시한 자체 사업관리 노력은 보조금 사업에서 기대되는 당연한 관리방식이므로 평가반영은 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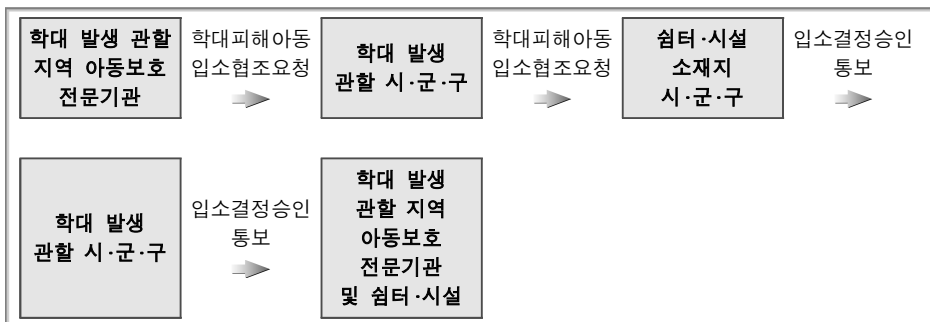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국가의 책무성이 요구되는 사업임. 따라서 사업목적의 타당성 및 사업의 필요성이 분명하고 법적 근거가 명확함
- 다만,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사업 운영이 아동 중심으로 변경·체계화될 필요가 있음

3-2 정책 제언

- ‘요보호그룹홈운영’ 사업은 예산규모가 종사자 인건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나 그에 따라 복지서비스의 질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가시적인 성과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
 - 기존 종사자 처우 중심의 논의에서 발전하여 사업성과 중심으로 논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및운영’ 사업은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체계의 변경이 요구됨
 - 피해아동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를 위해 본 사업의 내역사업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및운영’과 다른 세부사업 ‘아동학대피해자보호및지원’은 연계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음
 - 현재 학대로 인해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은 학대가 발생한 관할 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관할 시·군·구로 피해아동의 입소를 요청하고 다시 해당 시·군·구는 쉼터시설이 있는 시·군·구에 입소 요청을 하고, 입소 결정이 이루어지면 학대가 발생한 관할 시·군·구에 이를 통보하여 관할 시·군·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 두 사업이 연계된다면 현재 분리되어 운영되던 일련의 과정들이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응급조치(‘아동학대피해자보호및지원’) → 피해아동보호 및 치료(‘아동학대피해자보호및지원’,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및운영’) → 사후관리(‘아동학대피해자보호및지원’)까지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됨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사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단, 두 사업의 예산 편성 구조상 단기간에 사업 간 연계가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기획재정부
사 업 명	입양아동가족지원
보조유형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69.2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2.2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5.2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8.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4.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4.0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7.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감축(내역사업 입양숙려기간모자지원) · 동 세부사업은 2021년 ~ 23년 안에 일정 수준의 감축이 필요함 · 지속적으로 입양아동 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지원연령 확대 논의도 함께 진행되고 있어 사전에 예산 감축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다만, 내역사업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의 경우 실집행률이 매우 저조하여 해당 내역사업에 대한 예산 감축이 요구됨 · 입양숙려기간모자지원 실집행률: '17년 40.6%, '18년 38.5% · 단, 해당 내역사업은 요보호아동의 발생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지원 요청 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기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감축 규모가 결정될 필요가 있음. 또한 사업의 중요성 측면에서 해당 내역사업의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추가 설정이 요구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입양특례법」 제32조 및 제35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음
- 각각의 내역사업 역시 동법에 근거함
- * 입양아동 양육수당(제35조),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제35조), 입양비용(제32조), 입양숙려기간모자지원(제13조)

< 입양특례법 제32조, 제35조, 제13조 >

제32조(비용의 수납 및 보조)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양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으로부터 입양 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친이 될 사람에게 제1항의 입양 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5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운영비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수급품 외에 가정위탁보호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의 지급과 제2항에 따른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가정위탁보호비용의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입양동의의 요건 등)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 입양동의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입양기관은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입양동의 전에 친생부모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입양의 법률적 효력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며, 상담내용 등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입양기관은 제12조제4항에서 정한 입양동의 전에 입양될 아동에게 입양동의의 효과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며, 상담내용 등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입양은 요보호아동에 대한 다양한 보호조치(친가정 복귀, 아동복지시설 입소, 입양 등) 중의 하나로 요보호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의 측면에서 정부 지원이 타당함
- 제3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과의 연관성을 가지나 연계된 국정과제는 없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4가지 내역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네 사업 모두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원 가정 보호라는 사업 목적에 부합함

내역사업명	사업내용
입양아동 양육수당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통해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육성 도모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장애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을 통해 장애 아동의 국내 입양 활성화 및 건전육성 도모
입양비용	입양가정에 대한 입양 비용 지원을 통해 국내 입양 활성화 도모
입양숙려기간모자지원	부모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양 동의를 아동 출생일로부터 1주일 이후에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 위함

- 내역사업 입양비용의 경우 실제 예산내역을 보면 입양 알선비용(입양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위탁모비용을 포함한 아동양육비, 입양알선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사후관리비) 및 입양절회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입양 가정에 직접 지원되는 예산이라기보다 입양기관 운영비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보일 수 있음.
- 그러나 「입양특례법」 제32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부모의 입양알선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바, 해당 예산은 결과적으로 입양부모를 지원한다고 볼 수 있음
- 성과지표는 비교적 적절하나 일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체 사업의 목적을 대표하지 못함
 - 입양숙려기간모자지원 사업(내역사업)은 요보호아동의 발생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나 이와 관련된 성과지표가 미제시됨. 관련 성과지표의 추가 설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지자체 또는 민간에만 의존하여 추진하기 어려우며, 특히 장애아동의 경우 국내입양이 지극히 저조하고 경제적 부담 등이 더욱 커지므로 정부의 재정지원이 요구됨
- 타 유사·중복사업은 없으며,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내역사업별로 차이가 있으나 그 범위가 광범위하지는 않음
 - 입양아동 양육수당 및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사업의 경우 해당 입양아동이며, 수혜자 수는 '17년에서 '19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함
 - 입양비용 사업은 직접 수혜자가 입양 가정으로 입양비용 역시 '17년에서 '19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입양아동 수 감소에 따른 결과로 보임
 - 입양숙려기간모자지원 사업은 그 대상자인 친생모(미혼·이혼 한부모)와 아동으로 입양숙려기간동안 산후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해당 사업 역시 '17년에서 '19년까지 수혜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2호에 의거 서울 40%, 평택 80%, 그 외 지방 70%로 지역별 재정보조 비율을 달리 적용하여 적용하고 있음
- 본 사업은 '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예산이 감소되었으며, 입양아동 양육수당 사업을 제외하고는 실집행률이 낮은 편임
 - *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17년 81.0%, '18년 80.6%, 입양비용: '17년 76.9%, '18년 72.1%, 입양숙려기간모자지원: '17년 40.6%, '18년 38.5%
 - 실집행률 저조의 주요 사유는 국내입양건수의 감소임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아동 인권 등의 측면에서 사회적가치 인정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교부절차를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
 - 매 분기별 집행실적 및 계획을 모니터링하여 시·도간 교부금액을 조정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관련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기준 및 절차, 모니터링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본 사업의 비용 지원은 해당 시·군·구를 통해 지급되고 있으며, 부처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고(장애입양아동의 경우 입양 당시 질환을 앓거나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만 지원, 일부 비급여 진료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제외 등)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노력은 보이지 않으며, 현재 최초 신청 후 지급이 결정되면 중지 연령이 될 때까지 별도의 신청 없이 지속적으로 비용이 지원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혜자의 자격요건 유지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이 요구됨
 - 의무지출 성격의 사업으로 지속적인 부정수급, 중복수급 등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사업의 타당성 및 근거가 명확하고 계속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 현재 지원연령의 확대가 논의되고 있어 입양아동 수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사전에 예산 감축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현재 입양아동양육수당의 지원연령은 만17세 미만이나 장애입양아동의 경우 만18세 미만으로 차별화되어 있음. 이에 입양아동양육수당의 지원연령을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의 정의(18세 미만인 사람)를 적용, 장애입양아동과 동일하게 만18세 미만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이 협의 중에 있음
- 다만, 내역사업 입양숙려기간모자지원 사업의 경우 실집행률이 매우 저조하여 해당 내역사업에 대한 일정 수준의 예산 감축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관리 노력이 요구됨

3-2 정책 제언

- 내역사업 입양숙려기간모자지원 사업은 요보호아동의 발생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나 이와 관련된 성과지표가 미제시됨. 해당 내역사업의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관련 성과지표의 추가 설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기획재정부
사 업 명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68.0
1. 보조사업의 타당성	48.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10.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8.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18.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0.0
1-5.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0.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감축 · 동 세부사업은 2021년 ~ 23년 안에 높은 수준의 감축이 필요함 · 관련 법 제정 및 시행으로 사업 내용 및 예산이 확대되었음에도 사업의 효과가 미미하고,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감축을 판정함. 단, 사업의 대상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지속적인 감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감축을 권고하며, 구체적인 감축 수준은 현재 진행 중인 협의내용(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비율 상향 조정)을 반영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 '18년 이후 실집행률이 저조하며,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분기별 집행률을 보면, 사업관리 역시 적절하게 수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의 실집행 실적 제고를 위해 현재의 관리 노력을 지속·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만족도 조사 시행에 따라 그 결과를 반영하는 성과지표 개발을 제안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소득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가구에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주요 법적 근거로 하고 있음
- 동법 제3조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정부 지원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며, 동법 제20조는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제9조, 제10조, 제14조 등에서는 지원대상, 범위, 방법 등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단일 내역사업(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내역사업에 대해서도 근거가 명확함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0조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재난적 의료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적절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재난적의료비의 지원대상, 소득·재산 기준, 지원 내용·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재난적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재원 등) ①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제17조에 따라 징수한 부담이득금
3.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의2에 따른 출연금 및 같은 법 제99조제7항에 따른 지원금액
4.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배분액
5. 관련 법인·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공단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회계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목적은 국가적으로 타당하고 국정과제와 연계성을 가짐
- 의료비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동일한 의료이용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이 명확하며, 사회적으로 의료비 부담에 따른 각종 사건들이 발생함을 고려할 때 정부 지원의 타당성과 중요성이 인정됨
- 국정과제 '44-2:재난적의료비 지원 등 가계부담 대폭 경감'과 밀접한 연계성을 가짐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단일 내역사업으로 이루어져 목적이 동일하고 의료비 지원으로 사업내용이 명확함
- 성과지표가 재난적의료비지원 보장률(%), 재난적의료비지원자 수(명)로 구성되어 의료비 지원 및 이를 통한 가계부담완화라는 사업의 효과를 일정 부분 파악할 수 있게 구성됨
 - 다만 사업 확대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만족도 조사 등이 정기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기에 수혜자 만족도와 같은 성과지표를 추가 활용할 수 있음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정의 안정성 및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
- 보건복지부 사업 중 의료비 지원 사업들이 있음. 본 사업의 지원대상 질환 확대에 따라 사업목적과 수혜자의 중복성이 있어 보이나, 이를 인지하고 비급여 항목 중심의 지원, 전산연계를 통해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부처의 관리 노력이 인정됨

부처	사업명	회계	대상	사업내용	보조사업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일반회계	저소득위기가구	생계지원 의료지원	O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경상보조	일반회계	150만명 전 국민 3%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O
보건복지부	암환자 지원사업	국민건강 증진기금	암환자	의료비지원 재가암환자 관리	O
보건복지부	희귀질환 환자지원	국민건강 증진기금	건강보험 저소득층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희귀질환자 관리	O
보건복지부	노인건강 관리	국민건강증 진기금	치매환자 만 60세 이상 의료취약계층	치매진료비, 약제비 지원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	O
보건복지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복권기금	소득하위 50% 이하 중심 모든 질환	의료비 지원	O



- 본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의료비를 지원받는 국민이며, 그 규모는 '17년 11,571명, '18년 8,687명, '19년 11,142명으로 추정됨. 직접 의료비를 지원하므로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혜택이 명확함
- 본 사업이 폐지될 경우 직접적인 재정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예상되며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고려해 필요성이 인정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18년 이후 실집행률이 저조함('18년 33.8%, '19년 56.0% 추정)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계획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당초	수정(A)								
2016	27,500	27,500	27,500	27,500	-	27,500	27,320	-	180	99.3
2017	17,751	17,751	17,751	17,751	-	17,751	17,693	-	58	99.7
2018	35,662	35,662	35,662	35,662	-	35,662	12,057	-	23,605	33.8
2019	35,662	35,662	35,662	32,100	-	32,100	19,969	-	12,131	56.0

※ 2019년 집행액은 잠정치임

- 본 사업은 '17년까지는 한시적 사업으로 4대 중증질환에 대하여만 적용하였으나, '18년 관련 법 제정 및 시행으로 모든 질환에 대해 적용되며 소득기준 및 지원한도 등이 확대된 바 있음
- 이에 '17년 대비 '18년 사업대상자가 확대되었음에도 '18년 실집행액은 오히려 감소되었으며('17년 실집행액: 17,693백만원, '18년 실집행액: 12,057백만원), 사업수혜자 수 역시 감소되었음('17년 수혜자수: 11,571명, '18년 8,687명, '19년 11,142명). 분기별 집행률을 보면, '18년 2분기 집행률이 8.9%, 3분기 집행률이 21.4%로 나타났으며, '19년 8월 기준 집행률은 34.9%로 나타남
- 부처에서는 본 사업의 저조한 실집행률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수혜자 사전 발굴, 홍보 강화 및 지원비율 조정과 같은 다양한 방안들을 시행·모색 중임. 실수요에 대한 적절한 예측 및 집행실적 개선을 위해 현재의 관리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에 직접적으로 기여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의복지의 제공”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사업임
- 사회적가치 ③.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의복지의 제공: 인간다운 생활의 기본조건으로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를 국가에 요구하고 국가는 이를 제공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정함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제5조(주관 등) ①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관한다.

②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공단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0조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의 접수
2. 제12조에 따른 지급 여부 결정 및 제13조·제14조에 따른 지원금액의 지급
3. 제17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및 연체금의 징수
4. 제22조에 따른 지원금액 지급결정 및 지급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조사
5. 그 밖에 이 법에서 공단의 업무로 정하고 있는 사항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복권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등에 집행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부정수급을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부정수급 관련 적발 이력은 없음
 - 다만, 의료비가 잘못 지급된 경우(지급제한사유, 잘못 지급된 금액 등)에 대해 환수 처리중임
- 본 사업은 일부 사업과 지원대상 등이 유사하여 동일한 건에 대해 의료비가 중복 지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복 지원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부처에서는 이중지급에 대한 지급 현황 모니터링으로 과오납 지급분을 환수 중이라고 제시하였으나, 이는 본 사업의 특성 상 당연한 관리방식이므로 평가반영은 하지 않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의료비 지원을 통해 의료 이용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가계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련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국정과제와 밀접한 연계성을 가지며,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 단, 예산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대규모 예산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지원 규모에 비해 성과가 미흡함.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 모색이 요구되며, 실수요를 반영한 적정 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내용은 '19년, '20년 예산 심의 시 소관 상임위원회 및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사항을 반영함

3-2 정책 제언

-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의 실행 실적 제고를 위해 현재의 관리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할 필요가 있음
- '19년 사업수혜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전화 설문조사)가 시행된 바, 지속적으로 해당 조사를 시행하고 조사방식 및 내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조사결과를 반영하는 성과지표 개발을 제안함

기관별 · 사업별 평가의견서

교육부

글로벌교육교류사업(비ODA)
대학평가및운영
미래교육환경대비교육콘텐츠진흥육성
법학전문대학원교육역량강화
전문대학자율역량기반조성
초등돌봄교실시설확충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
평생교육검정고시지원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교육부
사 업 명	글로벌교육교류사업(비ODA)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3.6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8.6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6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1.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1.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5.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1.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사업방식변경 · 동 보조사업은 법적 근거는 명확하나 내역사업의 일부가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나 대부분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차익 등 국제적 상황과 연계된 부분으로 향후 국제상황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 마련하려는 노력이 이루어고 있음. 사업내용이나 목적이 부합되도록 사업방식변경 필요.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낮고 수혜자 범위를 구체화하는 검토 필요 · 세부사업 내 내역사업 간의 통합운영 검토해야 하며, 국제사업 특성상 사업추진 시 유연한 대응으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장기적으로 수행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직·간접 수혜범위가 명확하게 적시되지 않아 수혜범위가 좀 더 명확하게 적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성과지표는 전체 내역사업을 대표하여 측정한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내역사업을 포괄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지표 개선이 필요함 · 사업집행 관련에서 자체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사업방식변경이 필요함. 보조금 집행 규정을 준용하기보다는 자체 규정으로 사업 운영할 필요가 있음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동 보조사업은 「유네스코활동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법률에 의해 법적 근거가 있음
 - 유네스코활동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에 민간부문의 공공외교활동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됨
 - 내역사업 중 APEC 교육협력사업, ASEM 교육협력사업, ASEAN은 교육기본법 제29조, 글로벌포럼은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4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유네스코활동에 관한 법률 제5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유네스코 활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스스로 유네스코 활동을 하거나 제4조 각 호에 따른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 유네스코활동에 관한 법률 제6조 >

- ① 국민은 유네스코의 이념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스스로 유네스코 활동에 참여하거나 유네스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유네스코 활동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동 보조사업은 국제기구 및 국제 교육협력 활성화를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 교육의 위상 강화 및 국제 교육 협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목적을 가짐으로 국가 지원의 필요성이 타당함
 - 내역사업의 목적이 국가 간 교육 관련 공동연구를 통한 한국의 국제 사회 내에서 교육 위치 확인 및 개선방안 모색, 아세안 국가 간 교육 교류 확대, 대학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직업교육 협력강화, 글로벌 협력방안 모색으로 전체 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됨



- 동 보조사업과 내역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 국정과제, 계획사업은 아니지만 국제간 교류를 통해서 교육 협력을 증진하고 국가 간 교육정책과 경험을 공유하여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한국 교육의 위상을 국제 사회에 알릴 수 있고, 교육 협력을 통한 질 높은 교육환경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조사업으로 타당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보조사업은 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역사업별 사업내용 및 예산 규모 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내역사업 중 “교육협력”인 3개 사업내용이 상이하여 공통사업영역 검토한 결과 교육협력 사업별로 장학금지급, 네트워크, 교육 고위자 회의 등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으나 각 내역사업이 갖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하나 향후 교육 협력의 공통 목표를 통해서 일관성이 있는 사업수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유네스코 교육지원사업> 내용 중 세종프로젝트, 유네스코 정보 확산, 외국인과 함께 하는 문화교실 내용 및 예산 배정이 내역사업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지 확인이 필요함
 - <APEC 교육협력사업>은 내역사업을 조정하여 사업 효율성 제고가 필요함
- 동 보조사업을 측정하는 성과지표는 대표성이 크지 않음
 - 성과지표 국제회의 개최횟수는 실적으로 성과는 회의 개최를 통해서 거둔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 이는 2017년도 보조사업 평가에서도 실질적 성과를 명확한 제시를 요구 받은 바 있으므로 가시화된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 개선이 필요함
 - “세계시민교육활동 전후의식변화” 성과지표는 동 보조사업과 내역사업을 측정하는 성과지표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보조사업의 수혜자 및 수혜범위를 명확하지 않음으로 내역사업별 수혜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는 노력이 필요함
 - 내역사업별 해당 국가 수요에 따라 다양하여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동 보조사업은 교육 교류를 통해 국가 간 신뢰를 높이고, 국가적 이미지를 높이고 한국의 교육적 위상을 알려 외교성과도 거둘 수 있으므로 국가 보조사업으로 지속됨이 타당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의 내역사업별 예산 편성이 사업명은 유사하나 사업내용이 상이하여 예산 편성의 편차가 크고(APEC, ASEM, ASEAN 교육협력사업), 최근 3년간 일부 내역사업에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발생이유 대부분은 환율 변동으로 인한 환차익 발생으로 인한 것임
 - 불용액 발생 사업에 대해 사업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동 보조사업은 국가 간 교육 교류의 기회를 높이고, 교육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해당 국가 간의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다양한 계층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선진화된 교육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함이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라는 사회적 가치실현에 간접적 기여를 일부 인정할 수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은 관련 민간기관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공모방식은 아니지만 보조사업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자체 규정 마련이 필요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의 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관련 절차를 준용하고 있음
 - 각 내역사업의 전년도 집행보고서, 사업결과 보고서 및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보조사업자 적정성을 확인 후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금 집행 및 점검, 사후관리 등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으며 일부 보조사업은 자체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함
- 2018, 2019년 보조사업의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 사업실적 및 성과, 미흡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 등을 제시하여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짐을 확인함
- 정보 공시를 7건으로 실시하였으며, 불성실 공시 건은 해당사항 없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 등에 의해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사항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관리시스템에서 부정 수급 적발건수는 없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보조사업자에 대한 현장방문, 서면, 온라인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3억 이하의 소규모 사업 외 집행관리는 회계규정 및 절차를 별도로 구비하여 운영하고 있어 자체 노력이 일부 인정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보조사업은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내역사업들이 관련 법적 근거가 있으며, 내역사업들이 전체 보조사업, 상위 단위사업의 목표에 부합되며 국가 간 교육 교류 및 한국 교육의 현주소를 인식하고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점에서 국가 보조사업으로 타당함
- 성과지표가 7개의 내역사업을 포괄하여 측정한다고 보기 어렵고 <세계시민교육활동 전후 인식 변화>의 성과지표는 내역사업과의 관련성을 크지 않아 개선 검토가 필요함. 내역사업 별 성과 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성과지표 개발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사업집행관리에 있어서 내역사업별 수행기관 선정 및 관리 감독을 위한 자체적인 부처의 규정이나 지침 마련이 필요함

3-2 정책 제언

- 동 보조사업은 내역사업이 다양하고 여러 민간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각 내역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 사업 간의 조정 등을 위한 정책 방안 모색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교육부
사 업 명	대학 평가 및 운영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8.4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9.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10.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1.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1.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9.4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4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본 사업은 사업방식변경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본 사업에는 국내외 ‘대학’에 대한 평가, 인증에 대한 공통분모로 소규모 예산 사업들이 묶여 있으며(4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 사업 내용적 측면에서 볼 때는 내역사업간 관련성이 높지 않아 세부사업 단위의 성과지표 제시가 어려우며, 체계적인 관리도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향후 내역사업 각각을 재검토하여 유사사업이 있는 경우 유사사업으로 통합 조정하고, 통합된 사업별 내용에 부합하는 성과 지표 수립 및 관리가 필요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등에 지원근거가 있음.
- 고등교육에 대한 질 관리 체계 정립을 통한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 평가인증기관 지정 및 지도 내실화, 아태지역 내 학위의 통용성 확보를 위한 국가 학위정보센터 운영, 국립대학법인 운영의 성과 진단 및 효과적인 컨설팅을 통한 대학 운영의 책무성과 효율성 제고와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의 역량을 평가하여 대학의 사전관리를 강화함.
- 국립대학 교원 임용의 양성평등 조치계획 및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한 대학 내 양성평등을 구현하고 공과대학 교육의 현장 지향성을 제고하고, 산업계가 요구하는 우수한 공학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한 것으로 필요한 사업임.

< 고등교육법 >

- 제11조의2(평가 등) ①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학과·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 ③ 교육부장관은 관련 평가전문기관,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 학술진흥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정부가 대학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

제4조(인정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

- ② 교육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인정기관의 평가·인증 프로그램 개발 등 평가·인증의 체계화와 품질을 높이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제32조(대학운영계획의 수립·평가 및 국가의 지원)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의 운영성과를 매년 평가·공표하고, 그 결과를 행정 및 재정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 국립대학법이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제30조(대학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에 따른 실적을 매년 평가·공표하고, 그 결과를 행정 및 재정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 교육기본법 >

제29조(국제교육) ① 국가는 국민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국제화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에게 필요한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학문연구를 진흥하기 위하여 국외유학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우리 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연구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육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아태지역에서의 고등교육의 수학, 졸업증서 및 학위의 인정에 관한 협약 >

제9 조

1. 협약국들은 이 협약에 규정된 목표의 달성 및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정부 또는 비정부적 성격에 관계없이 각국의 당국, 특히 대학, 공중기관 및 기타 교육기관과 국가수준에서의 긴밀한 협력 및 노력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그들 국가들은 이 협약의 적용에 수반되는 제 문제의 연구를 모든 관계분야와 관련되고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적당한 국가기구에 위탁할 것을 동의한다. 또한 협약국들은 이러한 국가기구의 실효적인 기능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 교육공무원법 >

제9제11조의5(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의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학의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장은 대학의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교육부장관(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계획 및 그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내역사업별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제시된 사업별 목표와 성과지표로는 사업간 연계와 전체 사업의 통합적인 성과측정은 불가능함.
- 내역사업간 관련성이 많지 않고 각각의 내역사업이 별도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음.
- 성과지표의 경우도 내역사업간 관련성이 크지 않아 내역사업간 각각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성과 지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의료과정 운영학교의 평가 인증 만족도’는 반응도 측정 수준에 머무는 성과 지표로 성과 관리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
- 2020년부터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된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평가’에 해당되는 성과 지표인 ‘국공립대 여성교수 비율’은 보조사업의 성과지표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 내역 사업 중 ‘국가학위정보센터 구축·지원’, ‘국립대학법인 운영성과 평가지원’의 경우, 성과 지표 제시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성과 지표 개발이 필요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사업은 ‘대학’, ‘학위’에 대한 평가, 인증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학 교육의 질적 제고, 학생 이동성 확대에 따른 국제 학위 인정 수요를 고려해 볼 때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됨.
- 다만, 4개의 서로 다른 내역사업들이 대상이 ‘대학’, ‘학위’라는 공통점 외에는 상이한 사업 추진 목적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하나의 ‘세부사업’내에서 이를 통합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예를 들어, 공학 학위의 국제적 통용성, 등가성 측면에서는 ‘평가인증 기관 역량강화 지원’ 중 한국공학교육인증원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 지원과 ‘공학교육 혁신지원 사업’은 연계선상에 있는 사업으로 이들 사업목적별로 통합하여 운영, 관리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근본적으로는, 규모가 작고 상이한 사업들이 묶여져 있어 사업 운영의 효율성 및 성과관리가 담보되지 못하는 사업구조라는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내역사업별 계속 시행의 필요성과 내역사업 구성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대부분 소규모 사업으로 각 내역사업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며
 - 중장기적으로 연구용역 후 현행 사업규모로 성과를 예상하기 어려운 사업들은 근본적으로 폐지하거나 유사사업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양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 내역사업별로 국고보조율의 적정성이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모든 내역사업의 공통적인 문제는 현행 국고보조율의 결정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이며, 사업성가에 따른 국고 보조율 조정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임.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 사항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대체적으로 보조사업자 선정 근거는 명확해 보이며, 인정기관심의위원회 등 사업계획서 검토, 심의과정 등이 규정되어 있음.
- 각 내역사업별로 시행령, 고시 등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가 선정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실행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추가적 조치를 하는 등 사업관리에 특별한 문제는 없음.
- 개별 내역사업별로 정해진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계획, 중간실적 보고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집행실적을 보고하도록 하고, 집행 잔액 발생 시 국고 반납 등 투명하게 사업이 관리되고 있음.
- 인정기관의 정산보고서, 공학교육인증원의 자체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해당 사항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고등교육에 대한 질 관리 체계 정립을 통한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 평가인증기관 지정 및 지도 내실화, 아태지역 내 학위의 통용성 확보를 위한 국가 학위정보센터 운영, 국립대학법인 운영의 성과 진단 및 효과적인 컨설팅을 통한 대학 운영의 책무성과 효율성 제고와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의 역량을 평가하여 대학의 사전관리를 강화함.
- 국립대학 교원 임용의 양성평등 조치계획 및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한 대학 내 양성평등을 구현하고 공과대학 교육의 현장 지향성을 제고하고, 산업계가 요구하는 우수한 공학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한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됨.
- 다만, 사업규모가 작고 사업내용이 상이하여 세부 사업이 지향하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며 관련성이 많지 않은 다수의 내역사업을 하나의 세부사업로 묶어 놓아 세부 사업 단위의 평가를 어렵게 하고, 세부사업 단위의 사업목표 달성 여부 판단이 불가능함.

3-2 정책 제언

- 각 개별 내역사업별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재의 성과 지표는 일부 내역 사업에만 해당되어 적절한 성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역사업들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성과 지표를 개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다만, 현실적으로 상이한 내역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세부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고려해 볼 때 통합 지표 설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통합 지표가 불가할 경우에 한해, 내역사업별로 각각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과 지표 제시 및 성과 관리 체계 수립을 대안으로 제시함.
- 향후 내부 사업을 검토하여 유사 사업이 있는 경우 유사 사업들을 통합하고, 유사 사업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사업의 조정 등을 통해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교육부
사 업 명	미래교육환경대비교육콘텐츠진흥육성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9.0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9.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10.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1.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1.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0.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4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6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본 사업은 사업방식 변경으로 판정함. · 미래환경대비교육콘텐츠육성 사업내 ‘생애주기별 학습자 역량 강화 사업’의 수혜자 확대와 함께 가시적인 성과 확보를 위해 사업 운영 방식 및 성과 관리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생애주기별 학습자 역량 강화 사업’의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실적이 단위 사이버 대학 지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당초 사업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수혜자 범위 확대 노력이 필요함. 근본적으로 기존 콘텐츠들과 차별성이 미흡하여 국회 조치사항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되어, 사업 운영 방식 변경을 통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됨. · 신규사업으로 운영되는 ‘사이버대학 역량진단 및 컨설팅 사업’은 국제적 학위, 학점의 통용성 및 등가성 확보를 위해 사이버대학에 대한 인증, 평가 체계 구축이 필요한 인정됨. 다만, 사업 결과의 구체적 활용 방안이 불분명한 점이 있어, 사업 초기 단계에서 사업방식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세부사업명을 ‘사이버대학(또는 원격대학) 지원 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해 볼 때 국고보조금이 라는 현행 예산 체계가 적정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상에는 다음과 같이 단위 학교에 대한 지원 및 평가, 이러닝에 대한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법령상 근거를 확보하고 있음.

- 고등교육법 제7조(교육재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평생교육법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개인·기업·지역·교육기관 및 공공기관의 이러닝 활성화, 이러닝 관련 기술·인력 등의 국외진출 및 국제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등) ①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 동 보조사업의 목적은 당초 일자리 변화에 대응한 성인의 직무 역량 강화 콘텐츠 개발이었으나, 2020년부터 ‘사이버 대학 역량진단 및 컨설팅 사업’ 추가에 따라 4차 산업혁명 대비 전문심화 콘텐츠 개발과 사이버 대학 역량 강화 부분으로 확대되었음. 사업 추가에 따라 해당 사업의 중심이 기존 평생직업능력개발 부분에서 단위 사이버대학 지원으로 강화되는 측면이 있으며, 이와 같은 변화가 당초 보조사업 목적을 불명확하게 만들고 있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보조사업은 ‘성인학습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사업’과 ‘사이버 대학 역량진단·컨설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자는 성인 대상 평생직업능력개발에 초점이, 후자는 단위 사이버대학에 대한 역량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동일한 세부사업 내 상이한 내역사업들을 편성 시 내역사업간 연계성 및 효과성 검토가 필요함.



- 두 가지 사업이 모두, 공통적으로 ‘사이버 대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전자는 사이버 대학의 콘텐츠 개발, 운영 역량을 통해 ‘일반인’ 대상 평생직업능력개발 사업 일환으로 볼 수 있음.
 - 반면, 후자는 개별 사이버 대학에 대한 인증·컨설팅 사업 성격이 강하므로, 두 개 사업간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동 사업의 결과가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 등에 연계 될 수 있도록 사업 보완이 요구됨.
 - 현재의 내역사업 구성 및 실적을 볼 때, 결과적으로 당초 사업에서 기대되었던 효과가 ‘사이버대학’으로 영역과 범위가 한정된 듯 보이며, 현재의 사업 진행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사업 명칭은 ‘사이버대학 지원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피함.
 - ‘사이버대학 지원사업’으로의 사업 명칭은 단순히 제목 변경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이버대학 지원사업으로서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예산 투입 방식 및 예산 구조 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임.
- 성과지표가 보조사업의 목표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 수요 대상의 확대와 교육과정 운영 효과성 측정 결과가 반영된 목표치 설정 및 관리가 필요함.
- 성과목표가 ‘성인학습자 역량 강화 교육 콘텐츠 이수자 수’로만 설계되어 있어, 이와 같은 단순 수강자 숫자만으로는 성인의 평생직업능력개발에 해당 교육과정이 기여를 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음.
 - 아울러, 목표치 설정이 단순히 2018년도 이수자 수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어 근거 설정에도 문제가 있음.
 - 현재 지표를 사업 목표에 부합하도록 전면 개정을 해야 하며, (사이버 대학 학생이 아닌) 일반 국민 비중, 성인학습자의 직무역량강화 유무가 적절하게 성과지표의 내용 및 목표치에 반영되어야 할 것임.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사이버 대학에 대한 직업·직무 콘텐츠 개발 사업의 경우 기존 콘텐츠들과의 차별성에 따른 중복 투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사이버대학 역량 강화사업의 경우 인증·컨설팅의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절차와 수행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 사이버대학 콘텐츠 개발 사업은 직업·직무 콘텐츠로 한정되어 있으나, 해당 콘텐츠들이 민간 교육훈련시장에서 손쉽게 접근이 가능한 콘텐츠들로 판단되어 중복 투자의 문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사이버대학 특성상 급변하는 기술, 산업 환경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지속적인 성과 관리를 통한 경쟁력 있는 교육서비스 제공이 대학의 설립 및 유지의 근간이라는 측면에서, 보조사업을 통한 사이버대학 역량진단 및 컨설팅 사업은 대학 자율적이며 자체적인 개선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고 체계화된 계획 수립이 필요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사업의 경상경비 대비 실제 사업예산 비중이 적정하나, 콘텐츠 개발의 중복 투자 확인과 역량진단 사업의 재정 지원 과목의 변경 검토가 필요함.
- 콘텐츠 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수혜자 및 성과가 불명확하여 이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며, 기 개발된 콘텐츠 대비 차별성 부재로 인한 중복 투자 문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 사이버대학의 역량진단 및 컨설팅 사업은 사업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조사업으로 수행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 예산 과목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 사항 없음. 사회적가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사업은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별도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사업의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보조사업자 선정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 준수함.
- 실행계획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이루어지며, 서면평가, 대면평가, 최종심의 3단계에 거쳐 체계적이며 다각적으로 보조사업자 선정 평가가 이루어져 적정하다고 평가됨.
- 단,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과 관련하여 개발 콘텐츠를 대학별로 제시하도록 하는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수요조사 등을 토대로 국가적 차원에서 개발의 시급성, 필요성이 높은 직업·직무 콘텐츠들을 파악한 후, 이에 한정하여 보조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그렇지 않을 경우, 기 개발 콘텐츠와의 중복성 문제, 산업(직업)수요와의 미스매칭 문제 등으로 인해 국고 투입의 명분 및 타당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평가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 집행과 관련하여 별도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한 집행 관련 내용을 사업 기본 계획 및 실행 계획에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집행 점검을 위하여 현장 방문(1회)과 온라인 점검을 병행하고 있어 적절하다고 평가됨.
- 보조사업 정산, 반환, 회계 감사 등의 사후관리와 관련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과 반납 등의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특이사항은 없으며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됨.
- 다만,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의 경우, 사이버대학에서는 콘텐츠개발 전문기관으로서 개발 관련 자체적인 시설과 전문인력, 교수진 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들 내부인력, 내부시설 활용과 관련한 국고 투입 집행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음. 이는 사업의 비효율화 및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됨.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동 사업을 위한 별도규정은 갖추고 있지 않으나, 관련 내용을 사업 기본 계획 및 실행계획에 반영하고 있어 적정함.
-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를 위하여 사업이 태동된 2018년부터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체적발 및 외부적발 건수는 없어 사업 관리는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됨.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사업 태동 시점인 2018년에는 서면조사로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2019년부터는 보조사업자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을 중심으로 사이버대학(사업대상자)에 대한 현장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이와 같이 점검 방식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점은 자체 사업관리 노력으로 적정하다고 평가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4차산업혁명 등의 산업, 경제 등 사회전반에 걸쳐 평생 직업능력개발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 변화 대비 생애주기별 학습자 역량 강화 콘텐츠 개발 사업’을 통해, 신기술 등 직업·직무 관련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고자 하는 동 사업의 취지, 목적에는 동의되나, 실제 동 사업의 수혜자 확대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사업성고가 보다 명확하도록 콘텐츠 유사·중복투자 문제를 엄격하게 걸러낼 수 있는 사업 운영 체계가 개편되어야 할 것임.
- 개발 콘텐츠들이 국가 차원에서 개발의 시급성,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 운영 시 충분한 시장 분석과 현황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중복 개발의 지양을 위한 기 개발된 민간, 공공 부분의 콘텐츠들과의 철저한 사전 검증 프로세스가 시행되어야 함.
- 아울러, 콘텐츠 사업의 수혜자 비중이 각 사이버 대학의 소속 학생들에 집중되어 있는 듯하여, 개별 대학에서 수행해야 할 콘텐츠 개발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투입의 명분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일반 국민, 재직자 등으로 사업 수혜 범위 비중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사이버 대학 선정 기준 보완, 성과 지표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함.
- 사이버대학 역량진단 및 컨설팅 사업은, 사이버대학의 역량 강화라는 목적은 보편적으로 동의되는 목표인 바, 동 사업을 통해 대학이 자체적인 투자와 노력으로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 운영 내용 및 방법의 구체화와 내실화가 요구됨. 보다 근본적으로는 동 사업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조사업으로 수행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 예산 과목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2 정책 제언

- 콘텐츠개발 사업은 민간이나 공공부분에서 기 개발된 직업·직무 콘텐츠들과의 차별화, 일반 국민으로의 대상 확대에 중점을 두고 사업 운영 방식을 개편해야 할 것임.
- 현행과 같이 개발 콘텐츠를 대학별로 제시하도록 하는 선정 방식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기 개발 콘텐츠와의 중복성 문제, 공급·수요간 미스매칭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개발의 시급성, 필요성이 높은 직업·직무 콘텐츠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며, 철저한 현장 및 시장 동향 분석을 토대로 합리적인 보조사업자 및 콘텐츠 선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한 사업 운영 절차, 방식이 개선되어야 할 것임.



- 일반 국민들이 개발된 직업·직무 콘텐츠들에 대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접근성 제고 측면에서 사업 운영 방식의 개선 노력이 요구됨. 일반 국민 확대를 위해서는 해당 성과 지표 개발 및 운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콘텐츠 접근이 용이하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부처, 기관들 간에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기 개발된 콘텐츠들을 공동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사이버대학 역량 강화는 사업의 효용성 측면을 고려하여 인증·컨설팅 사업 운영 결과의 활용 방안에 대한 명확하며 구체적인 사업 운영 계획 수립이 요구됨.
 - 인증 결과가 사이버 대학의 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교육부 유관 정책, 제도 사업에서 해당 인증 결과가 반영될 있도록 유관 정책 사업의 개선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국제적 학위, 학점의 통용성 및 등가성 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인 만큼 사업 초기 단계에서 사업방식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진단결과 경쟁력과 우수성이 입증된 사이버대학들의 경우, 교육부의 정책적 파트너로 국가에서 추진하는 교육관련 시범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 설계를 통해 우수한 대학들이 혁신과 발전을 거듭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됨과 동시에, 이들 사례들을 일반 대학에 확산, 전파함으로써 사이버 대학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음.
 - 근본적으로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성과를 고려해 볼 때 보조사업으로의 수행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 예산 과목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세부사업명을 ‘사이버대학(또는 원격대학) 지원 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교육부
사 업 명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역량강화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2.0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2.6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6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1.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7.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9.4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4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본 사업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본 사업은 법학전문대학원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평가위원회에 평가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평가위원회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 및 품질 관리가 미흡함. · 평가위원회 사업운영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합리적인 모니터링 및 메타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평가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완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현행은 5년에 한번 평가가 이루어지고,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4년간은 평가준비 활동(평가 기준 개선 및 질의 답변)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임. - 향후에는 기존 활동 외에도, 평가활동 결과에 대한 의견조사, 모니터링, 메타평가 등을 실시하여 평가위원회의 역할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내역 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운영지원’에 관한 것으로
 - 법 제27조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를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에서 시행하도록 법 제28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36조는 동 위원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음.
- 평가위원회에 대한 지원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질적 관리를 위하여 주기적 평가가 필요하고, 법은 평가를 대한변협 소속 평가위원회가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비 수준의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필요성이 인정됨.

< 법학전문대학원법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 그 밖에 법조인의 양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제2조에 따른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법조인의 양성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평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소속으로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를 둔다.

1.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조직·운영 및 시설 등(이하 "교육등"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
2. 적정한 평가를 위한 평가기법의 개발 및 평가기준의 수립

제36조(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 ④ 평가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법학전문대학원 평가를 통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안정적 정착과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별도의 성과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 성과지표가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관련 질의 응답건수’로 본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의 품질 관리를 위해서는 평가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이러한 위원회의 역할이 정상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성과지표에 대한 고민 없이 형식적인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예산의 적정한 활용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은 법학전문대학원의 품질 관리를 위한 핵심적 수단으로의 기능을 가지므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 평가위원회가 평가기준 정비, 위원회의 운영 등을 적절하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위원회의 품질관리가 중요하나 이에 대한 사업 운영 체계 구축이 미흡함.
 - 특히, 5년 주기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평가 준비 기간인 4년간의 평가위원회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과 품질관리 체계가 구축되지 않을 경우, 형식적인 위원회 활동에 머무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20년까지 동일한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21년 추계는 '20년보다 많은 금액을 제시하고 있음.
 - '22년이 3주기 평가로 추가적인 예산소요가 필요하다는 것도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평가위원회가 그 기능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임.
 - 그간의 성과지표는 이러한 위원회의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조속히 위원회에 대한 성과와 평가 품질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과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 사항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평가위원회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사업자 선정은 적절함.
- 각 내역사업의 전년도 집행보고서, 사업결과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후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는 등 보조사업자 선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실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추가적 조치를 하는 등 사업관리에 특별한 문제는 없음.
- 다만 독립된 규정이 없고 보조금법에 따른 일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어 가급적 독립적인 관리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집행실적을 보고하도록 하고, 집행 잔액 발생 시 국고 반납 등 투명하게 사업이 관리되고 있음.
- 예산 교부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해당 사항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법학전문대학원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평가위원회에 평가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단, 평가위원회의 품질 관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년 동일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평가위원회 활동을 관행화, 형식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 품질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 운영 방식 변경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임.
- 아울러, 평가위원회에 대한 성과지표가 부실하여 평가위원회의 평가 품질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 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가 있음.

3-2 정책 제언

- 본 사업은 필요성은 인정되나, 평가위원회의 품질 관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년 동일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평가위원회 활동을 관행화, 형식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 품질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 운영 방식 변경(모니터링, 메타평가 도입 등)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임.
- 아울러, 평가위원회의 품질 관리를 위해서 사업 목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성과지표를 개발·적용하고, 사업성과 결과를 평가위원회 활동에 환류 할 수 있는 사업 운영 체계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임.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교육부
사 업 명	전문대학 자율역량 기반조성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1.4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2.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10.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4.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1.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9.4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4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사업방식 변경’으로 판정함. · ‘입학전형 계획 수립 및 입시관리’ 내역사업의 경우 그간 운영해오던 전통적이며 반복적인 사업운영에 대한 면밀한 성과 분석을 통해 사업 운영방식 효율화가 필요함. · ‘고등직업교육과정 개선 및 교수학습 내실화 지원’ 예산의 경우, 교육과정에 대한 인가심사 부분은 법적 근거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유지가 필요함. 반면, 교수학습 내실화를 위해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우수사례 선정사업’은 전문대학 교수학습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사업 필요성은 인정되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어 사업 운영 전반에 걸친 개선이 요구됨. 근본적으로 해당 영역이 고등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본역량’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대학 자율적이며 자체적인 노력과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방식 변경이 필요함. · 보조사업 평가사 명칭 변경 권고가 이루어졌으나 반영되지 않은 상황으로, 사업내용에 맞게 명칭 조정이 필요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동 사업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 전문대학 입시지원 및 교육과정(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산업체위탁교육)의 인가·승인업무를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임.
- 전문대학 입시 전형 지원 관련 내역사업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9조(경비보조 등)와 제17조(업무위탁), 그리고 「고등교육법」 제32, 33, 34조 등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해당 법령에서는 전문대학 협의체가 대학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및 시행계획’등을 수립하고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들과 내역사업간 연계성이 명확함.
- ‘고등직업교육과정 개선 및 교수학습내실화 지원’ 내역사업 중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개설·운영’과 관련된 사업내용은 「고등교육법」 제49조와 제50조의 전공심화과정에 제시되어 있으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17조(업무위탁)에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한 사업위탁 수행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보조사업 추진의 법적 명문은 적정하다고 평가됨.
- 반면 ‘고등직업교육과정 개선 및 교수학습내실화 지원’ 내역사업 중 ‘교수학습 내실화 지원’의 경우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관련 법령을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편성된 사업으로 평가됨.
- (1)전문대학의 입시역량 및 사회적 책무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대학 입학전형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전문대학의 학사운영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과정(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등) 인가심사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사업 목적에 비추어 내역 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타당성이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평가됨.
- 다만, 기 보조사업 평가 시 지적된 바와 같이, 동 사업 명칭 ‘전문대학자율역량 기반조성’과 사업의 실제 내용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시됨. 전문대학협의회가 전문대학 대입전형 지원업무 및 교육과정 승인업무를 주된 사업내용인 만큼, 이러한 사업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 명칭 변경이 필요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사업의 성과지표가 사업내용을 적정하게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사업 수혜자 및 사업 성과가 전반적으로 불분명함.
- 차년도 수시입학 전형 공표율의 경우, 2018년도 실적이 100%를 보여 이후의 시점에서는 더 이상 성과 지표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평가됨. 정부 국정과제인 대입전형 간소화, 공정성 제고 부분에 대한 성과 지표 개선 및 관리가 필요함.
- 기초학습진단도구 사용률이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내실화와 직접적 연계가 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음. 기초학습진단 결과를 활용하여 교육과정, 교수학습 개선 건수 등이 제시되지 않는 한, ‘단순 진단도구 사용자 수’만으로는 성과지표로서의 타당성과 활용성이 매우 미흡함.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산업체위탁교육 운영지원사업과 관련된 성과지표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사업의 성과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음. 성과지표 설계 시, 단순한 과정 승인 물량, 만족도 수준에서 벗어나, 전공심화과정 및 산업체위탁교육 과정의 태동(설립)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지 관점에서 성과지표 개발 및 관리가 필요함.
- 교수학습 우수사례 지원 사업의 경우 성과가 불명확하며, 사례 발굴 이후 실제 전문대학에서의 해당 사례의 전파 및 활용 관련 성과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전문대학 입시지원 및 교육과정(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산업체위탁교육)의 인가·승인업무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국고 보조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사업 운영 방식의 개선과 조정이 필요함.
- 전문대학 입시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 특성상 반복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사업 내용이 많으며, 다년간의 입시지원 사업을 통해 ‘전형 공표’ 등 이미 일정 성과가 오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간소화하거나 축소, 또는 제도화, 자동화 등을 통해 전면적인 사업 개선이 필요함.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과 산업체위탁교육의 인가·승인업무 관련하여도 사업 프로세스와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불필요한 절차와 형식을 줄이고 사업의 효율성과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사업 내용으로 집중과 선택이 필요함.
- 교수학습 우수사례 지원 사업의 경우, 경진대회를 통한 사례 발굴과 사례 소개를 위한 세미나 마련 등 ‘행사’성 사업이 주가 되고 있어 사업의 성과를 확보하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어 사업 운영 방식의 전면적인 개선이 요구됨. 개별 대학에서 자구적인 ‘교수학습 역량’ 신장 노력을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할 것임.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사업 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과 함께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전문대학 입학전형 계획 수립 및 입시관리’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전문대학 입시 환경과 인프라 수준을 반영하여, 현행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조정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아울러, 학생, 학부모 대상 진로진학정보 제공 방식에 대한 명확한 성과 관리를 통해 사업의 내용과 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과 산업체위탁교육의 인가·승인업무에 소요되는 예산 역시, 사업 프로세스와 내용 개선을 토대로 불필요한 절차와 형식을 줄여, 늘어나는 과정 물량에 대한 적정한 선정, 질 관리 업무가 가능하도록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임.
- 교수학습 우수사례 지원 사업은 예산 규모는 적으나, 국가 예산 투입 사업이므로 효과성을 높여야 할 것임.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 사항 없음.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은 「고등교육법」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서 보조사업자 선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3조, 제9조, 제17조에서 보조사업자 선정의 법적 근거를 별도로 갖추고 있음.
- 「고등교육법」 제34조에 의하면, 전문대학 입학전형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구는 전문대학들의 협의체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유일하여 보조사업자 선정의 법적 근거는 명확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 집행과 관련하여 별도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한 집행 관련 내용을 사업 기본 계획 및 세부 추진 계획에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음.
- 사업 추진 실적을 점검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사업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반기별 현장 집행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적절함.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제16~19조에 의거해, 매년 국정감사를 받고, 회계연도 종료 후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집행실적을 소관 부처에 보고함. 사업 집행 완료 후 남은 보조금 잔액은 국고로 반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보조사업 정산, 반환, 회계 감사 등의 사후관리와 관련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과 반납 등의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특이사항은 없으며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를 소관 부처에 제출하고 있으며, 소관 부처는 ‘사업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검토하여 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환하도록 유도하는 등 적정하게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 방지와 관련하여 동 사업을 위한 별도규정은 갖추고 있지 않으나, 사업기본계획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제18조 사항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어 부정수급 관리 체계가 적정하게 갖추어져 있다고 평가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을 사업 기본 계획(2019년 전문대학 자율역량 기반 조성 사업 기본계획)에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음.
- 보조사업자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연단위로 국정감사와 함께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집행 타당성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음.
- 자체적발 및 외부적발 건수는 없어 사업 관리는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됨.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국고보조 집행, 사후관리, 부정수급 등의 사업 점검을 위하여 동 사업에 대한 외부회계 감사가 이루어졌으며, 보조사업자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한 반기별 현장방문 점검(연 2회)을 실시하고 있어 자체 사업관리 노력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사업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실시하는 전문대학 입학전형 사업과 교육과정(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과 산업체위탁교육)의 인가·승인업무를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임.
- 동 사업은 (1)‘전문대학 입시관리 및 입학전형 계획 수립’, (2)고등직업교육과정 개선 및 교수학습 내실화 지원’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내역사업 (1)은 관련 법령, 사업 목적에 비추어 국고 보조금 사업으로서의 타당성이 확보되어 있는 반면, 사업운영에 대한 성과관리가 미흡하여 전반적인 사업운영 개선이 필요함.
- 전문대학 입시 환경과 인프라 수준을 반영하여 현행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한 조정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며, 진로진학정보 제공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성과에 대한 심층 분석과 함께 수혜자(학생, 학부모 등)들의 수요와 요구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사업 내용과 방식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내역사업 (2)의 경우, 교육과정 인가·승인업무는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국고 사업으로서의 타당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보여지나, 질 관리 대상 교육과정 물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사업 운영 개선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필수적임.
- 내역사업 (2)의 교수학습 우수 사례 선정 사업의 경우 예산 규모는 적으나 국가 예산 투입 사업인만큼 철저한 사업 성과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나 이에 못미쳐 전면적인 사업 운영 방식 개선이 요구됨.
- 동 사업의 명칭과 실제 사업 수행 내용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동 사업의 명칭은 전문대학자율역량 기반조성이지만, 사업 실제 내용은 한국전문대학협회를 중심으로 대입전형 업무를 지원하며, 교육과정을 인가·승인해주는 사업임. 전문대학의 자율역량 기반조성의 사업 명칭은 사업목적과 내용을 불명확하게 해주는 측면이 있으며, 동 내용은 기존 보조금 연장평가지 동일하게 지적된 사항임.

3-2 정책 제언

- 동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부합하는 성과 지표 개발 및 성과 관리 체계가 확립될 필요가 있음. 기존 보조금 연장평가지 동일하게 지적된 사항이나 이에 대한 반영은 매우 미흡함.



- 아울러, 성과 분석을 토대로, 보조사업자인 ‘한국전문대학협의회’의 입학전형 업무, 인가·승인업무의 혁신과 개선을 꾀할 필요가 있음. 성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업무 축소 및 간소화가 필요한 사업내용과 사업 집중이 필요한 내용을 구분하여, 예산과 인력 투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 교수학습 우수 사례 선정 사업의 경우, 첫째, 전문대학의 교수-학습 역량 강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대회 운영 방식을 개편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전문대학에서 부족한 교수-학습 영역, 전문대학에 새롭게 도입해야 할 교수-학습 방법, 교수-학습 역량이 부족한 전공 등을 분석하여, 매년 선발하는 분야 또는 주제(예컨대, 교수-학습 방법별, 전공별 등)’를 공고하여 이들을 집중적으로 발굴, 전파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 둘째, 대학 차원의 ‘교수-학습’ 역량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동 대회의 입상 결과가 ‘전문대 혁신지원사업’에서의 ‘점수나 가점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임.
- 동 사업 명칭을 사업 내용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변경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교육부
사 업 명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보조유형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3.5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5.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10.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1.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7.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8.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사업방식 변경으로 판정함. · 본 사업은 국가의 보육에 대한 책무성 차원에서 볼 때 적절한 사업임. - 특히 30대 후반 및 40대 초반의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매우 저조한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하는 경우 초등학교령시기의 사회적 돌봄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촉진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임. - 아울러 이러한 공공돌봄은 저학년학생들의 안전한 돌봄 측면에서 우선순위가 있는 사업임. - 다만 최근 인구 추계에 따르면 7~12세 학령기 인구가 '20년 대비 '25년은 29만 명, '30년은 93만 명이 감소하며, 특히 7~9세는 5년 뒤 25만 명, 10년 후 53만 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이러한 인구추계를 고려하여 2018년 4월에 수립된 연도별 목표 설정치가 현 시점에서 타당한지는 고민할 필요가 있음. · 본 사업의 사회적 필요성은 인정되나 향후 인구감소 등 수요를 고려하여 물량 산정 및 판매에 대한 정교한 사업 운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과학적 수요 조사 절차, 정교한 수요·공급 매칭 절차를 통하여 지역별 수요 등을 적정하게 반영함과 동시에 시설이 유희화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 고시(이하 “고시”라 함)」의 “Ⅳ. 학교 교육과정 지원, 2. 교육청 수준의 지원” 중 “지역 사회와 학교의 여건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학교에서 돌볼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 충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다고 하나
 - 매년 2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임에도 법적 근거가 없고, 본 사업의 근거로 제시하는 고시의 경우도 교육청이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원해야 하는 사항을 정한 것이지, 국가가 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으로는 볼 수 없음.
 - 따라서 조속히 관련 법률에 근거를 신설하여 사업의 법적 근거 미비를 해소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이러한 입법 미비에도 불구하고 돌봄에 대한 국가적 책무성이 상당한 만큼 국가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특히 공공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를 고려하는 경우 사업 자체는 타당성이 있음.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 고시 >

2. 교육청 수준의 지원

이 교육과정의 원활한 편성·운영을 위하여 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한다.

(중략)

파. 학교가 이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지원한다.

- 5) 지역사회와 학교의 여건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학교에서 돌볼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 충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초등학생의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률이 현저히 낮고, 초등학교 시기의 자녀돌봄이 30대 후반과 40대 초반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여율의 주된 원인임을 고려하는 경우 공공돌봄시설의 확충은 사회적 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임.



- 아울러 사교육 부담과 안전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하는 경우 학교에 돌봄시설을 두는 것은 안전한 돌봄, 저비용 돌봄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음.
- 이용 학생의 학부모의 높은 만족도에서 보듯 예상되는 효과성에 대한 높은 기대감은 있으나, 정확한 수요 기반의 물량설정 절차가 미흡하며, 성과 지표의 산출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의 경우, 이용학생 수로 설정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필요한 정도로 시설이 확충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에는 해당 지표로는 한계가 있음. 특히, 동 지표 산정이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구축(리모델링)한 돌봄교실의 이용학생 수도 모두 포함되어 있어 지표로서의 정확성과 객관성 측면도 미흡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지역별, 학생별 특성 등을 고려한 예산 배분,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확충 규모 등에 대한 계획과 이를 기반으로 한 자치단체와의 협업이 요구됨.
- 전반적인 추진체계가 연간 목표(700개소)를 정해 놓고 초등돌봄 이용 현황과 돌봄수요(신청자, 대기자수)와 인프라 여건(인력, 공간, 예산 등)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의 신청분에 따른 협의와 조정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 지역별 돌봄 수요, 지역별 맞벌이 부부 규모 등에 대한 과학적이며 종합적인 수요 조사를 토대로 합리적이며 정교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러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수요·공급의 관점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지역별 인구구조 감소 및 변화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를 충분히 반영하여, 증축된 시설이 유향화되지 않도록 물량 산정 및 안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특히 공적 돌봄시설의 활용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 또는 학부모를 다 수용할 수 없다면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보다 합리적인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상대적으로 인프라 수준이나 여건이 미흡한 지역이나 학교를 대상으로 본 사업의 수혜 대상 등을 결정할 수 있는 합리적 의사결정 시스템 및 차별화된 지원 방식이 필요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초등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측면에서 볼 때 재정 지원 규모 및 전액 국고지원 방식은 모두 적정하다고 평가됨.



- 다만, '22년까지 매년 동일하게 700개소, 210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 기준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단순히 5년간 3,500개소로 목표를 정하고 매년 균등하게 700개소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의문시 됨.
- 단기적으로는 부족한 돌봄 교실을 증축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현재의 예산 규모를 유지하는 것은 적정하나, 중장기적으로는 초등학교학생 인구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예산 규모 산정과 편성 노력이 요구됨.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 사항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초등학교 돌봄인프라의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해서는 지역별 돌봄인프라의 수준, 돌봄 취약 계층의 분포 등과 재정자립도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야 함.
- 하지만 본 사업의 경우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보조사업자 선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일반적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음.
- 「보조금법」 제16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라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교부 결정을 할 수는 있으나,
 - 국고보조율이 100%임을 고려하는 경우 좀 더 엄격한 교부결정 절차가 요구되므로 보조사업자 선정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18~22'년 5년간 한시적으로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이 아닌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집행하는 사업으로 기존 국고보조금 관계법과 교육부 자체 관리 규정, 시도교육청 예산 지침으로 운영하여,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은 확보되어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적정한 지도감독과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년 집행현황 점검 등을 통하여 사업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해당 사항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초기사회화의 중요성,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 등을 고려하는 경우 초등학교학생을 위한 공적 돌봄시설의 확충은 사회적으로 우선순위에 있다 할 것임.
- 공적 돌봄시설에 대한 사회적 수요,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향후 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지역 간 돌봄시설에 대한 격차나 수요를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한 물량 산정 및 배분에 대한 사업 운영 절차가 개선 및 강화되어야 할 것임.

3-2 정책 제언

- 지역별 물량 산정 및 안배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학적 수요 조사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정교한 수요 공급·매칭 기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임.
- 지역간 수요 및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면밀한 조사 체계를 갖추고, 합리적 의사 결정을 위한 지원 규모와 배분 기준을 설정하는 등의 사업 운영 방식 보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이러한 사업 운영 방식을 통해 절감된 예산은 상대적으로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건 및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 예산을 재배분할 필요가 있음.
- 사업의 성과 지표 개선과 성과 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것임.
- 성과지표의 경우, 이용학생 수로 설정하고 있으나 동 지표 산정이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구축(리모델링)한 돌봄교실의 이용학생 수도 모두 포함되어 있어 지표로서의 정확성과 객관성 측면이 미흡함.
- 돌봄 시설의 활용률과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과 아울러, 성과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돌봄 교실 성과가 부진한 시도교육청에 대한 사업 참여 및 관리 방식을 강화하는 등의 ‘사업 피드백 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임.
- 아동기의 사회화는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하므로, 돌봄시설 등 물리적 인프라도 중요하나 돌봄서비스 프로그램의 질적 담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급격한 돌봄시설 확충에 부응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의 질적 담보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과 운영인력 지원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평가요약표

기관명	교육부
사업명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2.0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2.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10.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4.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1.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0.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4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6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본 사업은 사업방식 변경으로 판정함. ·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만, 사업 수혜자가 사업참여대학의 전공학생, 교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일반국민에 대한 성과는 불분명한 상황임. · 현재와 같이 ‘대학 학부 중심’의 사업 운영 체계 및 성과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수외국어교육진흥 사업의 목적인 ‘대국민 서비스’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의 운영 방식 및 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들(한국외대, 부산외대)이 CORE 사업, CK 사업에서 특수외국어 지역의 전문가 육성 및 연구 등 관련 유사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어 사업 운영 대상을 이들 대학 학생들을 중심으로 추진할 경우 차별화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5개년 재정 투자계획(‘17~’21) 이후 사업 방식을 전면 수정하여 법령이 정한 목적에 맞게 사업 내용을 재구조화하고, 사업을 도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또한, 5개년 투자계획이 수행되는 기간 내에서도 사업 수혜자를 전문교육기관 재학생 이외의 일반 대상(기업 근로자, 타 기관 학생 등)으로 확대하도록 사업 내용 조정과 성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보조사업의 법적근거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상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적정하다고 평가됨.
- 동 법률의 제8조(전문교육기관지정), 제9조(전문교육기관의 업무)에서 대학 등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명시되어 있음.
- 동 법률의 제7조(경비의 지원)에서 경비 지원할 수 있는 항목으로 전문인력 연수, 프로그램 개발, 교육환경 개선, 외국 협력사업 경비 등이 제시되어 있으며,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의 내역사업은 해당 항목을 중심으로 지원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

- 제9조(전문교육기관의 업무) 제2항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동법 시행령 제7조(경비의 지원)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의 교류·연수에 필요한 경비 2. 특수외국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특수외국어 교육용 기자재·장비 구입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비 4. 해외 외국어 교육·연구 기관 등과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 동 사업은 ‘창의적인 특수외국어 교육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특수외국어를 배우려는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특수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특수외국어에 대한 국내 교수·학습 인프라와 환경 조성이 미흡하며 일반인뿐만 아니라 전공자들의 관련 언어 학습 접근권 및 학습 기회 보장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당위성과 명분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보여짐.
- 동 사업의 경우, 법적근거 및 목적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사업의 수혜자는 크게 ‘일반 국민’과 ‘전공 대학생’으로 구분됨.



-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단발적인 학습미디어 개발·보급 사업 수준에 머무르는 등 사업성과 자체가 불명확하며, 사업운영에 대한 성과관리 및 환류체계가 미비하여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움.
- 전공자(대학생, 교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학부교육내실화 사업,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양성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참여하고 있는 전문교육기관 3곳 중 2곳(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이 이미 CORE, CK 사업에서 특수외국어 지역 관련 R&D와 인력양성 부분에서 유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사업 추진의 목적과 기대효과가 불분명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보조사업의 내용은 크게 ‘학부교육 내실화’,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양성’, ‘특수외국어 저변확대 및 인프라구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보조사업의 법적근거 및 사업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반면, 이러한 사업내용 구성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가 일부 사업내용에만 쏠려있는 등, 사업 성과지표가 사업내용을 적절하게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실적 및 달성도 역시 불분명함.
 - 사업 성과지표는 ‘K-MOOC 강좌 개발 수’를 제외하면 ‘학부교육 내실화’에 해당되는 내용(교육과정개발 수, 교재, 사전개발 수량)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이 또한 개발물 수량을 모두 합산하여 단일 지표(개발물 총 수량)로 제시되어 있어, 합산치에 의한 실적, 달성도의 의미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환류, 개선 활동이 불가능한 성과지표임.
 - 현재 지표를 세 가지 사업내용의 목표에 부합하도록 전면 개정해야 하며, 사업 수혜자가 학부 전공자 외에도 일반 국민으로 선정되어 있는 만큼 이들의 참여와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의 내용 및 목표치가 적절하게 설계되어야 할 것임.
 - 또한, 현재와 같이 단순 ‘개발 실적’에 치우친 성과지표는 한계가 있으므로, 개발된 실적물(교육과정, 교재, 사전, K-MOOC 강좌)과 프로그램의 운영성과가 지표로 설계되어 성과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는 명확하나, 실제 사업내용이 사업참여대학의 전공학생, 교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일반국민에 대한 사업 성과 및 실효성은 명확하지 않음.



- 사업 운영의 효율성 및 성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업 목표, 운영방식, 성과 등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평가됨.
- 특히, 동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들(한국외대, 부산외대)이 CORE 사업, CK 사업에서 특수외국어 지역의 전문가 육성 및 연구 등 관련 유사 사업들을 이미 수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유사 사업인 교육부 CORE 사업(글로벌 지역화모델 지원), CK사업(특성화 사업 지원)과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전문교육기관 재학생, 교원 중심의 사업 체계 개선(사업 운영 및 성과 관리 방식)이 시급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사업의 사업예산 구성은 전반적으로 적정하나 근본적으로 ‘대학 및 학부 지원 사업’의 경우 CORE 사업, CK 사업(일반재정지원 사업인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차별성을 명확히 하여 특수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재정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저변 확대 사업 관련하여, ‘특수외국어 정보 종합포털 시스템 구축 사업의 경우’, 사업결과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인건비 등의 운영비용을 집행하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평가됨.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 사항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사업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전문교육기관의 선정 기준, 절차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히고 있으며,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별도의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사업관리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대상자인 ‘전문교육기관’의 정의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에 대하여 특수외국어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시설·장비’로 명시하고 있으며, 동 법률시행령에서는 ‘교육계획서’ 제출 등의 지정 절차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히고 있음.
- 이와 같은 법률적 사항을 반영하여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사업관리운영 규정」에서는 구체적인 선정과 관련된 ‘공고, 신청, 평가’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 선정의 적정성은 우수하게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됨.
- 실제 선정 과정에서도, ‘특수외국어교육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지정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평가, 대면평가, 최종심의를 거쳐 계획대로 체계적인 선정 평가활동이 수행되었다고 평가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기본적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에서 정한 보조사업 집행과 점검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사업관리운영 규정」 제 26조에 ‘현장실사 및 수시점검’에 대한 별도의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보조사업 집행은 법적 근간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 우수하다고 평가됨.
-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사업관리운영 규정」 제 26조에 ‘현장실사 및 수시점검’의 세부 규정에 근거하여 매년 현장 방문 점검(연 1회)과 온라인 점검(수시)을 실시하고 있는 점은 적정하다고 평가됨.
- 보조사업 정산, 반환, 회계 감사 등의 사후관리 역시, 기본적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을 준수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과 반납 등의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아울러,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사업관리운영 규정」에 관련 조항을 명시하여 보조금 정산·반환에 기준, 절차를 구체화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됨.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동 사업을 위한 별도규정을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사업관리운영 규정」상에 갖추어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한 점이 우수함.
-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를 위하여 2018년부터 매년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체적발 및 외부적발 건수는 없어 사업 관리는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됨.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동 사업을 위한 별도의 규정인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사업관리운영 규정」을 만들어 자체사업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으며, ‘특수외국어교육 전문교육기관 운영계획’에 기반하여 매년 현장점검과 온라인 수시점검 등이 실시되고 있는 점은 자체 사업관리 노력으로 평가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사업은 국가의 경쟁력 강화가 ‘글로벌 역량’과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특수외국어교육 기반과 인프라를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동 사업의 취지, 목적에는 동의되나, 실제 동 사업의 수혜자와 사업성고가 불명확하며, 유사·중복투자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어 사업 방식 변경이 필요하다고 평가됨.
-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학습미디어 개발·보급 사업, 정보망 구축 사업 등은 사업운영 성과가 불분명하여, 성과관리 및 환류체계가 미비함.
- 대학 지원 사업의 경우, 참여하고 있는 전문교육기관이 이미 CORE, CK 사업에서 특수외국어 지역 관련 R&D와 인력양성 부분에서 유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사업 추진 방법, 내용, 대상의 차별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특수외국어교육 관련 기반조성 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는 교육과정·평가체제 구축사업은 현재 지원 언어에 대하여 2021년까지 완료하고 이후에는 언어를 변경하여 추진해야 하며, 그 외의 사업 내용은 5개년 재정 투자계획이 끝나는 2022년부터 사업 방향을 전면 수정하여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대국민’ 대상의 사업으로서의 사업의 활용도를 구체화하여 수행하여야 함.

3-2 정책 제언

-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및 성과관리체계가 미흡하여, 전면적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사업내용 구성에 부합하도록 지표를 다원화, 다각화해야 하며, 현재와 같이 단순 ‘개발 실적’에 치우친 성과지표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외에도 운영성과가 지표로 설계되어 성과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법령의 취지,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운영 내용, 방법, 대상 등을 조정하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존 사업과의 유사성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적될 수 있음.
- 특수외국어교육이 가능한 인력, 시설, 프로그램을 갖춘 사업대상자, 즉 대학은 한정되어 있으며, 부처의 단위 사업별로 이들 기관에 대하여 각각 지원하는 방식은 매우 비효율적임.
- 장기적으로는 한국외대, 부산외대 등 특수외국어교육으로 특화되어 있는 동 기관들에 대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사업 효율성뿐만 아니라 사업 성과 측면에서도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됨.



평가요약표

기관명	교육부
사업명	평생교육 검정고시 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5.5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6.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10.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8.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1.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9.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1.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감축 · 본 사업은 학습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취약계층의 학력보완에 대한 국가적 책무성을 고려하면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됨. · ‘검정고시 제도 활성화 및 네트워크 지원 사업’ 중 사업 목적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정책(기초) 연구 예산은 삭감할 필요가 있어, 동 세부사업에서 2021년 ~ 23년 안에 일정수준의 감축이 필요함. · 해당 내역사업 중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 사업’은 사업의 목적, 내용에 맞추어 ‘교수학습 자료 개발 사업’으로 명칭 변경이 필요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의 지원근거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함)」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규정임.
- 법 제16조제1항은 지원대상을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으로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본 사업의 지원 근거가 될 수는 있으나,
- 동 규정은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정부 지원정책의 우선순위, 사업의 필요성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임.
- 평등한 교육기회의 제공, 학력보완에 대한 국가적 책무 등을 고려하면 취약계층을 위한 검정고시 지원의 당위성은 인정됨.
- 다만, 본 사업의 세부 지원내용의 경우 개별적으로 그 필요성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임. 특히 본 사업의 지원내역 중 기초연구, 현황조사 등과 같은 ‘검정고시 운영활성화 지원’까지 정부 보조금으로 해야 하는지는 의문임.

< 평생교육법 >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4.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검정고시 교육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관련 연구, 콘텐츠 개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그러나 정책연구의 경우 보조사업으로 수행해야 하는 지가 의문임. 본 사업은 검정고시 교육기관에 대한 운영비 등의 지원으로 한정하고, 이러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연구 등은 교육부가 위탁연구 등을 통하여 직접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콘텐츠 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 내용이 ‘검정고시 기출 문제’ 등 학습자료 제공과 관련된 사업 내용이 주가 되는 것으로, 수혜자가 분명하고, 검정고시 교육기관 운영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콘텐츠 개발 사업’ 제목과 사업 내용의 불일치성은 문제가 있어 사업명 조정이 필요함.
- 사업 성과관리에 있어서도 단순한 교육생의 만족도와 같이 반응도 측정뿐만 아니라, 검정고시 합격률, 검정고시 합격까지의 소요기간 등 성과중심 지표가 추가 검토 되어야 할 것임.
- 이러한 측면에서 현행 사업 방식과 성과관리는 학력보완, 교육기회확대 등 상위 목표를 지향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학력보완이나 교육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이 적절한 사업인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 보다 많은 취약계층에게 형평성 있는 수혜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정 교육기관에 대한 한정적 지원이 아니라, 검정고시가 필요한 계층에게 접근성이 용이하고 그들의 자율적 선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식이 수요자 중심적일 것임.
- 동일한 예산 내에서 가급적 기관수를 확대하고 지역별 고른 안배를 통해 학습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 지원받는 교육기관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계층의 경우, 기출 문제집 등 학습보조자료 지원 사업을 통해 수혜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인정되며 사업 규모는 동 사업의 주요 대상이 ‘중고령층’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향후 이들에 대한 인구 비율, 규모 등 인구구조 변화가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초고령사회의 중고령 인구의 변화 추이와 성인 인구 중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인구의 추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규모에 대한 검토와 아울러, 이러한 사업 환경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



- 교육부는 중장기 물량을 전년대비 참여학습자 수 2% 증가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단순히 참여자 수를 늘리는 것으로 사업 규모를 설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볼 수 없음.
- 본 사업을 통한 수혜가 필요한 사람들의 규모를 추정하고, 본 사업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단순한 참여자 증가가 아니라) 달성을 위한 재정투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규모가 정해져야 함.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 사항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사업은 공공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보조사업자로, 보조사업자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선정한 교육기관을 간접보조사업자로 운영하고 있음.
- 먼저 보조사업자 선정의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반드시 보조사업자로 하여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으나, 동 기관의 기능 등을 고려할 때 위법, 부당한 측면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간접보조사업자인 교육기관을 선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에서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 평가 편람」에 명확한 기준 등이 있어 특별히 문제가 되는 점은 없음.
- 보조사업자 선정에 있어서도 ‘교육부 사업선정 공고’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검정고시 프로그램 지원 사업 운영지침서」에 따라 보조사업의 집행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검정고시 프로그램 지원 사업 운영지침서」에 따라 적정한 지도감독과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년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대한 수시 현장 실사가 이루어지는 등 적정한 사업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해당 사항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우리 사회가 가진 학력에 대한 가치평가, 학력에 따른 노동시장 분절 등을 고려하면, 학력 보완, 교육기회 보장 등은 국가의 핵심적 역할이라 할 것임.
- 특히 적정한 학령기를 경험하지 못한 취약계층에게 재기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원의 우선순위가 인정됨.
- 다만 이러한 학력보완 등을 위한 정부 지원은 수혜 대상의 실태 파악과 이를 통한 적합한 사업 운영 방식 및 성과 관리 등이 요구됨.
- 이러한 측면에서는 성과 지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성과에 따른 기관 운영비용의 차등 지원 등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3-2 정책 제언

- 조속한 시일내 학력보완 등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구체적인 실태조사와 분석을 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합리적이며 체계적인 사업 운영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성과 지표에 대한 개선과 함께 성과와 연동된 교육기관 지원 방식(지원비용 차등화 등)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하며,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혜 학생들의 접근성, 선택권 등을 고려한 교육기관 선발 전략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단기적으로 현재 지원내용 중 정책연구, 기초연구 등은 보조사업이 아니라 교육부가 직접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사업에서 해당 예산을 삭감하여야 할 것임.
- 중장기적으로는 사업 수요 및 요구에 대한 면밀한 기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적정 규모 및 물량을 산출할 필요가 있음.
- 내역 사업 ‘검정고시 제도 활성화 및 네트워크 지원’의 경우,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 사업은 사업의 목적, 내용에 맞추어 ‘교수학습 자료 개발 사업’으로 명칭 변경이 필요함.

기관별 · 사업별 평가의견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경력과학기술인활용지원
공정경쟁및이용자보호환경조성(정보화)
방송장비산업인프라구축(정보화)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
방송평가기반조성
우수기술사육성관리지원
지능정보사회이용자보호기반조성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 업 명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지원사업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60.2
1. 보조사업의 타당성	46.8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4.6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5.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1.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5.2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3.4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2.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4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변경 ·동 사업에 대해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방식변경을 권고함 ·동 사업은 일하는 복지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재의 사업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동 사업은 퇴직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타 사업과 유사성이 존재하고, 내역사업별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사업 성과관리체계의 개선이 요구됨 ·이에 따라 기존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활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 사업을 향후 ‘지원’ 측면을 강조하는 형태로 사업방식을 변경하고, 보다 실제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효과적인 성과관리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동 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의거하여 추진되고 있음
- 주관부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3조를 동 보조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주요 법적 근거로 제시하였음
-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퇴직 과학기술인들의 축적된 연구경험과 역량을 통해 ‘일하는 복지’ 측면에서 이들이 사회에 재투입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인력DB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동 사업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음

< 과학기술기본법 >

제23조(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 ① 정부는 과학기술의 변화와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창의력 있고 다양한 재능을 가진 과학기술 인력자원을 양성·개발하고 과학기술인의 활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인력의 중·장기 수요·공급 전망의 수립
2. 과학기술인력의 양성·공급계획 수립
3.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기술훈련 및 재교육의 촉진
4. 과학기술교육의 질적 강화방안 수립
5.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확충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인력의 활용과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인력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수요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력의 기술훈련 및 재교육 실시기관을 지정하고 그 사업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이공계인력을 육성하고, 그들이 창의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며 사회적·경제적으로 적절한 지위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공계인력의 공직(公職)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소속 기관에서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 또는 승진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우수한 이공계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기업·대학 및 연구기관(이하 "산·학·연"이라 한다)이 상호 연계체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퇴직 과학기술인이 사회에 재투입되어 중소기업 자문 및 멘토링, 청소년 교육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동 사업의 추진 근거는 비교적 명확하고 타당함
- 그러나, 「과학기술기본법」을 통한 사업 시행은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의 구속력 측면에서는 일부 한계가 존재함
- 동 사업과 현 정부 국정과제의 연관성은 확인하기 어려움
 - 다만, 과학기술 인력양성 및 과학기술자 인력활용이라는 상위 정책적 목표를 고려할 때 동 사업과 상위 사업 간의 연관성은 일부 인정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사업은 고경력 과학기술인을 활용한 중소기업 현장 컨설팅, 과학관 전시주제 심층 해설 활동, 체계적 관리 등 3가지 내역사업으로 구성
 - 퇴직 과학기술인력의 활용과 교류를 위해 중소기업 현장 컨설팅과 청소년 교육, 인력관리 DB 구축 등 개별 내역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활용이 중소기업 현장컨설팅 및 심층 해설을 통한 청소년 교육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근거는 명확히 제시되지 않음
 - 즉 중소기업 자문, 청소년 교육 등으로 퇴직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활용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다른 영역에 활용하는 것(예: 창업 등)에 비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근거는 확인하기 어려움
- 이와 더불어 내역사업별 산출근거가 합리적으로 도출되었다는 근거가 제시되지 않음에 따라 동 사업 규모의 합리성 역시 확인하기 어려움
 - 예를 들어 연도별 기술 멘토링 과제 수는 어떠한 근거에 입각하여 도출되었는지 근거가 분명하지 않고, 기본교육이 산출근거에 포함된 내역사업이 아닌 타 내역사업에서 교육이 추진된 것으로 자료가 제출되는 등 판단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동 사업은 주요 성과지표를 산출지표에서 결과지표로 전환하였으나, 실질적인 목표 대비 실적을 확인하는데 근거가 부족함
 - 동 사업은 분석물 다운로드 수, 산학연 교류 횟수, 산업재산권 유발건수 등의 성과지표를 활용하였으나, 성과계획서 상 '18년에는 '지원사업 수혜자 만족도'를 활용하였고, '19년 이후에는 '중소기업 기술역량 확충실적'을 주요 성과지표로 활용 중임



- 보조사업 성과지표는 ‘중소기업 기술역량 확충실적’과 ‘사업 참여 만족도’를 활용하고 있음
- 다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성과계획서 상 목표치가 지속적으로 바뀌어 기재됨에 따라 목표치 설정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중소기업 기술역량 확충실적 지표의 경우 '19년 목표치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 과학기술자 인력활용이라는 상위 단위사업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퇴직 고경력 과학기술인을 활용하는 내역사업으로 구성된 동 사업은 기여는 일부 존재함
- 특히 퇴직 과학기술인의 현장 활동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의 기여도가 인정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퇴직 고경력 과학기술인에 대한 활용 측면에서 동 사업은 내역사업에 따라 일부 유사·중복사업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대표적인 사업을 살펴보면, 한국연구재단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사업’, 테크노파크 ‘기술닥터사업’,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월드프렌즈NIPA자문단’, 대전광역시가 주관한 ‘은빛멘코칭(멘토링+코칭) 사업’ 등을 들 수 있음
-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사업의 경우 국가기관·산업체·연구기관 출신 퇴직자가 자신의 경험을 지역대학 및 연구소, 지자체 등에서 활용하도록 지원하며, 기술닥터사업의 경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퇴직기술전문가가 3개월 이상 기업에 상주하면서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은빛멘코칭 사업의 경우 대전시 은퇴 과학기술인이 해당 지역의 청소년 또는 예비·초기창업자에게 멘토역할을 지원하는 사업임
- 상기 사업들과 동 사업은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내용 등에 일부 차별성이 존재함을 확인하였음
-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사업의 경우 대학·연구소·지자체 등 지원대상이 보다 폭넓고, 기술닥터사업의 경우 퇴직 과학기술인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특징이 있으며, 은빛멘코칭 사업의 경우 대전시로 지원대상을 한정하고 있음
- 다만, 퇴직 과학기술인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업 간 유사성은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활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 사업을 향후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지원’ 측면에서 강조하는 것이 필요함



- 주관부처는 향후 고경력 과학기술인 은퇴 전후,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과 연계하여 맞춤형 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음
- 이를 통해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재교육을 통한 지원 중심의 사업 재편이 요구됨
- 동 사업의 수혜자는 직접적 수혜자와 간접적 수혜자로 구분할 수 있음
 - 직접 수혜자의 경우 만 50세 이상의 퇴직 고경력 과학기술인이며,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게 되는 고경력 과학기술인을 직접 수혜자로 산정 가능함, 연구개발지원과 청소년 과학교육에 참여한 약 300여명('19년 기준)이 직접 수혜자임
 - 간접 수혜자의 경우 현장 컨설팅을 받게 되는 중소기업과 과학교육에 참가한 청소년을 포함시킬 수 있음, '19년 기준 약 250여개의 중소기업과 약 1,450여명의 청소년을 간접 수혜자로 집계할 수 있음
 - 또한 기술멘토링을 받기 위한 중소기업의 경쟁률을 살펴보면 '18년부터 '19년 상반기까지 약 2:1로 분석되어 지속적인 수요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음
 - 동 사업의 경우 수혜자의 범위가 매우 폭넓은 것은 아니나, 동 사업에 의해 직접 수혜자(퇴직 과학기술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명확하게 나타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사업은 연도별 총 예산이 50억 미만의 소규모 보조사업으로 동 사업의 규모를 고려할 때, 행정비용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18년부터 '20년까지 사업예산 중 행정비용의 비중은 약 29.7%로 집계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실제 사업비의 비중이 높음
- 동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상 기준보조율을 준수하여야 하는 유형의 사업이 아니며, 민간보조사업자에 100% 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음
 - 법적 근거의 타당성 논의를 차치할 때, 동 사업은 과학기술인력의 기술훈련 및 재교육 관련 사업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다만, 실제 보조율에 대해서 규정한 바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보조사업자에 대해 100%의 보조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근거는 확인하기 어려움
- 또한 동 사업은 연도별 실적행률이 '17년부터 '19년까지 평균 96.5%를 기록하여, 예산 실적행에 있어 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음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동 사업은 정부 차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일부 기여하고 있음
 -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은 취업 소외계층으로 판단할 수 있는 퇴직 과학기술인을 활용한다는 점을 큰 특징으로 함
 - 이에 따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사업은 '18년 국고보조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서 공모절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였음
- 지원대상은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명시하고,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구성을 통해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하였음
- '18년의 경우 보조사업 수행기관 공모절차를 확인가능하나, '19년부터는 보조사업 수행기관 공모과정은 확인에 한계 존재
- 다만, '19년에는 동 보조사업 내역사업(청소년 과학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위탁수행기관의 공모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함
- 위탁수행기관 공모 역시 선정평가 과정을 통해 진행됨을 확인하였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동 사업에 대해 주관부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준용하고, 부처 통합관리규정을 바탕으로 집행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 부처 통합관리규정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및 과학기술진흥기금사업 운영관리지침 등을 들 수 있음
- 과학기술진흥기금사업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한국연구재단의 과학기술진흥기금사업 업무매뉴얼 및 민간보조사업자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지원사업 업무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집행 관리를 실시함
- 또한 동 사업은 상기 관련 규정을 준용한 별도 업무관리지침을 수립하여 관리에 활용하고 있음
-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공고, 추진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내역사업인 중소기업 기술멘토링의 경우 중소기업 매칭평가 절차 및 협약 체결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다른 내역사업인 청소년 과학교육의 경우에도 위탁사업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행기관을 공개입찰 방식으로 선정함을 규정하였음
- 집행점검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실적보고서 제출 및 정산 과정을 추진하고 있음



- 동 사업의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정보고시 사항 및 기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교부 신청정보 및 사업계획 등의 정보를 불이행 없이 공시하였음을 확인함
- 다만, 동 사업의 집행관리는 사업비의 정산보고, 사업비의 정산, 사업비 정산자료 제출, 정산결과 통보 및 반납 등 절차에 따라 진행됨
- 또한 정산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을 확인함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 방지대책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추진하고 있음
 - 주관부처는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지원사업 업무관리지침에 의거하여 별도의 부정수급 방지를 추진하는 것을 밝혔으나, 포괄적으로 상위 규정을 인용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별도의 부정수급 방지규정으로 보기에 한계가 존재함
-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 사례는 없음
 - 주관부처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 사례는 확인되지 않음
 - 사업 담당자는 보조사업의 집행점검을 통해 수행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소속 전문기관을 통해서도 사업비 관리를 추진하고 있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사업의 주요 목적은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에 재투입하여 중소기업 자문 및 멘토링, 청소년 교육을 추진하는 것임
- 동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일부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내역사업별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사업 성과관리체계의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사업방식변경을 권고함
 - 내역사업별 산출근거가 합리적으로 도출되었다는 근거가 미흡하여, 사업 규모의 합리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존재함
 - 실질 목표 대비 실적 확인에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성과관리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 일부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함

3-2 정책 제언

- 동 사업은 퇴직 과학기술인의 활용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타 사업과의 유사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활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 사업을 향후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지원’ 측면에서 강조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실측 가능한 새로운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지속적인 성과관리의 개선이 요구됨
 - '21년부터 사업목적 달성과정의 충실성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제시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 업 명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55.5
1. 보조사업의 타당성	43.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8.8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8.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1.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5.2
1-5.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2.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2.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 감축(합리적인 통신소비 환경조성 지원) · 동 사업은 내역사업에 따라 법적 근거 및 예산 산출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성과관리가 미흡함에 따라 2021년 ~ 23년 안에 일정 수준의 예산 감축이 필요함 · ‘합리적 통신소비 환경조성 지원’ 내역사업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며, 전체 세부사업의 목표를 고려하였을 때 3개 내역사업 간 연계성이 떨어짐 · 성과지표 재설정 등을 통해 사업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통신소비 환경조성 지원’ 내역사업의 경우 플랫폼 운영과 관련된 기준보조를 재설정 및 실행을 제고를 위한 관리 강화가 요구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동 보조사업은 「전기통신사업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및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에 의거하여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내역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명확하고 타당하게 제시되지 못함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인 제공 및 이용자의 편익과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번호체계 및 전기통신번호의 부여·회수·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수립된 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49조(회계 정리)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를 정리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관련되는 장부와 근거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회계 정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간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 내용을 검증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사실 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5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설립 및 사업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진흥협회"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진흥협회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 관련 교육훈련 등 인력개발 및 홍보활동
2. 정보통신 관련 기술동향 조사 및 신기술 보급활동
3. 정보통신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4. 국내외 정보통신 관련 기관과의 교류활동



5. 정보통신서비스 등과 관련된 이용자 보호 및 편의활동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③ 생략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 제19조(번호의 관리)** ①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사업자에게 부여하거나 특정목적으로 지정하는 번호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리한다.
- ② 제7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른 전화망, 데이터망 또는 텔렉스망 등의 가입자번호 또는 가입자 단말번호 중에서 제1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리하는 번호를 제외한 번호는 사업자가 관리한다.
-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번호를 이용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번호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별 식별번호와 사업자별 번호 부여 및 사용 현황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번호자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번호자원관리시스템은 사단법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관리·운용한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 제8조(공정경쟁의 촉진)**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사업의 지배력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으로 부당하게 전이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를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영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관련 장부와 근거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영업보고서의 내용을 검증하여야 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제3항에 따른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제3조(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에 기반한 공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방송통신을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과 지역 간 또는 계층 간의 균등한 발전 및 건전한 사회공동체의 형성
 2. 건전한 방송통신문화 창달 및 올바른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
 3. 방송통신기술과 서비스의 발전 장려 및 공정한 경쟁 환경의 조성
 4. 사회적 소수 또는 약자계층 등의 방송통신 소외 방지
 5. 방송통신을 이용한 미디어 환경의 다원성과 다양성의 활성화
 6. 투명하고 개방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방송통신 정책의 수립 및 추진



-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 ‘전기통신번호관리체계운영’ 내역사업의 경우 주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유 업무로서 전기통신번호자원의 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번호자원관리 시스템을 현행 보조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회계정보분석시스템 개선·운영’ 내역사업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회계 관련 자료를 주관부처로 하여금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에 의해 보조사업자의 사업범위와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법적 근거와의 연관성이 인정됨
- 다만, 이에 비해 ‘합리적인 통신소비 환경조성 지원’ 내역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할 근거가 모호함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규정은 방송통신 관련 공정한 경쟁 환경의 조성을 국가의 고유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반드시 보조사업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아님
- 동 사업은 국정과제와 연관성을 지니고 있음
 - 국정과제 31번 ‘교통·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 경감’에서는 가계통신비 인하 및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주요 과제목표로 하고 있음
 - 동 사업의 경우 통신사업자의 회계관리 및 통신요금제 추천,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한 전화번호 이용 관리 등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국정과제와의 연관성이 인정됨
 - 또한 동 사업은 공정경쟁 및 이를 통한 이용자보호를 주요 정책목표로 하는 상위 사업과도 연계성이 존재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사업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3가지 내역사업(전기통신번호관리체계 운영, 회계정보분석시스템 개선·운영, 합리적인 통신소비 환경조성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다만, 이러한 내역사업의 구성은 개별 내역사업은 별도의 목표가 존재하나, 이러한 3개의 내역사업이 하나의 보조사업으로서 어떻게 연계되는가에 대해선 충분한 근거가 미흡함
 - 주관부처는 공정경쟁(회계정보 분석시스템 개선·운영, 합리적인 통신소비 환경조성 지원) 및 이용자보호(전기통신번호관리체계 운영, 합리적인 통신소비 환경조성 지원) 라는 통신정책의 흐름에서 연계되고 있음을 밝힘



- 다만, 대국민 인식전환 및 홍보에 초점을 맞춘 1개 내역사업과 주관부처의 고유 업무를 민간보조를 통해 수행하는 2개 내역사업이 하나의 보조사업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계되었는지에 대해선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음
- 내역사업별 산출근거를 살펴보면, ‘전기통신번호관리체계 운영’, ‘회계정보 분석시스템 개선·운영’ 내역사업의 경우 연도별로 유사하게 구성되나, ‘합리적인 통신소비 환경조성 지원’ 내역사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변화의 폭이 크며 이는 전년 대비 예산이 감액된 결과임
 - ‘합리적인 통신소비 환경조성 지원’ 내역사업의 경우 '20년 기준 종합포털 구축 및 운영 관련 예산은 감소되었으나, 단말기 유통구조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관련 예산이 증액됨
 - 동 내역사업의 경우 플랫폼(스마트초이스)이 민간보조를 통해 구축되었음을 고려할 때, 플랫폼 기능 개선까지 정부가 지속적으로 보조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선 재검토가 필요함
 - 또한 내역사업별 산출근거는 비교적 자세히 제시되었으나, 특정 내역사업의 경우 연도별 내역사업의 예산규모가 변화하여야 할 필요성과 그에 대한 근거는 충분히 제시되지 않음
- 동 사업은 성과계획서 상 회계검증 시정조치율을 주요 성과지표로 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17~'19년)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음을 확인함
 - 다만, 주관부처의 제출자료를 통해 ‘전기통신번호관리체계 운영’ 내역사업의 성과지표는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음
 - 또한 ‘합리적인 통신소비 환경조성 지원’ 내역사업의 경우 주관부처는 보조사업의 성과지표로서 ‘스마트초이스 신규기능 개발 공정률’을 설정하여 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부가적으로 고객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음을 밝힘
 - 그러나 개발 공정률의 경우 구체적인 근거 및 자료는 제시되지 않음에 따라 확인이 어렵고, 고객만족도 조사는 실질적 성과지표가 아니라는 점에서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이와 더불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던 ‘합리적인 통신소비 환경조성 지원’ 내역사업에서 보조사업 성과지표를 단순 산출지표인 공정률로 설정하였다는 점 역시 성과지표 및 목표 설정에서 타당성을 확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동 보조사업이 상위 사업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기여한 부분이 단순히 정성적으로 제시됨에 따라 그 효과성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존재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보조사업은 통신 관련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 운영 및 통신요금제 추천, 단말기 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주관부처 및 관련 부처에서 수행하던 보조사업들과 차별성이 존재함
- 동 사업의 수혜자는 일반 국민을 포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불법사용 전화번호 이용정지의 경우 불법행위로부터 이용자인 국민의 보호가 가능하고, 이동통신 요금제 추천 및 할인반환금 조회, 결합상품 비교·추천 등의 정보제공 역시 직접 수혜자로서 국민에게 편익이 존재함
 - 다만, 동 사업 폐지 시 내역사업에 따라 재정적 손실의 수준은 차이가 존재함
 - 전화번호 이용정지 등은 범죄행위 예방 측면에서 폐지 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미 정보공유플랫폼이 구축된 상태에서 ‘합리적인 통신소비 환경조성 지원’ 내역사업은 폐지가 이루어지더라도 민간단체를 통해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사업은 50억 미만 소규모 보조사업으로 동 사업 예산 중 행정비용의 비중은 비교적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19년 기준 3개 내역사업의 평균 행정비용은 약 25% 수준임
- 동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상 기준보조율을 준수하여야 하는 유형의 사업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민간보조사업자에 100% 보조율을 적용함
 - ‘전기통신번호관리체계 운영’ 및 ‘회계정보 분석시스템 개선·운영’ 내역사업의 경우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100% 기준보조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부 타당성이 존재함
 - 그러나 내역사업에 따라선 100% 기준보조율을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예를 들어 스마트초이스 플랫폼의 경우 '20년 예산을 살펴보면 신규서비스 개발 및 홍보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동 내역사업의 보조사업자가 통신사업자 간 연합회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플랫폼 구축 이후 신규서비스 개발까지 정부가 100% 보조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충분한 근거가 부족함
- 또한 동 사업 중 ‘합리적인 통신소비 환경조성 지원’ 내역사업은 업무위탁비 잔금 발생에 따라 예산잔액이 이월됨에 따라 '19년 실집행률 부진(73.9%)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를 공모방식이 아닌 지정방식을 통해 선정하고 있음
 - ‘전기통신번호관리체계 운영’ 내역사업의 경우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에 의거하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관리·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회계정보분석시스템 개선·운영’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자로서 사업범위가 규정되었다는 점에서 지정방식의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합리적인 통신소비 환경조성 지원’ 내역사업의 경우,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태에서 지정을 통해 보조사업자(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선정이 추진된다는 점은 절차적 정당성 확보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함
- 동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 절차를 수행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보조사업자의 교부신청서 제출 등)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월별 예산 집행계획에 따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자금배정을 신청하여 집행함을 확인함
 - 교부금 처리 절차는 제14조(보조금 교부방법) 제1항의1에 의거하여 매월(1년에 12차례) 교부를 진행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 집행 및 관리를 추진하고 있음
 - 규정 제27조(보조사업 집행점검)에 의거하여 집행점검을 수행하고 있으며, 제28조에 의거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함
 - 주관부처는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를 통해서 사업 종료후 2개월 이내 외부 회계감사를 통한 사업 정산보고서를 제출받고 있음
 -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부정집행 등 세부점검을 실시하고 반환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 고지서 발송을 통해서 발생 이자를 포함한 전액을 반환받고 있음
 - 동 사업의 경우 불성실한 공시는 발생하지 않았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동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중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체계에 따라 관리를 추진함
 - 주관부처는 규정 제32조(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 의거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제33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 제34조(제재부가금 등 납부절차)의 규정을 준수함
 - 사업비의 정산보고, 사업비의 정산, 사업비 정산자료 제출, 정산결과 통보 및 반납 등을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 사례는 없음
 - 주관부처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함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사업은 예산 감축(합리적인 통신소비 환경조성 지원)이 요구됨
 - 동 사업은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이용자들을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서비스이용 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일부 그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합리적 통신소비 환경조성 지원’ 내역사업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며, 전체 세부사업의 목표를 고려하였을 때 3개 내역사업 간 연계성이 떨어짐
 - 또한 내역사업에 따라 연도별 예산이 변화하여야 할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고, 일부 내역사업의 성과지표만 관리될 뿐 실제 내역사업에 따라선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의 타당성 확인이 어려움에 따라 일정 수준의 예산 감축이 필요함
 - 이와 더불어 내역사업에 따라서 현재와 같이 100% 기준보조율을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주관부처의 재검토가 필요함

3-2 정책 제언

- 동 사업은 향후 사업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성과지표를 재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 등 사업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합리적인 통신소비 환경조성 지원’ 내역사업의 경우 플랫폼(스마트초이스) 구축 이후 신규 서비스 개발까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와 이에 따른 기준보조율 100% 적용의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함
 - 신규서비스 개발의 경우 민간사업자의 재원부담이 일부 소요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예를 들어 예산의 25%는 민간사업자 부담으로 수행하고, 정부는 75% 수준에서 지원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 동 내역사업의 경우 '19년 실행행율이 73.9%로 저조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관부처의 면밀한 관리 강화가 요구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사 업 명	방송장비산업인프라구축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44.7
1. 보조사업의 타당성	29.8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2.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0.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1.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5.8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4.9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2.9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	
총 평	· 단계적 폐지(2022년), 감축(2021년), 사업방식 변경 · 본 사업은 단계적 폐지가 필요하며, 일정 수준의 감축과 사업방식 변경도 필요함 · 본 사업의 목적과 내역사업의 변경사유와 수행내용을 고려하면 부처 직접 수행이나 민간위탁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단계적 폐지, 감축, 사업방식 변경으로 판정함 · 본 사업은 매년 내내역사업들의 종료와 함께 사업 목적과 내용이 지속적으로 변경되었으나 사업 변경 사유가 불분명하고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성과지표는 성과목표치를 낮게 설정하여 가시적 성과 평가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미국 시장의 선점이라는 목표와 성과가 추상적이고 불분명하여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됨. 따라서 보조사업의 성격과 내역사업의 수행내용을 고려할 때 보조금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보다는 직접수행이나 민간위탁 중심으로 사업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함 · 보조사업의 단계적 폐지와 감축, 사업방식 변경에 맞추어 중장기적 사업 전략 마련을 통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방송장비산업 성장기반 조성과 방송장비산업 해외시장 확대 등 2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며, 「전파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등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음
- 방송장비산업 성장기반 조성은 「전파법」 제8조(전파진흥기본계획)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이용의 촉진과 전파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전파방송기기 산업의 발전 등을 위하여 전파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세워야 한다’, 제65조(국제협력의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이용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기술이나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등에 규정되어 있음.
- 방송장비산업 해외시장 확대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6조(방송통신기술의 진흥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을 통한 방송통신서비스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에 규정되어 있음. 또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기본원칙)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정보통신 이용환경의 조성과 정보통신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법령을 제정·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적인 취급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등에 규정되어 있음
- 본 사업의 내역사업인 방송장비산업 성장기반 조성 및 방송장비산업 해외시장 확대는 보조금 지급의 근거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구체성이 다소 미흡함
- 본 사업의 목적은 글로벌 협력 및 차세대 방송서비스 모델 시범서비스 마련을 통해 국산 방송장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이며, 세부적으로는 중소기업 위주 국내 방송장비 및 전파 관련 기업 육성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 방송장비 산업 환경에 적합한 지원 체계 인프라 구축 및 적극적인 해외 시장 창출 및 국내 기업 진출 지원하는 것임



- 내역사업인 방송장비산업 성장기반 조성 사업의 목적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 방송장비 기업 발굴 및 역량강화 통한 경쟁력 확보 지원, 방송장비 레퍼런스 구축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임
- 내역사업인 방송장비산업 해외시장 확대 사업의 목적은 국산 방송장비 검증 통한 해외시장 레퍼런스 확보를 위하여 중소 방송장비기업의 해외 필드테스트를 지원하고, 해외방송사와의 기술협력 통한 국산 방송장비 해외시장 확대 및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임
- 보조사업의 목적이 매우 광범위하며, 매년 내내역사업의 종료와 더불어 사업 목적과 내용이 지속적으로 변경되었음. 사업 목적과 내용의 변경 사유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보조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함
- 사업목적과 수행내용의 변경사유는 ‘차세대 방송기술 도입기반 조성 사업’은 2017년 국내 UHD 도입 후 2018년에 사업이 종료되어 내용이 변경됨. 또한 방송장비 기업을 선정하여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는 ‘방송장비 히든챔피언 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은 2019년에 종료되었으며, 2020년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되는 미국의 차세대 방송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차세대 방송 서비스모델 및 방송장비를 실증하는 ‘차세대 융합 방송기술 실증 사업’으로 수행내용이 변경됨
- 사업 목적과 내용의 변경 사유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체 사업수행 내용이 국가 지원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면 사업 규모를 감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접수행 또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의 내역사업은 방송장비산업 성장기반 조성 및 방송장비산업 해외시장 확대 등이며, 해당 사업은 당초 계획 대비 사업 수행 내용이 변경되어 수행되었음
- 방송장비산업 성장기반 조성은 차세대 방송 서비스모델 및 방송장비 실증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세부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차세대 방송 시범서비스 통한 국산 방송장비 수출 연 5억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방송장비산업 해외시장 확대는 차세대 방송 시범서비스 지원, 해외 방송사 공동 필드테스트, 해외 전시회 개최 등을 세부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국산 방송장비 레퍼런스 구축 및 연 20억 이상의 수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성과지표는 방송장비 시험서비스 지원 건수와 방송장비 지원기업 수출계약액으로 설정하였으며, 계획대비 실적을 달성함. 다만 성과지표 중에서 방송장비 지원기업 수출계약액은 성과목표치를 낮게 설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시적 성과라고 평가하기에는 미흡함
- 성과목표는 실제 성과를 확인하고 평가하여야 의미가 있으며, 단순한 실적 달성이 가시적 성과를 증명하고 사업의 효과를 설명하지 않음. 따라서 방송장비 지원기업 수출계약액의 경우는 성과목표를 상향 조정하여야 성과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음
- 내역사업은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보조사업의 내역사업은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위탁 방식으로, 보조사업자인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추진하고 있으나, 변경된 사업 목적과 내용을 고려하면 부처 직접수행이나 민간위탁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업 변경 내역을 보면,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방송기술 도입기반 조성사업 등이 구축되어 사업이 진행되었음. 이를 통해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구축된 것으로 평가됨
- 따라서 향후 사업은 차세대 방송기술 도입기반을 공고히 하고 이를 기반으로 차세대 방송 신시장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접수행이나 민간위탁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임
- 2020년에 변경된 차세대 융합 방송기술 실증 사업은 미국 시장에서의 신뢰도 및 인지도가 향상되면 미국 전체시장의 30% 수준 이상까지 선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지만 그 목표와 성과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함. 따라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됨
- 본 사업과 타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사업은 확인되지 않으며, 내역사업 간의 중복성도 발견되지 않음
- 본 보조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방송장비기업으로 설정됨. 방송장비기업 경쟁력 강화와 방송장비기업 해외시장 레퍼런스 구축 및 수출 달성이라는 정책효과는 타당하나, 방송장비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혜 내용 및 범위를 구체화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내역사업별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한 보조금 규모에 대한 산출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내역사업별로 사업 예산이 배분되어 있음
 - '18년도 내역사업 중에서 실집행률이 다소 미흡한 방송장비산업 성장기반 조성 사업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불용액이 발생한 바 있음
- 내역사업별로 예산 배분 및 규모가 비교적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일부 내역사업의 경우에는 예산 배분 및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게 편성되어 있음.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예산으로 수행되는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하여 일정 수준의 감축이 필요함
 - 내역사업 중에서 방송장비산업 성장기반 조성은 예산 배분 및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게 편성되어 있어 사업 규모가 목표달성을 위해 적정수준으로 반영되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사업 규모의 적정성 검토하여 일정 수준의 감축이 필요함
- 본 사업은 「보조금법 시행령」의 기준 보조율을 적용받지 않음
 - 보조율 산정을 위한 별도의 기준 보조율은 없으며,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본 사업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직접적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사업의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의 규정은 없음. 다만 「전파법」과 동 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한국전파진흥협회를 민간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본 사업의 보조사업자인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전파방송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을 위한 특수법인(전파법 제66조 제2항)으로 객관성 및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적합함
- 한국전파진흥협회는 보조금 교부절차를 준수하고 시행하여 적정하게 사업을 관리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본 사업의 보조사업만을 별도 규정은 없음.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체 규정(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정보통신방송산업 관리규정)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예산 집행 및 반환, 회계 감사 등을 시행하고 관리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수급을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없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보조사업과 내역사업들은 보조금 지급 근거가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보조금 지급 근거는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본 사업의 목표와 내용은 광범위하며 매년 내내역사업들의 종료와 함께 사업 목적과 내용이 지속적으로 변경되었음. 다만 사업 목적과 내용의 변경 사유가 불분명하고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성과지표는 방송장비 시험서비스 지원 건수와 방송장비 지원기업 수출계약액 등이며, 이 중에서 방송장비 지원기업 수출계약액은 성과목표치를 낮게 설정하고 있어 가시적 성과로 평가하기에는 미흡함
 - 성과목표는 실제 성과를 확인하고 평가하여야 의미가 있으며, 단순한 실적 달성이 가시적 성과를 증명하고 사업의 효과를 설명하지 않음. 따라서 방송장비 지원기업 수출계약액의 경우는 성과목표를 상향 조정하여야 성과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음
- 본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고려하면 단계적 폐지 그리고 일정 수준의 감축과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함. 부처 직접수행이나 민간위탁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방송기술 도입기반 조성사업 등이 구축되어 사업이 진행되었음. 이를 통해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된 것으로 평가됨.
 - 따라서 향후 사업은 차세대 방송기술 도입기반을 공고히 하고 이를 기반으로 차세대 방송 신시장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접수행이나 민간위탁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2020년에 변경된 차세대 융합 방송기술 실증 사업은 미국 시장에서의 신뢰도 및 인지도가 향상되면 미국 전체시장의 30% 수준 이상까지 선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지만 그 목표와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미흡함
- 내역사업별로 예산 배분 및 규모가 비교적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일부 내역사업의 경우에는 예산 배분 및 규모가 상대적으로 낮게 편성되어 있음.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지 사업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 강화와 일정 수준의 감축이 필요함
-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 집행 관리, 부정수급 방지 대책은 적정하며,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없음



3-2 정책 제언

- 보조사업의 성격과 내역사업의 수행내용을 고려할 때 보조금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보다는 직접수행이나 민간위탁 중심으로 사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 보조사업의 단계적 폐지와 감축, 사업방식 변경에 맞추어 중장기적 사업전략 마련을 통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사 업 명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5.1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9.6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6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7.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7.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5.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정상추진 · 본 사업은 일부 내역사업의 실효성이 낮은 측면은 있으나 현재 남북관계의 변동성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으며, 보조사업과 관련된 법령이 명확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정상추진으로 판정함 · 남북방송통신국제컨퍼런스, 통일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 북한방송통신이용실태조사 등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된 남북방송통신교류 사업은 현재의 남북관계와 국제정세의 변동성이 크게 작용하는 사업임. 특히 현재와 같이 남북간 경색 국면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동질성 회복 및 통일의식을 제고를 위해 향후 남북 교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방식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다만 직접적으로 남북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임 · 현 성과지표가 정책만족도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는 다소 미흡함으로 향후 내역사업의 성과를 세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중장기적 성과지표 개발을 권고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방송법」, 「콘텐츠산업진흥법」 등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음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2조(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협력) 제1항은 ‘정부는 남북 간 방송통신 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다’, 제2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남북 간 방송통신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북한의 방송통신 정책·제도 및 현황에 관하여 조사·연구하여야 한다’, 제3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북 간 상호 교류 및 협력 사업과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항은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제23조(방송통신 국제협력) 제1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분야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항은 ‘정부는 방송통신콘텐츠의 국제적 공동제작 및 유통, 방송통신 관련 기술·인력 의 국제교류, 방송통신의 국제 표준화 및 국제 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3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분야와 관련된 민간부문에서 국제협력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제26조(기금의 용도) 제1항은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1호는 방송통신 관련 국제 교류·협력 및 남북 교류·협력 지원으로 명시하고 있음
- 「방송법」 제97조(방송의 국제협력)은 ‘정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외국의 방송관련기관·단체와의 국제교류, 방송프로그램의 공공제작, 방송전문인력의 상호교류 및 방송기술의 공동개발 등 국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1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지원) 제1항은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사업의 내역사업은 남북방송통신국제컨퍼런스, 통일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 북한방송통신이용실태조사, 방송공동제작협력강화 등이며, 내역사업에 해당하는 내용이 근거 법령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는 있다고 판단됨
- 본 사업의 목적은 남북방송통신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국가 간 공동제작협정 체결 추진을 통한 한류방송콘텐츠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목적이 명확하고 국가의 지원이 타당함
 - 내역사업인 남북방송통신국제컨퍼런스, 통일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 북한방송통신이용실태조사, 방송공동제작협력강화 등은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성이 있음
 - 본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한류확산 지원 및 방송의 사회적 책임 제고, 방송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등의 정부의 주요 정책방향과는 부합하여 국가 지원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남북방송통신국제컨퍼런스, 통일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 북한방송통신이용실태조사, 방송공동제작협력강화 등의 내역사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구성은 대체로 합리적임
-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었으며, 성과목표로 제시한 남북방송통신교류 정책만족도 및 방송공동제작협력강화 정책만족도는 계획대비 실적을 달성함. 다만 성과지표 측면에서 정책만족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의 성과를 세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평가 항목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내역사업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중장기적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함
 - 성과지표로 제시한 남북방송통신교류 및 방송공동제작협력강화에 대한 정책만족도 실적은 달성함. 이러한 지표들은 남북방송통신교류와 관련된 사업의 성과를 전반적으로 파악하는데 의미있는 지표이지만, 정책만족도 외에도 세부적으로 어떠한 성과가 달성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 평가항목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의미가 있으며,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 항목을 개발하기 위한 중장기적 노력이 필요함
- 4개 내역사업의 목표와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임
 - 남북방송통신국제컨퍼런스는 남북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제고 및 공감대 형성을 세부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남북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 개최를 추진함



- 통일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은 민족 동질성 회복 및 대국민 통일의식 제고를 세부 목표로 하고 있으며, 통일 관련 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을 지원함
- 북한방송통신이용실태조사는 남북 방송통신교류 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를 위한기초자료 활용을 세부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북한방송통신 이용실태조사를 수행함
- 방송공동제작협력강화는 한국 방송콘텐츠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세부 목표로 하고 있으며, 방송공동제작협정체결 추진, 방송공동제작 해외시장 조사, 방송 공동제작 국제컨퍼런스 개최를 추진함
- 보조사업의 내역사업은 구체적이며 목표가 명확한 편이나, 남북방송통신교류와 관련된 내역사업은 현재 남북관계와 국제정세 등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일부 내역사업은 목적과 내용이 불분명해 효과성을 측정하기 어려워 이를 제고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발휘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남북방송통신교류와 관련된 내역사업인 남북방송통신국제컨퍼런스, 통일방송프로그램제작 지원, 북한방송통신이용실태조사 등은 현재 남북관계의 변동성이 크며 남북방송통신교류가 정체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사업의 효과성을 검토하여 사업방식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
- 내역사업 중에서 통일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은 방송사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지원, 북한방송통신이용실태조사는 조사를 통한 북한방송통신 관련 자료 제공 등을 수행하여 그 성과를 측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업이 남북방송통신교류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지, 지원 규모와 사업방식이 합리적이며 타당성이 있는지, 또한 효과성이 있는지 등을 반드시 검토하여 세부적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에 포함된 내역사업은 사업의 목적인 남북방송통신교류 및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라는 목적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남북방송통신교류와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는 본질적으로 국제교류라는 성격을 가지므로 지자체 수행이나 개별 민간 수행 등의 기타 정책수단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다만 2018년 국회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수행방식이 민간보조 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사업 추진시 이를 고려하여야 함



- 본 사업과 타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사업은 확인되지 않으며, 내역사업 간의 중복성도 발견되지 않음
- 본 보조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방송통신 관련 학계 및 전문가, 프로그램 시청자, 방송통신 관련 사업자 등이며, 간접 수혜자는 일반 국민으로 설정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광범위함.
 - 다만 실수혜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요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사업의 지속 추진 필요성은 있음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내역사업별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한 보조금 규모에 대한 산출근거를 마련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됨. 또한 내역사업별로 사업예산이 배분되며, 예산 규모가 비교적 적절하게 구성되고 있음
 - 실행행률도 2017년 98.6%, 2018년 95.3%, 2019년 97.7%로 대체적으로 양호함
- 다만 통일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 사업의 경우 매년 TV와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1편씩 제작·방영하고 있으나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TV나 라디오 매체에 국한하지 않고 UCC 등 다양한 매체로 확대하여 다양한 세대 및 계층의 시·청취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
- 본 사업은 「보조금법 시행령」의 기준 보조율을 적용받지 않음
 - 보조율 산정을 위한 별도의 기준 보조율은 없으며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에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를 거쳐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본 사업을 통해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지를 일정 부분 인정할 수는 있으나, 통일방송프로그램의 시청률 수치나 방송공동제작협정체결현황 8건 등의 정량적 수치만으로는 직접적 기여도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및 관련 법령 등에 의거하여 보조사업 선정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계 법령 규정에 따라 별도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등 적절한 사업자 선정 관리를 하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의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 수행기관 선정, 실행예산 편성 및 교부결정 등에 의거하여 보조금 교부절차를 준수하고 시행하여 재원을 적정하게 교부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보조사업의 집행 과정, 보조금 정산 및 반환, 정보공시 의무 등을 적절하게 관리 및 감독하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의 집행관리, 보조사업의 적정한 정산 및 반납, 회계감사 내실화를 위해 정산보고서, 실적보고서, 검증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보조금 관련 절차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음
 - 동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정보공시 의무를 이행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및 관계 법령 규정에 의거하여 부정수급 관리하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조금 사용에 있어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 수행 배제 등의 조치를 이행하고 있으며, 사업 완료 후에는 사업비 집행실적을 점검하여 관리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건수 및 사례 등은 없으며, 수행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국무조정실 산하 출연연구기관으로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됨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보조금 지급 근거가 명확하고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보조사업에 대한 목적도 국가적으로 타당함
- 본 사업의 내역사업은 남북방송통신국제컨퍼런스, 통일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 북한방송통신이용실태조사, 방송공동제작협력강화 등으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구성되었으며, 세부 사업별 목표와 내용도 구체적임. 또한 사업비도 내역사업별로 적정 규모로 책정됨
- 성과목표 달성 측면에서 성과지표가 정책만족도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구체적인 사업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는 다소 미흡함으로 향후 내역사업의 성과를 세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중장기적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함
- 국제정세의 변동성이 크게 작용하는 사업으로 현재와 같이 남북간 경색국면 하에서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민족의 동질성 회복 및 통일의식을 제고, 향후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방식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으나, 보다 직접적으로 남북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함
- 특히 내역사업 중에서 통일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 북한방송통신이용실태조사 등은 남북관계의 변동성, 정책목표의 부합성, 지원규모의 적절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음
-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 집행 관리, 부정수급 방지 대책은 적정하며,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없음

3-2 정책 제언

- 4개 내역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중장기적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평가하는 방안을 권고함
- 남북방송통신교류와 관련된 내역사업들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의 개정으로 남북 간 상호 교류 사업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강화된 만큼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을 권고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사 업 명	방송평가기반조성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5.1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9.6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6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7.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7.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5.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정상추진 · 본 사업의 5개 내역사업은 사업추진 내용이 근거 법령에 적시되어 있으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4조에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음. 또한 사업의 목적과 실효성이 높으며 국정과제와 연계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정상추진으로 판정함 · 본 사업은 방송 평가와 공익성 제고를 위한 내역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됨. 또한 타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사업은 확인되지 않으며, 내역사업 간의 중복성도 발견되지 않고, 사업의 수혜자가 방송 시청자, 이용자, 일반국민, 방송 관련 학계 및 연구원 등 광범위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정책효과가 크다고 판단됨. 다만 성과지표가 가시적 성과를 파악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으므로 새로운 방송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함 · 향후 디지털미디어 및 방송 환경 변화에 부응한 사업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적 성과지표 개발을 권고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방송내용·편성·운영영역평가, KI시청자평가지수조사, 방송콘텐츠경쟁력평가,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방송사업자편성현황조사 등 5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송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등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음
- 방송내용·편성·운영영역평가는 「방송법」 제17조(재허가 등) 제3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할 때에는 제10조 제1항 각호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31조(방송평가위원회) 제1항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KI시청자평가지수조사는 「방송법」 제3조(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별표 평가항목 및 척도) ‘1. 지상파방송사업자(TV)의 방송통신위원회 프로그램 질 평가(65점/700점 만점), 6.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통신위원회 프로그램 질 평가(55점/600점 만점)’에 명시되어 있음
- 방송콘텐츠경쟁력평가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2조(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유통 등 지원) 제1항 ‘정부는 방송통신콘텐츠가 다양한 방송통신 매체를 통하여 유통·활용 또는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및 제2항 ‘정부는 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 지원, 유통구조 개선 및 건전한 이용 유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방송통신콘텐츠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방송매체이용실태조사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0조(방송통신 지표·지수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서비스 등 방송통신 수준의 국제 비교, 방송통신 이용 등과 관련된 종합적 정보 제공, 관련 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방송통신과 관련된 지수(指數) 및 지표(指標)를 개발하여 공표할 수 있다’ 및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1조(통계의 작성·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발전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방송사업자편성현황조사는 「방송법」 제83조(방송내용의 기록·보존) 제1항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일지에 방송내용(방송 프로그램 및 방송광고를 포함한다)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송 실시결과를 방송후 1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이외 관계 법령(방송법 제69조, 제71조, 제72조 등)에 방송사업자 편성관련 법령이 명시되어 있음
- 본 사업의 내역사업(방송내용·편성·운영영역평가, KI시청자평가지수조사, 방송콘텐츠경쟁력 평가,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방송사업자편성현황조사)은 해당하는 내용이 근거 법령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으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4조(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와 제26조(기금의 용도)에 보조금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음
- 본 보조사업의 목적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국정과제(70-3, 70-4)와의 연계성도 높다고 판단되어 국가 지원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방송 내용·편성·운영영역평가, KI시청자평가지수조사, 방송콘텐츠경쟁력 평가 등의 내역사업의 목적은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와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자 노력을 유도하여 시청자 권익보호와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기여 등으로 목적이 구체적이고 명확함
-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방송사업자편성현황조사 등의 내역사업의 목적은 편성규제정비 및 효율적인 방송 정책 수립에 활용하여 행복한 방송통신 정책 마련에 기여 등으로 목적이 구체적이고 명확함
- 미디어산업 성장과 균형발전, 미디어 상생환경 조성 및 방송광고시장 합리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정과제(70-3, 70-4)와의 연계성도 있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5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체로 합리적임.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었음
- 방송통신위원회의 성과계획서에 근거한 성과지표인 방송평가 만족도는 계획대비 실적을 달성함
- 다만 성과목표 달성 측면에서 성과지표가 방송평가 만족도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의 성과를 세부적으로 확인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됨



- 성과지표로 방송평가 만족도는 계획 대비 달성도(100% 이상)가 높은 편이라 판단되나, 이 성과지표만으로 세부 5개 내역사업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세부 내역사업별로 가시적 성과를 파악하기에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의미가 있고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 목표와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함

○ 5개 내역사업은 명확하고 구체적임

- 방송내용·편성·운영영역평가는 방송사업자의 방송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공개 및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반영함으로써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됨
- KI시청자평가지수조사는 시청자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를 공개 및 방송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수행됨
- 방송콘텐츠경쟁력평가는 방송콘텐츠 제작역량평가 결과를 공개 및 제작지원 심사시 반영함으로써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됨
-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는 방송매체에 대한 수용자 인식과 시청행태의 변화를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효율적 수용자 정책 수립에 활용됨
- 방송사업자편성현황조사는 방송사업자의 편성실태, 방송편성 규제의 산업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편성규제 정책 개선 시 활용됨

○ 내역사업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하여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됨

- 보조사업의 내역사업의 성과는 방송사업자와 방송분야 학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평가 만족도를 중심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각 사업의 조사결과가 정책자료로 활용되거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에 포함된 내역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고려하면 보조금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국정과제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면 지자체 수행이나 개별 민간 수행 등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본 사업은 타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사업은 확인되지 않으며, 내역사업 간의 중복성도 발견되지 않음



- 본 보조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방송 시청자, 방송매체 이용자 등인 일반국민이며, 간접 수혜자는 방송관련 학계 및 연구원, 미디어 관련 학계, 전공 학생 등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수혜 내용이나 범위가 광범위하고 정책효과가 크다고 판단되어 사업의 지속적 추진 필요성이 있음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내역사업별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한 보조금 규모에 대한 산출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내역사업별로 사업예산이 배분되고 예산 규모도 비교적 적절하게 구성되고 있음
 - 실적행률도 2018년 98.7%, 2019년 99.2%로 매우 양호함
- 내역사업별로 예산 배분 및 규모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일부 내역사업의 예산 배분 및 규모가 상대적으로 낮게 편성되어 있음
 - 내역사업 중에서 방송사업자편성현황조사는 예산 배분 및 규모가 상대적으로 낮게 편성되어 있음
- 본 사업은 「보조금법 시행령」의 기준보조율을 적용받지 않음
 - 보조율 산정을 위한 별도의 기준 보조율은 없으며,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본 사업을 통해 ‘윤리적 상생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과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지는 일정 부분 인정할 수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사업의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어 적정한 사업자 선정 관리를 하고 있음
- 본 사업의 보조사업자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보조금법 제2항에 의거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보조금 교부절차를 준수하고 시행하여 적정하게 사업 관리 및 감독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본 사업의 보조사업만을 별도 규정은 없으나,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사업의 집행 관리 및 감독하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의 집행관리, 보조사업의 적정한 정산, 회계감사 내실화를 위해 정산보고서, 실적보고서, 검증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보조금 관련 절차를 적절하게 관리 및 감독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관계 법령 및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부정수급을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없음
-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부정수급 방지대책, 보조금 집행 점검 및 정산, 회계감사 등의 조치를 이행하고 관리함
-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건수 및 사례 등은 없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보조금 지급 근거가 명확하고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음
- 본 사업은 방송내용·편성·운영영역평가, KI시청자평가지수조사, 방송콘텐츠경쟁력평가,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방송사업자편성현황조사 등 5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사업 목표와 내용이 합리적이며 국정과제와의 연계성도 있어 국가 지원이 타당함
- 보조사업의 효과성 측면에서 성과지표가 ‘방송평가 만족도’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러한 성과지표 만으로는 사업별 가시적 성과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특히 방송 및 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사업의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또한 내역사업별로 예산 배분 및 규모가 비교적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음
-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 집행 관리, 부정수급 방지 대책은 적정하며,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없음

3-2 정책 제언

- 세부 내역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중장기적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평가하는 방안을 권고함
- 방송 및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응한 방송평가, 편성현황 분석 및 이슈 대응, 조사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 업 명	우수기술사 육성관리 지원사업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58.9
1. 보조사업의 타당성	42.4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3.2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5.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18.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5.2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6.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1.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감축(업적기반 통합 경력관리) · 동 사업 관련 법적 근거와 비교하여 볼 때, 내역사업 구성의 합리적 근거가 불충분함에 따라 2021년 ~ 23년 안에 일정 수준의 예산 감축이 필요함 · 기술사법에서 민간보조사업자에 위탁 가능한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민간보조사업자 수행 업무는 위탁 가능한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으며, 내역사업의 산출근거를 명확히 확인하는데 한계가 존재함 · 또한 동 사업은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및 실질적 성과 중심의 성과지표로의 개선이 요구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우수기술사 육성관리 지원사업은 「기술사법」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나, 동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로서 타당성은 미흡함

<기술사법>

제3조의2(기술사제도발전심의회) ① 기술사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기술사제도발전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 직무의 조정
2. 제5조에 따른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3. 제5조의5에 따른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4.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른 기술사자격의 상호 인정에 필요한 자격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
(이하 생략)

제5조의4(근무처와 경력 등의 신고와 관리) ① 기술사는 근무처·경력 및 학력 등(이하 “근무처 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하 생략)

제5조의5(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사의 효율적인 활용·관리와 국가 간 기술사자격 상호인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술사의 근무처·경력·학력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20조(권한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권한이나 업무를 제14조에 따른 기술사회나 기술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
2. 제5조의4에 따른 근무처 등의 신고의 수리
3. 제5조의5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4.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5. 제8조에 따른 등록 사항의 변경, 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수리
6. 제11조의2에 따른 사무소등록기술사의 실적관리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이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법적 근거의 타당성이 낮은 원인으로는 동 사업 내역사업이 관련 법령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한 범위 외 영역까지 다루고 있다는 점임

「기술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권한의 위탁이 가능한 업무는 제1호부터 제7호에 한정되어야 하며, 동법 시행령에서도 위탁기관으로서 기술사회에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한정

<기술사법 시행령>

제26조(권한의 위탁 등) ① 법 제2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제기술사자격인정을 위한 심사 요청의 수리 및 국제기술사자격 인정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와 법 제5조의7제2항에 따른 기술사등록증 발급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법 제5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업무(제15조에 따른 교육훈련 실적의 검토와 교육훈련이수확인증의 발급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다)를 제14조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에 위탁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술사회에 위탁한다.

1. 법 제5조의4에 따른 기술사의 근무처·경력 및 학력 등의 신고의 수리

2. 법 제5조의5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2의2. 법 제5조의7제2항에 따른 기술사등록증 발급에 관한 업무

3.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4. 법 제8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 휴업 또는 폐업신고의 수리

5. 법 제11조의2에 따른 사무소등록기술사의 실적관리

6. 삭제 <2014. 11. 28.>

7. 제15조에 따른 교육훈련 실적의 검토와 교육훈련이수확인증의 발급에 관한 업무

8. 제1항의 업무

(이하 생략)

- 즉 동법 시행령에 따른 동 사업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위탁될 수 있는 업무범위와 비교할 때, '기술사 육성 및 활용체계 지원*(1내역)'과 '업적기반 통합 경력관리**(3내역)' 등 일부 내역사업의 법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음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기술사 실태조사, 자격종목 통폐합 추진 등

** 통합업적관리시스템 구축, 타 경력기관 경력시스템과의 연계 등

-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 인력양성을 상위 정책적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사업과 상위 사업 및 정책목표 간 연관성은 일부 인정됨

- 다만, 국정과제의 연관성은 해당사항 없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상기 법적 근거의 타당성에서 논의되었듯이, 법적 근거와의 연관이 모호함에 따라 동 사업의 내역사업 구성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함
 - 동 사업은 ‘기술사 육성 및 활용체계 지원’, ‘기술사 종합관리체계 구축·운영’, ‘업적기반 통합 경력관리’ 등 3가지 내역사업으로 구성
 - 기술사 육성 및 활용체계 지원 내역사업의 경우 위원회 운영 및 정책지원 활동, 실태조사 등으로 구성되고, 기술사 종합관리체계 구축·운영 내역사업은 시스템 유지·보수 및 DB 구축, 정비비용 등으로 구성, 업적기반 통합 경력관리 내역사업은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구성되어 있음
 - 법적 근거에 비추어 볼 때, ‘업적기반 통합 경력관리’ 사업은 동 사업을 통해 추진하여야 할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에 따라 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마련이 필요함
 - 업적기반 통합 경력관리 내역사업의 경우 ‘20년 구축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후 내역사업 운영 시 시스템 고도화(보안 강화, 관리자 프로그램 고도화 등)를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이 소요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명확한 산출근거 제시가 요구됨
- 동 사업은 성과계획서 상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 만족도를 주요 성과지표로 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17~19년)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음을 확인함
 - 다만, 최초 동 지표의 목표치 설정의 타당성은 확인하기 어려움
 - 또한 보조사업 성과지표로는 시스템 만족도와 더불어 기술사 업적통합관리시스템 구현, 기술사활용도 건수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당초 목표치를 달성하였음
 - 그러나 업적통합관리시스템 구현 지표는 일련의 공정율과 관련된 지표라는 점에서 실제 시스템이 구축되는 ‘20년 이후부터는 시스템 활용도 등으로 성과지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기술사활용 건수의 경우 위원·전문가 추천 건수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동 사업 종합 성과분석 보고서에서 제안되어 있는 성과지표와 차이가 존재하며 실제 어떠한 역할로 추천되는 것인지 정의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목표치 설정의 합리적 근거 확인에 한계가 존재함
- 다만, 과학기술자 인력활용이라는 상위 단위사업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우수기술사의 관리를 추진하는 것은 동 사업이 상위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일부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사업은 「기술사법」에 의거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주관부처의 고유 업무임
 - 즉 동 사업과 관련된 유사·중복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현 DB에 등록된 약 50,000명 이상의 우수기술사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함
 - 동 사업을 통해 약 50,000여명의 기술사들이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자경등록, 경력 신고 및 관리, 실적증명서 발급 등 정보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동 사업 수혜내용이며, 동 수혜 내용은 상대적으로 추정이 명확함
 - 다만, 만약 동 사업을 통한 정보서비스의 제공이 단절될 경우, 각종 신고 및 관리, 제증명 발급 등 위탁업무 처리에 문제가 발생하여 일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사업은 50억 미만 소규모 보조사업으로 '19년 기준 동 사업 예산 중 행정비용의 비중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됨
 - '20년 기준 예산 805백만원 중 행정비용 비중은 약 28.1%로 추정되었음
- 동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상 기준보조율을 준수하여야 하는 유형의 사업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민간보조사업자에 100% 보조율을 적용함
 - 다만, 동 사업에서 100% 보조율을 적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근거는 충분히 제시되지 않음에 따라 현행 보조율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움
- 동 사업의 연도별 실적행률이 '17년부터 '19년까지 평균 98.7%로 분석됨에 따라 동 사업의 경우 실적행률 부진 등의 문제점은 크게 발견되지 않았음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주관부처는 동 사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 유지'를 제시하였으며, 동 사업과의 연관성이 일부 인정됨
 - 이는 우수기술사가 각종 공공인프라 사업의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게 될 경우, 이를 통해 공공안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임
 - 실제 안전관련 실무를 수행하는 기술사의 역량은 공공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사업은 공모절차가 아닌 지정위탁을 통해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함
 - 다만, 현행 보조사업자인 한국기술사회는 「기술사법」 제정에 따라 설립된 단체라는 점에서 기술사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이 높은 기관임이 인정됨
 - 또한 동 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2017-7호, 기술사 신고 등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에 의거하여 지정과정이 추진되었음을 확인함
- 동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및 과학기술진흥기금 운영관리지침 등에 의거하여 지정된 보조사업자에 사업비를 교부하고 있음
 - 사업비 교부 및 관리는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실시함
 - 사업비 교부 절차는 사업계획서 승인 요청, 승인 및 교부통지, 협약체결, 사업비 지급 요청 및 지급 등 관련 지침에 의거하여 진행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동 사업 집행관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및 과학기술진흥기금 운영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진행됨
 - 즉 과학기술진흥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이 운영됨
 - 실제 사업관리는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연도별로 추진되며, 사업관리교육(수시), 결과보고서·사업비정산보고서 및 자체성과평가보고서 제출(매년 3월), 정밀정산(매년 5월) 등의 절차를 준수함을 확인하였음
- 동 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해 주관부처는 정기 모니터링(연 2회), 수시 점검회의, 종합평가(연 1회) 등을 추진함
 - 매년 5월 전문기관 주관으로 정밀정산을 추진하며, 집행 상 문제 발견 시 과학기술진흥기금 운영관리지침에 의거하여 금액 회수 조치를 실시
- 동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사업비, 교부 신청 정보 및 사업계획 등 관련 정보를 불이행 없이 공시하였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관부처는 사업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 고시를 실시함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주관부처는 부정수급 관리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진흥기금 운영관리지침, 과학기술진흥기금 성과평가 및 관리지침 등을 활용하고 있음
 - 사업비의 정산보고, 사업비의 정산, 사업비 정산자료 제출, 정산결과 통보 및 반납 등을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정산 및 회계감사 등에 관한 규정 역시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 사례는 없음
 - 주관부처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 사례는 확인되지 않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주관부처는 규정 준수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수시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 1회 전년도 사업비 정밀정산 추진을 통해 자체 사업관리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함
 - 동 사업이 추진된 '08년 이후 부정수급 사례는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사업은 우수기술사에 대한 정보서비스 제공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나, 관계 법령과의 연관성 미흡으로 인해 내역사업의 합리적 구성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이에 따라 동 사업에 대해 일정 수준의 예산감축(업적기반 통합 경력관리, 2021년)이 요구됨
 - 관련 법적 근거로서 기술사법에서 민간보조사업자에 위탁 가능한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민간보조사업자 수행 업무는 위탁 가능한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으며, 내역사업의 산출근거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존재함

3-2 정책 제언

- 일부 내역사업의 경우 법적 근거와 연계성이 미약하다는 점에서 향후 구체적인 법적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는 보완이 필요함
- 또한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의 개선이 요구됨
 - 동 사업은 성과계획서 상 주요 성과지표로서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 만족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17~19년) 성과목표 달성을 확인하였음
 - 다만, 최초 동 지표의 목표치 설정의 타당성은 확인이 어려우며 일부 보조사업 성과지표의 경우(업적기반 통합 경력관리 내역사업) 공정을 관련 지표를 활용하였음
 - 물론 동 내역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이 초기임을 고려할 때, 공정을 관련 지표를 활용한 것의 한계는 인정되나, 동 사업 관련 실질적 성과지표를 활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업적통합관리시스템의 경우 공정을 관련 성과지표 대신 시스템 구축이 완료 되는 '20년 이후부터는 시스템 활용도 등으로 성과지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이와 더불어 동 사업 종합 성과분석 보고서 상 효과적인 성과지표들이 제안되고 있는 바, 이미 제안된 성과지표의 재검토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성과지표로 개선이 요구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사 업 명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환경조성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64.4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0.4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6.4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5.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4.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4.0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4.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2.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변경 ·동 사업은 사업 추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사업방식변경이 요구됨 ·내역사업의 경우, 일부 활동 간 유사성이 존재함 ·내역사업 중 패널조사와 이용자행태 조사방법론(알고리즘 인식 및 효과 실험)은 정책 설계를 위한 근거자료 마련이라는 점에서 유사성이 존재하여, 별도 내역사업으로 추진 하기 보다는 내역사업 간 통합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요구됨 ·따라서 기존 4개 내역사업을 특징과 사업성격에 따라 통합 및 재구성하여 보다 효율 적인 추진을 도모하는 것이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필요함 ·또한 현행 성과지표는 전문가들의 만족도에 국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이용자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단기적으로 요구되며, 중장기적으로는 정책기여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적 지표 제시가 요구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동 사업은 지능정보기술의 확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이슈에 대해 이용자 보호 방안 도출을 시도하고, 이용자 중심의 정책수립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 동 사업의 주요 법적 근거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관련 법령에서는 정보통신 이용자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개인정보 보호 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사업 목적과 일부 연관성이 존재하며, 이용자 보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제성을 부여하였음
 - 다만, 이는 주관부처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즉 이러한 법적 근거가 동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타당한 근거로 보기에는 한계가 존재함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1조(위원회의 소관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방송광고정책, 편성평가정책, 방송진흥기획, 방송정책기획, 지상파방송정책, 방송채널정책에 관한 사항
 2. 조사기획총괄, 방송통신시장조사, 방송통신이용자보호, 시청자 권익증진, 개인정보보호윤리에 관한 사항
 3.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1.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2. 방송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 제정 및 보급 사업
 3. 방송통신 관련 인력 양성 사업
 4.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5.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 5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공익적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
 6. 방송통신콘텐츠 제작·유통 및 부가서비스 개발 등 지원
 7.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및 미디어 교육 지원
 8.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사업
- (이하 생략)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안정적 관리·운영과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등(이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통신망에 관련된 기술의 개발·보급
 2. 정보통신망의 표준화
 3. 정보내용물 및 제11조에 따른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 활성화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 인터넷 이용의 활성화
 6.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처리·보관·이용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그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보급
 - 6의2.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위험성 및 결과, 이용자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7.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
 8.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
 9. 그 밖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이하 생략)

- 동 사업은 '안전한 인터넷 활용기반 구축'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 등과 연관성이 존재함
- 동 사업은 사회변화 및 이용자 행태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보호방안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연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신규 ICT 서비스 확산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 등 이용자 보호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국정과제 33번과 동 사업 간에는 연관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사업은 4가지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현행 내역사업 구성의 합리성 측면에서는 재검토가 필요함
 - 동 사업은 ‘이용자 패널데이터 구축 및 조사’,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행태 조사방법론 개발’, ‘지능정보사회 이용자정책포럼’, ‘AI·데이터 윤리 정책개발’* 등 4가지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 * AI·데이터 윤리 정책개발은 '20년 신규 내역사업임
 - ‘이용자 패널데이터 구축 및 조사’는 전국 차원의 패널조사 실시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용자 행태 조사방법론 개발 및 실증’은 패널조사 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이용자 행태 조사를 위한 방법론 개발을 주요 목적으로 함
 - * 동 내역사업의 경우 산학관련 대상 심층조사를 통한 심층 이슈 도출까지 포함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정책포럼’은 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해 분석결과 등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협의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AI·데이터 윤리 정책개발’의 경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이용자 역량강화 방안 수립 등을 추진함
- 재검토가 필요한 것은 내역사업 간 유사성으로 인해 사업 간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임
 - 이용자 패널조사의 경우 지속적 추진이 일부 인정되나,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행태 조사 방법론 개발’의 경우 알고리즘 효과 실험 연구를 별도 내역사업으로 추진하기보다 정책설계를 위한 근거자료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내역사업으로 통합하는 것이 요구됨
 - 또한 ‘지능정보사회 이용자정책포럼’*과 ‘AI·데이터 윤리 정책개발’**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네트워크 및 플랫폼 구축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유사성이 존재함
 -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정책 민관협의회 운영,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
 -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연구 및 정책지원, 이용자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주관부처는 ‘지능정보사회 이용자정책포럼’의 민관협의회는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의 실질 이행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검증, ‘AI·데이터 윤리 정책개발’의 플랫폼 구축 개발은 동 사업 성과물의 활용을 위한 환류창구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음을 소명함
 - 그러나 정책네트워크 구축 등 일부 내역사업 간 유사성이 존재하는 부문이 존재함에 따라 내역사업 구성 합리성 확보를 위해 내역사업 간 재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요구됨
- 동 사업의 주요 성과지표는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관련 전문가의 만족도로서 측정되며, 각 연도별 성과지표는 목표치를 상회하여 달성하였음을 확인함



- 주관부처는 동 사업에 대해 미래 이슈 발굴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정책기여도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전문가 대상*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였음을 밝힘
 - * 조사대상 : 동 사업에 자문 형식으로 참여하였던 전문가 50% + 외부 전문가 50%
- 동 사업의 경우 기초조사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주관부처의 성과지표 설정의 한계는 일부 인정됨
- 다만, 이용자 보호 전문가의 만족도가 실제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이용자의 만족도를 대변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없으며, 목표치 산출근거 역시 단순히 전년 대비 3% 상향시킨 것의 근거는 명확하지 않음
 - 즉 전문가만의 관점이 아닌 일반 이용자의 만족도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며, '20년 신규 내역사업으로 시민참여 참여 채널을 구축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과지표 설정에서 일반 이용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단기적으로 현행 만족도 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만족도와 같은 정성적 지표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정량적 지표 제시가 요구됨
- 또한 현행 성과지표 산식을 살펴보면 내역사업에 따라 '50%·30%·20%*'로 가중평균화하여 만족도를 산출하고 있으며, 이는 내역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중치가 적용된 결과임
 - * 이용자패널데이터 구축 및 조사(50%) + 이용자 조사방법론 개발(30%) + 이용자정책포럼(20%)
- 내역사업의 예산규모를 바탕으로 성과지표 가중치 설정과정의 타당성은 일부 인정되나, 단순히 정책설계를 위한 경험적 자료 산출 관련 내역사업의 가중치가 높게 적용되는 것은 향후 개선이 필요함
- 동 사업은 지능정보기술사회에서 실제 이용자 중심의 정책설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설계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설정하는 것 역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 동 사업 추진을 통해 이용자의 구체적 인식조사가 발표되었으며 통신 이용자보호 종합계획('19. 2. 13)에 정책사항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동 사업은 상위 정책목표 달성에 일부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됨
 - 또한 주관부처는 동 사업을 바탕으로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을 발표하였다는 점에서 그 기여가 인정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사업은 지능정보기술로 인한 사회 변화와 이로 인한 이용자 행태 변화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이를 통해 이용자 보호 방안을 연구하는 것으로, 주관부처에서 기존 수행하고 있는 보조사업들과 차별성이 존재함
- '17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18년 예산검토보고서를 통해 동 사업은 기초·조사 연구 성격의 사업이라는 점이 논의된 바 있음
- 동 사업의 보조사업자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18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육성사업(국무총리실 소관)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 연구'를 신규 반영하였으며, 3년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적 변화의 수용성과 이를 반영한 법률 정립 방안을 마련하는 계획을 제시하였음
- 즉 주관부처 내 보조사업과 비교하여 동 사업은 차별성을 가지고 있으나, 동 사업의 보조사업자의 고유사업과는 일부 중복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면밀한 관리 방안이 요구됨
- 동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대안이 도출되는 것을 가정할 경우,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혜자는 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대다수 이용자이므로 수혜의 범위가 넓음
- 특히 지속적으로 지능정보기술이 발전하는 것을 고려할 때, 현재 인지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부작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동 사업의 추진 필요성이 인정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사업은 총 예산규모가 50억 미만인 소규모 민간보조사업이나 실제 사업비 중 경상경비의 비중이 49.5%를 상회하여, 보조사업 규모 대비 행정비용의 비중이 상당히 높음
- 다만, 동 사업은 기초·조사 연구로서의 성격이 강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인건비 및 업무추진 관련 예산 비중이 높다는 점은 일부 그 필요성이 인정됨
- 동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상 기준보조율을 준수하여야 하는 유형의 사업이 아니며, 민간보조사업자에 100% 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음



- 다만, 실제 보조율에 대해서 규정한 바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보조사업자에 대해 100%의 보조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근거는 확인하기 어려움

- 동 사업은 연도별 실집행률이 99%를 상회하는 것을 확인하였음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동 사업은 지능정보사회에서 이용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보호라는 측면에서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사업은 별도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조사업자로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함
 -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는 한계가 존재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보조사업자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방송통신정책 및 지능정보기술 관련 정책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온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이라는 점에서 전문성을 확보한 기관이며 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관이라는 점이 인정됨
- 다만, 보조사업자 지정 이후에는 방송통신위원회 관리지침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에 의거하여 보조금 교부를 추진하였음을 확인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주관부처는 보조사업 집행을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준용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을 마련하였음
 - 다만, 동 사업 집행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관리지침을 마련하진 않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동 사업을 관리하고 있음
 - 관리지침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자로부터 매년 7월 중간보고서를 제출받고, 최종보고서의 경우 차년도 1월에 제출받아 정기적으로 사업의 집행상황을 점검함
 -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를 포함한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으며, 증빙서류 및 사업비 불인정 사유, 사업비의 부당 집행에 따른 반납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동 사업의 경우 관리지침에 따라 정보고시 사항 및 기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교부 신청정보 및 사업계획 등의 정보를 불이행 없이 공시하였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주관부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준용한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부정수급 관리를 추진하고 있음



-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반환 절차를 갖추었으며, 제재부가금 부과 및 부과기준 등을 규정함
- 주관부처 사업담당자는 지침에 따라 부정수급 점검결과에 대한 자체점검을 매년 시행함
- 또한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 사례는 없음
- 사업 담당자는 매월 사업비를 교부하며, 사업비 교부 전 이전 교부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점검함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사업은 사업방식변경을 통해, 내역사업 간 유사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요구됨
 - 동 사업은 4개 내역사업 활동 간 유사성이 존재함
 - 내역사업 중 ‘이용자 패널데이터 구축 및 조사’ 및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행태 조사방법론 개발’은 정책설계를 위한 경험적 근거자료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별도 내역사업으로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는 것이 타당함
 - 또한 민관협의회 및 글로벌 정책협의회와 같은 활동은 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분류가 가능하므로, 이러한 활동 역시 하나의 내역사업으로 재편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임
- 즉 기존 4개 내역사업을 그 성격과 특성에 따라 통합 및 재구성하여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향후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함

3-2 정책 제언

- 상기 제시된 사업방식변경을 추진함과 동시에 동 사업은 성과지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동 사업의 경우 기초조사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성과지표 설정의 한계는 인정되나, 이용자 보호 전문가의 만족도를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이용자 만족도를 대변하는 지표로 보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함
 - 단기적으로 현행 만족도 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만족도와 같은 정성적 지표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정량적 지표 제시가 요구됨
 - 또한 현행 성과지표 산식의 경우 내역사업의 규모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함에 따라, 이와 같은 가중치 적용이 타당한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함
 - 즉 단순히 정책설계를 위한 경험적 자료 산출 관련 내역사업의 가중치가 높게 적용되는 것은 충분한 타당성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개선이 요구됨

기관별 · 사업별 평가의견서

외교부

공공외교역량강화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외교부
사 업 명	공공외교역량강화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62.0
1. 보조사업의 타당성	48.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10.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5.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18.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4.0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4.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 감축, 사업방식 변경 · 동 보조사업은 내역사업 내용과 사업 효과성이 명확하지 않음. 현재 설정하고 있는 성과지표가 사업 내용을 대표하지 못하며 수혜범위 제시가 모호하여 사업효율성을 확인할 수 없음. 내역사업의 효과성이나 수혜범위가 불명확하고 예산 추계의 명확한 근거 등이 제시되지 않아 사업 수행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으로 2021년 ~ 23년 안에 일정 수준의 감축이 필요함 · 성과지표는 세부사업 참여자 만족도는 사업목표 달성을 확인하는 지표라고 보기에 미흡하여 사업성과를 구체화하고 가시화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을 적극적으로 해야할 필요함 · 사업자 선정 및 집행 계획 관련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자체 규정 마련이 필요함 · 사업성과 및 수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관리가 노력 필요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동 보조사업은 「공공외교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공공외교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민간부문의 공공외교활성화 활동 중 하나로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는 타당함

< 공공외교법 제9조 제2항 >

국가는 민간부문의 공공외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동 보조사업은 민간 외교 활성화를 통해서 다양한 대외협력 채널을 형성하고, 외교 외연 확대를 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는 목적을 가지는 사업으로 국가 지원이 타당함
- 현 정부의 국정과제 「96: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민간부문 공공외교활동을 활성화를 통해 민간 공공외교 네트워크 추구에 기여하고 새로운 공공외교 정책 방향에 기여이므로 동 보조사업과 연계성이 있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역사업 목적, 내용은 관련성이 있으며 적절하나 구체적 사업내용이 적시되지 않아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었고 평가하기에 미흡함
 - 현 보고서에는 내역사업명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역사업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사업 내용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어려움으로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 성과측정 지표는 내역사업의 성과를 대표하거나 가시화하는 지표라고 보기 어려움



- 내역사업의 참여자 만족도 지표는 내역사업의 성과를 제시하는 지표라고 보기 어려움. 해당내역 사업에 전문가 및 관련자가 참여하여 국가 간 활동으로 나타나 성과를 지표화하는 하는 사업목적에 부합됨으로 성과 지표 검토가 필요함
- 내역사업별 성과지표를 제시하거나 내역사업을 포괄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여 사업성과를 가시화해야만 국고 보조사업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보조사업 수혜자가 명시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아 수혜자 및 범위를 파악할 수 없음
 - 동 보조사업의 직접 수혜자를 일반 국민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직접 수혜자는 해당 민간 단체의 외교 활동 기관 종사자 및 외교 활동을 통해서 혜택을 받은 자가 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정량적 수치가 제시가 필요함
 - 보조사업 세부사업에서 수행한 내용을 볼 때 2018년 2개 단체, 2019년 3개 단체를 지원하였으므로 직접 수혜자에 대한 정량화 수치가 제시될 수 있음
 - 간접 수혜자 및 수혜 범위는 본 보조사업인 민간 외교활동이 한국의 이미지나 외교 협력이나 홍보를 통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과 범주가 적시되어야 함. 보고서의 자체평가 보고서에 언급하고 있는 유학생, 주재원, 국내외 기업 등의 수치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간접 수혜자가 잠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도 제시할 때 본 보조사업의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음
- 민간 차원의 외교 활동을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 외교 기관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사업으로 지자체나 민간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국가기관에 의해서 정책적 추진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동 보조사업의 유사·중복을 가진 타사업(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볼 때 타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크지 않음
 - 국가 차원의 외교 활동이 갖는 비용과 한계를 고려할 때 민간 차원의 다양한 외교활동으로 국가 이미지 및 국가 간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 본 사업이 지속 연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의 내역사업별(민간기관 교부)로 지출항목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규모에 대한 검토 후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으나 민간기관의 재정산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재정 규모의 적정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움
- 매년 연도별 사업목표에 따른 재정소요액을 추계하고 중기재정 및 당해연도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나 이에 대한 관련 자료가 미비하여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일정 수준의 예산 감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동 보조사업을 통해서 국가 간 문화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 국가 간 이해를 높이고, 민간 교류 기회를 확장하고, 국가 간 관계강화나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으므로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라는 사회적 가치실현에 간접적 기여를 일부 인정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기여도가 있는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움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은 공모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으나 자체 규정 여부는 파악하기 어려움.
 - 선정 공문이 증빙자료가 있으나 민간기관 선정에 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민간 공공외교 활동 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 공문’을 통해서 보조사업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공모 계획을 공지하고 공지내용에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 범위, 예산, 추진 일정, 참가 자격, 사업신청서 평가 방법, 보조금 교부방식 등 유의사항 등을 고지 후 보조금을 교부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의 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관련 절차를 준용하고 있으나 사업추진 등의 사업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자체 규정 마련 검토가 필요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절차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보조사업의 집행 결과 점검하는 절차와 기준, 집행 점검 조치 규정에 따라 관리, 감독이 이루어짐
 - 보조사업자들이 중간과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사업 집행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관리하여 사업 집행, 보조사업 사후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보조사업자의 사업 집행 시 점검을 위해서 해당 부처에 수시 관리가 이루어짐. 보조금 교부를 2차에 걸쳐 실시하고 교부 시점에 사업에 대한 정산 보고를 하도록 하여 중간점검 실시하여 집행의 적절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에 의해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가 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관리시스템에서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없었음.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 부정수급심의회 등 구성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을 관리함
- 보조금 중복 및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조사업자들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보조금 신청 및 정산을 하도록 관리하고 있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보조사업 단체 대면 보고회를 실시하여 사업집행과 보조금 사용에 대한 관리를 실시하였으나 부정수급 등의 사업 전체 관리를 위한 자체 노력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보조사업은 「공공외교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내역사업 모두가 근거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내용상으로 민간 외교 활성화의 범주에 포괄적으로 포함되므로 내역사업별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됨
- 민간 차원의 교류사업의 활성화와 민간 공공외교의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하여 새로운 외교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보조사업의 목적은 국가적 타당성이 있고 국정과제 「96: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과도 연계됨
- 성과지표는 사업내용이나 목적달성 정도가 적절하게 측정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성과지표의 대표성도 낮음
- 보조사업의 선정, 보조사업 집행, 보조사업 사후관리,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 등에 대한 대체로 규정은 적시하고 있으나 자체 규정 마련이 없으며 사업자 선정과정, 집행 전반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서 사업 집행 적정성이 부분적으로 미흡함

3-2 정책 제언

-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사업성과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른 성과지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필요가 있음. 따라서 해당 부처의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성과를 구체화하고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직·간접적 수혜 범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기관별 · 사업별 평가의견서

법무부

성폭력피해자지원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법무부
사 업 명	성폭력피해자지원
보조유형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2.0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4.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10.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8.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30.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4.0
1-5.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8.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1.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사업방식변경 · 국가적 책무성 및 보조사업으로서의 필요성이 인정됨. '17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개선이 이루어졌음 · 다만 일부 내역사업의 조정이 요구됨 · 내역사업 '통합지원센터 신규설치'는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 센터) 신규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원시설 기능보강'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신규설치비 및 기능보강비, 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 센터) 기능보강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두 사업의 성격 및 내용을 고려하여 '통합지원센터 신규설치' 사업의 사업 명을 '지원시설 신규설치'로 변경하고 보호시설에 대한 신규설치비를 '지원시설 신규설치' 사업으로 변경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음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성폭력피해자지원 사업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보조금 지급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음
- 본 사업의 4개의 내역사업 역시 동법에 근거함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

제26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국가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지원해야 한다는 책무성에 따라 정부 지원이 요구됨
- 국정과제 '66-5: '젠더폭력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3. 피해자 지원 확대 및 내실화)'에 해당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심리상담, 의료지원, 법률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는 것을 지원함에 목적이 있음. ①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자체경상보조), ②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등 서비스 지원(지자체경상보조) ③ 통합지원센터 신규설치(지자체자본보조) ④ 지원시설 기능보강(지자체자본보조)으로 구성되어 있고, 네 내역사업 모두 사업의 목적 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은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의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함. '20년 예산 31,382백만원의 83.5%에 해당함
-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등 서비스 지원 사업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비, 간병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년 예산의 12.9%를 차지함
- 통합지원센터 신규설치 사업은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신규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년 예산의 1.1%에 해당함



- 지원시설 기능보강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신규설치비 및 기능보강비, 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기능보강비 지원 사업으로 '20년 예산의 2.0%에 해당함
- 사업의 성격 및 내용을 고려할 때, 내역사업 '통합지원센터 신규설치' 및 '지원시설 기능보강'은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신규설치비와 기능보강비의 성격을 반영하여 두 내역사업을 명확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합지원센터 신규설치' 사업은 사업명을 '지원시설 신규설치'로 변경하고 보호시설에 대한 신규설치비를 해당 내역사업 안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성과지표는 센터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율(%), 해바라기센터의 서비스 지원 만족도(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실적(건)로 설정하고 있으며 각 내역사업의 내용을 반영하여 적정히 설정되었음. 설정한 목표치는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달성되고 있음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의 대상자인 성폭력 피해자는 사회적 약자로서 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한 대상자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함
- 성폭력의 증가추세를 감안할 때 사업의 지속성이 요구되며,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임. 그러나 성폭력 피해는 전국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기에 사업 수혜의 범위는 전국 단위로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음

< 성폭력 피해자 현황 >

(단위 : 건수)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 계	29,517	30,651	28,993	32,234	31,396
13세미만 아동	1,161	1,118	1,083	1,261	1,277
13세미만(%)	3.9%	3.6%	3.7%	3.5%	4.1%

- 본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가 지원시설을 이용하고 의료비 등을 지원받는다는 점에서 수혜의 내용이 명확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은 '17년 평가 시 예산규모 감축 및 사업방식 변경 판정을 받은 바 있음. 예산규모 감축은 해바라기센터,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의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국고보조 형태로 지원되고 있으며, 특별한 기준 없이 사업간 보조율이 차등 적용되는 점이 지적되었음



- '17년 국비보조율을 보면, 위기지원형 해바라기센터의 경우 서울 50%, 지방 70%였으며, 아동형 및 통합형 해바라기센터의 경우 서울 75%, 지방 85%의 보조율을 적용했음.
- 그러나 현재 본 사업의 국고보조율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의 경우 상담소는 전국 50% 보조율(평택 70%), 해바라기센터 및 보호시설의 경우 시설 유형에 관계없이 서울 50%, 지방 70%의 보조율이 적용되고 있음.
-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등 서비스 지원 사업 역시 서울 50%, 지방 70%의 보조율이 적용됨. '17년 지적내용을 반영하여 보조율 개선이 이루어진 점이 확인됨
- 현재 보조율은 여성폭력 피해자가 주요 사업대상자인 기타 사업들과 비교해 볼 때('가정 폭력 피해자 지원': 50~100%,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50~80%), 비교적 적정 수준이라고 판단됨
- 대규모 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단기 계획에 근거하여 재정추계액을 제시하고 있어 중장기 재정추계의 타당성이 낮다고 판단됨
- 다만 사업의 특성상 내역사업별 단기 목표가 보수적으로 설정될 수 밖에 없는 한계에 대해서는 인정됨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여성·장애인 등 신체적 약자의 사회적 안전을 보장하고 피해자에 대한 공적 지원체계를 강화해준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사업임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운영지침을 통해 사업자 선정을 진행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운영지침을 통해 집행 및 정산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17년 평가 결과(사업방식 변경 판정)를 반영하여 3년 주기 지원시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 시설에 대한 컨설팅이 실시되고 있음. 또한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이 운영지침 상에 명시되어 있으며 수시·정기(상·하반기) 현장 실태점검을 통해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실제 '18년 1건, '19년 1건의 환수 및 주의조치가 실시된 바 있음
- '17년 평가 결과(사업방식 변경 판정): 집행 관리에 대한 실효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며,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이 보고서상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운영지침을 통해 부정수급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음
- 자체적발을 통해 2건의 부정수급을 적발하였고 환수 조치가 진행됨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부처에서 제시한 자체 사업관리 노력 일부 반영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국가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지원해야 한다는 책무성에 따라 정부 지원이 요구되는 사업임
- '17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실집행률 및 성과목표 달성에 있어 비교적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음

3-2 정책 제언

- 일부 내역사업의 조정이 필요함
 - 신규설치비와 기능보강비의 성격을 반영하여 ‘통합지원센터 신규설치’ 및 ‘지원시설 기능보강’, 두 내역사업을 명확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음. ‘통합지원센터 신규설치’ 사업은 사업명을 ‘지원시설 신규설치’로 변경하고 해당 내역사업안에 통합지원센터 및 보호시설에 대한 신규설치비를 포함하는 반면 ‘지원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통합지원센터 및 보호시설에 대한 기능보강비를 포함하는 형태로 내역사업의 조정이 요구됨

기관별 · 사업별 평가의견서

행정안전부

부마민주항쟁명예회복지원
섬발전협력사업추진
위험도로구조개선(제주)
위험도로구조개선
전직대통령및유족예우
지역공동체기반조성및역량강화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제주)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평가요약표

기관명	행정안전부
사업명	부마민주항쟁명예회복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1.8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2.8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10.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8.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4.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8.8
1-5.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9.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0.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5.5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사업방식변경 · 동 보조사업은 내역사업 내용의 조정이 필요하고 실집행률 낮았으나 사업통합 및 일몰 등의 대안 마련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40주년 기념사업은 실집행률이 낮았으나 2020년에 일몰하여 타 사업과 조정하여 예산을 감축하여 운영되어 집행률 문제를 해결함 · 사업성과지표 및 직접 및 간접 수혜자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직간접 수혜범위를 간략하게 제시하고 예측하고 있음. 직접 수혜자를 명확히 제시하고(근거 포함), 잠재 수혜범위를 명확히 해야 함 · 내역사업에 대한 성과지표가 적절하지 않음. 사업사업을 대표할 수 있거나 사업별 성과로 적절한 지표 개발이 필요함 · 사업관리에서 보조금 관련 법률을 준용하고 있어 자체 규정 마련 등을 통해서 보조사업관리 적정성을 높여야 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동 보조사업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대한 법률」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대한 법률」 제16조와 「부마민주항쟁기념 재단 정관」 제4조에 의해 내역사업별 보조금 지급에 법적근거가 있음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대한 법률 제16조 제1항 >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 동 보조사업의 목적은 부마민주항쟁 기념시설 조성 등의 관련자 추모, 복지사업 및 문화·학술사업을 지원하고, 부마민주항쟁에 기념사업 등을 부마민주항쟁의 유족 및 관련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국민들에게 부마민주항쟁의 의미를 기념하고 되새길 수 있는 사업으로 국가 지원의 필요성이 타당함
- 현 정부의 국정과제 「99-1: 과거와의 화해를 위한 과거사 명예회복」의 실천과제 중 하나로 부마민주항쟁 과거사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명예회복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어 동 보조사업은 국정과제와 연계성을 가짐으로 국고 보조사업으로 타당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보조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성과지표 개선이 필요함
- <40주년 기념사업 지원>사업의 경우 학술기념사업 추진실적을 성과로 제시하였으나 적절하지 않음. 사업 실적은 사업 성과과 구분되어야 함
- 40주년 기념사업의 내내역사업이 2019년 행사로 종료되지만 사업기획 시에 적절성과 타당성 검토가 필요함
-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국민의 인식 확대를 위한 홍보사업으로 진행된 부분들이 다수이므로 홍보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필요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보조사업은 민주화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을 포함하고 있어 국가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함. 본 사업은 법령이 제정되고 그에 따라 재단이 새롭게 설립으로 수행되는 신규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함
- 동 보조사업의 수혜자 적시가 모호함. 일차적 수혜 범위를 세부사업별로 수치는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확인하기 어려움
 - 간접수혜자 및 범위는 사업이 지역 특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해당지역의 교육 및 문화 관련자, 일반 지역주민 등이 해당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잠재수혜자를 예측하여 적시할 필요가 있음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은 내역사업별로 지출항목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적절한 예산 규모를 산정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나 2018-2019년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음.
- 중장기 재정 추계는 사업목표와 근거 자료가 명확하지 않음 단순 수치만 제시하고 있으며, 목표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아래 표 중장기 재정추계 내역 참조)
- 중장기 재정추계를 제시하기 위해서 재단 지원사업 세부 사업별 목표치만 제시하고 목표 수치 산출 근거가 없음으로 제시한 목표 수치가 적절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움으로 중장기 재정 추계를 위한 다양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중장기 재정추계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부마민주항쟁기념 재단지원사업 (320-01)	2,200	2,500	2,700	3,000	3,000	3,200	3,200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동 보조사업을 통해서 민주항쟁의 진상 파악과 관련자들의 명예를 회복함으로써 관련자 및 일반인들의 민주항쟁이 갖는 의미를 높이고 민주화의 가치를 재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 사회적 가치 중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에 기여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은 「부마민주항쟁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해서 사업자 선정, 사업추진능력 및 사업관리체계에 대한 규정이 마련됨
- 사업자 선정과정이 공모사업은 아니지만 사업자로서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기준이나 보조금 교부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적시되어야 하나 동일 법령과 시행령을 준용하고 있어 자체 규정 마련이 필요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 집행에 대해서 「부마민주항쟁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보조사업 집행 규정이 마련됨
- 동 보조사업의 집행은 보조금 관리 법률에 근거하여 집행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보조사업의 집행 적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이루어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제28조에 보조사업 사후 점검, 조치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음.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30조, 제45조에 의거하여 보조금 정산과 회계감사, 보조사업 공시 및 사후조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규정 준수에 대해서도 동법 제27조, 제26조 1을 준용하고 있음
- 보조사업자의 사업 집행 시 부적절한 사례 발굴하여 주의 및 집행 부진 사업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어 사업집행 관리·감독이 원활하게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음
- 전문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집행에 대한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 제33조, 제27조의 2, 제 25조에 부정수급 관련 법령 근거를 준용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건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보조금 관리 규정 외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부정수급 관리가 되어야 함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보조사업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2개의 내역사업의 근거 법령에 명확하지는 않지만 두 사업이 해당 법령에 포괄적으로 포함되므로 내역사업별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됨
- 40주년 기념사업 행사사업은 해당년도에만 이루어진 사업으로 향후 일몰될 사업으로 사업조정이 됨을 확인함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의 진상을 밝힘으로서 유가족 및 관련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일반인들에게 민주화에 대한 인식 제고를 한다는 동 보조사업의 목적은 국가적 타당성이 있고 국정과제 「99-1:과거와의 화해를 위한 과거사 명예회복」과도 직접적으로 관련됨
- 동 보조사업의 직접·간접 수혜대상 및 성과지표가 수행한 내역사업을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내역사업별 성과지표를 제시하거나 전체 내역사업이 사업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는 대표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을 때 본 사업이 지속적으로 국고 보조사업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 보조사업의 선정, 보조사업 집행, 보조사업 사후관리,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 등에 대한 대체로 규정은 자체 규정이기보다는 전체 보조사업 규정을 준용하여 적시하고 있어 향후 자체 규정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2 정책 제언

- 동 보조사업은 국가 보조사업으로 타당성은 있으나 신규사업으로 보조사업 수행 기관의 체계적으로 적극적인 재단 운영 및 사업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세부사업의 성과를 포괄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을 위한 정책 방안 모색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행정안전부
사 업 명	섬발전 협력사업 추진
보조유형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0.3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4.2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10.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4.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1.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8.2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6.1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2.6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 본 보조사업의 종합평가 결과, ‘단계적 폐지(21년말)’ 및 ‘사업방식 변경’이 요구됨 · 본 보조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 국정과제에 해당되며, 도서지역 연료운반선 건조지원을 통하여 가스, 석유 등의 생필품을 원활하게 운송·공급하기 위한 보조사업으로 당초 계획된 21년까지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당초 수요조사 기반으로 계획된 8척의 연료운반선 건조지원 이후 사업계획을 종료함(21년 말 폐지) - 21년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 지자체 수요조사를 수행하고 수요가 당초 계획보다 적은 경우 사업예산을 감축할 필요가 있음 · 본 보조사업의 예산실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운영방안 마련이 요구됨 - 예산집행률이 매우 저조함(예산 실집행률 2018년 0.8%, 2019년 54.8%) · 예산실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연료운반선 건조 기간을 고려하여 설계비와 건조비를 별도 교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사업방식 변경)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도서개발촉진법」 제6조에 근거하여 도서지역의 연료운반선 건조 지원근거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음

<도서개발촉진법>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지정도서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과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소득 증대와 생활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주거환경 및 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산업진흥과 자원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3. 도서지역의 교통·통신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운송 및 교통수단과 통신시설의 개선·확충에 관한 사항

- 본 보조사업은 국정과제(3-3-62. 해양영토수호와 해양안전강화-섬 관리 강화)에 포함되어 '18년부터 매년 연료운반선을 2척씩 건조 지원하여 생필품 운송지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수혜대상을 매년 10%씩 확대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국정과제와 부합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보조사업은 도서지역의 교통·통신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운송 및 교통수단인 연료운반선 2척씩 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역사업의 기간과 규모가 적정함
 - 대통령 공약사업, 국정과제에 해당되며, 도서지역 연료운반선 건조지원에 대한 국가차원의 수요조사에 기반하여 전체 사업기간 및 적정규모를 산정함
 - * 총 8척을 건조하며, 연 2척씩 사업계획에 반영
- 보조사업의 예산실집행률이 미흡하며, 성과지표로 '건조 연료운반선의 운항 도서 수'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본 보조사업의 예산 실집행률은 2018년 0.4%, 2019년 54.8% 수준으로 매우 저조함
 - * 연료운반선의 건조 기간을 고려할 때, 당해연도에 예산을 집행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설계비 및 건조비를 별도 교부하도록 사업계획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 필요



- 건조한 연료운반선의 운항도서 수를 성과지표로 하여 2019년부터 목표 대비 달성도를 관리하고 있음
- 연료운반선 건조에 따른 도서주민의 만족도 혹은 생활여건 개선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개발이 필요함

구분	성과지표 단위	구분	17년	18년	19년	측정산식(측정방법)
건조 연료운반선 운항 도서 수	단위 : 개 (세부사업)	목표	-	신규	15	연료운반선 운항도서 수
		실적	-	신규	26	
		달성도	-	신규	173.3%	

- 본 보조사업은 일반선박으로 운송할 수 없는 섬에 가스, 석유 등의 생필품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송·공급할 수 있는 연료운반선을 건조지원하여 섬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상위 정책목표에 기여하고 있음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보조사업과 유사중복사업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정책수단으로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어려움
- 보조사업의 실수혜자가 명확하며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함
 - 본 보조사업의 실수혜자는 소규모 섬에 거주하는 국민임
 - 그 간 정부의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섬에 적은 인구에 의한 경제성 문제로 생활과 밀접한 가스, 석유의 생필품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공급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국정과제(3-3-62. 해양영토수호와 해양안전강화-섬 관리 강화)에 포함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
 -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서 열악한 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감안하여 당초 사업계획인 2021년까지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함
 - 단, 일반선박으로 운송할 수 없는 섬에 가스, 석유 등의 생필품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송·공급하기 위한 연료운반선의 수요를 국가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체계적인 연차별 추진 계획이 필요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보조사업 예산 모두 사업비로 구성되고 있으며, 경상경비로 사용되지 않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준하여 국고보조율 50%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고 있음
 - 2018년, 2019년 2년간의 예산 실집행률이 저조하며, 연료운반선의 설계 및 건조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예산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됨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사회적 가치 항목 중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에 해당됨
 - 일반선박으로 운송할 수 없는 소규모 섬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보건복지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 선정 및 교부절차 등과 관련하여 지자체 비용부담능력의 적정성, 지자체의 사업 추진 의지,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그 근거가 명확함
 -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본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음
 - 대상지자체 선정 시 지자체 비용부담능력의 적정성을 고려하고 있음. 사업자 선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체크리스트의 기타 항목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정이 있으며 적절히 관리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 집행현황, 점검 등과 관련하여 규정이 있으며, 잘 준수하고 있음
 - 보조사업 집행과 관련하여 본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이 있음.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체크리스트의 기타 항목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정이 있으며, 잘 준수하고 있음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이후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국고보조금 확정, 집행잔액 반환의 과정을 준수함
 - 분기별 예산집행 실적 및 사업 추진현황 관리를 통해 보조금에 대하여 내실 있게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1~2월경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지자체별·사업별 집행액·이월액·불용액 등을 제출받아 정산·반환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적절한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규정이 적정하고 준수하고 있으며, 근거도 명확함
 -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본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을 갖추고 있음.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체크리스트의 기타 항목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정이 있으며 준수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건수 없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보조사업의 종합평가 결과, ‘단계적 폐지(21년말)’ 및 ‘사업방식 변경’이 요구됨
- 본 보조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 국정과제에 해당되며, 도서지역 연료운반선 건조지원을 통하여 가스, 석유 등의 생필품을 원활하게 운송·공급하기 위한 보조사업으로 당초 계획된 21년까지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당초 수요조사 기반으로 계획된 8척의 연료운반선 건조지원 이후 사업계획을 종료함(21년말 폐지)
 - 21년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 지자체 수요조사를 수행하고 수요가 당초 계획보다 적은 경우 사업예산을 감축할 필요가 있음
- 본 보조사업의 예산실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운영방안 마련이 요구됨
 - 예산실집행률이 매우 저조함(예산 실집행률 2018년 0.8%, 2019년 54.8%)

3-2 정책 제언

- 예산실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연료운반선 건조 기간을 고려하여 설계비와 건조비를 별도 교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사업방식 변경)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행정안전부
사 업 명	위험도로구조개선(제주)
보조유형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7.2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9.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8.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7.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6.0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8.2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2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감축 · 동 세부사업은 2021년 ~ 23년 안에 일정수준의 감축이 필요함 · 본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5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법령과의 구체적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나, 근거하고 있는 중장기 계획 상의 목표와 괴리가 생기고 있음 · 도로의 안전성 개선 및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본 사업의 수혜자는 해당지자체 주민 및 도로 통행 일반 국민으로, 사업의 공공성과 정부정책과의 부합성이 높으며 그간의 성과가 인정됨. 그러나 본 사업의 목적에 맞게 연내에 집행되도록 집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해야함.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사업 예산을 감축하는 것이 필요함 · 중장기 계획 수립 시 5개년 단위로 추진하여 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 분석을 포함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권고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추진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나, 現 법 체계 상 보조사업 수행에 대한 구속력을 부여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는 교통·물류망 확충에 대한 보조를 명시하고 있어 본 사업의 내용과 다소 상이하고, 「농어촌도로정비법」내용은 도로의 직선화 등 본 사업과 일치하나 보조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 과거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에 급격한 굴곡경사 구간 개선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 규정하고 있었으나, 해당법이 폐지됨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 제35조 >

제4조(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 ② 국가균형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국가균형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물류망 확충에 관한 사항

제35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②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역 협력권 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물류망 확충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 >

제5조(도로의 정비)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광역시장·도지사는 군수가 차량 및 보행자의 도로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도로의 직선화 등 도로구조 개선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대통령령 또는 해당 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지방도로의 급커브, 급경사, 노폭 협소구간 등 위험구간 구조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감소 및 주민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공공성과 보조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됨
- 국도 구간에도 동일하게 지원되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을 지방도로 분야에 지원하는 본 사업은 낙후지역 등 국도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목적에 부합함
- ※ 도로는 고속도로 → 국도 → 지방도로의 위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도로의 유지관리는 교통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국가 차원의 체계적 접근이 필요함
- 또한, 정부차원에서 중점 추진하는 “생활SOC 3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주민생활 여건을 향상시키는 정책에 기여하고 있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지방도로의 급커브, 급경사 등 위험구간 정비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나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명확하고, 10개년 중장기계획(위험도로 구조개선 중장기 계획('14~'23))에 의한 연차별 사업 운용으로 사업 구성의 근거가 확보됨
 - 교통안전점검차량을 활용하여 정밀조사 후 배점점수 산정 및 우선순위 결정을 수행하고 위험지수 평가 순위에 따라 결정된 구간의 연차별 개선을 추진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인 것으로 판단됨
 - 지방도로의 급커브, 급경사 개선 완료 후 모니터링을 통해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조사하여 사업시행 전·후의 감소 여부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최근 5년간 평균 67% 감소하여 본 사업의 성과가 도출된 것으로 보임
- ※ ('15년) 51.7%, ('16년) 58.5%, ('17년) 88.8%, ('18년) 69.1% ('19년) 70.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국도구간에 대해 동일한 사업*을 시행하나 지방도로 위험구간 정비는 본 보조사업이 유일하므로 타 사업과의 유사, 중복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91년부터 '04년까지는 지방양여금을 통한 도로신설 지원 (연1.9조원 규모)
- 그러나, 지방도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재원으로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보조사업 외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도로의 안전성 개선 및 유지관리를 통한 1차적 수혜자는 해당지자체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2차적 수혜자의 범위는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일반 국민으로 광범위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의 실적은 제2차 중장기 계획의 목표와 상이(현재 715개 소 중 171개 소 완료·추진 중(24%))하므로 제3차 중장기 계획의 수립을 통해 사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최근 집행실적이 저조한 측면이 있으므로, 부진 사유에 근거한 현실적인 집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 위험도로 개선 사업의 경우 일반 도로 건설과 달리 기존 도로의 선형을 완화하는 등 단 구간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소규모 용지 편입과 지장물 이설 필요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최근 집행실적이 부진하였음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A)	예산 현액	실집행액 (B)	집행률 (B/A)
2017	406	535	535	131.8%
2018	385	385	385	100.0%
2019	534	534	425	79.6%

- 최근 사업 예산이 급증하였으며* 추진계획 상 '21년 이후 예산은 다소 감축된 규모를 계획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차년도 예산규모를 일정수준 감축하고 '22년 이후 예산 규모는 '20년과 '21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따라 재산정할 필요가 있음

* '19년 신규사업의 '20년 공사비에 기인하여 '20년 예산은 전년대비 321% 증가

- '19년 집행률이 79.6%이고 최근 3년('17년~'19년) 평균 실집행액은 4.5억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업 예산이 급증('18년 3.85억 → '19년 5.34억 → '20년 22.47억)하고 있음
- '20년 예산 22억 대비 '21년 이후 '장래' 투자계획은 21억으로 다소 감소하는 수준이며, 그 외 중장기 재정추계 규모의 근거는 제시되지 않음

※ 지원 계정의 경우 '장래' 투자계획을 연도별로 분배한 것으로 보임

[단위: 백만원]

계정	연도별 투자계획		중장기 재정추계		단기(~3년) 정비 목표
	'20년	장래	'21년	'22년	
지원	34,331	51,108	35,361	36,422	30개
제주	2,247	2,148	2,384	2,455	5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기준보조율이 50%로 제시되고 있으며, 해당 보조율을 준수하고 있음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위험 도로를 개선하는 공공사업으로 재난·재해 대응 지역 사회의 안전성 강화에 일부 기여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선정 및 교부와 관련한 체계적인 절차를 갖추고 있으며, 그러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지자체에게 재원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매년 상반기 전년도 사업예산 결산 및 현장점검 통한 예산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사업 대상지의 위험도, 예산규모 및 사업공정률 등에 따라 각 시·도별 예산을 적정 배분
- 사업추진 전 유관기관(도로교통공단, 경찰서 등) 협의 및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예산절감 및 민원 발생 사전 해소에 노력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의 집행에 관한 규정과 지침을 갖추고 적절하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분기별 예산집행 실적 및 사업 추진현황 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1~2월경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지자체별·사업별 집행액·이월액·불용액 등을 제출받아 정산·반환함
- 집행부진 시·도에 대하여는 현장점검 등을 통한 문제점 파악 등을 시도함
- 그러나, 예산을 매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본 사업의 목적에 맞게 연내에 집행되도록 집행 관리에 보다 노력을 기울여야 함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가 없었으며,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예산 교부 전 지방비 매칭을 확인하고, 매년 상반기에 전년도 예산 결산 및 수시 현장 점검을 통해 사업 추진사항을 모니터링 함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도로의 안전성 개선 및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본 사업의 수혜자는 해당지자체 주민 및 도로 통행 일반 국민으로, 사업의 공공성과 정부정책과의 부합성이 높으며 그간의 성과가 인정됨
- 최근 사업 및 예산규모가 확대되었으므로 사업 성과가 적기에 발휘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20년 추진 계획에 따라 일정수준 감축해야 할 것으로 보임

3-2 정책 제언

- 중장기 계획 수립 시 5개년 단위로 추진하여 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 분석을 포함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권고됨



평가요약표

기관명	행정안전부
사업명	위험도로구조개선
보조유형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5.7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6.6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4.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7.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6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9.1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1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본 사업의 검토 결과, 정상추진으로 판정함 · 본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5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법령과의 구체적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간 교통사고 저감 등의 성과가 도출되어 효과성이 인정됨 · 도로의 안전성 개선 및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본 사업의 수혜자는 해당지자체 주민 및 도로 통행 일반 국민으로, 사업의 공공성과 정부정책과의 부합성이 높으며 최근 5년간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평균 67% 감소하여 본 사업의 성과가 도출된 것으로 보임. 집행실적 부진 사유 분석을 통해 現 예산규모 수준으로 집행률을 제고함 · 중장기 계획 수립 시 5개년 단위로 추진하여 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 분석을 포함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권고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추진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나, 現 법 체계 상 보조사업 수행에 대한 구속력을 부여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는 교통·물류망 확충에 대한 보조를 명시하고 있어 본 사업의 내용과 다소 상이하고, 「농어촌도로정비법」내용은 도로의 직선화 등 본 사업과 일치하나 보조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 과거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에 급격한 굴곡경사 구간 개선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 규정하고 있었으나, 해당법이 폐지됨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 제35조 >

제4조(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 ② 국가균형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국가균형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물류망 확충에 관한 사항

제35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②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역 협력권 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물류망 확충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용자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 >

제5조(도로의 정비)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광역시장·도지사는 군수가 차량 및 보행자의 도로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도로의 직선화 등 도로구조 개선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대통령령 또는 해당 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지방도로의 급커브, 급경사, 노폭 협소구간 등 위험구간 구조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감소 및 주민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공공성과 보조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됨
- 국도 구간에도 동일하게 지원되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을 지방도로 분야에 지원하는 본 사업은 낙후지역 등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목적에 부합함
- ※ 도로는 고속도로 → 국도 → 지방도로의 위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도로의 유지관리는 교통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국가 차원의 체계적 접근이 필요함
- 또한, 정부차원에서 중점 추진하는 “생활SOC 3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주민생활 여건을 향상시키는 정책에 기여하고 있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지방도로의 급커브, 급경사 등 위험구간 정비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나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명확하고, 10개년 중장기계획(위험도로 구조개선 중장기 계획('14~'23))에 의한 연차별 사업 운용으로 사업 구성의 근거가 확보됨
- 교통안전점검차량을 활용하여 정밀조사 후 배점점수 산정 및 우선순위 결정을 수행하고 위험지수 평가 순위에 따라 결정된 구간의 연차별 개선을 추진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인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을 통한 도로 정비 후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감소하였으며, 균형발전사업 평가 결과 우수한 것으로 판정되어 본사업의 효과가 도출되고 있음이 인정됨
- 지방도로의 급커브, 급경사 개선 완료 후 모니터링을 통해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조사하여 사업시행 전·후의 감소 여부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최근 5년간 평균 67% 감소하여 본 사업의 성과가 도출된 것으로 보임
- ※ ('15년) 51.7%, ('16년) 58.5%, ('17년) 88.8%, ('18년) 69.1% ('19년) 70.0%
- 균특회계로 지원되는 평가대상사업('19년 기준 총 75개 4.8조원)의 실적평가 및 종합평가 결과*, 본 사업은 '우수'로 평가됨
- * 우수 20% 이하, 보통 65% 내외, 미흡 15% 이상 선정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국도구간에 대해 동일한 사업*을 시행하나 지방도로 위험구간 정비는 본 보조사업이 유일하므로 타 사업과의 유사, 중복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91년부터 '04년까지는 지방양여금을 통한 도로신설 지원 (연1.9조원 규모)
- 그러나, 지방도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재원으로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보조사업 외의 지원 방안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도로의 안전성 개선 및 유지관리를 통한 1차적 수혜자는 해당지자체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2차적 수혜자의 범위는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일반 국민으로 광범위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한 측면이 있었으나, 부진 사유에 근거한 현실적인 집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이 인정됨



- 위험도로 개선 사업의 경우 일반 도로 건설과 달리 기존 도로의 선형을 완화하는 등 단 구간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소규모 용지 편입과 지장물 이설 필요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집행실적이 부진하였음
- 그러나, 해당 이슈 개선을 위해 사업 관리를 추진한 바 최근 3년('17년~'19년) 실집행률이 향상되었으며, 現 예산규모 수준(3년 평균 실집행액 307억원)의 집행 가능성이 입증됨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A)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
2017	29,594	46,436	33,128	111.9
2018	25,000	37,625	25,936	103.7
2019	31,962	43,093	33,084	103.5

- 본 사업의 실적은 제2차 중장기 계획의 목표와 상이(현재 715개 소 중 171개 소 완료·추진 중(24%))하므로 제3차 중장기 계획의 수립을 통해 사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기준보조율이 50%로 제시되고 있으며, 해당 보조율을 준수하고 있음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위험 도로를 개선하는 공공사업으로 재난·재해 대응 지역 사회의 안전성 강화에 일부 기여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선정 및 교부와 관련한 체계적인 절차를 갖추고 있으며, 그러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지자체에게 재원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매년 상반기 전년도 사업예산 결산 및 현장점검 통한 예산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사업대상지의 위험도, 예산규모 및 사업공정률 등에 따라 각 시·도별 예산을 적정 배분
- 사업추진 전 유관기관(도로교통공단, 경찰서 등) 협의 및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예산절감 및 민원 발생 사전 해소에 노력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의 집행에 관한 규정과 지침을 갖추고 적절하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분기별 예산집행 실적 및 사업 추진현황 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1~2월경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지자체별·사업별 집행액·이월액·불용액 등을 제출받아 정산·반환함
- 집행부진 시·도에 대하여는 현장점검 등을 통한 문제점 파악 등을 시도함
- 계속해서 본 사업의 목적에 맞게 연내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가 없었으며,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예산 교부 전 지방비 매칭을 확인하고, 매년 상반기에 전년도 예산 결산 및 수시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 추진사항을 모니터링 함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도로의 안전성 개선 및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본 사업의 수혜자는 해당지자체 주민 및 도로 통행 일반 국민으로, 사업의 공공성과 정부정책과의 부합성이 높으며 그간의 성과가 인정됨
 - 지방 위험도로 구조개선 목적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목적에 부합하며, “생활 SOC 3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주민생활 여건을 향상시키는 정책에 기여하고 있음
 - 사업시행 전·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최근 5년간 평균 67% 감소 하여 본 사업의 성과가 도출된 것으로 보임
- 최근 집행률이 제고되고 있으며, 계속해서 본 사업의 목적에 맞게 예산이 연내에 집행되도록 집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3-2 정책 제언

- 중장기 계획 수립 시 5개년 단위로 추진하여 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 분석을 포함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권고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행정안전부
사 업 명	전직대통령 및 유족예우사업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7.2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7.2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5.2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4.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7.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10.0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0.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4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6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정상추진 - 동 보조사업은 실집행률이 부분적으로 미흡하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하고 있으며(근거 확인) 향후 사업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하고 2020년부터 시행하고자 함 - 동 보조사업은 신규사업이고 사업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사업의 인프라 확충 및 개선을 통해서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어 정상추진이 적절함. - 사업 특성으로 인해서 수혜자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쉽지 않으나 방문객 등으로 제시하여 사업효과를 제시한 점은 적절함. 향후 간접수혜자 및 수혜범위를 예측하고 사업성과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사업관리에서 관련 법령이나 규정 마련이 매우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며, 사업 집행 및 사후 관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동 보조사업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3에 의해 내역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법적 근거가 명확함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3 >

전직대통령이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3 >

- ① 법 제5조의 3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은 묘지의 경비인력 및 관리인력으로 한다. 이 경우 묘지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의 운용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② 법 제5조의 3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묘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묘지의 시설 유지 등 관리비용으로 한다.

- 동 보조사업은 전직대통령의 품위 유지 및 기념, 업적 등의 선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전직대통령 묘지를 방문하는 국내외 방문객의 편의 지원 및 묘지의 내실 있는 관리를 통해 전직대통령을 기념하고자 함으로 국정과제나 공약사업의 성격은 아니지만 국가보조사업 지원의 필요성이 타당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역사업도 명시되어 있으나 사업수행에서 실집행률이 저조하여 이에 대한 효과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



- 2018년도 실집행률이 66.4%, 2019년 77.6%로 지속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하여 이를 분석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음. 묘지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만큼 담당기관의 사업 분석을 통해서 집행률을 향상시킬 수 있고 불용액 발생을 줄이는 조치가 필요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보조사업은 전직대통령의 묘지관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는 전직대통령과 유족들에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많은 참배객과 관광객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해당 지역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간접적 측면에서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보조사업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됨
- 동 보조사업은 타 보조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은 크지 않아 보조사업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동 보조사업에서 직접 수혜자를 유가족 및 방문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수치로 제시했으나 간접 수혜자 범위를 예상하여 제시할 수 있는 노력이 일부 필요함
- 직접 수혜자로 전직 두 대통령의 유가족 및 방문자 수를 포함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수제 제시가 됨
- 향후 방문자의 양적 수치 뿐만 아니라 묘지관리를 통해서 방문객들의 만족도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의 외부효과 등이 간접 수혜범위가 될 수 있으므로 내용 보완이 필요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은 2개의 내역사업에서 2018년도 84백만원, 2019년 56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해당 부처에서 사업 특성으로 인해서 유가족과의 협의에 의해서 지정된 단체를 묘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야 하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지침 조정 및 불용액 발생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함
- 사업 초반 인프라 구축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집행률이 저조했으나, 점차 집행률이 확대되어 사업이 안정기에 들어서는 2021년부터는 보조금 예산 전액이 집행될 것으로 전망됨 ('18년 : 41백 → '19년 : 69백 → '20년 : 97백)
- 중장기 재정추계는 불용액 발생에 대한 대처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재정 추계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



- 본 사업의 재정 추계는 행정안전부의 「전직대통령 묘지관리 지원 기준」에 따라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로 구성되며, 각 항목은 평균노임단가, 국립묘지 소요 예산 등을 근거로 책정됨
- 묘지관리에 대한 인력 및 관리지원의 경우 물가상승분과 인건비 산정 기준 등을 고려할 하여 중장기 예산을 산정하여 제시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됨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동 보조사업은 전직대통령의 품위유지를 하며 대통령 묘지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참배객에게 긍정적인 인상과 자긍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방문자수를 증가하여 간접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음으로 사회적 가치 중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이 인정되나 직접적 관련이나 기여를 하는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움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은 행정안전부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전직대통령 묘지관리 지원기준으로 규정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본 사업 시행을 위해서 자체 규정과 보조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시하고 있어 사업자 선정이 명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적절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전직대통령 묘지관리 지원 기준으로 보조사업 집행을 위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동 보조사업의 집행에 대한 관리 규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짐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의 교부조건에 적정 관리를 위한 세부적 기준 등을 상세히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간 실적보고서를 제출받고 있고, 매년 2회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적절함
 - 사업이 집행관리는 1차적으로는 국립묘지 외 안장된 전직대통령 묘지관리 지원기준에 따라 실적보고서 제출 및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원활한 보조사업 관리를 위해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통지 시 세부 집행지침 등을 마련하여 활용하여 관리가 적절하다고 평가됨
- 사후관리는 통합관리지침을 준용하고 있고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사후관리가 이루어짐을 확인함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의해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사후관리 사항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함. 현재까지 관리시스템에 의한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없음
- 국고보조금 통합시스템을 통해서 수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 2회 현장 점검을 통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부정수급 방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주 1회 이상 모니터링, 현장점검, 컨설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집행 적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일부 인정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보조사업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전직 대통령 묘지 관리를 통해서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묘지 참배객과 관광객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목적은 국가 보조사업으로서 타당성이 있음
- 전직대통령(윤보선, 노무현)의 묘지관리 사업 실집행률이 2년간이 부분적으로 미흡하나 이를 개선하여 사업방식개선을 한 상황이고 인건비, 인프라 개선 비용 등의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나 관리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본 보조사업이 초기 단계로서 체계 구축에 좀 더 집중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사업성과 및 보조사업으로서 타당성을 고려할 때 직·간접 수혜자와 수혜 범위에서 해당 재단과 방문자 수로 제한하기보다는 보조사업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 잠재적 수요까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간접 수혜범위 중 지역사회 경제에 기여하는 측면이 포함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할 필요가 있음

3-2 정책 제언

- 동 보조사업은 사업 초기 인프라 미비 등으로 실집행률이 부분적으로 저조한 측면이 있음. 그러나 해당부처에서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마련하여 실시되고 있고 향후 실집행률 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동 보조사업의 간접적이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지향하는 성과 달성을 위해 관리 기관 및 보조사업자의 부가적 노력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행정안전부
사 업 명	지역공동체 기반조성 및 역량강화
보조유형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8.1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9.6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6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1.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4.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8.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 본 사업은 ‘단계적 폐지(2022년말)’과 ‘사업방식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은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라 시행되는 안산시 보조사업으로 세월호 참사에 따른 지역사회의 위기 회복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는 사업의 타당성이 있음. – 아울러 「세월호피해지원법」 제3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제34조제4항에 따라 「지원·추모위원회」가 의결한 3년 추가 지원결정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됨. · 본 사업은 세월호 참사로 인한 지역사회 위기에 대한 임시적 지원이므로, 동 위기에 따른 지역사회의 안정과 치유 상태에 따라 계속 지원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임. – 최소 지원기간인 3년과 연장 기간을 합한 총 6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을 종료할 필요가 있음(2022년 말에는 지원 종료). 아울러, 이 기간 중 국고보조율은 국무조정실 심의의결 내용을 준용하여 연도별로 줄여나가되 지방비 부담을 늘려나가도록 하여 지자체로의 사업 이양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세월호피해지원법(이하 “법”이라 함)」 제31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시행)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으로 법적 근거는 있음.
- 법 제31조제2항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지원·추모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지원에 관한 사항과 지원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 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은 「지원·추모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협조 의무를 정하고 있어 사실상 의무적 성격을 가짐

< 세월호피해지원법 >

제31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시행) ① 국가등은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국가는 안산시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의 내용·방법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세월호피해지원법시행령>

제28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기간은 최소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원·추모위원회는 매년 지원의 지속여부를 심의·의결하여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추모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정한다

제34조(지원·추모위원회의 회의)

④ 지원·추모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은 그 시행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 세월호 참사에 따른 지역사회의 치유와 안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당위성은 인정되나, 지속적인 사업 지원기간 연장 필요성은 의문임. 따라서 지원추모위원회가 의결한 2022년까지만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사업을 폐지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세월호 참사가 가져온 지역사회의 위기 회복에 대한 지원이라는 당연성에도 불구하고 그 간의 운영프로그램은 통상적인 공동체 지원사업과의 차별성이 보이지 않음.
- 세월호 참사라는 구체적인 재난이 현 지역사회 공동체에 어떤 위기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심층적이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역주민의 니즈 확인과 이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방식 또한 2016 년 연구 결과에 치중하고 있어 변화하는 지역공동체의 요구와 특성을 반영하는 데는 한 계가 있음.
- 성과지표를 참여주민 수, 참여단체 수 등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성과지표로는 본 사업의 목적인 ‘공동체 회복’을 적절하게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결과적으로 회복되어야 할 공동체의 문제 분석,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들의 니즈 파악, 그리고 운영프로그램과 주민 니즈의 충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적용하여 사업의 효과성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공동체 회복 방향성에 부합하는 가시적인 사업성과가 제시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니즈 를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안산시 지역만의 특별한 재난에 대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는 필요한 사업이나, 세월호 참사가 지역 공동체에 어떤 영향과 어려움을 주었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후 지원내용 등을 정해야 함. 이러한 분석 결과가 현행 운영프로그램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 주는 것이 사업 필요성 평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다소 불명확한 점이 있음.
- 마을계획, 마을교육, 공동체 육성 등의 사례도 안산시 이외의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이 있는지, 차별성이 없다면 안산시만 이를 위한 지원을 하는 것이 적정한지가 의문임.
- 전 지역을 대상으로 공동체 회복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사유로 일부 사업이 기존 공동체 지원사업과 차별성을 가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면, 최소한 면밀한 성과 관리 체계를 통해 ‘성과물’ 측면에서라도 차별성은 확보되어야 할 것이나 현재는 이러한 부분이 부족함.
- 이에 세월호 참사 이후 대두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변화와 성장 과정을 파악하는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사업의 성격상 재난 초기에는 국고보조율을 다소 높게 설정하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국고보조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 '20년부터는 최소 지원기간인 3년을 초과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므로 국고보조율을 연도별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 다음과 같이 국무조정실 심의의결 사항을 반영하여, '21년 이후는 국고의 비중을 줄이되 지방비 부담은 증액하는 것이 적정함.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 사항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사업은 세월호 참사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산시 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보조사업자 선정은 논란의 여지가 없음.
- 아울러 안산시는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운영규정 및 사무편람」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단체 등 간접보조사업자 선정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 간접보조사업자 선정 등에 있어서는 공모 등 투명하게 절차를 준수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안산시 소재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단체 및 동호회 등 참여연계 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에 간접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보조금법」에 따라 사업비를 적법하게 집행하고 있음.
- 아울러 조례에 정해진 바에 따라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 사후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정보공시의 경우도 누리집을 통하여 적정하게 공시되고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에 따라 적정한 지도감독과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규정 및 사무편람」에 부정수급 등 본 사업을 위한 사후관리 규정을 두고 있음.
- 「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규정 및 사무편람」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주기, 기준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산시 마을 만들기 위원회」에서 부정수급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등 부정수급에 관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체계적 관리로 그간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았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해당 사항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세월호 참사는 국가적 재난으로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충격과 영향이 상당한 사건이었음.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는 경우 세월호 참사가 가져온 안산시라는 지역사회에 대한 충격과 위기의 극복을 위한 국가적 지원은 당연한 것임.
- 지난 3년간의 국가적 지원이 이러한 지역 내 위기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주민들에게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는지 성과 관리가 필요함.
- 공모 등 절차적 투명성은 보이지만 안산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의 니즈 분석, 필요한 사업 발굴 등을 하여 적정한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등 주체적인 노력이 필요함.
- 성과분석에 있어서도 성과지표가 참여주민 수 등 투입지표 중심이며, 실제 치유하고 대처하고자 한 위기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극복되었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음.
- 사업기간도 법령은 최소 3년을 정하고 지원·추모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6년이 도래하는 2022년에 사업을 종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됨.
- 단, 지자체로의 사업 이양을 고려하여, 보조금은 낮추되 지방비는 높이는 방식으로 국고 보조율 조정이 필요함.

3-2 정책 제언

- 지원·추모위원회가 2022년까지 사업기간 연장을 의결하고, 중앙행정기관은 위원회의 결정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
- 이에 지원기간을 2022년으로 종료하되 지원·추모위원회 의결사항대로 다음과 같이 연도별로 국고보조율을 감축하도록 함.

구분	제1단계				제2단계(연장)			
	계	'17	'18	'19	계	'20	'21	'22
계	50	10	20	20	60	20	20	20
국	25	5	10	10	25	10	8	7
지	25	5	10	10	35	10	12	13
국비비율		50	50	50		50	40	35



-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변화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일회성의 조사방법, 연구결과물 등을 토대로 한 사업 운영 방식은 한계가 있음. 최소한 연도별로 심층적인 현황과 요구 분석이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업 운영 방식을 지속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선순환적인 사업 운영 체계 구축이 요구됨.
- 성과지표를 참여주민 수, 참여단체 수 등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성과지표로는 본 사업의 목적인 ‘공동체 회복’을 적절하게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2단계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공동체 회복 성과의 전국적 확산’에 적합한 성과 지표 제시 및 관리가 요구됨.
 - 코로나19 사태로 대구 지역 등의 공동체 회복 문제가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2단계 사업에서 제시될 ‘공동체 회복 모델’의 전파와 확산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 질 것이라는 점에서 사업성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전 지역을 대상으로 공동체 회복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사유로 사업 구조 및 운영상 기존 공동체 지원사업과 차별성을 가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차별화된 ‘사업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성과 관리 체계를 보완 및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행정안전부
사 업 명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제주)
보조유형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6.5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7.4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9.4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4.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7.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6.0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9.1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1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정상추진 · 지방관리 도로의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공공성이 높아 목적의 타당성이 인정됨. · ‘국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19)’,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중장기 개선계획(‘20)’,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20)’ 등 국가의 주요 정책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본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확보됨. ’20년 예산 규모가 급증하였으나,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정책 수행의 시급성이 인정됨 · 각 지자체의 독자적인 환경 및 수요를 반영한 지자체별 차별화된 추진 전략 마련을 권고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도로교통법」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노인 보호구역 개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내역사업의 경우 동법률에서 필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근거가 명확함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의 경우, 「교통안전법」에서 추진의 근거가 제시되어 있으나, 보조사업 형태에 대한 구속력은 낮은 것으로 보임
- * 과거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도로 중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구간의 개선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한다고 명시하고 있었으나, 해당법이 폐지됨(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

< 도로교통법 제138조 >

제138조의2(국고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

제10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① 특별시장등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교통안전법 제48조 >

제48조 (교통안전사업에의 투자 등) ① 국가 등은 그가 설치·관리 또는 운영하는 교통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관리 또는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외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투자비 등을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투자평가지침 적용대상: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 지방관리 도로의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하는 사업으로, 교통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사업의 공공성이 높아 목적의 타당성이 인정됨
- 본 사업은 지방관리도로의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국정과제의 하나인 교통사고 사상자를 줄이기(교통사고의 90% 이상이 지방도로에서 발생) 목표달성과 연관성이 높음
- 또한, 지방도로구조개선이라는 프로그램 목표 및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이라는 단위사업 목표와 부합함



- ‘국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19)’,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중장기 개선계획(’20)’,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20)’ 등 국가의 주요 정책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본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확보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보조사업의 내역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노인보호구역 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상과 추진 내용이 보다 명확함
 -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교통사고 다발지점의 교통안전시설을 개선
 -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표지, 미끄럼방지 포장, 과속방지턱, 신호등, 과속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
 - * (노인보호구역 개선) 노인보호구역 내 노면표시,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
 - *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안전시설 및 교통운영 체계를 기존 차량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 본 사업의 경우 소액사업으로 성과 목표가 미설정 되어 있으나, 사업의 효과를 산정하는 별도의 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8차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 변경(’18)’에 ‘21년까지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지속추진과 ’22년까지 고령자와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확대 및 정비 추진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어 해당 시점까지 본 사업의 추진 필요성이 인정됨
 - *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16년 1,107개소 → ’22년 2,107개소) 및 시설개선(年 50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확대(’16년 16,355개소 → ’22년 18,155개소) 및 시설정비(年 250개소) (제주 계정 별도의 목표치는 제시되지 않음)
- 단, 기본계획의 목표치 보다 본 사업의 목표치*가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교통안전 강화정책(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생활SOC3개년 계획 등)에 의한 예산 증액에 기인함
 - * ’20년 기준 노인보호구역 116개소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520개소 개선
- 본 사업과의 유사·중복 사업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사업의 수혜 대상은 어린이, 노약자를 포함한 국민으로 광범위하며 효과가 직접적이므로 보조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내역사업마다 개별적으로 연도별 목표치를 산정하고 있으나, 각 지자체의 환경 및 수요 등을 고려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해당사업 최근 연도별 예산에 비해 '20년 예산이 급증('18년 5억원 → '19년 5억원 → '20년 19억원)하였고, 중장기 재정추계 내역 상 '21년의 예산은 더욱 상승하는 것으로 드러남
- '20년 예산의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20) 추진 과제*에 기인하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내역사업의 예산 규모 대폭 확대되었으며, 정책의 시급성이 인정됨
- *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 및 신호등 설치를 위하여 20년 5억원 규모의 예산 증액
- * 향후 '20년 실적행률 및 성과 현황에 따라 '21년 이후 규모의 적정여부 검토 필요

[단위: 백만원]

구분	18년 결산	19년 결산	20년 예산	중장기 재정추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자본보조)	180	180	440	880	880	880	880	880	880
어린이보호구역개선 (자본보조)	70	70	862	2,315	2,978	600	600	600	600
노인보호구역개선 (자본보조)	-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안전한보행환경조성 (자본보조)	250	25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합계	500	500	1,902	3,795	4,458	2,080	2,080	2,080	2,080

- 현행 보조율은 보조금법 시행령상의 기준 보조율을 준수, 50%로 산정되어 적정함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인권 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사업 재정투자 확대를 통해 지역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일부 기여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사업에서는 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절차를 준수하여 시·도에서 선정한 사업대상지의 보조목적 적합성, 사업효과 달성여부 등을 검토 후 사업 대상지를 확정하고 있어 선정 과정이 적정함
- 이중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내역사업은 사업 대상지 선정 시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은 지점을 선정토록 하는 등 사전절차를 이행토록 하고 있음
- 또한, 공모로 추진하고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내역사업은 공모평가 기준에 지자체장의 사업추진의지, 지방비 추가부담 능력, 사전절차 이행여부, 타사업과의 연계효과 등 배점 기준을 마련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이 적절히 마련되어 있고,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관리 기준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며(상·하반기)격월로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보조금 집행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 최근 집행률이 증가하였으나, 앞으로도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관리·감독 및 모니터링 등의 실질적인 집행 관리를 면밀히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최근 3년간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대상지가 명확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 “교통사고 잦은 곳”은 도로교통공단에서 매년 개선계획 대상지를 선정하고 행정안전부는 해당 사업에 국비 지원함.



- “어린이·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업 대상지만 국비 지원함.
- “안전한보행환경조성”은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구에 한하여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공모사업 평가위원회에서 3단계 평가(서면, 현장, 발표)를 거쳐 사업대상지 선정함.
- 또한 사업비 변경(10%이상) 및 대상지 변경에 대하여도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무분별한 사업 확대를 방지하고 있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해당 사항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지방관리 도로의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하는 사업으로, 교통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사업의 공공성이 높아 목적의 타당성이 인정됨
- ‘국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19)’,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중장기 개선계획(’20)’,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20)’ 등 국가의 주요 정책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본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확보됨
- 급증한 ’20년 예산의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20)’에 기인하여 ‘어린이보호구역개선’ 내역사업의 예산 규모 대폭 확대되었기 때문이며, 정책 수행의 시급성이 인정됨

3-2 정책 제언

- 각 지자체의 독자적인 환경 및 수요를 반영한 지자체별 차별화된 추진 전략을 마련하여 각 연도의 사업 진행을 권고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행정안전부
사 업 명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보조유형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7.2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9.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9.4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4.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7.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6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8.2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2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본 사업의 검토 결과, 정상추진으로 판정함 · 지방관리 도로의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공공성이 높아 목적의 타당성이 인정됨. 일부 제기 되어 온 이슈(성과목표 미달성, 집행을 저조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적절히 마련함 · ‘국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19)’,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중장기 개선계획(’20)’,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20)’ 등 국가의 주요 정책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본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확보됨. 최근 사업방식 변경의 결과로 성과목표 달성율과 실적행율이 급증하여 그간 지적되어 온 이슈의 개선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20년 예산 규모가 급증하였으나,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정책 수행의 시급성이 인정됨 · 현재 증가 추세에 있는 노인 교통사고를 평가 요소로 반영하는 등의 평가지표 개선이 권고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도로교통법」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노인 보호구역 개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내역사업의 경우 동법률에서 필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근거가 명확함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의 경우, 「교통안전법」에서 추진의 근거가 제시되어 있으나, 보조사업 형태에 대한 구속력은 낮은 것으로 보임
- * 과거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도로 중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구간의 개선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한다고 명시하고 있었으나, 해당법이 폐지됨(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

< 도로교통법 제138조 >

제138조의2(국고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

제10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① 특별시장등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교통안전법 제48조 >

제48조 (교통안전사업에의 투자 등) ① 국가 등은 그가 설치·관리 또는 운영하는 교통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관리 또는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외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투자비 등을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투자평가지침 적용대상: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 지방관리 도로의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하는 사업으로, 교통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사업의 공공성이 높아 목적의 타당성이 인정됨
- 본 사업은 지방관리도로의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국정과제의 하나인 교통사고 사상자를 줄이기(교통사고의 90% 이상이 지방도로에서 발생) 목표달성과 연관성이 높음
- 또한, 지방도로구조개선이라는 프로그램 목표 및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이라는 단위사업 목표와 부합함



- ‘국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19)’,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중장기 개선계획(’20)’,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20)’ 등 국가의 주요 정책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본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확보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보조사업의 내역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노인보호구역 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상과 추진 내용이 보다 명확함
 -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교통사고 다발지점의 교통안전시설을 개선
 -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표지, 미끄럼방지 포장, 과속방지턱, 신호등, 과속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
 - * (노인보호구역 개선) 노인보호구역 내 노면표시,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
 - *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안전시설 및 교통운영 체계를 기존 차량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 최근 3개년 성과평가 결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발생 감소율 목표는 달성하였으나, 교통사고 잦은 곳과 보행환경개선지역은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함(’18년 기준 각각 82.5%, 90.8% 달성). 그러나 사업성과가 부진한 원인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17년 대비 달성율이 증가하고 있음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8차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 변경(’18)’에 ’21년까지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지속추진과 ’22년까지 고령자와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확대 및 정비 추진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어 해당 시점까지 본 사업의 추진 필요성이 인정됨
 - *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16년 1,107개소 → ’22년 2,107개소) 및 시설개선(年 50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확대(’16년 16,355개소 → ’22년 18,155개소) 및 시설정비(年 250개소)
- 단, 기본계획의 목표치 보다 본 사업의 목표치*가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교통안전 강화정책(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생활SOC3개년 계획 등)에 의한 예산 증액에 기인함
 - * ’20년 기준 노인보호구역 116개소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520개소 개선
- 본 사업과의 유사·중복 사업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사업의 수혜 대상은 어린이, 노약자를 포함한 국민으로 광범위하며 효과가 직접적이므로 보조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내역사업마다 개별적으로 연도별 목표치를 산정하고 있고,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내역사업 예산규모가 급증하였으나 정책적 시급성이 인정됨
 - 해당사업 최근 연도별 예산에 비해 '20년 예산이 급증('18년 225억원 → '19년 559억원 → '20년 1,734억원)하였고, 중장기 재정추계 내역 상 '21년의 예산은 더욱 상승하는 것으로 드러남
 - '20년 예산의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20) 추진 과제*에 기인하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내역사업의 예산 규모 대폭 확대되었으며, 정책의 시급성이 인정됨
 - *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 및 신호등 설치를 위하여 20년 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
 - * 향후 '20년 실적행률 및 성과 현황에 따라 '21년 이후 규모의 적정여부 검토 필요

[단위: 백만원]

구분	18년 결산	19년 결산	20년 예산	중장기 재정추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자본보조)	6,570 (4,034)	24,473 (20,828)	32,363	32,363	32,363	32,363	32,363	32,363	32,363
어린이보호구역개선 (자본보조)	11,980 (10,240)	21,019 (18,689)	125,746	181,220	181,370	31,220	31,220	31,220	31,220
노인보호구역개선 (자본보조)	-	2,000 (1,928)	5,800	5,800	5,800	5,800	5,800	5,800	5,800
안전한보행환경조성 (자본보조)	4,000 (630)	8,450 (5,311)	9,500	9,500	9,500	9,500	9,500	9,500	9,500
합계	22,500	55,942	173,409	228,883	229,033	78,883	78,883	78,883	78,883

- 실적 집행률이 '17년 62.4%, '18년 68.4%, '19년 83.5%임을 고려하였을 때, '19년 사업부터 단년도 사업방식에서 2~3년 계속 사업으로 방식을 변경 관리하여 실적 집행률 제고에 기여한 점이 인정됨
 - * 실적행 부진 사유 : 주민협의, 교통안전심의, 타사업 병행추진 등으로 사업추진 지연, 기획재정부 세수 부족에 따른 하반기 국비 집중교부로 실적행 부진(수시배정사업/17~18년)
- 현행 보조율은 보조금법 시행령상의 기준 보조율을 준수, 50%로 산정되어 적정함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인권 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사업 재정투자 확대를 통해 지역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사업에서는 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절차를 준수하여 시·도에서 선정한 사업대상지의 보조목적 적합성, 사업효과 달성여부 등을 검토 후 사업 대상지를 확정하고 있어 선정 과정이 적정함
- 이중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내역사업은 사업 대상지 선정 시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은 지점을 선정토록 하는 등 사전절차를 이행토록 하고 있음
- 또한, 공모로 추진하고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내역사업은 공모평가 기준에 지자체장의 사업추진의지, 지방비 추가부담 능력, 사전절차 이행여부, 타사업과의 연계효과 등 배점 기준을 마련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이 적절히 마련되어 있고,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관리 기준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며(상·하반기)격월로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보조금 집행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 최근 집행률이 증가하였으나, 앞으로도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관리·감독 및 모니터링 등의 실질적인 집행 관리를 면밀히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최근 3년간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대상지가 명확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 “교통사고 잦은 곳”은 도로교통공단에서 매년 개선계획 대상지를 선정하고 행정안전부는 해당 사업에 국비 지원함.



- “어린이·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업 대상지만 국비 지원함.
- “안전한보행환경조성”은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구에 한하여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공모사업 평가위원회에서 3단계 평가(서면, 현장, 발표)를 거쳐 사업대상지 선정함.
- 또한 사업비 변경(10%이상) 및 대상지 변경에 대하여도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무분별한 사업 확대를 방지하고 있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해당 사항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지방관리 도로의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하는 사업으로, 교통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사업의 공공성이 높아 목적의 타당성이 인정됨
- ‘국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19)’,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중장기 개선계획(’20)’,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20)’ 등 국가의 주요 정책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본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확보됨
- 급증한 ’20년 예산의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20)’에 기인하여 ‘어린이보호구역개선’ 내역사업의 예산 규모 대폭 확대되었기 때문이며, 정책 수행의 시급성이 인정됨
- 일부 달성하지 못한 성과목표(교통사고 잦은 곳, 보행환경개선지역)의 달성율이 ’17년 대비 증가하고 있고(’18년 기준 각각 82.5%, 90.8% 달성), 부진했던 실행행률도 사업방식 변경으로 급증하여 그간 지적되어 온 이슈의 개선방안을 적절히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3-2 정책 제언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경우 현재 감소추세이거나 둔화되고 있어 자치단체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평가지표로서는 현재 증가 추세에 있는 노인 교통사고를 평가 요소로 반영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함

기관별 · 사업별 평가의견서

문화체육관광부

3대문화권생태관광기반조성(지역지원)
공연예술진흥기반조성
관광특구활성화지원
광고산업활성화
국립도서관분관운영
국민독서문화증진지원
국민여가캠핑장조성(보조)
국제대회국내 개최지원
국제체육교류지원
뉴스미디어진흥
뉴스유통구조개선
대한체육회운영지원
도서관정책개발및서비스환경개선
도평방지활동지원
문화예술단체운영지원
문화정보다부처연계서비스플랫폼구축(정보화)
문화중심도시육성(지자체)
미디어산업기반구축
박물관문화재단지원

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
언론공익사업
예술의전당지원
예술창작활동지원
우수선수양성지원
인문정신문화사회적확산지원
전국(소년)체전지원
지역문화예술지원
지역신문발전지원
초등학교스포츠강사배치지원
출판산업육성
태권도진흥재단운영(보조)지원
한국관광콘텐츠활성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지원
한국문학번역원지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지원
한국형생태녹색관광육성
회원중목단체및지원



평가요약표

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사업명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 조성
보조유형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3.0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9.6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5.2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8.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30.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6.4
1-5.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3.4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4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4.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 단계적 폐지 (21년말), 사업방식변경 · 국가계획에 의한 사업완료에 의한 2021년 종료 예정으로 단계적 폐지 필요 · 현재 대구와 경북의 코로나19 시국에 따른 관광산업의 급격한 위축으로 상반기 실 집행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한 현실에서 21년 종료까지는 기존의 사업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 관광진흥 경상보조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기간 종료 이후에도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성과가 지속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역관광 경쟁력 강화,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등에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으로 '21년 사업방식 변경 필요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 조성사업은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국가균형발전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동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가능 근거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음
 - 「관광기본법」 제7조는 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관광진흥법」 제76조 등은 문체부 장관이 관광 관련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등에게 보조금 지급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음
 - 「국가균형발전법」 제35조는 지역지원계정의 세출로 지역의 문화·관광자원 육성, 지역고유정신문화 및 지역가치 발굴·선양, 환경 보전 사업 등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용자를 명시하고 있음
- 동 보조사업의 목적은 대구·경북권의 유교, 신라, 가야 등 역사문화자원과 낙동강, 백두대간의 친환경 녹색자원을 연계 개발하여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는데 있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고 타당함
- 하지만, 동 보조사업은 과거 정권의 국정정책 사업에 부합하게 시작했지만 대부분의 내역사업들이 2020년 이전에 사업기간이 종료되며, 동 보조사업의 내역사업, 세부사업들과 현 정부의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방향과의 부합성이 명확하게 기술되지 않아 목적의 타당성 미진한 것으로 보임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의 내역사업은 「3대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 계획」에 따라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 보조사업의 주요 내역사업으로는 달성습지 탐방나루(대구), 신화랑풍류체험벨트(경주시, 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삼국유사가온누리(군위군), 녹색문화상생벨트(문경시, 예천군) 등이 있으며 5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연계사업보다는 각 자치단체별 개별 사업으로 판단되며, 관광단지 조성으로 인한 지역별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지 의문임.
- <표 1-2-1>의 세부사업의 세부내역을 보면 관광진흥 경상보조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 목표 대비 실제 집행율이 37~38%이고, 관광개발 자본보조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목표 대비 실제 집행율이 58%, 67%으로 낮은 편

사업명	기간	사업내용	목표집행액	실제집행액	목표대비 실제집행율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2016~2021	대구 3대문화권 진흥사업 추진	127억원	127억원	38 %
경상북도 관광진흥	2016~2021	경북 3대문화권 진흥사업 추진	169억원	62억원	37 %
대구광역시 관광개발	2010~2021	대구 3대문화권 개발사업 추진	504억원	337억원	67 %
경상북도 관광개발	2010~2021	경북 3대문화권 진흥사업 추진	1조950억원	1조136억원	58 %

- 성과지표로 3대문화권 지역관광객수와 3대문화권 공정률을 제시하고 있어 사업효과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예산 투자 대비 '18년~19년 관광객수 증가는 30만명에 그쳐 사업진행의 누적효과성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보조사업은 각 자치단체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지 조성이라는 목적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됨
- 1차 수혜자는 사업 지역 주민, 관광 관련 사업자 또는 종사자 등이 해당될 것이며, 2차 수혜자는 새로이 조성된 관광시설물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 각종 문화시설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등이 2차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음
- 동 보조사업은 12년간 지속되는 장기사업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21년에 종료될 예정이며 사업종료인 '21년 이후 중장기 재정추계도 없기 때문에 단계적 폐기가 필요함
- 사업기간 종료 이후에도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성과가 지속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개선해야하기 이를 위한 보완이 필요함
- 사업기간 종료 이후 지자체 예산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킬 필요가 있음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현재 대구와 경북의 코로나19 시국에 따른 관광산업의 급격한 위축으로 상반기 실 집행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한 현실에서 기존의 사업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 해당 국고보조 사업의 구성의 경우 경상보조인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관광진흥의 '20년의 예산은 대구의 경우 약 4배 증가한 4,326백만원이며, 경상북도의 경우 7배 증가한 70억으로 배정하고 있으나 부처의 소명에 따르면 이는 '16년 실시계획 설계 이후 4년차를 맞이한 관광진흥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증액 사업비임

구분	17년 결산	18년 결산	19년 실적	20년 계획
3대문화권 생태관광 기반조성(4153-300)	165,812	116,083	70,873	103,112
대구광역시 관광진흥(330-01)	1,000	2,000	1,400	4,326
경상북도 관광진흥(330-01)	1,000	3,800	1,000	7,000

- 아래 표에서 보듯이 부처에서 소명한 최근 3년간 실집행 내역을 보면 3년 평균 집행률이 96.2%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사업추진현황 및 코로나 시국으로 인한 해당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21년 예산규모는 적정한 것으로 보임

년도	세목	사업시행주체 (기관명)	부처			사업시행주체(지자체)						
			예산		집행	교부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 (B)	이월	불용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17	330-01	대구광역시	1,000	1,000	1,000	1,000	254	1,254	192	1,062	-	15.3
		경상북도	1,000	1,000	1,000	1,000	350	1,350	329	1,021	-	24.3
		합 계	2,000	2,000	2,000	2,000	604	2,604	521	2,083	-	26.1
2018	330-01	대구광역시	2,000	2,000	2,000	2,000	1,062	3,062	3,000	62	-	150.0
		경상북도	3,800	3,800	3,800	3,800	1,021	4,821	3,219	1,602	-	84.7
		합 계	5,800	5,800	5,800	5,800	2,083	7,883	6,219	1,664	-	107.2
2019	330-01	대구광역시	1,400	1,400	1,400	1,400	62	1,462	1,127	335	-	80.5
		경상북도	1,000	1,000	1,000	1,000	1,602	2,602	2,602	-	-	260.2
		합 계	2,400	2,400	2,400	2,400	1,664	3,064	3,729	335	-	155.4

- 21년까지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재정소요를 추계하고 있어 재정규모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예산 및 사업규모 등이 확정된 「3대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자 평가 및 선정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조성 사업은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내용의 적정성, 사업추진 타당성, 파급효과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 조성계획에 부합되는 사업을 이미 선정하여 동 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한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의 적정성,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선정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라 지자체 보조사업을 적정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반기별 수행상황보고 및 사업완료시 실적보고를 통해 사업의 보조금 규모에 대한 검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집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패널티 적용 및 개선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동법시행령」 제15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6조에 의거 중요재산 정보공시하고 있어 적절히 관리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라 부정수급 관리를 준용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조정을 통한 제재조치를 이행하고 있으나 국무조정실에 의해 외부적발 건수는 6건이 추가로 발생되었기에,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동 사업은 부정수급에 대한 외부적발 실적이 자체적발 실적보다 많아 가점이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보조사업은 「3대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12년 기간동안 70%의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진 사업으로 대구·경북권의 신라·가야·유교 등 역사문화 자원과 낙동강·백두대간권의 친환경 녹색자원의 관광자원화를 통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유도하는 목적을 가짐
- 동 보조사업은 12년간 지속되는 장기사업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21년에 종료될 예정이며 사업종료인 '21년 이후 중장기 재정추계도 없기 때문에 단계적 폐기가 필요하며 사업기간 종료 이후에도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성과가 지속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기 위한 형태로 사업방식변경이 필요함
-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라 부정수급 관리를 준용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조정을 통한 제재조치를 이행하고 있으나 국무조정실에 의해 외부적발 건수는 6건이 추가로 발생되었기에,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2 정책 제언

- 동 보조사업은 2021년 종료하는 사업으로 단계적 폐지가 필요
- 현재 대구와 경북의 코로나19 시국에 따른 관광산업의 급격한 위축으로 상반기 실 집행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한 현실에서 기존의 사업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사업기간 종료 이후에도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성과가 지속될 수 있는 방향으로 '21년 관광진흥사업과 연계한 추진 지자체의 향후 연계방안이 사전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함.
 - (주민참여형 관광산업 구축) 관광진흥사업 종료(~'21년) 이후 사업별 지속 가능한 성과 관리 체계 구축 및 관광서비스 고도화 등의 시군 실행 강화 추진
 - (관광인적자원육성사업) 대표 아마추어 관광사업자(투어마스터) 육성등을 고려할 수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68.5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3.6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4.6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1.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1.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4.9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4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 변경 ·성과평가 결과는 비교적 양호하나 다른 지표 개발 필요. 본 보조사업의 효과성을 포괄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함. 또한 성과지표의 목표 설정에 보다 객관적인 제시가 필요함 ·중소규모 문화관람 지원이용활성화 내역사업의 실질적 이용률 증진 노력 필요. 민간 티켓판매 플랫폼(예: 인터파크 등)에 비해 위 내역사업을 통한 티켓 판매 비중이 매우 낮은 수준임. 홍보 등을 통한 이용률 증진의 노력이 필요함 ·간접 수혜자의 수혜내용이 다소 추상적이며, 본 보조사업으로 인해 그 편익(수혜)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의 설명이 부족함. 더욱이, 간접 수혜자의 규모의 계산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필요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본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는 공연법 제2조(정의), 제8조(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등에 공연 연습장 설치와 운영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
- 또한, 문화예술진흥법 제14조(문화산업의 육성·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그 법적 근거가 됨
- 하지만, 본 보조사업과 직접성, 구체성 등을 고려하면 위 법률이 강한 법적 근거로 보기는 어려움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보조사업은 공연예술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공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附隨)한 공연은 제외한다.
2. "선전물"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과 초대권을 말한다.
3. "공연자"란 공연을 주재(主宰)하거나 직접 하는 자를 말한다.
4. "공연장"이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공연연습장"이란 공연연습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연소자"란 18세 미만의 사람(「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공연법 제8조(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육성을 위하여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라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본 보조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공연예술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을 통해 순수예술분야 경쟁력을 제고하고, 예술의 대중 확산에 기여하여 국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목적을 위한 내역사업은 총 5개로 합리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판단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내역사업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판단됨
 - 계획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노력이 보이나, '19년의 경우 당초 계획한대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실집행률 74.5%). 다만, 이는 20년도부터 문제사업 폐지(신규 공연연습공간 조성 전액삭감)를 통해 실집행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성과평가 결과는 비교적 양호하나 다른 지표 개발 필요
 - 공연연습공간 가동률, 공연장 시설지원 및 안전점검 지원 수 등이 주요 성과평가 지표로 제시됨. 이는 전형적인 정량적 지표로 본 보조사업의 효과성을 포괄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함
 - 또한 성과지표의 목표 설정에 보다 객관적인 제시가 필요함. 예를 들어, 공연장 시설지원 및 안전점검 지원 수의 경우, '17년 이미 101%의 달성도를 보이는데, 이후에도 동일한 지표 목표를 유지함
- 중소기업 문화관람 지원이용활성화 내역사업의 실질적 이용률 증진 노력 필요
 - 민간 티켓판매 플랫폼(예: 인터파크 등)에 비해 위 내역사업을 통한 티켓판매 비중이 매우 낮은 수준임. 홍보 등을 통한 이용률 증진의 노력이 필요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보조사업의 목적을 감안할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민간단체 보조를 통한 사업추진 방향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 특히, 본 보조사업이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바, 보조비 지급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본 보조사업은 타 사업과의 중복은 확인되지 않음



- 순수예술로서 상업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예술분야의 경우 국가적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육성이 필요함

○ 수혜자의 범위가 명확하고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지 못함

- 직접 수혜자의 경우에는 비교적 명확하고 적정하게 설정한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간접 수혜자의 수혜내용이 다소 추상적이며, 본 보조사업으로 인해 그 편익(수혜)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의 설명이 부족함. 더욱이, 간접 수혜자의 규모의 계산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필요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보조사업의 내역사업별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적정한 사업비 규모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산출근거를 마련하여 예산규모를 설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최근 다소 낮은 실집행률이 문제가 됨(예: 공연연습공간 조성 및 운영)
- 최근 발생한 저조한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적기 추진 여건을 고려한 지원 대상 선정, 추진실적 미진 시 지원 취소 등 예산계획 및 사업관리 효율화 노력이 필요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 사항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선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본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을 갖추고 있지는 않음
 -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을 준용하여 사업자 선정을 하고 있음
 - 다만, 사업자 선정 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상기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하였지와 민간보조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상기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움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본 보조사업 집행과 관련하여 본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음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과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본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을 갖추고 있지는 않음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과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의 규정에 따라 부정수급 관리를 시행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자체 적발 이력은 없으나, 지원 관련 사업 및 시설에서 비리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부정수급 방지 대책 마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자체 사업관리를 위한 구체적 노력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보조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공연예술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을 통해 순수예술분야 경쟁력을 제고하고 예술의 대중 확산에 기여하여, 국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에 있다고 볼 수 있어, 국가의 보조금 지급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2 정책 제언

- 보조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내역사업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판단됨
 - 계획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노력이 보이나, '19년의 경우 당초 계획한대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실집행률 74.5%). 이에 따른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성과평가 결과는 비교적 양호하나 다른 지표 개발 필요
 - 공연연습공간 가동률, 공연장 시설지원 및 안전점검 지원 수 등이 주요 성과평가 지표로 제시됨. 이는 전형적인 정량적 지표로 본 보조사업의 효과성을 포괄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함
 - 또한 성과지표의 목표 설정에 보다 객관적인 제시가 필요함. 예를 들어, 공연장 시설지원 및 안전점검 지원 수의 경우, '17년 이미 101%의 달성도를 보이는데, 이후에도 동일한 지표 목표를 유지함
- 수혜자의 범위가 명확하고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지 못함
 - 직접 수혜자의 경우에는 비교적 명확하고 적정하게 설정한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간접 수혜자의 수혜내용이 다소 추상적이며, 본 보조사업으로 인해 그 편익(수혜)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의 설명이 부족함. 더욱이, 간접 수혜자의 규모의 계산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관광특구활성화지원
보조유형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69.2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5.2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5.2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8.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4.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4.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사업방식변경 · 동 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매칭자금의 적절하게 교부되지 못하면서 실행을 부진하며, 사업집행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 자체규정 등이 마련되지 못함 · 외부평가에서 사업 제도개선 및 감축 지적이 있었고, 2018년, 2019년도 실행행렬이 지속적으로 저조했으나 2020년부터 지자체의 사업비 교부 관련 계획 검토 후 국고 보조금을 교부하는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한 증빙을 확인하여 실행행렬 제고가 예상됨 · 수혜 범위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사업 효과성을 파악하기 어려움으로 직, 간접 수혜 범위를 구체적인 수치 제시 보완이 필요함 · 사업 집행에 있어서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자체 규정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 자체 규정 마련 및 관리가 필요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동 보조사업은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관광진흥법」 제72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광특구 방문 외국인의 관광 편의를 증진하는데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3조에 의거하여 관광특구의 평가를 통해서 우수 관광특구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광진흥법 >

제72조(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활동을 위한 편의 증진 등 관광특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리한 관광 활동을 위하여 관광특구 안의 문화·체육·숙박·상가·교통·주차시설로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73조(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 ①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1조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평가하고, 우수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추진 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특구의 지정취소·면적조정·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추진 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에게 관광특구의 지정취소·면적조정·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동 보조사업은 2개의 내역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근거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법적 근거가 있음
- 동 보조사업은 국정과제, 공약사업, 계획사업에 해당되지 않지만 민간과 지자체 자체 사업만으로 실시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 보조사업으로 지원함이 타당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보조사업은 관광특구 지역을 관리, 지원함으로써 관광특구지역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관광콘텐츠 개발과 관광편의시설 개선 등의 지원, 관광특구 홍보 및 마케팅, 관광특구 평가 등의 내역사업은 합리적으로 구성되었고 추진되고 있음
 - 내역사업구성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관광특구 지원> 내역사업에 내에 <관광특구 홍보 및 마케팅>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는 관광특구 홍보, 마케팅, 평가를 다른 내역사업으로 포함하고 있어 내역사업 간 조정 검토가 필요함
-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의 저조로 국회 등의 평가에서 예산 감액 지적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조치로 2018년부터 사업예산을 감액하여 운영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용액이 발생하고 실집행률이 지속적으로 저조하여 예산 집행이 비효율적임.
 - 관광특구지원 중 지자체 지원 부분의 집행률 저조가 원인으로 사전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국비 지원 규모를 고지하여 지방비 매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불용액 개선 전략을 2020년부터 시행하도록 하여 실집행률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
 - 내역사업 중 <관광콘텐츠 개발 및 시설 개선> 성과 측정을 위한 지표 개발이 필요함. 또한, <관광특구 평가>에 대한 성과를 제시함으로써 동 사업의 성과를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음
 - 사업성과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평가하는 근거규정을 마련(관광진흥법 개정/19.12)하였으며, 관광특구 평가방안, 평가내용(지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위법령 개정을 상반기 완료 예정(~20.6)으로 성과 관리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보조사업이 국정과제 등에 해당 사항은 없지만 관광특구 지정 등이 국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관광특구를 육성하고 관리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내실화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증진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으므로 보조사업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됨



- 동 보조사업은 타 사업과 중복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동 보조사업의 직접적 수혜자는 관광특구 지자체이며, 간접적으로는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국내외 이용객 및 관광객, 해당 관광특구의 관광 사업자 및 종사자 등으로 수혜범위가 광범위함
 - 직접 및 간접 수혜범위를 정량화하거나 구체화된 수치로 제시하여 보조사업 지속에 대한 타당성을 높여야 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 집행행렬은 2018, 2019년 매우 저조함. 사업 특성으로 인한 집행률 저조의 상을 제시하였으나 지속되는 집행률 저조에 방안 마련하고 있고 2020년부터 시행하고자 함
- 국고보조율은 집행률 저조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감액한 예산편성을 하였으며, 관광자원 개발 기준보조율 50%로 근거로 책정은 타당함
- 연도별 사업목표에 따라서 재정소요액을 추계하고 당해연도 및 중장기 예산편성은 적절하게 하고 있음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동 보조사업은 관광특구를 지원 및 관리를 통해서 지역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에 간접적 기여를 인정하지만 직접적 기여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움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은 「보조금법」 제 16조, 제17조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장의 준용하여 규정하고 있음
 -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을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기준을 공지하는 등의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으나 자체 규정 마련이 되지 않음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의 사업추진 및 환류 절차에 의거하여 사업 전반에 관한 법적합성, 적정성 등의 사전검토를 하였으나 자체 기준 등이 명시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함. 재원의 사후관리에 관한 제반 규정을 마련하고 절차대로 진행하였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 승인 시 예산항목별 사용범위 및 한도를 보고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산 변경 시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보조금 집행 상황 및 사업 수행 상황을 점검, 관리, 감독을 명시하고 있으며 준수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에 대한 자체 규정 마련이 필요함. 현장 점검을 통해서 보조사업의 집행 점검을 관리하고 있어 적절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등의 규정으로 교부 조건을 제시하고 보조금 반환, 정산, 중요재산 관리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사업 완료 후 정산보고서, 실적보고서, 전문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검증보고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검토 등으로 사업집행 관리가 적절함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전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여 부정수급을 관리하였으며 최근 3년간 적발건수 없음
- 각 지자체별 회계감사 및 규정 등을 마련하여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사업 집행과 예산 집행 점검을 위해서 상반기 교부액 집행액 파악하고 사업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결과를 당해연도 하반기 및 익년도 예산 교부 시에 반영하여 사업 집행의 적정성을 높이하고자 하였으나 자체 사업관리 노력으로 보기 어려움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보조사업은 「관광진흥법」 외 관련 법령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나 내역사업도 관련 법령에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 동 보조사업의 내역사업의 구성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사업방식변경이 필요됨.
 - '19년부터 실집행 제고를 위해 단년도 지원사업에서 2개년 지원사업으로 변경 추진하였으며, 당해연도 공모 시 공모 선정기간 및 지방비(추경) 확보에 대한 기간 소요로 1차년도 실집행 저조가 불가피하였음.
 - 다만, '20년부터 차년도 지원사업에 대해 사전공모 실시하여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될 것으로 예상됨
- 내역사업의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선이 필요하고, 직·간접 수혜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확대가능성이 제시되지 않아 이에 대한 수혜범위 제시 및 확대가 필요함
- 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사업 집행, 보조사업 사후관리,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이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음.
 - 지자체 보조사업인 만큼 해당 지자체 상황에 맞는 자체 규정 마련이 필요함

3-2 정책 제언

- 동 보조사업은 내역사업 내용조정,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정책 마련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광고산업활성화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57.8
1. 보조사업의 타당성	45.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5.2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5.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18.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5.8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2.8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2.9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2.9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 감축, 사업방식 변경 · 본 사업은 2021년 ~ 23년 안에 일정수준의 감축과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함 · 본 사업은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내역사업의 성격이 지자체와의 관련성이 높으며,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성과지표가 미흡하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없음. 따라서 예산 감축과 사업 방식 변경으로 판정함 · 본 사업의 내역사업인 부산국제광고제 지원 사업이 국내 유일의 국제광고제라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본 사업의 목적과 방향성이 명확하고 지자체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음. 다만 내역사업에 대한 별도의 성과지표가 없어 구체적인 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하기가 어려우며, 사업이 지자체와의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사업 규모를 적정 수준에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2020년은 국고보조를 30%에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이후 국고보조를 25% 수준으로 조정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의 내역사업은 ‘부산국제광고제 지원사업’으로 구성되며,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음
- 이 중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항목은 ‘바. 광고 관련된 사업’에 해당함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나.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다.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마.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바.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사.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아. 대중문화예술산업

자.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차.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다만,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문화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당합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창업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① 정부는 문화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방송·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마케팅·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 유치, 국제영상제·전본시장 참여 및 국내 유치,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본 사업의 목적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 국가 지원의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됨
 - 보조사업의 목적은 다매체·다채널화, 방송·통신 융합 등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방송 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고품질의 국제 경쟁력을 갖춘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한 방송 영상산업 발전 기반 마련임
 - 세부 내역사업의 목적은 부산국제광고제를 아·태 지역을 대표하는 국제광고제로 육성하여 국내 광고산업 발전 및 국제 경쟁력 강화 도모하고, 우수 예비인력을 대상으로 실제 프로젝트 제작을 통한 실무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광고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실무 중심 광고 창의 인재양성 등으로 구체적이고 명시적임
- 국정과제와 연계성은 없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의 내역사업은 부산국제광고제 지원이며, 2019년 기준 세부적으로 ‘언박싱, 부산’을 통한 창업기업 제품 홍보, 기업 홍보 부스 운영, 광고산업 실무자 교육, 광고인재 육성(부대행사), 잡멘토링, 인턴십 지원 등이 사업 내용임
-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수행되었음. 매년 보조사업자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교부 결정 시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계획 대비 집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며 사업을 관리하고 있음
- 내역사업에 대한 별도의 성과지표는 없으나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부산국제광고제 지원 사업에 대한 출품 규모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성과지표가 없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성이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 내역사업에 대한 성과목표는 내역사업(부산국제광고제개최 지원) 단위가 아닌 단위사업 단위(방송영상콘텐츠 및 광고산업 활성화)로 설정하므로 부산국제광고제 개최지원 사업은 별도의 성과지표는 설정하지 않음
-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수행되었으며 내역사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성과지표가 없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성이 불분명함.
- 다만 부산국제광고제의 출품 규모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사업의 효과성 측정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판단됨(2017년 56개국 21,503편, 2018년 57개국 20,342편, 2019년 60개국 20,645편)
- 중장기적으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개발을 권고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에 포함된 내역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고려하여 지자체 수행을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일정 수준의 감축이 필요함. 다만 국제광고제 개최 지원을 위해 정부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사업의 목적과 방향이 명확하고 내역사업인 부산국제광고제 지원 사업은 국내 유일의 국제광고제라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그러나 사업 성격이 지자체와의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지자체 중심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고 국고 보조율도 적정 수준인 25%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 2017년 보조사업 평가결과에서도 단계적 감축과 단계적 폐지를 판정받았으며, 국고보조율을 2019년 기준으로 24.3% 수준으로 조정하고, 글로벌광고인재센터와 광고창작경연사업을 일반용역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고 있음
- 타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사업은 확인되지 않으며, 내역사업의 중복성도 없음
- 본 보조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국내외 광고산업 종사자이며, 간접 수혜자는 일반국민임. 수혜 내용은 광고제 참관을 통한 국내 광고 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 및 광고산업을 체험할 수 있는 광범위한 기회를 제공. 수혜자가 광범위하지만 보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방식의 변경이 필요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한 보조금 규모에 대한 산출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실집행률은 양호함
 - 예산의 실집행률은 2018년 95.5%, 2019년 95.0%로 매우 양호함
- 부산국제광고제 지원 사업은 예산 규모의 적정 수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본 사업은 「보조금법 시행령」 상 기준 보조율을 적용받지 않으며, 내역사업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실제 경비를 사업비로 지원하는 정액 보조금 방식이 합리적임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본 사업을 통해 ‘품위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사업의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관계 법령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사업자 선정 및 교부절차를 준수하고 수행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본 사업의 보조사업만을 별도 규정은 없으나, 관계 법령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집행을 관리 및 감독하고 있음
 - 보조사업의 집행관리, 보조사업의 정산, 회계감사, 정산보고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정보공시 등 보조금 집행 관련 절차를 적정하게 관리 및 감독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본 사업은 관계 법령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부정수급을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없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보조금 지급 근거가 명확하고 관계 법령에 의해 규정되어 있음
- 본 사업의 내역사업인 부산국제광고제 지원사업의 목적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 국가 지원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본 사업의 사업방식은 지자체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국제광고제 개최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정부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됨
 - 2019년 기준으로 국비(24.3%)와 지자체(75.6%, 자부담 포함)로 구성되며, 2020년 30% 수준으로 국고 보조율을 유지하고 있음
-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수행되었으며 내역사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성과지표가 없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성이 불분명함. 다만 부산국제광고제의 출품 규모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사업의 효과성 측정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판단됨(2017년 56개국 21,503편, 2018년 57개국 20,342편, 2019년 60개국 20,645편)
- 본 사업의 목적과 방향이 명확하고 내역사업인 부산국제광고제 지원 사업은 국내 유일의 국제광고제라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그러나 내역사업의 성격이 지자체와의 관련성이 높으며,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성과지표가 미흡하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감축과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함
 - 사업 성격이 지자체와의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지자체 중심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고 국고 보조율도 적정 수준인 25%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 2017년 보조사업 평가결과에서도 단계적 감축과 단계적 폐지를 판정받았으며, 국고보조율을 2019년 기준으로 24.3% 수준으로 조정하고, 글로벌광고인재센터와 광고창작경연사업을 일반용역사업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음
- 보조사업자 공모, 보조사업 집행 관리, 부정수급 방지 대책 등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부정수급 적발건수도 없음



3-2 정책 제언

-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중장기적인 성과 목표와 성과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보조사업의 내역사업인 부산국제광고제 지원 사업은 지자체와의 관련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국고 보조율을 적정수준인 25% 수준으로 조정하고, 지자체 중심으로 사업 방식이 변경하는 것을 권고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국립도서관 분관 운영
보조유형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2.1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6.2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5.2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1.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1.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5.9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2.9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1.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 변경 ·사업을 신청한 공공도서관 49개관 중 외부 전문평가위원의 심사를 통해 수행기관 (공공도서관) 34개관을 선정하고 있음. 보다 정확한 지역별 수요 측정을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함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수) 등이 주요 성과평가 지표로 제시됨. 이는 전형적인 정량적 지표로 본 보조사업의 효과성을 포괄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함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의 설치도 중요하지만, 이용률과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러한 지표들의 달성도가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임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본 보조사업은 도서관법 제43조, 제44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도서관법 제43조 제1항에 “도서관은 모든 국민이 신체적·지역적·경제적·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법 제44조 제2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도서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보조금 지급 근거가 명확하다고 판단됨

도서관법 제43조(도서관의 책무)

- ① 도서관은 모든 국민이 신체적·지역적·경제적·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도서관은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하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서관자료의 확충, 제공 및 공동 활용체제 구축
 2. 교육·문화 프로그램의 확충 및 제공
 3. 도서관 편의시설 확충, 이용편의 제공 및 전문인력 배치
 4. 다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5. 그 밖에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서관법 제44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자료의 확충, 제공 및 공동 활용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2.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 편의시설의 확충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도서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상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본 보조사업의 목적은 그 내역사업 별 목적으로 살펴볼 수 있음
 -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 내역사업은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환경구축 및 기반 조성을 그 목적으로 함
 - 공공도서관에 설치되는 독서보조기기 비용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국가의 지원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내역사업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판단됨
 - 계획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노력이 보이며, 당초 계획한대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음
- 성과평가 결과는 비교적 양호하나 다른 지표 개발 필요
 -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수) 등이 주요 성과평가 지표로 제시됨. 이는 전형적인 정량적 지표로 본 보조사업의 효과성을 포괄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함
 -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의 설치도 중요하지만, 이용률과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러한 지표들의 달성도가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성과지표의 목표 설정에 보다 객관적인 제시가 필요함. 예를 들어,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수) 성과지표의 경우 '17년과 '18년은 각각 25와 23이었으나, 19년 34로 증가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보조사업의 목적을 감안할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지자체별 추진을 통한 사업추진 방향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 본 보조사업은 타 사업과의 중복은 확인되지 않음
 - 인구고령화 및 장애등급제 폐지 등의 요인으로 장애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정보제공처로서 공공도서관이 장애여부와 관계없이 공평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별 특화된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간접수혜자의 범위를 모든 장애인으로 설정하였음. 이는 현실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너무 넓다고 판단됨. 왜냐하면, 장애 정도가 경미하여 독서보조기의 사용이 필요 없는 장애인들과 장애 정도가 너무 심하여 독서보조기 사용이 어려운 경우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임

○ 국가도서관 통계현황에 따르면 장애인도서관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서울이 다른 도시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 더욱이, 서울시와 광역시 이외에는 '16년 당시 장애인도서관이 설치되지 않음
- '19년 민간 장애인도서관의 지역분균형(42개관 중 서울 16, 경기도 5)으로 인해 장애인의 정보 사각지대 지속되고 있음
- 이러한 지역불균형의 해소에 본 보조사업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보조사업의 내역사업별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적정한 사업비 규모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산출근거를 마련하여 예산규모를 설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됨
- 사업을 신청한 공공도서관 49개관 중 외부 전문평가위원의 심사를 통해 수행기관(공공도서관) 34개관을 선정하고 있음. 현재 지자체별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데, 보다 정확한 지역별 수요 측정을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함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본 보조사업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등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간접적 기여도를 인정할 수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선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본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을 갖추고 있지는 않음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지방비 확보(50:50 매칭사업)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장애인서비스 운영지원 담보 여부 등 지방자치단체의 의지, 지자체 규모 및 재정여건, 독서보조기기 활용 계획 등을 고려하여 사업 목적 달성이 가능한 기관을 외부 전문심사위원 5명의 구성·평가를 통해 선정하고 있는데, 이는 타당하다고 보임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본 보조사업 집행과 관련하여 본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음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교부결정통보시 교부결정통보지서와 함께 집행 및 정산 규정에 대해 교부조건에 대해 상세하게 통보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정수급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본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을 갖추고 있지는 않음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의 규정에 따라 부정수급 관리를 시행하고 있음.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수행기관 및 독서보조기기 구입 품목을 실사 확인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예산 집행 관리 및 실적 관리 등을 점검함
 - 본 보조사업은 지자체 자본보조사업으로 부정수급 관리대상이 아니며, 최근 3년간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자체 적발 이력은 없으나, 지원 관련 사업 및 시설에서 비리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부정수급 방지 대책 마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자체 사업관리를 위한 노력이 보임
 - 현장컨설팅, 독서보조기기 전문성 강화교육, 현장점검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공공도서관에 설치되는 독서보조기기 비용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국가의 지원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계획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노력이 보이며, 당초 계획한대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음

3-2 정책 제언

- 보다 정확한 지역별 수요 측정이 필요함
 - 사업을 신청한 공공도서관 49개관 중 외부 전문평가위원의 심사를 통해 수행기관(공공도서관) 34개관을 선정하고 있음. 보다 정확한 지역별 수요 측정을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함
- 성과평가 결과는 비교적 양호하나 다른 지표 개발 필요
 -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수) 등이 주요 성과평가 지표로 제시됨. 이는 전형적인 정량적 지표로 본 보조사업의 효과성을 포괄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함
 -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의 설치도 중요하지만, 이용률과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러한 지표들의 달성도가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임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국민독서문화증진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3.6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9.6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6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1.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4.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4.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변경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독서소비행태 변화에 대응하는 사업개선노력 필요 ·현재의 체험·강의 위주의 독서문화 진흥 운동 형태를 다변화하여 변화하는 독서소비 행태에 대응할 필요 ·지역에 특화된 독서 문화 진흥사업을 기획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공동 예산 부담을 유도하고 새로운 형태의 독서소비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의 질적 변화를 꾀할 필요. '병영독서활성화지원'의 경우 사업진행 방식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사업시행자도 공모 등을 검토할 필요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동 보조사업은 「독서문화진흥법」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음
 -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제1항은 정부와 지자체가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보조사업의 추진근거가 될 수 있으나
 - 동법 제3조제2항은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일반적인 재정지원 내용을 다루고 있음
- 또한,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제2항은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재정부담에 대한 의무를 지자체에게도 지우고 있음

< 독서문화진흥법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그러나, 동 보조사업의 내용이 『독서문화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부합됨
 - 국정과제 67번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의 하위 과제인 “국민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 중 단위과제 “독서문화 진흥 및 출판문화 활성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방향과의 정합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보조사업은 '08년부터 추진되어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국민독서문화확산’과 ‘병영독서활성화지원’의 2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국민독서문화확산은 인문독서아카데미, 북스타트, 어린이·청소년 독서활동 지원, 독서문화 캠프,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 독서동아리 활동지원, 대한민국 독서대전, 세계 책의 날 등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병영독서활성화지원은 병영독서코칭 지원, 군간부독서강좌, 신병독서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군 장병의 독서문화 진흥을 꾀하고 있음
- 동 보조사업은 독서문화 진흥 및 확산의 성과를 측정을 위해 '18년부터 인문독서 아카데미 사업 참여기관(85개)의 수강생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내역사업별로 고객만족도나 투입지표 위주의 성과지표를 관리하고 있음

내내역사업명	'19 성과지표	목표	실적	달성률(%)	'20 성과목표
인문독서아카데미	고객만족도(점)	86.35	87.42	101	87.65
북스타트	꾸러미 배포 수(개)	110,000	156,551	142	140,000
전국 청소년 독서토론 한마당	참여자수(명)	45,000	45,000	100	47,250
독서문화캠프	프로그램 참가자 수(명)	2,000	2,424	121	2,100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	인증기업 수(개)	100	100	100	100
독서동아리 지원	동아리 수(개)	400	400	100	400
교정시설 독서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수(명)	3,600	3,840	106	3,850
대한민국 독서대전	고객만족도(점)	4.09 (5점 만점)	4.00 (5점 만점)	97.8	4.1
세계 책의 날 행사	고객만족도(점)	4.00 (5점 만점)	4.19 (5점 만점)	105	4.29

- 다만, '병영독서활성화지원'의 경우 매년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으나 70%대에 머무르고 있음
- 또한, '19년 실적행률이 95.4%로 보고되고 있지만, 이는 내내역 사업별로 '17년과 '18년 소액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예산집행상황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보조사업의 내역사업 중 ‘국민독서문화 확산’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책읽는사회문화재단에, ‘병영독서활성화지원’은 사랑의책나눔기운동본부를 통해 추진되고 있음.
- 이들 지원기관을 통해 강의·체험·전시·도서공급의 형태로 일반국민과 군인 등 폭넓은 수혜자에 동 사업내용이 전달되고 있어 간접 수혜자는 상당히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음
- 동 보조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없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동일 부처의 사업으로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지원’이 있음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지원’ 사업의 내용이 출판산업 인프라 기반 구축과 기관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내용상 어느 정도 구분되는 편
- 정책효과, 수혜자의 다양성 등을 고려했을 때 동 보조사업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되나 일반 독자들의 독서의 행태가 변화하고 전자책·오디오 북 등 새로운 형태의 서적이 등장·보급되고 있고 이로 인해 실제 독서율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 국민독서실태조사 (1994년 86.8% → 2017년 59.9%)
- 현재의 체험·강의 위주의 독서문화 진흥 운동형태의 사업추진이 중장기적으로도 지속가능할지를 검토하고 대안마련과 사업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필요가 있음.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 중 2개 내역사업에 대한 보조율이 현재 96%로 설정되어 있으며 최근 3년 동안 일한 보조율을 유지하고 있음
-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가 독서 문화 진흥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사업확대를 위해서 각 시·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시 지자체별 예산투입을 독려할 필요가 있음.

1-5 사회적 가치 실현(가산점)

- 동 보조사업을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독서기회가 제공되고 군대·교정시설 등 다양한 계층에 독서기회가 제공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
- 소외계층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은 전체 예산의 42%를 차지하고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의 지침은 없으며, 부처의 일반적인 보조금 관리규정(문체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을 준용하고 있음
- 사업수행 전 사업계획서를 종합 검토하여 예산을 교부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사업내역 변경승인 등을 받아야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가 등의 경우 공모를 거치지 않고 집행기관이 선정된 바, 정부 보조사업의 공정성 확보차원에서 공모절차 도입을 검토할 필요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동 사업은 부처의 일반적인 보조금 관리규정(문체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을 관리함.
- 사업 수행 과정에서 현장 방문, 회의 등을 통해 집행을 점검하고 사후 회계법인 위탁을 통한 정밀한 회계검사를 병행 추진하는 등 평균적인 수준의 보조금사업을 관리함.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사업의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업 시행 시 사전 협의를 통하여 부적절한 집행이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있으나 기관에 대한 점검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여 집행 현장에 대한 점검노력도 높아나갈 필요가 있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해당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사업은 「독서문화진흥법」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으며 법령의 조항들이 사업추진 근거를 뒷받침하고 있으나 보조사업의 재정지원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지는 않고 있음
- 그러나, 근거 법령의 규정들이 동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내역사업들에 대해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고 국정과제와도 연계성이 있어 법적 타당성과 추진근거는 인정됨
- 독서문화 증진, 병영/교정 시설 독서지원 등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으며 독서문화 진흥 및 확산의 성과를 관리지표 등을 통해 측정·관리하고 있음
- 다만, 사업내용이 체험·강의 위주의 독서문화 진흥 운동형태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현재의 사업추진 방식이 독서행태 변화, 디지털·오디오 북 등 새로운 형태의 독서소비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방식인지 검토하고 사업개선 방향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3-2 정책 제언

- 현재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추후 지역에 특화된 독서 문화 진흥사업을 기획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예산부담을 점진적으로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독서행태 변화, 디지털·오디오 북 등 새로운 형태의 독서소비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독서 문화 진흥사업을 기획·추진할 필요가 있음.
- 공모 등을 통한 선정 등 사업집행기관에 대한 선정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병영독서지원의 경우 폐쇄된 환경의 특성상 독서니즈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재의 낮은 만족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국방부와의 협업을 통해 장병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수요자 니즈분석, 디지털 e-book 대여 등 다양한 형태로 사업이 고도화 될 수 있도록 사업개선 노력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국민여가캠핑장조성(보조)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1.9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9.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4.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1.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4.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3.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2.9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4.4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2.0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5.5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1.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 감축(야영장 안전시설개보수 및 친환경안전캠핑 캠페인), 사업방식변경 · 본 세부사업은 2021년 ~ 23년 안에 일정수준의 감축이 필요함 · 자체적인 적발(1건)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사업의 성과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여 상위목표달성에 대한 기여도가 불명확함. 지자체의 자부담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방식 변경이 충분하게 고려되었다고 할 수 없음 · 동 사업은 2020년 예산이 증가하였으나 증액 및 일부 내역사업의 비용산정 타당성이 미흡하며 예산지원에 따른 성과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음 · 향후 지자체가 보다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필요함. 사업목적인 캠핑장의 질적 성장과 안전하고 건전한 캠핑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성과지표의 개발이 필요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국민여가캠핑장조성사업은 관광기본법 제8조(관광 여건의 조성), 제9조(관광자원의 보호 등), 제13조(국민관광의 발전), 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지원),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는 않음
 - 관광기본법 제8조에 따르면 정부는 관광 여건 조성을 위하여 관광객이 이용할 숙박·교통·휴식시설 등의 개선 및 확충, 휴일·휴가에 대한 제도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함을 명시함
 - 관광진흥법 제76조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함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19.3.4.)으로 야영장 안전·위생 기준이 강화되어 야영장 안전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근거가 비교적 타당하다고 판단됨
-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간의 목적 및 목표의 연관성이 비교적 뚜렷하나 국정과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음
 - (프로그램)관광진흥기반확충 - (단위사업)관광인프라 조성 - (세부사업)국민여가캠핑장 조성으로 사업체계가 구성되어있으며 내역사업은 야영장 안전시설 개보수, 화재안전성 확보사업 등으로 구성됨
 - 동 사업은 캠핑장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캠핑문화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바 정부 지원은 타당성이 있음
 - 동 사업은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여 등 공공적 기능과 외부효과가 있으므로 민간이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임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은 야영장 안전시설개보수, 야영장활성화프로그램조성, 친환경안전캠핑 캠페인, 야영시설화재안전성확보로 비교적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사업비 산출타당성이 미흡함
 - 사업계획 대비 재정소요가 크다고 판단됨
- '2019년 사업예산의 실집행률 98.5%를 달성하였고, 2017년에 95.8%, 2018년 69.2% 실집행률을 보인 바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계획대로 집행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2018년의 경우 1개 사업이 이월되어 집행되어 19년 말 기준 99.5% 집행률을 보였음
- 캠핑장 이용자수를 성과지표로 사용하고 목표치는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상위의 정책 목표를 충실하게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 캠핑장 이용자 수만을 성과지표로 사용하는 것은 사업의 성과를 대표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임
 - 성과의 목표치를 초과달성 하고 있으나 목표치가 도전적이지 못하여 비교적 달성하기가 용이하다고 판단됨
- 동 사업은 캠핑장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고 안전한 캠핑문화 조성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나 그 효과성을 측정하기가 어려움
 - 양적인 숫자로만 성과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캠핑장의 질적 성장과 안전성에 관련한 성과지표를 새롭게 개발할 필요가 있음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궁극적으로 국민이 양질의 야영장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며 안전·위생에 관한 관리강화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지원이 필요함
 - 안전관련 제도개선에 따른 지원 필요사항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국민 안전에 대한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그 필요성은 인정됨



- 건전한 캠핑문화 조성을 위한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과 유사성이 있어 보이나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은 지자체별 캠핑장 조성사업으로 야영장 안전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동사업과는 중복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 동 사업의 1차적 수혜자는 캠핑장을 이용하는 이용자이나 야영장의 안전시설 개보수 및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일반 국민들에게도 간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바 관련 수혜 범위는 명확하나 그 범위가 넓다고 하기는 어려움
- 야영장의 안전은 안전의식 뿐만 아니라 야영장의 안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개보수가 중요하여 사업의 폐지 시 야영장 이용객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보임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사업은 2020년 기준 3개 세부사업 4,705백만원으로 2019년 5,550백만원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증액 및 비용 산정 근거가 미흡함
 - 친환경 안전캠핑 캠페인, 안전교육, 홈페이지 운영 등에 관한 내역사업 산출 규모가 계획 대비 크게 설정되었다고 판단됨
- 중장기 재정추계 내역이 어떤 방식으로 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객관적 합리성도 떨어져 보임
 - 20~26년까지의 재정소요액이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되었음
- 17년 보조사업 결과 자치단체의 부담 비율을 높이고 이용자가 사용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을 권고 받았으며 권고를 비교적 충실히 반영되었다고 판단되나 향후 지자체의 부담비율은 더 높이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18년)국비50%, 지방비50%(민간은 자부담20% 포함) → ('19년)국비40%, 지방비60%(민간은 자부담30% 포함)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라는 사회적 가치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야영장 사업자 안전교육 수료자 수 및 비율이 증가하고 온라인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그 효율성이 증가할 것이라 판단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사업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광진흥개발기금 교부조건 지침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교부하고 있다고 보임. 추진계획상의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며, 지자체 교부신청 시 지방비 및 자부담에 대한 확정적 금액을 제시받고 있으며, 교부결정 시 지방비 확보 의무, 수행상황보고, 보조금 정산 등 교부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통보하여 공모 진행. 사업자 선정을 위해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처도록 하였음. 심사위원은 캠핑 및 관광 관련 학과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됨
- 민간보조의 경우 한국관광공사에 정액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의 공공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동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동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정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사항을 명시하고, 정산 시 정산보고서 및 집행액 입증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고 판단됨
- 교부조건에 정산 시, 사업실적 보고 후 문체부의 정산 확정 통지 필요, 실적의 적합여부 심사 실시 가능성 및 정산 후 반납 조치사항 해당 시 반납의무를 명시함으로써 보조사업자 정산 및 반환과 관련하여 적절한 절차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을 언급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실적의 적합여부 심사 실시 가능성 및 부정수급 시 반환 명령 가능성과 명령 시 반환 의무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어, 보조금 부정수급 발생에 대비하는 절차 및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목적 외 사용’으로 부정수급 1건이 적발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나 이는 자체 적발을 통한 것으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판단됨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보조사업자인 지자체가 보조금 교부 시 지침에 따른 상시 점검을 통해 적발하였으며, 이를 관할 경찰청으로 수사 및 고발 의뢰한 것으로 자체 적발에 해당되어 자체 사업관리 노력을 하고 있다고 판단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사업은 캠핑장의 질적 향상과 안전하고 건전한 캠핑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등의 공공성이 있으므로 향후 보조금 지원은 필요하다고 보임
- 보조금지원 재정규모가 적정하지 않아 보조금 지원액의 일정수준을 감축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은 2020년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일부 내역사업은 증액 및 비용 산정 타당성이 미흡하며 계획대비 산정 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임
 - 야영장 안전시설개보수, 친환경안전캠핑 캠페인 등의 내역사업은 계획대비 비용이 과하게 산정되어 향후 일정수준의 감축이 필요함
 - 17년 보조사업 결과 사용료를 부담하는 식의 사업방식 변경과 자치단체의 부담 비율을 높이는 것을 권고 받았으며 비교적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판단됨
- 관리하는 성과지표가 충분하지 않으며 성과의 목표도전성이 미흡함
 - 캠핑장 이용자수로만 성과를 관리하고 성과 목표도 도전적이지 못함
 - 캠핑장 안전과 캠핑문화의 질적 향상이라는 상위목표에 사업이 기여하는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음
- 부정수급이 적발된 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임

3-2 정책 제언

- 예산의 규모에 비해 관리하는 성과지표가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성과지표를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캠핑장 이용자수 이외에 캠핑장 안전 및 질적인 향상에 관한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자치단체의 주도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자치단체 자체 재원마련을 계획해야 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국제대회국내개최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0.2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6.2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5.2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1.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30.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3.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4.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5.5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변경 ·부정수급이 발생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하였으나 향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예산은 지속적으로 지원되나 사업의 성과에 대한 관리가 부족함 ·'17년 보조사업평가 결과 성과지표를 재설정하는 것을 권고 받았으나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향후 성과지표를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지자체의 무리한 국제대회 유치로 인해 실집행률이 낮아지고 재정의 비효율을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재정지원의 엄격한 심사가 필요함. 사업의 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국제대회국내개최지원사업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제1항 1호·3호, 제33조 제1항 2호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2호에 근거하여 국제경기대회의 국내개최를 통한 지역체육 활성화 및 경기력 향상과 한국스포츠 위상 강화를 목적 시행되는 사업으로 법적근거가 비교적 명확하다고 판단됨
- 동법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제12항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함
- 동법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통합체육회) 제1항에는 통합체육회를 설립하여 체육진흥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함

제33조(통합체육회) ①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합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8. 2. 29., 2009. 3. 18., 2014. 1. 28., 2015. 3. 27.>

1. 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
3.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 동법 시행령 제23조(국민체육진흥계정의 사용범위)에는 국내외 체육대회와 그 관련 행사, 경기단체의 운영·지원을 위해 기금이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됨
-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간의 목적 및 목표의 연관성이 비교적 뚜렷하나 동 사업은 국정과제와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국제스포츠 역량강화라는 프로그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위사업(국제스포츠 교류 활성화), 세부사업(국제대회 국내개최 지원), 내역사업 간 구성이 체계적이라고 볼 수 있음
- 동 사업은 국제경기대회를 국내에 개최함으로써 지역의 스포츠 활성화 및 국제적 지명도 제고, 주민의 자긍심고취, 지역경제활성화 등에 기여하는 바 공공성이 있으므로 국가적 지원의 타당성이 있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은 종목별 국제대회 개최지원, 지자체 개최 각종 국제대회,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국제대회유치·개최역량강화, 2019충주무예마스터십대회로 구성되어 비교적 합리적이라 할 수 있음
 - 국내에서 국비 10억 미만의 소규모로 개최되는 종목별·지자체 대회와 국가적 차원에서 국비 10억 이상 대규모로 개최되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및 2019충주무예마스터십대회, 그리고 국제대회의 효율적인 유치 및 개최타당성 제고를 위한 국제대회유치·개최역량강화 사업으로 이루어져 내역사업별로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음
 - 종목별 국제대회 개최지원과 지자체 개최 각종 국제대회 내역사업은 상호 배타적이므로 사업예산의 중복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됨
- 2017~2019년 사업예산의 실행행률 90%를 달성한바 비교적 계획대로 집행되었다고 할 수 있음
 -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지원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사업 추진 지연으로 연도말 기준 실행행률은 저조했으나 ’19년 대회 종료 후, 이월액 모두 실행행을 완료하였음
 - 충주무예마스터십 대회도 ’19년 정산 결과 실행행률은 98.4%로 집계되었음
- 국제대회 우수선수참여율을 성과지표로 사용하고 있으며 성과지표가 명확하나 성과 목표치가 도전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성과를 충실하게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 ’17년 보조사업평가 결과 사업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모호하고 성과지표를 재설정하는 것을 권고 받아 이에 따라 성과지표를 명확히는 하였으나 성과지표를 재설정하지는 않아 일부만을 이행하였다고 판단됨
 - 국제스포츠연맹도 세계선수권대회, 올림픽 등 국제대회 출전 자격을 각종 국·내외 국제대회 성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므로, 세계랭킹 및 국내대회 순위를 기준으로 우수선수를 결정하는 것은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보임
 - 성과의 목표치가 도전적이지 않아 목표달성도가 100%를 초과달성하기 용이함
- 동 사업은 국제스포츠의 국내개최를 통한 지역체육 활성화 및 세계우수선수들과의 교류를 통한 경기력 향상으로 국가브랜드를 제고하고 한국스포츠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목적을 비교적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음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대부분의 경기대회는 공공성과 비수익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 국제대회지원, 역량·강화사업을 위한 동 사업은 여타 사업과 유사·중복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의 1차적 수혜자는 참가선수, 체육인들이지만 국제스포츠 위상 제고, 일반국민들의 체육활동 참가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하므로 관련 수혜 범위는 비교적 광범위하여 공공재적 성격에 충실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됨
- 국제경기대회 국내 개최를 통한 대회참가 기회 확대를 통해 경기력을 향상시켜 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등의 종합경기대회에서의 우수성적 거양 및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외부효과 등을 감안하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사업 폐지 시 국내에서 개최될 수 있는 국제경기대회 숫자가 줄어들게 되고 대회유치를 통한 국내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국민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 폐지는 어렵다고 보임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사업비의 상세 비용 산정에 대한 근거가 비교적 명확함
- 종목별 국제대회 개최 지원, 국제대회 유치·개최 역량 강화의 세부사업비 산정 근거가 비교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 집행행률이 90%이상 달성되고 있으므로 집행률 측면에서는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보임
- 17년 보조금 평가결과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과거 대회 개최의 성과 평가 등을 기준으로 한 매칭비율의 조정이 권고 되었으나 비교적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판단됨
- 다만 향후 지자체의 무리한 국제대회 유치로 인해 집행률이 낮아지고 재정의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재정지원의 엄격한 심사가 필요함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과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짐
- 광주발전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2조 5백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생산유발액 1조 4천억원, 부가가치유발액 6천 5백억원)와 1만 8천여명의 고용유발효과를 나타냈다고 분석하였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사업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적합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음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통합체육회)에 대한체육회는 체육대회의 개최 및 선수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유일한 단체임을 명시하고 있어 이에 근거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음
- 공모와 관련해서는 관련 지침에 공모방식,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 등을 명시하고 있음
 - ‘지자체 개최 국제대회 공모사업’은 국제경기대회를 개최하려는 광역자치단체(시·도)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2차 발표심사→최종선정의 과정을 거쳐 국비지원 사업을 확정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제3장 보조사업자 선정, 제7조(보조사업자 선정 기준)에는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자부담 능력,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게 명시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선정하고 있다고 보임
- 보조금 지원 시, 적정규모 산정 후 규모에 따라 차등 평가로 국비를 지원하고 있음
 - (10억 이상 국제대회) 기재부(국제행사 지침에 따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타당성 조사를 통해 대회 총사업비 및 국비지원 규모 산정
 - * 창원세계사격선수권, 광주세계수영선수권, 충주무예마스터십
 - (10억 이하 국제대회) 대회 공모시부터 국비 지원규모를 공모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며, 외부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대회위상 및 전년도 대회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국비지원 규모 산정
 - * 국비지원 : 종목별 국제대회(총사업비의 20%이하), 지자체별 국제대회(총사업비의 40%이하)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동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시행령 제12조의2(정산보고서의 검증)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기준을 준수하여 보조사업을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보조금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조사업 집행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3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회계법인 정산보고서 검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제12조의3(특정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등)에 따라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대상으로 외부 감사인(회계법인)을 선정하여 단체별 회계 전반에 대한 적정성 검증 및 자문을 받고 있음
- 기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보조사업의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대한체육회 또한 주기적인 실집행 점검 등을 하여 적절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보임
-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과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보조금 반환, 정산 및 회계검사 등에 관하여 사후관리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준수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보임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을 언급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실적의 적합여부 심사 실시 가능성 및 부정수급 시 반환 명령 가능성과 명령 시 반환 의무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어, 보조금 부정수급 발생에 대비하는 절차 및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이나 관리가 적절하게 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려움
-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에서 인천송도국제마라톤대회, 인천월드인라인킥대회에 대한 자체 수사결과 보조금 횡령 건으로 대상자가 기소되었음을 통보하는('18.10.22) 등 부정수급이 발생한 바, 향후에도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자체적발 이력이 외부적발 이력보다 적어 자체 사업관리 노력은 부족하다고 보임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사업은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스포츠 활성화 및 국제적 지명도 제고, 주민의 자긍심고취, 지역경제활성화 등에 기여하는 바, 향후 보조금 지원은 필요하다고 보임
- 보조금지원 재정규모가 적정하고 비용선정 비교적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 동 사업의 세부적인 비용 산정 근거의 타당성이 있고 재정추계 근거가 합리적임
 - 17년 보조사업 평가결과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과거 대회 개최의 성과 평가 등을 기준으로 한 매칭비율의 조정이 권고 되었으나 충실히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부정수급이 발생한 바 부정수급 관리가 철저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관리하는 성과지표가 충분하지 않으며 성과의 목표도전성이 미흡함
 - 국제대회 우수선수참여율을 성과지표로 사용하고 있으나 성과 목표치가 도전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성과를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 '17년 보조사업평가 결과 사업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모호하고 성과지표를 재설정하는 것을 권고 받았으나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음

3-2 정책 제언

- 예산의 규모에 비해 관리하는 성과지표가 상대적으로 적고 목표달성을 관리하기에 부적합하므로 새로운 성과지표의 체계적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임
- 부정수급의 철저한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 지자체의 국제대회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집행관리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재정지원의 엄격한 심사가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국제체육교류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66.0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1.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5.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1.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5.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1.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 감축, 사업방식 변경 · 본 세부사업은 2021년 ~ 23년 안에 높은 수준의 감축이 필요함 · 낮은 실집행률이 최근 발생함 · 재정규모에 비해 사업의 성과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여 상위목표달성에 대한 기여도가 불명확함. · 실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사업운영방식 변경 모색이 필요. 국제정세 변화로 인한 수요를 적극적으로 예측하여 예산 편성 단계부터 각 내역사업의 규모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국제정세를 정확하게 사전에 예측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국제정세 변화에 적절하고 유연하게 반응하여 위 내역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운영에 대한 대안모색이 필요함 · 본 보조사업과 효과, 성과의 보다 객관적 측정을 위한 방안 모색 필요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본 보조사업은 국민체육진흥법, 국제경기대회지원법 등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국민체육진흥법 제1조(목적)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음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함
 -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본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는 있다고 판단됨

< 국민체육진흥법 >

제1조(목적) 이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량한 국민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 본 보조사업의 목적은 한중일의 스포츠 발전, 청소년 건정 육성, 사회 문화의 이해증진 방안에 대한 정보 교환 및 교류 확대, 국제스포츠 무대에서 적극적인 활동 전개를 통해 리더십 발휘 및 국제스포츠기구 진출 토대 마련 등으로 국가의 지원은 필요하고 타당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은 각각 사업목표와 내용, 지원대상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있으며, 예산 편성과 결산, 정산 및 사업 승인 시에도 해당 사항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18년 기획재정부 협의를 통해 상위사업 목표 사업달성과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국제대회 참가' 사업을 본 사업(국제체육교류 지원)의 내역으로 이관하는 등 자체적인 조정과 통합을 해왔으며, 관리·감독받고 있음
- 성과평가 결과는 비교적 양호하나 다른 지표 개발 필요
 - 재정규모에 비해 사업의 성과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여 상위목표달성에 대한 기여도가 불명확함
 - 주요 국제기구 임원 수(명)가 주요 성과평가 지표로 제시됨. 이 지표는 전형적인 정량적 지표로 본 보조사업의 효과성을 포괄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함.
 - 또한 이 지표는 우리나라의 주요 국제기구 임원 수(명)가 본 보조사업을 통한 결과인지 그 인과관계가 강하다고 보기 어려움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보조사업의 목적을 감안할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지자체별 추진 또는 민간단체 보조를 통한 사업추진 방향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 국제체육교류는 국가이미지 상승, 국가관 교류 증진, 국민 사기 앙양 등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국가적으로도 중요
 - 본 보조사업에 대한 수요가 사업을 연장해야 할 만큼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됨
 - 본 보조사업을 통한 간접적 수혜자를 포함할 경우 그 범위도 충분히 넓다고 판단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보조사업의 내역사업별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적정한 사업비 규모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산출근거를 마련하여 예산규모를 설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됨
- 최근 발생한 저조한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적기 추진 여건을 고려한 지원 대상 선정, 추진 실적 미진 시 지원 취소 등 예산계획 및 사업관리 효율화 노력이 필요함
 - * '19년 기준 실집행률: 국제체육교류(65%), 남북체육교류(8%), 국제대회참가(67%)
- 위 내역사업들이 기본적으로 국제정세 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됨



- 국제정세 변화로 인한 수요를 적극적으로 예측하여 예산 편성 단계부터 각 내역사업의 규모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국제정세를 정확하게 사전에 예측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국제정세 변화에 적절하고 유연하게 반응하여 위 내역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운영에 대한 대안모색이 필요함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본 보조사업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생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간접적 기여도를 인정할 수 있으나,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은 크다고 보기 어려움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선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 국제경기대회지원법, 국제행사의 유치·지원 등에 관한 규정 등 근거로 사업자 선정 이루어짐
 - 국제체육교류 지원 사업은 특성 상 국제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공모 예외조항에 의거하여 공모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본 보조사업 집행과 관련하여 본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을 갖추고 있음
 - 기금관리주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지침」, 「민간보조금 정산 관련 회계검사 시행 기준」, 「국고보조금 집행정보 관리지침」 등을 근거로 함
 - 또한 보조금법 및 시행령, 통합관리지침,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및 검증지침, 정보공시 세부 기준, 기금 사용 및 정산지침, 문체부 교부승인문서 등을 근거로 집행을 수행하고 있음
- 규정의 적정성과 준수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본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을 갖추고 있음
 - 「기금 사용 및 정산기준」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기금 환수 등 조치를 위한 전담 조직(기금환수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적절한 관리 방향으로 판단됨
 - 또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근거로 부정수급 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 일부 체육교류지원 관련 사업 및 시설에서 비리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부정수급 방지 대책 마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자체 사업관리를 위한 노력이 보임
 - 사업 집행점검, 사업 주정정후 모니터링, 사업 정보공시, 보조금 사용 및 정산 등의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보조금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내역사업별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됨
- 최근 낮은 실집행률이 발생됨
 - * '19년 기준 실집행률: 국제체육교류(65%), 남북체육교류(8%), 국제대회참가(67%)
- 높은 수준의 감축이 필요함

3-2 정책 제언

- 실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사업운영방식 변경 모색 필요. 국제정세 변화로 인한 수요를 적극적으로 예측하여 예산 편성 단계부터 각 내역사업의 규모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국제정세를 정확하게 사전에 예측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국제정세 변화에 적절하고 유연하게 반응하여 위 내역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운영에 대한 대안모색이 필요함
- 성과평가 결과는 비교적 양호하나 다른 지표 개발이 필요함
 - 재정규모에 비해 사업의 성과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여 상위목표달성에 대한 기여도가 불명확함
 - 주요국제기구 임원 수(명)가 주요 성과평가 지표로 제시됨. 이는 전형적인 정량적 지표로 본 보조사업의 효과성을 포괄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뉴스미디어진흥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66.9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1.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5.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1.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5.9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2.9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1.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사업방식 변경 · 본 사업의 성과지표는 2개 내역사업을 평가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성과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며, 미디어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세부 내역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사업방식 변경으로 판정함 · 본 사업은 전체 사업의 추진 필요성 및 타당성을 갖추고 있으며, 성과가 우수한 측면이 있음. 다만 성과지표가 전체 보조사업을 평가하기에 부족하며, 국제언론교류사업(기획취재지원과 세계기자대회지원, 재외동포언론지원 등의 내내역사업)은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사업 개선방안이 필요함. 이외에도 뉴스콘텐츠제작지원 사업 중에서 인터랙티브뉴스 제작, 실감형 뉴스콘텐츠제작 등의 내내역사업은 얼마만큼의 효과성이 있는 것인지 검토하여 사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일부 내역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하며, 내내역사업 중에서 인터랙티브뉴스 제작, 실감형 뉴스콘텐츠제작 등에 대한 사업 강화를 권고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뉴스콘텐츠제작지원, 국제언론교류지원의 2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음
- 뉴스콘텐츠제작지원 사업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언론진흥기금의 용도 등) 제1항 ‘언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된다. 1호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의 진흥을 위한 지원’으로 규정되어 직접적으로 관련됨
- 국제언론교류지원 사업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언론진흥기금의 용도 등) 제1항 ‘언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된다. 1호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의 진흥을 위한 지원’로 규정되어 있음
- 본 사업의 내역사업은 해당하는 내용이 근거 법령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으며, 관계 법령에 근거에 보조금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음
- 본 보조사업의 목적은 심층적 뉴스콘텐츠 발굴과 보도 지원을 통해 뉴스콘텐츠의 품질 향상, 국제언론 교류 프로그램 및 재외동포 언론인 지원을 통해 국내외 언론인 교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등으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국정과제(69-3, 70-1)과의 연계성도 높다고 판단되어 국가 지원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본 사업과 연계된 국정과제는 ‘미디어 육성·지원(69-3)’과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70-1)’ 등이며, 뉴스콘텐츠 및 국내외 언론교류 지원을 통한 콘텐츠 품질 향상으로 미디어 산업의 육성과 국민의 미디어복지 실현과 연관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2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체로 합리적임.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고 목표를 달성함
- 성과지표는 기획취재 뉴스콘텐츠 품질제고지표이며, 성과목표 계획대비 실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나 달성도 차이는 크지 않음.
- 성과목표 계획 대비 달성도는 2017년 100%였으나, 2018년 98%, 2019년 98%였으며, 상대적으로 사업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 성과지표는 2개 내역사업을 평가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 성과지표인 기획취재 뉴스콘텐츠 품질제고 지표는 외부전문가에 의한 기획취재 기사품질 평가 점수로 산정되지만, 뉴스콘텐츠 품질제고 지표로는 국제언론교류 내역사업을 평가하기에는 미흡함
 - 성과목표 달성도가 미약하나마 저조하게 나타나 지표 달성도 향상이 필요함
 - 따라서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 방안이 필요함
- 2개 내역사업은 명확하고 구체적임
 - 뉴스콘텐츠제작지원 사업은 기획취재지원, 인터랙티브 뉴스제작, 실감형 뉴스콘텐츠제작 등의 내내역사업으로 구성되며, 2011년부터 지속 추진되어 9년 목표집행액 48억 중 44억을 집행하여 누적 예산집행률 92.0%를 기록함
 - 국제언론교류지원 사업은 세계기자대회지원, 재외동포언론지원 등의 내내역사업으로 구성되며, 2018년부터 지속 추진되어 2년 목표집행액 3억 중 3억을 집행하고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왔음
- 내역사업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하여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국정과제와의 연계성도 있다고 판단됨. 다만 미디어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세부 내역사업을 개선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사업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업 추진방식의 개선과 성과 측정방식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기획취재지원과 세계기자대회지원, 재외동포언론지원 등의 내내역사업은 사업 개선방안이 필요함
 - 또한 디지털미디어 환경에서 세부 내역사업의 필요성과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특히 뉴스콘텐츠제작지원 사업 중에서 인터랙티브뉴스 제작, 실감형 뉴스콘텐츠제작 등의 내내역사업은 얼마만큼의 효과성이 있는 것인지 검토하여 사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에 포함된 내역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고려하면 보조금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국정과제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면 지자체 수행이나 개별 민간 위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본 사업과 타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사업은 확인되지 않으며, 내역사업 간의 중복성도 발견되지 않음
- 본 보조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언론 관련 기관이며 국제컨퍼런스 개최 및 언론인 연수지원의 효과, 그리고 간접 수혜자는 일반국민으로 연구 활용 및 다양한 뉴스콘텐츠 생산·보급의 효과가 있음. 수혜자와 내용이 광범위하고 정책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 사업의 지속적 추진 필요성이 있음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내역사업별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한 보조금 규모에 대한 산출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내역사업별로 사업예산이 배분되고 예산 규모도 적정하게 구성되고 있음
 - 실행행률은 2017년 92.9%, 2018년 89.9%, 2019년 100%로 대체로 양호함
- 본 사업은 정책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의 최대 10% 이상 민간보조사업자가 자체부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보조사업자 자부담을 원칙으로 사업에 대한 책임의식과 참여도를 높이고 있으며, 적정 비용부담으로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있음
- 내역사업별로 예산 배분 및 규모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뉴스콘텐츠제작지원 사업에 예산이 편중되어 있어 사업 예산이 목표달성을 위해 적정 수준으로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본 사업은 「보조금법 시행령」의 기준 보조율을 적용받지 않음
 - 보조율 산정을 위한 별도의 기준 보조율은 없으며,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본 사업을 통해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사업의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의 규정은 없음. 다만 「언론진흥기금 관리위원회 운용규칙」, 「언론진흥기금 보조금 관리지침」 등에 의거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절차를 준수하여 적정한 사업자 선정 관리를 하고 있음
- 「언론진흥기금 관리위원회 운용규칙」 및 「언론진흥기금 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의 일반적 추진계획 및 지원기준에 대해 기금관리위원회의 사전 검토 및 의결, 보조사업별로 세부적 추진계획 및 구체적 지원자격, 교부기준, 사업 절차 등에 대해 설정한 사업추진계획 수립, 그리고 선정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기금관리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보조금 교부 결정을 확정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본 사업의 보조사업만을 별도 규정은 없으나, 「언론진흥기금 관리위원회 운영규칙」, 「언론진흥기금 관리운영규칙」, 「언론진흥기금 보조금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집행을 관리하고 있음
- 보조사업의 집행관리, 보조사업의 정산 및 반환, 회계감사 내실화를 위한 정산보고서, 실적보고서 제출, 정보공시 등 보조금 집행 관련 절차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본 사업은 「언론진흥기금 관리위원회 운영규칙」, 「언론진흥기금 관리운영규칙」, 「언론진흥기금 보조금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부정수급을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없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보조사업자 자격 강화, 성과관리 제도 운영, 보조사업자 교육 실시 등 자체사업관리 노력이 우수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보조금 지급 근거가 명확하고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음
- 본 사업은 뉴스콘텐츠제작지원, 국제언론인교류지원의 2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사업 목표와 내용이 합리적으로 제시되었음
- 2개 내역사업의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하여 왔음. 내역사업은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국정과제와의 연계성도 있음
- 성과지표는 기획취재 뉴스콘텐츠 품질제고지표이며, 성과목표 계획대비 실적을 달성하지 못함.
 - 사업 성과지표는 2개 내역사업을 평가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됨
- 사업사업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업 추진방식의 개선과 성과 측정방식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기획취재지원과 세계기자대회지원, 재외동포언론지원 등의 내내역사업은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함
 - 뉴스콘텐츠제작지원 사업 중에서 인터랙티브뉴스 제작, 실감형 뉴스콘텐츠제작 등의 내내역사업은 얼마만큼의 효과성이 있는 것인지 검토하여 사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 집행 관리, 부정수급 방지 대책은 적정하며,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없음

3-2 정책 제언

-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의미가 있는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함
- 기획취재지원과 세계기자대회지원, 재외동포언론지원 등의 내내역사업은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함
- 뉴스콘텐츠제작지원 사업 중에서 인터랙티브뉴스 제작, 실감형 뉴스콘텐츠제작 등의 내내역사업은 사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권고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뉴스유통구조개선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66.9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1.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5.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1.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5.9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2.9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1.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 변경 ·본 사업은 사업의 추진 목적이 공익성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있으나, 사업의 수혜자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며, 성과지표가 다소 미흡하여 사업방식 변경으로 판정함 ·사업의 목적은 도서산간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 및 정보격차 해소이며, 실제 사업 내용은 신문수송비와 우송비 지원으로 사업의 추진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스마트폰 기기가 보편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신문구독률이 대폭 하락하는 상황에서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일반 국민이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성과지표 역시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기에는 미흡함. 신문 수송 및 우송 지원으로 인해 독자의 만족도가 높아졌거나 실제 정보격차가 해소된 실증적 지표 개발이 필요함. 따라서 사업방식 변경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함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중장기적 전략을 반영한 사업 추진과 추가적인 성과지표 개발을 권고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뉴스유통지원 사업으로 구성되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음
- 본 사업의 근거는 제35조 제1항 3호에 해당함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35조(언론진흥기금의 용도 등)① 언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된다.

1.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의 진흥을 위한 지원
 2.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 관련 인력양성, 조사·연구, 정보화 사업 지원
 3. 신문 및 잡지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
 4. 독자 권익 및 언론공익사업 지원
 5.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운영
 6.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잡지사업자에 대한 융자
 7. 해외 한국어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무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신문사업자에 대하여는 기금을 지원할 수 없다.
- ③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언론진흥기금의 지원기준과 지원대상 등을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목적은 신문의 유통구조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도서산간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 및 정보격차 해소하는 것이며, 이는 사업의 실제 내용과 연계성이 있음
- 세부 내역사업의 목적은 구독자 저조지역, 배달한계지역의 신문 수송 지원, 도서산간벽지 신문 우송 지원 등임
- 다만 스마트폰 기기가 보편화된 디지털미디어 환경에서 정보접근권 확대와 정보격차 해소는 신문 수송과 우송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보다 구체적인 사업 개선 방안이 필요함
- 본 사업은 신문보급의 인프라를 개선하여 신문산업의 발전 및 경영 개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등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국정과제(69-3) '미디어 육성·진흥'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의 내역사업은 뉴스유통지원 사업이며,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수행되었음
- 성과지표는 한계지역 수송노선 수로 설정하였으며, 계획대비 실적을 달성함
 - 성과목표치인 수송노선 집계수는 2017년 1,078개, 2018년 1,060개, 2019년 1,011개로 설정하였으며, 매년 달성도는 100%였음
- 다만 성과지표가 본 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성과지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본 사업의 목적과 성과 등이 미흡한 측면이 있어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스마트기기가 보편화된 디지털미디어 환경에서 신문구독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신문 구독지원을 통해 도서산간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 및 정보격차 해소한다는 사업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타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사업은 확인되지 않으며, 내역사업의 중복성은 없음
- 본 보조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신문사로 신문 수송과 우송 지역 확대를 수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최종 수혜자는 일반국민, 특히 한계지역 거주 국민으로 신문 이용환경 개선과 정보격차 해소를 내용으로 함. 다만 사업의 수혜자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 사업의 개선 필요성이 있음
 - 본 사업의 수혜자가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정보접근성 확대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실효성있는 사업방안을 제고해야 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한 보조금 규모에 대한 산출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실집행률은 대체로 양호함
 - 예산의 실집행률은 2017년 99.8%, 2018년 97.5%, 2019년 93.2%로 양호함
- 내역사업은 예산 배분 및 규모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음



- 본 사업은 「보조금법 시행령」의 기준 보조율을 적용받지 않음
 - 보조율 산정을 위한 별도의 기준 보조율은 없으며,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본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사업의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언론진흥기금 관리위원회 운영규칙」, 「언론진흥기금 운영규칙」, 「언론진흥기금 보조금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사업자 공모 및 교부절차를 관리함
- 「언론진흥기금 관리위원회 운영 규칙」 및 「언론진흥기금 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의 일반적 추진계획 및 지원기준에 대해 기금관리위원회의 사전 검토 및 의결, 세부적 추진계획 및 구체적 지원자격, 교부기준, 사업 절차 등에 대해 설정한 사업추진계획 수립, 그리고 선정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기금관리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보조금 교부 결정을 확정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본 사업의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언론진흥기금 관리위원회 운영규칙」, 「언론진흥기금 관리운영규칙」, 「언론진흥기금 보조금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집행을 관리 및 감독하고 있음
- 보조사업의 집행관리, 보조사업의 정산 및 반환, 회계감사 내실화를 위한 정산보고서, 실적보고서 제출, 정보공시 등 보조금 집행 관련 절차를 적절하게 관리 및 감독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본 사업은 「언론진흥기금 관리위원회 운영규칙」, 「언론진흥기금 관리운영규칙」, 「언론진흥기금 보조금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부정수급을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없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보조사업자 자격 강화, 성과관리 제도 운영, 보조사업자 교육 실시 등 자체사업관리 노력이 우수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보조금 지급 근거가 명확하고 관계 법령에 의해 규정되어 있음
- 본 사업은 사업의 추진 목적과 필요성이 공익성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있음
- 세부 사업의 목적은 도서산간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 및 정보격차 해소라고 제시되어 있으며 실제 사업내용과 직접적인 연계성이 있으며 사업을 통해 실현되는 사회적 가치 창출도 우수함
- 성과지표는 한계지역 수송노선 수로 설정하였으며, 계획대비 실적을 달성함. 다만 성과지표가 본 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라고 판단됨. 신문 수송 및 우송 지원으로 인해 독자의 만족도가 높아졌거나 실제 정보격차가 해소된 실증적 지표 등의 새로운 성과지표가 필요함
- 본 사업의 목적과 내역사업의 성과를 총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업의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업방식 변경으로 판정함
 - 스마트기기가 보편화된 디지털미디어 환경에서 신문구독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일반 국민이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사업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본 사업의 수혜자가 불명확하고 정책효과가 높지 않아 사업의 지속 추진에 대한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됨
- 보조사업자 공모, 보조사업 집행 관리, 부정수급 방지 대책 등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없음

3-2 정책 제언

- 중장기적으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 개발을 권고함
-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우며, 무엇보다 사업 수혜자의 불명확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중장기적 전략을 반영한 사업 추진을 권고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대한체육회운영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7.5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1.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10.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8.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30.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0.0
1-5. 사회적가치 실현	3.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6.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1.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 감축, 사업방식변경 · 본 세부사업은 2021년 ~ 23년 안에 높은 수준의 감축이 필요함 · 사업수행기간이 장기이고 대규모 지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명확하지 않음. 또한 수익사업이 가능하며 환경변화 등으로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효율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 동 사업은 재정지원의 규모가 비교적 큼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에 따른 성과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음. 또한 17년 보조사업 결과 지속적 재정자립 노력을 통해 5년 내에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의 자부담율을 50%까지 높일 것을 권고 받았으나 현재시점에서는 달성되지 못하였음 ·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사업의 성과를 관리 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재정자립을 위하여 자체사업을 발굴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대한체육회 지원사업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18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33조에 근거하여 국민의 체육활동을 진흥하고자 시행되는 사업으로 법적근거가 비교적 명확하다고 판단됨
- 동법 제3조(체육진흥 시책과 권장)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해야 함을 명시함
- 동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대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함
- 동법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제1항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기금이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 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생활체육 관련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 및 체육 인재육성 관련 단체의 운영·지원에 사용하도록 명시함
-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간의 목적 및 목표의 연관성이 비교적 뚜렷하고 동 사업은 국정과제 72번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와 연계가 있다고 판단됨
- (프로그램)전문체육 육성-(단위사업)대한체육회 지원-(세부사업)대한체육회 운영지원으로 사업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 동 사업은 국민 누구나 손쉽게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향유 환경 조성 및 우수한 경기력을 통한 국가 위상 제고 등의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데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동 사업은 공공적 기능이 있는바 정부의 보조 없이 민간이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임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은 대한체육회 직원인건비, 기관운영비, 회관관리비로 비교적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일부 운영비가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필요한지는 재검토가 필요함



- 직원인건비, 기관운영비, 회관관리비는 대한체육회 및 종목단체의 안정적 조직운영을 위한 목적에 부합하나 100% 국고 지원이 적합한지는 재고해야할 필요가 있음
- 행정전산운영비가 매년 동일하게 소요되고 있으나 적정수준의 금액인지 불명확함
- ‘2019년 사업예산의 실집행률 100%를 달성하였고, 2017년에 99.9%, 2018년 100% 실집행률을 보인 바 계획대로 집행되었다고 할 수 있음
- 대한체육회 고객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사용하고 있으나 목표치를 충실하게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 고객만족도만을 성과지표로 사용하는 것은 사업의 성과를 대표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임
 - 성과지표가 대한체육회 고객만족도에서 19년부터 대한체육회 기금사업에 대한 고객만족도 지표로 변경된바 성과의 달성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 동 사업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진흥을 총괄 관리하는 대한체육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육성하고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 그 목적을 충실하게 달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고객 만족도가 높지 않으며 국민의 체육활동에 대한 지표개발을 통해 성과를 관리 할 필요가 있음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대한체육회는 체육진흥과 관련한 국가사무를 대신 수행하고 있는 바 그 조직운영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 대한체육회지원 사업은 체육진흥 사무의 총괄적 집행기관을 지원하는 것으로 여타 사업과 유사·중복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의 1차적 수혜자는 대한체육회와 각종 종목단체, 체육인들이지만 일반국민들의 체계적인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등 관련 수혜 범위는 비교적 광범위하여 공공재적 성격에 충실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됨
- 대한체육회는 국내 유일한 전문 및 생활체육 육성 기관으로 국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며 우수선수를 육성하고 전국 산하종목단체를 육성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현재 전문체육과 관련하여서는 대한체육회를 대체할 만한 단체가 없으며 폐지 시 체육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만큼 사업 폐지는 어렵다고 보임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사업은 2020년 기준 3개 세부사업 18,692백만원으로 2019년 16,663백만원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기관운영비가 크게 증가 (19년 2,257백만원→ 20년3,909백만원)하였고 이는 선거운영비와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서 발생된 금액이라고 판단됨
- 중장기 재정추계 내역이 어떤 방식으로 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객관적 합리성도 떨어져 보임
- 2020~2026년까지 기관운영비와 회관관리비가 같은 값으로 추계됨
- 17년 보조사업 결과 지속적 재정자립 노력을 통해 5년 내에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의 자부담율을 50%까지 높일 것을 권고 받았으나 현재까지 완료되지는 않았음
- 현재 100% 정액보조를 받고 있으나 자체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조율을 재조정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지속적으로 일정한 자체수입이 발생하고 그 금액이 비교적 크다고 판단되므로 일부의 비용에 대해서는 자체충당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임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짐
- 주 1회 이상 규칙적인 체육활동 참여율이 2018년도에 62.2%로 나타났고 이는 2017년 59.2%대비 3%p 상승한 결과임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사업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적합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음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사용)에 명시되어 대한체육회 운영지원 사업추진 주체는 대한체육회임을 명시하고 있음
- 공모와 관련해서는 관련 지침에 공모방식,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 등을 명시하고 있음
- * 문체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 제8조(보조사업자 공모), 제9조(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동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시행령 제12조의2(정산보고서의 검증)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기준을 준수하여 보조사업을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보조금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조사업 집행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3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회계법인 정산보고서 검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제12조의3(특정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등)에 따라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대상으로 외부 감사인(회계법인)을 선정하여 단체별 회계 전반에 대한 적정성 검증 및 자문을 받고 있음
-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과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보조금 반환, 정산 및 회계검사 등에 관하여 사후관리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준수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현재까지 부정수급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관리·감독을 진행 중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정산지침을 준수하여 부정수급을 모니터링 하고 있음
- 대한체육회 자체 예산집행지침(보조금 부정집행에 대한 책임유무 등)을 따르고 있음
- 대한체육회 운영지원 사업에 대한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사업부서는 물론 별도 감사반을 구성하여 내부 감사 시행 등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부적정 집행 등을 점검하는 등 적절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연중 상시 회계 감사반 운영 및 국민감사제도입을 통한 자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있고, 시군구 체육회 대상 순회·집합교육 시행으로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사업은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공공성이 강한 국가 사무를 대한 체육회가 수행하고 있으므로 향후 보조금 지원은 필요하다고 보임
- 보조금지원 재정규모가 적정하지 않아 보조금 지원액을 높은 수준으로 감축할 필요가 있음
 - 17년 보조사업 결과 지속적 재정자립 노력을 통해 5년 내에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의 자부담율을 50%까지 높일 것을 권고 받았으나 현재까지 완료되지는 않았음
 - 재정지원 규모대비 사업의 성과가 뚜렷하지 않으며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근거도 미흡함
 - 지속적으로 자체 수입이 일정 규모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사업수행기간이 장기임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흡하며 관리하는 성과지표도 충분하지 않으며 성과의 목표도전성이 미흡함
 - 고객만족도 지표만으로 성과를 관리하고 있으나 성과 목표가 도전적이지 못함

3-2 정책 제언

- 예산의 규모에 비해 관리하는 성과지표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성과지표의 체계적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임
 - 만족도 이외에 사업목적의 효과성을 관리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대한체육회가 정관상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체육회 재정자립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고려하여 운영비 및 인건비에 대한 자부담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 국가사업이 아닌 고유의 자체 사업을 개발하여 자체 재원을 확보하는 노력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도서관정책개발 및 서비스환경개선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3.1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9.6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9.4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1.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30.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8.2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3.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사업방식변경 · 사업여건이 변하여 사업을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사업의 성과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여 상위목표달성에 대한 기여도가 불명확함 · 동 사업은 2020년 예산이 증가하였으나 예산지원에 따른 성과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음. 지자체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사업으로 지자체 보조율을 향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 부담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일부 작은도서관 폐관·휴관가능성에 대한 외부 우려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도서관정책개발 및 서비스환경개선지원사업은 「도서관법」 제29조, 제44조, 제46조와 「작은도서관진흥법」에 근거하여 진흥하고자 시행되는 사업으로 국고지원의 법적근거가 비교적 명확하다고 판단됨
- 도서관법 제29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제1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도서관자료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함
- 동법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도서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동법 제 46조에 따르면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협회 및 단체 등에 사업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함
-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간의 목적 및 목표의 연관성이 비교적 뚜렷하고 동 사업은 국정과제 67번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와 직접적으로 연계가 있다고 판단됨
-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문화기반시설 육성지원이라는 프로그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위사업(도서관정보·정책체계 활성화), 세부사업(도서관정책개발 및 서비스환경개선), 내역사업 간 구성이 체계적이라고 볼 수 있음
- 동 사업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거나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지역민에게 문화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직접적으로 국정과제(72. 모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의 주요정책방향과 부합한다고 보임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은 도서관서비스 개선, 도서관 기반 조성사업 지원으로 비교적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정보인프라 구축·운영비용은 매년 유사한 금액으로 소요되고 있으나 적정수준의 금액인지 불명확함
- 2019년 사업예산의 실집행률 98%를 달성하였고, 2017년에 51%, 2018년 93.5% 실집행률을 보인 바 계획대로 집행되었다고 할 수는 없음
 - 2017년 보조사업비 실집행률이 51%에 불과하나, 이는 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 지자체에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 관련 3개 사업(30억) 예산을 증액하여 실집행을 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 문제로 보임
- 공공도서관 등록회원수와 U-도서관 구축 운영수를 성과지표로 사용하고 있으나 성과지표 설정이 적합하지 않음
 - 공공도서관 등록회원수로 지표를 관리한다고 하였으나 오프라인서비스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액수가 큼으로 이는 제고해야함
 - U-도서관 구축 운영 수는 투입지표로 재원투입의 효과를 측정하기는 어려움
- 동 사업은 도서관이용 문화 및 정책을 발전시키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직 그 목적을 충실하게 달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문화격차해소 및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지표 개발을 통해 성과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사업은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정책을 발전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사업 지원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며, 광범위한 외부효과를 가지고 있어 국가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 도서관 시설 개선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및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유 사업으로 여타 사업과 유사·중복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의 1차적 수혜자는 노인 등 저시력자, 지역민들, 다문화 가족 등, 관련기관 등 비교적 광범위한 수혜범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며 간접적으로는 일반 국민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바 수혜범위가 비교적 광범위하여 공공재적 성격에 충실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됨



- 동 사업은 소외 계층에 대한 정보 격차 해소 사업이 많아, 보조사업 중단 시 소외계층의 정보 격차 확대 및 문화 향유 급감이 예상되어 보조금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보조사업의 폐지 시 이에 따른 도서관 인프라 위축 및 지역민들의 도서관 이용 불편으로 국민문화향유 기회 감소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어 폐지는 어렵다고 보임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실질적 지원규모 대비 행정비용(인건비, 운영비)은 크지 않음(10% 내외). 특히 지자체에 직접 교부되는 자치단체보조사업의 경우 사업 운영을 위한 행정비용이 없어 행정비용을 감안할 때 보조금의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됨
- 동 사업은 2020년 기준 2개 내역사업 2,660백만원으로 2019년 2,743백만원보다 소폭 감소하였으며 비교적 재정지원의 규모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도서관법 하위법령 개정방안 연구 추진에 따른 예산 전용(47백만원)에 대한 국회지적사항이 있었음
-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신규 용역사업을 위해 예산을 전용 집행한 것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의 전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음
- 향후 일부 보조금 지원비율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임
-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 및 지원’, ‘U-도서관서비스 확대 지원’은 지자체의 주민들의 혜택이 명확한 바 보조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복원’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간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짐
- 공공도서관이 다양한 문화기반시설 중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278,234,974명, ‘19년 기준) 지역문화거점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제7조에 의거하여 적합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 따라 보조자 선정에서 제외하여 교부함
- 사서자격증 발급 지원 사업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22조 및 사서자격증 발급 수탁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고시에 따라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추진하고 있음
- 큰 글자책 보급 지원 및 특화도서관 지원 사업은 사업의 이해도 및 업무 관련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도서관 상호간 업무협력과 운영·관리에 관한 연구, 도서관서비스 진흥 및 도서관 발전 등을 위해 설립된 도서관 대표 민간단체인 한국도서관협회에 지정·운영하고 있음
- 공모와 관련해서는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비용부담능력을 보유하고 사업 추진 의지를 가진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기준별 결과 및 최종 선정결과, 보조금 교부 진행과정 및 결과 등 작성하고 있어 보조사업자를 적절하게 선정하고 있다고 판단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동 사업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을 제정하여 매년 개정을 통해 보조금의 지원대상·교부 및 계약, 보조금의 사용, 금액확정 및 사후관리, 보조금의 집행질서 확립을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보조사업을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보임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보조금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조사업 집행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의 수행을 위한 성과지표(경영/업무 분야 등)를 개발 후 경영계획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경상비(인건비 포함)를 제외한 사업비는 세부계획을 수립 문체부와 협의·승인 후 집행을 추진하고 있음
- 주요사업의 진행에 있어 착수/중간/완료 등의 보고회 수시개최를 통해 집행을 적절하게 추진한다고 보임



- 문체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제6장 보조사업 사후관리',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절차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사후관리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보임
- 보조금의 금액 확정은 회계감사 보고서뿐만 아니라, 현장실사를 통해 정산 증빙자료들을 철저히 점검하여 위반행위 처리기준 외에도 집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금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현재까지 부정수급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관리·감독을 진행 중임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근거하여 부정수급을 점검하고 모니터링 하고 있음
- 재원별 보조사업 관련 자체규정 정비 및 관리방안 마련을 통해 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공공기관 업무보고 시 기관별로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및 관리 강화 방안' 수립 보고할 수 있도록 함
- 부정수급 발생시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의거하여 처리되며,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장 벌칙'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 부정수급 방지 대책으로 문체부는 '2018년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 하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및 관련자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음
-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내용에 대한 검수는 사업 담당자가, 비용 정산 검수에 대해서는 계약 담당자가 진행하고, 사업검수 및 정산 검수가 모두 통과되어야 검수완료 통보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여 사업의 완성도 및 예산집행의 낭비 예방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판단됨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자체사업관리 노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사업은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정책을 발전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광범위한 외부효과를 가지고 있어 향후 보조금 지원은 필요하다고 보임
- 향후 사업방식 변경을 통해 일부 사업에 대한 보조율 지급 규모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함
 - 지자체의 주민들의 혜택이 명확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관리하는 성과지표는 상위목표 달성여부를 측정하기에 부적합함
 - 공공도서관 등록회원수와 U-도서관 구축 운영 수는 과정지표와 투입지표이므로 결과지표를 새롭게 마련해야 함

3-2 정책 제언

-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 및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일부 작은도서관 폐관·휴관가능성에 대한 외부 우려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 향후 사서자격증 발급방식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서자격증의 경우 학생이 학위 취득 후 발급받는 당연 국가 자격증으로 학교와 연계하여 발급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도핑방지활동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5.7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9.2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5.2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4.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4.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4.0
1-5.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6.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1.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 감축 (도핑방지활동사업지원), 사업방식변경 · 동 세부사업은 2021년 ~ 23년 안에 일정수준의 감축이 필요함 · 실질적 수혜자에 비해 재정 지원규모가 과다하며 재정 지원규모의 책정 타당성이 미흡함. 증액의 내용이 실태조사 및 사전연구와 홍보 등에 관한 내용이므로 향후 일정 수준 감축이 가능함 · 2020년 예산이 증가하였으나 비용 산정 근거의 타당성이 미흡함. 집행률을 100% 달성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규모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음 · 도핑방지 예방과 관련한 새로운 성과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도핑방지위원회가 공익적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나 법령상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향후 이를 감안하여 재정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도핑방지활동지원사업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 제18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35조에 근거하여 스포츠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 확립과 스포츠 정신의 고양을 도모하고, 약물로부터 선수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시행되는 사업으로 법적근거가 비교적 명확하다고 판단됨
- 동법 제15조(도핑방지활동)에 따르면 스포츠 활동에서 약물 등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스포츠 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도핑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함을 명시함
- 동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등 체육단체에 대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함
- 동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계정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운영과 지원을 하도록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 동법 제35조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설립)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함을 규정하고 있음
-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간의 목적 및 목표의 연관성이 비교적 뚜렷하나 국정과제등과 부합하다고 보이지는 않음
- 스포츠산업육성 및 국제교류라는 프로그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위사업 (국제체육 지원), 세부사업 (도핑방지활동지원), 내역사업 간 구성이 체계적이라고 볼 수 있음
- 동 사업은 세계도핑방지규약 및 국제표준에 근거하여 전 세계 동일한 기준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도핑검사 시행, 도핑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세계도핑방지기구 등 국제 도핑방지기구 간 교류협력 업무 수행하므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은 도핑방지위원회 운영지원, 도핑방지위원회 활동지원 및 도핑컨트롤센터 기기보강 사업 및 평창동계올림픽 도핑검사(단년도 사업)으로 도핑방지위원회 운영을 통해 도핑 검사, 도핑방지교육 및 홍보, 국제교류협력, 시료분석 기기 확충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도핑방지활동 지원이라는 보조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됨



- ‘2019년 사업예산의 실집행률 98.4%를 달성하였고, 2017년에 95.7%, 2018년 90.7% 실집행률을 보인 바 비교적 계획대로 집행되었다고 할 수 있음
- 도핑방지 인지도 조사를 대표 성과지표로 사용하고 있으며 목표치는 달성하고 있으나 성과지표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도핑방지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와 예방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를 관리해야하므로 도핑방지 인지도를 대표 성과지표로 사용하는 것은 사업 목적을 대표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임
 - 도핑방지 인지도 조사 이외에도 도핑검사 오류율, 사업수혜자 대상 만족도 조사 등의 지표를 부수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예방활동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 검토할 수 있는 지표의 마련이 필요함
- 동 사업은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 및 도핑사전예방을 통한 선수 건강보호를 위해 추진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목적을 충실하게 달성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기는 어려움
 - 결과지표가 아닌 투입과 산출지표로만 목적을 충실하게 달성하였다고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음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도핑방지활동이라는 사업 특성 상 선수 및 선수 관계자를 대상으로 공익적 목적달성(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 수익창출 등 도핑검사 및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의 상업화로 인하여 ‘공정한 경쟁 및 선수들의 건강보호’라는 도핑방지활동의 궁극적 취지에 부합함
- 도핑이라는 특수한 사업특성상 타 부처 및 기관과의 사업 중복 및 조정·통합여부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판단됨
- 동 사업의 1차적 수혜자는 직접적인 사업수혜자는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정을 위한 도핑검사 및 도핑방지교육·홍보 사업을 받는 선수 및 선수관계자로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으며, 간접적 수혜자는 도핑없는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국민이라고 할 수 있으나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수혜 범위가 넓다고 보기는 어려움
 - 금지약물 투여가 전문체육 선수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체육에 확산 되고 있으므로 향후 수혜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되나 현재는 그 범위가 넓지 않음



- 도핑방지활동은 「UNESCO 스포츠도핑방지국제협약(조약 제1841호)」에 의거, 세계도핑방지기구(WADA)의 「세계도핑방지규약(World Anti-Doping Code)」을 준수하고, 도핑방지기구 설립 및 도핑방지활동을 포함한 국제협력력을 지원하여야 하는바,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방지활동을 수행하는 국내유일의 도핑방지 전문기관으로 관련사업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동사업 폐지 시 국제스포츠계 위상저하, 공정한 경쟁 및 선수보호 등이 어려워 체육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만큼 사업 폐지는 어렵다고 보임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사업은 2020년 기준 3개 세부사업 7,676백만원으로 2019년 대비 1,268백만원 증가하였으나 비용산정 근거의 타당성이 미흡함
 - 도핑컨트롤센터 기능보강 사업은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되나 그 근거가 미흡함
 - 교육홍보 사업비, 국제조사 및 교류협력 사업비 산정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보이며 증액의 내용이 실태조사 및 사전연구와 홍보 등에 관한 내용이므로 향후 일정수준의 감축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 1항에 따르면 도핑방지위원회는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
 - 다만 도핑방지활동의 공공성과 규제적 성격으로 인해 수익사업 규모가 크지는 않다고 보임
 - 향후 일부 기관운영비와 관리비는 수익사업으로 충당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됨
 - 도핑방지 사업의 목적은 스포츠에 참가하는 전 세계 선수의 건강, 공정성 및 평등성을 진작시키기 위한 것으로 인권보호에 기여할 수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련 제 규정(「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문체부 훈령),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지침」, 「민간보조금 정산 관련 회계검사 시행 기준」, 「국고보조금 집행정보 관리지침」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와 관련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 도핑방지활동지원 사업은 공모사업이 아닌 법에 의거한 직접수행 사업으로,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정부로부터 도핑방지활동에 대한 업무를 위임받아 국민체육진흥법 및 국제규정(UNESCO)에 근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공모와 관련해서는 관련 지침에 공모방식,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 등을 명시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제8조(보조사업자 공모), 제9조(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 도핑검사(시료분석)를 실시하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도핑컨트롤센터의 기능보강 사업도 세계도핑방지기구로부터 공인시험실로 인증받은 기관임에 따라 적합한 보조사업자에게 예산이 교부되고 있다고 판단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동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련 제 규정(「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문체부 훈령),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지침」, 「민간보조금 정산 관련 회계검사 시행 기준」, 「국고보조금 집행정보 관리지침」등)에 따라 보조금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보조사업을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보조금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조사업 집행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3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회계법인 정산보고서 검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제12조의3(특정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등)에 따라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대상으로 외부 감사인(회계법인)을 선정하여 단체별 회계 전반에 대한 적정성 검증 및 자문을 받고 있음
 - 기타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예산집행지침 제정 및 운영을 통해 예산집행 근거 마련하고 있으나 17년 국정감사에서 ‘KADA 직원의 대회 조직위 파견/출장 시 도핑검사관 수당 수급 관련 수당 환수 및 감사 필요’를 지적받았음



- 정보공시의 경우 보조금법 시행령 제11조의2, 정보공시 세부기준 제3조에 따라 보조금교부 신청서, 보조사업 수입·지출내역, 정산보고서,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 보조사업 감사 지적사항, 감사보고서, 결산서 등을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국가보조금통합 관리시스템을 통해 공시하고 있어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판단됨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현재까지 부정수급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관리·감독을 진행 중임
 - 「민간단체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문체부 훈령) 제15조에서 보조사업자의 일반행위에 따라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조금 횡령 시 고발조치, 횡령액 환수, 보조사업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시행 중
 - 국민체육진흥공단 내 정산팀을 별도로 두어 기한 내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산에서 문제 발생 시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차년도 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적정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
 - 17년 국정감사에서 ‘KADA 직원의 대회 조직위 파견/출장 시 도핑검사관 수당 수급 관련 수당 환수 및 감사 필요’를 지적받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 *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보수규정」 제16조 3항 신설하여 경기대회 도핑관리 지원을 위해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은 해당 주최·주관기구와의 업무협약 또는 문서로 명시되지 아니한 각종 수당 등을 수령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공익신고 창구를 개설하여 운영 중이므로 자체 사업관리 노력은 인정되나 현재 적발된 건수는 없음
- 2019년도 하반기 공익신고 창구(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토록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내부규정 및 지침 제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 및 사업관리, 예산집행 점검 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사업은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공익적 목적달성(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향후 보조금 지원은 필요하다고 보임
- 보조금지원은 직접적 수혜자에 비해 재정 지원규모가 과다하고 설정된 재정규모가 적정하지 않아 보조금 지원액을 일정수준 감축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은 2020년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증액 및 비용 산정 근거가 타당하지 않음
 - 실태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사업은 향후 일정수준 감축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현재 100% 정액보조를 받고 있으나 수익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율을 재조정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관리하는 성과지표가 충분하지 않으며 성과 지표의 적합성도 떨어짐
 - 도핑방지 인지도를 성과지표로 사용하는 것은 사업의 성과를 대표하기에 충분하지 않음

3-2 정책 제언

- 정책목적을 보다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추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도핑방지위원회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정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0.2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6.2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5.2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1.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1.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4.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 변경 ·재정규모에 비해 사업의 성과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여 상위목표달성에 대한 기여도가 불명확함, 성과평가 결과는 비교적 양호하나 다른 지표 개발 필요 ·예산에서 인건비와 경상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고, 보조사업의 본래 취지를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사업비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의 모색이 필요함 ·또한 각 기관의 자부담 능력을 감안하여 기관이 자체 수입의 증가를 위한 노력 필요 ·다만 일반적으로 공연예술이 인건비 비중이 높은 노동집약적 성격을 가지는 사실과 예술의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본 보조사업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7조 및 제39조가 본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로 제시되고 있음
- 보조금 지급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그 법적 근거는 비교적 명확하나 의무 조항은 아님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제1항

-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시·도)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보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2. 문화예술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3.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본 보조사업의 목적은 문체부 산하 문화예술단체를 국제적 수준의 전문예술단체로 육성하여 우리나라 문화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단체별 공연사업을 통한 국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도모로 국가의 지원은 필요하고 타당함
- 지원 대상인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 등은 우리나라 문화예술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는 단체들로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임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내역사업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판단됨
 - 전반적으로 당초 계획한대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음
 - 계획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노력이 보임
- 성과평가 결과는 비교적 양호하나 다른 지표 개발 필요
 - 재정규모에 비해 사업의 성과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여 상위목표달성에 대한 기여도가 불명확함
 - 관객석점유율, 국악방송청취율 등이 주요 성과평가 지표로 제시됨. 이는 전형적인 정량적 지표로 본 보조사업의 효과성을 포괄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함.
 - 다만, 2019년부터 새로운 성과지표인 '예술진흥단체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추가 (예술진흥단체: 한국공예문화디자인진흥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국악방송,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보조사업의 목적을 감안할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민간단체 보조를 통한 사업추진 방향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 특히, 경제적 자생력이 약한 문화예술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순수예술의 창작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수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순수예술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본 보조사업은 타 사업과의 중복은 확인되지 않음
 - 순수예술로서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예술분야의 경우 국가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며, 수준 높은 전문예술단체는 국민의 예술 향유에 이바지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보조사업의 내역사업별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적정한 사업비 규모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산출근거를 마련하여 예산규모를 설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됨
 - 최근 실행행위이나 불용액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인건비와 경상비의 비중이 비교적 높음
 - 내역사업별 인건비와 경상비 비중의 격차가 매우 큼. '19년과 '20년 기준 인건비와 경상비의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내역사업의 수가 전체 15개 내역사업 중 8개에 달함.
 - 특히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운영 내역사업의 경우 '18년의 사업비 비중 73.7%가 '19년 31.1%로 줄어들었음
 - 각 내역사업 별로 상황 등이 다른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의 인건비와 경상비 비중의 차이의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검토 필요
 - 보조사업의 본래 취지를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사업비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의 모색이 필요함
 - 또한 각 기관의 자부담 능력을 감안하여 기관이 자체 수입의 증가를 위한 노력 필요
 - 다만 일반적으로 공연예술이 인건비 비중이 높은 노동집약적 성격을 가지는 사실과 예술의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본 보조사업을 통해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등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간접적 기여도를 인정할 수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선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본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을 갖추고 있지는 않음
 -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사업자 선정을 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본 보조사업 집행과 관련하여 본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음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과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본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을 갖추고 있지는 않음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과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의 규정에 따라 부정수급 관리를 시행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자체 적발 이력은 없으나, 지원 관련 사업 및 시설에서 비리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부정수급 방지 대책 마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자체 사업관리를 위한 노력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보조금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내역사업별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됨
- 예산에서 인건비와 경상비의 비중이 비교적 높음

3-2 정책 제언

- 보조사업의 본래 취지를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사업비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의 모색이 필요함
 - 또한 각 기관의 자부담 능력을 감안하여 기관이 자체 수입의 증가를 위한 노력 필요
- 성과평가 결과는 비교적 양호하나 다른 지표 개발 필요
 - 재정규모에 비해 사업의 성과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여 상위목표달성에 대한 기여도가 불명확함
 - 관객석점유율, 국악방송청취율 등이 주요 성과평가 지표로 제시됨. 이는 전형적인 정량적 지표로 본 보조사업의 효과성을 포괄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문화정보 다부처 연계서비스 플랫폼 구축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60.4
1. 보조사업의 타당성	45.4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6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5.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12.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8.8
1-5.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5.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1.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 (2021년말)	감축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총 평	- 통폐합, 사업방식변경 - 동 보조사업과 내역사업의 법적 근거는 명확하고, 국정과제와 연계되며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이 적절함. 2018년 신규사업으로 예산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사업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하여 한국문화정보원의 사업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검토가 필요함 - 성과(실적)지표가 내역사업을 포괄적으로 반영함에 대한 일부 보완이 필요함. 명확한 성과측정의 지표 보완과 수혜범위의 확대를 통해 보조사업의 타당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한국문화정보원운영사업과 통합을 권고하며, 성과지표에 대한 개선, 수혜 범위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동 보조사업은 「국가정보화기본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문화기본법」등에 의거하고 있어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5조 >

- ① 국가기관등은 행정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과학기술, 재난 안전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이하 "공공정보화"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활용하는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기관등은 공공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융합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정비하여야 한다.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문화기본법 제11조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한 국민의 문화 향유권의 확대를 위하여 문화 향유와 관련한 실태조사와 관련 조사·연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문화정책의 조사·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고 그 지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개발하는 전담기관과 이를 지원하는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동 보조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및 소속 공공기관의 데이터 및 서비스를 타부처, 지자체의 데이터로 확장하여 수요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 문화정보를 수요자 관점의 통합된 체계로 구축하여 제공하고, 국민의 문화생활 편익 향상 및 보편적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개방플랫폼 구축·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개의 내역사업의 법적 근거가 명확함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 업무 규정으로 문화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문화 정보화 전담기관(한국문화정보원)을 명시하고 있고, 내역사업 중 <다부처 문화정보 개방 체계 구축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제2014-35호)에 의거하여 보조사업 지정에 대한 법령과 관련 규정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 동 보조사업은 공약사업, 계획사업 아니지만 국정과제(67: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실현)와 본 보조사업이 연계성이 높으며, 그 외 제6차 국가정보화기본계획, 혁신성장 전략투자 데이터 AI경제 활성화 계획, 혁신성장 확산 가속화를 위한 2020 전략 투자방향과 연계되어 있어 보조사업을 지원함은 타당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보조사업의 2개의 내역사업 내용과 기간, 규모 등은 합리적으로 구성됨
- 2개의 내역사업 각각에 대해서 3단계로 사업계획을 설정하고 각 단계별 실적 목표, 목표 집행액, 근거 제시가 타당함. 또한 <다부처 문화정보 연계체계 구축> 내역사업에서 1-2 단계에서 실행액이 99%로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음
- 각 내역사업의 성과지표는 다부처 연계기관의 증가 추이를 정량지표로 제시하고 있음. 현재 성과지표가 사업성과를 일부 측정할 수 있으나 동 보조사업의 전체 사업목적에 고려할 때 일반 국민의 접근성, 플랫폼 이용만족도 등으로 문화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음에 대한 성과측정을 위한 지표 개발이 필요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보조사업은 다부처 간 문화정보 공동 활용 및 통합정보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서 예산 절감 및 행정업무 효율화가 기대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보편적이고 차별없는 공공문화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 또는 민간이 개별적으로 수행되기보다는 국가 보조사업 지원이 타당함
- 동 보조사업은 한국문화정보원 운영과이 협력 추진으로 사업 효율성 및 목적달성 극대화를 고려하여 사업통합이 필요함
- 한국문화정보원 사업 중 문화포털, 문화데이터 사업과 정책적 협력 및 협업 추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동 보조사업의 직접 수혜자를 플랫폼 이용자와 건수를 정량수치로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간접수혜자는 양적 수치가 기관 제시만 하였으나 이후 학계, 산업계, 창업예비자 등 수혜범위가 다양함으로 이에 대한 잠재수요를 제시하여 사업 타당성을 높여야 함
- 본 사업은 수혜범위가 전국민으로 적시한 것은 수혜자가 광범위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간접 수혜범위를 명확하게 범주화하여 자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직접 수혜범위를 유목화하여 제시하여 효율적인 플랫폼 운영 활성화 및 확대와 연계하는 것이 필요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의 내역사업별 편성된 사업비 구성은 적절하며 내역사업별 보조율도 적절함
- 실행행렬이 부분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나 신규사업으로 사업 집행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역사업의 사업방식 개선이 필요함
- 중장기 재정추계는 최근 4년간의 추계를 근거로 10% 상향 설정하고 그에 따른 재정 추계 내역 제시는 적절함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동 보조사업은 다양한 문화 분야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 문화산업, 문화유산, 문화예술,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비즈니스 모델 제시하고, 지역문화정보 발굴 및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여 국민들의 문화 향유 욕구를 충족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가치 중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에 일부 연계 되지만 직접적 기여하는 사업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움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은 문화기본법 11조,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7조,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11조로 보조사업자를 한국문화정보원으로 지정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고시로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 검토하여 3년마다 고시하고 지정된 기관이 동 보조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을 명시함
- 선정된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제7조에 마련하고 관리하고 있음
 - 문화기본법 시행령과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 업무 규정에 보조사업자의 주요업무를 고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11조,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한국문화정보원 규정이 마련되어 보조사업 집행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음
 - 문화정보원 제·규칙, 사업관리규칙, 클린카드제 시행지침,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지침, 내부감사지침 등을 마련하여 운영함으로써 보조사업 집행이 관리하고 점검하고 있음
-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 지침, 보조사업 정산 등의 규정에 의해서 보조사업의 집행 점검, 정산, 반환 등을 관리하고 있음
- 한국문화정보원은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정기 및 수시 공시를 실시하여 중요재산 정보 공시되고 있어 적절함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사업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연간 점검을 실시함. 현재까지 관리시스템에 의한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없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동 보조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보조사업 수행과정에 중요 사항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위해서 사업 기간 심의, 영향평가, 감리 등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부분적 노력이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보조사업은 「문화기본법」외 관련법의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내역사업의 법적 근거도 명확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타당함
- 동 보조사업은 국정과제와 연계되며,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계별 사업추진계획이 체계적으로 구성됨. 신규사업임으로 사업집행을 철저히 해야할 필요가 있으므로 내역사업을 검토하고 사업방식 개선이 필요함
- 내역사업의 목표, 내용, 지원 대상 등은 적절하며, 중장기 사업목표 및 예산 추계의 근거가 타당함
- 수혜자 및 범위가 내역사업을 포괄하고 있으나 간접 수혜자와 수혜 범위를 확대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함.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중장기적으로 성과지표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사업 집행, 보조사업 사후관리,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 등에 대한 대체로 규정이 있으며 집행과정 및 사후관리, 부정수급 관리가 전반적으로 적절함. 사업관리를 위한 자체 노력도 적절함

3-2 정책 제언

- 동 보조사업은 한국문화정보원 운영 사업과의 정책적 협업을 통한 사업 효율성 극대화를 고려하여 사업 통합 및 집행을 제고를 위한 국고보조사업의 타당성 높이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문화중심도시조성(지자체)
보조유형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5.8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0.8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1.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4.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8.8
1-5.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5.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1.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사업방식변경 · 동 보조사업과 내역사업의 법적근거는 명확하고, 대통령 공약과 연계되며 사업목적은 적절하나 내역사업의 내용이 방대하여 실집행을 관리가 필요하며 수혜범위 제시에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성과 관리 노력이 필요함 · 대규모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집행률이 지속적으로 낮음에 대해서 해당사업에 대해서 실집행을 제고 노력을 하고 있음. 공사 지연 등의 사유가 실집행을 저조 원인이나 사업진행을 조정하여 조기 완공 노력으로 사업실효성을 높이하고자 함 · 성과(실적)지표가 지침에 의해 설정되었으나 사업특성 상 내역사업을 포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므로 성과지표 개선과 수혜범위 정량화하여 제시 필요 · 해당부처, 지자체에서 사업효율성을 높이고 성과제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동 보조사업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고 있어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조 >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교류 및 연구·창조·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문화도시를 광주광역시에 조성하여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한다.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사업(아시아 문화·예술·활성화 거점 프로그램 운영, 사직 국제문화교류 타운 조성,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5조 >

문화산업 육성 사업(문화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지원, 문화콘텐츠 전문 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국제 문화 창의산업전,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 조성, 첨단실감 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 투자진흥지구 지원시설 구축 등) 추진할 수 있다.

- 동 보조사업은 3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포괄적 측면에서 법적 근거의 관련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음
- 동 보조사업은 계획사업과 국정과제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 공약사업 중 하나로서 광주지역 공약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시대 선언’과 연계성이 높아 보조사업을 지원함은 타당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보조사업의 내역사업 내용과 기간, 규모에 있어서 합리적 구성이라고 보기 어려움
 - 내역사업의 세부사업 중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 조성, 첨단실감 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은 공정률 등의 성과 및 실적이 미흡하여 사업방식조정이 필요함



- 각 내역사업의 성과지표는 내역사업의 일부 사업에 대한 성과를 제시하고 있어 성과지표 재검토가 필요함
- 내역사업의 내용이 다양함으로 이를 포괄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의 개선이 필요함. 현재의 성과지표는 사업진행 정도를 측정하고 있어 성과가 아니라 실적을 보고한다고 보여짐. 따라서 성과지표로서의 적절성 검토가 필요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보조사업은 특정 도시가 아니라 국가 전체에 문화조성을 위한 협력적 노력들이 필요하고, 특정 지역에 국한된다고 보기 어렵고 국민 전체가 수혜대상자이자 국가 간 영향력을 고려할 때 지자체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보다는 국가 보조사업 지원이 타당함
- 동 보조사업은 특별법 제정에 의해서 수행된 사업으로 타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이 낮음
- 동 보조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해당 지역에 관련 종사자, 단체, 기업이고 간접 수혜자는 문화·예술·관광 분야 종사자로 확대할 수 있고 국내외 관광객이 수혜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 수혜범위가 광범위함
- 직접 수혜자에 대한 직접 지원 실적을 통해서 확인 가능한 부분으로 내역사업별 아시아 음식문화지구조성사업의 입점 음식점수, 문화콘텐츠 관련 교육생수, 문화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지원관련 업체, 투자진흥기구 입주기업 등을 정량화하여 제시하고 있어 사업성과 및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음
- 간접수혜자는 사업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 및 업체, 관람객 등으로 구체화된 수치를 제시하고 있으며 잠재 수혜자가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어 보조사업으로 적절함
- 지역경제발전을 수혜범위로 포함한다면 이에 대한 간접 수혜범위를 명시하여 보조사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높여야 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의 내역사업별 대규모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조율 기준에 부합되게 편성됨



- 실집행률이 지속적으로 저조하여 전면적 검토가 필요함. 이러한 상황은 익년도 사업진행이 계속해서 영향을 줌으로 사업내용 및 재정계획 검토가 필요함
-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해당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광주광역시 간의 정책협의, 실집행률 부진사업에 대한 현장보고 및 점검 등한 사업관리 노력이 이루어고 있음을 확인함
- 내역사업별로 실집행률 저조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이주지연, 사전행정절차 이행 기간 문제 등을 분석하고 사업추진 정상화를 위해서 법적 절차, 공사 발주 시기 조정, 관련 단체들과의 조율 등의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집행률 향상이 예상됨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조에 의거하여 광주광역시로 지정하는 규정을 마련됨
- 내역사업 중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 도시 플랫폼 조성사업>, <첨단실감콘텐츠제작 클러스터조성사업>은 지자체에서 설계 공모를 실시하고 공사 발주하는 절차로 진행하여 선정과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보조금 교부절차는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준용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하고 있으나 지자체 자체 규정 마련이 필요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 집행은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이 마련되어 보조사업 집행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 2항에 의거하여 자체 점검사항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함
- 2017년부터 매년 사업추진 점검으로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사업목적 외 사용 여부, 보조금 교부조건 준수 여부, 자부담 이행상황, 보조사업자의 간접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점검 상황, 관련법률 준수 등을 감독하여 집행 관리가 이루어짐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사업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있음. 현재까지 관리시스템에 의한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없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동 보조사업의 사업점검을 통해서 실집행을 부진 등의 사유 발생 시에 현장 시정조치나 차기 보조금 교부에 반영하여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일부 인정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보조사업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 법률에 의해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내역사업의 법적 근거도 명확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타당함
- 동 보조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이며,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실집행률의 저조에 대해서 해당사업의 문제 원인을 파악하여 사업 전반 일정을 조정하는 등의 개선방식을 도입하여 2020년부터 적극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짐. 따라서 본 사업의 실집행률 향상이 예상됨
- 수혜자 및 범위가 내역사업을 포괄하고 있으나 직접 수혜자의 정량적 수치 제시와 간접 수혜자와 수혜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사업타당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함
- 동 보조사업의 성과지표는 내역사업을 포괄하지 못하며, 사업추진도를 성과로 측정하고 있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움
- 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사업 집행, 보조사업 사후관리,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자체 규정 마련의 노력이 필요함. 집행과정 및 사후관리, 부정수급관리가 전반적으로 적정하고 사업관리를 위한 자체 노력도 적절함

3-2 정책 제언

- 동 보조사업은 내역사업 내용의 적절성과 예산집행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함.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볼 때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련 제도 마련의 조치가 필요하며 해당 지자체에서 동 보조사업을 진행에 대한 수시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미디어산업 기반구축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6.6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2.6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6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1.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4.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3.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4.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변경 ·‘미디어시장조사’의 집행과 사업시행자 선정에 개선이 필요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의 경우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기본/보완 연구 등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제선정/평가 등 사업관리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 내역사업들의 집행 시 사업시행자 선정도 투명성 담보를 위해 공모방식을 검토할 필요 ·‘우수콘텐츠잡지 육성 및 보급지원’ 사업의 경우 민간의 재정부담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필요가 있으며,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에 지원되는 ‘미디어시장조사’의 경우 정책환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동 보조사업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음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정부가 정기간행물의 유통활성화, q해 외시장 진출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기본시책을 수립을, 동법 제13조는 정부가 매년 우수 정기간행물의 선정과 보급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8조와 제13조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에서 충당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정부가 여론집중도를 조사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2조는 여론집중도 조사를 위한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이에 대한 위원회 예산지원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 동 사업은 ‘우수콘텐츠잡지 육성 및 보급지원’, ‘잡지콘텐츠 해외수출 기반구축’, ‘잡지콘텐츠DB화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미디어시장조사’의 총 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 중, ‘우수콘텐츠잡지 육성 및 보급지원’ 사업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잡지콘텐츠 해외수출 기반구축’은 동법 제7조제2항제6호에 근거를, ‘미디어시장조사’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법적근거를 명확히 두고 있음
 - 다만, 관련법령에서 「“보조”해야 한다」 또는 「“보조”할 수 있다」 등으로 보조금의 형태의 지원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정도로 포괄적으로 완곡하게 규정하고 있음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

제8조(진흥사업의 지원) 정기간행물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동 사업은 열악한 정기간행물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일부 우수 정기간행물을 정부가 직접 구매하여 도서관외지역에 배포하고, 오래된 정기간행물의 데이터베이스화와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언론정책수립을 위해 여론집중도조사를 추진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뉴스 이용 환경과 미디어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우수콘텐츠잡지 육성 및 보급지원’ 사업은 독서인구 감소 및 독서행태 변화, 고비용 및 저이익의 열악한 출판업계의 현실 등을 고려하여 일부 우수 정기간행물을 직접 정부가 구매하여 도서지역 등 공공도서관에 배포하는 사업으로 4개 내역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정기간행물의 공공수요를 창출해주고 구입된 100여종의 정기간행물을 600개소의 도서관외지역에 배포함으로써 공공적 목적을 달성한다는 두 가지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으로 우수 정기간행물에 대한 수요창출,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정책 효과성이 인정됨
- 다만, 8개 분야에 대해 발간지속성 등의 계량지표, 콘텐츠 및 편집/디자인 우수성 등의 비계량지표로 보급지원 대상 정기간행물이 선정되는 바, 수요처가 되는 600개소의 도서관외지역의 니즈를 조사하여 수요-공급의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고 정책효과성을 더욱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잡지콘텐츠 해외수출 기반구축’과 ‘잡지콘텐츠DB화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추진됨.
- 따라서 가시적인 정책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관리지표 등을 고도화 할 필요가 있음.
- ‘미디어시장조사’의 경우 관련법령에서 여론집중도조사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의 운영에 대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미디어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활용된다는 점에서 정책성 효과성은 인정된다고 보여짐.
- 다만 실제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에서 논의된 연구내용들이 어떻게 정책에 환류/반영할지를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음.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우수콘텐츠잡지 육성 및 보급지원’은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매년 우수콘텐츠를 선정하고 잡지의 구입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산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우수 콘텐츠잡지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음
- 문화소외시설 및 관련시설 배포처 대상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기관의 76.4%가 정부예산 지원 없이 잡지 구독이 어렵고, 79.6%의 배포처가 동사업의 필요성을 높이평가



- 여론집중도조사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를 지원하는 ‘미디어시장조사’의 경우 관련법령에서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예산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위원회 운용상 예산 불용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기본/보완 연구 등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제선정/평가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정책과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의 내역사업 중 ‘우수콘텐츠잡지 육성 및 보급지원’의 경우 정해진 심사기준에 따라 매년 100여개의 우수 정기간행물을 선정하고 이를 정해진 배포처에 보급하고 있어 보조금 지원의 물량과 단가가 명확하게 산출되는 편임
- 동 보조사업의 내역사업 중 ‘잡지콘텐츠 해외수출 기반구축’의 경우, 효과성 제고를 위해 내역사업 콘텐츠를 수정·보완하는 등 사업고도화가 필요가 있음.

1-5 사회적 가치 실현(가산점)

- 별도의 정기간행물 구입 예산 배정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도서관 및 문화소외시설 등에서 다양성과 전문적인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정기간행물을 전국 지역의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고급 정보 및 전문 지식을 매달 제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 노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장애인복지시설, 교정시설 등 전국의 공공성 있는 기관에 배포되고 있으며, 출판사(공급자)와 배포처(수요자)의 만족도도 높게 조사되는 편임.
- 보존 가치가 높은 고(古)잡지의 번역 및 DB화 추진도 사료수집과 보존이라는 공공성이 높은 기반구축 활동으로 평가될 수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사업은 지정사업으로 공모 없이 특정 사업시행자가 선정되고 있으나, 여론집중도조사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를 지원하는 ‘미디어시장조사’ 지원사업의 경우 근거법령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위원회의 사무처리에 대한 지원을 동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요청하게 되어 있음
- ‘우수콘텐츠잡지 육성 및 보급지원’ 등의 다른 내역사업들도 공모 없이 (사)한국잡지협회에 지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동 사업은 보조율 100%로 추진되고 있으나, 근거 법령에는 보조율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를 지원하는 ‘미디어시장조사’ 지원사업의 경우 행정지원 성격이 포함되어 보조율 100% 형태의 추진이 적절하다고 보여지나, ‘잡지산업 기반구축’의 경우 정부가 구매를 통해 민간을 지원하는 만큼 정기간행물 산업체의 자발적인 재정부담 증가를 통해 보조율을 단계적으로 낮춰나갈 필요가 있음.
- ‘미디어시장조사’ 지원사업의 경우 부처의 정책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크게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에 대한 지원과 정책수립을 위한 기본/보완연구 지원으로 구분됨
 - 그러나, 최근 위원 위촉 지연, 워크숍 개최회수 부족, 내부연구진의 발표 등으로 추진되어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운영의 차질이 있었던바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동 사업만을 위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부처 통합 규정인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사업관리를 하고 있음.
 -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해 사업 진행상황, 예산 집행현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음
- 또한, 잡지 산업 기반구축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잡지협회 대상으로 주기적(년2회) 점검 및 교육을 통해 보조금 수급 관리를 하고 있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해당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사업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법적근거를 두고 정형적으로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근거규정이 명확하며, 부처의 통합관리 지침에 따라 관리되어 왔음
- ‘우수콘텐츠잡지 육성 및 보급지원’은 정부의 구매력을 통해 정기간행물의 수요를 창출해 주고 문화소외지역에 도서를 보급하자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체계적인 우수 정기간행물 선정기준과 관리기준(연속선정 간행물에 대한 감정 등)을 가지고 있어 운영과 집행에 큰 문제가 없는 편임
- 또한,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를 지원하는 ‘미디어시장조사’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최근 몇 년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지연되고 있어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을 적정성 관리 노력이 필요함.

3-2 정책 제언

- ‘우수콘텐츠잡지 육성 및 보급지원’ 사업에서 우수 정기간행물 선정 시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는 대형 언론사의 정기간행물 보다는 질적으로 우수하나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출판사들을 고려하고 배포처의 수요를 조사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대형 언론사의 정기간행물은 ‘우수콘텐츠잡지’로 선정하는 비예산적 인센티브만 제공하고, 소형 출판사의 정기간행물은 동 보조금 사업으로 구매를 추진하는 등 개선된 대안을 통해 점진적으로 보조율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음.
- ‘잡지콘텐츠 해외수출 기반구축’의 경우 서적 구매와 소비의 패턴과 행태가 변화하는 만큼 하드카피 형태의 정기간행물 해외보급 보다는, 디지털 콘텐츠의 보급을 통한 자연스런 글로벌 진출이 이루어지도록 사업의 방향과 초점을 재검토 필요함.
- ‘미디어시장조사’의 경우 기본/보완연구가 내실있게 추진되고 그 결과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음.
- ‘우수콘텐츠잡지 육성 및 보급지원’ 사업도 공모방식의 사업자 선정을 검토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박물관문화재단 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67.2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2.2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5.2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1.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18.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5.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1.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 변경 ·수혜자의 범위가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성과평가 결과는 비교적 양호하나 다른 지표 개발 필요. ·‘20년 박물관문화재단 지원 예산안에서 기본운영비(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가 전체 예산안의 약 29% 정도를 차지함. 기본운영비 비중의 감소, 사업예산 비중의 증가와 박물관문화재단 자체의 수입 구조 개선의 노력이 필요함 (예시: 신규 사업 발굴 및 온라인 마케팅 강화 등) ·수혜자의 범위를 명확하고 적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보조사업의 효과성을 포괄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함. 또한 각 년도의 성과지표의 목표 설정에 보다 객관적인 제시가 필요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본 보조사업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5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공연법 제8조 등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본 보조사업은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5조(국립박물관문화재단 설립)

- ① 정부는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이용촉진과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문화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 ③ 문화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④ 문화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립 박물관 공연장 운영
 2. 문화예술 창작품 개발·보급
 3. 문화관광상품의 개발과 제작 및 보급
 4. 문화상품점, 식음료 매장, 그 밖의 편의 시설 등의 운영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그 밖에 문화재단의 설립목적에 필요한 사업
- ⑤ 문화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⑦ 정부는 문화재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문화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보조 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2. 문화예술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3.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본 보조사업은 문화유산의 보존, 계승 및 이용촉진과 문화, 예술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기회를 증진하고 편익을 도모하는 등의 목적을 가짐
 - 이를 위해 박물관문화재단 지원의 하나의 내역사업이 존재함
 - 박물관문화재단의 역량, 업무 등을 고려하였을 때 본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내역사업 설정이라 판단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내역사업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판단됨
 - 계획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노력이 보이며, 당초 계획한대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음
 - 재단 보조사업비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재단 설립 근거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5조④항 문화재단의 사업 중 첫 번째로 정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립 박물관 공연장 운영’, 즉 공연사업을 주요 성과지표로 설정함 (자료: 부처 제출).

<박물관문화재단 지원 사업 - 공연사업 예산 비중>

(단위: 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박물관문화재단 지원	1,992	1,826	2,186	2,156	2,830
- 공연사업	1,238	1,000	1,000	976	1,619
(비중)	(62.1%)	(54.8%)	(45.7%)	(45.3%)	(57.2%)

- 성과평가 결과는 비교적 양호하나 다른 지표 개발 필요
 - 관람객 수, 이용건수 등이 주요 성과평가 지표로 제시됨. 이는 전형적인 정량적 지표로 본 보조사업의 효과성을 포괄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함.
 - 또한 각 년도의 성과지표의 목표 설정에 보다 객관적인 제시가 필요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보조사업의 목적을 감안할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민간단체 보조를 통한 사업추진 방향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 문화유산의 보존, 계승 등은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 이를 고려했을 때 정부 보조금 지원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수혜자의 범위가 명확하고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지 못함
 - 직접 수혜자의 경우에는 비교적 명확하고 적정하게 설정한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간접 수혜자의 수혜내용이 다소 추상적이며, 본 보조사업으로 인해 그 편익(수혜)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의 설명이 부족함. 더욱이, 간접 수혜자의 규모도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20년 박물관문화재단 지원 예산안에서 기본운영비(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가 820백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음
 - 이는 전체 '20년 박물관문화재단 지원 예산안의 약 29% 정도를 차지함. 다만, 재단은 2018년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따라, 기존 사업비에 편성된 소속박물관 편의시설 운영인력 예산이 운영비로 이관됨에 따라 운영비 비중이 증가한 것은 감안할 필요가 있음
 - 기본운영비 비중의 감소, 사업예산 비중의 증가와 박물관문화재단 자체의 수입 구조 개선의 노력이 필요함 (예시: 신규 사업 발굴 및 온라인 마케팅 강화 등)
 - '박물관미술관 지원' 사업의 연도별 국고보조금 및 자체수입 내역을 아래와 같음 (자료: 부처 제출)

<문화재단 재원부담>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국고(A)	1,992	1,826	2,186	2,156	2,830
자체(B)	7,274	9,429	9,508	10,022	10,933
합계(A+B)	9,266	11,255	11,694	12,178	14,269
재정자립도 B/(A+B)	78.5%	83.8%	81.3%	82.3%	80.2%
국고 운영비 편성(C) (비중(C/A))	516 (25.9%)	516 (28.3%)	652 (29.8%)	813 (37.7%)	820 (29.0%)

* 2016-2019년 결산 기준, 2020년 예산 기준



- 다만, 총 인건비 대비 국고보조금 비율은 다소 낮아짐 (자료: 부처 제출)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총 인건비 계(A=B+C)	2,229	2,504	3,342	3,830	4,386
자체(B)	1,900	2,103	2,848	3,261	3,817
국고 (비중, C/A)	329 (14.8%)	401 (16.0%)	494 (14.8%)	569 (14.9%)	569 (13.0%)

* 2016-2019년 결산 기준, 2020년 예산 기준

** 총인건비: 기관 정원(정규직, 무기계약직) 인건비 총액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본 보조사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등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간접적 기여도를 인정할 수 있음
- 하지만 본 보조사업이 직접적으로 해당 사회적가치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은 크다고 보기 어려움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선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본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을 갖추고 있지는 않음
 -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을 준용하여 사업자 선정을 하고 있음
 - 기관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바탕으로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자부담능력 등 사업의 자부담 능력 등을 검증 후,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여 보조금 신청·교부·정산을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본 보조사업 집행과 관련하여 본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음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과 문화체육관광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재단 ‘회계규정’, 에 정하는 바에 의거, 국고보조금의 정산 및 반납 등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본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을 갖추고 있지는 않음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과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의 규정에 따라 부정수급 관리를 시행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자체 적발 이력은 없으나, 지원 관련 사업 및 시설에서 비리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부정수급 방지 대책 마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자체 사업관리를 위한 노력이 보임
 - 중기 재무운영계획 수립, 부정수급 모니터링 사례 공유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추가적인 자체 사업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보조사업은 문화유산의 보존, 계승 및 이용촉진과 문화, 예술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기회를 증진하고 편익을 도모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며, 국가의 보조금 지급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수혜자의 범위가 명확하고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지 못함
 - 직접 수혜자의 경우에는 비교적 명확하고 적절하게 설정한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간접 수혜자의 수혜내용이 다소 추상적이며, 본 보조사업으로 인해 그 편익(수혜)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의 설명이 부족함. 더욱이, 간접 수혜자의 규모도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3-2 정책 제언

- 성과평가 결과는 비교적 양호하나 다른 지표 개발 필요
 - 관람객 수, 이용건수 등이 주요 성과평가 지표로 제시됨. 이는 전형적인 정량적 지표로 본 보조사업의 효과성을 포괄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함.
 - 또한 각 년도의 성과지표의 목표 설정에 보다 객관적인 제시가 필요함
- '20년 박물관문화재단 지원 예산안에서 기본운영비(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가 820 백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음
 - 이는 전체 '20년 박물관문화재단 지원 예산안의 약 29% 정도를 차지함
 - 기본운영비 비중의 감소, 사업예산 비중의 증가와 박물관문화재단 자체의 수입 구조 개선의 노력이 필요함 (예시: 신규 사업 발굴 및 온라인 마케팅 강화 등)
 - 다만,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사업은 공연 예술사업 및 소속박물관 편의시설 운영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노동집약적 사업이며, 수익성이 낮은 공공적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해야 함
- 수혜자의 범위가 명확하고 적절하게 설정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68.3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4.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6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8.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1.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6.4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4.3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2.9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2.9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 변경 ·본 사업은 실집행률이 낮고 이월액이 발생하였으나 실집행률 저조 및 이월 사유가 있으며, 2개 내역사업의 경우 실효성을 검토한 결과를 근거로 연관사업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사업방식 변경으로 판정함 ·본 사업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 상 건설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전액을 불용처리하고, 민간자본보조 사업(수상해양복합촬영장 조성) 타당성 연구 용역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실행률이 낮아지고 이월액이 발생하였다는 점은 인정되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제고되어야 함. 또한 방송영상콘텐츠창작기반구축 및 사이버방송영상아카데미 등의 내역사업은 성과지표가 부족하며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근거로 연관 사업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이 바람직함. 따라서 이러한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사업 예산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방식을 변경하고, 일부 내역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에 대한 개발을 권고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및 제작인프라 지원, 방송영상콘텐츠 창작기반 구축, 사이버방송영상아카데미, 방송영상콘텐츠 해외진출 및 행사지원 등의 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송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콘텐츠산업진흥법」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음
- 「방송법」 제92조(방송발전의 지원) 제2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방송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동법 제94조(방송전문인력의 양성 등)은 ‘정부는 방송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교육기관 및 방송관련학과등에 대한 지원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동법 제96조(방송프로그램 유통등 지원) 제1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상·비디오 등 영상물이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되어 방송매체별로 다단계로 유통·활용 또는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동법 제97조(방송의 국제협력)은 ‘정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외국의 방송관련기관·단체와의 국제교류,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 방송전문인력의 상호교류 및 방송기술의 공동개발등 국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0조(제작자의 제작지원) 제1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문화상품의 제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작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동법 제11조(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제1항은 ‘정부는 독립제작사의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동법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동법 제20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제1항은 ‘정부는 문화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방송·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마케팅·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 유치, 국제영상제·건본시장 참여 및 국내 유치,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로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상기 동법 제31조(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 제1항은 ‘정부는 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6항은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호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기획, 2호 문화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3호 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및 재교육 지원, 5호 문화산업발전을 위한 제작·유통활성화, 6호 문화산업의 창업, 경영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10호 국내의 콘텐츠 자료의 수집·보존·활용, 11호 방송영상물의 방송매체별 다단계 유통·활용·수출 지원, 12호 방송영상 국제공동제작 및 현지어 재제작 지원’, 제7항은 ‘정부는 진흥원의 설립·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로 명시하고 있음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항은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은 ‘정부는 콘텐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을 전문인력 양성 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동법 제1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1항은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호 콘텐츠의 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 2호 외국인의 투자 유치, 3호 국제시상식·경본시장·전시회·시연회 등 참여 및 국내 유치, 4호 콘텐츠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5호 콘텐츠의 해외 현지화 지원, 6호 콘텐츠의 해외 공동제작 지원, 7호 국내의 기술협력 및 인적 교류’, 제2항은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본 사업의 내역사업들은 해당하는 내용이 근거 법령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으며, 보조금 지원 근거도 명시되어 있음
- 본 사업의 목적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국정과제(70-3)와의 연계성도 높아 국가 지원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사업 목적은 우수 방송영상콘텐츠 발굴, 제작지원을 통해 독립제작사 제작여건 개선 및 콘텐츠 다양성 확보 등 방송영상산업 기반 강화, 경쟁력 있는 신규 포맷 발굴·제작 및 포맷사업 저변확대 지원, 전략시장, 신흥시장 등 시장별 맞춤형 유통·수출 지원을 통해 우수 국산 방송콘텐츠의 글로벌 진출 기반 확대 및 한류 확산, 방송영상산업 관계자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으로 전문성 강화 및 방송영상산업 경쟁력 제고 등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함
 - 4개 내역사업들의 목적도 구체적이고 명확함
 - 미디어산업 성장과 균형발전을 내용으로 하는 국정과제(70-3)와의 연계성도 있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의 내역사업-방송영상콘텐츠 제작 및 제작인프라 지원, 방송영상콘텐츠 창작기반 구축, 사이버방송영상아카데미, 방송영상콘텐츠 해외진출 및 행사지원-은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음
- 다만 사업 예산의 집행행율이 낮고 불용액이 발생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았으나, 실 집행을 저조 및 이월사유가 발생하였음
 - 2017년 실집행률 저조 사유는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 상 건설비의 낙찰차액은 불용처리가 원칙이기 때문에 ‘HD드라마타운’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전액을 불용 처리함에 따라 실집행률이 낮아졌다고 소명함
 - 2019년 실집행률 저조 및 이월사유는 민간자본보조 사업(수상해양복합촬영장 조성) 타당성 연구 용역 결과, 예상되는 문제점(사업부지가 도심에 있어 소음, 보안, 조명 발생 등) 해소를 위한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 해당 지자체와 협의, 추가 연구용역 등으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월액이 발생함
- 성과지표는 건본시 참가업체 수출실적 및 드라마 등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건수)로 설정했으며, 목표 계획대비 실적을 달성함. 다만 일부 내역사업은 성과를 확인하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어 성과지표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4개 내역사업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하여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지만, 일부 내역 사업들은 실효성이 부족하여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연관사업에 통합할 필요성이 있음
 - 보조사업의 내역사업 중에서 방송영상콘텐츠 창작지원 사업은 국내 방송창작자들의 역량 강화 및 해외진출 기반 마련 및 새로운 방송콘텐츠 스토리(소재)발굴 기회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사업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과제임
 - 또한 사이버방송영상아카데미 사업은 방송영상분야 온라인 교육을 통한 잠재인력 저변확대 및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방송영상산업 관계자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무료 수강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사이버방송영상아카데미가 방송영상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 이러한 2개 내역사업들은 보조사업의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사업인지,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근거로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연관사업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에 포함된 내역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고려하면 보조금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국정과제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면 지자체 수행이나 개별 민간 수행 등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타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사업이 있으나 통합 및 전환 불가능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내역사업 간의 중복성은 없음
- 본 보조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방송산업 관계자, 방송사, 배급사, 제작사 등이며, 간접 수혜자는 일반국민임.
 - 수혜자 및 내용이 명확하고 광범위하여 정책효과가 크다고 판단되어 사업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내역사업별 목표 달성을 위해 보조금 규모에 대한 적절한 산출근거를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보조사업의 실행률은 2017년 84%, 2018년 90%, 2019년 73%임.
 - 2017년의 불용액 발생 사유는 민간자본보조 사업(HD드라마타운, 3,463백만원) 공사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제시하였으며, 2019년 불용액 발생 사유는 민간자본보조 사업(수상해양복합촬영장 조성) 타당성 연구 용역 결과, 예상되는 문제점(사업부지가 도심에 있어 소음, 보안, 조명 발생 등) 해소를 위한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 해당 지자체와 협의 등으로 상당기간 소요되어 예산을 이월(4,600백만원)했다고 제시함
 - 실행행률이 낮고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발생하는 점 등에 대한 사유는 인정되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내역사업별로 예산 배분 및 규모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일부 내역사업의 예산 배분 및 규모가 상대적으로 낮게 편성되어 있음.
 -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예산으로 수행되는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내역사업 중에서 방송영상콘텐츠 창작기반 구축 사업 및 사이버방송영상아카데미 사업은 예산 배분 및 규모가 상대적으로 낮게 편성되어 있음.
- 따라서 이들 내역사업의 규모가 적정 수준으로 반영되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본 사업은 보조사업의 규모가 200억 이상되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단기, 중기, 장기 사업들에 대한 재정소요액 추계가 되어 있으며, 적정하다고 판단됨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본 사업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의 규정이 있음.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평가 및심의지침」,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에 의거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절차를 준수하여 적정한 관리 및 감독을 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의 규정이 있음.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평가 및심의지침」,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사업의 집행을 관리 및 감독하고 있음
- 해당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의 집행관리, 보조사업의 적정한 정산 및 반환, 회계감사 내실화를 위해 정산보고서, 실적보고서, 검증보고서 등을 제출, 정보공시 등 보조금 집행 관련 절차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내부 규정에 따라 부정수급을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없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보조금 지급 근거가 명확하고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음. 또한 사업의 목적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국정과제(70-3)와의 연계성도 높아 국가 지원이 타당함
- 2개 내역사업-방송영상콘텐츠 창작기반 구축, 사이버방송영상아카데미-은 성과지표가 설정되지 않아,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함
- 일부 내역사업들은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업 방식 변경이 필요함
 - 방송영상콘텐츠 창작지원 사업은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우며, 사이버방송영상아카데미 사업은 방송영상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실질적 기여도가 낮음. 따라서 이들 내역사업에 대한 사업의 실효성을 검토하여 이를 근거로 연관 사업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이 바람직함
- 본 사업은 실행행률이 낮아 당초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음. 실행행률이 낮고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타당한 사유가 있으나 실행률 저조와 이월액 발생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제고되어야 함
- 내역사업별로 예산 배분 및 규모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일부 내역사업의 예산 배분 및 규모가 상대적으로 낮게 편성되어 있음.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예산으로 수행되는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하여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함
-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 집행 관리, 부정수급 방지 대책은 적정하며,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없음

3-2 정책 제언

- 사업 예산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방식을 변경하고,
- 본 사업의 일부 내역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에 대한 개발을 권고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언론공익사업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66.9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1.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5.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1.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5.9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2.9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1.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 변경 ·본 사업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내역사업들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성과지표의 타당성이 다소 미흡하여 사업방식 변경으로 판정함 ·2개 내역사업의 성과지표는 표본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소외계층 신문구독지원 수혜자 만족도 및 심의건수와 참여매체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조사되는 언론자율심의 건수임.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환경을 고려할 때 이들 내역사업들의 성과와 사업의 실효성 측정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이를 고려하여 보다 효과적인 사업 추진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이 중심이 되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을 고려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적 관점의 성과지표 개발을 권고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미디어교육사업, 읽기문화진흥사업, 신문윤리심의지원 등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음
- 미디어교육사업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언론진흥기금의 용도) ‘법 제35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4호 읽기 문화 진흥 등 미디어 교육 관련 사업’에 규정되어 있음.
- 또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언론진흥을 위한 수수료 사용) ‘제10조 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언론진흥기금(이하 “언론진흥기금”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 2호 미디어교육 지원 사업, 3호 정보격차 해소 지원 사업, 4호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언론진흥 사업’에 규정되어 있음
- 읽기문화진흥사업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언론진흥기금의 용도 등) 제1항 ‘언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된다. 4호 독자 권익 및 언론공익사업 지원’ 등으로 명시되어 있음.
- 또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언론진흥기금의 용도) ‘법 제35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3호 청소년 및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사업, 4호 읽기 문화 진흥 등 미디어 교육 관련 사업’에 규정되어 있음
- 신문윤리지원사업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언론진흥기금의 용도 등) 제1항 ‘언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된다. 4호 독자 권익 및 언론공익사업 지원’ 등으로 명시되어 있음.
- 또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언론진흥기금의 용도) ‘법 제35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5호 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자율심의 지원 사업’에 규정되어 있음



- 본 사업의 목적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 국가 지원의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됨
 - 보조사업의 목적은 언론을 활용한 공익사업 전개로 국민과 언론간의 친화도 향상 및 언론의 사회적 책임 확대, 초·중·고 학생 및 유아 및 중장년층·노인 등 전연령대 국민 대상 뉴스활용교육 확대로 뉴스에 대한 비판적 독해(리터러시)능력과 창의적 사고력 배양, 읽기문화 진흥을 통한 청년 및 청소년의 뉴스친화도 제고, 소외계층 대상 신문 구독기회 제공 및 장애인 등을 위한 전문매체 지원을 통한 여론 다양성에 기여, 신문·인터넷신문 등의 기사 및 광고의 자율심의 강화로 독자 피해 예방 및 뉴스신뢰도 제고 및 뉴스 품질 강화 등으로 구체적이고 명시적임
- 본 보조사업은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정과제(70)와도 연계성이 있어 국가 지원이 타당성하다 판단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의 내역사업은 각종 교육기관의 뉴스활용교육(NIE)을 지원하는 ‘미디어교육사업’, 국민의 뉴스읽기 문화의 확산 및 소외계층의 신문 구독 지원을 위한 ‘읽기문화진흥사업’, 신문 기사 및 광고윤리 준수를 위한 ‘신문윤리심의지원’ 등 3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수행되었음
- 성과지표는 뉴스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 참여인원, 소외계층 신문구독지원 수혜자 만족도 증대, 언론 자율심의 건수(심의건수 및 참여매체수) 등이며, 계획대비 실적을 충실히 달성함
- 다만 성과지표가 교육프로그램 참여인원, 수혜자 만족도, 자율심의 건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일부 지표는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미디어교육 프로그램별 참여인원수를 집계하는 뉴스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 참여인원과 심의건수와 참여매체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조사되는 언론자율심의 건수는 성과지표로서 타당하다고 평가됨.
 - 그러나 표본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소외계층 신문구독지원 수혜자 만족도 지표는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함
 - 중장기적으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3개 내역사업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문화미디어산업의 진흥 및 환경 개선’이라는 정책목표 및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이라는 국정과제와 부합함. 다만 사업의 목적과 방향이 뚜렷하고 필요성이 상당 부분 인정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에 포함된 내역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고려하면 보조금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등을 고려하면 지자체 수행이나 민간위탁 등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본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소외계층구독료지원은 타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사업에 대한 국회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언론진흥기금과 지역신문발기금의 법적 지원 기준에 따라 중복지원이 불가하다는 근거를 제시함. 내역사업의 중복성도 발견되지 않음
- 본 보조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신문사, 민간단체, 대학 등이며, 간접 수혜자는 일반국민, 충고고등학생과 대학생, 신문구독자 등이며, 수혜자와 그 내용이 광범위하고 정책효과가 크다고 판단되어 사업의 지속적 추진 필요성이 있음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한 보조금 규모에 대한 산출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실행률은 양호함
 - 예산의 실행률은 2018년 98.7%, 2019년 99.3%로 매우 양호함
- 내역사업별로 사업예산이 배분 및 규모가 적절하게 되어 있음
 - 내역사업 전체가 보조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직접사업도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보조사업 외 전체사업의 규모로 판단할 경우 내역사업별 예산 배분은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됨
 - 2020년 기준 미디어교육사업 35억, 읽기문화진흥사업 25억, 신문윤리심의지원사업 20억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 사업은 「보조금법 시행령」 상 기준 보조율은 2019년까지는 준수하였으며, 2020년은 적용받지 않음
 - 보조율 산정을 위한 별도의 기준 보조율은 2019년까지는 합리적인 보조율 산정기준에 근거하였으며, 2020년은 50억 미만으로 기준 보조율을 적용받지 않음. 또한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본 사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사업의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관계 법령과 「언론진흥기금 관리위원회 운영규칙」 및 「언론진흥기금 보조금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사업자 공모 및 교부절차와 결정을 확정함
- 「언론진흥기금 관리위원회 운영 규칙」 및 「언론진흥기금 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의 일반적 추진계획 및 지원기준에 대해 기금관리위원회의 사전 검토 및 의결, 보조사업별로 세부적 추진계획 및 구체적 지원자격, 교부기준, 사업 절차 등에 대해 설정한 사업추진계획 수립, 그리고 선정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기금관리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보조금 교부 결정을 확정함
- 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절차, 집행내용 등에 대해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9조제4항(언론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따라 매분기별로 운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본 사업의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언론진흥기금 관리위원회 운영규칙」, 「언론진흥기금 관리운용규칙」, 「언론진흥기금 보조금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집행을 관리 및 감독하고 있음
- 보조사업의 집행관리, 보조사업의 정산 및 반환, 회계감사 내실화를 위한 정산보고서, 실적보고서 제출, 정보공시 등 보조금 집행 관련 절차를 적절하게 관리 및 감독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본 사업은 「언론진흥기금 관리위원회 운영규칙」, 「언론진흥기금 관리운용규칙」, 「언론진흥기금 보조금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부정수급을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없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보조사업자 자격 강화, 성과관리 제도 운영, 보조사업자 교육 실시 등 자체사업관리 노력이 우수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보조금 지급 근거가 명확하고 관계 법령에 의해 규정되어 있음
- 본 사업의 내역사업인 미디어교육사업, 읽기문화진흥사업, 신문윤리심의지원 등의 목표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 국가 지원이 타당하며, 국정과제와도 연계성이 있음
 -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의 실효성은 높다고 판단할 수 있음
 - 미디어교육사업은 디지털 미디어 발달 및 정보의 생산과 유통 경로가 다양화됨에 따라 미디어교육의 필요성이 이전보다 더욱 증가하고 있음
 - 소외계층신문구독지원은 디지털 미디어 기기 이용 및 인프라 이용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보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보복지를 강화하고 있음
 - 언론자율심의지원사업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라 인터넷 매체수의 급격한 증가 및 이에 따른 가짜 뉴스의 유통, 유해성 광고 확산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사업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 3개 내역사업별 성과지표는 계획 대비 실적을 충실히 달성하였으나, 일부 내역사업의 성과지표는 타당성이 떨어져 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측정하는데 미흡하다고 판단됨
 - 표본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소외계층 신문구독지원 수혜자 만족도 지표는 정확한 사업성과 측정을 위해 추가적인 보완 및 개발이 필요함
- 3개 내역사업의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서 사업의 필요성이 상당 부분 인정됨
- 보조사업자 공모, 보조사업 집행 관리, 부정수급 방지 대책은 적정하며, 부정수급 적발건수도 없음

3-2 정책 제언

- 사업 타당성과 필요성이 높아 지속 추진의 필요성이 있으나, 디지털미디어 환경을 고려하여 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성과지표 개발을 권고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예술의전당 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5.6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1.6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6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1.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7.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4.0
1-5.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4.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 변경 ·본 보조사업은 예술의전당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보조금의 본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중/장기적으로 시설물유지관리지원과 인건비 내역사업들의 비중을 낮추는 방향 모색할 필요가 있음. 다만 공연예술 등 예술의 전당 관련 사업이 인건비 비중이 높은 노동집약적 성격을 가지는 사실과 예술의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성과평가 결과는 비교적 양호하나 추가적 지표 개발 필요. 예술의 전당 관람객 수 등 정량적 지표 외 본 보조사업의 효과성을 포괄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함 ·또한 성과지표의 목표 설정에 보다 객관적인 제시가 필요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본 보조사업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37조 및 제39조가 본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로 제시되고 있음
- 본 보조사업은 예술의전당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문화예술진흥법」

- 제37조(예술의 전당) ①문화예술을 창달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며,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술의 전당을 둔다.
 - ②예술의 전당은 법인으로 한다.
 - ③예술의 전당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④국가는 예술의 전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예술의 전당에 무상으로 양여(讓與)할 수 있다
 - ⑤예술의 전당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9조(국고보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2. 문화예술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3.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본 보조사업의 목적은 그 내역사업 별 목적으로 살펴볼 수 있음
- 시설유지관리지원, 예술사업, 인건비, 그리고 공익사업의 총 4개의 내역사업이 존재함
- 이 내역사업들은 예술의 전당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공간유지, 공연/전시 제작비, 예술의 전당 직원 인건비, 공익목적 사업 공연작품 영상콘텐츠 제작, 그리고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향유기회 지원 등으로 국가의 지원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내역사업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판단됨
 - 계획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노력이 보이며, 당초 계획한대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음
- 성과평가 결과는 비교적 양호하나 다른 지표 개발 필요
 - 예술의 전당 관람객 수 등이 주요 성과평가 지표로 제시됨. 이는 전형적인 정량적 지표로 본 보조사업의 효과성을 포괄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함
 - 또한 성과지표의 목표 설정에 보다 객관적인 제시가 필요함. 예를 들어, 예술의 전당 관람객 수 성과지표의 경우 '18년 285만 명에서 '19년 232만 명으로 목표를 하향 조정함. 이는 '18년 목표 달성도가 80%임을 감안하여 '19년에 의도적으로 낮은 목표를 설정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보조사업의 목적을 감안할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민간단체 보조를 통한 사업추진 방향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 특히, 예술의전당은 건립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문화예술 중심 기관으로 문화예술 발전과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바, 보조금 지급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수혜자가 범위가 예술의전당 및 예술의전당 상주단체·대관 기관의 공연을 관람하는 관람객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발전을 향유하는 국민 전체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수혜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고 판단됨
- 본 보조사업은 타 사업과의 중복은 확인되지 않음
 - 순수예술로서 상업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예술분야의 경우 국가적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육성이 필요하며, 예술의 전당은 국립예술단체의 육성 및 질적 향상에 지속적으로 기여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보조사업의 내역사업별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적정한 사업비 규모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산출근거를 마련하여 예산규모를 설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됨
 - 최근 실집행률이나 불용액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19년 기준 내역사업들 중 시설물유지관리지원이 전체의 약 82%를 차지함
 - 인건비 내역사업도 전체 보조사업의 약 11%의 비중을 차지함. 더욱이 '19년에 비해 '20년 예산 계획상 인건비 내역사업의 비중이 약 16%로 증가함
 - 이에 반해, 다른 내역사업들인 예술사업과 공익사업은 그 비중이 낮음
 - 보조금의 본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중/장기적으로 시설물유지관리지원과 인건비 내역사업들의 비중을 낮추는 방향 모색
 - 공연예술 등 예술의 전당 관련 사업이 인건비 비중이 높은 노동집약적 성격을 가지는 사실과 예술의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사업비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 더욱이, 국고보조금에 대한 인건비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전체 인건비 대비 국고보조금 인건비 비중: 4%('17년), 15%('18년), 14%('19년), 32%('20년))
 - 다만, 이는 2018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른 전환인력 인건비(7,305백만원)이 경상비에 포함된 것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임
 - 국고보조금 지원의 주된 취지와 부합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높이고 인건비와 경상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다만, 현실적 상황과 예술과 예술의 전당의 공공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최근 10년간 예산 (부처 제출)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액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2020년	45,292 (100%)	18,734 (41%)	5,124 (11%)	21,434 (47%)
2019년	43,761 (100%)	10,390 (24%)	13,041 (30%)	20,330 (46%)
2018년	44,706 (100%)	10,170 (23%)	13,215 (30%)	21,321 (48%)
2017년	50,689 (100%)	9,125 (18%)	6,155 (12%)	35,409 (70%)
2016년	50,560 (100%)	8,774 (17%)	6,399 (13%)	35,387 (70%)
2015년	53,980 (100%)	9,100 (17%)	6,602 (12%)	38,278 (71%)
2014년	49,630 (100%)	9,504 (19%)	5,933 (12%)	34,193 (69%)
2013년	53,870 (100%)	7,961 (15%)	7,495 (14%)	38,414 (71%)
2012년	63,650 (100%)	7,808 (12%)	6,872 (11%)	48,970 (77%)
2011년	71,000 (100%)	7,571 (11%)	10,835 (15%)	52,594 (74%)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본 보조사업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등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간접적 기여도를 인정할 수 있음
- 하지만 본 보조사업이 직접적으로 해당 사회적가치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은 크다고 보기 어려움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선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본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을 갖추고 있지는 않음
 -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사업자 선정을 하고 있음
 - 매년 초 보조금 교부 전 사업계획 수립 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고, 월별 집행실적 점검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을 점검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집행 시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 관리·감독을 통해 사업을 적절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본 보조사업 집행과 관련하여 본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음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과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하반기 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점검, 사업추진 종료 시 최종실적 결과 및 결산 사항 점검·확인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사업비카드시스템을 활용하여 집행현황을 상시 파악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법 또는 비효율적 예산 사용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본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을 갖추고 있지는 않음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과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의 규정에 따라 부정수급 관리를 시행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자체 적발 이력은 없으나, 지원 관련 사업 및 시설에서 비리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부정수급 방지 대책 마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자체 사업관리를 위한 노력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보조사업은 예술의전당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19년 기준 내역사업들 중 시설물유지관리지원이 전체의 약 82%를 차지함
 - 인건비 내역사업도 전체 보조사업의 약 11%의 비중을 차지함. 더욱이 '19년에 비해 '20년 예산 계획상 인건비 내역사업의 비중이 약 16%로 증가함

3-2 정책 제언

- 보조금의 본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중/장기적으로 시설물유지관리지원과 인건비 내역사업들의 비중을 낮추는 방향 모색하고 예술, 공연 등 사업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의 노력이 필요함
- 성과평가 결과는 비교적 양호하나 다른 지표 개발이 필요함
 - 예술의 전당 관람객 수 등이 주요 성과평가 지표로 제시됨. 이는 전형적인 정량적 지표로 본 보조사업의 효과성을 포괄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함
 - 또한 성과지표의 목표 설정에 보다 객관적인 제시가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예술창작활동 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66.6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1.6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6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8.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18.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5.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1.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 변경 ·재정규모에 비해 사업의 성과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여 상위목표달성에 대한 기여도가 불명확함. ·신규사업의 사업수혜자 의견 수렴 및 추진 방식 결정을 적시에 실시하여 집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실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사업방식의 변경 모색 필요. 회계연도 내에 실질적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기간과 회계연도가 일치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 ·본 보조사업과 효과, 성과의 보다 객관적 측정을 위한 방안 모색 필요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본 보조사업은 문화예술진흥법과 문학진흥법 등에 법적 근거를 둬
- 관련 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7조, 제39조, 문학진흥법 제3조, 제8조 내지 제11조, 제17조 등 모두 구체적으로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보호, 육성 및 문학에 대한 지원, 문학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지원, 국립한국문학관 설립, 문학 교육·학술활동 지원,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시·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보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2. 문화예술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3.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본 보조사업은 우수문학도서를 연간 선정·보급, 예술인 스스로 창작·판매·유통 촉진, 예술 정책 관련 기초자료 연구·개발, 문학 단체 지원, 문화예술 유공자 포상 등을 통한 기초예술 분야 창작역량 강화 지원 등을 목적으로 가짐
- 사업의 목적과 수혜 기관 등을 고려할 때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임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내역사업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판단됨
 - 예술창작활동 지원 사업은 문학 관련 기관 및 단체 지원을 통한 문학 창작 환경 개선이라는 거시적 목적은 동일하나, 다만 사업의 구체적 목적·지원 대상별 차별점을 고려하여 내역 사업을 구성하고 있음
 - 당초 계획한대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발생한 바, 실행행렬 제고를 위해 사업수행방식의 개선 필요
- 성과평가 결과는 비교적 양호하나 다른 지표 개발 필요
 - 재정규모에 비해 사업의 성과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여 상위목표달성에 대한 기여도가 불명확함
 - 신규번역 지원건수, 문학진흥정책위원회 개최 회수, 우수문학도서 보급 건수 등이 주요 성과평가 지표로 제시됨. 이는 전형적인 정량적 지표로 본 보조사업의 효과성을 포괄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보조사업의 목적을 감안할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민간단체 보조를 통한 사업추진 방향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 특히, 경제적 자생력이 약한 문학, 예술창작 분야에 지속적으로 창작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수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본 보조사업은 타 사업과의 중복은 확인되지 않음
 - 문학, 예술로서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며, 수준 높은 문학 및 예술은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에 이바지함



- 본 보조사업의 수혜자 중 간접 수혜자의 범위가 다소 좁다고 판단됨
 - 문학 작가와 문학 단체에 국한된 간접 수혜자의 범위는 좁음
 - 일반국민 전체로 간접 수혜자의 범위를 정한 경우 (예: 예술 분야 온라인 쇼핑몰 구축 및 운영), 그 범위 설정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빈약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보조사업의 내역사업별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적정한 사업비 규모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산출근거를 마련하여 예산규모를 설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됨
- 최근 발생한 저조한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적기 추진 여건을 고려한 지원 대상 선정, 추진 실적 미진 시 지원 취소 등 예산계획 및 사업관리 효율화 노력이 필요
 - 일부 내역사업의 사업기간과 회계연도의 불일치가 최근 낮은 실집행률의 사유로 지적됨 (예: 국립한국문학관 설립, 한민족 이산문학 교류 활성화)
 - 다만, 최근 사업기간 단축을 통한 회계연도 맞춤과 직접 사업으로의 변경 등 실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보임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본 보조사업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등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간접적 기여도를 인정할 수 있음
 - 하지만 본 보조사업이 직접적으로 해당 사회적가치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은 크다고 보기 어려움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선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본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을 갖추고 있지는 않음
 -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을 준용하여 사업자 선정을 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본 보조사업 집행과 관련하여 본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음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과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본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을 갖추고 있지는 않음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과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등의 규정에 따라 부정수급 관리를 시행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자체 적발 이력은 없으나, 지원 관련 사업 및 시설에서 비리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부정수급 방지 대책 마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자체 사업관리를 비교적 잘 수행하고 있음
 - 사업 추진 현황, 애로점 청취를 위해 담당자 간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으며,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집행 내역 점검·부정수급 방지 모니터링·정보 공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또한, 보조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보조금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내역사업별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됨

3-2 정책 제언

- 재정규모에 비해 사업의 성과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여 상위목표달성에 대한 기여도가 불명확함. 본 보조사업과 효과, 성과의 보다 객관적 측정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최근 발생하고 있는 낮은 실집행률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함
 -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사업수행방식의 개선 필요
 - 신규사업의 사업수혜자 의견 수렴 및 추진 방식 결정을 적시에 실시하여 집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회계연도 내에 실질적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기간과 회계연도가 일치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우수선수양성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1.2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4.2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5.2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5.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30.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4.0
1-5.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7.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 감축, 사업방식변경 · 동 세부사업은 2021년 ~ 23년 안에 일정 수준의 감축이 필요함 · 도쿄올림픽 비용 등 올림픽이 종료된 이후 완료소요에 대한 감축이 필요함. · 예산은 대규모로 증액되어 지원되고 있으나 성과가 충분히 달성되고 있지 못하며 재정 지원규모의 책정 타당성이 다소 미흡함 · 대한체육회가 보조자로 선정되어 운영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 수혜가능성이 없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체육관련 육성·양성사업은 여러 사업으로 흩어져서 중복 수혜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곳으로 통합하여 관리하여야 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우수선수양성지원사업은 「국민체육진흥법」 제 14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33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국가대표 훈련 지원과 선수 육성을 통해 국제대회 우수성적 거양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법적근거가 비교적 명확하다고 판단됨
- 동법 제 14조(선수 등의 보호·육성) 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한 보호와 육성을 하여야 함을 명시함
- 동법 제22조에서는 “선수와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과 “선수·체육지도자 및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간의 목적 및 목표의 연관성이 있으나 일부사업은 연계가 미흡하며 국정과제 등과 부합하지는 않다고 보임
- 전문체육 육성을 통해 세계 정상급 경기력 향상 도모라는 프로그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위사업(대한체육회지원), 세부사업(우수선수양성지원), 내역사업 간 구성이 비교적 체계적이라고 볼 수 있음
- 정부 스포츠혁신위 권고안 및 풀뿌리 체육을 기반으로 한 선진 스포츠 시스템 구축이 국가 체육정책의 큰 목표이자 과제임을 고려하여 동호인을 근간으로 한 스포츠클럽에 전문선수반을 개설하여 엘리트선수로 양성하는 등 정책적 방향에 부합하다고 보임
- 동 사업은 국가대표 및 지도자가 최적의 환경속에서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국제 스포츠무대에서 국위선양, 국가경쟁력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업으로 국가이익에 부합 목적을 가지고 있는바 국가적 차원의 지원은 타당성이 있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은 국가대표훈련지원, 선수촌운영, 후보선수육성, 청소년대표육성, 꿈나무선수육성, 한국동계스포츠육성 지원에 필요한 6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선수들의 훈련을 지원하고 선수선발과 양성을 하는 사업들로 보조사업의 구성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규모설정이 합리적이지 않음
- 국가대표훈련지원, 기관운영비는 대규모로 증액되었으나 그 근거 산정이 타당하지 않음



- ‘2019년 사업예산의 실집행률 97.7%를 달성하였고, 2017년에 100%, 2018년 88.4% 실집행률을 보인 바 계획대로 집행되었다고 하기는 어려움
- 경기력향상도, 후보선수의 국가대표 선발률로 성과지표로 사용하고 있으나 목표치를 충실하게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예산규모와 내역사업의 개수를 고려하였을 때 성과지표가 부족하다고 판단됨
 - 두 가지 성과목표의 성과달성도가 100%에 미치지 못하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성과의 목표치의 설정 근거가 미흡하며 이는 도전적이지 않아 보이며 만족도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동 사업은 ‘우수선수 양성 및 국가대표 훈련지원을 통한 국제종합대회 우수성적 달성과 국위선양 및 국가위상 제고’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그 목적을 충실하게 달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표개발을 통해 성과를 관리 할 필요가 있음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보조사업은 궁극적으로 우수한 선수와 지도자를 양성하여 국제스포츠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위한 사업으로 국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하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임
- 국민체육진흥법상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며, 국가대표훈련을 지원하고 우수선수를 양성하는 유일한 사업으로 타 사업과 유사·중복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의 1차적 수혜자는 6,000여명이 넘는 선수 및 지도자이나 스포츠를 통해 자긍심과 정체성을 고양하는 등 국민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간접 수혜자는 전 국민들이라고 할 수 있어 공공재적 성격에 충실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됨
- 2020도쿄올림픽, 2022베이징동계올림픽 등 주요 국제대회에서 대한민국 스포츠 강국의 면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엘리트 선수들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동 사업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지속적인 재정투자가 뒷받침 되어야 중장기적 효과를 볼 수 있는 전문체육 사업의 특성상 동 보조사업이 폐지되었을 경우 한국스포츠에 중장기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만큼 사업 폐지는 어렵다고 보임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사업은 2020년 기준 6개 세부사업 113,120백만원으로 2019년 99,191백만원보다 13,929백만원이 증가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비용산정 근거가 합리적이지 못함
 - 국가대표훈련지원과 선수촌운영비는 각각 9,347백만원, 3,586백만원 증가하였으나 재정규모 산출이 합리적이지 못하며 국가대표훈련지원은 집행률이 100%를 달성하지 못하여 이를 반영한 재정규모 산정이 필요함
 - 의과학 장비 및 교육지원 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지속성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므로 향후 높은 수준의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선수촌 운용비가 큰 금액으로 증액되었으나 증액의 근거가 합리적이지 않으며 지속성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므로 향후 높은 수준의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중장기 재정추계 내역이 어떤 방식으로 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객관적 합리성도 떨어져 보임
 - 21~26년까지 내부사업비용이 동일한 금액으로 추계되었음
- 동계스포츠 인프라구축의 사업 내용은 시설이용료이나 추정 금액이 정확하지 않으므로 향후 시설 사용실적에 따라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KDI에서 강원도 운영계획을 바탕으로 시설수입분을 제외한 선수들의 순수 훈련시간에 따라 산정된 시설사용료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향후 관련 종목단체의 3개 시설 사용실적에 따라 관련 종목단체 지원 금액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사회적가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려움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사업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적합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음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통합체육회)에 대한체육회는 체육대회의 개최 및 선수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유일한 단체임을 명시하고 있어 이에 근거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음
- 공모와 관련해서는 관련 지침에 공모방식,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 등을 명시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 제8조(보조사업자 공모), 제9조(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동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시행령 제12조의2(정산보고서의 검증), 기획재정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정산기준을 준수하여 보조사업을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보조금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조사업 집행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3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회계법인 정산보고서 검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제12조의3(특정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등)에 따라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대상으로 외부 감사인(회계법인)을 선정하여 단체별 회계 전반에 대한 적정성 검증 및 자문을 받고 있음
 - 해당사업의 기금관리주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현장평가단 운영, 현장점검, 만족도조사 등 보조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집행을 관리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과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보조금 반환, 정산 및 회계검사 등에 관하여 사후관리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이를 준수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판단됨
- 중요재산 보고 및 공시 등 관리를 위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8장 보조사업 사후관리),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제6장 보조사업 사후관리)을 마련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현재까지 부정수급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관리·감독을 진행 중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정산지침을 준수하여 부정수급을 점검하고 모니터링 하고 있음
 - 대한체육회 자체 예산집행지침(보조금 부정집행에 대한 책임유무 등)이 있음
 -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과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부정수급에 관한 관리를 하고 있음
- 대한체육회 운영지원 사업에 대한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사업부서는 물론 별도 감사반을 구성하여 내부 감사를 시행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부정수급 관리시스템을 적절히 구축하고 있다고 보임
 - 보조사업 완료 후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정산서류 및 회계전반에 대한 검사를 받고 있으며, 보조사업비의 불인정 기준에 위배되었을 경우 기금관리주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 등과 협의를 통해 보조금 환수조치 여부도 검토하고 있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연중 상시 지속적인 내부 감사 시행중이나 현재 적발된 건수는 없어 감사의 실효성이 확인되지 않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사업은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우수한 선수와 지도자를 양성하여 국제스포츠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성이 있는 사업으로 향후 보조금 지원은 필요하다고 보임
- 보조금 재정지원 규모가 적정하지 않고 재정지원 대비 효과성이 명확하지 않아 보조금 지원액을 일정 수준 감축할 필요가 있음
 - 도쿄올림픽 비용 등은 올림픽이 종료된 이후에 완료소요에 대한 감축이 필요함.
 - 동 사업은 2020년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증액 및 비용 산정 근거의 타당성이 미흡하며 중장기 재정추계의 근거가 합리적이지 않음
- 관리하는 성과지표가 충분하지 않으며 성과의 목표도전성 및 달성도가 미흡함
 - 지원되는 예산은 대규모이나 성과를 관리하는 지표는 2개뿐이어서 새로 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권고함

3-2 정책 제언

- 예산의 규모에 비해 관리하는 성과지표가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성과지표의 체계적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임
- 대한체육회가 보조자로 선정되어 운영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 수혜 가능성이 없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체육관련 육성사업은 여러 사업으로 흩어져서 중복수혜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곳으로 통합하여 관리하여야 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66.0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1.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5.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1.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5.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1.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 변경 ·수혜자의 범위가 명확하고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지 못한. 수혜자의 범위를 명확하고 적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본 보조사업의 성과를 정확히 측정할 지표가 미비함 ·내역사업들 중 일부는 사업방식 변경의 고려가 필요함. 예를 들어, 인문정신문화 온라인서비스 운영 내역사업의 경우 보다 광범위한 효과와 낮은 비용 추구 측면에서 기존 플랫폼(예: Youtube)의 적극적 활용을 고려 ·성과평가 결과는 비교적 양호하나, 본 보조사업의 효과성을 포괄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본 보조사업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를 둬
 - 하지만, 본 보조사업과 직접성, 구체성 등을 고려하면 위 법률이 강한 법적 근거로 보기는 어려움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보조사업은 지역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 및 인문가치 확산, 장년층의 인문 멘토링, 인문정신문화 향유 확산 환경 조성 등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은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및 자발적인 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정신문화 향유의 공간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본 보조사업은 본 보조사업은 지역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 및 인문가치 확산, 장년층의 인문 멘토링, 인문정신문화 향유 확산 환경 조성 등의 목적을 가짐
 -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총 4개의 내역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그 내역사업은 대체적으로 바람직하게 설정된 것으로 보이나,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인문정신문화 온라인 서비스 내역사업(예시: 비용의 절약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존 플랫폼의 적극적 이용)은 사업 방식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내역사업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판단됨



- 계획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노력이 보이며, 당초 계획한대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음

○ 성과평가 결과는 비교적 양호하나 다른 지표 개발 필요

- 인문, 정신문화 관련 프로그램 참여자 수 등이 주요 성과평가 지표로 제시됨. 이는 전형적인 정량적 지표로 본 보조사업의 효과성을 포괄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함
- 또한 성과지표의 목표 설정에 보다 객관적인 제시가 필요함. 예를 들어, 인문, 정신문화 관련 프로그램 참여자 수 (천명) 성과지표의 경우 '18년 328 (천명) 명에서 '19년 330 (천명) 명으로 목표를 유지함. 이는 '18년 목표 달성도가 102%임을 감안하여 '19년에 의도적으로 그에 맞춘 목표를 설정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함

○ 내역사업들 중 일부는 사업방식 변경의 고려가 필요함

- 예를 들어, 인문정신문화 온라인서비스 운영 내역사업의 경우 보다 광범위한 효과와 낮은 비용 추구 측면에서 기존 플랫폼(예: Youtube)의 적극적 활용을 고려할 수 있음. 현재도 이러한 기존 플랫폼 이용 현황이 존재하나 그 실적이나 홍보 등이 부족하다고 보임

* 인문360 동영상 발행실적('15.11.~'20.1) [자료: 부처 제공]

매체	건수	동영상 게시방법
유튜브	338	직접 업로드
페이스북	72	직접 업로드+유튜브 링크
네이버포스트	79	유튜브링크+네이버TV링크
네이버TV	263	직접 업로드
인스타그램	16	직접 업로드
계	768	

- 그리고, 인문학가치포럼의 경우 행사성 지출의 성격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또한, 국제적 포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내외 인문석학, 인문학 기관 등과의 참여 및 네트워크 구축 등 행사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여야 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보조사업의 목적을 감안할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지자체별 추진 또는 민간단체 보조를 통한 사업추진 방향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 본 보조사업과 유사, 중복성을 가진 타 사업은 확인되지 않음



- ‘인문정신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통해 공동체를 회복하고 사회의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의 사업으로 본 보조사업에 대한 수요가 사업을 연장해야 할 만큼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됨
- 수혜자의 범위가 명확하고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지 못함
 - 직접 수혜자의 경우에는 비교적 명확하고 적정하게 설정한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간접 수혜자의 수혜내용이 다소 추상적이며, 본 보조사업으로 인해 그 편익(수혜)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의 설명이 부족함. 더욱이, 간접 수혜자의 규모도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보조사업의 내역사업별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적정한 사업비 규모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산출근거를 마련하여 예산규모를 설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최근 다소 낮은 실집행률이 문제가 됨 (’18년 89.1%, ’19년 90.9%). 사업기간이 차년도 2월까지 설정하여 당해연도 실집행률이 다소 낮아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사업기간을 연도 말까지 하여 실집행률 제고 필요
- 최근 발생한 저조한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적기 추진 여건을 고려한 지원 대상 선정, 추진실적 미진 시 지원 취소 등 예산계획 및 사업관리 효율화 노력이 필요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본 보조사업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등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간접적 기여도를 인정할 수 있음
- 하지만 본 보조사업이 직접적으로 해당 사회적가치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은 크다고 보기 어려움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선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본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을 갖추고 있음
 - *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보조사업자 공모 공고
 - 그 외에,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사업자 선정을 하고 있음
 - 보조사업자선위원회 구성, 평가 항목 및 배점, 지원 내용 등이 규정되어 있음.
 - 보조사업자선정 기준, 선정위원회 구성, 중복수급 확인·점검, 보조금 교부조건 및 교부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본 보조사업 집행과 관련하여 본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음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과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에 대해 별도 계정을 계리하고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함.
 -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등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관리함
 - 매년 사업이 종료되면 보조사업자로부터 회계감사를 완료하고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본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을 갖추고 있지는 않음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과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의 규정에 따라 부정수급 관리를 시행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자체 적발 이력은 없으나, 지원 관련 사업 및 시설에서 비리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부정수급 방지 대책 마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자체 사업관리를 위한 노력이 보임
 - 이나라도움 시스템 상시 점검, 보조금 정산, 사업 담당자 워크숍, 외부기관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보조사업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를 둬
 - 하지만, 본 보조사업과 직접성, 구체성 등을 고려하면 위 법률이 강한 법적 근거로 보기는 어려움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보조사업은 지역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 및 인문가치 확산, 장년층의 인문 멘토링, 인문정신문화 향유 확산 환경 조성 등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본 보조사업의 내역사업별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적정한 사업비 규모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산출근거를 마련하여 예산규모를 설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됨
- 수혜자의 범위가 명확하고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지 못함
 - 직접 수혜자의 경우에는 비교적 명확하고 적정하게 설정한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간접 수혜자의 수혜내용이 다소 추상적이며, 본 사업으로 인해 그 편익(수혜)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의 설명이 부족함. 더욱이, 간접 수혜자의 규모도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3-2 정책 제언

- 최근 발생한 저조한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적기 추진 여건을 고려한 지원 대상 선정, 추진 실적 미진 시 지원 취소 등 예산계획 및 사업관리 효율화 노력이 필요. 특히, 최근 발생한 저조한 실집행률이 사업기간을 차년도 2~3월까지 설정함에 따라 발생하고 있으므로, 초기에 사업을 착수하고 연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사업 관리 효율화 노력이 필요
- 내역사업들 중 일부는 사업방식 변경의 고려가 필요함
 - 예를 들어, 인문정신문화 온라인서비스 운영 내역사업의 경우 보다 광범위한 효과와 낮은 비용 추구 측면에서 기존 플랫폼(예: Youtube)의 적극적 활용을 고려할 수 있음
- 성과평가 결과는 비교적 양호하나 다른 지표 개발 필요
 - 인문, 정신문화 관련 프로그램 참여자 수 등이 주요 성과평가 지표로 제시됨. 이는 전형적인 정량적 지표로 본 보조사업의 효과성을 포괄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함
- 수혜자의 범위를 명확하고 적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사업명	전국(소년)체전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5.4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8.6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6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1.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30.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3.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6.8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4.4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4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1.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의 정상추진을 제안함 ·재정 지원의 근거가 명확하며 재정 지원규모의 책정 타당성이 있음. 다만, 사업수행 기간이 장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과에 대한 관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임 ·동 사업은 2020년 예산이 증가한 만큼 성과목표를 신중히 검토하여 사업의 성과를 제고 할 수 있는 지표 설정 및 성과관리 제도 개선이 필요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전국(소년)체전 지원사업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1항, 제22조 제1항 2호·3호, 제3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2호, 8호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바 법적근거가 비교적 명확하다고 판단됨
- 동법 제18조 1항에 따르면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고 명시함
- 동법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1항 2호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이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에 사용될 수 있으며 1항 3호에는 선수와 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음을 규정함
- 동법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통합체육회) 1항에는 통합체육회를 설립하여 체육진흥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함

제33조(통합체육회) ①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합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8. 2. 29., 2009. 3. 18., 2014. 1. 28., 2015. 3. 27.>

1. 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
3.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 동법 시행령 제23조(국민체육진흥계정의 사용범위)에는 국내외 체육대회와 그 관련 행사, 경기단체의 운영·지원을 위해 기금이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됨
-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간의 목적 및 목표의 연관성이 비교적 뚜렷하고 동 사업은 국정과제 72번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와 간접적으로 연계가 있다고 판단됨
- 전문체육 육성을 통해 세계 정상급 경기력 향상 도모라는 프로그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위사업(전문체육육성 기반구축), 세부사업(전국(소년)체육대회지원), 내역사업 간 구성이 체계적이라고 볼 수 있음



- 동 사업은 공공체육시설 확충(전국체전 시설건립)에 따라 모든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과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국민들의 체전 경험으로 참여 동기가 강화된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국정과제(72.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됨
- 전국체육대회개최로 도로정비 및 지역민들의 체육시설 활용이 가능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앞당기게 하는 등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정책적 방향에 부합하다고 보임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은 전국(동계)체전지원, 전국소년체전지원, 전국체전시설건립으로 비교적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2019년 사업예산의 실집행률 99.9%를 달성하였고, 2017년에 100%, 2018년 99.5% 실집행률을 보인 바 계획대로 집행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전국체전신기록수, 경기력성취율을 성과지표로 사용하고 있으나 목표치를 충실하게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 사용하고 있는 성과지표는 사업의 성과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으나 목표치 도전성이 높아 달성하지는 못하고 있어 이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사용하고 있는 성과지표는 우리나라의 국제 스포츠 경쟁력(2012 런던올림픽 5위, 2016 리우올림픽 8위, 2018 평창동계올림픽 7위 등)으로 미루어볼 때 성과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여 향후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동 사업은 전국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하여 지역의 우수 선수를 발굴하여 국가대표로 육성함으로써 전문체육을 육성시키고자 하는 상위 성과목표 달성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음
- 동 사업은 지역홍보 및 경제 활성화, 지역민 공동체 의식 강화 등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일반국민들의 전국체전 경기관람을 통한 스포츠 체험기회 제공 및 지역 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생활체육 참여기회 제고 등 지역주민들의 체육활동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국가 스포츠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스포츠를 통한 국민 대통합 달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공성이 있는바 보조금 지원을 통한 사업수행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 동 사업은 국내 유일의 엘리트 종합체육대회인 전국체육대회 개최를 통해 우수선수로서의 조기 발굴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타 사업과 유사·중복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의 1차 수혜자는 대한체육회와 각종 종목단체, 체육인들이지만 지역주민들이 체전을 통해 체육참여 동기가 향상되고 일반국민들이 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체전을 참가하는 등 관련 수혜 범위는 비교적 광범위하여 공공재적 성격에 충실한 사업이라고 판단됨
- 전국체전은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 한 국내 유일의 종합체육대회로, 국제 수준의 경기력 향상 및 각종 국제대회(하계아시안게임, 동·하계올림픽 등)성공 개최의 기반이 될 수 있으며 잠재력 있는 우수선수를 발굴 및 육성하고 지방체육 활성화등의 역할을 하는 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폐지되었을 경우 우수선수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며 경기력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또한 국제대회 우수성적 달성과 대한민국의 스포츠 위상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폐지 시 발생 할 문제는 크다고 판단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사업은 비교적 재정지원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됨. 17년부터 19년까지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액되고 2020년 예산이 증액되었으나 지원의 근거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2020년기준 3개 세부사업의 예산은 32,595백만원으로 2019년 31,727백만원보다 868백만 증액되었고 증액내역은 방송중계지원과 전국체전시설건립사업임
- 중장기 재정추계 내역이 어떤 방식으로 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음
- 민간경상보조 및 자치단체경상보조는 100%정보보조를 받고 있으나 광고, 수익사업 등 자체재원마련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대회 방송 중계 확대 및 비인기종목 관심 제고 등의 효과를 제고해 볼 필요가 있음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과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짐
 - 2018년 익산 전국체전(익산시,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은 1,345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생산유발액 964억원, 부가가치유발액 381억원)와 1,324명의 고용유발효과를 나타냈다고 분석하였음
 - 2개 전국대회로 선수단과 임원, 선수단 가족, 관람객 5만4,885명이 숙박을 하며 345억원 지출하여 지역경제에 공헌하였다고 보임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사업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적합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음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통합체육회)에 대한체육회는 체육대회의 개최 및 선수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유일한 단체임을 명시하고 있어 이에 근거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음
 - 동 사업은 보조금법 제16조에 따라 동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단체인 대한체육회와 지자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 공모와 관련해서는 보조금법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제2항 제1~2호에 따라 동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단체가 존재하므로 공모에 해당되지 않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동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시행령 제12조의2(정산보고서의 검증), 기획재정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정산기준을 준수하여 보조사업을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보조금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조사업 집행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3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회계법인 정산보고서 검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제12조의3(특정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등)에 따라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대상으로 외부 감사인(회계법인)을 선정하여 단체별 회계 전반에 대한 적정성 검증 및 자문을 받고 있음
 - 해당사업의 기금관리주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보조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과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 정산 및 회계검사 등에 관하여 사후관리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준수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보임
- 중요재산 보고 및 공시 등 관리를 위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8장 보조사업 사후관리),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제6장 보조사업 사후관리)을 마련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현재까지 부정수급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관리·감독을 진행 중임
 -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과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부정수급에 관한 관리를 하고 있음
 - 대한체육회 자체 예산집행지침(보조금 부정집행에 대한 책임유무 등)을 통해 부정수급 관리를 하고 있음
- 대한체육회 자체 감사반을 구성하여 내부 감사 시행 등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부적정 집행 등을 점검하는 등 적절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보조사업 완료 후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정산서류 및 회계전반에 대한 검사를 받고 있으며, 보조사업비의 불인정 기준에 위배되었을 경우 기금관리주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 등과 협의를 통해 보조금 환수조치 여부도 검토하고 있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대한체육회 자체 감사반 운영 및 외부 감사인(회계법인)의 회계 검증, 위탁정산, 국민체육진흥공단 현장평가단 구성(대학교수, 시민모니터링단 등) 및 현장점검 등 연중 상시 지속적인 점검 중이고 현재 적발된 건수는 없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기관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임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사업은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국가 스포츠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스포츠를 통한 국민 대통합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성이 있는 사업으로 향후 보조금 지원은 필요하다고 보임
- 보조금지원 재정규모가 비교적 적절하고 성과목표는 달성하고 있지 못하나 성과목표치가 도전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17년부터 19년까지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액되다가 2020년 예산이 증액되었으나 증액의 근거가 비교적 타당하다고 판단됨
 - 민간경상보조 및 자치단체보조는 100%정액보조를 받고 있으나 자체재원마련 방안을 강구하여 비인기종목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3-2 정책 제언

-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예산은 지속적으로 투입되나 투입에 대한 효과성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필요함
- 향후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사업 수행자들의 자체재원마련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지역문화예술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1.9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7.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1.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1.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4.9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4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 변경 ·재정규모에 비해 사업의 성과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위목표달성에 대한 기여도가 비교적 명확함 ·성과평가 결과는 비교적 양호하나 보조사업의 효과성을 포괄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함 ·보조금 지원금 수혜에 대한 책임감과 각 단체의 자생력 증진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자부담 비율을 높이는 방향 모색 필요. 단 예술의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본 보조사업은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지원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에 법적 근거를 둠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36조와 지역문화지원법 제3조 및 제4조는 국가와 지자체에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됨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있는 조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 본 보조사업의 목적은 문화예술 지원정책 협력, 조정 협의체를 운영하여 문화예술지원정책 효율성, 효과성 제고하고 지역 기반 공연예술 생태계를 공고히 하도록 예술 단체를 지원하고 공연장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지역 공연예술 창작 역량 강화 및 지역민 문화향유권 확대에 있음
 - 지역의 문예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지역문화 예술 및 문화향유권 진흥할 수 있음
 - 국가는 문화예술진흥, 지역문화진흥,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해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고르게 높일 책무가 있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내역사업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판단됨
 - 당초 계획한대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음
 - 계획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노력이 보임



- 성과평가 결과는 비교적 양호하나 다른 지표 개발 필요
 - 재정규모에 비해 사업의 성과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위목표달성에 대한 기여도가 비교적 명확함
 - 본 보조사업의 효과성을 포괄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함
 - 성과지표의 목표 설정에 있어서의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지역공연장 평균가동률 지표의 경우 '18년의 목표는 59.2%에서 '19년의 목표는 53.9%로 감소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보조사업의 목적을 감안할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지자체별 추진 또는 민간단체 보조를 통한 사업추진 방향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 본 보조사업과 유사, 중복성을 가진 타 사업은 확인되지 않음
- 동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지역 문화예술인과 예술인단체, 그리고 작은 비용으로 각종 문화예술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지역주민이라 볼 수 있음
 - 발달된 문화자원은 관광 및 문화산업 자원으로도 사용가능해 지역경제 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게 됨. 뿐만 아니라 지방의 문화역량 강화는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는 점에서 효과의 광범위성도 어느 정도 인정된다 하겠음
 - 하지만, 지역문화예술지원의 간접수혜자를 지역주민으로 상정하고 사업의 구상하고 진행할 경우, 본 보조사업의 수혜자 범위가 좁아지고 사업의 효과성도 낮아질 수 있음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보조사업의 내역사업별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적정한 사업비 규모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산출근거를 마련하여 예산규모를 설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됨
 - 최근 3년 동안 실집행률은 높게 잘 유지되고 있음
 - 운영비 비중의 적절성과 사업비 비중을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 필요
- 지원단체에 대한 자부담 비율 선정 고려
 - 자치단체별로 '18년 이후 비수도권의 자부담을 확대하여 수도권, 비수도권 동일하게 자부담율을 운영함



- 그러나, 부처 제출자료에 의하면 '19년 기준 서울, 경기 등 일부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원 단체의 자부담율이 낮음
- 보조금 지원금 수혜에 대한 책임감과 각 단체의 자생력 증진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자부담 비율을 높이는 방향 모색 필요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본 보조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등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간접적 기여도를 인정할 수 있음
- 하지만 본 보조사업이 직접적으로 해당 사회적가치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은 크다고 보기 어려움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선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본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인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운영지침을 갖추고 있음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문예진흥기금 보조금관리 규정,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운영지침, 지역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등에 의거하여 보조사업자 선정을 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본 보조사업 집행과 관련하여 본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을 갖추고 있음
 - 문예진흥기금 보조금운영관리규정,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음
 - 조금 편성 불가항목을 두어 보조금 적정집행점검하고, 1천만원 이상사업에 대한 공시의무로 보조금 투명성 제고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본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됨
 - 문예진흥기금 보조금운영관리규정과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등의 규정에 따라 부정수급 관리를 시행하고 있음
 - 예술위원회에서는 '19년 문예진흥기금 부정수급 점검계획을 통해 17개 시·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145개 예술단체의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실시함
 - 최근 3년간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자체 적발 이력은 없으나, 지원 관련 사업 및 시설에서 비리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부정수급 방지 대책 마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자체 사업관리를 위한 강화된 노력이 필요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보조사업의 목적을 감안할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지자체별 추진 또는 민간단체 보조를 통한 사업추진 방향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 동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지역 문화예술인과 예술인단체, 그리고 작은 비용으로 각종 문화 예술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지역주민이라 볼 수 있음
 - 지역문화예술지원의 간접수혜자를 지역주민으로 상정하고 사업의 구상하고 진행할 경우, 본 보조사업의 수혜자 범위가 좁아지고 사업의 효과성도 낮아질 수 있음

3-2 정책 제언

- 지원단체에 대한 자부담 비율 선정 고려가 필요함.
 - 보조금 지원금 수혜에 대한 책임감과 각 단체의 자생력 증진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자부담 비율을 높이는 방향 모색 필요. 단 예술의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재정규모에 비해 사업의 성과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위목표달성에 대한 기여도가 비교적 명확함
 - 성과평가 결과는 비교적 양호하나 다른 지표 개발이 필요함. 본 보조사업의 효과성을 포괄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지역신문발전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58.4
1. 보조사업의 타당성	45.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5.2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5.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18.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5.8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3.4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2.9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 감축, 사업방식 변경 · 본 세부사업은 2021년 ~ 23년 안에 일정수준의 감축과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함 · 본 사업은 사업의 목적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며 성과지표가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움. 따라서 예산 감축과 사업방식 변경으로 판정함 · 성과지표가 만족도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지원 신문사 평균 매출액도 본 사업과 연관된 지표는 아니기 때문에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움. 다만 「지역신문지원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제로 사업목표를 재설정하고 지역신문발전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사업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또한 세부 사업방식 변경에 따라 2020년 예산 기준으로 일정 수준의 감축이 필요함 · 중장기적으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 개발을 권고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의 기획취재지원사업, 지역신문제안사업, 지역민참여보도지원, 소외계층구독료지원, 지역신문활용교육지원 등 5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며,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음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6조(기금의 지원) 제1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신문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호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2호 광고 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3호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 4호 지배주주 및 발행인·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지역신문은 전년도 경영실적·재무상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신문 중 편집자율권 및 재무건전성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신문에 대하여 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4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대상 지역신문의 발행주기에 따라 서로 다른 지원기준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항은 ‘기금을 지원받은 지역신문은 지원받은 기금을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명시하고 있음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3조(우선 지원 기준) 제1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지역신문 중 위원회가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선정된 지역신문에 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호 발행인과 편집종사자 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편집에 관한 규약을 제정·시행하는 등 편집자율권을 보장하고 있을 것, 2호 기금 지원을 신청한 날 전 1년 이내에 지역신문 운영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신문사, 지배주주, 발행인, 편집인 그 밖의 임원이 제11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3호 기금 지원을 신청한 날 전 1년 동안 종사자에 대한 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미납액이 없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동법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배점기준 및 비율, 기금지원대상 선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로 명시하고 있음



- 본 보조사업의 목적은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제시되고 있음
 - 지역신문발전지원 사업의 목적은 지역신문의 디지털 저널리즘 생태계 경쟁력 강화, 지역신문의 고품격 저널리즘 구현, 지역문화 및 여론 공론장 활성화, 혁신 언론사 집중 육성 성공 모델 확산으로 제시하고 있음.
 - 다만 2020년 사업 목적이 변경되었으며, 변경사유는 ‘2020년 제6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출범과 함께 지역신문발전지원 3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목적을 지역신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지역언론의 지속가능한 생존기반 마련을 사업목적으로 변경하게 되었다’고 제시함
 - 세부 내역사업의 목적은 기획취재지원 사업은 저널리즘 품질 및 지역신문 경쟁력 제고, 지역신문제안사업은 맞춤형 지원을 통한 지역신문의 자구노력 유도, 지역민참여보도지원 사업은 지역민과 지역전문가 지원을 통한 지역 여론 다양화에 기여, 소외계층구독료지원 사업은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역신문 경영여건 개선에 기여, 지역신문활용교육지원사업은 지역신문을 활용한 NIE활성화 및 지역신문 이미지 제고 등으로 구체적이고 명시적임
- 국정과제와 연계성은 없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의 내역사업은 기획취재지원사업, 지역신문제안사업, 지역민참여보도지원, 소외계층구독료지원, 지역신문활용교육지원 등 5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수행되었음
- 성과지표는 소외계층지원사업 구독자 만족도, 지역신문활용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전년도 우선지원 신문사 평균 매출액 등 3개로 설정하였으며, 계획 대비 실적을 달성함
- 다만 성과지표가 만족도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고 나머지 지원 신문사 평균 매출액도 본 사업과 연관된 지표는 아니기 때문에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움
 - 주요 성과지표는 구독자 만족도와 참여자 만족도 등 만족도 측정이며, 우선지원 신문사 평균 매출액 지표는 본 사업과의 연관성을 설명하기 어려운 지표가 판단됨.
 - 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실효적인 성과지표가 없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어려움



- 중장기적으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본 사업의 목적과 내역사업의 필요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감축과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함
 - 본 사업의 근거가 되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은 2022년까지가 시한이기 때문에 2022년까지 국가 보조로 사업을 유지하는 타당성이 적음.
 - 2017년 보조사업평가에서도 동일한 평가결과(감축, 폐지 권고)였으며, 한시법 체계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현재로서는 특별법 시한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음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의 성격과 내역사업을 평가한 결과, 보조사업의 필요성이 높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지자체와 민간(지역신문사) 중심으로 사업이 조정되어야 함
- 타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사업은 확인되지 않으며, 내역사업의 중복성도 없음
- 본 보조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우선지원대상 신문사, 지역소외계층, 지역미디어교육 운영학교 등이며, 간접 수혜자는 지역신문 독자, 지역시민, 지역 사회복지시설, 지역 초중고교생, 지역사회 등임.
 - 수혜자가 명확하고 광범위하지만 정책효과는 크지 않아 사업의 필요성이 높지 않음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한 보조금 규모에 대한 산출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실행행률은 대체로 양호함
 - 예산의 실행행률은 2017년 95.2%, 2018년 94.7%, 2019년 96.2%로 양호함
- 내역사업별로 예산 배분 및 규모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일부 내역사업의 예산 배분 및 규모가 상대적으로 낮게 편성되어 있음.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예산으로 수행되는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내역사업 중에서 지역도민참여 보도지원, 지역신문제안사업, 기획취재지원사업 등은 예산 배분 및 규모가 상대적으로 낮게 편성되어 있음.
- 따라서 이들 내역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예산이 적정수준으로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이를 근거로 사업 예산의 조정되어야 함
- 본 사업은 「보조금법 시행령」의 기준 보조율을 적용받지 않음
 - 보조율 산정을 위한 별도의 기준 보조율은 없으며,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본 사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사업의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 16조(기금의 지원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우선지원기준)에 의거하여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 서류심사, 현장실사 등 종합적 평가를 통해 2017년 55개사, 2018년 68개 2019년 67개사를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하여 지원함
- 「지역신문발전기금 보조금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의거하여 사업자 선정 및 교부절차를 준수하고 수행함
 -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사무국과 전문위원들의 제출서류 사전검토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들의 분야별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우선지원대상사를 선정하여 발표함.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된 보조사업자중 각 세부사업별로 별도의 공모절차를 거쳐 위원회 심의후 각 사업별 보조사업자로 선정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본 사업의 보조사업만을 별도 규정이 존재함. 「지역신문발전기금 보조금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집행을 관리 및 감독하고 있음
 -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사업실적보고서 등을 통하여 사업성과 평가, 차년도 사업자 선정심의 과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지원대상자가 수행한 사업의 관리·운영결과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보조사업의 집행관리, 보조사업의 정산, 회계감사, 정산보고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정보공시 등 보조금 집행 관련 절차를 적정하게 관리 및 감독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본 사업은 관계 법령인「지역신문발전기금 보조금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부정수급을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부정수급은 1건이 적발됨
 - 2018년 외부적발 1건이 있음. 2014년 사업 종료된 프리랜서운영지원 사업과 관련, 강진신문의 보조금 횡령 등에 대한 전 편집국장 및 현 편집국장의 유죄 판결에 따라 보조금 환수 조치를 결정함. 자산관리공사에 국가채권 위탁 처리중임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보조금 지급 근거가 명확하고 관계 법령에 의해 규정되어 있음
- 본 보조사업의 목적은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제시되고 있음. 다만 2020년 사업 목적이 변경되었으며, 변경사유는 ‘2020년 제6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출범과 함께 지역신문발전지원 3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목적을 지역신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지역언론의 지속가능한 생존기반 마련을 사업목적으로 변경하게 되었다’고 제시함
- 성과지표는 소외계층지원사업 구독자 만족도, 지역신문활용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전년도 우선지원 신문사 평균 매출액 등 3개로 설정하였으며, 계획 대비 실적을 달성함. 다만 성과지표가 만족도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고 나머지 지원 신문사 평균 매출액도 본 사업과 연관된 지표는 아니기 때문에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움
- 본 사업의 목적과 내역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사업방식을 변경하고 일정 수준의 감축이 필요함
 - 본 사업의 근거가 되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은 2022년까지가 시한이기 때문에 2022년까지 국가 보조로 사업을 유지하는 타당성이 상대적으로 적음. 다만 지역신문지원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고려하여 사업목표를 재설정하고 지역신문발전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사업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사업방식 변경에 따라 2020년 예산 기준으로 예산을 일부 감축할 필요성이 있음
- 보조사업자 공모, 보조사업 집행 관리, 부정수급 방지 대책 등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외부적발 1건임

3-2 정책 제언

- 중장기적으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 개발을 권고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초등학교스포츠강사배치지원
보조유형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8.4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2.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1.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7.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4.0
1-5. 사회적가치 실현	3.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6.4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4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 변경을 제안함 ·학교 현장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 사업을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교육청으로 단계적 이관을 통한 사업방식 변경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동 사업은 교육청 재원부담 비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교육청(지자체)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여건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예산지원에 따른 성과가 명확하지 않으며 사업규모 대비 성과관리 지표가 부족함 ·학생들의 체육활동 활성화 또는 체력증진 등과 같은 정책목표와 연계된 새로운 지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학교현장과 관련된 사업이므로 중장기적으로 관할 시·도교육청에 예산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초등스포츠강사 배치지원사업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학교체육진흥법」 제13조에 근거하여 초등학교 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며 국고보조금 지급 근거는 비교적 명확하다고 할 수 있음
- 학교체육진흥법 제13조(스포츠강사의 배치)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를 배치할 수 있다고 명시함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서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간의 목적 및 목표의 연관성이 비교적 뚜렷하며 국정과제와 연관이 있음
- (프로그램) 생활체육 육성-(단위사업) 학교체육육성-(세부사업)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사업으로 사업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 동 사업은 학생체력증진, 학교체육의 활성화 등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이며 지자체의 역할이 보다 크다고 보임
- 국정과제 72-2 (초등스포츠강사 인건비 인상 등 처우개선)은 단위과제 완료를 통하여 상위목표의 달성 기여도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음
- 동 사업은 공공적 기능이 있는 바 정부의 보조 없이 민간이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임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은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 단일 사업으로 구성되어있고 초등스포츠강사 인건비 및 연수비 비용으로 지원되나 초등학생수의 감소로 인하여 초등스포츠강사 필요수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지원 규모를 재검토해야 함
-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수가 18년 1,961명, 19년 1,914명으로 감소하였음



- ‘2019년 사업예산의 실집행률 97.3%를 달성하였고, 2017년에 99.9%, 2018년 98.1% 실집행률을 보인 바 계획대로 집행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스포츠강사 수혜자 만족도, 스포츠강사 배치수를 성과지표로 사용하고 있으나 상위 목표를 충실하게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 만족도는 3년 이상 매년 90점 이상을 달성하고 있는바 지표로 수혜자 만족도를 사용하는 것은 사업의 성과를 대표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임
 - 스포츠강사 배치수의 목표는 100%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배치 수는 투입지표이므로 결과지표로 활용되기 적합하지 않음
 - 학생들의 체육활동 활성화 또는 체력증진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은 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생들의 체력 증진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족도가 높은 수준이나 아직 그 목적을 충실하게 달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상위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결과가 명시적으로 보이지 않음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초등학교 학생 대상의 체육활동은 학생들이 점차 성장해나가는 과정 가운데 필수적인 성장요소로 양질의 체육활동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정부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보임
- 초등학교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강사를 배치하여 담임교사의 체육수업 부담 경감하는 사업으로, 여타 사업과 유사·중복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의 1차적 수혜자는 인건비를 지원 받는 스포츠강사와 스포츠 활동을 수행하는 초등학교 학생 등이며 간접적 수혜자는 학부모라고 할 수 있음. 관련 수혜 범위는 명확하나 범위가 넓다고 하기는 어려움
- 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 해소와 체력 증진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공익적 성격이 있어 보조사업의 연장은 필요함. 다만 안정적으로 인원과 예산을 관리할 수 있는 관할 시·도 교육청에서 중장기적으로 예산 부담을 늘려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폐지 시 학생들의 체육활동유지와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스포츠 강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만큼 사업의 유지는 필요하다고 보임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사업은 2020년 기준 11,586백만원으로 2019년 11,817백만원보다 감소하였으나 이는 스포츠 강사 감소에 따른 금액임
 - 스포츠강사 감소수를 반영하여 재정지원 규모를 설정하고 있어 보이나 향후 사업여건을 반영하여 재정규모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 재정추계가 21~23년까지 같은 값으로 추계된 것으로 볼 때, 내역의 객관적 합리성이 떨어져 보임
- 사업의 성격상 혜택이 1차수혜자는 해당 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 학생들인 만큼 지역과 연계된 사업으로 향후 단계적으로 지역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중장기적으로 지역교육청의 예산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국고 보조율이 20% 수준이나 단계적으로 교육청 부담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청년층,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는 등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전체 참여자 중 취약계층 비율은 71.4%로 직접일자리 사업 전체 및 공공업무지원형 전체 평균보다 높은 편(취약계층 참여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사업은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과 국민체육진흥기금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17개 시·도교육청에 재원을 지원하고 있음
- 시·도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스포츠강사를 선발, 배치하고 학교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초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통해 스포츠강사 선발 매뉴얼을 하달하는 등 구체적인 선정의 근거자료가 분명하다고 판단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동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시행령 제12조의2(정산보고서의 검증), 기획재정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과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기준을 준수하여 보조사업을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보조금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조사업 집행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보조사업(내역사업)별 관련지침(정부지침, 공단, 사업별 지침 등)을 수립/준용하여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위해 보조금관리규정 및 그 관련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국민체육진흥기금 관리 주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보조금에 대한 교부→집행→정산에 관한 사항을 보조사업비관리시스템과 더불어 철저히 관리감독 하고 있으며 집행과 관련한 사항은 기금 사용 및 정산 지침에 명시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은 보조금법을 준수하며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과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부정수급에 관한 관리를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부정수급은 발견되지 않았음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와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에 근거하여 관리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7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에 따라 적발 후 조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기준에 근거하여 기금 교부결정 취소 등에 따른 반환, 기금의 정산 절차, 회계검사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 법률이 정한 중요재산 보고 및 공시 등 관리를 위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8장 보조사업 사후관리),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제6장 보조사업 사후관리)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시도교육청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자체 점검 실적이 없어 자체 점검에 대한 실효성은 확인하기 어려움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사업은 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공익적 성격이 있으며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기여한다고 보이나 국고를 통한 보조금 지급근거가 비교적 명확하다고 할 수 있음
- 보조금지원 지원규모는 비교적 적절하나 중장기적으로 교육청에서 직접 수행 할 필요가 있어 단계적으로 교육청 부담을 늘리는 것을 권고함
 - 초등학생수가 감소함에 따라 스포츠강사수도 줄 가능성이 크므로 향후 그에 맞는 재정지원액을 산정해야 함
- 중장기 재정추계 내역의 객관적 합리성이 떨어짐
- 관리하는 성과지표가 충분하지 않으며 만족도가 90점을 매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사업의 목표를 충실하게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 수혜자만족도, 스포츠강사 배치수로 성과를 관리하고 있으나 이 지표들로 학생들의 체육활동 활성화 또는 체력증진을 직접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려움

3-2 정책 제언

- 관리하는 성과지표가 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한 연계성이 미흡하여 향후 성과지표의 체계적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임
- 향후 학생 수 감소를 고려하여 중장기 재정추계를 재설시할 필요가 있음
- 사업의 직접적 수혜자는 지역이고 지역과 연계된 사업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출판산업육성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65.5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0.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1.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15.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5.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 감축 및 사업방식변경 (내내역사업 일부인 '출판유통통합시스템구축'과 '출판저작권 수출활성화'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지원' 사업에 이관) · 동 세부사업은 2021년 ~ 23년 안에 일정수준(이관대상 2개 내내역사업 2,766백만원)의 감축이 필요함.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수행하는 일부 내내역 사업들의 차별화가 필요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4조~제8조에 해당하는 출판산업 육성내용은 동 사업에서 추진하고,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6조의 4에 해당하는 사업들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지원'사업에 이관할 필요 · 다양한 내내역 사업들에 대한 전략적 조율과 고도화가 필요하며, 이월사업 규모를 줄이는 등 결산일 기준 실집행률을 높여나갈 필요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동 보조사업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및 『인쇄문화산업진흥법』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음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4조(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제6조(국제교류의 지원 등), 제7조(시설·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제8조(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 등 확충) 등은 동 보조사업과 내용적으로 관련된 정책수립의 근거는 제공하고 있으나, 보조금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제공하고 있지 않음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1조가 경비보조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동법 제16조에 따라 설치되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규정임
 -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5조 (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 (창업 및 시설·유통의 현대화 지원), 제7조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제8조 (국제교류의 지원) 등도 동 보조사업과 내용적으로 관련된 정책수립의 근거는 제공하고 있으나, 보조금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제공하고 있지 않음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및 『인쇄문화산업진흥법』이 동 보조사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국가가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 보조사업의 법적 타당성이 인정되나,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항이 명확하지 않고 지자체의 참여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

제4조(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시·도지사를 지원할 수 있다.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보조사업은 '67년부터 추진되어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음.
 - '출판산업육성지원', '출판콘텐츠 국제교류', '인쇄문화산업육성지원'의 3개 내역사업을 통해 지역서점 유통 선진화, 파주출판도시 기반시설 지원을 위한 출판산업육성지원, 국내도서전 개최 및 해외도서전 참가 등 출판콘텐츠 수출지원, 해외전시회 한국인쇄관 조성 등을 위한 인쇄문화산업 육성 등 다양한 내내역 사업들을 추진해 왔음
- 동 보조사업을 위해 집행기관 중 하나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국제도서전 참가 저작권 계약액수'와 '전자출판지원센터 이용자 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고, 해당지표에 대해서는 목표를 상회하는 실적 달성도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상기 성과지표가 다른 내역사업들을 모두 포괄하지는 않고 있어 보조지표의 개발과 제시가 필요함.
- 동 보조사업은 국정과제 67-3 및 69-5와 관련되어 있음
 - 그러나,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며 다양한 내내역 사업들이 추가·삭제되는 형태로 진행되는 바 보다 고도화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동 보조사업이 기획·추진할 필요있음.
- 또한, '19년 실행행률이 100%를 상회하고 있지만 이월도 발생한 바,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관리와 점검이 필요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보조사업의 내역사업 중 '출판산업육성지원'과 '출판콘텐츠 국제교류'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인쇄문화산업육성지원'은 대한인쇄문화협회에 지원됨.
 - 이들 지원기관을 통해 출판산업계, 관련기관 및 단체, 서점 및 일반국민에게 정책효과가 전달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간접 수혜자는 상당히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음
- 동 보조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동일 프로그램내 사업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지원'이 있는데 동 보조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동일 기관에게 예산이 지원된다는 공통점이 있음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지원' 사업의 내용이 출판산업 인프라 기반 구축과, 출판저작권 수출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구분될 수 있다고 하나, 동 보조사업 내용들이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지원'의 업무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직접 수행하는 일부 내내역 사업을 진흥원으로 이관되도록 함으로써 사업구분이 보다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 정책효과, 수혜자의 다양성 등을 고려했을 때 동 보조사업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되나 일반 독자들의 독서의 행태와 유통구조 변화, 친환경·첨단 인쇄기술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어떻게 전체 내역사업이 구성하고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개선할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음.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 예산의 대부분은 내역사업인 ‘출판산업육성지원’에 투입되고 있으나 해당내역사업의 ‘18년 불용액(,572백만원)이 발생하고 이후 이월을 통해 실집행률이 제고(98%)되었음.
 - 보조사업의 이월을 줄여 사업 기간내 집행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동 보조사업 중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지원’에 지원되는 예산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6조 및 제21조에 근거한 위탁사업으로 간주하여 보조율 100%를 설정하고 있음
- 동 보조사업의 예산규모가 200억 미만이지만,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이 추진되면서 관행적으로 예산배분이 일어날 수 있음.
 - 따라서 중장기 예산추계 제시, 사업효과성 검증, 사업추진 및 예산 관리시스템 점검 등 전반적인 사업정비가 필요함.

1-5 사회적 가치 실현(가산점)

- 장애인 접근성이 인정되는 전자책 제작이 동 보조사업을 통해 지원되고 있어 부분적으로 공공적·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도 있음.
 - 그러나 전체 사업규모에서 상당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전체 보조사업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지향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의 지침은 없으며, 부처의 일반적인 보조금 관리규정(문체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을 준용하고 있음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6조 및 제21조를 지정의 근거로 볼 수 있으나, 대한인쇄문화협회의 경우 『인쇄문화진흥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위탁하고 있으나 『인쇄문화진흥법』 제14조가 일반적인 권한의 위임규정인 한계가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동 사업은 부처의 일반적인 보조금 관리규정(문체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지원’은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등을 이행하였음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제26조에 따라 연 2회 집행점검을 받고 있으며,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1조의2에 따라 기관자체가 문체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어 집행관리에 대한 체계가 마련되어 있음
 - 다만, 대한인쇄문화협회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 사업관리를 받고 있으며 매년 보조사업자 정보공시를 이행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총사업비 중 보조금 규모가 100억원이상인 내역사업이자. 공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또한, 최근 2년간 보조사업자에 대한 점검과 함께 부정수급에 대한 교육을 수행함.
- 그러나, 이러한 관리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집중되어 있어 다른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관리 강화도 필요함.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부정수급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점검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활동으로 별도의 특별한 노력으로 보기 힘들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사업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및 『인쇄문화산업진흥법』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으며 법령의 조항들이 사업추진 근거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정부의 상위 계획과의 연관성도 인정됨
- 하지만, 과거 이월을 통해 실집행률이 달성되어온 바 이월액을 줄이고 사업기간내 집행률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재원의 전략적 배분과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함.
- 전반적으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지원되는 비슷한 사업들이 산재되어 있는 가운데, 별도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사업간 차별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3-2 정책 제언

-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내내역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 각 내내역 사업들에 대한 전략적 조율과 고도화가 필요함.
- 일반 독자들의 독서의 행태와 유통구조 변화, 친환경·첨단 인쇄기술 들의 도입 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바, 전체 사업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점검하고 중·장기적인 전략성을 가지고 동 보조사업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내내역 사업인 ‘출판유통통합시스템 구축(2,000백만원)’, ‘출판저작권 수출활성화(766백만원)’의 경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사업으로 이관하여 추진함으로써 동 사업의 내용적 차별성을 제고하고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이 경우 일정수준의 감축(2개 내내역사업(2,766백만원)의 이관)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태권도진흥재단운영(보조)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5.1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9.6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10.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1.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4.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1.6
1-5. 사회적가치 실현	3.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5.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 감축, 사업방식변경 · 동 세부사업은 2021년 ~ 23년 안에 일정수준의 감축이 필요함 · 대규모 재정투자에 비해 사업의 성과가 명확하지 않으며 실질적 수혜자에 비해 재정 규모가 과다하며 예산감축노력이 미흡함. 사업여건 변화로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동 사업은 대규모 예산지원에 따른 성과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음. 또한 17년 보조사업 결과 17년 보조사업 평가결과 사업방식 변경과 '20년부터 3년간 10%식을 감축하여 30%를 감축하는 것을 권고 받았으나 충실하게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사업의 성과를 관리 할 수 있는 지표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05년도 사업시작 후 초기 단계를 벗어난 지금의 시점에서 태권도원·태권도진흥재단의 역할과 기여도를 재점검 할 필요가 있음. 태권도 관련 단체들 및 태권도원을 유지한 전라북도, 무주군 등과 태권도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태권도원 접근성 제고, 편의시설 확충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태권도진흥재단운영지원사업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및 제 9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2항에 근거하여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 제고 및 태권도 진흥·발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원의 법적근거가 비교적 명확하다고 판단됨
- 국민체육진흥법 제 18조 2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함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및 제 9조에는 태권도 진흥을 위한 국가적 지원이 명시됨

제8조(태권도단체 및 태권도시설의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태권도단체와 태권도시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태권도공원의 조성)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원의 조성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간의 목적 및 목표의 연관성이 비교적 뚜렷하고 동 사업은 국정과제 72번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의 세부과제인 태권도 문화콘텐츠화와 직접적 연계가 있다고 판단됨
- (프로그램) 국제스포츠역량강화-(단위사업) 국제스포츠 교류활성화-(세부사업)태권도진흥재단운영(보조)지원으로 사업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위상 제고를 위한 노력은 국제스포츠계에서 우리나라 입지 및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 사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동 사업은 태권도를 소재로 하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태권도를 문화콘텐츠화하는 국정과제 내용과 연관되어 보조금 지급 목적의 타당성이 있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은 태권도진흥재단 운영, 태권도 진흥 기반조성, 태권도 복합체험시설 설치 (20년 신규사업)로 비교적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재정지원 규모가 적정하게 산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기관운영비, 진흥기반 조성을 위한 비용은 태권도 진흥을 위한 안정적 조직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하나 재정지원 규모가 적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객실료 수입 등 자체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도 있음
- 2019년 사업예산의 실집행률 94.8%를 달성하였고, 2017년에 70.1%, 2018년 95.8% 실집행률을 보인 바 연도별 실집행률의 편차가 있음
 - 2017년의 경우 건설사업비(태권도원 상징지구 조성)가 이월됨에 따라 실집행률이 낮게 나타났다고 판단됨
- 태권도원 내국인 방문객수와 외국인 방문객수를 성과지표로 사용하고 있으나 성과목표치의 타당성을 높여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지원규모 대비 성과지표가 부족함
 - 태권도원 방문객수 측정만으로 사업의 성과를 대표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여 이를 보완하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함
 - 태권도원 내국인 방문객수는 17년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전년도 실적을 고려하지 않은 목표치 설정으로 달성도만을 평가하고 있으므로 성과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성과의 목표치를 설정한 근거의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은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 제고 및 태권도 진흥·발전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나 아직 그 목적을 충실하게 달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대규모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반해 예산의 지원규모 대비 효과성은 떨어진다고 판단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사업은 국제 스포츠 역량 및 기반강화와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 제고 등의 목적으로 공공성이 확보되고 있는 바 보조금 지원을 통한 사업수행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 동 세부사업은 태권도진흥재단 임직원 인건비 및 경상비, 태권도원 운영 등을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보이며 타 사업과 유사·중복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의 1차적 수혜자는 태권도인들과 이용객들이고 간접수혜자는 일반국민들이라고 볼 수 있으나 혜택의 범위가 넓다고 보기는 어려움
- 사업이 폐지되거나 지속되지 않을 경우, 태권도원 운영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과 국가 이미지 또한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임
 - 2,475억원을 투입하여 조성한 태권도원의 운영제한, 태권도 및 우리나라의 브랜드 가치 저하에 따른 손실의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폐지는 어렵다고 보임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사업은 2020년 기준 2개 내역사업(평가대상) 19,73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태권도진흥기반조성사업의 비용 산정 근거가 미흡함
 - 태권도(원)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태권도 조사·연구·전시, 홍보·마케팅의 객관적 산출근거가 미흡하며 비용이 과다 추산될 가능성이 있어 타당성이 확보된 비용 산정이 필요함
- 중장기 재정추계 내역이 태권도원 방문객수를 전년대비 4%증가를 전제하나 이는 객관적 근거가 결여된 수치이므로 통계 산출 식에 근거한 객관적인 추계가 필요함
 - 태권도원 국내방문객수는 감소 중임
- 17년 보조사업 결과 사업방식 변경과 '20년부터 3년간 10%식을 감축하여 30%를 감축하는 것을 권고 받았으나 충실하게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예산의 변동은 주로 민간자본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사업방식 변경을 통한 예산감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 '20년도 신규로 반영된 '복합체험시설 설치' 사업 제외하더라도 '19년 대비 6.7% 감축한 것으로써 당초 권고 예산감축 목표('20년 10% 감)에는 미달
- 동 사업은 100% 국고로 정책지원되나 그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보이므로 국고보조금의 일정수준 감축이 필요함
 - 태권도원 방문객 입장료, 객실료 등 자체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이를 감안한 보조금 규모의 산정이 필요함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 경제 공헌’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사회적·문화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도자를 파견하여 태권도 교실을 개최하며, 태권도원 소개 및 수련·체험프로그램 제공하였음
- 태권도원 운영을 통한 외국인 30,943명 유치하였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제1항 등에 따라 동 세부사업의 보조사업자는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태권도진흥재단으로 지정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으로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거나 해당 보조사업의 특성상 공모방식이 적절치 않을 경우 공모 제외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음
- 보조금 교부기준 및 절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에 의거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국민체육진흥기금 회계로 관련 지침이 마련되어 있어 이에 의거 적절하게 교부절차가 진행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동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기준을 준수하여 보조사업을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보조금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조사업 집행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태권도진흥재단 자체적으로 회계 규정, 법인카드 사용규칙 등 소관예산 집행에 관한 제반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이에 따라 비교적 적절하게 관리되었다고 판단됨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현재까지 부정수급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보조사업자인 태권도진흥재단에서 감사를 실시하여 사전에 대비하고 있음
-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이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기준을 준용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의 부정수급 관련 사항을 따르고 있음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의거 부정수급심의위원회, 제재부가금 등은 중앙관서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관리주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 처리결과에 따르고 있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태권도진흥재단에서 정기·수시로 감사를 시행중이나 현재 적발된 건수는 없어 감사의 실효성이 확인되지 않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사업은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 제고 및 태권도 진흥·발전을 도모하고 국정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향후 보조금 지원은 필요하다고 보임
- 사업성과와 실질적 수혜자 대비 보조금지원 재정규모가 적정하지 않아 보조금 지원액을 일정수준 감축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은 ‘태권도진흥기반조성’관련하여 상세사업의 비용 산정 근거가 미흡함
 - 17년 보조사업 결과 사업방식 변경과 ‘20년부터 3년간 10%식을 감축하여 30%를 감축하는 것을 권고 받았으나 충실하게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중장기 재정추계 내역의 객관적 합리성이 부족함
 - 태권도 관련 단체들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태권도원 활성화 방안 마련을 통해 국고지원액을 줄일 필요가 있음
- 현재 관리하는 성과지표가 충분하지 않으며 대규모 예산이 지원되나 아직 사업의 목적을 충실하게 달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태권도원 방문객수로 사업의 성과를 설명하기는 제한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보완하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함

3-2 정책 제언

- 대규모 예산지원에 대한 타당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태권도진흥재단·태권도원의 기관 본래 목적을 충실하게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 태권도원 방문객수이외의 성과지표 개발을 통해 사업목적의 효과성을 관리하여야 함
 - 2005년도 사업시작 후 초기 단계를 벗어난 지금의 시점에서 태권도원·태권도진흥재단의 역할과 기여도를 재점검 할 필요가 있음
- 태권도진흥재단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과 태권도 관련 단체들 및 태권도원을 유치한 전라북도, 무주군 등과 태권도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태권도원 접근성 제고, 편의시설 확충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한국관광콘텐츠활성화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2.2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6.6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6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1.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1.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5.6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2.1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변경 ·관광산업의 특성상 외부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구조 ·외국인 관광객이 선형적으로 증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내역사업별로 특화된 사업내용 강구와 유치국가 다변화 전략이 필요 ·체계적인 사업집행 관리가 필요하며, 고급관광의 경우 사업개념 및 추진전략을 보다 구체화·차별화할 필요. 또한, 코로나-19 등으로 예상되는 '20년 외국인 관광객 감소에 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동 보조사업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과 『관광진흥법』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음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제3항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국민관광 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등에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 보조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추진 및 재정보조 근거를 제공하고 있음
 - 『관광진흥법』도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제1항에서 동 보조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를 제76조(재정지원) 제1항에서 보조금 지급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음
- 동 보조사업이 국정과제나 대통령 공약사항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지는 않지만 『관광진흥개발기금법』과 『관광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사업내용과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모두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 최근 한류 등에 힘입어 공연, 한식, e-스포츠 등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2020 경제정책 방향’에 한류관광을 통한 방한 관광 활성화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정부의 정책방향과의 부합성도 있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보조사업은 계속사업의 형태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하여 추진되어 왔으며 ‘한류관광 활성화(‘13~)’과 ‘전통시장관광 활성화(‘17~)’, ‘테마관광 활성화(‘00~)’, ‘음식관광 활성화(‘10~)’, ‘고급관광육성(‘19~)’의 5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한류관광활성화’ 사업은 한류콘텐츠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방한 한류관광객 160만명’을, ‘전통시장관광 활성화’는 전통시장 20개 지원을, ‘테마관광 활성화’사업은 외국인 공연관람객 113만명 유치를, ‘음식관광 활성화’는 식도락관광 체험 외래관광객 비율 75% 달성을, ‘고급관광육성’은 방한 고급관광객 47만명 유치를 ‘19년도 사업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들의 목표치는 과거 3개년 평균치 등을 고려하여 설정되었음
- 연도별 한류관광객과 음식관광객은 증가추세에 있어 동 보조사업의 효과성을 입증하고 있으며 외국인 공연관람객 수는 대상국 다변화 등에 힘입어 ‘19년부터 회복세임(132만명)



연도	2015	2016	2017	2018
한류 관광객 수(명)	1,018,837	1,362,104	1,426,926	1,427,260
음식 관광객 수(명)	6,258,570	8,793,329	7,761,411	11,142,940
상설공연 관광객 수 (명)	1,523,380	2,630,137	1,078,918	1,045,475

- 성과지표 중 ‘한국선택시 고려요인중 ‘K-POP/한류스타 팬미팅 등을 경험’ 비율(‘19년 목표 9.7%), ‘외국인 공연관광객 수’(19년 목표 113만명), ‘외래관광객 주요 참여활동 중 식도락관광 비율’ (‘19년 목표 57.3%)의 경우 ‘19년에 새로 도입된 만큼 추후 달성여부 확인을 통해 동 보조사업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보조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는 동일 프로그램 내 ‘MICE산업 육성 지원’과 ‘의료웰니스 관광 육성’ 사업이 있음
 - MICE산업은 국제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 등을 포괄하고 있어 일반적인 해외관광객 유치와 차별화가 된다고 볼 수 있음
 - ‘의료 및 웰니스 관광 육성’ 사업의 경우 동 보조사업의 내역사업인 ‘고급관광육성’과 중복되지 않도록 내용의 차별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동 보조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한국관광공사 및 지자체의 사업을 통해 지원받는 관광업계 및 해외관광객 등임.
 - 증가하는 해외 관광객들의 소비로 국내 내수진작이 간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간접적인 수혜자를 소매·숙박 업소 등을 하는 운영하는 일반국민으로 넓혀서 추산할 수 있음
- ※ ‘18년 기준 방한 고급관광객 수(1일 평균소비액 \$1,000 이상 관광객) : 43만명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의 5개 내역사업 중 ‘전통시장관광활성화’ 등 민간경상보조 형태의 내역사업은 보조율 100%로 추진되고 있으며, ‘한류관광활성화’ 중 자치단체경상보조는 보조금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라 보조율 50%로 추진되고 있음
- ※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1(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65. 관광자원 개발 50%



- 동 보조사업에 대한 ‘26년까지의 중장기 추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외국인 관광객 증가 추세(연 5%)증가를 가정하고 지원물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산되고 있음.
- 그러나 관광객 유치가 대외적 여건, 날씨 등에 많은 영향을 받는 만큼 사업고도화가 필요함.
- 특히, 테마관광 활성화 내 스포츠(스키)관광 활성화 사업도 동계 온난화 등을 고려한 집행 전략이 필요하며, 코로나-19 등의 여파도 대비할 필요가 있음

1-5 사회적 가치 실현(가산점)

- 동 보조사업을 통해 특별히 실현되는 사회적 가치는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의 지침은 없으며, 부처의 일반적인 보조금 관리규정(문체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을 준용하고 있음
- 동 보조사업 중 지자체 공모 사업의 경우, 별도 공모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준용하였으며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함.

※ 한류관광 활성화(지자체 공모, 총 2억원) 사업 공모 개요

- 선정절차 : 선정계획 공고 → 지자체 사업계획 제출·발표 → 심사위원회 평가 → 지자체 선정
- 선정기준 : 지역관광 여건 및 사업계획, 관광 연계 콘텐츠, 지자체 의지 등 종합적 평가
- 선정위원회 구성 : 학계 3명, 업계 2명 등 총 5명
- 교부기준 : 국비, 지방비 5:5 매칭
- 교부절차 : 선정 지자체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검토 후 교부결정 및 통지

- 동 보조사업 중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해 설립되고, 동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추진체계 등이 갖추어진 한국관광공사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임.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동 사업은 부처의 일반적인 보조금 관리규정(문체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을 관리함.
- 동 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에 따라 회계법인의 회계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사업별 보조금 교부결정 공문 내 교부결정통지서를 통해 교부조건, 사업비 환수 등의 운영지침을 하달하고 있음
- 또한, 보조사업자의 사업 추진현황 전반을 점검*한 이후 하반기 보조금 교부하는 등 중간관리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 중임

* 공연관광 중간보고(7.23) 이후 하반기 보조금 교부 등)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동 사업은 보조사업자인 한국관광공사 및 지자체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므로, 구조적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할 우려가 적으며 실제 적발 사례가 없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추진상황을 수시점검하고, 사업 중간보고를 통해 전체적인 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등 일반적인 수준의 사업관리를 하고 있으며, 특별히 차별화되는 자체 사업관리 노력은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보조사업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과 『관광진흥법』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으며 법령의 조항들이 사업추진 근거와 재정지원(보조 및 보조금 지급)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음
- 동 보조사업이 국정과제나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추진되지는 않지만 ‘2020 경제정책 방향’에 한류관광을 통한 방한 관광 활성화 관련 부분과 연계되어 상위 정책과의 정합성은 인정됨
- 지자체 연계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사업포기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대외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함
- 신규 사업평가 지표들이 ‘19년 도입된 만큼 해당지표에 대한 점검을 통해 사업성과를 추적 조사할 필요가 있음.

3-2 정책 제언

- 다양한 내역사업들이 추가되는 형태로 사업이 확대되어 왔는데, 분야별로 외국인 관광객이 선형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내역사업별로 특화된 사업내용 강구가 필요함.
- 특히, '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폭적인 외국인 관광객 감소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하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전략수립이 필요함.
- 동 보조사업의 내역사업인 ‘고급관광육성’의 경우 사업이 타킷팅 하는 대상과 전략을 보다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음.
- 동일 프로그램내 타 보조사업인 ‘의료 및 웰니스 관광 육성’ 사업과의 고급관광 홍보, 연계 관광상품화 등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면이 있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4.5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5.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5.2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4.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7.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5.8
1-5. 사회적가치 실현	3.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9.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1.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사업방식변경을 제안함 · 재정규모에 비해 사업의 성과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여 상위목표달성에 대한 기여도가 불명확함 · 동 사업은 2020년 예산이 증가하였으며 기관이용자의 정규서비스 종결 후 단도박률과 도박중독 문제군 이용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다만, 기관이 설립된 지 비교적 오랜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인지도가 여전히 낮으며 도박문제에 대한 예방과 치유가 되었다는 가시적인 성과는 확인하기 어려움 · 중장기적인 재정추계를 객관적 근거에 의해 실시하여야 하며 상위목표달성을 위해 성과지표를 새롭게 개발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기관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권고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지원은 「사행사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 14조 5항, 제 14조의 3에 근거하여 사행사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건전한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조금 지급의 법적근거가 비교적 명확하다고 판단됨
- 동법 제14조(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설립하는 사유와 주요 사업내용(도박문제 예방과 치유에 관한 사항)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 동법 제14조 제5항에는 정부와 위원회는 센터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 동법 제14조의3(국고보조)에는 정부는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와 관련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간의 목적 및 목표의 연관성이 비교적 뚜렷하나 국정과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는 힘들
- (프로그램) 생활체육육성-(단위사업) 도박문제예방치유-(세부사업)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원으로 사업체계가 구성되어있으며 내역사업은 도박문제 예방홍보, 도박중독치유재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운영으로 구성됨
- 동 사업은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와 관련한 사업으로 외부효과와 공공적 기능이 있는 바 정부의 보조 없이 민간이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임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은 도박문제 예방홍보, 도박중독치유재활, 한국도박문제 관리센터 운영으로 비교적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일부 사업비 산정의 객관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보임



- 도박문제 인식주간 및 뉴미디어운영비, 도박문제 연구 및 국내외 교류의 사업비 산정 규모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음
- 사업비 보다 경직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 (2020년 약 74.9%)이 큼
- 도박중독치유정보시스템 운영비의 증액근거는 미흡함
- ‘2019년 사업예산의 실행행률 94.7%를 달성하였고, 2018년에 95.5%를 보인 바 비교적 계획대로 집행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집행률 100%를 달성하지는 못함
- 예산의 규모는 매우 크나 기관인지도와 문제도박자 이용인원만으로 성과를 관리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음
- 사업의 목표는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목표달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부족하다고 보임
- 기관이 설립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으나 기관인지도가 여전히 낮다고 판단됨
- 동 사업은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를 목적으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지원하고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센터의 이용률이 증가하였다고는 볼 수 있으나 아직 그 목적을 충실하게 달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기관의 인지도가 높지 않으며 도박중독이 예방되었거나 문제도박자가 줄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상위의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 못하였다고 판단됨
- 전체 도박중독 문제군 대비 이용률은 소폭 증가하였음
- 투입지표와 산출지표보다는 결과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사행사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문제와 관련하여 예방·치유·재활 등의 사업과 관련한 국가사무를 대신 수행하고 있는 바 그 조직운동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 전국민을 대상으로 도박문제에 대해 종합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으로 여타 사업과 유사·중복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의 1차적 수혜자는 도박문제자, 가족들 및 관련된 기관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도박으로 인한 폐해로부터 일반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련 수혜 범위는 비교적 광범위하여 긍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고 공공재적 성격에 충실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됨



- 현재 도박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대체할 만한 기구가 없으며 보조사업 폐지 시 도박으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으므로 사업 폐지는 어렵다고 보임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사업은 19년 예산 대비 2,490백만원 증액되었고 재정지원 규모가 비교적 적정하게 산정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주요 증액사업은 '19년 사회서비스일자리 사업을 통해 발굴한 53명의 6개월 인건비 추가 확보분(1,282백만원)과 도박문제 예방치유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센터 추가 설치와 신규 일자리 발굴(503백만원) 등에 관한 내역임
- 다만, 도박문제 인식주간 및 뉴미디어운영비, 도박문제 연구 및 국내외 교류 등 각 사업별 산정비용의 세부적 내용이 합리적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음
- 정보시스템 구축비용 등은 한시적인 비용이므로 향후 감축의 여지가 있음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고 볼 수 있음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회복자 인턴 채용'을 통해 도박중독 회복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법적근거(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사업자 선정절차를 거치지 않음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14조에 의거하여 도박문제 예방, 치유 재활을 위해 설치된 특수목적 법인이며, 동법 14조의3에 따라 국고보조(민간경상보조)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회계규정을 기본으로 하며, 당해 연도 사업집행 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예산집행지침을 수립하여(기재부 지침 기준) 보조사업 집행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보조금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조사업 집행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기재부의 당해 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등 정부의 예산집행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주요 항목별 비목별 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집행의 적정성을 유지함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회계규정,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집행을 적절하게 하고 있다고 판단됨
- 보조사업자를 위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재부의 당해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등 정부의 예산집행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정산과 반환 절차를 거침
 - 보조사업자의 결산은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감사하여 집행의 오류를 검토하고 정산을 수행함
- 정보공시와 관련하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임직원 행동강령이 있으며, 그 외의 경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기준에 따르고 있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기재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항목별로 정기공시, 수시공시 등을 하고 있으며, 매년 기재부에서 공시점검을 집행하여 불성실공시 등에 대처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현재까지 부정수급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관리·감독을 진행 중임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 집행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수시 모니터링 하여 부정수급 관리를 적절히 하고 있다고 보임
 - 부정수급 발생 시 보조금 회수 및 차기년도 보조사업 선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하여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보조금 집행의 전 단계에서 보조금관리담당자가 부정수급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자체 사업관리 노력을 비교적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임
 - 보조금 집행의 계획부터 완료시점 전 단계에서 담당자들이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연 중 2회 외부회계감사를 통해 보조금 집행에 관한 모든 내역을 전수조사 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사업은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외부효과가 크며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므로 향후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임
- 보조금지원 재정규모가 비교적 적정하나 일부 사업비 산출 근거가 타당하지 않음
 - 동 사업은 2020년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인건비 추가 확보분과 도박문제 예방 치유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센터 추가 설립비가 주요 증가분임
 - ‘도박문제 예방홍보’ 등 일부 내역사업의 각 세부사업들에 대한 산출근거가 타당하지 않음
- 예산대비 관리하는 성과지표가 충분하지 않으며 목표치 설정도 보다 도전적일 필요가 있음
 - 기관의 인지로도 성과를 관리하고 있으나 기관 설립년도 대비 목표치가 낮게 설정되었다고 판단됨
 - 사업의 목표는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그 목표달성에 기여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3-2 정책 제언

- 예산의 규모에 비해 관리하는 성과지표가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성과지표의 체계적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임
 - 도박 문제의 예방 및 치유와 관련한 지표가 개발될 필요가 있음
- 직접적인 성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려운 사업임을 감안하더라도 예산지원의 효과성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 기관의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기관 만족도 및 인지도 제고는 계속적 관리가 필요함
- 국회권고 사항과 마찬가지로 도박중독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를 위해 각 집단의 소관부서와 지속적인 협업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62.6
1. 보조사업의 타당성	47.6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4.6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5.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4.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4.0
1-5.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5.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1.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사업방식 변경 · 성과평가 결과는 비교적 양호하나 추가적 지표 개발 필요. 본 보조사업의 효과성을 포괄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함. 예를 들어, 번역 지원한 도서의 판매 실적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수혜자의 범위가 명확하고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지 못함. 간접 수혜자의 범위가 좁음. 이는 본 보조사업을 통한 수혜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중/장기적 시계에서 점진적으로 국가 지원이 아닌 민간 영역(작가, 출판사, 에이전시 등)에서 저작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본 보조사업은 문학진흥법 제14조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하지만, 본 보조사업과 직접성, 구체성 등을 고려하면 위 법률이 강한 법적 근거로 보기는 어려움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보조사업은 한국문학 번역을 지원하여 한국문학의 세계화, 문학 교류 활성화 등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문학진흥법 제14조(경비보조) >

제14조(경비보조) 정부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본 보조사업은 한국문학 번역을 지원하여 한국문학의 세계화, 문학 교류 활성화 등의 목적을 가짐
 - 이를 위해 한국문학번역원 지원의 하나의 내역사업이 존재함
 - 한국문학번역원의 역량, 업무 등을 고려하였을 때 본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내역사업 설정이라 판단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내역사업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판단됨
 - 계획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노력이 보이며, 당초 계획한대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음.



* 2018년, 2019년 실적 및 2020년 계획 (자료: 부처 제출)

18년 실적	19년 실적	20년 계획
○번역지원(117건)	117건	130건
○출판지원(119건)	151건	153건
○해외교류행사 개최(55건)	82건	77건
○서울국제작가축제 개최(작가 29명 초청, 관객 942명)	작가 31명, 관객 1,472명	작가 36명, 관객 2,000명
○한국문학 쇼케이스 개최(관객 311명, 언론보도 23건, 한국문학 저작권 체결)	관객 262명 참가, 저작권 계약 13건('18~'19 누적)	관객 300명 참가, 저작권 계약 20건
○번역아카데미 정규과정, 특별과정, 번역아틀리에 운영(수료생 131명)	122명	130명 내외
○해외 한국학대학 번역실습 워크숍 개최(7건)	12건	16건
○콘텐츠 수집제공(2,173건)	1,684건	2,000건 내외

- 성과평가 결과는 비교적 양호하나 추가적 지표 개발 필요
 - 한국문학의 신규번역 지원건수 등이 주요 성과평가 지표로 제시됨. 이는 전형적인 정량적 지표로 본 보조사업의 효과성을 포괄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함. 예를 들어, 번역 지원한 도서의 판매 실적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한국문학 해외진출에 따른 문학진흥 정책추진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보조사업의 목적을 감안할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민간단체 보조를 통한 사업추진 방향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 문학 분야의 해외 진출은 작가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 이를 고려했을 때 정부 보조금 지원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수혜자의 범위가 명확하고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지 못함
 - 직접 수혜자의 경우에는 비교적 명확하고 적정하게 설정한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간접 수혜자의 범위가 좁음. 이는 본 보조사업을 통한 파급효과가 작을 수 있음을 시사함
 - 수혜자의 범위(특히 간접 수혜자)를 명확하고 적정하게 설정하여 본 보조사업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음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20년 예산안에서 인건비가 2,419 백만원, 경상비가 735 백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음
 - 사업예산 비중의 증가와 한국문학번역원 자체의 수입 구조 개선의 노력이 필요함. 다만,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문학의 해외진출과 국제교류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사업을 통해 직접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구조임을 고려해야 할 것임
 - 중/장기적 시계에서 점진적으로 국가 지원이 아닌 민간 영역(작가, 출판사, 에이전시 등)에서 저작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한국문학번역 내역사업의 보조율이 '18년 73.2%에서 '20년 98.3%로 변화함
 - '18년도에 한시적으로 기관 기본재산을 내역사업에 투입해 한국문학번역원 국고보조율이 '18년 71.99%에서 '20년 97.2%로 변화하였으나 기관 기본재산은 사업을 통해 지속 발생하는 수익이 아니며, '16년~'17년 모두 국고보조금 비율이 '20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음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본 보조사업을 통해 실현되는 사회적가치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등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본 보조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는 어려움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선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본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을 갖추고 있지는 않음
 -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을 준용하여 사업자 선정을 하고 있음
 - 다만, 사업자 선정 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상기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하였는지와 민간보조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상기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움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본 보조사업 집행과 관련하여 본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음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과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본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을 갖추고 있지는 않음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과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의 규정에 따라 부정수급 관리를 시행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자체 적발 이력은 없으나, 지원 관련 사업 및 시설에서 비리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부정수급 방지 대책 마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자체 사업관리를 위한 노력이 보임
 - 보조사업자 대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추가적인 자체 사업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보조사업은 한국문학 번역을 지원하여 한국문학의 세계화, 문학 교류 활성화 등의 목적을 가짐
- 본 보조사업의 목적을 감안할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민간단체 보조를 통한 사업추진 방향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 성과평가 지표의 설정 및 관리, 간접 수혜자 범위 설정, 기능별 예산 내역 재설정, 한국문학번역원 자체 수입 구조 개선의 노력이 필요함

3-2 정책 제언

- 성과평가 결과는 비교적 양호하나 추가적 지표 개발 필요
 - 한국문학의 신규번역 지원건수 등이 주요 성과평가 지표로 제시됨. 이는 전형적인 정량적 지표로 본 보조사업의 효과성을 포괄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함. 예를 들어, 번역 지원한 도서의 판매 실적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또한 각 년도의 성과지표의 목표 설정에 보다 객관적인 제시가 필요함
- 수혜자의 범위가 명확하고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지 못함
 - 직접 수혜자의 경우에는 비교적 명확하고 적정하게 설정한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간접 수혜자의 범위가 좁음. 이는 본 보조사업을 통한 외부효과가 작을 수 있음을 시사함
- '20년 예산안에서 인건비가 2,419 백만원, 경상비가 735 백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음
 - 인건비와 경상비의 합이 전체 예산의 30% 정도를 차지함
 - 사업예산 비중의 증가와 한국문학번역원 자체의 수입 구조 개선의 노력이 필요함. 예를 들어, 번역료의 일부를 사전적으로 작가가 부담하게 하거나, 번역 된 후 외국에서의 출판 수입이 일정액 이상일 경우 사후적으로 번역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작가가 부담하게 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중/장기적 시계에서 점진적으로 국가 지원이 아닌 민간 영역(작가, 출판사, 에이전시 등)에서 저작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65.5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0.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1.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15.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5.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변경(출판산업육성 내내역사업 중 ‘출판유통통합시스템’과 ‘출판저작권 수출 활성화’를 이관 받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지원’에 통합) ·내역사업별로 연계성 강화와 성과목표 개선이 필요 ·다양한 내역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바, 내역사업간 연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성과지표 변경 등을 통해 도전적인 성과관리를 추진할 필요 ·전반적인 사업필요성은 인정되나 동일 프로그램내 유사사업인 ‘출판문화산업육성’의 일부 내내역 사업을 이관받아 사업간 차별화를 제고할 필요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동 보조사업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음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업무를 동법제 16조의4가 규정하고 있고, 제21조는 정부의 예산 보조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음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

제16조(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설치 등) ① 출판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16조의4(진흥원의 직무)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기획
2. 출판문화산업의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3. 출판문화산업 관련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
4. 출판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제작 활성화 및 유통 선진화 지원
5. 양서 권장 및 독서 진흥 등 출판수요 진작을 위한 사업
6. 전자출판의 육성·지원
7. 출판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 조성
8. 출판문화산업의 국외진출 지원
9. 간행물의 유통여부 심의(제18조에 따른 위원회 기능을 말한다)
10.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1조(경비 보조)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 및 한국문학번역원의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 동 보조사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법적근거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동 보조사업 외에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해 유사한 보조금 사업들이 다수 추진되고 있는 바, 어떤 사업을 동 보조금 사업처럼 기관고유사업 지원성격으로 진행하고 어떤 사업을 별개의 보조사업으로 진행할 것인지 그 구분의 논리와 실익을 검토 필요함.
- 동 보조사업은 국정과제와 관련되어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제4차 출판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17~21)」 및 「제3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19~23)」 등 부처의 정책과도 연관되어 있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보조사업은 2003년부터 추진되어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출판 국내수요 창출 및 유통선진화, 우수 출판콘텐츠 제작 활성화, 글로벌 출판 한류 확산, 출판문화산업 지속 성장 인프라 구축, 심의사업 등 기본사업, 경상비 및 인건비 등 7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 기관운영 지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기관에 대한 지원과 사업에 대한 지원 성격이 혼재되어 있음
- 동 보조사업은 다양한 내역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통, 콘텐츠 개발 지원, 인력육성, 글로벌 진출 지원 등 출판 전반을 지원하고 있으나, 내역사업간 연계강화 및 전략적 배분을 통해 사업성과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개별 내역사업별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성과평가 지표는 없으며 대표지표에 해당하는 ‘우수 출판콘텐츠 생산기여율’의 경우 3년 연속 같은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음
- 그러나 출판산업은 종사자가 4인이하 소규모 출판사는 72.8%에 육박하는 등 영세한 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민간 영역에서 수행이 어려운 출판수요 창출, 수출지원, 창업지원, 일자리 지원 사업을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수행할 필요성은 부분적으로 인정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사업은 출판문화 활성화를 통한 출판수요 창출 및 양서보급 확대를 통한 출판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지원 혜택은 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의 범위를 넘어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음
 - 일반 국민은 양서의 보급 및 문화복지 책나눔 등 출판수요 확대 정책으로 인한 출판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받으며, 출판산업계(출판사·유통사·저자·해외출판에이전시 등)는 출판산업 기반 조성, 글로벌 출판한류 확산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음
 - 또한, 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기획과 출판문화산업의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사업은, 다양한 통계와 연구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출판관계자 뿐만 아니라 출판통계 및 연구자료를 필요로 하는 일반 국민 누구나 제공할 수 있음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및 청소년보호법 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에 따라 진흥원 내 설치된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심의사업 등은 지자체나 개인, 사업자 부담으로 추진할 수 없는 전국 단위 또는 국가차원의 사업임을 감안할 때 보조금 사업으로 계속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다만, 동 보조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동일 프로그램내 보조사업인 ‘출판산업육성지원사업’이 있는데 동 보조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동일 기관에게 예산이 지원된다는 공통점이 있음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지원 사업의 내용이 출판산업 인프라기반 구축과, 출판저작권 수출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일부 구분될 수 있다고 하나, 별도 사업의 차별성 근거로는 부족함.
- 동 보조사업이 유사사업들과 내용상으로 중복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추진 주체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 동일한 내역사업들의 경우 (별도) 분리추진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보완하거나, 통합이 타당한 일부 내역(내내역)사업들을 이관받아 사업의 시너지를 높일 필요가 있음.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 예산은 ‘19년 10,811백만원이며 집행률은 3개년간 95%를 상회하고 있어 집행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동 보조사업 중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지원’에 지원되는 예산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6조 및 제21조에 근거한 위탁사업으로 간주하여 보조율 100%를 설정하고 있음

1-5 사회적 가치 실현(가산점)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저소득층) 대상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19년 73,000명)로 도서로 교환할 수 있는 북토큰을 배포하여 문화소외계층의 문화기본권, 문화향유권 보장하는 등 부분적으로 공공적·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도 있음.
- 그러나 전체 사업규모에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전체 보조사업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지향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은 한국출판문화진흥원을 공모없이 사업관리자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탁의 근거로 한국출판문화진흥원이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으로, 자체 수입 및 별도의 기금 지원이 없이 전액 국고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음
-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 기금 운영계획 수립시 한국출판문화진흥원을 보조사업자로 지정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을 위한 별도의 지침은 없으며 부처단위의 보조금관리지침(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준용)을 적용하여 사업관리 중임
- 보조금 교부조건에 사업비 관리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분기별로 소요예산을 4차례 교부함.
- 보조사업이 사업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분기별 집행현황을 확인하며 경비집행의 효율성 투명성을 점검함.
- 동 보조사업의 경우 내역사업에 대한 위탁 이외에 한국출판문화진흥원에 대한 기관 운영비(인건비 등)도 보조하고 있어 사업에 대한 점검과 함께 기관에 대한 전반적 점검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제26조에 따라 연 2회(상·하반기) 집행실적, 보조금 사용 적정성, 교부조건 준수 여부, 카드 관리현황 등을 관리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보조금 부정실적 적발건수는 없었으며, 연 1회 부정수급 가이드라인 안내 등을 포함한 부정수급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특별한 수준의 자체 사업관리 노력은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사업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으며 동 법령의 조항들이 사업추진 근거를 뒷받침하고 있음
- 청소년에 대한 북토크 지원 등 민간이 대응하기 힘든영역의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동 보조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사업성과지표가 3년 연속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 사업의 재구조화와 지표 재설정 등의 질적인 개선이 필요함.
- 또한, 동일 프로그램내 사업(한국출판산업육성지원)을 동 보조사업의 시행기관인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 시행하고 있어 유사한 사업들을 별도의 사업으로 구분 실익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6조의 4에 명시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업무 범위에 동일 프로그램 내 국가보조금 사업인 '한국출판산업육성지원'의 일부가 포함됨

3-2 정책 제언

- 일반 독자들의 독서의 행태와 유통구조 변화, 친환경·첨단 인쇄기술 등의 도입 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바, 세심한 사업 기획과 관리가 필요함
 - 내역사업들간 유기적 연관성을 제고할 여지가 있는 바, 내역사업간 시너지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재구조화 하고 사업성과 지표의 재설계 하는 등 질적인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음.
- 한국출판문화진흥원이 추진 중인 유사한 국가보조금 사업(출판산업육성사업) 중 일부 내내역사업(출판유통통합시스템구축, 출판저작권 수출활성화)을 이관받아 사업간 시너지 창출과 예산투입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사업명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1.2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4.8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6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4.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18.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5.2
1-5.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6.4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4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사업방식변경 · 집행률이 저조하나 DMZ 생태관광활성화 등 사업 초기단계로 집행 여건이 다소 불리함이 인정되며,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사항을 감안하여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방식변경 검토가 필요함. · 내역사업의 생태녹색관광의 활성화를 나타낼 수 있는 양적 성과지표 개선 필요함 ·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 등을 예산편성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 있음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동 보조사업은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동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가능 근거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음
- 「관광기본법」 제8조, 제9조, 제13조는 국민관광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광진흥법」 제76조 제1항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 관광진흥법 제76조 >

제76조(재정지원)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해당 사업의 목적은 다양한 생태관광자원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을 육성하고, 걷기여행길 활성화 기반 강화 및 이용 촉진을 통해 지역관광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는 것으로 광범위한 수혜범위를 가지므로 국가차원에서 추진
- 현정부의 국정과제 73.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의 실천과제인 ‘관광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부과제인 ‘지역에서만 즐길 수 있는 지역특화 관광상품 확대’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로서 비무장지대(DMZ), 걷기길 등 생태관광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국정과제와 관련도가 높음
-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 세부사업 밑에 생태녹색관광육성, DMZ평화생태관광활성화, 걷기여행길활성화, 코리아모빌리티 내역사업들이 배치되어 있어 내역산업 간 연계성이 강화되어 있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내역사업은 생태녹색관광육성, 코리아둘레길, 걷기여행길활성화, 코리아모빌리티(두루누비), DMZ평화·생태관광 활성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조사업의 목표달성에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음
- 동 보조사업의 성과평가의 지표로 “생태관광지역 방문자 만족도지표”를 설정하고 있지만 이는 성과의 질적 효과는 평가할 수 있지만 이 보조사업을 통한 생태관광의 활성화 정도, 즉 양적 성과는 파악하기 어려움
- 이에 내역사업의 생태녹색관광의 활성화를 나타낼 수 있는 성과지표 개선 필요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세부내역 사업 중 ‘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사업은 내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의 다수의 세부사업과 유사하며 중복성이 보이나,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사업이 10개년 사업(’13~’22)으로 ’22년에 사업종료 예정이므로 ’한반도 생태평화벨트’의 관광활성화 관련 세부사업을 ’생태녹색관광 육성사업’으로 이관하여 ‘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에서 통합관리 할 필요가 있음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사업목적	DMZ 접경지역 지자체의 관광개발(시설조성 등) 사업 추진을 통해 접경지역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DMZ 평화관광에 적합한 관광콘텐츠(관광프로그램 등) 확충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향후 남북관광 재개 기반 마련
사업기간	10개년(2013년~2022년)	단년도 계속(2019년~)
세부사업간 비교	○연도별 투자계획 중 2020년 사업비가 확보된 사업(3개) * (2021, 2022년은 예산반영 여부 미확정, 기재부 심의 필요) ①DMZ 문화예술 삼매경 * 3개 광역시도가 협력, 예술 조형물 설치 ②DMZ 지역관광 서비스 아카데미 * 지역 관광종사자들의 서비스 교육 ③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자원개발사업홍보 ○기타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안만 마련된 상태로 기재부 협의 전, 예산 미확보 상태임	○DMZ 평화관광 통합홍보마케팅 * DMZ 관련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 등 ○DMZ 평화관광 기반조성 * 포럼, 추진협의회 개최 등 ○DMZ 평화관광 콘텐츠 확충 * 원천스토리 발굴, 주말 상설 문화공연 개최, 가상현실 체험존 조성 등

- 본 보조사업의 잠재적 수혜자는 생태녹색관광을 즐길 수 있는 국민전체가 되기 때문에 광범위하며 국가의 보조사업이 필요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금법 시행령상 기준보조율을 준수(50%)하고 있음
- 생태관광육성 사업(330-01, 330-03)의 3년 평균 실집행률은 74.7%, 54.2%*로 타 사업에 비해 저조하나 DMZ 생태관광활성화 등 사업 초기단계로 집행 여건이 다소 불리함이 인정되며,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 사항을 감안하여 집행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방식변경 검토 필요
 - 부처의 소명대로 생태관광육성 사업은 '17년부터 조기공모추진, 수시집행점검 등을 통해 매년 실집행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19년부터 다년도 지원사업에서 중장기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 노력 하고 있음
- 중기재정계획에는 26년까지 예산이 반영되고 있으나 일부 내역사업의 경우는 중장기 추진 계획이 부재하여 해당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중장기계획 수립이 필요함
 - 부처의 소명대로 걷기여행길 활성화, 코리아둘레길 내역사업은 중장기 추진사업에 대한 과제 및 예산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그 외 생태녹색관광육성, 코리아모빌리티(두루누비), DMZ평화·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은 구체적인 중장기계획 수립이 필요함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생태테마관광 육성 사업 선정 및 지원 계획(2019)에 따라 지자체 사업계획 공모분야 및 선정규모,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보조사업의 선정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한국관광공사의 자체적인 회계 및 법무팀의 감사로 사후관리가 진행되고 있고, 이에 대한 보완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결산서의 회계감사 및 경영감독과 평가 등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조사업별로 외부회계 감사 등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사후관리가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됨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회계법인의 회계검사를 의무화하였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 취소, 부정수급심의위원회 운영 등 적절한 부정수급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어 적정성이 높은 편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해당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의 목적은 생태관광자원의 활용 제고와 지역 경제활성화로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그 양적 효과성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음
 - 내역사업의 생태녹색관광의 활성화를 나타낼 수 있는 양적 성과지표 개선 필요함
- 생태관광육성 사업(330-01, 330-03)의 3년 평균 실적행률이 타 사업에 비해 저조하나 DMZ 생태관광활성화 등 사업 초기단계로 집행 여건이 다소 불리함이 인정되며,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사항을 감안하여 집행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방식변경 검토 필요
- 해당 보조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은 없으며「보조금법」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제1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활용하고 있어 보조사업의 선정의 적정성이 높은 편은 아님

3-2 정책 제언

- 세부내역 사업 중 ‘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사업은 내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의 다수의 세부사업과 유사하며 중복성이 보이나,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사업이 10개년 사업(‘13~’22)으로 ‘22년에 사업종료 예정이므로 ‘한반도 생태평화벨트’의 관광활성화 관련 세부사업을 ‘생태녹색관광 육성사업’으로 이관하여 ‘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에서 통합관리 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회원종목단체 및 지회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2.7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6.2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5.2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1.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4.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4.0
1-5.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6.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1.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 감축, 사업방식변경 · 동 세부사업은 2021년 ~ 23년 안에 높은 수준의 감축이 필요함 · 사업수행이 장기임에도 불구하고 재정 지원의 성과가 보이지 않음. 사업의 성과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고 비용산정이 적합하지 않으며 현재의 지원방식이 아닌 종목별 차등지원을 고려해야 함 · 동 사업은 예산지원에 따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성과관리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었으나 수행되지 않았음 · 성과가 지속적으로 미흡하게 달성되는 바 이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산재되어서 지급되고 있는 인프라 비용은 체육회가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단일화해야 함. 보조금의 종목별 차등 지급이 필요함. 또한 국회지적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 및 정산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대한체육회 지원사업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제18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33조에 근거하여 국민의 체육활동을 진흥하고자 시행되는 사업으로 법적근거가 비교적 명확하다고 판단됨
-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선수 등의 보호·육성) 제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와 육성을 하여야 함을 명시함
- 동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제2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체육회 등 그 밖의 체육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함을 규정함
- 동법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제1항 1호에는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그 보급 사업, 3호에는 선수와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4호에는 선수·체육지도자 및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등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함
-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간의 목적 및 목표의 연관성이 있으나 국정과제와는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음
- 전문체육 육성을 통해 세계 정상급 경기력 향상 도모라는 프로그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위사업(대한체육회지원), 세부사업(회원종목단체 및 지회운영), 내역사업 간 구성이 비교적 체계적이라고 볼 수 있음
- 다만, 대한체육회 사업 가운데 IT 인프라 사업들이 여러 군데 흩어져서 있는바 이를 한 곳으로 통합시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은 전문체육 기반 조성을 통해 스포츠를 통한 국위선양, 국가경쟁력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사업목적이 국가이익에 부합되므로 역할을 하는 사업으로 국가이익에 부합 목적을 가지고 있는바 국가적 차원의 지원은 타당성이 있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은 회원종목단체 및 지회운영, 체육단체정보망구축, 스포츠인권향상지원, 은퇴선수지원, 지방체육회장 공정선거 관리단 운영지원(단년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일부사업의 운영비가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필요한지는 재검토가 필요함



- 체육단체정보망구축비가 매년 동일하게 소요되고 있으나 적정수준의 금액인지 불명확함
- ‘2019년 사업예산의 실집행률 100%를 달성하였고, 2017년에 100%, 2018년 100% 실집행률을 보인 바 계획대로 집행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은퇴 선수 취업서비스 참여인원대비취업률을 성과지표로 사용하고 있으나 목표치를 충실히 달성하고 있지 못함
- 목표대비 실적률이 높지 못하여 성과를 충실히 달성하지 못함
- 은퇴선수취업서비스참여인원대비취업률만으로 지표를 사용하는 것은 사업의 성과를 대표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여 향후 현실적인 성과지표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은 체육단체의 안정적인 운영과 국가대표의 경기력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한 스포츠 환경조성과 은퇴선수 삶의 질 향상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 그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은퇴선수 삶의 질 향상, 스포츠인권향상 등의 목표를 달성하였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움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사업은 “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 등 체육단체 재정여건 개선과 조직운영의 선진화, 아울러 체육계 인권향상과 은퇴선수 지원”을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공공성이 확보되고 있는 바 보조금 지원을 통한 사업수행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 동 세부사업은 종목단체 및 단체직원 인건비 및 경상비, 은퇴선수지원, 스포츠인권향상 등을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타 사업과 유사·중복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의 1차적 수혜자는 회원종목단체 및 지회, 체육인 등으로 그 혜택의 범위가 명확하나 간접수혜자를 국민으로 넓히기는 어려우므로 수혜자의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사업이 폐지되거나 지속되지 않을 경우, 종목단체 및 시도체육단체의 운영이 사실상 어렵게 되어 그 결과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과 단체, 재정관리가 어렵게 될 수 있으므로 폐지는 어렵다고 보임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사업은 일부 내역사업과 세부사업의 증액 및 비용 산정 근거가 비교적 명확하다고 판단됨
 - 다만, 체육정보망구축 내역사업은 매년 같은 금액으로 지원되나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며 체육회 다른 사업 가운데에도 인프라지원 비용이 따로 산정된바 통합되어 관리되어야 함
 - 스포츠인권 향상 교육 강화를 위해 매년 재정이 지원되나 그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드는 바 보다 직접적 효과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중장기 재정추계 내역이 어떤 방식으로 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객관적 합리성도 떨어져 보임
 - 20~26년까지 내역사업의 금액이 동일하나 근거가 미흡함
- 17년 보조사업 결과 종목별 단체의 인건비와 행정보조비가 차등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권고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음
 - 각 종목별 단체는 종목의 인기도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차별적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 일부 종목의 단체는 운영비와 관리비는 자체충당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임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됨
 - 직접수혜자인 은퇴선수는 취업지원서비스 혜택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고, 체육인은 각종 인권 교육으로 (성)폭력 등 근절로 인권 보호가 가능하므로 동 사업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에 기여한다고 판단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사업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적합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음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통합체육회)에 대한체육회는 체육대회의 개최 및 선수양성과 경기력 향상, 체육인의 복지향상,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 등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유일한 단체임을 명시하고 있어 이에 근거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음
- 공모와 관련해서는 관련 지침에 공모방식,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 등을 명시하고 있어 사업자 선정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임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 제8조(보조사업자 공모), 제9조(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동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시행령 제12조의2(정산보고서의 검증)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기준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여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판단됨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보조금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조사업 집행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기금관리주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현장평가단 운영, 현장점검, 만족도조사 등 사업집행 단계를 관리하고 기금지원사업평가위원회의 성과평가 운영으로 환류활동을 하는 등 사업결과단계까지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판단됨
 - 다만, 국회결산보고서에 따르면 ‘대한체육회가 1차 보조사업자인 모든 보조사업은 2017년부터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능상 불완전하여 상위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정산 및 부정수급 방지 관리를 온전히 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음
 - 3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회계법인 정산보고서 검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제12조의3(특정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등)에 따라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대상으로 외부 감사인(회계법인)을 선정하여 단체별 회계 전반에 대한 적정성 검증 및 자문을 받고 있음



- 중요재산 보고 및 공시 등 관리를 위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8장 보조사업 사후관리),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제6장 보조사업 사후관리)을 마련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과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보조금 반환, 정산 및 회계검사 등에 관하여 사후관리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준수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보임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현재까지 부정수급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관리·감독을 진행 중이고 비교적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판단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정산지침을 준수하여 부정수급을 점검하고 모니터링 하고 있음
 - 대한체육회 자체 예산집행지침(보조금 부정집행에 대한 책임유무 등)이 있음
 - 다만, 국회결산보고서에 따르면 ‘대한체육회가 1차 보조사업자인 모든 보조사업은 2017년부터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능상 불완전하여 상위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정산 및 부정수급 방지 관리를 온전히 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음
- 대한체육회 운영지원 사업에 대한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사업부서는 물론 별도 감사반을 구성하여 내부 감사를 시행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부정수급 관리시스템을 적절히 구축하고 있다고 보임
 - 보조사업 완료 후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정산서류 및 회계전반에 대한 검사를 받고 있으며, 보조사업비의 불인정 기준에 위배되었을 경우 기금관리주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 등과 협의를 통해 보조금 환수조치 여부도 검토하고 있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e나라도움 시스템을 활용한 상시모니터링, 자체 예산집행점검, 대한체육회 내 클린스포츠센터, 공정체육실, 감사실 등을 통한 각종 감사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으므로 자체 사업관리를 위한 노력이 있다고 보임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사업은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 등 체육단체 재정여건 개선과 조직운영의 선진화, 아울러 체육계 인권향상과 은퇴선수 지원”을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공공성 향후 보조금 지원은 필요하다고 보임
- 보조금지원 재정규모가 적정하지 않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보조금 지원액을 높은 수준으로 감축할 필요가 있음
 - 일부 내역사업 비용 산정 근거가 미흡하며 재정추계의 근거도 합리성이 떨어짐
 - 17년 보조사업 결과 종목별 단체의 인건비와 행정보조비가 차등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권고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음
- 정책효과가 미흡하고 재정지원의 규모 대비 관리하는 성과지표가 충분하지 않으며 성과의 목표달성도가 미흡함
 - ‘은퇴선수 취업서비스 참여인원 대비 취업률’만으로 성과를 관리하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며 상위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성과지표를 더 마련해야함
 - 재정지원이 비교적 오랜 기간 지속되었으나 그에 따른 성과가 명확하지 않음

3-2 정책 제언

- 예산의 규모에 비해 관리하는 성과지표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성과지표의 체계적 마련이 시급하며 성과가 지속적으로 미흡하게 달성되는 바 이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체육정보망구축 내역사업은 체육회 다른 사업 가운데에도 인프라지원 비용이 따로 산정되어 통합되어 관리 되어야 함
- 종목별 재정자립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종목별 단체의 인건비와 행정보조비가 차등적으로 지급되어야 함

기관별 · 사업별 평가의견서

농림축산식품부

고품질쌀유통활성화
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노지스마트농업시범사업
농업가치및소비촉진제고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농작물재해보험운영비지원
농촌고용인력지원
농촌다원적자원활용
농업용수관리
동물보호및복지대책
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
배수개선
소규모도계장설치지원
수리시설개보수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지역단위푸드플랜구축지원
축산물수급관리
축산물유통및소비촉진제고
한발대비용수개발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농림축산식품부
사 업 명	고품질쌀유통활성화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3.0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5.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5.2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1.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1.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5.8
1-5.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8.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1.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감축 · 동 세부사업은 2021년 ~ 23년 안에 일정 수준 감축이 필요함. 본 사업은 RPC 등을 통해 쌀 산지유통기능을 활성화하고,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확충하는데 목적이 있음. '18년 지역별 실집행률은 전 지역에서 100.0% 이상으로 매우 양호함. 동 보조사업은 국민에게 고품질 쌀의 안정 공급을 위해 부족한 벼의 저장능력 상향으로 국가 차원에서 지원이 타당하나, 매년 성과목표 달성에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 일정 수준의 감축이 요구됨 · '19년 1인당 쌀 소비량은 60.3kg으로 꾸준히 감소해 최근 30년 간 최저치임. 반면 쌀 가격은 적정 재고 유지와 다양한 정책 반영 등으로 20만 원 내외에서 안정세임. 1만 톤 벼 건조저장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은 95억 원으로, 목표치 65% 확대까지 491천 톤의 저장시설 확충이 필요함. 비용대비 사업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본 사업자 선정 시 지역별 국고 지원금액 차이가 큼. 이에 지역별 RPC 등 산업의 고른 발전을 위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선정 및 보조금 지원이 필요함. 본 사업 부정수급 사례는 아니나 타 사업 부정수급 반환사례가 발견되어 앞으로 부정수급 관리 강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동 보조사업은 「양곡관리법 제22조」에 근거해 '95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임. 동 법령에는 미곡의 산지유통 제고를 위해 미곡종합처리장 등 미곡을 건조·선별·보관·가공·판매하는 시설 개선에 대한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은 쌀 가공 및 건조·저장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쌀 유통의 핵심시설인 미곡종합처리장(RPC) 근거를 제공하고 있음. 궁극적 목적은 수확기 원료 벼 수집과 저장·가공 등을 통해 안정적인 식량 공급과 수급관리에 있음

< 양곡관리법 제22조 >

제22조(미곡유통업의 육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유통구조개선·품질향상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생산자로부터의 미곡 매입 및 매입한 미곡의 건조·선별·보관·가공·판매 등 종합적인 미곡의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미곡유통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미곡의 유통기능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미곡종합처리장 등 미곡을 건조·보관·가공·유통·판매하는 시설의 설치 및 미곡의 매입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융자 및 보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급조절, 식생활의 개선, 양곡의 가공·보관·유통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동 보조사업은 노후화된 RPC 가공시설 현대화, RPC 및 DSC 벼 건조·저장시설 증설 지원을 통해 산지 쌀 유통기능을 활성화하고, 고품질 쌀 생산 기반 구축에 타당한 목적이 있음
- RPC는 수요자 니즈에 부합한 쌀 생산을 위해 재배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대량의 쌀 생산에 주력함. 농가에서는 RPC를 통해 공동육묘와 공동방제가 가능하고, 산물 벼 수매시 건조·원료 곡 포장, 운송 등의 소요 비용, 노력, 시간 절감 효과가 있음. 또한 RPC를 통한 안정 출하 및 쌀 브랜드화는 농가소득 향상 기여로 보조금 사업 지원이 필요함
- 특히 '05년 추곡수매제도 폐지 이후 RPC 사업이 산지 쌀 민간 유통기능 측면에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RPC가 농가 벼 수확기 매입 등 공익적 기능 유지가 강조되어 왔음



- 또한 쌀 유통 특성상 타 분야보다 투자대비 수익성이 낮아 민간 자본유치와 투자가 어렵고, RPC의 낮은 이익률과 RPC 통·폐합 등으로 규모 축소가 진행 중임. 이에 집중 수확기인 쌀 물량의 적절한 처리와 대응을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나, 비용대비 사업효과가 제한적으로 판단되어 일정 수준의 감축으로 추진이 타당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보조사업은 '18년까지 “RPC 벼 저장능력(%)”이 성과지표로 활용되었으나, '19년부터 고품질쌀유통비중(%)으로 전환됨. 2019년 고품질쌀 유통 비중은 37.4%로 나타나 성과목표치인 37.1%를 상회한 점으로 볼 때 보조사업 효과성은 인정됨
- 동 보조사업은 미곡종합처리장(RPC)의 노후화된 시설 현대화와 벼 건조·저장시설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에 '18년까지 성과지표로 활용된 “RPC 벼 저장능력(%)”도 성과지표도 다시 추가하여 재검토가 필요함
 - * ('07~'19년) 가공시설현대화 62개소 지원
 - * ('95~'19년) 벼 건조·저장시설 1,497개소 지원
- 벼 건조·저장시설 부족에 따른 야적으로 쌀 품질 저하, 수확기 집중으로 인해 농가벼 매입 불가로 쌀값 폭락 등 다수의 농촌사회에 문제가 발생함. RPC보조사업을 통해 양곡유통 안정화는 물론 양질의 쌀 제공은 보조사업 수혜자가 전 국민인 측면에서 사업효과가 인정됨
- 동 보조사업은 산지 쌀의 유통기능 활성화는 물론 농가 벼 출하처 확보와 출하 편의의 시설제공에 의의가 있음. 또한 고령화·쇠퇴화된 농가의 인력난 해소 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함. 특히 쌀 가공비용 절감으로 농가 수취가격 제고('17) 153,213원/80kg → ('18) 193,568 (전년 26.3%↑), 소비자 구입가격 하락 등 물가안정에도 기여함
- '95년부터 현재까지 연 평균 25~30개소씩 순차적으로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전체 쌀 가공유통업체 3,164개소* 중 약 800여 개소(25.3%)의 RPC와 비RPC농협 등의 건조저장시설이 개보수·증설됨. 이에 '18년에는 RPC에서 전체 쌀 유통물량 중 51.5%까지 저장 능력 확보로 동 사업의 효과성이 인정됨
 - * 전체 쌀 가공유통업체 : RPC 328개소, 비RPC농협 551개소, 일반도정업체 2,285개소
 - * 유통량 대비 RPC 저장능력 : ('13) 45.7% → ('15) 46.0 → ('18) 51.5 → ('20 목표) 60.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보조사업은 국민의 주식인 쌀 가치 제고와 위생적이고 안전한 쌀 제공을 위해 규모화된 가공시설 지원이 필요함.
 - 현재 RPC 대부분이 20년 이상 노후화로 고품질 쌀 생산에 한계가 있음
 - 이에 버의 수집·건조·저장·가공·포장·판매 과정을 일괄 처리하고, 비용절감, 품질향상 및 효율적인 유통 기반 구축을 위해 동 보조사업 지원이 필요함. 가공시설 현대화와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을 통한 고품질쌀 공급 및 유통 여건 확충은 시장개방에 대비한 국내 쌀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지원이 요구됨
 - 더구나 기존 RPC의 경우 가공과 포장시설 미분리로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위생상 문제점 등은 국내 쌀 경쟁력 확보의 저해 요인임. 쌀 개방화 이후 국내 쌀의 수출까지 고려한다면 생산시설 현대화는 중요함
- '05년 추곡수매제도 폐지 이후 수확기 농가벼 매입기능을 RPC가 대신하고 있지만, 여전히 건조·저장시설 부족으로 전량 처리가 불가함. 저장시설 부족에 따른 야적은 쌀 품질을 저하시켜 결국 쌀값 폭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함
 - RPC가 농가벼의 수확기 매입 등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며, 쌀 유통 특성상 타 분야에 비해 투자대비 수익성이 낮아 민간 자본유치와 투자가 어려움. 특히 RPC 이익률이 낮고 RPC 통·폐합으로 규모가 축소되어 보조금 지원 없이는 신규시설 투자 및 수확기 물량 흡수에 적절한 대처가 어려워 국가적 차원의 보조지원이 필요함
 - 동 보조사업은 국내 쌀의 품질경쟁력 향상과 수확기 농가벼 판로 확보 등을 위한 가공시설 현대화와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하는 사업으로 타 사업과 유사·중복은 없음
- RPC는 수확기 전국에서 일시 출하되는 농가 벼를 산지에서 즉시 흡수하여 쌀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유통주체로 국가기간 산업 중 하나임. 이에 보조사업을 통해 RPC 시설의 규모화·현대화는 수확기 산지 쌀 수매 견인에 매우 중요한 기능임
 - 대부분 농산물 가격은 수확기 가격이 낮고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가격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 그러나 쌀은 수확기 때 가격이 높고, 저장기간 중 가격이 하락하는 역계절 진폭 발생 우려가 큰 품목임. 이에 수확기 높은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 농업인의 소득 불안이 야기될 수 있음
 - 본 보조사업은 RPC를 산지 수매 주체로써 육성하여 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토록 하고, 건조·저장 및 판로 부담 경감을 위해 중요함. 그러나 현재 매년 쌀 소비는 감소 문제 해결에는 고품질쌀유통화사업만으로 제한적임
 - 특히 동 사업의 경우 다년 간 추진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시설 현대화와 건조저장시설 확충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쌀 소비 감소의 근본적인 문제 해소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판단됨. 이에 지속적인 보조사업 지원은 비용대비 사업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사업 내실화를 위해 일정 수준의 예산 감축으로 추진이 타당함
- 다만 미세먼지 방지를 위해 '20년 신규 예산이 반영된 집진시설 보강사업(80억 원)은 RPC 운영주체, 농업인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속적으로 보조금 지원이 필요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별표 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122호를 준수하여 산정함
- 본 사업은 시설현대화에 30억 원 내외,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의 경우 7억 원으로 운영 중임. 사업대상자 선정 시 해당사업자(거래규모, 판매량, 건조·저장능력 등)를 고려하여 적정 지원규모로 조정하여 지원함

* 농협 RPC 통합추진 목표 : (현행) 135개 소 → (목표) 120개 소

- '20년 예산 편성 비율이 모두 증가했으며,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예산은 전년보다 119.2% 늘었음. 이는 RPC 등이 위치한 농촌지역의 노후 집진시설 가동에 따른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고자 집진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80억 원이 신규 반영된 것으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써 갖는 의의가 큼

* 20년 이상 노후 RPC 및 DSC 집진효율 비교 : 사이클론방식(60%) → 백필터방식(90%)

- 또한 본 사업 성과지표를 측정하는 RPC 쌀산업 기여도평가 예산은 '18년보다 60백 만원 늘어, 객관적인 성과 도출과 집진시설 개보수 지원 대상 선정 등 적절한 대응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예산 편성이 바람직함
- '18년도 고품질쌀 유통 정산결과는 대체로 실집행률이 양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이월이 발생함. 귀책사유로는 기상 악화와 공사 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기간 절대 공기부족과 타 사업 부정수급 인한 보조금 회수 등임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동 보조사업은 노후 가공시설 현대화를 통한 국민의 주식인 고품질쌀 생산·유통으로 지역쌀 판매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의 선순환 체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사회적가치 실현에 기여도가 인정됨
- 특히 농촌지역 미세먼지 저감과 작업자 건강 유지를 위해 추진되는 집진시설 개보수 사업은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측면에서 기여도가 인정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은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시행지침의 III. 사업추진체계에 근거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함. 지침에는 추진체계와 공모절차, 선정 기준, 심사위원 구성과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보조금 교부 기준, 절차 등의 내용이 명시됨
- '17년도 보조사업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대상자 선정 시 지역의 식량산업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지역 여건과 지방비 확보 여부를 점검한 후 농정심의회에 상정하여 선정함
- 사업추진체계는 1. 사업신청단계, 2. 사업자 선정단계,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5. 이행점검단계, 6. 사후관리단계로 운영함
- * 공모절차 : 지원자격 및 요건, 제출서류 갖춘 사업자로 시·군(2.28), 시·도(3.31), 농식품부(4.30) 신청서류 제출함
- * 선정기준 : 기본요건(민원·인허가 가능여부, 자부담 능력 등 검토) → 서면평가 → 현장평가 → 발표평가, 사업비 심의 순임
- * 심사위원은 외부위원(산학연) 전문가 3~5인, 내부위원(농식품부 등) 및 간사로 구성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시행지침을 근거로 규정을 둬.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보조금 점검평가단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현장 점검을 추진함
- 점검은 반기별 1회 이상으로 농식품부·시도·aT·농협경제지주 양곡부, 민간 RPC 협회 등 현지방문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화 사전 방지 등 사업을 관리함
- '19년에는 2회(3월, 10월)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점검사항은 집행 적정성, 정산근거 자료, 사후관리 등 사업지침에 맞게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추진 현황을 합동으로 점검함
- 부정수급과 사업지연, 부실화 등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수시 점검을 강화했음. 그 결과 '19년에는 6회 점검을 추진했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2회 시정명령(1차 : 11개소, 2차 : 7개소)으로 사업 내실화를 높였음. 향후에도 사업효율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 강화가 필요함
- '17년부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하여 교부·집행·정산·사후관리 등 보조사업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리함



- 연내 보조금 집행을 위해 월 2회 서면 점검, 점검회의 2회, 지자체 자체조사 명령 등 제도를 개선함. 이를 통해 사업기간 다변화(1~3년), 예비사업자 운영, 제한기준 마련 등 집행 가능성 검증과 책임감 강화로 실집행률 제고에 기여함

* 집행률(이월포함) : ('15) 99.9% → ('16) 97.4 → ('17) 98.8 → ('18) 100.0

* 실집행률(이월포함) : ('15) 52.9% → ('16) 75.5 → ('17) 68.8 → ('18) 95.7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고품질쌀유통활성화지침의 III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는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제30조), 부정수급 해당 내용 및 해당 시 제재(78조),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구성·운영(제83조), 제재부가금 부과(제84조) 등이 명시됨
- 사업대상자 선정단계에서부터 기본요건 점검, 서면평가, 현장평가, 발표평가와 해당 지역 생산여건과 사업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비 심의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함.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수시 점검, 연 2회 이상 현장점검 등을 실시함
- 사업추진 부진 시 시정명령을 조치한 후 사업대상자가 경각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함. 동 사업은 실제 사업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고 가능한 대상자에게만 사업이 지원되며, 부정수급 사전방지를 위해 노력함
- 연 2회 이상 현장점검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식품부, 지자체 등 합동점검반 구성·운영 중임. 또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사업설명회 개최, 현장점검을 통한 보조금관리법, 국가재정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정 준수에 대해 교육함. 그러나 타 사업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 건도 있어 부정수급 발생 방지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함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동 보조사업은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월 2회 서면 점검, 회의 2회, 지자체 자체조사 명령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함. 그 결과 연내 보조금 집행 실적이 제고되어 동 사업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자체관리 노력으로 인정됨

* 실집행률(이월포함) : ('15) 52.9% → ('16) 75.5 → ('17) 68.8 → ('18) 95.7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보조사업은 RPC 가공시설 현대화, 벼 건조·저장시설 및 기여도 평가 지원을 통해 쌀 산지의 유통기능을 활성화하고, 고품질쌀 생산기반 구축을 통해 국내 쌀 산업의 대내·외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목적임
 - 특히 가공시설 현대화를 통해 쌀 가공비용 절감, 농가수취 가격 제고, 소비자 구입가격 인하 등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보조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함
 - 또한 노후된 RPC 가공시설 개선사업 중 하나인 집진시설 개보수는 벼의 건조·저장 및 가공 시 발생하는 왕겨, 토사, 분진, 미세먼지 등을 제거하는 사업임. 이는 노후화된 집진 시설이 많은 농촌지역에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동 사업은 지속적인 추진이 바람직함
 - 수확기 벼의 일시 매입을 통한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서는 국내 유통물량의 65%까지 벼 저장능력 확보를 목표로 함. 그러나 20년 이상 노후화된 RPC 등의 가공시설 현대화 수요 증가에 따른 지속적인 보조사업 확대는 지속적인 쌀 소비 감소와 최근 쌀값 안정(20만 원 내외) 등을 감안할 때 비용대비 사업성 제고효과가 제한적으로 판단되어 일정 수준의 감축으로 필요함
 - 특히 1만 톤의 쌀 저장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약 9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앞으로 목표치인 65%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491천 톤의 저장시설 확충이 필요함. 이미 다른 정책을 통해 쌀값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속적인 쌀 소비감소 문제 해결에는 고품질 쌀 활성화만으로 한계가 있음
 - 만약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과거 저장능력 증감 추이를 볼 때 유통량 대비 RPC 저장 능력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 도출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일정 수준의 감축을 통해 사업 내 실화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유통량 대비 RPC 저장능력 : ('13) 45.7% → ('15) 46.0 → ('18) 51.5 → ('20 목표) 60.0
- 다만 미세먼지 방지를 위해 '20년에 신규 예산이 반영된 집진시설 보강사업(80억 원)은 RPC 운영주체, 농업인뿐만이 아닌 인근 주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함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수시 추진상황 점검 등 사업관리가 잘 유지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실집행을 저조, 불용, 이월 등의 최소화를 위해 사업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3-2 정책 제언

- 본 사업은 RPC 가공시설 현대화로 벼의 수집·건조·저장·가공·포장·판매 과정을 일괄 처리하여 비용절감, 품질향상 및 효율적 유통 기반 구축을 위한 것으로 수익성이 낮아 민간 자본 유치와 투자가 어려움. 또한 RPC 통·폐합으로 규모가 축소되는 만큼 동 보조사업의 효과성을 판단할 수 있는 추가지표 개발이 요구됨
- 본 보조사업 성과지표는 보조금 사업의 연속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임. 그러나 '18년과 '19년과 지표가 달라 정확한 사업성 판단에 근거자료가 부족함. 이에 기 사업지표에 대한 성과효과도 판단할 수 있도록 당분간은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집진시설 지원을 통한 미세먼저 저감 지표 혹은 사용 농가의 만족도 등 성과지표 보완이 필요함
- 또한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자체 노력과 관리 강화, 제도 개선 등으로 기존보다 실적률이 제고되었으나, 보조사업 특성상 부정수급의 가능성이 늘 상존함으로 부정수급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사전·사후관리 노력이 요구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농림축산식품부
사 업 명	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보조유형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5.2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5.2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6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2.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7.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6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0.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본 사업의 검토 결과, 사업방식변경으로 판정함 · 본 사업은 노후화된 국가 및 지방방조제와 그 부속물을 사전 보수·보강하는데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와 사업의 공공성이 인정됨. 그러나 현재의 예산 규모와 추진 실적의 추세 상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연장하여도 목표 시점('30년)에 1,261지구 개보수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방조제개보수사업 목표는 '13년부터 '30년까지 총 1,261지구로 책정되어 있으나, 사업 기간의 40%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20년 이후 물량(1,033개소)이 과다하게 잔여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향후 중장기 전략이 부재하며, 국가방조제와 지방방조제 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음 · 잔여물량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를 재산정하여 그에 따른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지방방조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방식 변경이 권고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농업생산력 증진과 국토 보존을 목적으로 방조제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방조제관리법」과 「농어촌정비법」 등 해당 법적 근거가 명확함
- 「방조제관리법」에서는 방조제의 관리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며(제1조, 제6조), 관리비용은 국고와 지방재정에서 부담한다(제7조)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방조제를 포함한 농어촌 정비를 위한 사업 추진의 자금을 정부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보조사업 수행의 근거가 마련됨(제108조)

< 방조제관리법 1조, 6조, 7조 >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간척지(干拓地)를 보존하고 농수산물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방조제(防潮堤)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게 함으로써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토를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방조제의 관리) 국가 관리방조제의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조사·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하고,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의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조사·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관장한다.

제7조(관리비의 부담) 국가 관리방조제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國庫)에서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와 지방재정에서 부담한다.

< 농어촌정비법 108조 >

제108조(자금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이 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본 사업은 태풍·해일·지진 등에 취약한 노후 방조제를 보수·보강함으로써 시설물 안전성 제고와 재해 예방을 추진하고 있어 공공의 안전을 위한 사업 목적이 타당함
- 재해대비 농업생산정비 중장기 계획('13~'30) 등 관련 국가 정책 기반 하에 국가·지방 관리 방조제의 피복석 및 제방 보강, 도로 보수, 부속시설 보수 등을 추진하고 있어 추진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국가 중장기 계획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형태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이라는 하나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설물의 규모 등에 따라 국가관리와 지방관리로 구분하여 사업을 지원하는 추진 체계가 적절함
 - ‘재해대비 농업생산정비 중장기계획(‘13~’30)’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음은 합리적이나, 5개년 단위로 수립되는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부처 차원의 중장기 전략(‘14~’18, ‘19~’23 등 3년 또는 5년 단위)과 변동하는 환경 변화 대응책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 재해대비 농업생산정비 중장기 계획(‘13~’18) : ‘30년까지 용수개발, 배수개선, 개보수 등 재해 예방 기반을 조성한다는 비전으로 수립되었으며, 1단계(‘68년~’12년) 정비한 1,608지구/14,583억원 대비 2단계(‘13~’30)에는 1,261지구/17,486억원 정비 목표
- 개보수 완료지역의 농지 염해피해 방지 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나, 방조제 개수 관점에서 당초 계획 대비 추진 실적이 미흡함
 - ‘사업 완료지역 염해피해 해소율’이라는 성과지표를 100% 달성하는 등, 해수로부터 농지를 보호하는 사업 추진의 성과를 도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단, ‘13년부터 ‘18년까지 290개소를 개보수 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는 207개소를 정비하는 등 당초 계획 대비 추진 실적이 미흡함
- 노후 또는 기후 변화 등에 따라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을 사전에 보수·보강하여 침수, 염해 등의 농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농업생산기반을 정비하는 상위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음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방조제 관리법,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라 방조제를 보수·보강하는 사업은 국가지방관리 방조제개보수사업이 유일하여 유사·중복되는 사업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추진 필요성이 인정됨
- 방조제 붕괴 방지 및 해수 침투 예방을 통한 안정적인 농산물 및 용수 공급 등 수해내용이 명확하나, 장기 계속사업(50년이상 수행)으로 사업추진 체계를 지속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직접수혜자는 방조제 내측 경작자/거주민과 방조제 상부 도로 이용자이고, 간접 수혜자는 재해 발생 시 농산물 수급 불균형에 따른 일반 국민으로서 수혜자 유형과 범위가 명확함



- 기존 방조제 설치의 목적을 유지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장기 계속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여건 변화를 반영한 지속적인 사업 추진 체계 정비가 필요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1)에서 국가관리방조제개보수는 국고 보조율 100%,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는 50%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현 시점에서 본 사업이 근거로 하고 있는 중장기 전략과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정 전략과 객관적 근거가 필요함
 - 방조제개보수사업 목표는 '13년부터 '30년까지 총 1,261지구 1조 7,486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사업 기간의 40%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20년 이후 물량(1,033개소)과 사업비(1조 4,212억원)가 과다하게 잔여한 것으로 판단됨
 - * '12년 행정·현지 전수조사를 통해 실제 지구별 필요사업 내역(제체승상, 배수갑문 교체·신설 등)을 조사하여 산정(기후변화 대응 재해대비 농업생산기반정비 중장기계획('13~'18))
 - 또한, 국가방조제 관리의 경우 남아 있는 물량이 '20년 이후에는 39개소로, 당초 목표 67개 달성이 원활할 것으로 보이나, 지방방조제의 경우 1,194개 목표 대비 994개가 잔여(83%)하여 해당 사유의 검토와 향후 추진전략의 조정이 필수적임
- 본 사업은 예산 규모 관점에서 연도별 차이가 ('12년 620억원 → '17년 370억원 → '20년 512억원) 크므로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본 사업의 추진 전과 후의 정량적 효과 차이는 산정하기가 불가능하나, 최근 5개년 내 개보수된 방조제에서의 염해 피해가 없어 경작자 재산 보호, 농산물 안정적 공급 등 공공 이익 실현에 기여한 점이 인정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사업시행지침으로 사업신청단계, 사업지구 선정, 시행계획수립, 사업발주 및 관리, 성과측정, 환류 등에 필요한 절차와 역할을 마련하여 사업을 적절하게 추진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서 사업 대상자, 지원자격, 지원대상, 사업자 우선순위, 사업 추진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지침서 내용은 방조제 관리법, 농어촌정비법,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을 갖추고 있음
 - * 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은 시설관리자(시·군, 한국농어촌공사)가 안전점검 결과 재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하면, 농식품부가 검토하여 대상지를 선정하는 구조
- 단, 사업대상지 선정시 선정의 우선순위가 적절히 반영되는 지에 대한 추가적인 지표가 필요함
 - * 지방관리방조제의 경우 지방비 확보, 정밀안전진단결과, 재해위험도평가결과 등을 고려하는 측면도 있으나, 신청수가 적어 우선순위 검토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임
- 본 사업은 예정지조사에서 사업 준공까지 단계별 프로세스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기준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시급성이 요구되는 대상지구가 예정지조사 신청에 누락되지 않는 한 사업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시, 도에서 제출된 방조제개보수사업 신청 지구는 동 지침에 따라 재해위험이 있는 지구 위주로 선정하여 예산 집행
 - * 연도별 신규지구 수 : ('17) 25지구, ('18) 26지구, ('19) 26지구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방조제관리법」, 「농어촌정비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지침을 규정하고 있으나, 부처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점검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사업추진 및 관리·감독, 자금배정, 이행점검 등에 관한 계획을 사업시행지침으로 규정하여, 시·도지사는 사업지구의 자금 운용관리상황을 수시로 확인 점검하고 예산회계 법령에 따라 사업비 검정 및 결산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본 사업에 대한 실질적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은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사업 시행자가 이행하고 시·도지사가 지도·감독을 수행하고 있으나, 부정수급의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인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보조금 교부 조건에서 자금의 사용 용도, 사업계획 승인 보고, 준공 정산 보고, 타 용도 사용 시 보조금 반환 명령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중
- 부정수급 사례는 없으나, 발생을 대비한 적극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공사 안전 및 품질 향상 등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19.11월 현장 점검 시 2개 지구에 총 36건을 지적하여 시정 조치)하는 등 사업 관리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방조제관리법 제1조에 근거하여 노후화된 국가 및 지방방조제와 그 부속물을 사전 보수·보강하여 재해·재난에 효과적으로 대비함으로써 간척지를 보존하고 농수산물의 유실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공공성과 추진 필요성이 인정됨
- 그러나, '68년 이후 장기간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사업 계획의 근거로 삼고 있는 중장기 정책과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어 재정비 필요성이 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의 수립이 시급한 시점임
 - 현재의 예산 규모와 추진 실적의 추세 상,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연장하여도 목표 시점('30년)에 1,261지구 개보수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사업은 중장기 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現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국가 對 지방방조제 비율을 조정하는 등의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함

3-2 정책 제언

- 사업의 목적과 효과달성을 위해 개보수 방조제 개소와 필요 예산의 예측과 사업 우선순위 선정에 대한 보다 정교한 체계화가 요구되며, 사업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모니터링 강화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협력 체제가 필요함
- 공사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품질 향상과 적정한 예산 집행을 위해,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현장점검 및 주기적인 집행현황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체계 수립 등 제도 개선이 권고됨



평가요약표

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명	노지스마트농업시범사업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0.9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8.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7.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7.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2.9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4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1.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변경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18-'19년 성과를 '20년 실증하는 단계임. ·대부분의 사업들이 온실재배를 지원해 왔다는 점에서, 노지영농을 지원하는 본 사업의 차별성은 인정되는 편임.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성 검증과 유사사업 분석을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후속사업 진행여부를 판단할 필요. 또한, '데이터수집활용의' 경우 추후 수집된 데이터의 개방, 민간 활용 등 중장기적인 활용방안 수립을 위해 노력할 필요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동 보조사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업융합 촉진법』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 제36조의2 및 제52조는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등 동 보조사업과 내용적으로 관련된 정책수립의 근거는 제공하고 있으나, 보조금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제공하고 있지 않음
 - 『산업융합 촉진법』 제17조제1항제7호는 융합 신산업 지원에 대한 출연, 보조 및 융자 등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산업 융합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동 보조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근거로 보기는 무리가 있음
- 광범위한 재정지원 근거규정이 되고 있는 『산업융합 촉진법』 제17조제1항제7호도 융합 신산업을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보조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강행·의무 규정은 아님

< 산업융합 촉진법 >

제17조(융합 신산업의 지원) ① 정부는 융합 신산업을 활성화하고 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7. 융합 신산업 분야를 발굴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 및 융자

- 다만, 노지채소 영농 스마트화라는 사업내용이 『산업융합 촉진법』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융합신산업,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 농업과 내용상으로 상치되지 않아 내용적 측면의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 동 보조사업은 국정과제 ‘83-3 기술 융복합 스마트 농업 육성’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사업으로 동 사업을 통한 2개의 실증단지 조성으로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술을 통한 농업의 선진화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정부에서는 스마트팜을 혁신성장 8대 선도과제로 선정(’17.11)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마트팜 확산방안(’18.4)’을 발표하였으며, 동 보조사업의 내역사업들은 이러한 정책기조와 연결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보조사업은 '18년부터 추진되었으며, '18년에는 노지채소 스마트팜 모델개발이, '19년은 노지작물과원 스마트영농 모델개발사업이 추진되었고, '20년에는 기 개발된 모델의 활용과 현장 확산을 위해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사업의 연속성과 전체 사업기간 등은 대체로 합리적으로 설정된 편임.
- 그러나, '18~'19년 사업이 기초 준비작업 성격이었던 점을 감안, '20~'22년 추진되는 시범사업에서는 물량·단가 도출 및 사업기획이 정교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는 인력 의존도가 높은 선별·포장·비품판별을 자동화하는 스마트유통 분야의 기술 실증을 통해 편리한 농작업 환경 조성 등 농업·농촌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실제, '19년 한국농산업조사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팜 도입 시 단위면적당 생산량 13.64% 증가하고 자가노동시간과 병해충이 각각 6.49%, 3.90%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보조사업은 실 수혜자 노지채소를 경작하는 농민으로 명확한 편이나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수혜자가 아주 광범위하지는 않음
- 그러나, 동 보조사업이 추후 긍정적인 결과를 창출할 경우 동 사업의 결과물이 예산사업의 형태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18년도 노지채소 스마트영농모델 도입 농가의 성과분석 결과, 5점 척도 기준으로 평균은 4.34점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동 사업의 추천 및 확대의향에 대한 평균 점수도 4.37로 높아 잠재적 수혜자의 범위는 넓다고 볼 수 있음
- 동 보조사업의 유사사업으로 동일프로그램 내에는 '스마트팜 실증단지 사업', '스마트원예 단지기반조성사업'이, 타 프로그램내 보조사업으로는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사업'이 있음
- 유사사업이 특정지역(혁신밸리) 온실 및 시설원예의 스마트화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지역적·내용적 차별성이 인정되나, 동 보조사업 시범지원이 종료된 후에 별도의 효과성 분석을 실시하여 시너지 창출의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동 보조사업이 노지작물에 대한 특화지원 기술을 축적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본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성 검증과 유사사업 분석을 통해 후속사업이 기획될 필요가 있음.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의 5가지 내역사업의 보조율은 50~100%로 되어 있는데, 공공적 성격이 강한 스마트팜 데이터 수집활용 부분만 국비 100%로 되어 있고, 나머지 내역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제1항 관련 별표 1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을 기재부와 협의하여 50~70%로 정하였음
- '20년 사업의 경우 자동화장비기계지원(지자체자본보조)은 보조율 70%, 기존시설 스마트화(지자체자본보조)의 보조율은 70%, 지역특화단지 기초기반조성(지자체자본보조)의 보조율은 70%, 사업단운영(지자체경상)의 「보조율은 50%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제1항 관련 별표 1에 따라 설정되었음.
- '20년 사업 중 데이터수집활용(민간경상보조)은 국비 100%로 노지작물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가공하여 국가 스마트팜 데이터 플랫폼으로 연계하는 부분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추후 수집된 데이터를 개방하거나 축적된 데이터를 민간사업자가 참여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5 사회적 가치 실현(가산점)

- ICT 정보기술이 소외되어 있는 농촌에 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노지작물 경작을 스마트화한다는 사업취지는 공공적·사회적 가치가 부분적으로 인정됨.
- 그러나 동 보조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 직접적인 수혜자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실현을 논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은 매년 사업추진계획 및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고 있으며, 공모절차에 따라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사업자 선정은 내·외부 전문가 참여하는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심사하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동 사업은 ‘노지작물과원 스마트영농모델개발사업 사업시행지침’을 통해 사업관리를 해왔으며, 일반적인 사항은 부처의 일반규정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따르고 있음
- 또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에 정산 및 반환, 회계감사 등에 관한 기준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보조사업실적 보고서 제출, 3억원 이상인 경우 외부검증기관에서 검증 조치 등)을 명시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19년에는 ‘노지작물과원 스마트영농모델개발사업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고 주관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점검, 전담 책임자 지정, 정기적 실태조사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감독을 추진했음.
- 그러나 매년 사업내용이 달라지고 있는 만큼 새롭게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고 점검체계도 정비해야할 필요가 있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동 보조사업은 시범사업 성격으로 추진되고 매년 사업내용이 변경되어 왔기 때문에 부정수급이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하는지 확인하기 힘든 한계가 있음.
- 그러나, 사업 목표 및 성과 향상을 위해 사업자 선정 이후 과제조정협의회, 중간 보고회,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면서, 현장의 문제점을 전문가 협의회 또는 다른 지자체에 설치농가 등과 공유하여, 개선 사항을 파악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사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업융합 촉진법』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으나 법령 조항들이 사업추진 근거를 뒷받침할 뿐 동 보조사업의 재정지원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지는 못하고 있음.
- 그러나 동 보조사업이 국정과제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인정되고 첨단 ICT기술을 활용한 농업기술의 스마트화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되는 만큼 시범사업으로서의 필요성은 인정됨
- 또한, '18~'19년에 기 추진된 동 사업의 성과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도 연장선상에 있는 동 시범사업을 마무리할 필요성이 있음
- 하지만, 동 보조사업이 노지작물에 대한 특화지원 기술을 축적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본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성 검증과 유사사업 분석을 통해 후속사업이 기획될 필요가 있음.

3-2 정책 제언

- 지역적·내용적으로 차별화되는 부분이 일부 있으나, 동 보조사업의 유사사업으로 '스마트팜 실증단지 사업',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사업'이,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사업' 등이 존재함.
- '20~22년 추진되는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성 검증과 유사사업 분석을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후속사업 진행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시범사업을 통해 기술적 데이터를 꾸준히 수집해 온 바, 이를 바탕으로 어떠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지도 후속사업 기획에서 제시될 필요가 있음.
- 국비 100%의 보조율로 추진되는 데이터수집활용(민간경상보조)의 경우 노지작물에서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활용을 통하여 민간의 이익창출을 도모할 수 있음.
- 동 사업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개방하거나 분석·가공하여 민간에 제공하는 등 데이터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농림축산식품부
사 업 명	농업가치및소비촉진제고
보조유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1.1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7.6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5.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7.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6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3.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2.0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1.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 2021년 ~ 23년 안에 일정수준의 감축 및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함. · 사회통합 및 식량안보의 관점에서 본 국고보조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사업의 가시적 성과가 불분명함. 특히 농정원은 본 사업의 주요 내역사업인 농업가치 및 정책홍보를 담당하나 일부 TV 프로그램 지원을 제외한 홍보사업의 효과성이 불분명함. · 본 사업의 구체적 목표와 성과를 평가할 지표가 불분명함. 특히 농정원이 주도하는 대국민 홍보사업의 경우 효과성에 논란의 여지가 있음. · 보조사업자인 농정원은 홍보 및 교육사업의 성과평가 체계를 개선하고 평가결과를 사업실행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임. 이외에 농정원 홍보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함으로써 소규모 예산감축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에 의해 추진되는 내역사업-농업농촌 가치홍보, 주요정책 홍보, 기타(현안 대응)-의 법적 근거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46조와 제4조의 2,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제시되어 있으나 국고보조를 통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46조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연구·홍보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증진하고 국민들이 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 조사, 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업인·농업 관련 단체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45조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의2(농업인의 날)

- ①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설립)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 인적자원의 육성, 농식품·농촌 정보화의 촉진, 농촌 문화의 가치 확산 및 홍보, 농업경영체의 역량 제고, 농수산물의 안전정보 제공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 25조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활동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와 정보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농어촌의 다원적 가치를 알리는 등 농업·농촌과 관련된 홍보사업과 그와 관련된 조사·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를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의 절차와 지원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본 사업의 목적은 농업·농촌 사회문화적 가치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제고, 우리 농축산물의 우수성 및 미래성장 동력 홍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기반 조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국정과제 8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사업임.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의 주요 내용은 농업 및 농촌가치의 홍보활동에 대한 국민평가(만족도)와 농업정책 이해도 변화 등을 통해 효과성을 평가할 수 밖에 없음.
-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정책만족도를 보이고는 있으나 국산 농산물에 대한 선호는 감소하고 있어 본 사업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근거가 확실한 것은 아님.
- 정리하면, 2017년 평가에서 지적되었던 적정한 성과평가의 신뢰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지적이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향후 본 사업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개발이 필요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중복성에 대한 우려는 적음.
- 직접적인 수혜자는 불분명하지만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식과 소비가 촉진되는 과정에서 농민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 수혜자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음.
- 내역사업의 하나인 ‘농업인의 날’ 지원(2019년 사업예산 560백만원)은 2019년도까지는 본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2020년도부터는 본 사업에서 제외되어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은 소규모 사업인데다 다양한 세부사업으로 나뉘어져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낼 수 있을지가 우려되는 바 향후 각 사업별 철저한 홍보관리와 역량집중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 본 사업 예산의 90%이상은 농업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를 위한 세부사업-농업농촌 가치홍보, 주요 정책홍보, 현안 및 이슈관리, 소비촉진 홍보-에 사용됨.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이 본 사업을 통해 제작하는 홍보동영상은 주로 농림축산식품부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을 통해 홍보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농식품부 온라인 홍보채널 콘텐츠들의 페이지뷰 수는 27,757천건임(페이스북 18,747건 + 유튜브 6,847천건 + 블로그 2,163천건)에 달한 것으로 보고되었음.
 - 그러나 농정원 홍보사업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살펴보기 위해 농정원이 제작한 유튜브 영상을 검색한 결과 상당수가 낮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어 유의미한 홍보효과가 있었는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었음.
- 또, 농업가치 및 소비촉진 사업을 실행하는 민간단체의 매칭 없이 국고로 100%의 비용을 보조하는데 대한 명확한 근거는 찾아보기 어려움.

< 국고 보조금 내역 >

구분	2018(결산)	2019(예산)	2020(예산)
민간단체 보조금	4,408백만원	4,337백만원	4,337백만원
	100%	100%	100%
민간단체부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	%
합계	4,408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100%	100%	100%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본 사업이 농촌과 농업에 대한 홍보와 인식제고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했다는 점이 인정됨(1점).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하고 있어 관련된 논란의 여지가 적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민간사업자인 ‘농림수산물교육문화 정보원’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 하고 있으며, 사업종료 후 정산을 통해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국고에 반납하도록 조치하고 있음.
- 단, 독점인 사업자가 비용절감을 할 유인자체를 줄이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의 효과적 집행이 이루어졌을 것인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잦은 점검과 보고를 통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사업진행에 따라 매주, 매월 실적보고 및 현장실사를 통해 부정수급 관리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사회통합 및 식량안보의 관점에서 본 국고보조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사업의 가시적 성과가 불분명함.
- 국내 농산물의 수요창출 및 수급 조절을 위해 홍보와 현장체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실효성이 약한 문제점을 보이고 있음.
- 특히 농정원은 본 사업의 주요 내역사업인 농업가치 및 정책 홍보를 담당하나 일부 TV 프로그램(‘맛남의 광장’ 등) 지원을 제외한 홍보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할 근거가 약함.
- * 해당 TV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규모는 35억미만으로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음.

3-2 정책 제언

- 홍보 및 교육사업의 성과평가 체계를 개선하고 평가결과를 사업실행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농정원 홍보사업의 경우 효과성 제고와 철저한 관리를 통해 일정수준의 감축(5%이내)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명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68.9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6.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1.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1.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2.9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4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1.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감축 · 동 세부사업은 2021년 ~ 23년 안에 일정수준의 감축이 필요함 · 지난 보조금사업 연장평가지 불용, 부정수급 등의 문제 등이 제기되어 예산이 지속 감축(매년 10%)되어 왔으나, 실집행률 저조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 정량적인 온실가스 감축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 등이 이루어져 왔으나, 담보여력 부족, 중도포기 등으로 예산 불용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고 실집행률도 저조한 수준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일정수준의 감축이 필요하며 농식품부가 좀더 책무성을 가지고 지자체와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집행을 면밀하게 지도·감독함으로써 체계적인 사업관리 구조를 마련할 필요. 또한, 지자체 이월 최소화를 통해 실집행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동 보조사업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4조는 동 보조사업이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는 농업경영체의 소득·경영안정 및 농업의 경영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지구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상기 2개의 법령이 동 보조사업 내용과 일부 합치되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나,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동 보조사업이 국정과제 83번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의 세부내용인 ‘환경친화형 농축산업’ 등과 연계됨.
 - 동 보조사업이 지향하고 있는 화석연료 사용을 자제,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 보급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환경친화형 농업을 꾀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방향과의 부합된다고 볼 수 있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보조사업은 '09년부터 시작되어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시설’과 ‘에너지절감시설’의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 다만, '16년 보조사업연장평가 결과에 따라 매년 10%씩 감액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
- 동 보조사업은 성과목표로 ‘연간 에너지절감량’, ‘에너지절감량 계획 대비 달성률’을 제시하고 있으며, 목표달성을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음



- ‘연간 에너지절감량’의 경우 지원대상별 절감량 산출 결과 3개년 평균으로 연간 에너지 48.2천TOE가 절감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간 온실가스 134.1천tCO₂가 감축된 것으로 추산 됨

구분	절감량(천TOE)		계수* (tCO ₂ /TOE)	이산화탄소 저감량(천tCO ₂)**
	목표	실적		
2017	60	60.8	2.78	169.0
2018	41.1	46.0	2.78	127.9
2019	33.7	37.9	2.78	105.4
3개년 평균		48.2		134.1

- ‘에너지절감량 계획 대비 달성률’의 경우 지표산식의 변동이 있었으나 ’17년 100.4%, ’18년 101.7%, ’19년 100%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 같은 정량적 성과는 동 보조사업의 프로그램 예산사업인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과 맥을 같이하고 있으며, 국정과제가 지향하는 정책효과와도 부합됨
- UN기후변화협약(COP21) 합의에 따라 온실가스 37% 감축 목표달성을 위해 부문별 감축 로드맵 수립·이행을 추진함에 따라 국제규약 준수에도 기여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보조사업의 유사사업으로 동일프로그램 내에는 ‘농업기반시설활용에너지개발’, ‘저탄소 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 구축’이, 타 프로그램내 보조사업으로는 ‘원예시설현대화’가 있음
- 동 보조사업이 지열, 지중열, 목재펠릿 등의 시설을 지원하는데 반해, 유사사업 중 ‘농업 기반시설활용에너지개발’은 태양광, 소수력, 풍력발전을 지원하고, ‘원예시설현대화’는 원예 생산시설 현대화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차별화가 인정됨
- 유사사업 중 ‘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과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 구축’은 지원대상이 각각 에너지소비업체와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라는 점에서 지원대상과 내용이 상이
- 그러나 동 보조사업과 ‘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 모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지원한다는 점은 동일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온실가스 저감 지원 사업’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



- 동 보조사업은 시설재배 농업인, 지자체가 직접적인 수혜자이나 온실가스배출 저감을 통해 환경개선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수혜자를 광범위하게 설정하는 것이 가능
- 동 보조사업 시행 이후 시설재배 농가의 난방비 비중은 감소하고, 지열난방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 * 난방비 비중 : ('10) 31.4% → ('15) 26.1% → ('16) 23.4% → ('17) 22.5% → ('18) 22.0%
 - * 지열난방 비중 : ('11) 0.3% → ('13) 0.8% → ('15) 1.6% → ('17) 1.7% → ('18) 3.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별표1 122호에 따라 내역(내내역) 사업별 보조율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30~70%),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50%) 등 유사사업과 비슷한 수준의 보조율로 설정되어 있음

구분		18년	19년	20년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자체자본보조)	신재생에너지시설	60%	60%	60%
	목재펠릿	30%	30%	30%
신재생에너지시설(민간경상보조)		-	100%	100%
에너지절감시설(지자체자본보조)		20%	20%	20%

- 동 보조사업에 대한 중장기 추계와 산출근거(물량 및 단가)가 제시되어 있으나, 그간 담보여력 부족, 중도포기 등으로 예산 불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의 예산이월이 반복되어 실집행률*이 저조한 수준임

* '16~'19 평균 실집행률 : 71%

- 이러한 상황을 반영, 효율적 재정투입을 위해 일정규모의 예산을 감축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 추계도 사업이력을 반영하여 보수적인 예산투입규모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1-5 사회적 가치 실현(가산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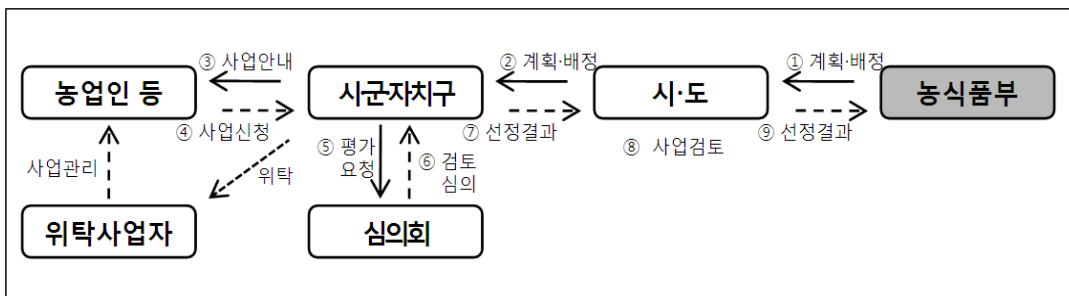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통해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실현에 부분적으로 기여한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동 보조사업이 집행부진 등의 문제를 노출했던 바, 사업확대 등으로 정책효과성이 제고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은 별도의 규정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며, 사업시행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보조사업자 및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농업인 등 사업수혜자는 지자체에 동 보조사업을 신청하고, 각 지자체는 자체 농림축산심의회를 활용하여 평가 후 예비사업자, 최종사업자를 선정하며, 농업인 등의 사업시행 사항을 관리감독 하는 구조로 추진되고 있음
- 농업인 등 사업수혜자가 지자체 ‘농림축산심의회’의 평가를 통해 선정되도록 하고 있어 공모의 형태를 띄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사업시행지침에서 사업 주관기관, 보조사업자 및 관련 기관의 자금집행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 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라 수행하고 있음.
- 사업관리를 위해 농식품부는 분기별 1회 이상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추진실태 점검하고 있으며 10억원 이상 규모의 사업자는 집중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음
- 또한 지자체의 장은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사업대상자의 사업실적 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 확인 시 예산지원 축소 또는 기 교부액 회수 조치하도록 하고 있음



- 주요 시설의 설계·시공·감리 시 관계법령에 따라 효율성 및 안전성이 높은 시설로 시공하도록 하며,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시험성적서,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원가계산서를 발급받은 제품을 사용토록 하여 원가 부풀리기 시공 등을 방지하고 있음
- 이와 함께, 총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의 경우 반드시 지자체장이 선정한 감리업체를 통해 공사감리를 실시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을 포함한 시설원에 관련 사업에서 최근 5년간 170건(2,823백만원)의 부정수급이 적발되었으나, '17년 이후의 부정수급에 대한 자체·외부 적발실적은 없음
- 다만, 사업포기, 저조한 실집행률 등을 고려할 때 부정수급 관리 못지않게 수요발굴과 원활한 사업집행을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주요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4회), 사업추진실태현장점검(4회), 워크숍 및 권역별 설명회 개최(워크숍 1회, 권역별설명회 9회) 등을 추진함.
- 한전과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동 보조금을 지원받는 농가가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함.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을 통해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을 설치하는 농가에 사업비의 일부 지원*함(한전 농어촌상생기금 활용)
- * 지원단가: 농가당 70천원/kW / 지원한도: 최대 70백만원/호]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사업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법적근거를 두고 추진되는 사업임.
- 동 보조사업이 국정과제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인정되고 정량적인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창출하고 있어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됨
- 최근 5년간 다수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되는 등 운영에 문제가 있었고, 중도포기 등으로 인해 사업예산의 불용이 발생하는 등 사업 디자인에 대한 문제와 적정예산의 투입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일정수준의 감축이 필요함
- 부정수급 방지 및 집행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등으로 부정수급이 줄어들고 부처의 집행률이 개선되고 있으나
- 지자체 이월이 반복되어 발생함으로써 실집행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재정투입의 효율화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16~'19 평균 실집행률 : 71%

3-2 정책 제언

- 단기간 사업추진이 어렵고 설계, 시공 분리가 가능한 지열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실집행 제고를 위해 농식품부가 좀 더 책무성을 가지고 지자체와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집행을 면밀하게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음
- 실집행률에 대한 상당한 개선의 여지가 있고, 부정수급 등 수요부족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던바, '19년부터 추가된 신재생에너지시설(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는 보조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수혜자의 책무성을 높이는 보완책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지자체 이월 최소화를 통해 실집행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과 사업개선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명	농작물재해보험 운영비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2.2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8.2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9.4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1.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1.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5.8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4.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2.0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2021년 ~ 23년 안에 일정수준의 감축이 필요함. · 기후변화와 이상기후가 반복되며 농가소득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만큼 재해보험의 적용범위와 가입률을 제고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한 운영비 지원규모를 산정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 현재의 사업방식은 보험사의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 운영비를 철저한 관리가 불분명한 가운데 100% 지원할 뿐만 아니라, 운영비 지원규모를 가입자의 선형함수로 설정하고 있어 규모의 경제효과가 반영되어 있지 않음. · 2026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는 사업의 내실화를 앞당겨 실행하고, 보조사업자의 운영비 내역 관리를 통해 가입자숫자는 증가하되 건당 운영비를 낮추는 것을 통해 국고 지원규모를 소폭 감축할 것을 제안함.(다만, 동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동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편성 할 필요 있음)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농어업 재해보험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는 농어업 재해보험법 제19조에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으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100%를 지원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농어업 재해보험법 제19조 >

제19조 (재정지원)

-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운영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을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기후변화에 의해 농작물에 대한 재해규모와 빈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후재해 리스크 대응을 지원하는 본 정책의 타당성이 인정됨.
- 현 정부의 국정과제(82번 농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은 재해로 인해 농가가 겪게 될 소득불안정성을 언급하고 있어 본 사업과 직접 연관되어 있음.
- 단,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식'이 중장기적으로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에 필수불가결한 조건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기후변화와 극한기후에 의해 농가소득의 불안정성이 예상되는 만큼 본 사업에 의해 지원되는 품목범위를 점차 넓혀감에 따라 사업예산이 증가하는 것은 타당함.
- 연평균 사업내역은 2018~2019년 약 533억원, 2020년 1,118억원, 이후 2021~2026년 916억원임.
- * 2020년 사업예산이 급증한 것은 2018년 미지급금(304억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임.



- 2020년까지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2026년까지 가입률을 제고시키며, 2027년 이후부터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꾀한다는 단계별 목적설정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음.
- 대상품목을 확대함에 따라 가입률이 높아질 것이며 사업의 내실화는 사업초반부터 추진되어야 함.
- 본 사업의 성과지표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로 목표치보다 높은 실적을 낸 바 있음.
-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통해 단기적으로 농가소득의 불안전성을 줄이는데 기여했을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가 농가소득의 안정화(상위목표)와 직접 관련성이 있다는 주장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 ‘재해로 인한 농작물피해가 발생하면 보험으로 보상하고’,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식’이 중장기적으로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것 인지에 대한 인과관계가 불분명함.
- 특히 보험가입으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경우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는 농가와 지자체(간접 수혜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재해에 대한 대응력이 낮아질 수도 있음.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재해보험 사업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본 사업과 가입자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재해보험의 순보험료 50% 지원)은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춘다는 점에서 정책목표가 동일함. 두 사업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근거가 불분명함.
- 2017년까지 본 사업이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의 내역사업이었다가 분리.
- 보조사업의 실수혜자는 보험사업자이며 이에 의해 보험료가입부담이 줄어드는 농민이 잠재적 수혜자가 될 수 있어 실수혜자는 제한적이나 명확하며 잠재적 수혜자 역시 명확하고 광범위한 편임.
-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재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농가의 기후대응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만큼 농가의 재해리스크를 줄이는 효과적 정책의 하나로 보험사업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은 인정됨.



- 단, 운영비의 100%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이나 국가가 보험료를 줄이는 노력을 과하게 할 경우 민간(농가)의 기후재해에 대한 적응노력을 구축할 수 있는 바 제도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보험사의 재해보험 운영비용이 비용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결과를 차기에 반영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농가의 농작물 재해 보험료가 아닌 보험사의 재해보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보험료 산출 및 운영비 부가 근거(내역 및 부가 방법), 원가분석에 대한 검토가 없이 사업규모가 적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함.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국정과제 82번인 농가소득 안정화와의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음(1점).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사업을 위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2019년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을 따르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2019년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시행 지침(자금 집행, 정산, 보조금 회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을 마련하여 보조금집행 및 정산을 관리하고 있어 집행의 적정성 관련 논란의 여지는 적은 것으로 판단됨.
- 사업지침은 사업자의 조건이나 행정절차에 대한 규정으로 본 사업에 의해 지급되는 국고 보조금 집행이 적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 즉, '운영비' 설정의 적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함.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 약정서 제12조(보조금 회수의무)를 통해 보험상품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 및 재해보험가입자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허위 계약, 또는 약위반을 할 경우 보조금을 회수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어 부정수급을 관리하고 있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기후변화와 이상기후가 반복되며 농가소득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만큼 재해보험의 적용범위와 가입률을 제고할 필요성은 인정됨.
- 단, 단독 사업자가 경쟁없이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을 보여왔음.

3-2 정책 제언

- 재해보험에 대한 국고보조율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지자체나 농가가 재해에의 적응력을 높여 재해관련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과 행동을 구축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단기적으로는 2026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는 사업의 내실화를 앞당겨 실행하는 한편, 보조사업자의 운영비 내역 관리를 통해 가입자숫자는 증가하되 건당 운영비를 낮추거나 국고보조율을 낮춰 2023년까지 일정수준 감축(10%이내)할 것을 제안함.
 - 이와 함께 2026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는 사업의 내실화를 앞당겨 실행할 것을 제안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농림축산식품부
사 업 명	농촌고용인력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69.5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4.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1.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18.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5.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본 보조사업은 사업방식 변경을 권고함. · 동 사업은 농촌의 인력수급의 원활화를 목표로 2019년 기준 50개 지역 농협내 인력센터와 고용인력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인력수급의 문제는 한국 농촌사회가 지속적으로 겪어온 문제로 해당 사업의 단기적인 인력공급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이고 전국적인 문제임. · 현재의 사업방식은 각 지역 농협에서 상담 전담인력이 인력을 모집하는 방식이라, 전국적인 서비스나, 규모를 증가시키는 scale-up에 적합하지 않으며, 지역적 형평성의 차원에서 일부 농협을 지원하는 현재의 보조사업 방식은 적절하지 않음. · 지자체, 온라인/오프라인 인력 중개 기업, 사회적 기업 등을 다양한 단체를 활용하여 전국적으로 농번기에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체인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하여, 구직자에게는 전업직장(full-time job)을, 구인농가에는 안정적인(sustainable) 인력 수급이 가능하게 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사업방식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본 보조사업은 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2019년 50개소, 2020년 70개소)를 통하여 구인구직 알선 중개 및 영농작업반 운영, 교통, 숙박, 수송지원 등의 업무에 대한 지원 사업임.
- 해당 사업은 넓은 의미에서 농업, 농촌, 식품산업기본법 제 8조 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증대를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있음.
- 법령상 근거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법령의 목적에는 부합함.
- 법령상 강제규정은 없음.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 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 인력, 농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 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동 사업은 농촌지역 고용인력 지원을 목적으로 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 50개소에 대한 센터운영비 (총 예산액의 약50%)와 농촌고용인력에 대한 운영비(교통, 숙박, 교육비 등, 총 예산액 대비 50%)으로 구성되어 있음.
- 농촌의 고용인력 지원에 필요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있으나, 국정과제와 직접적인 근거는 없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세부사업은 농촌지역 고용인력 지원을 위한 센터운영 및 인력운영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조사업과의 관련성이 인정됨.
- 다만, 농촌지역 인력 수급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이며 오랜 기간 동안 문제로 제기된바, 현재와 같이 일부 농협을 중심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임.



- 이에 지자체나, 온라인/오프라인 인력중개업체,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참여자를 염두해 두고, 이들과의 협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농가의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은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유상중개실적을 성과지표로 사용하고 있음.
 - 2020년 1월 제출된 기초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은 134천건의 중개를, 2019년은 246천건을 중개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음.
 - 인력중개센터 이용자들에 대한 만족도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우수한 것으로 집계됨.
- 현재 성과 지표는 동 보조사업의 효과성이나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지 못함.
 - 해당 인력중개센터를 이용한 농업인(실험군)과 이용하지 않은 농업인(대조군)의 객관적인 성과(예: 농업 생산량, 매출액, 농가소득)를 비교하여야 정책의 효과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정보가 부재하므로, 추가적으로 통계를 수집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정책목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인력수급의 문제는 한국 농촌사회가 지속적으로 겪어온 문제로 특히 농번기의 단기 인력수급은 구조적이고 전국적인 문제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 농촌 인력수급과 관련된 사업들*은 존재하나 본 사업과 사업 목적 및 대상 등에서 차이가 있어 중복의 우려는 크지 않음.
 - *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사업(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농식품부), 외국인근로자 근무처추가제도(고용노동부), 쿼터확대 및 외국인근로자 처우 개선(고용노동부) 등
 - 도농협력일자리연계사업(농식품부)은 구인농가와 농촌 및 도시의 구직자를 연계, 농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 및 유휴인력 활용하는 사업으로, 본 보조사업과 성격이 가장 유사하나, 2018년 중단되어 중복의 우려는 없음.
 - 일부 지자체에서 농산업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시군단위에 그치고 있어, 본 사업과 직접적으로 중복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 동 보조사업에서 책정한 “인력운영비” 중 30%(총예산액대비 15%)가 농업 고용인력 조달에 소요되는 교통, 수송, 숙박비 제공에 사용되고 있음..
- 이러한 보조를 전체 농민이 아닌, 50개 센터(2019년 기준)가 운영 중인 특정지역에서 운영하는 것은 형평성의 측면에서나, 농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 해당 보조사업은 전체 농민, 혹은 농림수산업 종사자가 아닌, 50개 센터(2019년 기준)가 관할하는 농민들이 고용하는 고용인에 대한 인건비 보조의 성격이 크므로, 수혜대상자가 넓다고 보기 어려움.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사업예산은 정상적 성격의 경비로 구성되어 있고, 최근 2년간 인력센터 운영비는 총 예산액의 50%를 차지하였음.
- 2018회계연도 국회 결산시 시정요청에 따라 인력센터 운영비의 비중을 2020년 예산에서 45%로 감소하였으며, 예산 기준으로는 2018, 2019년도 대비 132백만원 증가함.
- 2018년 실행률은 62.9%이나, 2019년 실행률은 89.9%로 상승하여 시계열 추세 상, 실행률이 개선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음.
- 한편, 2020년 지원대상 센터의 수를 50개에서 70개로 확대한 바, 실행률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기초보고서에서는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연관이 있다고 사업 목적을 설명하고 있음.
- 다만, 농민들의 생활수준이 개선되었음을 보여줄, 농촌 이탈율 감소, 농가소득 증대 등의 지표와, 동 사업을 통해 농촌 고용인력으로 일자리를 구한 노동자들의 임금, 생활수준, 인적 자원 증대 등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통계 지표들이 추가적으로 수집될 필요가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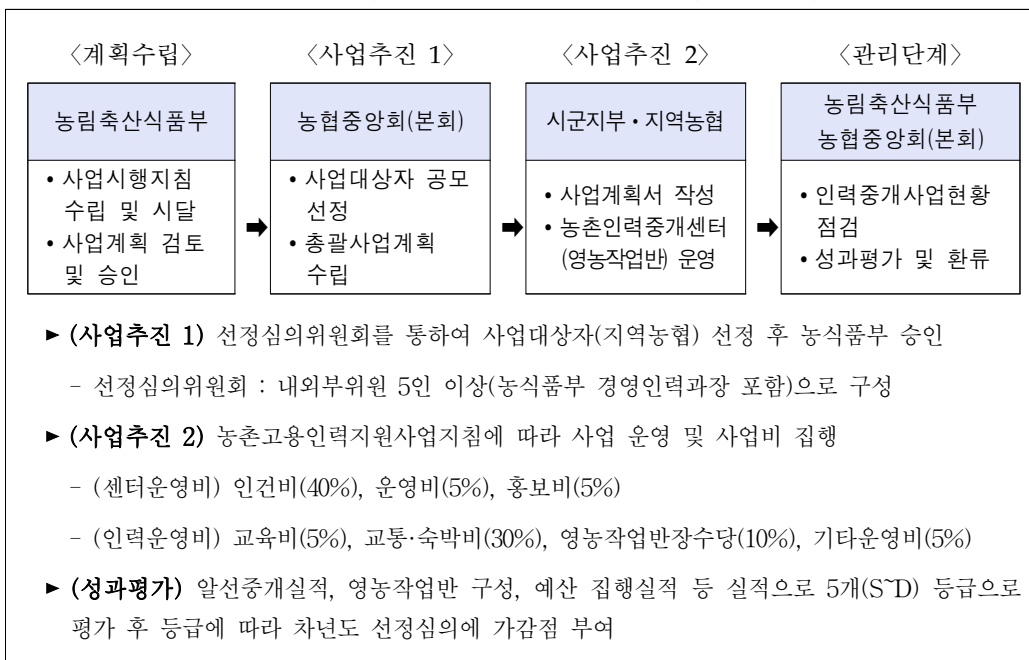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농식품사업시행지침(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을 준용하고 있음.
- 이를 준용하여 간접보조사업자인 농협중앙회를 통하여 사업자 선정 등을 진행하고 있음.
- 그러나, 인력중개 서비스는 시군지부 지역 농협에게만 입찰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인력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민간기관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므로 형평성 차원에서 우려의 소지가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사업의 집행, 정보공개, 사후 점검 등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과 농식품사업시행지침에 의거하여 실행중임.
- 집행 및 이후 프로세스는 아래의 그림과 같음.

<사업자 선정평가 및 관리·감독, 보조사업자의 정산 및 반환, 회계감사, 정보공시 체계도>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과 농식품사업시행지침에 의거하여 실행중이며 특기할 사항은 없음.
- 최근 2년간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없어 부정수급 관리에 대해 특기할만한 우려점은 없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반기 1회 서면점검과 상하반기 15개소에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 중임.
- 2019년기준 50개 인력센터 중 15개소만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확대가 필요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사업은 농촌의 인력수급의 원활화를 목표로 50개 지역 농협내 인력센터와 고용인력 운용상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 농업 종사자의 감소는 경제력 발전에 따른 보편적인 현상이며, 한국내에서도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50개소를 특정하여 보조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려움.
- 또한 인력중개기능은 농협지부가 아닌 민간기업에서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이므로 농협 지부에 국한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3-2 정책 제언

- 농업 인력의 감소는 계절적이거나 한시적으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매년 반복되고 있는 문제임.
- 농번기 peak season에 급증하는 인력수요는 전국적으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사업자들이 있다면 효율적으로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음.
- 이에 지역 농협지부에서 별도로 인력수급을 운영하는 것 보다, 경작 작물, 기후 등을 고려하여 농번기 초과인력수요에 맞추어 전국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 시 지자체, 농협, 여타 인력수급 기업 등을 포함하여 효율적인 사업모델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 이 계획에 따라, 농업 교육을 받은 임시 근로자들이 여러 지역에 농번기 일정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노동력을 공급한다면 교육훈련이나 행정비용이 감소할 것임.
- 농업인력 수요 변화에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업 생산의 경험이 있는 생산자 단체, 온라인/오프라인 인력소개소, 사회적 기업 등 사업자의 대상을 넓게 설정하고, 전국적인 계획의 틀 안에서 지역의 니즈를 반영하도록 사업방식을 구상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농림축산식품부
사 업 명	농촌다원적자원활용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0.0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3.6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6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4.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4.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6.4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4.4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사업방식변경 · 집행을 저조로 이를 제고할 수 있는 형태로 사업방식변경이 필요함 · 다원적자원활용 사업의 3년 평균 실집행률 58.9%으로 낮은 편이며 이는 지자체별로 농업유산 보전관리 계획수립 시행 등에 따라 불용액과 이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익년도 예산 교부 외에도 강력한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사업방식변경이 필요함 · 사전심사절차강화, 실집행률에 비례하여 차년도 예산 감액 기준 마련 등 실집행률 제고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내실 있는 운영과 해당 지자체의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 및 자생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지자체의 지속적인 사업 의지에 대한 판단 조향을 추가하여 사업자 선정이 필요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농촌다원적자원활용 사업은 「농업인 삶의 질 법」 제30조의2에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나 그 내용이 포괄적임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는 기지정된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역의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계획을 수립·시행에 지원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지원의 법적근거가 존재
- 내역사업 농업유산보전관리는 세계중요농업유산 모니터링과 보전관리 지원을 목적으로 하여 제30조의 2의 제4항에 따라 명시적 근거를 가짐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 2 >

제30조의2(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활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자원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중 략)

④ 시장·군수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전 및 활용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동 보조사업은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방향에 부합되지 않으며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의 수혜자가 지역개발 중심으로 되어 있어 잠재적 수혜의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볼 수 없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의 내역사업은 다원적자원활용과 농업유산 보전관리로 나누어져 있어 대체적으로 합리적으로 구성으로 되어 있음
- 농촌다원적 자원활용의 성과지표 중 하나를 농업유산방문객 증가율(%)로 산정해 왔으나 '18년 예산 24억에 20% 방문객 증가하였고, '19년 실집행 예산은 14.6억으로 증가율이 6% 밖에 되지 않아 보조사업의 효과가 명확하지 않음



- 부처 소명에 따르면 ‘21년에는 기존) 농업유산 지역 방문객수 → (변경) 농업유산의 특정 지역(홍보관 등) 방문객 수로 성과지표 변경을 검토 중으로 보조사업 효과를 정량적으로 판단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농촌다원적 자원활용이 본질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성과를 현재의 지표는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성과지표 개선이 필요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사업 추진 및 자생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국가 보조금을 통한 사업의 수행은 적절하나, 장기적으로 입장료 수입 등을 사업단 활성화 재원으로 활용할 방안 강구가 필요
- 농업유산으로 지정되면 1차 수혜자는 해당지역과 지자체이며, 세계농업유산 등재에 따른 국가적 이미지 제고가 있을 수 있으나, 국민이 그 가치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지가 모호하기 때문에 잠재적 수혜자가 광범위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부처의 소명대로 현재 유튜브 등 SNS 채널 활용, 농업유산 지역의 특산물·농산물, 축제 개최 등 대국민 홍보, 중학교 대상 자유학기제 공모 등을 진행하면서 잠재적 수혜자 범위를 넓히려는 확장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국민의 인식 증진에 대한 정량적 평가 자료가 부재한바,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음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¹²²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에 해당 한다고 판단하여 다원적 자원활용(지자체경상)의 경우는 70%, 농업유산보전관리(지자체경상)의 경우 50%, 농업유산보전관리(민간경상)의 경우는 100%를 지원하고 있는지 그 객관적 적정성은 모호함
- 다원적자원활용 사업의 3년 평균 실집행률 58.9%으로 낮은 편이며 이는 지자체별로 농업유산 보전관리 계획수립 시행 등에 따라 불용액과 이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사업방식변경이 필요함



- 부처의 소명에 따르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정 후 익년 보조금 교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의성군('18년 10월 국가농업유산 지정)과 완주군('19.10월)의 실집행률 비교하였을 경우 유산 지정 익년 예산 교부('19년 3월)를 받은 의성의 경우 실집행율 54.6%이며, 지정 해당해 교부('19년 11월)를 받을 완주의 경우 실집행율 0%을 보이고 있다고 소명하고 있음
- 하지만 익년도 예산교부로도 실집행률이 많이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사업방식변경일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기준인 '주민의 참여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 유지',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증진에 기여' 항목과 사회적 가치의 세분 분류별 의미 중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에 따라 사회적 가치가 높은 편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농업인 삶의 질 시행규칙 제2조의6(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등 절차)에 따른 ‘자문위원회’ 설치와 심의를 거쳐 최종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함.
- 지정된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역의 농촌다원적사업계획서에 대해 검토 후 1차년도 사업비 교부, 연차별 사업비 교부에 따라 (1차년도) 보전관리 계획 등 수립, (2차년도) 주민협의체 교육, 전통기술 계승 등 보전관리 (3차년도) 홍보, 관광상품화 등 가치제고 노력 사항에 대해 교부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농촌다원적자원활용사업 시행지침」을 근거로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을 파악하고 있음
- 시군의 분기별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자금 배정(시도는 시군의 자금수요를 파악한 후 자금교부 신청),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추진현황, 정부지원자금의 활용현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농촌다원적자원활용사업 시행지침」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부정수급 관련 사업관리 모니터링(제30조), 보조금 부정수급자 관리(제31조), 부정수급 금액 환수 등 제재(제78조),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구성·운영(제83조) 등을 규정하는 등 부정수급과 관련한 내부규정을 마련·운영하고 있어 부정수급 관리가 적정해 보임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해당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농촌다원적자원활용 사업은 「농업인 삶의질 법」 제30조의2, 제38조에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어 농업유산의 복원·발굴하여 주변 환경정비 및 활용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등 농업자원의 다원적자원활용 측면에서 연계성이 높음
- 다원적자원활용 사업의 3년 평균 실집행률 58.9%으로 낮은편이며 이는 지자체별로 농업유산 보전관리 계획수립 시행 등에 따라 불용액과 이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사업방식변경이 필요함
- 농촌다원적 자원활용의 성과지표를 농업유산방문객 증가율(%), 농업유산지정 확대수로 정하고 있어 동 보조사업의 운영 목적, 법률적 근거, 효과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음으로 방문객 증가율(%)을 방문객 수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3-2 정책 제언

-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내실있는 운영과 해당 지자체의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 및 자생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지자체의 지속적인 사업 의지에 대한 판단 조항을 추가하여 사업자 선정 필요함
-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방식변경이 제안함
 - (사전심사절차강화) 지원대상 사업 선정기준 강화, 집행률 부진 사업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 등 사업방식 개선 추진, 행정 절차 이행 관련 사전 체크리스트 작성 의무화, 구체적 이행계획 제출 지자체 신청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 부여 등
 - (감액기준마련) 집행률 부진 사업에 감액기준 마련, 예를 들어 집행률 50% 미만의 경우 차년도 예산 미반영 등 감액기준 마련 등의 사업방식 변경 고려가능



평가요약표

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명	농업용수관리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7.8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7.8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6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1.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1.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5.2
1-5. 사회적가치 실현	3.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0.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 감축(농촌용수국제협력사업 21년말 폐지), 사업방식변경(농업용수 수질조사 및 개선) · 농촌용수 국제협력의 21년말 폐지에 따른 일정수준의 감축이 필요함 · 저수지와 담수호의 수질현황, 중장기 계획 만기 도래 등으로 인해 사업을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 수질측정망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담수호 수질개선사업 추진을 검토하는 등 수질개선사업의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함(수질개선사업) · 농업용수관리 자동화 사업의 중장기 재정 추계를 사업추진 계획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음(2023년 이후 예산이 18,600백만원으로 고정) · 농촌용수 국제협력의 경우 농어촌공사 자체 예산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지하수 자원관리의 경우 현재 2021년까지의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바, 2022년 이후 부터는 새로운 계획 수립에 따라 추진될 필요가 있음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농촌용수관리 및 내역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는 명확하고 구체적임
 -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5조 1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개발·이용 및 보전 등을 위하여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함
 - 수질조사 및 개선과 관련하여 친환경농어업법 제10조와 제11조는 수질 개선 등 농어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어업 용수 오염 방지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조사 및 평가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지하수 자원관리와 관련하여 지하수법 제5조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함
 - 농촌용수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농업식품기본법 제13조는 정부는 국제협력 강화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농업가물 모니터링 및 평가·분석과 관련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와 제29조는 국가가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중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가물 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내역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는 명확한 편임
 - 농어촌정비법 제108조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 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농어촌정비법 >

제15조(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개발·이용 및 보전 등을 위하여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수질을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농어촌용수구역을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08조(자금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이 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친환경농어업법 >

제10조(농어업 자원 보전 및 환경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 농어업 용수, 대기 등 농어업 자원을 보전하고 토양 개량, 수질 개선 등 농어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경지 개량, 농어업 용수 오염 방지,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농어업 자원·환경 및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업 자원 보전과 농어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 지하수법 >

제5조(지하수의 조사)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농업식품기본법 >

제13조(통상 및 국제협력) 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외 통상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며, 상호주의와 국민경제의 발전 수준에 맞는 국제협력 강화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

제3조(책무) ①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9조(가뭄 방제를 위한 조사·연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가뭄 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야 한다.

< 재난안전법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목적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관리·이용·공급을 통해 농업인에게 양질의 농촌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것임
 -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 대응에 관한 국정과제(56)와 연관이 있으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뭄 TF를 운영 중임. 또한 본 사업(농업가뭄 모니터링 및 평가·분석) 운영 성과를 활용, 농업용수 분야에 대한 가뭄 예·경보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월 실시하고 있음
- 수질개선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농업용수를 공급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유지·향상하는데 기여하는 사업으로 국가 시책사업으로서의 성격이 타당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의 구성은 대체로 합리적임
 -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는 저수지, 배수장 수문 조작을 인력 이용 수동조작에서 원격자동조작화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 수립된 중장기 계획에 따라 추진 중임
 - 농업용수 수질 조사 및 개선은 수질이 농업용수 관리목표 IV등급을 지속적으로 초과하는 87개 저수지에 대해 인공습지, 침강지 등 자연정화시설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 수립된 중장기 계획에 따라 추진 중임
 - 지하수 자원관리는 지하수를 보전하고 관리하는 사업으로 농업용수이용합리화계획('14.12, 농식품부)을 통해 2021년까지 352개 농어촌용수구역에 대한 지하수자원관리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임
 - 농촌용수 국제협력은 ICID, INWEPF 등 농업용수 관련 국제회의를 개최하거나 참여하는 사업임
 - 농업가뭄 모니터링 및 평가·분석은 강우량, 저수율 등 가뭄지표 상시 모니터링 및 가뭄 예측 향상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수행 하는 사업임
- 농업용수 수질 조사 및 개선 사업의 사업구성 재검토 할 필요가 있음
 - 농업용수 수질 조사 결과를 보면, 저수지에 비해 담수호의 수질이 더욱 좋지 않지만, 수질개선사업은 저수지 87개소만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음
 - 수질이 상대적으로 더 좋지 못한 담수호에 대한 수질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할 필요가 있음



- 계획상의 목표 달성도가 양호함
 - 수질개선사업 추진율(%), 수질개선정도(%), 물관리자동화율(%) 지표의 달성도가 97~111%로 높음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를 통한 재해대응 능력 강화, 수질 조사·개선 및 지하수 자원관리를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용수공급은 농업인이 안전하게 영농하도록 하는 정책목표와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으며, 국가의 임무로 판단되므로 국고보조사업으로서의 필요성이 인정됨
 - 농식품부와 환경부 모두 가뭄 조사 및 모니터링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가뭄 조사 및 모니터링의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 별도의 사업 추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보조사업의 직접수혜자는 한국농어촌공사이며 간접수혜자는 농업인과 일반 국민으로 사업의 공공성을 감안할 때 국가 보조 사업으로서 시행되는 것이 적절함
- 다만 농촌용수 국제협력의 경우 물관련 국제회의(ICID, INWEPF 등) 개최 및 참여를 통해 물 관리 제도 도입, 기준 마련 등에 선제적 대응한다는 취지는 국가에 유익하나, 민간의 참여를 보조해주는 것이 아니라 관련 실무자의 참여를 지원하는 것으로 농어촌공사 자체 예산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중장기 사업계획을 근거로 재정지원하는 등 재정지원 규모 산정의 적정성이 인정됨
- 수질개선사업은 수질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질개선이 필요한 87개 저수지에 대하여 '26년까지 사업추진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총사업비 3,805억원)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재정지원을 검토하는 등 재정지원 규모 산정의 적정성이 인정됨
 - 수질개선사업은 수질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질개선이 필요한 87개 저수지를 '26년까지 수질개선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임



< 수질개선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 >

(단위 : 억원)

구 분	총계획	'19까지	'20계획	'21~'26
사업량	87지구	36지구 준공	3지구 준공	48지구 준공
사업비	3,805	1,549	287	1,969

- 지하수 자원관리의 경우 현재 2021년까지의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바, 2022년 이후부터는 새로운 계획 수립에 따라 추진될 필요가 있음
- 농촌용수관리 자동화사업 역시 '30년까지 농어촌공사 93개 지사 관리면적의 90%(485천ha)에 대해 자동화 도입을 목표(총사업비 4,765억원)로 하여 추진 중이며, 이를 근거로 재정지원을 검토하는 등 재정지원 규모 산정의 적정성이 인정됨
- 다만, 재정지원의 목표와 실재 재정지원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으므로 연차별 투자계획 등 재정지원 규모의 재산정은 지속적으로 검토 할 필요가 있음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농업인에게는 태풍, 홍수, 호우 등으로 농경지가 침수될 경우,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며 수질 조사 및 개선의 경우 대부분의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헌이 큰 사업임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절차는 적정함
 - 보조사업자는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 및 국회 심의과정에서 농어촌공사(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있으며 보조사업자가 시공업체 선정, 연구·조사용역 시행 등 민간업체 선정시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등에 따라 공개입찰을 추진하는 등 보조사업 관리가 투명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보조사업자(한국농어촌공사)가 시설설치 사업 추진, 연구·조사 용역, 장비·물품 구매 등을 추진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등에 따라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하고 있으며, 보조사업자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연초 사업시행계획 승인(농식품부)을 요구하며 연말에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 집행 관리체계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의 사업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집행관리, 정산 및 반환 등의 조치를 이행하고 있음
- 보조사업 집행점검 기준에 따라 집행점검 및 정산 등을 추진하고 집행잔액 등은 반환 조치를 이행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을 운용 중이며, 최근 3년 간 농촌용수관리 사업 관련 부정수급 적발 사례는 없었음
- 보조사업자가 한국농어촌공사로 주기적인 감사(농식품부, 자체감사),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며, 사업시행지침, 보조금관리법, 국가재정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므로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됨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보조금 부정수급심의 위원회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농식품부-지자체-민간 합동 현장집행 점검 등을 통해 보조금 적정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e나라도움”시스템 도입으로 예산편성·교부·집행·정산 등 보조금 처리 전과정을 전자화하여 통합관리 함으로써 부정수급 방지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농업용수관리자동화, 농업용수 수질개선, 지하수 자원관리, 농업용수 수질조사, 농업가뭄 모니터링 및 평가·분석 등을 통하여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관리·이용·공급을 달성하고, 농업인에게 깨끗한 농업용수를 공급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유지·향상하는데 기여하는 사업으로 국가 시책사업으로서의 성격이 타당함
- 다만 농촌용수 국제협력은 통상의 국고보조 사업 성격에 부합하지 않음
- 보조사업 집행과 관리는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며, 사업의 성과도 인정됨

3-2 정책 제언

- 농업용수 수질 조사 및 개선에 있어 수질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담수호 수질개선사업을 추진 할 필요가 있는 등 사업구성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음
-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의 중장기 재정추계 내역을 보면 2023년 이후 18,600백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고, 2026년부터는 중장기 추진계획의 2단계에 포함되므로 지원 계획 대비 실적 등을 고려하여 조정 할 필요가 있음
- 농촌용수 국제협력의 경우 농어촌공사의 자체 예산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본 사업은 내역사업인 농촌용수 국제협력의 21년말 폐지에 따라 일정수준의 감축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농림축산식품부
사 업 명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1.4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9.8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10.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1.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30.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5.8
1-5. 사회적가치 실현	3.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1.6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2.6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2.0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 변경 ·성과지표를 사업목표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의 관리 운영 체계에도 개선의 여지가 있음 ·현재의 성과지표는 사업자체의 성과 관련성이 다소 낮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규정과 모니터링에 관한 기준도 개선할 여지가 있음 ·성과지표는 교육효과와 중성화 사업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주기 및 기준, 절차 등을 보다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사업’의 법적 근거는 동물보호법 4조 등에 명확히 밝혀져 있음
- 국정과제에도 59번(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의 주요내용 중의 하나로 사업의 추진이 명시적으로 밝혀져 있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사업을 구성하는 내역사업이 ‘조사-교육 및 홍보-길고양이 중성화 및 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개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합리적임
- 단, 성과지표로서 반려동물등록 마리 수는 이 사업뿐 아니라 다른 여건(소득,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도)이나 정책수단(등록 의무화, 등록지원) 등에 의해서도 좌우되므로 이 사업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또 다른 성과지표인 동물복지축산인증농가 수 역시, 소비자가 동물복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 동물복지축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교육·홍보와 관련성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수요는 다른 여건(소득 등)에 의해서도 좌우되고, 또한 공급측면 역시 여러 요인들에 의해 좌우되므로 이 사업의 성과지표로서는 적절성이 떨어짐
 - 유기유실동물 분양 및 기증 마리수 등의 지수를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바람
- 실행행률은 개선되고는 있으나 다른 재정사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판단됨
 - 내역사업 중 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 개선지원 사업의 실행행률이 2018년에 매우 낮았고, 2019년에도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67.9%에 불과함
 - 단, 2019년 집행률이 낮았던 유실·유기동물 관리수준 개선 지원 사업의 예산이 2019년 11.56억원에서 2020년에는 8.32억원으로 감액되었으므로 실행행률이 제고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표 414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내 각 내역사업 집행률('18, '19)

(단위: 백만원)

구분	2018			2019		
	본예산 (당초)	집행액 (집행률)	실집행액 (실집행률)	본예산 (당초)	집행액 (집행률)	실집행액 (실집행률)
<동물복지정책팀>	7,364	7,364 (100%)	4,471 (60.7)	4,109	4,109 (100)	3,644 (88.6)
◦ 교육·홍보	1,105	1,105 (100)	1,104 (99.9)	1,813	1,813 (100)	1,790 (98.7)
◦ 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 개선지원	756	756 (100)	162 (21.4)	1,156	1,156 (100)	786 (67.9)
◦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780	780 (100)	705 (90.4)	1,140	1,140 (100)	1,069 (93.7)

주: 2018년 내역사업 중 2019년 폐지되거나 군특으로 이관된 사업은 수치를 생략하였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이 사업은 규제나 용자로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고 보조금이 적합한 수단으로 판단됨
- 실수혜자와 잠재적 수혜자도 명백해 보임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율은 내역사업별로 차이가 있고 여기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교육·홍보를 제외한 내역사업에 20%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표 415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내 내역사업별 보조율

지원조건	동물보호 및 복지 교육·홍보(국비100%, 단 동물보호문화축제의 경우 국비 50%), 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 개선(구조보호비: 국비20%, 지방비80%, 입양지원: 국비20%, 지방비 30%, 자부담 50%),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국비 20%, 지방비 80%),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 정례화(국비100%)

- 길고양이 중성화, 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개선 등의 사업 편익은 주로 지역단위에 나타나게 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맡는 것이 원칙적으로 합리적이지만 지자체의 입장에서 세수 등 추진유인이 적은 사업이고 개체수 조절, 지역사회 내 갈등예방 등은 국가적 편익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이 사업을 통한 동물보호는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과 공공체 이익 보호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함
- 유기유실동물이 통제되지 않고 번식하고 적절히 관리되지 못하면 환경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지역 내 갈등요인이 될 수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지자체 보조의 경우 17개 광역지자체 모두를 대상으로 하되 “사업수요와 사업추진의지, 전년도 실적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사업량을 차등배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민간보조의 경우에 “「농업식품기본법」 제11조의2(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의 설립)를 준용하여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선정” 하였다고 하는데 동조 1항에 열거된 농정원의 설립목적 중 이 사업이 부합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함
- 이 사업을 농정원이 계속 추진하도록 한다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시적으로 해두는 것이 필요해 보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11조의 2 >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 인적자원의 육성, 농식품·농촌 정보화의 촉진, 농촌 문화의 가치 확산 및 홍보, 농업경영체의 역량 제고, 농산물의 안전정보 제공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지자체 보조사업을 위한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 계획」, 「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개선 지원 사업계획」을 별도로 두고 있음
- 민간 보조사업에 대해서 별도의 집행관리 규정이 제시되지 않았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기초조사보고서와 함께 제시된 요령과 사업계획 만으로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주기 및 기준, 절차 등이 충실히 포함된 규정’이나 ‘모니터링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보완이 필요함
- 기초조사보고서와 함께 제출된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 계획」, 「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개선 지원 사업계획」등의 자료에 부정수급에 대한 사후처리 부분은 있으나 예방을 위한 조치가 보완될 필요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부정수급 관리 적발 사례는 없으나 이것이 부정수급 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있기 때문인지는 명확하지 않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특기할 만한 자체 사업관리 노력을 찾기 어려움
 -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운용은 사업자체의 핵심적 부분이고, 자체적으로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부정수급 단속을 위한 추가적 노력이라고 보기 어려움
 - 사업주체를 농림수산교육문화정보원으로 일원화한 것도 사업추진 방식을 일회적으로 변경한 것이고 항상적 사업관리 노력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예산의 실행행률이 낮음
 - 단, 2019년 집행률이 낮았던 ‘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 개선’ 예산을 2020년에는 축소하였으므로 집행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 성과지표가 사업의 목표 및 내용과 정확히 부합하지 않음
- 보조율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임
- 민간사업자를 농정원으로 일원화하고 있는 법적 근거가 보완될 필요가 있음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규정과 모니터링에 관한 기준 정비가 필요함

3-2 정책 제언

- 성과지표를 사업의 보다 직접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보조율의 법적 근거를 더 명확히 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규정과 모니터링에 관한 기준을 정비해야 함.



평가요약표

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명	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사업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0.8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9.2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30.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7.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5.2
1-5.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1.6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2.6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5.5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 감축 및 사업방식 변경 · “식품백신기업지원시설건립사업”의 완료에 따른 예산 순감으로 종료 사업의 예산 규모(2,750백만원)를 고려할 때 2021년 ~ 23년 안에 높은 수준의 감축임. · 회원사로 구성된 민간보조사업자(비영리법인)에 의존하는 방식의 개선이 필요함. · 현재는 회원사로 구성된 민간보조사업자가 단일하나, 회원사로 구성된 협회의 분리 등 민간 사업자의 상황이 변경될 우려가 있음. · 민간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명문화될 필요가 있으며, 동 사업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민-관의 역할 분담 등을 고려하여 사업 방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은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로 <축산법>,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음.
- 내역 사업의 수행에 대해서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나, 구속력이 약하고 구체적이지 않음.

<축산법 제3조>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은 “축산물안전관리”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으며, 단위사업 “가축방역”에 포함되고, 세부사업 “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 일곱 개의 내역 사업으로 구성되었음. 보조사업을 구성하는 7개 내역 사업은 세부사업의 정책 목표와 연관성이 있으나, 국정과제 등의 관련성은 없음.
- 내역사업인 동물용의약품의 산업 육성, GMP(우수의약품 제조·관리 기준) 컨설팅, 안정성 평가, 해외 수출, 교육홍보 등은 세부사업인 동물용의약품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식물백신기업 지원시설 건립 사업은 당초 ‘동식물자원산업화지원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보조사업연장평가 결과 단계적 폐지 판정을 받아 일부 사업은 폐지하였고, 일부 사업은 유사사업에 통합되었음. 이에 따라 식물백신기업지원시설건립사업이 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사업으로 이관되었으나, 2020년 사업 완료 예정(2750억원)임.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은 7개의 내역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내역 사업은 사업 내용에 따라 적절한 기간이 설정되었고, 재정 규모 역시 적정함.
- 보조사업은 계획한 성과 목표를 달성함.
 - 해외 전시회 참가, 국가간 네트워크 구축, 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수출마케팅 지원 등 해외 수출시장 개척 및 GMP 컨설팅 지원 사업의 효과가 성과지표 달성으로 확인됨.
-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사업을 통해 축산농가의 예방접종 지원, 검진 등에 필요한 동물용의약품 품질을 향상하고 질병 예방 및 발생 감소에 기여함.
 - 주요 가축전염병발생률이 감소함(16년 0.41%, 17년 0.38%, 18년 0.35%).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은 유사·중복되는 다른 재정사업은 없음.
 - 현재 회원사들이 운영하는 사단법인에서 사업을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어 산업과 기업 간 니드를 파악해서 작업하고 있음. 다만 회원사들이 운영하는 사단법인의 특성 상 향후 정부 정책의 이해관계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조사업의 운영 방식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현재 보조사업과는 별개로 ‘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융자)’사업을 통해 동물용의약품 제조시설 신축·개보수와 수출업체 운영자금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출전용 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제조품목허라 시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면제하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업계의 수출활성화를 동시에 지원하고 있음.
- 보조사업의 직접 수혜자와 간접 수혜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의 직접 수혜자는 특정산업(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수출)업체)로 수혜대상이 협소하나, 간접 수혜자는 축산농가와 축산제품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이므로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음.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금의 규모는 크지 않으나, ‘동물용의약품 산업 종합지원’이라는 세부사업의 정책목표(동물용의약품 산업 종합지원을 통한 우수제품 공급 및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7개의 내역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음.



- ‘식물백신기업지원시설 건립 사업’은 2020년 사업이 종료됨(2019년, 27억원).
- ‘해외수출시장개척사업’은 2013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매년 동일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집행율은 편차가 있음(2017년 93.6%→2018년 96.3%→2019년 90.5%). 동 사업은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가 회원사로 구성된 <한국동물약품협회>를 보조사업자(민간경상보조)로 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이와 별개로 업체별 핵심기술에 근거한 특화품목을 선정하여 해외 수출 등록을 지원하는 “수출혁신품목육성사업(지자체경상보조)”과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구축 사업(지자체경상보조)”을 추진하고 있음. 기존 민간경상보조에서 수행하고 있는 해외전시회 참가, 국가 간 네트워크 구축, 해외수출마케팅지원 업무 등이 신규 사업과 연관됨.

○ 내역사업의 기준 보조율은 40~100%로 다양함.

- <축산법>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별표 1의 122호(기획재정부장관이 수립한 예산안 편성지침에 대상 사업 명칭과 기준 보조율을 분명하게 밝히거나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에 근거하고 있음.
- 7개의 내역사업 중 지자체 경상보조는 40%, 지자체 자본보조는 50%, 민간경상보조는 100%로 구성되어 있음. 민간경상보조사업인 해외수출시장개척사업과 교육홍보사업은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음.

1-5 사회적가치 실현

○ 해당사항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보조사업자 선정의 근거는 미흡함.
- 동 사업은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출)업체가 회원으로 구성된 한국동물약품협회(비영리사단법인)가 보조사업자임. 동 법인이 아니고서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공모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힘.
- 이는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임. 반면에 이 법인이 해외전시회 참가,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국가 간 네트워크 구축 등 해외수출시장개척사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 동물의약품 제조·수입업체 107개소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협회를 민간보조사업자로 시행하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는 유리하나 사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음.
- (긍정적 측면) 동 법인이 동물약품 생산·수출입 실적관리, 동물용의약품 신고수리, 동물약품 품질 검사 등의 업무를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사업 관리의 효율성은 높음.
- (부정적 측면) 회원사들로 구성된 협회가 분리될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단일 협회를 민간보조사업자로 선정하기 때문에 보조사업자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미흡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집행과 관련하여 <농식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에 근거하고 있음.
- 일부 항목의 경우 지침에 세부 항목이 없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 근거한 일반적인 수준에서 관리 하고 있음.
- 내역 사업인 ‘식품백신기업지원시설건립 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 중용재산 정보공시에 관한 의무사항이 없음. 이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근거함.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부정수급 관리와 관련하여 <농식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일반적인 수준에서 수행하고 있음.
- 동물용의약품산업융합지원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 지침 위반사항에 대한 보조금 환수 등의 실적은 제시되지 않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 해당사항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있으나, 일부 내역 사업의 종료에 따른 예산 감축이 발생함.
 - 2020년 종료 사업은 식물백신기업지원시설건립사업으로, 전체 예산 중 내역 사업의 종료에 따른 예산 감축이 높은 수준임(보조사업 예산 대비 57.5%).

3-2 정책 제언

- 정부와 민간 간 역할 분담을 마련해야 함.
 - 현재 민간보조사업자는 전체 회원업체(107개소) 중 상위 56개소 회원사가 가입된 비영리 법인임. 이 법인은 동물약품 생산 및 수출입 등에 대한 실적관리를 직접 하고 있으며, 해외수출시장개척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수출입 등에 대한 실적관리가 정부에서 일관되게 정보 및 DB를 구축하지 않고 민간보조사업자에 의존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2020년 신규 사업으로 예산 편성된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선평가센터 구축’사업과 일부 중복 가능성이 있음.
 - 동물용의약품산업이 향후 먹거리와도 연계되고 기후변화와 미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향후 정부-민간 역할 분담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보조금 지원 외 다양한 정책 수단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동 보조사업은 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것으로 민간 영역의 의약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 실제로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수출)업체 등은 융자 및 엔젤 투자 혹은 스타트업, 규제 완화 등의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기도 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농림축산식품부
사 업 명	배수개선
보조유형	민간자본보조,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63.1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0.6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2.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5.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4.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6
1-5.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2.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2.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5.5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 감축 및 사업방식변경 · 동 세부사업은 2021년 ~ 23년 안에 일정수준의 감축이 필요함 · 사업목표 면적 설정의 전제가 되는 경제적 조건이 변화하고 있으며, 성과지표가 정책 목표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인구성장이 정체하고 있고 2020년대 말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일인당 농산물 수요도 쉼 급격히 감소하고 채소와 과일은 정체하고 있어서 사업목표 면적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밭작물 배수시설을 확대하려 할 경우 국민경제적 편익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더욱 필요해 보이고, 성과지표는 '(충수해면적-침수피해면적)/충수해면적'으로 되어있는데 그 개념이 다소 불명확하므로 사업의 목표 달성 정도를 더 잘 반영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 농산물 수요전망에 기초하여 사업면적을 조정하고 그에 따라서 예산규모를 감액하고, 성과지표는 예컨대 '전체농경지 중 통계적으로 xx 년에 한번 발생하는 침수피해로부터 안전한 면적의 비율' 등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법적근거는 농어촌정비법에 명확히 마련되어 있음
 - 사업의 내용과 보조의 근거가 법 108조에 밝혀져 있음

< 농어촌정비법 >

제108조(자금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이 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 수준에서의 세부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임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성과지표 측정산식(표 1-2-2)의 A의 정의가 모호함.
 - A가 '총 수해면적(침수면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해면적이 배수개선이 이루어진 대상경지면적이라면 이것이 '침수면적'과 같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음
 - 또한 '침수피해면적'과 '침수면적'의 차이가 무엇인지도 알기 어려움
 - 현재의 산식의 기본적 구조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A를 '사업시행 이전 지구내에서 peak 홍수위(벼재배지역 20년, 타작물재배지역 30년 빈도 최고 홍수위) 이하에 포함된 면적'으로 명확히 할 것
- 정책목표의 달성 기여도에 대해서 수치화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산식을 유지한다면 사후적으로 홍수가 없을 경우 사업추진과 무관하게 100%가 달성 가능해 보이기 때문임
 - 예컨대 '통계적으로 20년 주기 태풍 및 집중호우에도 침수피해로부터 안전한 경지면적 비율 등'으로 수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사업 성격이 명료하여 중복사업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직접수혜자는 농업생산자로 명확하나 간접수혜자는 농산물 수요가 감소, 정채하는 상황에서 일반국민으로 보기가 어려우므로 명확하지 않음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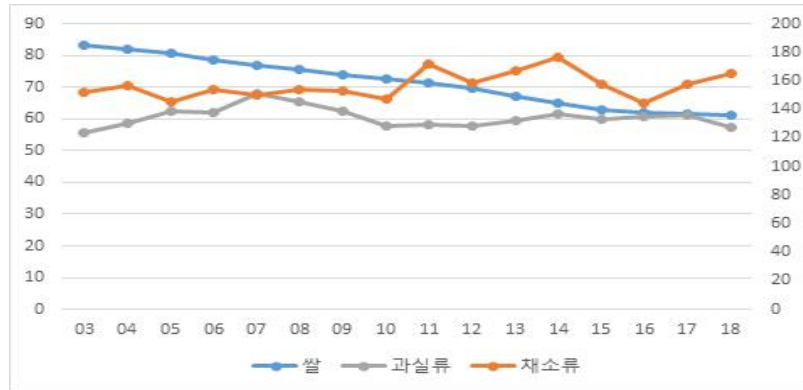
-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사업인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업면적의 국민경제적 편익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움
 -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성장이 멈추어 있고 2020년대 말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9.3.28. 제시) 일인당 농산물 수요도 앞으로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예: 쌀 수요는 향후 10년간 매년 1.9% 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KREI 보도자료(2019.6.13.)“쌀 소비 감소 전망, 소비 변화 반영한 정책 추진 필요”)
 - 이러한 상황에서 1975년부터 장기간 진행되어 투자의 한계효율이 낮아져 있는 농지의 배수개선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는 것이 국민경제적으로 어떤 편익을 가져올지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특히 쌀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ha당 시공단가가 더 높은 밭작물 배수에 적합한 사업을 확대하려 하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공급의 안정성 확보 중요성이 쌀에 비해서 떨어지는 다양한 밭작물의 생산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더 높은 시공기준을 가진 밭작물 배수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과연 경제적으로 합리적인지 정확히 검토해야할 필요성이 큼
 - 밭작물 시공단가는 1억4백만원/ha로 논에 대한 시공단가는 6,700만원/ha의 1.55배임
 -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행하고 있고 2020년 5월 종료예정인 ‘논 타작물 재배기반조성 및 재해예방을 위한 배수개선산업 대상지 조사’(공문시행: 2020.3.17. 수신자: 16개 광역자치단체장 및 농어촌공사)는 당초 배수개선 대상 지역(30.2만 ha)에 비해서 사업이 가능한 지역의 범위를 넓히는 효과가 있음
 - 2020년에 이미 사업이 이루어진 지역 중에서도 타작물재배지역은 지원대상이 되며, 당초 배수개선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지역 중에서도 타작물재배가 이루어지면 지원대상이 됨
- 반면, 일인당 국민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1인당 쌀 소비량은 급감하고 있고 채소류와, 과일류의 소비량은 장기적으로 정채하고 있음(아래 그림 참조)



- 이런 상황에서 인구감소는 농산물 수요의 감소로 직결될 것임

농산물의 1인당 연간 소비량 추이

(단위: kg/인)



주: 쌀과 과실류는 왼쪽 축, 채소류는 오른쪽 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9)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kosis.kr

- 사업대상지를 새로운 기준으로 조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중장기 예산규모 추계의 근거를 명확히 알기 어려움
- 첨부2의 관련자료(9-10쪽)에도 예산액수만 제시되어 있음
- 상습침수 농경지가 30.3만 ha로 조사되었다고 언급되어 있으나(기초조사보고서 15쪽등),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상지 조사가 새롭게 이루어져서 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 단위면적당 단가는 어떻게 산출되는지, 그 편익은 어떠한고 산출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다시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는 농업종사자의 근로 및 생활환경에 영향을 주므로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판단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선정을 위한 규정은 ‘배수개선 사업시행지침’에 마련되어 있음
 - 선정시 고려사항이 비교적 상세히 규정되어 있음
- 기본조사는 대규모 사업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건당 평균 80ha, 약 8천만원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여기에는 민간의 엔지니어링 회사도 경쟁원리에 입각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임

표 425 배수개선 사업 기본조사 현황

년도	‘15	‘16	‘17	‘18	‘19	비고
조사면적(ha)	3,100	3,000	2,000	2,000	2,300	
금 액(억원)	31	30	20	20	23	ha당 1백만원
건 수(지구)	32	29	18	24	28	지구현황, 침수원인 및 대책, 경제성분석 등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현재 기본조사를 농어촌공사가 직접시행할지 민간에 경쟁원리에 따라서 개방할지는 농어촌공사의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된 규정을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정하거나 적어도 농어촌공사가 내규로 두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집행을 위한 규정은 ‘배수개선 사업시행지침’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 기본규정’ 등에 마련되어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 본 평가대상사업만을 위한 별도 규정은 제시되지 않았음
 - 기초조사보고서(표2-3-1)에는 부처 통합 규정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 제시되어 있음
 - 위의 ‘기본규정’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항들이 비교적 상세히 정해져 있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보조금 집행점검회의, 총사업비 증가 및 집행지연 사전차단 등 통상적 관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부정수급에 대한 자체적발 실적 등은 없는 것으로 보임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변화하고 있는 경제적 조건을 고려하여 사업면적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현재 인구가 정체하고 있고 곧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토지집약적인 농산물 수요도 감소가 전망됨
 - 발작물 배수 시공을 확대해 갈 경우 단위면적당 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국민경제적으로 비용을 지불하여 얻을 수 있는 편익이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근거는 아직 명확히 제시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임
- 성과지표가 정책 목표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임
 - ‘(총수해면적-침수피해면적)/총수해면적’으로 되어있는데 전국적 수준에서 농경지의 침수를 감소시킨다는 정책목표 달성정도를 측정하기에 다소 부적합해 보임

3-2 정책 제언

- 최근의 중장기적 농산물 수요전망에 기초하여 사업면적을 조정하고 그에 따라서 예산규모를 일정수준 감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성과지표는 예컨대 ‘전체농경지 중 통계적으로 xx 년에 한번 발생하는 침수피해로부터 안전한 면적의 비율’ 등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 기본조사에 관해서는 농어촌공사가 독점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기본조사는 대규모 시행이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과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작업이므로(첨부 2의 27쪽) 민간의 엔지니어링 회사가 수행하도록 하여 경쟁을 유발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을 것임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농림축산식품부
사 업 명	소규모도계장 설치지원
보조유형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1.2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1.2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4.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1.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7.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8.2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0.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감축 · 2021년 ~ 23년 안에 높은 수준의 감축이 필요함 · 보조사업의 내용은 도축시설, 폐수처리시설, 건축비 등 시설·장비 설치 지원으로 명확하나 법인구성, 부지확보 등 지자체·신청대상자의 준비미흡으로 추진실적이 저조하여 그동안 효과가 거의 없었음 · 현장의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사업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되나, 그동안의 사업 신청 수요와 2020년 사업물량(계획)을 감안할 때 연간 예산규모는 상당 수준 감축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 2018년의 예산 실행률은 10%이며, 2019년 예산 실행률은 0%이나, 2020년은 사업비가 90% 집행될 예정임. · 그동안의 추진내역, 성과 등은 매우 미흡하나 2023년에 시행되는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살아있는 가금류 유통금지)의 보완적 성격의 사업으로 운영될 필요성은 있으며 이에 2023년까지 사업을 연장하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 중인 연구용역 및 향후 발생 가능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 편성 필요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소규모 도계장 설치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매우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 축산법 제3조 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매우 포괄적인 정의로 소규모 도계장 설치지원 사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로 보기 어려움
- 내역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 또한 축산법 제3조 2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인용하고 할 수는 있음

< 축산법 >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AI 등 가축질병 방역조치 강화 및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직접적인 혜택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토종닭이라는 특정 축종의 산업의 종사자들에게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타당성은 다소 부족함
 -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일반적으로 대규모 농장에서 발생 이후 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사육 농가에 전파, 산닭을 유통하는 전통시장 등이 중요한 매개로 확인되고, 이에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 원칙적 제한을 추진함에 따라 본 사업의 한시적 필요성은 인정됨
- 보조사업의 수혜자 범위가 넓지 않고 파급효과도 크지 않음
 - 보조사업의 1차 수혜자는 토종닭 농민, 전통시장 상인 및 관련 산업 종사자로 범위가 제한적임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의 내용은 도축시설, 폐수처리시설, 건축비 등 시설·장비 설치 지원으로 명확하나 폐수처리, 부지용도제한 등 인허가의 어려움으로 인해 추진실적이 저조하여 그동안 효과가 거의 없었음
- 인허가 규정과 지원금액을 개선하였고, 이에 소규모 도계장 활성화 간담회('19.9) 결과 23개소(고정식 11, 이동식 12)에서 참여의사를 밝히는 등 사업 수요는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계획상의 목표 달성도가 매우 미흡함
 - 2018년의 예산 실적행률은 10%이며, 2019년 예산 실적행률은 0%임
 - 2018년 4개소가 신청했으나 부지 마련, 협회 미결성 등 준비 미흡 등으로 3개소 신청 취소, 1개소(안성)만 완공됨('19.7월)
 - 2019년 2개소 신청하였으나, 서류 미비 등으로 1개소 신청 취소하고, 1개소(제주)는 지자체 자부담 미확보로 '20년 사업으로 이월됨
 - 2020년 사업은 사업대상자 준비 부족 및 지자체 인허가 문제 등으로 집행 부진함에 따라, 사업물량을 50%로 축소하고 사업지침에 필요 시 지원금액을 15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함
- 2020년 사업시행지침 시달('19.12.), 사업자를 선정(강원1, 충북2, 경남1개소)하여 올해 사업비의 90%가 집행될 예정임

< 2020년도 사업 신청 현황 >

시도	시군	업체명	구분	금액	비고
강원	속초	으뜸영농조합법인	이동식	104백만원	
충북	청주	육거리시장토종닭협동조합	이동식	104백만원	
	충주	황실토종닭복원연구소협동조합	이동식	104백만원	
경남	창녕	정도축산영농조합법인	고정식	153백만원	*150% 신청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전통시장 등에서는 일부 소비자의 요구, 소매상의 인식 부족 등에 의해 산닭의 도축, 매매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자체 단속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도 생계형 위반으로 약식기소(벌금 2~50만원 수준)에 그쳐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산닭 유통 금지의 엄격한 집행을 위해서라도 소규모 도계장 사업을 운영할 필요는 있음
- 토종닭 도계장은 '18년 21개소(2,750만 마리 도계)로, 그 중 계열화 사업자 11개소가 전체 76%(2,100만 마리)를 도계하나, 계열화 사업자는 외부로부터의 도계를 받지 않아 토종닭 농가가 이용할 수 있는 도계장이 부족하며, 일반 도계장도 운영상 이유로 소규모(3~500수) 도계는 기피하는 상황임
- 2023년도 산닭유통금지에 따라 실제 현장에서의 해당 규제에 대한 적응을 위해 해당 지원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토종닭 산닭 유통 현황 >

토종닭 산닭유통비율(16년)													
내용/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누 계
입추	2,629,700	2,504,000	2,698,500	2,840,800	4,268,000	6,165,600	6,652,000	5,551,000	3,207,100	2,467,600	3,031,751	2,209,100	44,225,151
육성률(93%)	2,445,621	2,328,720	2,509,605	2,641,944	3,969,240	5,734,008	6,186,360	5,162,430	2,982,603	2,294,868	2,819,528	2,054,463	41,129,390
도계(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도계(수)	1,813,022	1,641,553	1,853,717	1,977,239	2,484,614	2,683,579	4,547,740	3,157,374	1,439,400	1,522,536	1,418,818	1,751,719	26,291,311
산닭(수)	632,599	687,167	655,888	664,705	1,484,626	3,050,429	1,638,620	2,005,056	1,543,203	772,332	1,400,710	302,744	14,838,079
산닭 비중(%)	26	30	26	25	37	53	26	39	52	34	50	15	36
토종닭 산닭유통비율(17년)													
내용/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누 계
입추	2,441,300	3,002,100	2,846,300	2,576,500	3,294,200	5,950,000	5,250,000	6,200,000	3,600,000	2,478,000	2,494,590	2,120,000	42,252,990
육성률(93%)	2,270,409	2,791,953	2,647,059	2,396,145	3,063,606	5,533,500	4,880,500	5,766,000	3,348,000	2,304,540	2,319,969	1,971,600	39,293,281
도계(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도계(수)	2,343,687	1,940,573	1,863,569	1,795,253	2,058,541	2,919,288	4,592,380	2,550,200	1,898,820	1,471,516	1,460,960	1,695,431	26,590,218
산닭(수)	-87,517	841,573	783,490	598,480	1,004,962	2,612,914	923,362	3,212,639	1,449,180	833,024	848,162	276,169	13,296,438
산닭 비중(%)	-3.9	30.1	29.6	25.0	32.8	47.2	18.9	55.7	43.3	36.1	36.6	14.0	34
토종닭 산닭유통비율(18년)													
내용/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누 계
입추	2,510,000	3,340,000	2,800,000	3,700,000	3,920,000	5,072,300	8,150,000	7,877,000	2,825,000	2,530,000	3,136,000	2,680,000	48,540,300
육성률(93%)	2,334,300	3,106,200	2,604,000	3,441,000	3,645,600	4,717,239	7,579,500	7,325,610	2,627,250	2,352,900	2,916,480	2,492,400	45,142,479
도계(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도계(수)	1,706,309	1,516,285	1,882,839	1,934,931	2,509,979	2,796,262	5,014,847	3,093,659	1,554,067	1,622,225	1,732,762	2,184,020	27,608,185
산닭(수)	627,991	1,589,915	721,161	1,506,069	1,135,621	1,920,977	2,564,653	4,231,951	1,073,183	730,675	1,123,718	308,380	17,534,294
산닭 비중(%)	26.9	51.2	27.7	43.8	31.2	40.7	33.8	57.8	40.8	31.1	38.5	12.4	38.8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소규모 도계장 지원대상으로 도축시설(121백만원), 폐수처리시설(89.1백만원), 건축비(136.4백만원) 등 최소 필수시설에 대한 비용으로 이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향후 발생할 수요를 고려하여 사업물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소규모 도계장 설치를 통해 소비자와 살아있는 가금의 직접적인 접촉을 최소화 하고 이를 통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국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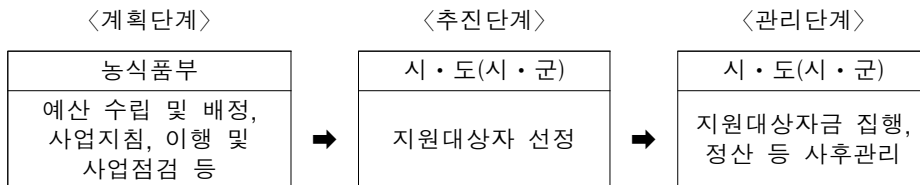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소규모 도계장 설치지원사업 시행지침을 통해 보조사업자 선정 시 시·도는 전문가를 구성하여 사업대상 적합성 심사 등의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각 지자체는 선정기준에 따라 종합적 검토를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하도록 되어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 집행 관리체계 및 규정 또한 소규모 도계장 설치지원사업 시행지침으로 마련되어 있음



- 소규모 도계장 설치지원사업 시행지침에는 지원조건, 지원금액의 사용용도, 주체별 사업시행 규정, 자금 배정 및 집행 규정들이 비교적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시, 보조사업 수행·정산 및 관리 등에 대한 교부조건을 보조사업자에게 시달하여 부정수급 발생을 방지하고자 함
- 그동안의 사업 실적이 없어 부정수급 적발 내역은 없으며, 지자체를 통한 사업 관리를 하거나 중요재산에 대한 처분제한 기준에서 사후관리 기간이 도계장은 10년 도계장의 기계설비는 5년에 불과하여 부정수급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해당 사항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보조사업의 수혜자 범위가 협소하고 소규모 도계장 설치지원 사업 추진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추진되어 그동안의 성과가 전무함
- 전통시장 등에서 불법도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 제한 추진 ('23년) 전에 토종닭 도계 유통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주 사용자인 전통시장 상인과 토종닭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토종닭이라는 특정 축종의 산업의 종사자들에게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타당성은 부족하나,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살아있는 가금류 유통금지)의 보완적 성격의 사업으로 한시적으로는 운영될 필요성은 있음

3-2 정책 제언

- 그동안의 추진내역, 성과는 미흡하나, 인허가 규정 개선으로 수요가 발생하였고 이에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 제한이 추진되는 2023년까지 사업을 연장하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 중인 연구용역과 향후 발생 가능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환경대학교에 위탁을 하여 소규모 도계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추진되고 있는 바,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사업 방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2020년 사업물량을 50%로 감축시킨 것을 감안할 때, 사업은 지속하되 연간 예산은 상당 수준의 감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농림축산식품부
사 업 명	수리시설개보수
보조유형	민간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9.4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9.4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6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4.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7.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8.8
1-5.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0.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정상추진 · 수리시설 안전진단은 법정 의무시설이 증가(법령개정)하였고, 법정 의무시설 외에도 노후·결함 시설이 많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사업의 질적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개선하고, 정밀안전진단 저수지 중 D등급 시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안전미흡시설을 우선 개보수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노후된 수리시설의 비중이 높은 만큼 대상 저수지의 우선순위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설정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수리시설개보수에 대한 법적 근거는 명확하고 구체적임
 - 농어촌정비법 제18조 1항과 2항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 시설물의 개수·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함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0조 1항에서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을 최소유지 관리기준 이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음
- 내역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는 명확한 편임
 - 농어촌정비법 제108조에서 농어촌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0조 3항에서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조달하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음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1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출연·보조 및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6조에서 국가는 지진·화산재해의 예방과 대비·대응·복구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농촌정비법 >

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항상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 시설물의 개수·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하여야 한다.



제108조(자금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이 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탁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을 끝내기 전이라도 위탁 사업자에게 내줄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시행자가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 또는 기존 농어촌마을의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경우, 사업 시행기간 내에 보조 대상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보조 대상 사업을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시행하고, 그 비용을 사후에 상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조 대상 사업비용의 상환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

제10조(유지관리) ①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을 제11조에 따른 최소유지관리기준 이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조달하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최소유지관리기준 이상으로 관리되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비용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국가가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출연·보조 및 융자할 수 있다. 1. 기반시설 실태조사 및 성능평가 2.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조사, 진단, 연구 및 보수·보강 3. 기반시설의 성능개선 4. 그 밖에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제22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의 규모 2. 제23조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 충당금의 규모 3.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소요 비용 4. 해당 기관의 재정여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

제26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지진·화산재해의 예방과 대비·대응·복구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제16조에 따른 내진보강대책의 수립·추진 비용과 제25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 본 사업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보수·보강을 통해 노후시설의 안정성 강화 및 사전 재해예방 등을 목적으로, 국지적 집중호우 급증 등 기후변화로 시설물 안전성 강화가 시급하고, 저수지 붕괴 등 사고 발생 시 일반국민과 농업인의 재난 피해 등을 고려할 때 국가의 지원 필요성은 있음
- 노후 기반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범부처 종합대책과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최상위 계획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을 통해 이행한다는 측면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4대강 재자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조성한다는 국정과제와의 연관성도 높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의 구성은 대체로 합리적임
 - 노후수리시설개보수에서는 저수지 등 노후 기반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선제적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시행함
 - 양수장시설개선에서는 4대강 재자연화 과제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취수에 제약을 받는 양수장 시설개선을 통해 보 주변에 원활한 농업용수를 공급함
- 보조사업의 내용은 구체적이며 목표가 명확한 편이고, 당초 목표한 성과는 대체로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정밀안전진단 저수지 중 D등급 시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안전미흡시설을 우선 개보수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보다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양수장 시설개선은 4대강 보 개방 운영 및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19년 신규로 시행하고 있어 아직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직접적인 수혜자는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487천ha)에서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농업인으로 명확하며,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홍수조절 및 가뭄대비 기능으로 재해 예방, 국가 수자원의 확보 및 효율적 이용 등의 기능을 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간접 수혜자로 볼 수 있음
 - 사업 폐지로 수리시설에 대한 주기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설물 부실이 심화되고 시설의 내용연수가 줄어들어 오히려 대규모 개보수 사업비가 증가할 우려가 있고, 가뭄과 홍수 등 각종 재해예방을 개별 농업인의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농어촌공사 관리 수리시설 총 13,850개소 중 설치된 지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이 63.7%이고, 용·배수로 총 102,535km 중 50.7%(52,036km)가 흠수로로 용수손실 및 원활한 홍수배제가 안 되는 등 개보수 수요는 지속 증가하고 있음

○ 타사업과의 유사중복 가능성은 낮음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2017년 평가에서 2013년에 수립된「기후변화 대응 재해대비 농업생산기반정비 중장계획」에 따른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중장기 계획에 따라 재정소요액 추계된 점에 적절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따라서 2020년 이후 잔여 사업량을 고려하고, 매분기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설노후도, 결함 등 개보수 수요 등을 조사하여 재정소요를 추산하였음

<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시설 중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 >

(단위 : 개소)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601	1,060	1,112	1,116
저수지	496	500	519	522
양배수장	-	442	462	455
방조제	55	49	50	50
평야부	14	11	20	19
수문	36	58	61	70

<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시설 현황 >

(단위 : 개소)

구 분	계		30년미만 (’90년이후)		30년이상~50년미만 (’70~’89)		50년이상 (’69년이전)	
	시설수	%	시설수	%	시설수	%	시설수	%
계	14,067	100	5,103	36.3	4,273	30.4	4,691	33.3
저수지	3,411	100	386	11.3	493	14.5	2,532	74.2
양배수장	4,638	100	2,868	61.8	1,386	29.9	384	8.3
취입보	4,161	100	504	12.1	2,060	49.5	1,597	38.4
집수암거 집수정	306	100	65	21.3	158	51.6	83	27.1
관 정	1,551	100	1,280	82.5	176	11.4	95	6.1



○ 재원지원 규모는 대체로 적절함

- 수리시설 안전진단은 농어촌정비법 제18조 2항(시행령 제26조3항 및 별표1)에 규정한 대상시설과 실시시기를 근거로 재정소요를 안전진단 대가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있음

< 최근 4년간 안전진단 실시 현황 >

연도	계	법정의무시설 (진단시기도래)	법정의무외 (노후·결함 등)
계(개소)	3,091	2,893	198
'17년	629	596	33
'18년	865	795	70
'19년	674	581	93
'20년	923	921	2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노후 수리시설물 보수·보강 예산을 확대하여 가뭄·홍수·지진 등 재난으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용수공급 등 편리한 영농기반을 제공하는데 공헌할 수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는 별도의 선정절차 없이 시설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로 하여금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 집행 관리체계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저수지 등 안전과 관련된 수원공지구는 시·도의 사업시행계획 승인 전에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공사 시행과정에서 공사비의 10%를 초과하는 증감이 발생할 경우 농식품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여 설계의 적정성을 기하고 총사업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있음(수리시설개보수 사업시행지침)
 - 공사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낙찰차액을 감액하고, 사업계획에 기 반영된 낙찰차액은 시행계획 변경시 총사업비를 감액조정하여 농식품부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수리시설개보수 사업시행지침)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부정수급 관련 사업관리 모니터링(제30조), 보조금 부정수급자 관리(제31조), 부정수급 금액 환수 등 제재(제78조),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구성·운영(제83조) 등을 규정하는 등 부정수급과 관련한 내부규정을 마련·운영하고 있음
- 2018년 보조금통합관리망 부정수급 모니터링 결과 부정수급 의심징후는 발견된 적이 있으나, 점검결과 적정한 집행으로 조사·확인하고 보조금통합관리망에 점검결과 입력 관리된 바 있음
- 본 사업은 준정부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며 사업시행지침, 보조금 관리법, 국가재정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고 있어 부정수급 사례는 없을 것으로 전망됨. 다만 예산 규모가 커 부정수급 가능성을 열어 두고 철저한 점검과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농어촌공사가 분기별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규모가 큰 1종시설은 5년마다 의무적으로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정밀안전진단 실시하고 있음
- 사업추진상황을 서면 및 현지 점검을 통해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자금집행상황을 보조통합관리망을 통해 수시 점검하고 있으며, 현장 여건변화로 집행이 곤란한 지구의 예산은 타 지구로 조정하고 재해취약시설 우선 고려 배정 등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음
- 보조사업점검평가단 구성·운영을 통해 분기별 1회씩 현장 및 부정수급 등 점검·확인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보수·보강을 통해 노후시설의 안정성 강화 및 사전 재해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급격한 기후 변화에 따른 국지적 집중호우 급증 등으로 시설물 안전성 강화가 필요하며, 일반국민과 농업인의 재난 피해 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의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이 있음
- 다만 사업대상의 순서를 보다 효율적인 기준(D등급 우선 등)으로 평가 대상을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3-2 정책 제언

- 사업의 질적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개선하고, 정밀안전진단 저수지 중 D등급 시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안전미흡시설을 우선 개보수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노후된 수리시설의 비중이 높은 만큼 대상 저수지의 우선순위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설정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농림축산식품부
사 업 명	식량작물공동(들녘) 경영체육성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4.0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4.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10.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4.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1.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0.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4.1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9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 변경 ·본 보조사업은 '09년부터 추진되었고, 농가 고령화와 쌀 소비 감소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함. 매년 수혜자도 증가했으며, 쌀 공급과잉과 수급 안정을 위해 논에서 타 작물 생산 유도를 통해 기타 잡곡 가격안정에도 기여함. 앞으로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라도 사업방식 변경으로 추진이 타당함 ·우리나라 전체 미곡 생산금액(2018년 기준)은 8조 4,012억 원, 재배면적은 738천ha를 감안할 때 동 사업예산 222억 원('20년 기준)대비 사업효과가 매우 큼. 쌀 시장격리 비용은 1백 만원/ha 절감효과, 쌀 수급 안정화에도 기여가 큼. 만약 사업 감축 등으로 다시 벼로 회귀할 경우 쌀값 하락 등으로 농가소득 감소, 많은 재정지출('20년 쌀 소득보전변동직불금 2,384억 원)이 필요함 ·동 보조사업은 만성적인 쌀 공급과잉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논벼 대신 타 작물 재배를 권장하여 '22년 400개소까지 확대할 경우 정부지원 목표보다 많은 3만ha 이상 가능함. 다만 사업 내실화와 보다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내역사업 내 시설·장비사업 지원 기간을 단 년에서 다년으로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동 보조사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 제1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7조의 3 제5항, 「농업기계화촉진법」 제8조 등을 법적 근거로 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농업 종사 인력, 농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동법 39조 3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체의 소득·경영안정 및 농업의 경영구조 개선 등 농업 경영의 규모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또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3조 1항에 식량산업 선도경영체 교육 훈련사업은 해당 법령에 근거하여 쌀 전업농,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회원 등 식량작물 농업인단체를 대상으로 조직화, 농기계 활용, 경영 다각화, 교육 사업을 운영·지원함
- 상기 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해 공동경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관련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동 보조사업의 주된 목적은 ‘논 타 작물 재배 단지를 집중 지원하여 적정 쌀 생산을 유도하고 식량작물 전반에 걸쳐 생산·유통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 ‘19년(재배확대)과 달리 ’20년에는 과잉 생산되는 쌀의 적정 생산 유도하기 위해 **재배단지 집중지원**으로 개편하여, 시·군(3,000ha 미만) 논 타 작물 의무기준을 완화(50ha→30ha)함. 규모화·조직화와 공동경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시설 및 장비, 가공시설 등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생산비 절감 등 식량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함
- 동 사업은 국정과제 82번. 농어업인 소득안정망의 촘촘한 확충과도 부합하며, 중장기적으로 쌀 재배면적 및 소비 감소 등을 감안하더라도 필요함. 또한 법령과 사업의 연계성이 높아 국가와 지자체의 구체적인 역할과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조사업 추진이 타당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보조사업은 논 타 작물 재배 단지를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과잉 생산되는 쌀의 적정 생산 유도, 농가소득 증대와 생산비 절감을 통해 국내 쌀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있음
 - 동 보조사업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서는 3단계 지원을 실시함. 1단계 공동농업의 인식도 향상을 위해 교육·컨설팅 지원, 2단계 공동농업경영체의 공동농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장비지원, 3단계 공동농업경영체 생산 이후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다각화임
 - 사업 성과지표로는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직접생산비 절감률로 평가되고 있는데, '19년도 자료가 집계되지 않았지만 과거 달성도 ('14) 100 → ('15) 101.0 → ('16) 103.1 실적과 ('17) 100.0 → ('18) 100.0로 나타나 보조사업 효과성이 있다고 간주됨
 - * 들녘경영체육성사업 직접생산지 절감률 : ('17) 16.0 → ('18) 17.0(372천 원/10a)
 - 다만 매년 사업목적이 달라지고 있지만 동 보조사업의 성과지표가 매년 동일하게 설정된 점으로 미뤄 볼 때 향후 사업 확대와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추가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함. 또한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사업방식 변경이 요구됨
- 10년 간 추진된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은 '19년 들녘경영체 55개소(2,216ha)가 논 타 작물 신청을 완료했으며, 이들은 시설·장비 공동경영면적 15%, 사업다각화는 30% 차지함
 - '20년에는 현재 81개 소에서 논 타 작물 재배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22년까지 50ha 이상 단위 들녘(논+밭)의 규모화·조직화를 통해 공동경영체를 400개소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어 보조금 효과가 큼
 - * 논 타 작물 단지화 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 : ('19) 9개소 → ('20P) 81(누계 90) → ('21P) 120(210) → ('22P) 190(400)
 - 다만 개소 확대에 앞서 실질적인 농가의 소득창출, 적정 쌀 공급, 쌀 산업의 경쟁력 제고 효과 분석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상시 점검이 수반되어야 함. 또한 동 사업 조직화에서부터 정착 및 사업다각화를 위해서는 자원·수익성을 고려한 작부 체계의 다양화 및 공동 판매·마케팅 등 세부추진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로드맵 수립이 필요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농업이 공공재임을 감안하면 동 보조사업은 국가의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이 인정됨. 특히 국민의 주식인 쌀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고 가격안정을 통해 국가 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사업인 논 타 작물 재배 단지 확대가 필요함



- 동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논 타 작물 재배지원을 한시적('18~'20년)으로 운영한 결과, 2년 간 참여한 면적은 약 3만ha*로 이 중 2만ha를 전문화·규모화된 단지 육성으로 보조사업 추진이 반드시 필요함

* 논 타 작물 재배 이행 실적 : ('18년) 26천ha, ('19년) 29천ha

-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논에서 밭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정비 시설·장비, 배수 시설 지원은 향후 쌀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농가 소득 보전에도 효과성이 큼. 따라서 본 보조사업은 쌀 생산 수급안정 대책의 대안으로 꼭 필요하며, 안정 생산, 신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등 필요성이 인정됨
 - 동 보조사업은 파잉 쌀 생산을 제어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에 수반되는 교육·컨설팅(인식 전환과 경영체 운영 등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비용 지원), 시설·장비(파종기, 방제기, 수확기), 사업다각화 지원(논 타 작물 및 밭작물 등 가공·체험·관광, 신 사업계획의 교육·컨설팅, 기반정비, 시설·장비 등)사업과 유사·중복은 없음
 - 다만 동 보조사업의 지속성과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내역사업 내 시설·장비사업 지원 기간을 단 년에서 다년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보다 철저한 현장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됨
- 농촌지역의 공동화, 고령화, 여성화 등의 여건변화로 인한 인력난을 감안하면 동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이 인정됨. 전국적인 사업성과 확산, 사업 내실화와 식량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쌀 중심 지원에서 타 작물(콩, 고구마, 조사료 등)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시·군 단위로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을 유도해 체계적으로 지원함
- 논콩은 벼 재배 대비 농가 소득이 32%가 높아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서라도 동 보조사업 지원이 필요함. '18년 콩 재배면적은 1980년 대비 3.742배 감소했으나, 최근 5년 평균 10a당 콩 단수 생산량은 177kg로 0.5배 증가했음. 이는 논 타 작물 재배 확대로 논콩 재배가 늘었기 때문임

<벼 재배 대비 논콩 재배 농가 소득비교(2019년 기준)>

구분	벼 재배	논콩(보통)	논콩(우수)
생산량(10a, kg)	750	300	350
단가(1kg)	1,550	4,500	4,500
매출(10a/원)	1,162,500	1,350,000	1,575,000
경영비(생산비)	521,238	500,000	550,000
소득(원)	641,262	850,000	1,025,00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58. 122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이해관계와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 기준 보조율(40~50%)을 준수하여 지원함
- 동 사업의 재정추계는 들녘경영체 중장기 발전 방안과 식량작물공동경영체 등을 통해 매년 논 타 작물 재배확대 계획을 근거로 ‘22년까지 사업량을 산정함
 - * 단기계획 : 논 타 작물 50ha 이상 단지 400개소 확대 → 매년 100개소 이상 사업 추진 예정
 - * 중·장기계획 : 경영체 육성 목표 (’16) 271개소 → (’20) 500 → (’25) 700
 - * 품목별 자금률(’17→’22P, %) : 콩 22.0 → 45.2, 옥수수 3.3 → 8.2, 서류 105.3 → 109.0
- 동 보조사업 수혜자는 ‘18년 대비 26.5% 증가한 4,302호로 ‘20년 논 면적이 적은 시군의 농지 인정기준 완화(3천ha 미만)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 중에 있어 재정지원은 적정함

<연도별 사업다각화 지원수혜자 현황>

사업년도	지원 호(수)	증감(수)	증감률(%)
2016년	1,501	-	-
2017년	3,033	1,532	102.1
2018년	3,400	367	12.1
2019년	4,302	902	26.5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본 보조사업을 통해 일반 쌀 전업농 대비 총 수입은 2.3% 증가해 공동체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으로 다소의 사회적가치 실현이 인정됨. 사업다각화 참여 농가는 2018년 벼 재배 농가 대비 11.2%까지 증가함

<전체 벼 재배 농가 대비 사업다각화 참여 농가 면적 현황>

사업년도	지원 호(수)	증감(수)	증감률(%)
2010년	523,000	2,396	0.5
2015년	454,000	27,373	6.0
2017년	399,000	38,840	9.7
2018년	387,000	43,457	11.2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4조(교육기관 평가) 이외에도,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시행지침, 쌀 산업 선도경영체 교육훈련 사업운영지침’을 통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자격요건 명시, 단계별 선정심사 실시, 역량 있는 사업자 등을 선정함
- 동 보조사업자 선정은 공모방식이며, 법인 운영 실적, 자부담 확보, 출자자 등 기본요건 등의 점검 강화, 사업자 논 타 작물 의무 면적 등을 부과(공동경영면적 대비 시설장비 15%, 사업다각화 30% 이상 이행)하는 등 정책 참여를 유도함
- 들녘경영체육성은 ‘쌀 산업 선도경영체 교육훈련 사업운영지침’ 표준프로세스에 따른 단계별 담당기관 역할을 부여하여 사업신청, 사업자(교육기관) 선정,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등의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준수 여부를 점검·평가함. 사업대상자 심의는 산학연 전문평가단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임
- 국고 보조금 교부 시에는 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및 사업운영지침에 따라 사업수행현황 등을 점검하여 최소 2차례 이상 분할하여 교부함. 세부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도록 목적 외 사용을 금하고,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법령 위반 시 반환, 사업 완료 후 정산·반납, 취득재산 관리 등 조건을 교부함
- * 교부 절차 : 세부사업 시행계획 수립(농식품부) ⇒ 예산 배정(농식품부) ⇒ 보조금 교부 신청(지자체) ⇒ 보조금 교부결정(농식품부) ⇒ 교부 이행조건 확인(농식품부) ⇒ 교부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 내지 제70조의 2 이외에도, 들녘경영체육성 사업시행지침 등에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단계별 담당기관의 역할을 부여하여 자금 교부 및 집행단계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함
- 농식품부는 공사추진 상황, 자금집행 적절성, 컨설팅업체 모니터링 등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화 사전 방지 등을 관리하고 있음.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보조금을 타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과 보조사업 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때는 보조금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함
-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 조치하고, 사업비 감정 및 결산 후 결산결과는 농식품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함. 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이자, 집행 잔액 등은 정산 후 반납토록 조치함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4조에 의거해 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에 대해 집행점검, 정산, 반환 수행 후,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공시하도록 규정함
-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3~5월, 7~9월) / 점검반 : 농식품부(주관), 시·도, 농정원 또는 aT 등 합동 현지방문 점검 등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본 사업의 수행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부정수급 관련 사업관리 모니터링(제30조), 보조금 부정수급자 관리(제31조), 부정수급 금액 환수 등 제재(제78조),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구성·운영(제83조) 등을 규정하는 등 부정수급과 관련한 내부 규정을 마련·운영함
- 들녘경영체육성사업 사업자 선정단계부터 기본요건을 철저히 점검한 후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에도 타 사업 등으로 인한 법인 및 대표자가 농림사업자금 지원 제한 사유 발생 시 사업포기 및 지원제한을 적용하여 관리함. 그러나 본 보조사업자가 민간단체일 경우 관리 강화가 필요함
- 부정수급 발생사례는 보고된 바 없으나, 지속적인 부정수급 사전방지 대책 수립이 필요함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사업 설명회를 개최함. 또한 현장점검을 통해 보조금관리법, 국가재정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정을 준수에 대해 교육함
- 사업자 선정 이후 이행계획 및 현장점검 강화(3회/연)로 실집행률도 '19년에 100.0%를 달성해 본 사업관리를 위한 자체 노력이 있었다고 인정됨
- * 예산 실집행률 : ('17) 62.3% → ('18) 78.7% → '19 100.0%
- 그러나 부정수급 가능성을 상시 열어 두고 반기별로 1회 실시하는 현장점검 강화와 더 철저한 점검 시스템 보완이 필요함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국내 쌀 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들녘경영체 육성을 통해 국내 과잉 생산된 쌀 수급문제를 해결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생산비 절감 등 식량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보조사업임. 이에 최근 10년 간 추진 중인 계속 사업이기도 함
 - '20년에는 논 타 작물 재배 단지를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과잉 생산되는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을 개선함. 또한 '10년과 동일한 50ha 이상 들녘(논+밭)의 규모화·조직화와 공동경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시설 및 장비, 가공 시설 등을 지원함
 - '20년 현재 들녘경영체가 81개 소 추진 중이며, '22년까지 50ha 이상 단위의 들녘(논+밭)의 규모화·조직화와 공동경영체를 400개소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보조금 효과성이 매우 큼. 특히 동 보조사업을 통해 쌀 공급과잉과 수급 안정화 기반이 조성될 경우 쌀 시장격리 비용은 1백만원/1ha 절감이 가능함
 - 만약 사업 감축 등으로 논 타 작물 전환 농지가 비로 회귀할 경우 쌀값 하락으로 농가소득 감소는 물론 본 사업예산보다 훨씬 많은 재정지출('20년 쌀소득보전변동직불 2,384억원)이 필요함
- 특히 동 보조사업은 논 타 작물 재배 단지를 집중 지원하여 과잉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임. '20년산 벼 재배면적은 산지 쌀 가격 상승, 논 타 작물 재배지원사업 규모 축소 등으로 감소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농가 스스로 논에서 타 작물(콩 등)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본 사업이 반드시 필요함
 - '18년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으로 최근 쌀·콩 기타잡곡 가격 안정에도 기여함. 다만 동 사업 내실화와 보다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내역사업 내 시설·장비사업 지원 기간을 단 년에서 다년으로 사업방식 변경으로 추진이 바람직함
 - * 쌀 가격(80kg) : '18년 194,152원 → '19년 209,740 → '20년 190,044
 - * 콩 가격(1kg) : '18년 5,085원 → '19년 5,477 → '20년 5,100
- 동 보조사업이 10년 간 추진되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효과 등으로 최근 3년 간 쌀 가격이 20kg당 19만~20만 내외로 안정세를 보임. 쌀 가격이 상당히 안정 효과를 거두고 있어 지속적인 보조사업 지원이 필요함



- 최근 3년 간 예산 사업자 조기 선정, 홍보 및 현장점검 강화 등 사업관리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19년 예산 실행 실적 100.0%를 달성했음. 이에 자체적으로 사업 관리에 위한 노력이 있었다고 인정되며, 앞으로도 보조금사업의 성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지속적인 관리·강화가 필요함

3-2 정책 제언

- 본 사업은 들녘경영체(공동영농) 활성화를 통한 비용절감, 생산·판매 규모화로 쌀 산업의 경쟁력 제고, 사업 다각화를 통한 쌀 수급 안정과 신소득 창출이라는 사업목표와 내용이 명확함
 - 이에 동 사업 성과지표인 전국 논벼 재배 농가의 직접 생산비 대비 들녘경영체 직접생산비 절감률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동 사업 조직화에서 부터 정착 및 사업다각화를 위해서는 자원·수익성을 고려한 작부 체계 다양화 및 공동 판매·마케팅 등 세부추진 추진 방안 로드맵 수립이 필요함. 또한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성과지표의 추가 개발이 요구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농림축산식품부
사 업 명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사업
보조유형	지자체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2.6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7.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8.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1.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10.0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5.6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4.1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1.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변경 ·3년이 경과한 만큼 계획수립, 연구용역, 교육에 집중된 내역사업을 점차 감소시켜나갈 필요가 있음. ·본 사업이 건강한 먹거리 보장,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의 사업은 지자체의 계획수립 연구용역 지원이나 교육에 치중되어 농가소득향상, 건강한 먹거리, 음식물 쓰레기량의 감소 등 가시적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음. 이미 3년이 경과한 바 계획수립 수요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동일 프로그램(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효율화) 내역사업들과 통폐합을 통해 계획/실행 간 일관성 및 시너지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계획수립이나 연구용역 예산부분을 삭감하고, 목적이 불확실한 내역사업은 동일 프로그램 내 타사업(푸드선진화 사업)으로 이관하여 폐지하고, 사업예산을 지역 먹거리산업의 활성화나 푸드 순환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의 법적 근거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제17조에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 단, 지역농산물의 이용 촉진과 직거래 관련 전문가 양성을 국고보조를 통해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님.

< 지역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9조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 ① 농식품부 장관 및 지자체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의 설치·개설·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농식품부 장관 및 지자체 장은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농식품부 장관 및 지자체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7조 (지역농산물 품질개선)

- ① 지자체 장은 지역농산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목적은 지자체가 지역 푸드플랜을 효과적으로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먹거리 보장,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개선을 도모하는 것으로 지역간 불균등 발전, 농가위기, 음식물 쓰레기량의 증가, 안전한 먹거리 등 우리사회의 현안과 관련된 정책으로서의 타당성이 인정됨.
- 국정과제 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83-4 건강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 공급 체계 구축과의 관련성이 인정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내역사업의 주 내용이 푸드플랜의 실행을 위한 농가조직화 및 안전관리나 실질 사업을 지원하는 것보다 (지자체의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지자체의 계획수립, (푸드플랜 실행주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중심으로 구성되어 보조금 사업이 목적으로 제시한 지역 농산물의 소비제고, 지역경제활성화, 음식물의 순환체계를 개선하여 환경 지속성을 제고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음.
- 이중 지자체 경상보조는 2018~2020년 동안 23억원의 사업비를 사용하여 지역별 먹거리 생산-유통-소비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체 사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달함.
- 본 사업에 의해 2018년과 2020년 추진되는 푸드플랜 확산기반조성 사업은 교육과 홍보가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푸드플랜 구축지원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미흡함.
- 국고보조 사업의 목적에 맞게 본 사업에 의해 증가한 농가소득 규모(지역농산물 판매량), 푸드산업 규모, 참여자 수, 거래횟수와 거래금액, 지역주민의 먹거리 안정성에 대한 평가, 음식물 쓰레기량 대신 본 사업은 푸드플랜을 수립한 지자체 수를 평가지표로 설정하고 있어 성과지표가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계획된 성과가 나왔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바 향후 지표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일 프로그램(농산물수급안정 및 유통효율화) 내 타 보조사업(푸드서비스 선진화, 식품소비 및 산업인프라 강화)이나 타 보조사업(식약처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공공급식 운영활성화지원)과 상위 사업목적은 유사하나 사업주체나 대상이 상이한 측면이 있음.
- 본 사업의 내역사업이 연구, 계획수립, 교육 등 비수익사업에 집중하고 있어 타 보조사업과 내용이나 규모 면에서 상이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자체가 본 사업의 필요성을 의미하지는 않음.
- 단, 지역간 불균등 발전의 심화나 농업부문의 위축상황을 고려할 때 농업중심 지역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쟁력있는 먹거리 개발에의 실질적 기여가 가능하도록 성과를 고려한 사업방식 변경을 추진한다는 조건으로 본 사업을 연장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이 인정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지자체 보조의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정한 기준보조율 50%를 준용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는 없음.

< 국고 보조금 내역 >

구분		2018(결산)	2019(예산)	2020(예산)
지자체	국고 보조금	800백만원	500백만원	3650백만원
		50%	50%	50%
	지자체 부담	800백만원	500백만원	3650백만원
		50%	50%	50%
	합계	1600백만원	1000백만원	7300백만원
		100%	100%	100%
민간단체	국고 보조금	250백만원	-백만원	1400백만원
		100%	-%	100%
	민간단체 부담	0백만원	-백만원	0백만원
		0%	0%	0%
	합계	250백만원	-백만원	1400백만원
		100%	100%	100%
국고 보조금 총액		1,050백만원	500백만원	5,050백만원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본 사업을 통한 이익이 지역경제에 공헌 한 경우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에의 공헌’이 인정될 수 있으나 아직 연구 또는 계획단계로 이러한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었는지는 의문임(1점).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사업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절차, 사업자 선정기준, 사업추진체계 등을 공개하고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어 관련된 논란의 여지가 적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지자체로 하여금 사업추진실적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서면/현장 병행, 전문가 합동 점검)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반환조치 하도록 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농식품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부실화된 지자체 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적발사례가 한건도 없어 실효성이 있었는지는 의문임.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별도의 지침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점검 지표를 마련하여 추진일정, 푸드플랜의 주요내용 등을 서면 점검하고, 전문가와 함께 현장점검 실시하고 있음(1점).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사회통합과 식량안보, 농촌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본 사업의 취지는 적절하다고 판단됨.
- 그러나 본 사업이 건강한 먹거리 보장,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의 사업은 지자체의 계획수립 연구용역 지원이나 교육에 치중되어 농가소득향상, 건강한 먹거리, 음식물 쓰레기량의 감소 등 가시적 성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3-2 정책 제언

- 그간 사업비의 대부분이 계획수립, 연구용역과 교육 중심의 내역사업에 사용되었음. 이미 3년이 경과한 바 이들 내역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은 줄이고 지역 푸드플랜이 가시적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실행 지원사업에 집중된 보조지원금 구성비 변화와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함.
- 2020년에는 수립한 푸드플랜의 실행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사업이 반영되었음.
- 목적이 불확실한 내역사업은 동일 프로그램 내 타사업(푸드선진화 사업)으로 이관하여 폐지하고, 사업예산을 지역 먹거리산업의 활성화나 푸드 순환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농림축산식품부
사 업 명	축산물수급관리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4.8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4.8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1.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7.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8.8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0.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사업방식변경(가공원료유지원, 2022년) · 사업 환경이 변화하고 지원 대상 산업과 타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사업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 가공원료유지원 대상 물량이 2018~2019년 40,000톤에서 2020년 44,000톤으로 증가하였는데, 국산 가공원료유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공유용 원유로 인해 생기는 손실부분을 정부, 낙농가, 유업체가 함께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낙농제품의 경우 초과공급을 조금씩 감축시키면서 장기적 수급 안정을 위한 방향으로 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원유가격을 음용유와 가공용(치즈, 버터 등)으로 구분하여 유업체가 사용한 용도별로 원유가격을 낙농가에게 지불하는 원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 할 필요가 있으나, 다만, 이해당사자간 입장 차이, 낙농가의 젖소 착유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가공유 수요 및 생산가능 물량 등 사전준비를 통해 추진되어야 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축산물수급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는 축산법 제3조에서 포괄적으로 인정되나 내역사업별로 명시적이지는 않음
 - 축산법 제3조 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함
- 내역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 역시 축산법 제3조에서 포괄적으로 인정됨
 - 축산법 제3조 2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함

< 축산법 >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축산물의 수급관리를 통해 농가경영안정 및 수급안정 도모하겠다는 목적이 명확하고, 개별 내역사업의 경우에도 대체로 타당성이 인정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의 구성은 대체로 합리적임
 - 송아지생산안정은 송아지 생산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송아지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높은 송아지 가격으로 보전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



- 가공원료유지원은 최근 수입산 유제품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산 가공유제품 생산과 시장 확대에 기여한 유업체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국내 우유 생산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기여함
-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는 민간 자율의 축산물 수급조절 기반과 축종별 산업 발전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사업임
- 낙농통계관리시스템은 통계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제반비용 지원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임
- 생계 및 소득안정은 가축전염병 등의 발생 시 생산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임
- 학교우유급식은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무상우유급식 지원으로 영양불균형 해소 및 우유 소비기반 확대를 통한 낙농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임
- 계란유통센터 시설현대화는 위생·안전한 계란 공급을 통해 국민적 신뢰에 기반 한 안정적인 소비수요 확보 및 계란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임

○ 대부분의 내역사업에 있어서 계획상의 목표 달성도가 양호함

○ 낙농통계관리시스템은 낙농통계 수집·분석 및 산업계 전파, 원유수급예측모형 운영 및 정책자료 작성, 통계시스템 관리 및 원유전자배송시스템 운영 등의 필요성으로 현재 5명의 사업수행 인원이 있으나, 사업의 성과가 인력과 예산의 규모에 비해 가시적이지 않음. 엄밀한 사업 관리로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사업수행 인원) 5명(통계수집·분석 3명, 시스템 운영·관리 2명)

- 낙농통계 수집·분석 및 산업계 전파, 원유수급예측모형 운영 및 정책자료 작성, 통계시스템 관리 및 원유전자배송시스템 운영 등

※ 낙농통계관리시스템 추가 구축, 원유수급예측모형 개발·운영, 유제품 소비통계 분석 등 사업 확대에 따라 인력 확대(3명 → 5명)

<낙농통계관리시스템 업무 현황>

업무 수행 내용	세부 추진업무
낙농통계 수집·분석을 통한 원유수급안정 기초자료 제공	① 낙농가 원유생산, 쿼터 변동내역 관리 ② 우유·유제품 생산·소비실적 관리 ③ 유제품 소비 통계 분석(시유, 발효유, 치즈, 조제분유) ④ 우유·유제품 생산·소비 예측 ⑤ 유제품 수출입 실적 관리(국가별, 코드별, 품목별) ⑥ 사료 통계 관리(조사료, 배합사료 생산·수입) ⑦ 젖소 사육 관리(젖소가격, 사육현황, 검정실적) ⑧ 원유가격 결정을 위한 각종 통계 관리(원유생산비, 관련 물가 변동상황, 유제품 가격 변동 등)



업무 수행 내용	세부 추진업무
	⑨ 해외 낙농통계 수집(원유가격, 국제 선물가격 등) ⑩ 기타 관련 통계 수집 - 기상 여건(기온, 습도, 강수도, 온습도 지수 등) - 소비 여건(소비자·생산자 물가, 소비심리 지수) 등
낙농통계시스템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낙농DB 보호 및 산업계 공유	① 사용자 요구에 따른 입출력 프로그램 수정 ② 통계자료 확장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③ 통계DB 보호를 위한 주기적인 백업시스템 운영 ④ 웹 방화벽 및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솔루션 운영 ⑤ 낙농통계시스템 운영서버 유지보수 ⑥ 운영S/W 유지보수 ⑦ 네트워크 및 웹 방화벽 운영 및 관리
원유수급예측모형 운영 등을 통한 원유수급조절 기능 강화	① (원유수급예측모형) 젓소이력데이터와 외생변수(물가, 기온, 가격 등)를 반영한 원유생산 예측을 통한 원유수급조절 기능 강화 ② (원유수급 신호등 운영) 잉여량 분유제고량 등을 지수화하여 원유수급 상황 판단 및 산업계 공유 ③ (수급불안 대응) 메르스, 코로나, 구제역 등 수급 불균형 발생 시 원유 수급 파악 및 신속 대응 - 주간 단위 유업체 수급현황, 유제품 가격 조사 등 실시 ④ (FTA 확대 대응) 각종 FTA 추진시 국가별 교역 현황 및 품목별 대응 ⑤ 단(중)기 수급상황의 선제적 대응 및 정책판단의 기초자료 분석
원유전자배송시스템 운영을 통한 우유 신선도 유지 및 운송비 절감	① (집유 정보 관리) 농가, 집유차량, 차량기사, 농가별 생산쿼터 등 기본 사항 변경 관리 ② (운송정보 관리) 집유주체별 집유구역, 집유장 및 원유 공급업체 등록·관리 ③ (최적노선 편성) 다양한 집유노선 제약조건(세균수, 체세포수, 일납유량, 첫집유, 격일집유 등)을 반영한 최적노선 자동 편성 ↓ ① (우유품질 향상) 최신 도로 DB 업데이트를 통한 운송시간 단축으로 우유의 신선도 유지 ② (운송비 절감) 최적 집유노선 설정을 통한 집유차량 운송거리 단축으로 운송비 절감 유도 - 집유차량·이송차량 운행실적 및 결과 자료 제공 - 합리적인 운송비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③ (가축전염병 신속 대응) 농가 및 집유정보를 활용하여 가축 전염병 발생시 신속 대응
기 타	① 낙농정보 산업계 공유 - (온 라 인) 홈페이지, 스마트 낙농 게시 - (오프라인) 낙농통계연감, 월간낙농, 찾아가는 낙농통계 등 정기 간행물 발간·보급 ② 낙농 통계 정확성 확보를 위한 사용자 교육 실시 - 낙농조합, 유업체 관계자 등 ③ 원유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전수 조사 - 전국 무쿼터 농가 현황 - 전국 낙농가, 집유주체 원유 거래실태 조사 ④ 낙농통계 세분화, 고도화를 위한 동향 파악 - 신규 유가공 업체 현황 파악 및 사용실적 등록 유도(상시) - 목장형 유가공 현황 파악·분석 ⑤ 해외 낙농산업 동향, 정보 파악 - 해외 유가공 관련 기사 취합·공유(매일) - 낙농산업 지속 가능성 관련 해외 사례 수집·전파 - 관련 국제규격 등 파악 및 산업계 공유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각 내역사업들이 환경변화에 취약한 축산업의 수급관리, 가격안정, 가축질병 피해농가 경영안정 회복 등의 목적 달성에 기여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 학교우유급식의 경우 일부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며, 학교급식과의 통합이나 간식형태의 제공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과거 평가에서 교육부의 학교급식와의 통합운영이 제시된 바 있으나, 현재 재원 및 업무영역의 통합의 어려움이 있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농식품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실무회의 시 현행 사업체계를 유지하기로 결정됨
- ※ 교육부의 학교급식 수준(545만명)까지 무상우유급식을 실시(약 5,859억 원이 소요)하는 것은 축발기금 운용규모(1조원 수준) 및 지방재정 여건 등을 감안 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됨.
- 타사업과의 유사중복 가능성은 낮음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일부 세부사업의 예산 산정기준이 미흡함
- '19년 국내 ASF 최초 발생으로 인해 양돈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 규모가 증가하였기에 생계 및 소득안정 예산이 '20년 5,000백만 원 수준 하였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가에 대한 재입식이 지연되어 6개월 이상 생계안정자금 지속 지원이 필요하며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동제한이 해제되고 있지 않아 양돈농가 소득안정자금 지속 지원이 필요함
- 구제역, 고병원성 AI,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고, 그 외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위협에 따라 생계소득안정자금은 '20년 수준으로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 최근 집행액(백만원) : ('15) 4,607, ('16) 1,442, ('17) 13,228, ('18) 2,711, ('19) 1,402, ('20) 5,000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우유급식 사업의 경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고른 영양섭취를 통한 신체발달 및 건강증진을 위한다는 사회적 가치가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절차는 적정함

- 송아지생산안정은 축산법 제51조(권한의 위임·위탁) 제6항 및 시행령 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제3항에 의거 사업 관련 업무를 농협중앙회에 위탁하고 있음
- 가공원료유지원은 사업 시행지침서에 보조사업자를 낙농가(낙농진흥회 ‘쿼터이력관리 시스템’에 매월 쿼터 변동사항을 등록하는 농가)와 집유주체(낙농진흥회와 ‘원유수급안정 협약서’를 체결하고 적정 생산량 유지 및 사후관리 점검자료 제공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 집유주체)로 명시되어 있으며, 가공유제품 임가공 또는 생산 실적이 없는 집유주체, 목장형 유가공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는 각 축종별 전년 수급조절협의회 실적 등을 근거로 자금을 배정하고, 협의회 개최 실적에 따라 자금을 교부하고 있음
- 낙농통계관리시스템의 경우 낙농통계 전문기관인 낙농진흥회를 사업대상자로 하고 있어 별도의 선정절차가 불필요함
- 생계및소득안정의 경우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라 살처분 농가 및 피해가 발생한 농가가 지자체에 신청하고, 지자체는 증빙 자료등을 확인한 뒤 농식품부에 제출 및 신청하고 있음
- 학교우유급식의 경우 학교우유급식사업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교육청과 협의한 후 다음연도 사업수요조사서(8월말)를 농식품부에 제출하며, 지방비 부담비율은 특·광역시 50%, 도 50%, 시·군 50% 부담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계관유통센터 시설현대화는 사업 시행지침에 사업자 선정은 사업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지자체(시·군→시·도)의 자체 평가와 기본요건 평가 및 전문가 서면·발표평가를 거쳐 적합한 자에 한해 농식품부가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자별 추진실적을 고려해 자금을 교부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 계획, 단계 집행점검 등 적절한 집행 관리체계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보조사업 실 집행현황, 단계 집행현황 점검 여부, 집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패널티 적용 및 개선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신청단계에서 사업대상자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정기적으로 사업 운영실태 점검 등을 실시,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내용을 인지시키는 등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적절한 방안들을 수행하고 있음
- 3년간 부정수급 사례는 없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 등의 사업 관리를 위해 사업시행지침 등에 따라 점검하고 있음
 - 가공원료유지원의 경우 현장 점검을, 학교우유급식의 경우 만족도 조사를, 계란유통센터 시설현대화의 경우 지자체 및 농협 점검회의, 현장 점검 등을 시행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축산업의 진흥, 농가 소득 안정 및 수급조절을 목적으로 보조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수혜자가 명확하고 사업 관리 체계도 적절하다고 판단됨
- 일부 내역 사업(가공원료유지원)의 경우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방식에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보조금 집행과 사후관리에 대한 체계는 적절하게 마련되어있다고 평가됨

3-2 정책 제언

- 송아지 생산안정, 가공원료유지원과 같은 내역사업의 경우 단기적인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장기적인 목표가 상충될 가능성이 높으나 당장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의 증액시키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수급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 가공유용 원유로 인해 생기는 손실부분을 정부, 낙농가, 유업체가 함께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낙농통계관리시스템은 성과 관리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원유가격을 음용유와 가공용(치즈, 버터 등)으로 구분하여 유업체가 사용한 용도별로 원유가격을 낙농가에게 지불하는 원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농림축산식품부
사 업 명	축산물유통 및 소비촉진제고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7.0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7.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4.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1.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4.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0.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 감축, 사업방식변경 · 축산물브랜드교육사업의 감축과 축산물브랜드경진대회 및 전시사업 2022년말 폐지에 따라 동 세부사업의 예산에서 2021년 ~ 23년 안에 높은 수준의 감축이 필요함 · 사업 수혜자 범위가 협소한 축산물브랜드교육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 이미 축산 브랜드가 다수 활성화 되어 있고 브랜드 간 경쟁도 심화되는 등 환경 변화로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특히 축산물브랜드 교육사업과 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 및 전시사업의 직접적인 혜택은 일부 브랜드경영체에게 발생하는 것처럼 판단되며, 생산자소비단체협력사업은 사업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생산자소비단체협력사업의 경우 효과성 제고를 위해 객관적 사업평가가 가능한 사업성과지표를 도입하고 측정 방법을 개선하며, 내역사업 명칭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축산물브랜드교육사업 보조금은 감축하여 추진하고 브랜드경영체의 브랜드 홍보 기회를 주는 민간사업 성격의 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 및 전시사업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축산물유통 및 소비촉진 제고에 대한 법적 근거는 명확하고 구체적임
 - 축산법 제4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함
- 내역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는 포괄적으로 인정되고 있음
 - 축산법 제47조에서 축산발전기금을 “1.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2.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 3. 가축과 축산물의 유통 개선, 3의2. 「낙농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낙농진흥계획의 추진, 4. 사료의 수급 및 사료 자원의 개발, 5. 가축 위생 및 방역, 6. 축산 분뇨의 자원화·처리 및 이용,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사업에 대한 사업비 및 경비의 지원, 8.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자조금에 관한 지원, 9.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 말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 10. 그 밖에 축산 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필요한 업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게 하였으나 일부 내역사업의 경우 명확하게 합치하다고 보기 어려움
 - 제47조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1. 축산통계·정보 및 관계 자료의 수집·처리·교환과 발간, 2. 축산발전을 위한 조사·분석과 연구, 3. 축산발전에 관한 홍보,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축산업협동조합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5. 축산사업에 대한 대출촉진을 위한 지원, 6. 가축보호를 위한 사업, 7. 축산 분야의 신기술 또는 지식을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자,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외에 기금증식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승인한 사업”을 의미함



< 축산법 >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7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08. 2. 29., 2009. 5. 8., 2013. 3. 23., 2018. 12. 31.>

1.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2.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 3. 가축과 축산물의 유통 개선 3의2. 「낙농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낙농진흥계획의 추진 4. 사료의 수급 및 사료 자원의 개발 5. 가축 위생 및 방역 6. 축산 분뇨의 자원화·처리 및 이용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사업에 대한 사업비 및 경비의 지원 8.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자조금에 관한 지원 9.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 말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 10. 그 밖에 축산 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방법 및 교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세부사업인 축산물유통 및 소비촉진제고의 목적이 단위사업인 축산물수급관리의 목적과의 부합성이 일부 인정되나, 현재 사업방식으로는 내역사업의 직접수혜자가 소비자단체, 브랜드경영체에 다소 한정된다는 한계가 있음. 특히 일부 내역사업은 국민들이 ‘축산 관련 정책’을 이해하고 국내산 축산물 소비 촉진을 유도한다는 목적이 있으나 현재의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예산 대비 수혜인원을 확대하고 그 효과성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축산물의 수급관리를 통해 농가경영안정 및 수급안정 도모라는 단위사업의 목적에 있어서 축산물 브랜드가 국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육성되어야 하는 객관적 근거는 다소 미흡함
- 2000년부터 정부 축산 브랜드 육성을 시작한 이후(2004년 축산물 브랜드 육성 대책 수립), 이미 축산 브랜드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축협 간의 과다 경쟁 양상도 있어 장기적으로는 시장경쟁 원리에 의하여 평가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 보조사업의 수혜자 범위가 넓지 않고 파급효과도 크지 않음
 - 보조사업의 1차 수혜자는 축산농가, 브랜드경영체, 소비자단체 및 관련 산업 종사자이며, 일부 내역사업은 수혜자 범위가 다소 제한적임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의 구성도 일부 검토가 필요함
 - 생산자소비자단체협력사업은 소비자단체에 축산물 소비촉진관련 조사·교육·홍보 등을 지원하여 축산시책 및 축산물의 우수성·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평가 지표는 소비자대상 교육·홍보 시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로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 지표로 보기 어려우며 목표도 낮게 책정한 것으로 판단됨
 - 평가 지표로 교육대상자의 교육 만족도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일반소비자 대상 축산정책의 이해도에 관한 지표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 축산물브랜드 교육사업과 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 및 전시사업의 직접적인 혜택이 일부 브랜드경영체에게 발생하여 산업 전체 또는 국민 전체에 미치는 효과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보조사업에 포함된 일부 내역사업들에 대하여 보조금의 의존도를 줄이거나 사업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제축산박람회 개최 지원 사업, 우수축산물브랜드인증사업 등 우리 축산물의 우수성·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은 보조금으로 수행됨
 - 현재 축산물브랜드 교육 사업은 직접적인 혜택이 일부 브랜드경영체에게만 발생하여 사업의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음
 - 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 및 전시사업은 브랜드경영체의 브랜드 홍보 기회를 주는 민간사업 성격으로 국고 지원의 필요성이 낮음
- 생산자소비자단체협력사업은 국민들에게 축산정책을 교육·홍보하고, 소비촉진 등 축산물 수급안정 도모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소비자단체는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신뢰와 소비시장 확보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을 지고 있음
 - 각 소비자단체는 축산정책에 대한 제언과 소비자 인식제고를 위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나 모든 단체의 성과가 뚜렷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에 관리 및 평가를 강화하여 보다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며 사업의 명칭도 사업의 성격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단체의 과제별 수행 성과 제고를 위해 공모 평가 시 전년도 성과 등을 적극 반영하여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확대하는 등 사업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타사업과의 유사중복 가능성은 낮음

< 최근 3년 소비자 단체 협력사업 지원과제 내역 >

단 체 명		소비자단체 협력사업 추진과제		
		2017년	2018년	2019년
①	G단체	○ 돼지고기 산지-소비자 가격연동성 조사·교육·홍보	○ 축산물 산지-소비자 가격 조사·교육·홍보	○ 축산물(한우, 돼지) 소비자 가격 및 소비행태 인식 조사·교육
②	Y단체	○ 동물복지 인증제 및 인증 축산물 소비촉진 교육·홍보	○ 동물복지 축산물 소비촉진 교육·홍보	○ 계란 사육환경표시 실태 등 축산물시장에 대한 소비자 요구 조사, 안전한 축산먹거리 홍보 및 정책시사점 발굴
③	W단체	○ 지리적표시제 및 지리적표시제 축산물 소비촉진 교육·홍보	○ 지리적 표시제품 소비촉진을 위한 소비자 교육·홍보	○ 가장간편식(HMR)시장에서의 국내산 축산 원재료 사용 실태 조사 및 주소비계층 인식조사
④	C단체	○ 쇠고기 산지-소비자 가격연동성 조사·교육·홍보	○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평가·홍보	○ 축산물(국내산과 수입산)의 표시 광고 및 가격조사를 통한 국내산 축산물의 소비 활성화 방안 모색
⑤	E단체	○ 쇠고기 비선휘부위 소비촉진 교육·홍보	○ 쇠고기 저지방부위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 국내유통 벌꿀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및 수입산 벌꿀 품질수준 분석
⑥	P단체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가공품 소비촉진 교육·홍보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실태조사·홍보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실태조사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 홍보
⑦	I단체	○ 친환경 축산물 인식조사, 홍보 모니터 양성, 콘텐츠 개발·교육·홍보	○ 염소고기 소비실태 조사	○ 가공류 및 가공산물 이력제 확대에 따른 소비자 인식조사 및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한 소비자 교육·홍보
⑧	U단체	○ 닭고기 산지-소비자 가격연동성 조사·교육·홍보	○ 온/오프라인 판매 축산물 대상 표시광고 모니터링과 인식도 조사, 표시제도 개선 및 교육·홍보	○ 온라인·홈쇼핑 판매 축산물 표시광고 모니터링 및 축산 물 관련 이슈 점검과 교육을 통한 홍보·정책 제언
⑨	Y단체	○ 친환경 축산물 인증 및 인증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 축산물 이력제 소비자 조사·교육·홍보	○ 축산물 이력제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및 이력정보 활용 홍보
⑩	M단체	○ 쇠고기 등급제(개편) 소비자 대상 교육·홍보	○ 쇠고기 등급제 인식도 조사·교육·홍보	○ 쇠고기등급제(개정) 인식도 조사, 교육 및 홍보사업
⑪	K단체	○ 돼지고기 저지방부위 등 비선휘부위 소비촉진 교육·홍보	-	-
⑫	N단체	○ 단체 급식 등 종사자·이용자 대상 교육·홍보	○ 집단급식소 우리 축산물 교육·홍보	○ 영양사 대상 국가 축산정책 인식도 조사 및 축산물안심 소비체계 구축을 위한 집단급식소별 맞춤 교육·홍보
⑬	L단체	○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축산물 소비활성화	-	-
⑭	M단체		○ 돼지고기 저지방 부위 소비촉진	○ 소비자 대상 돼지고기등급제 교육·홍보
⑮	T단체	○ 실속형 축산물 소비촉진 교육·홍보	-	-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일부 내역사업의 경우 예산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생산자소비자단체협력사업의 경우 여타 내역사업에 비해 가장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도 소비자단체별 지원 금액(12개 단체 × 65,833천원)에 대한 산정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 단체별 활동 내역과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이 배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축산물브랜드 교육의 경우에도 회의비, 운영수당, 수용비, 광고홍보 비용 산정기준이 다소 미흡하며, 불필요한 예산은 감축할 필요가 있음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수혜대상자가 제한적이며, 국민 후생 증진에 직접적 효과가 보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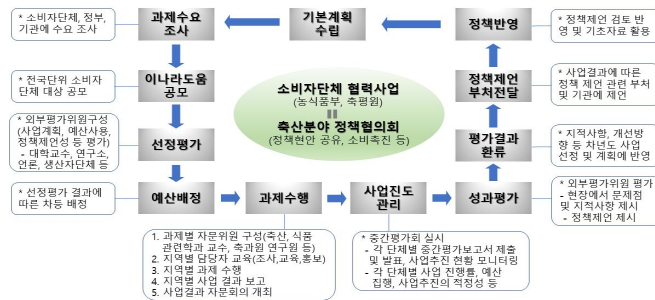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절차는 적정함

- 기본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선정함. 생산자소비자 협력사업의 경우 관련부서·유관기관·소비자단체를 통해 수요조사를 하고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수혜 대상 단체의 명단과 예산 금액의 변동을 살펴보면 과거 활동 내용에 대한 평가 결과에 의거하여 엄밀하게 단체 선정이나 예산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 축산물경진대회는 서류·현지 실사 후 경진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우수브랜드를 선정하고 있음

< 생산자소비자 협력사업 추진체계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 집행 관리체계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기본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집행됨. 또한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점검, 정산, 반환을 수행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제88조에 부정수급 사유, 중도회수 사유, 환수 방법,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 및 납부절차, 부정수급자 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의 중복/부정수급관리를 통해 확인 및 사업지침에 명시하여 관리하고 있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해당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보조사업의 수혜자 범위가 제한적인데, 사업방식 변경을 통하여 축산물의 수급관리를 통해 농가경영안정 및 수급안정 도모라는 단위사업의 목적 달성에의 기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장기적으로는 경영체에 대한 지원은 지양하고 소비 증진에 있어서도 축산업 관련 경영체의 자체부담 비중을 늘려 시장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생산자소비자단체협력사업의 경우 성과 지표의 특성 상 객관적 사업 평가를 수행하기 어려움. 사업에 관리와 평가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축산물브랜드 교육사업의 경우에도 수혜자 범위가 다소 협소하여 예산의 산출 근거도 불명확함
- 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 및 전시사업은 개별 브랜드에 대한 홍보가 산업 전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수혜자가 브랜드경영체가 협소하여 해당 사업은 민간에서 수행되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됨

3-2 정책 제언

- FTA로 인한 축산 시장 개방 등으로 축산업이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온 것은 사실이나, 축산업 생산액 및 축산 농가의 평균 소득 등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는 보조금 혜택이 개별 단체나 경영체에 수혜가 가는 사업은 축소하고 정부의 지원 정책 방향을 국산 축산물의 안전성 제고, 정보수집 및 연구개발 등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국제축산박람회 개최 지원 사업, 우수축산물브랜드인증사업의 경우 국비 지원의 타당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나 생산자소비자단체협력사업의 경우 효과성 제고를 위해 객관적 사업평가가 가능한 사업 성과지표를 도입하고 측정 방법을 개선하며, 내역사업 명칭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축산물브랜드교육사업 보조금은 감축하고 브랜드 홍보가 목적인 민간사업 성격의 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 및 전시사업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농림축산식품부
사 업 명	한발대비용수개발
보조유형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9.6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9.6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6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5.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30.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0.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변경 ·정책의 목표에 가뭄피해 ‘예방(대비)’과 ‘대처(대책)’가 혼재되어 있고, 2019년 실행행위가 낮았으며, 성과지표가 가뭄대비 효과를 나타내기에 한계가 있고, 중장기적 목표의 단계적 발전이 보이지 않음 ·사업 내용에 가뭄에 대한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대처’가 섞여있어서 사업의 중심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실행행위가 최근 2019년에는 양호한 강우상황으로 인하여 74.8%로 낮았고, 중장기 재정계획에서 단계별로 향상시킬 편익과 효과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음 ·수리안전담의 비율이 아직 62% 수준인 상황에서 가뭄 대책 강화 필요성은 기본적으로 인정되므로, 사업의 성격을 분명히 하되 긴급대응은 가능한 한 별도의 예비비등으로 하고 사전적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임. 그에 상응해서 중장기적으로 달성할 사업의 편익을 구체적으로 계획할 필요가 있음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포괄적인 법적인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3조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등으로 명확함

농업재해대책법

제3조(재해대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해대책을 마련한다. <개정 2010. 1. 25., 2014. 3. 24.> 1.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비·기자재 또는 인력 및 비용의 지원 및 동원에 관한 사항 (중략)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중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 12. 18., 2014. 3. 24.>

1. 가뭄 피해 대책의 경우

가. 양수(揚水)를 하였을 때에는 그 양수에 든 유류대금(油類代金) 및 전기료

나. 양수기와 양수용 발동기의 구입비

다. 양수용 펌프와 관정(管井)의 시설비

(하략)

- 단, 사업 명칭은 ‘한발대비용수개발’이지만 그 내용은 사전적 ‘대비’와 사후적 ‘대책’이 섞여 있어서 사업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국정과제 56번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와 관련성이 강하지는 않으나 어느 정도 인정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가뭄에 ‘대비’하는 사업으로서 가뭄에 대응할 수 있는 용수시설이 마련된 지역을 연차적으로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주어진 자료에서는 그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찾기 어려움(표 1-2-1)
- 그런 면에서 성과지표도 재검토가 필요해 보임
 - 현재 사용하고 있는 ‘(1-(가뭄피해면적/가뭄발생전체면적))×100’은 가뭄이 발생한 후에야 측정가능한 ‘대책’의 성과만을 측정하는 것임



- 그러므로 사후적 ‘대책’이외에 ‘대비’사업으로서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적으로 개발하여 이용하거나, 이 두 가지를 아우를 수 있는 성과지표를 이용하는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재해예방과 대응은 그 속성상 규제나 용자로 대처하기 어렵고 보조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실수해자 및 잠재적 수해자는 명확하고 광범위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율은 보조금법 시행령에 명시된 바에 따라서 80%로 적용되고 있음
- 실집행률이 2018년까지는 양호한 편이었으나 2019년의 경우 74.8%로 낮은 편임
 - 영농기 강우 및 저수율이 상황이 양호해서 긴급지원액이 적었음(표1-4-2)
 - 이는 이 사업이 긴급지원 대응 성격을 갖고 있어서 예산 소요 예측이 어렵고 강우가 잘 이루어질 때 실집행률이 낮아지는 구조적 성격이 있음을 보여줌
 - ‘2019년 11월에 상습가뭄우려지역을 조사하여 ‘20년 영농기에 대비한 설치 등을 지원하였고 그 집행에 필요한 소요기간이 부족하여 이월이 발생’하였다고 하였는데(표 1-4-2), 이것은 사업 집행에 체계성이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 단, 수리안전답율(논면적 중 10년빈도의 가뭄에도 용수공급이 가능한 논면적의 비율)이 아직 62% 수준이고 신속히 증가하지 않고 있는 현상황에서는 가뭄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지자체 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기본적으로는 인정됨

표 465 논 면적, 수리답 및 수리답율 추이

	답면적(천ha)	수리답면적(천ha)	수리답율(%)	수리안전답율(%)
2014	933.6	752.6	80.6	60.1
2015	908.2	734.1	80.8	60.5
2016	895.7	727.9	81.3	60.9
2017	864.9	707.4	81.8	61.7
2018	844.3	696.4	82.5	62.3

자료: 농어촌공사(2019) “2018년 농업생산기반정비 통계연보”



- 2017년 이래 3개년 누적실집행률(3개년 실집행액/3개년 예산현액)은 93%로 가뭄 대비를 위한 정책의 기본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 2017년에는 4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이 집행된 바도 있었음

한발대비용수개발 집행률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실집행액)			
2017년 (결산)	12,500	52,500	52,500	-	-	97.8%
			(51,319)			
2018년 (결산)	12,100	12,100	12,100	-	-	90.6%
			(10,965)			
2019년 (실적)	11,700	11,700	11,700	-	-	74.8%
			(8,749)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기초조사보고서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가뭄은 그 특성상 근로 현장에 위험을 직접적으로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고 농업용수개발을 위한 사업이므로 생활조건 개선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보임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선정을 위한 규정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중 한발대비용수개발 항목에 마련되어 있음
- 그러나, 지자체의 사업추진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세부 규정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단, 이는 재해에 대한 ‘대책’측면에서 국가 지원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음
 - 다른 한편, 시간을 두고 보다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비’의 측면에서는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지자체의 능동적 협력을 유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사업 집행을 위한 규정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중 한발대비용수개발 항목에 마련되어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 관리를 위한 규정은 기본적으로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중 한발대비용수개발 항목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마련되어 있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통상적인 수준의 규정마련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자체적이고 추가적 사업관리 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근거가 보이지 않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수리안전담이 아직 62%인 현상황에서는 가뭄 피해를 예방하고 필요한 경우 긴급대처하기 위한 지자체 보조사업의 기본적 필요성은 인정됨
 - 실제로 2017년에는 당초 예산 125억원에 더하여 추경으로 400억원이 추가 집행된 바 있으며 2018년에도 121억원 중 90.6%가 실집행되었음
- 단, 평가대상 사업은 그 정책 목표에 가뭄피해 ‘예방’과 ‘긴급대처’ 성격이 혼재되어 있음
- 최근 실집행률이 낮아진 것도 정책목표에 이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임
 - 집행부처는 2019년 실집행률이 74.8%로 낮았던 이유가 양호한 강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 즉, 긴급대응 필요가 적어지면 집행률이 낮아지는 구조임
- 성과지표가 가뭄에 대비하는 효과를 나타내기에 한계가 있음
 - 현재의 지표는 사후적 대응의 성과를 보여주는 성격임
- 중장기적 목표의 단계적 발전이 보이지 않음

3-2 정책 제언

- 정책 목표를 ‘예방’과 ‘긴급대응’ 중 하나로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긴급대응은 별도의 예비비등으로 하고 사전적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임
 - 가뭄 상황 모니터링을 체계화하고 가뭄관련 예비비 신청 절차를 신속할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을 마련해 둬으로써 예비비 사용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임
 - 이것이 실집행률을 높이는 방안도 될 수 있을 것임
 -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도 매년 영농기가 마무리 된 후 용수공급부족 등 가뭄피해우려지역을 조사하여 연초부터 사전적 ‘대비’를 위한 예산을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판단됨
- 성과지표를 예방적 역량의 강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상습적 가뭄피해우려지역을 조사하고 그 지역에 대한 용수공급 시설기준을 마련하여 그 달성 정도를 성과지표로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중장기적 목표를 앞에서 예시한 성과지표를 참고로 하여 작성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목표의 구체적 설정에 있어서는 인구와 농산물 수요 전망을 참작해야 할 것임
- ※ 사업의 명칭에서 ‘한발’ 대신 ‘가뭄’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것
- 근거 법령(자연대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보조금 시행령) 모두에서 ‘가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한발’이라는 단어는 사용된 예가 없음

기관별 · 사업별 평가의견서

산업통상자원부

기후변화협약대응
무연탄발전지원
섬유패션산업활성화기반마련
세계엑스포참가지원
수소산업전주기제품안전성지원센터구축
어린이제품안전관리생태계조성
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
전기시설안전관리
전력산업홍보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지역에너지절약
특별지원사업(발전소주변지역)
해외플랜트진출확대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산업통상자원부
사 업 명	기후변화협약대응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0.4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5.4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9.4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8.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1.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5.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1.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 2021년 ~ 23년 안에 일정수준의 감축 및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함. · 사업수행기간이 장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발굴·공유·확산이나 중소·중견기업의 감축역량이 제고되었다는 가시적 성과가 불분명하며 사업내 내역사업간 중복성이 있음. · 에너지수요관리와 관련 ICT 업종의 국제경쟁력제고를 위해 투자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점은 인정되나, 배출권거래제나 저감투자에 대한 세제·재정상 지원 등 기업의 비용효과성을 고려한 자발적 감축투자 유인이 존재하고 강화되는 추세에 있는 만큼 국고 보조율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음. · EnMS의 도입(중소·중견기업 감축인프라 지원, 산업단지 감축 인프라 지원)과 관련된 복수의 내역사업은 통합함으로써 국고사용에 있어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고, 연구회는 수혜를 받는 협회나 기업이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국고보조율과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것을 제안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의 내역사업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기술 발굴·공유·확산, 중소·중견기업 감축인프라 지원, 산업단지 감축 인프라 지원, 대중소기업 동반감축 지원, 그린 크레딧 사업발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너지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등에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성이 미흡하고 국고를 통해 보조해야 한다는 근거는 없음.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제40조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 ③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변화
 2.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3. 온실가스 배출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및 부문별·단계별 대책
 4.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기후변화대응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7. 기후변화대응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8.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9.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제42조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목표관리)

- ① 정부는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온실가스 감축 목표
 2. 에너지 절약 목표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
 3. 에너지 자립 목표
 4.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제 4조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

< 에너지법 >

제 5조 (에너지열량환산기준)

에너지열량환산기준은 5년마다 작성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작성할 수 있다.

제 19조 (에너지관련 통계의 관리 및 공표)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에너지사용 및 산업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작성·분석하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유관기관 또는 산업통상 자원부령이 정하는 에너지사용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제 31조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 ①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자(이하 “에너지다소비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에너지사용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량·제품생산량
 2. 해당 연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예정량·제품생산예정량
 3.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
 4.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적 및 해당 연도의 계획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에너지관리자”라 한다)의 현황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이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14조 (금융·세제상의 지원)**

- ① 정부는 에너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설치·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업과 우수한 에너지절약 활동 및 성과에 대하여 금융상·세제상의 지원,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 (사업의 범위)**

- ②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의 출연대상이 되는 에너지 및 자원 관련 기관·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 45조 제①항에 의한 한국에너지공단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57조 (한국에너지공단 사업)**

1.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 외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그 밖의 기관 등이 위탁하는 에너지이용의 합리화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5조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 ①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배출·흡수 계수(係數),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검증·관리하는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산업통상자원부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이 국가 기후변화협약 대응의 핵심사항인 만큼 본 사업목적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본 사업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발굴과 확산이나 중소기업의 기후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 보조금 지급이 필수적이라는 법적 근거는 모호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발굴과 확산이나 중소기업의 저감능력이 제고되었다고 판단할 근거가 불명확함.
-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발굴과 확산은 사업장별 기술지도 완료건수, 중소기업의 저감능력은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건수로 측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본 사업이 목적으로 한 기술의 발굴·확산, 중소기업의 저감능력이 제고되었다고 평가할 근거가 미흡함.
- 주무부처가 본 사업에 대한 자체 성과평가나 정책달성 기여도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 향후 개선가능성도 불분명함.
- 총 사업예산의 13.1%를 차지하는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기술 발굴·공유·확산의 주 내용이 전문가 협의체 구성으로 연도별로 줄어들고는 있으나 그 실효성이 모호한 가운데 연간 8.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추가 삭감이 필요함.
- 총 예산의 80%를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 감축 인프라 지원(59.1%)이나 산업단지 감축 인프라 지원(20.9%)은 에너지수요관리와 관련 ICT 업종의 국제경쟁력제고를 위해 연장·유지될 필요가 있으나 모두 EnMS확산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별도의 내역사업으로 추진할 이유가 불분명함. 기후변화협약대응 사업으로 추진하기 보다 산업통상자원부내 다양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과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보조사업의 세부내역 >

내역사업 (주요 사업)	보조유형	사업 기간	18년 실적	19년 실적	20년 계획	합계 (백만원)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기술 발굴·공유·확산 (업종별 연구회 운영)	민간경상	'17~계속	1,000	900	855	2,755
중소·중견기업 감축 인프라 지원 (EnMS 인프라 구축 지원)	민간경상	'17~계속	3,716	3,797	4,950	12,463
산업단지 감축 인프라 지원 (EnMS 인프라 구축 지원)	민간경상	'19~계속	-	2,200	2,200	4,400
대중소기업 동반감축 지원 (중소기업 에너지 절감 기술 컨설팅 지원)	민간경상	'17~계속	250	250	238	738
그린크레딧 사업 발굴 지원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에 감축설비 투자, 외부사업 전환)	민간경상	'17~계속	250	250	238	738
합계			5,216	7,397	8,481	21,094



- 대중소기업 동반감축 지원(3.5%)이나 그린크레딧 사업 발굴 지원(3.5%)은 소규모로 실효성이 의심됨. 장기적으로는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대체하게 함으로써 비용효과적 상생구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발굴과 확산이나 기업의 기후대응 능력 제고가 연구회 및 연구용역(온실가스 감축기술 발굴·공유·확산)이나 자문활동에 대한 국고보조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님.
- 본질적으로 기업의 저감활동은 기업이 비용효과성을 고려하여 주도하는 것이 비용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하다는 점에서 국고보조는 필요한 시점에 제한적으로 실행할 수는 있으나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 특히 환경시설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이나 재정지원 등의 정책이 존재하며, 배출권거래제에 의해 감축활동이나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활동이 비용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 보조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음.
- 보조사업 뿐만 아니라 내역사업간 중복성이 있음.
 - 중소·중견기업 감축 인프라 지원(민강경상)이나 산업단지 감축 인프라 지원(민강경상)이 EnMS 지원이라는 점에서 유사함.
- 본 사업의 실수혜자는 매우 제한적이며 기초보고서는 간접 수혜자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음.

< 보조사업 수혜자 >

구분	직접 수혜자			간접 수혜자		
	18년	19년	20년	18년	19년	20년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기술 발굴공유확산	13	14	14	-	-	-
중소·중견기업 감축 인프라 지원	15	21	25	-	-	-
산업단지 감축 인프라 지원	-	21	21	-	-	-
대중소기업 감축 동행 지원	70	70	70	-	-	-
그린크레딧 사업 발굴 지원	4	4	4	-	-	-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대한상공회의소가 실행업자인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기술 발굴 공유 확산(민강경상) 비율(현행 100%)은 업종별 협회의 분담비율을 늘려 국고보조율을 삭감할 필요가 있음.



- 업종에 따라 협회의 분담능력에 차이가 있어 일률적인 분담비율을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중소·중견기업 감축 인프라 지원(민강경상)이나 산업단지 감축 인프라 지원(민강경상)에서 중소기업의 경우 70%, 중견기업의 경우 40%를 지원하여 차등을 준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EnMS가 장기적으로 기업의 에너지효율제고를 통해 에너지비용을 줄이는데 기여한다면 국고보조 비율을 낮추고 기업의 매칭비율을 높이는 대신 금융이나 세계지원을 함으로써 기업의 부담비율을 높이고 비용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협력지원(민간경상)이나 그린 크레딧 사업발굴(민간경상)은 일부 성과를 내고 있긴 하나 기본적으로 배출권거래제 시장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현행 80%와 50%의 국고보조 비율을 점차 낮출 필요가 있음.
- 현행 국고보조율 역시 유사한 취지에서 하향조정된 수치임.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기본적으로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과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상생 및 협력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실현된 사회적 가치 수준이 크다고 보기 어려움.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산업통상자원부의 통합관리규정을 마련하거나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공개적으로 선정하는 등 선정과정이 적정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본 사업을 위한 지침을 두고 있지는 않으며 통합관리지침을 두고 보조사업 집행 관리감독 및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통합관리지침을 두고 보조사업 집행 관리감독 및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관리방식은 발견되지 않았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부정수급 관리 규정 체크리스트를 두고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있으며 보조사업자 선정공모 시 부정수급에 대한 경고조치를 명시하고 있음
 -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사업수행기간이 장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발굴·공유·확산이나 중소·중견기업의 감축역량이 제고되었다는 가시적 성과가 불분명함.
- 사업내 내역사업간, 특히 EnMS 사업간 중복성이 존재함.

3-2 정책 제언

- 배출권거래제나 저감투자에 대한 세제·재정상 지원 등 기업의 비용효과성을 고려한 자발적 감축투자 유인이 존재하고 강화되는 추세에 있는 만큼 점차 국고보조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음.
 - 대기업·중소중견기업간 상생관련 사업(대중소기업 동반감축 지원, 그린 크레디트 사업발굴 지원)은 2021-2023년 기간 동안 유지하되 장기적으로는 배출권거래제의 국내 상쇄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대체할 필요가 있음.
 - 2021-2023년 민간경상 보조율 하향조정(연구회 보조사업을 통해 수혜를 받는 협회나 기업이 비용을 일부 분담함으로써 국고보조규모 축소)을 통해 일정수준의 감축(10%미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EnMS의 도입 (중소·중견기업 감축인프라 지원, 산업단지 감축 인프라 지원)과 관련된 복수의 내역사업은 통합함으로써 규모의 경제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산업통상자원부
사 업 명	무연탄발전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1.6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5.2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5.2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4.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18.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6.4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4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변경 ·사회·정책적 변화를 고려할 때, 동 사업을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주요 정부계획에서는 석탄산업의 감축 및 깨끗한 에너지믹스로의 전환이 주요 비전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제6차 석탄산업 장기계획(2021~2025)’가 수립되지 않은 상태임에 고려할 때, 현행 동 사업에서 무연탄 발전 배정량이 최적 수준임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함 ·따라서 수립 예정인 제6차 석탄산업 장기계획에서 보다 현실적인 무연탄 발전 배정량에 대한 추정을 바탕으로, 향후 동 사업의 배정량을 합리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요구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무연탄발전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는 「전기사업법」 및 「석탄산업법」에 의거하여 추진되고 있음
 - 전기사업법 제47조에서는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계획에는 석탄산업 장기계획상 발전용 공급량의 사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한국전력거래소로 하여금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은 동법 제49조에 따른 기금 사용이 가능하므로 동 사업의 추진 근거는 비교적 명확하고 타당함
 - 또한 석탄산업법 제24조에서는 석탄산업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발전용 석탄의 사용량에 관한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비교적 명확함
- 다만,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한 사업 시행은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의 구속력 측면에서는 일부 한계가 존재함

<전력사업법>

제36조(업무)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력시장 및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업무
 2. 전력거래에 관한 업무
 3. 회원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4. 전력거래대금 및 전력거래에 따른 비용의 청구·정산 및 지불에 관한 업무
 5. 전력거래량의 계량에 관한 업무
 6.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제43조의2에 따른 중개시장운영규칙 등 관련 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업무
 7.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업무
 8.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기품질의 측정·기록·보존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47조(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산업발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제49조 각 호에 규정된 사업에 관한 사항
3. 전력산업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전력 분야의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석탄산업법」 제3조에 따른 석탄산업장기계획상 발전용 공급량의 사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하 생략)

제4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전력수요 관리사업
3. 전원개발의 촉진사업
4.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5. 전력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
6.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의 석탄산업, 액화천연가스산업 및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7. 전기안전의 조사·연구·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8.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사업
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 9의2.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10.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사업
- 10의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이하 "전통시장"이라 한다)의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사업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

<전력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실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 및 제16조 각 호의 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하생략)

<석탄산업법>

제24조(석탄 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석탄산업의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탄광업자, 석탄가공업자, 석탄을 발전용이나 그 밖의 용도의 원료로 사용하는 자, 그 밖에 석탄산업과 관련된 기관·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석탄의 생산량과 석탄가공제품의 종류 및 생산량에 관한 조정
2.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비축과 저장시설에 관한 조정
3.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배급 또는 사용제한에 관한 조정
4.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지역적 유통에 관한 조정
5. 발전용 석탄의 사용량에 관한 조정
6.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을 지원하기 위한 판매가격의 결정 및 고시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가공제품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탄가공업자 또는 석탄가공제품을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동 사업 관련 상위 사업(단위사업)은 국산 무연탄 발전물량을 발전사에 배정하고, 이로 인한 발전사의 손실을 보전하여 국내 석탄 수급 안정 및 탄광지역의 경제적 한계 해소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음
 - 연탄 수요 감소에 따른 석탄산업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는 동 사업과 상위 사업 간 연계성이 존재함
- 다만, 동 사업은 현 정부 국정과제와 맞물려 비교할 때, 연관성을 지니지 않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사업은 '17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를 통해 3년간 매년 10% 감축이라는 평가결과를 받은 바 있음
 - '18년의 경우 '17년 대비 15%를 감축하였으나, '19년부터는 발전용 국산 무연탄 배정량 확대 및 손실보전을 현실화 필요성을 감안하여 예산이 증액되었음
 - 이에 대해 주관부처는 급격한 연탄용 석탄수요 감소로 인해 석탄업계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국산 무연탄 발전물량 확대가 불가피함을 밝힘
 - 또한 주관부처는 국산 무연탄 사용으로 인한 발전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발전소에 대한 손실 보전율을 상향함에 따라 예산 증액을 추진하였음
 - 다만, 이러한 예산 증액은 '19년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예산 감축이 당초 평가결과를 따르지 않은 사유의 타당성이 인정됨



- 동 사업은 산출근거는 확정된 무연탄 발전물량과 단위 무연탄에 대한 지원단가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산출근거가 단순하고 명확함
- 그러나 상기 산출근거 중 무연탄 발전물량의 배정량이 당초 계획과 달리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동 사업 구성의 합리성은 향후 개선이 필요함
 - 당초 제5차 석탄산업 장기계획('16~'20)에서는 석탄 생산량 감소에 따라 발전용탄 배정도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것을 발표한 바 있음
 - 주관부처는 당초 예상보다 연탄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국산 무연탄 수급 안정을 위해 발전용 무연탄 수요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향후 제6차 석탄산업 장기계획 수립 시 최근 무연탄 공급과잉 상황을 반영하여 발전용 무연탄 수요추진 방향을 제시할 계획을 밝혔음
 - 그러나 주관부처가 제시한 제6차 석탄산업 장기계획의 내용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배정량 관련 근거의 타당성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존재함
- 이와 더불어 '19년 6월 확정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최대 35%까지 늘린다는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발전원별 전원 믹스 역시 변화가 필수적이며, 향후 무연탄 발전물량 배정계획 역시 이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 동 계획에서 주관부처는 미세먼지 해결이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된 가운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이 요구되는 상황임을 적시하였고, 깨끗한 에너지믹스로의 전환을 위해 석탄의 감축을 비전으로서 제시하였음
 - 뿐만 아니라 '17년 12월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는 석탄화력발전을 2030년까지 36.1% 줄이기로 발표하였으며,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으로 인해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도 석탄화력발전의 구체적 감축규모가 반영될 것이 예상되고 있음
- 따라서 이와 같은 정책적 기조를 고려할 때, 제6차 석탄산업 장기계획에서 무연탄 발전 배정량은 보다 현실적으로 계획되는 것이 요구됨
- 그러나 동 사업은 당초 계획한 바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발전소 배정 무연탄 소비 100%라는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음을 확인함
-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석탄산업의 위축방지를 위해 발전용 무연탄 배정으로서 지원을 실시하는 동 사업이 상위 사업 목표 달성에 직접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사업은 국산 무연탄을 발전소를 활용하여 정책적으로 소비하도록 추진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존재함
 - 실제 국내 무연탄 수급조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업은 석탄비축사업과 무연탄발전지원사업 2가지라는 점을 확인함
 - 석탄의 비축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석탄비축사업과 비교하여, 무연탄발전지원사업은 국내 무연탄에 대한 수요보장을 위해 석탄 생산량의 일부를 발전소에 할당하고 수입무연탄에 비해 가격이 비싼 국내 무연탄을 소비하는 발전소의 손실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음
- 동 사업의 경우 직접적인 수혜자는 약 3,000여명의 관련 탄광산업 종사자임
 - 직접 수혜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은 아니나, 동 사업 폐지 시 수혜자들에게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게 됨
 - 다만, 석탄산업 종사자에 대한 타 지원사업을 통해 상기 재정적 손실에 대한 일부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상 기준보조율을 준수하여야 하는 유형의 사업이 아님
 - 동 사업의 보조율은 지원예산의 범위 내에서 발전 실적에 따른 100% 보조율을 적용함
 - 국산 무연탄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산 무연탄 사용에 따른 발전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00% 보조율을 적용하는 것은 동 사업의 목표와 취지를 고려할 때, 일부 타당성이 인정됨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동 사업은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의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음
 - 연탄 수요의 감소로 인해 수요처 확보가 어려워진 경우 발전소를 활용하여 국산 무연탄의 국내 소비를 진작하고, 탄광지역의 고용급감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지역경제에 공헌함이 인정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를 공모방식이 아닌 지정방식을 통해 선정함
 - 동 사업의 보조사업자는 한국전력거래소로서 동 기관은 전력거래 업무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며, 「전기사업법」에 따라 주관부처의 업무를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지정방식을 통한 동 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은 일부 타당성이 인정됨
- 주관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 운영요령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절차를 진행함
 - 보조금 교부는 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3조(사업비의 지급)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전담기관), 보조금 교부결정 요청(전담기관→산업부), 보조금 교부 결정(산업부→전담기관), 보조금 교부 결정의 통지(전담기관→보조사업자) 등 교부절차를 준용하여 진행됨을 확인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주관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동 사업을 관리함
 -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 및 결과 심의는 연 1회 사업연도 종료 직후 추진되며, 매년 회계법인에 의한 결산감사 실시를 통해 사업비 집행 적정성을 검토함
- 또한 주관부처는 관리·감독결과 위법 또는 비효율적 예산 사용 적발시 통제수단으로 전력 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및 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마련하였음
 - 다만, 관리·감독결과 위법 또는 비효율적 예산 사용이 없어 현재까지 활용실적은 없음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준용하여 매년 국고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정보공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성실한 정보공시 사례는 없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주관부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 사업수행, 사후단계에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보조금 집행 및 부정수급 방지 노력을 시행하고 있음
 - 부정수급 점검(연 1회), 현장점검(연 1회), 진도점검(분기 1회), 사업결과 평가(사업연도 종료 직후), 위탁회계 정산(사업연도 종료 직후), 정보공시(연 1회) 등을 점검함
 - 사업비의 정산보고, 사업비의 정산, 사업비 정산자료 제출, 정산결과 통보 및 반납 등을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 사례는 없음
 - 주관부처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사업에 대해 사업방식변경을 권고함
 - 제5차 석탄산업 장기계획('16~'20)에서는 석탄 생산량 감소에 따라 발전용탄 배정도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것을 발표하였으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최대 35%까지 늘린다는 기준을 제시하였음
 - 즉 향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이 요구되는 상황임에 따라 깨끗한 에너지믹스로의 전환이 정부의 주요 기조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사회·정책적 변화를 고려할 때, 현재 동 사업에서 무연탄 발전물량의 배정량이 확대된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이에 따라 예산감축이 필요함 시하였고, 깨끗한 에너지믹스로의 전환을 위해 석탄의 감축을 비전으로서 제시하였음
 - 뿐만 아니라 '17년 12월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는 석탄화력발전을 2030년까지 36.1% 줄이기로 발표하였으며,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으로 인해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도 석탄화력발전의 구체적 감축규모가 반영될 것이 예상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정책적 기조를 고려할 때, 현재 동 보조사업에서 무연탄 발전물량의 배정량이 확대된 것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함

3-2 정책 제언

- 이러한 종합평가 결과에 의거하여 동 사업은 무연탄 발전 배정량에 대한 합리적 추정치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수립 예정 중인 제6차 석탄산업 장기계획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무연탄 발전 배정량에 대한 추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동 사업의 배정량을 합리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요구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산업통상자원부
사 업 명	섬유패션산업활성화기반마련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0.0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2.4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6.4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8.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1.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7.6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2.6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 감축(섬유패션비즈니스기반구축, 친환경지류포장소재센터장비구축), 사업방식변경(섬유패션기술력향상 및 패션산업지식기반화구축) · 내역사업의 구성 적정성은 대체로 양호하나 일부 내역사업의 경우 목적부합성이 미비하거나 효과성이 불투명하여 2021년 ~ 23년 안에 높은 수준의 예산 감축 및 사업방식변경 요인이 있음 · 2021년 1월 부산패션비즈센터 구축이 완료되면 ‘섬유패션비즈니스기반구축’ 내역사업의 예산 감축이 가능하고, 국회 예결위에서 2020년 신규 내역사업 예산으로 반영되었지만 동 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성이 미비한 ‘친환경지류포장소재센터장비구축’ 사업을 이후 폐지하여 예산의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높은 수준의 예산 감축이 필요함. 또한 ‘섬유패션기술력향상 및 패션산업지식기반화구축’ 내 ‘섬유패션정보 빅데이터 구축’ 세부내역사업의 경우 AI서비스를 위한 딥러닝 알고리즘 구현 및 적용,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및 운영 등의 효과성 및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기 할 수 있도록 사업내실화 및 성과지표 보강 등 사업방식변경이 요구됨 · 업무건수에 기반한 산출지표 이외 실질적인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관리할 필요 있고, 예산 감축 요인을 반영하여 중장기 재정소요 추계를 조정할 필요 있음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동 보조사업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발전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산업발전법」 제3조(산업발전정책)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동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산업발전정책의 내용 및 범위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동 보조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

< 산업발전법 제3조 >

제3조(산업발전정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이하 "산업발전정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산업의 경쟁력 강화
3.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기반 구축
5. 산업기술 및 생산성 향상
7. 산업기반의 확충
8. 국제산업협력의 증진

- 동 보조사업은 ‘섬유패션기술력향상 및 패션산업지식기반화구축’, ‘섬유패션비즈니스기반구축’, ‘신발산업구조고도화’, ‘섬유생산기업정보시스템구축’, ‘친환경지류포장소재센터장비구축’ 등 5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는데, 근거 법령(「산업발전법」 제3조)에는 이들 내역사업의 추진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고 포괄적인 수준에서만 제시됨
- ‘섬유생산기업정보시스템구축’의 경우 한-미 FTA 협정에 의거하여 섬유생산기업정보를 신규·갱신 조사하는 내역사업으로서, 한-미 FTA 협정문 제4장 3조 2항과 대외무역법 제9조에 비교적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음

<한미FTA 협정문 제4.3조 2항>

(가호) 나호 및 다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통하여, 자국의 영역에서 섬유 또는 의류의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각 인에 관한 다음의 정보를 획득하고 매년 갱신한다.

<대외무역법 제9조>

(제9조)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공공기관, 기업 및 단체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동 보조사업의 목적은 섬유패션·신발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중소·중견업체 대상 기획에서 마케팅까지 전 스트림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이는 국가적 타당성과 중요성이 인정됨
- 동 보조사업과 상위 프로그램(‘주력산업진흥’) 및 단위사업(‘섬유패션생활용품산업육성’)간의 목적 부합성이 인정됨
 - 섬유·신발산업은 전통적인 주력산업으로서 이에 대한 진흥을 위한 동 보조사업은 프로그램 목적과 부합하고, 섬유패션 및 생활용품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위사업의 목적과도 부합함
- 현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과 연계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를 고려할 때 동 보조사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타당성이 있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보조사업은 ‘섬유패션기술력향상 및 패션산업지식기반화구축’, ‘섬유패션비즈니스기반구축’, ‘신발산업구조고도화’, ‘섬유생산기업정보시스템구축’, ‘친환경지류포장소재센터장비구축’ 등 5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그 적정성이 대체로는 양호하나 일부 내역사업의 경우 목적부합성이 미비하거나 효과성이 불투명함
 - 친환경 지류포장소재 센터 장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지류포장소재센터장비구축’ 내역사업의 경우에는 동 보조사업의 목적과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움
 - AI서비스를 위한 딥러닝 알고리즘 구현 및 적용,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및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섬유패션기술력향상 및 패션산업지식기반화구축’ 내역사업 內 ‘섬유패션정보 빅데이터 구축’ 세부내역사업의 경우, 해당 지능정보기술의 기술적 목표수준, 활용도 등에 불확실성이 커 효과성이 유의미하지 않을 위험요인이 있으므로 그 효과성 및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기 할 수 있도록 사업내실화 및 성과지표 보장 등이 요구됨
- 현재 설정된 성과지표의 목표 대비 실적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나, 부산 패션비즈센터 구축은 예산이 불용/이월되는 등 공정율이 저조하고 다소 지연되고 있음
- 동 보조사업의 상위 정책목표가 프로그램 목표인 ‘주력산업의 진흥’, 단위사업 목표인 ‘섬유패션 및 생활용품 산업육성’인데, 이에 대한 동 보조사업의 기여도 및 효과성은 현행 성과지표를 통해 확인하기 어렵고 불명확하므로 업무건수에 기반한 산출지표 이외 실질적인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관리할 필요 있음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섬유패션산업분야는 임금상승에 따른 해외 생산기지 이전, 설비노후화 등으로 국내 산업기반이 약화되었고, 최근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 영세한 중소 섬유패션기업이 자력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보조금을 통한 정부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동 보조사업을 통해 국내 섬유산업의 생태계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주력산업으로서 섬유패션산업이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 있음
- 섬유생산정보시스템 내역사업의 경우 한-미 FTA 협정 이행 의무가 완화된 시점까지 유지될 필요성 있음
- 동 보조사업과 유사중복성을 가진 사업은 발견되지 않고 타 사업과의 차별성이 인정됨
- 동 보조사업의 1차적 수혜자는 직접적인 보조금 수혜를 받는 섬유패션산업 내 기업 및 종사자들로 볼 수 있고, 2차적 수혜자는 섬유패션산업과 전후방으로 연결되어 있는 유관업종 내 기업 및 종사자들로 볼 수 있어 수혜자의 범위는 비교적 광범위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예산 산출내역에서 확인되는 동 보조사업의 주요 추진내용을 볼 때 현행 보조금의 규모는 대체로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판단되나, 향후 종료되는 내역사업 등을 고려할 때 높은 수준의 예산 감축 요인이 있음
- 2021년 1월 부산패션비즈니스센터 구축이 완료되면 ‘섬유패션비즈니스기반구축’ 내역사업의 예산 감축이 가능하고, 국회 예결위에서 2020년 신규 내역사업 예산으로 반영되었지만 동 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성이 미비한 ‘친환경지류포장소재센터장비구축’ 사업을 이후 폐지하여 예산의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높은 수준의 예산 감축이 요구됨
- 기준보조율이 없는 경우로서 현행 보조율은 합리적인 산정기준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판단됨
-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재정전망 및 재정규모 증가 등을 고려하여 사업기간별(단기·중기·장기) 재정 소요액을 대체로 적정하게 추계하고 있으나, 앞서 언급한 예산 감축요인을 반영하여 일부 조정할 필요 있음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 사항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매년 동 보조사업 시행계획 수립시 사전설명회(공청회)를 통해 공모절차, 사업자 선정기준, 섬유패션사업의 정책 방향 등에 관한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이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9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른 보조사업 공모절차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음
- 타 보조금과의 중복수급에 대한 점검 기준 및 절차로서 섬유패션활성화사업 관리지침 제11조 및 제13조에 의거 매년 현장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 진행 중에 있음
- 매년 시행계획, 사업공고를 통해서 보조금 교부조건 및 방법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진행하고 있음
- 보조금법 및 자체 관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부분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기반조성평가관리지침을 참고하여 적정하게 진행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제1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에 의거 보조사업 집행현황, 점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그 준수 여부를 적정하게 점검하고 있음
 - 매년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의 목적과 추진내용, 소요예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비롯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 수행 후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아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음
 - 또한, 1천만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이후 2개월 이내에 교부신청서, 정산보고서, 검증보고서, 감사보고서 등의 정보 등을 e나라도움에 공시하고 있으며, 해당 보조사업은 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회계법인의 정산보고서를 받아 사후관리 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있음
- 섬유패션활성화사업 관리지침 제15조 및 제16조에 의거하여 보조사업 집행결과를 사후에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절차 및 기준을 갖추고 있으며, 동 지침 제11조에 의거 보조금 정산 및 반환, 회계감사 등에 관한 기준을 적정히 갖추고 있음



- 섬유패션활성화사업 관리지침 제11조 및 현장실태조사 계획에 의거 보조사업 집행점검 기준 및 정산, 반환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적정하게 보조사업을 집행하고 있고,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에 대한 정보공시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섬유패션활성화사업 관리지침 제6조의2(운영위원회)에 의거 부정수급 등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관부서 담당관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회수토록 조치하고 있음
- 보조금 교부, 점검,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과정상 문제점 및 부정수급 발생의 위험성 있는 경우 현장조사를 통해 적정하게 사업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 건수 및 사례는 없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최근 3년간 자체적인 부정수급 적발실적이 없어 자체 사업관리 노력에 대한 가산점 요인은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산업발전법」 제3조(산업발전시책)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동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산업발전시책의 내용 및 범위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동 보조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수준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
- 동 보조사업의 목적은 섬유패션·신발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중소·중견업체 대상 기획에서 마케팅까지 전 스트림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이는 국가적 타당성과 중요성이 인정됨
- 동 보조사업을 구성하는 내역사업의 구성 적정성이 대체로는 양호하나 일부 내역사업의 경우 목적부합성이 미비하거나 효과성이 불투명함
 - 친환경 지류포장소재 센터 장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지류포장소재센터장비구축’ 내역사업의 경우에는 동 보조사업의 목적과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움
 - AI서비스를 위한 딥러닝 알고리즘 구현 및 적용,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및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섬유패션기술력향상 및 패션산업지식기반화구축’ 내역사업 內 ‘섬유패션 정보 빅데이터 구축’ 세부내역사업의 경우, 해당 지능정보기술의 기술적 목표수준, 활용도 등에 불확실성이 커 효과성이 유의미하지 않을 위험요인이 있으므로 그 효과성 및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기 할 수 있도록 사업내실화 및 성과지표 보장 등이 요구됨
- 예산 산출내역에서 확인되는 동 보조사업의 주요 추진내용을 볼 때 현행 보조금의 규모는 대체로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판단되나, 향후 종료되는 내역사업 등을 고려할 때 높은 수준의 예산 감축 요인이 있음
 - 2021년 1월 부산패션비즈센터 구축이 완료되면 ‘섬유패션비즈니스기반구축’ 내역사업의 예산 감축이 가능하고, 국회 예결위에서 2020년 신규 내역사업 예산으로 반영되었지만 동 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성이 미비한 ‘친환경지류포장소재센터장비구축’ 사업을 이후 폐지하여 예산의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높은 수준의 예산 감축이 요구됨
- 현재 설정된 성과지표의 목표 대비 실적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나, 부산 패션비즈센터 구축은 예산이 불용/이월되는 등 공정율이 저조하고 다소 지연되고 있음
-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 집행, 보조사업 사후관리,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 등은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3-2 정책 제언

- 동 보조사업의 상위 정책목표가 프로그램 목표인 ‘주력산업의 진흥’, 단위사업 목표인 ‘섬유패션 및 생활용품 산업육성’인데, 이에 대한 동 보조사업의 기여도 및 효과성은 현행 성과지표를 통해 확인하기 어렵고 불명확하므로 업무건수에 기반한 산출지표 이외 실질적인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관리할 필요 있음
-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재정전망 및 재정규모 증가 등을 고려하여 사업기간별(단기·중기·장기) 재정 소요액을 대체로 적정하게 추계하고 있으나, 앞서 언급한 예산 감축요인을 반영하여 일부 조정할 필요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산업통상자원부
사 업 명	세계엑스포참가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54.5
1. 보조사업의 타당성	42.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3.2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2.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1.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5.8
1-5.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2.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2.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단계적폐지(2021년말) · 사업추진 내용 및 예산규모가 한시적인 사업목표에 맞추어져 있음 · 2020년에 개최되는 두바이 엑스포 참가를 위한 한국관 조성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2018년에 신규 사업화되었고, 사업추진 내용 및 예산규모 또한 해당 목적에 맞추어져 있으므로 해당 엑스포가 종료되는 2021년 4월까지를 한시적인 사업기간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단계적 폐지절차를 거쳐 2021년말까지 사업 추진 후 폐지하여야 함 ·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두바이 엑스포에 참가하여 한국의 첨단 기술과 문화를 홍보하고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두바이 엑스포 참가가 단순 참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무역진흥과 수출역량강화라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후 유관사업들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 관리 필요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동 보조사업은 전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발전을 도모하여 무역진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전시산업발전법」과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외 무역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나, 해당 법의 목적 및 취지와 동 보조사업의 목적 간의 연계성은 미약함
- 「전시산업발전법」의 1차적 목적은 동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전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인데 비해, 동 보조사업의 목적은 2020년 두바이 엑스포를 활용하여 한국의 첨단 기술과 문화를 홍보하고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것으로 법의 목적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미약함
- 동법 제16조(국제협력의 촉진)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 전시 관련 기관과의 협력활동을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두바이 엑스포 참가가 해당 조문에서 지칭하는 해외 전시 관련 기관과의 협력활동으로 보기는 어려움
- 또한, 동법 제21조(전시산업의 지원) 제1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외 전시회 참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해당 조문의 취지(전시산업의 발전)와 지원 대상(해외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 및 단체 등)이 동 보조사업과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움
- 동법 시행령 제14조(전시산업의 지원)에는 동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할 경우에는 전시산업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해당 계획에 동 보조사업의 추진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한편, 「대외무역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에 관한 내용은 상당한 포괄성을 지녀 동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로서는 미약함



< 전시산업발전법 제1조 및 제21조 >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발전을 도모하여 무역진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국제협력의 촉진)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3. 전시회·전시회부대행사의 유치 및 해외 전시 관련 기관과의 협력활동

4. 그 밖에 전시산업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21조(전시산업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4. 해외 전시회 참가 사업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마케팅 활성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해외마케팅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제1항제4호의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유형 및 기준 등을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4조 >

제14조(전시산업의 지원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할 경우에는 전시산업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동 보조사업의 목적은 2020년 두바이 엑스포를 활용하여 한국의 첨단 기술과 문화를 홍보하고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것으로서, 이를 지원하는 것이 국가적 타당성과 중요성을 가진다는 점은 인정됨
- 특히, UAE가 2012 여수엑스포에 참가한 바 있어 상호호혜의 관점에서 두바이 엑스포 참가의 타당성은 있음
- 상위 프로그램('무역진흥')과 단위사업('수출역량강화')의 목적과 동 보조사업 간의 연계성이 인정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보조사업은 '세계엑스포참가지원' 단일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해당 내역사업은 두바이 엑스포 한국관 조성을 위한 건축, 전시·영상, 행사·공연, 운영·홍보 등 최소한의 필수적인 내용으로만 구성된 것으로 판단됨
- 동 보조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두바이 엑스포에 참가하여 한국의 첨단 기술과 문화를 홍보하고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두바이 엑스포 참가가 단순 참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무역진흥과 수출역량강화라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후 유관사업들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 관리할 필요 있음
- 동 보조사업은 2018년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어 엑스포 조직위원회 권고일정에 맞추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두바이 엑스포 한국관 건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성과지표를 통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두바이 엑스포 한국관 관람객 수를 2020년 성과지표로 제시하고 있으나, 보조사업 연장평가 대상 기간 중의 성과평가는 불가능하여 동 보조사업의 효과성은 판단하기 어려움
- 특히, 엑스포 참가를 통한 다양한 경제, 사회적 효과와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 효과를 측정하여 동 보조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성과관리계획이 미비함
- 동 보조사업의 상위 정책목표가 프로그램 목표인 ‘무역진흥’, 단위사업 목표인 ‘수출역량강화’인데, 투입되는 예산규모 대비 해당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 목표에의 동 보조사업의 정량적 기여도는 불분명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축제인 세계엑스포에 국내 수출기업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한국관을 조성하는 것은 민간 자체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문기관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은 효과적인 정책수단일 것으로 판단됨
- 동 보조사업은 특정 수혜자에게 직접 편익을 제공하지는 않으므로 1차적인 수혜자는 없고, 2차적인 수혜자는 두바이 엑스포 참가를 통해 기업홍보 및 신규수출 등을 도모할 수 있는 국내 수출기업들이 포함될 수 있고 국가브랜드 이미지 제고로 일반국민의 간접적 혜택이 기대됨
- 다만, 동 보조사업은 2020년에 개최되는 두바이 엑스포 참가를 위한 한국관 조성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2018년에 신규 사업화되었고, 사업추진 내용 및 예산규모 또한 해당 목적에 맞추어져 있으므로 해당 엑스포가 종료되는 2021년 4월까지를 한시적인 사업기간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단계적 폐지절차를 거쳐 2021년말까지 사업 추진 후 폐지하여야 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예산 산출내역에서 확인되는 동 보조사업의 주요 추진내용을 볼 때 현행 보조금의 규모는 대체로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판단됨
- 동 보조사업의 사업기간이 한시적이라는 점에서 중장기 재정소요 추계는 검토 필요 없음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 사항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본 보조사업 만을 위한 별도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부처 통합 규정 또는 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준용하는 근거 또한 미비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보조사업자 공모)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2개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동 보조사업을 수행 가능한 법인·단체가 현행 보조사업자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유일하다고 보기 어려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금 교부 신청)에 따르면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모에 의하지 않고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동 보조사업이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 다만, 동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국가의 무역 및 투자진흥을 위해 설립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서, 전세계 129개 해외무역관을 인프라로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마케팅 관련 전문성과 공신력을 보유하고 있어 동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적합한 사업자임은 인정됨
- 보조금 교부조건 및 방법에 대한 기준 및 절차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갖추어진 것으로 판단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현행 보조사업자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5장에 의거하여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음
 -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있고, 보조금 입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및 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만을 인정하고 있음
 - 이월시 통합관리지침 제 25조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회계연도 종료시 정산보고서를 포함한 실적보고서 제출, 이자·수익금 반납을 요구하고 있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므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8조에 따라 정산보고서는 회계감사 보고서로 같음하고 있으며, 회계감사의 기준이 되는 회계처리의 원칙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감사규정 제42조에 의거 ‘공공감사기준(감사원 규칙 제 137조)’ 제 31조를 따르고 있음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거하여 외부회계감사(매년 2월) → 공사 이사회 결산보고(매년 2월) → 산업통상자원부 결산보고(매년 2월) 및 승인(매년 3월) → 감사원 결산서 검사(매년 7월)로 법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고 있음
- 국가재정법 제61조에 의거하여 매년 5월 대국회 결산보고를 하는 등 외부회계감사, 주무부처 결산보고, 감사원 검사, 국회 결산 및 국정감사 등을 통하여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받으며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 시행 중임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당연직 비상임 이사로 참가하는 ‘이사회’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감사규정’에 따른 내부 감사를 통하여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자체 점검 및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 시행 중임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거한 외부 회계감사, 감사결과의 주무부처 및 감사원 보고, 국가재정법 제61조에 의거한 국회 결산보고 및 국정감사 등을 통해 통제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현장조사 등을 통해 보조사업 부정수급을 적정하게 통제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조에 의거하여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부정수급과 관련한 실태를 정기점검하고 있으며, 동 지침 제33조에 의거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임
- 세계엑스포 사업은 2018년 신규사업으로 2019년 2월 산업부의 부정수급 현장점검시 부정수급 관련 사례가 없었으며 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한 바 있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최근 3년간 자체적인 부정수급 적발실적이 없어 자체 사업관리 노력에 대한 가산점 요인은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전시산업발전법」과 「대외무역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나, 해당 법의 목적 및 취지와 동 보조사업의 목적 간의 연계성은 미약함
- 동 보조사업의 목적은 2020년 두바이 엑스포를 활용하여 한국의 첨단 기술과 문화를 홍보하고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것으로서, 이를 지원하는 것이 국가적 타당성과 중요성을 가진다는 점은 인정됨
- 엑스포 참가를 통한 다양한 경제, 사회적 효과와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 효과를 측정하여 동 보조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성과관리계획이 미비함
- 동 보조사업의 상위 정책목표가 프로그램 목표인 ‘무역진흥’, 단위사업 목표인 ‘수출역량강화’인데, 투입되는 예산규모 대비 해당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 목표에의 동 보조사업의 정량적 기여도는 불분명함
- 동 보조사업은 2020년에 개최되는 두바이 엑스포 참가를 위한 한국관 조성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2018년에 신규 사업화되었고, 사업추진 내용 및 예산규모 또한 해당 목적에 맞추어져 있으므로 해당 엑스포가 종료되는 2021년 4월까지를 한시적인 사업기간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단계적 폐지절차를 거쳐 2021년말까지 사업 추진 후 폐지하여야 함
- 예산 산출내역에서 확인되는 동 보조사업의 주요 추진내용을 볼 때 현행 보조금의 규모는 대체로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판단됨
-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본 보조사업 만을 위한 별도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부처 통합 규정 또는 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준용하는 근거 또한 미비함

3-2 정책 제언

- 동 보조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두바이 엑스포에 참가하여 한국의 첨단 기술과 문화를 홍보하고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두바이 엑스포 참가가 단순 참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무역진흥과 수출역량강화라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후 유관사업들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 관리가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산업통상자원부
사 업 명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구축
보조유형	민간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60.1
1. 보조사업의 타당성	44.6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6.4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1.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1.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5.2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5.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단계적 폐지(2022년) · 동 사업은 장비구축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당초 계획하였던 '21년말 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동 사업을 폐지하는 것이 필요함 · 당초 '20년 말 센터구축 완료를 목표로 하였으나 사업예산 배정이 지연되어 불가피 하게 사업기간이 추가됨에 따라, 수정 목표에 의거 '21년 말 센터 준공을 완료하여야 함 · 또한 준공 이후 센터의 운영은 장비가동에 의한 수입, 지자체 지원, 신규 R&D사업 등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 다만, 실집행률이 매우 저조하였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이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구축’ 사업은 수소 관련 부품·기계 및 기술 내구성과 신뢰성 등을 시험·평가하는 실증센터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의 향상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동 사업의 주요 법적 근거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동법 제10조제5호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위해 조성된 사업비의 사용범위를 지정하여 동 사업과 일부 연관성이 존재함을 확인함
 - 다만, 이러한 연관성을 직접적인 연관성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존재함
 - 이는 현행 법적 근거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성능평가·인증 및 사후관리’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하였기 때문임
 - 즉 수소산업 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성능평가센터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구체적 근거로 판단하기에는 타당성이 충분하지 않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신·재생에너지의 자원조사, 기술수요조사 및 통계작성
2. 신·재생에너지의 연구·개발 및 기술평가
3. 삭제
4.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5.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성능평가·인증 및 사후관리
(이하 생략)

- 동 사업은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이라는 국정과제(34번)와 연관성이 존재함
 - 34번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은 전기차·수소차의 보급 확대, 충전인프라 확충, 전기차 및 수소차의 안전기준 마련 등으로 동 사업의 주요 목적과 연계되어 있음
 -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동 사업의 상위 사업(프로그램, 단위사업)과도 연관성이 존재함을 확인하였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사업의 주요 구성은 건축 및 감리, 시험·평가장비 제작 및 설치, 시험운영 및 준공임
 - 설계 및 공사 사업비의 경우 조달청 사례, 국토해양부 고시 등을 준용하여 산출되어 예산 내역 구성에 합리성을 도모하였음
 - 다만, 수소압축저장시스템, 고압수소부품시험설비 등 주요 설비 제작 예산 내역의 경우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내역 산출의 합리성을 검토하는데 한계가 존재함
 - 동 사업의 사업기간은 당초 계획된 기간보다 연장되었음
 - 현행 동 사업은 '18년 12월부터 '21년 12월까지로 사업 기간이 계획되어 있음
 - 동 사업은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되어 '18년 12월에 보조사업자 최종선정이 이루어졌고, 당초 '20년까지 센터구축 완료를 목표로 하였으나 사업집행이 늦어지면서 사업기간이 '21년까지 추가되었음
 - 즉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상기 문제점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현실적 한계를 일부 감안하는 것이 필요함
 - 다만,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동 사업은 실집행률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 과정 상 면밀한 사업관리가 요구됨
 - 동 사업 성과지표는 안전성 지원센터 구축의 공정률(%)로 사업의 실집행률이 성과지표와 연동되는 구조임
 - '18년과 '19년의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는 달성되었으나, 이는 당초의 성과지표 목표치가 낮게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 '18년 목표치 5%, '19년 목표치 7.5%
- 특히 동 사업의 실집행률은 '18년 2.5%, '19년 23.7%로 매우 낮은 수준임
 - 이에 대해 주관부처는 '18년의 경우 12월에 보조사업자 최종선정이 이루어져 예산 실제 집행이 불가하였다는 점, '19년의 경우 계약은 완료하였으며 '20년까지 예산 원인행위를 완료하겠다는 것을 밝힌 바 있음
 - '20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도 실집행률이 저조하고 10개월 이상 사업의 지연이 지적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의 경우 실집행률 관리와 더불어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함



- 동 사업은 '19년 발표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수소경제 표준화 로드맵' 등과 비교하여 볼 때, 정부의 수소경제 이행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 센터 구축을 통해 안정성 평가를 지원하고 시험 관련 실증데이터 확보 및 이를 통한 중소기업의 표준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은 동 사업의 기여도로 인정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사업은 국내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성능확인을 위한 성능평가장비 및 센터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적 성격이 강하고, 민간보조사업자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됨
- 수소산업 중심 성능평가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동 사업의 중복성은 낮음
- 현행 동 사업의 수혜자는 일부 중소기업으로 판단되나, 향후 수소산업 시장이 확대될 경우 수혜자의 범위는 확대될 수 있음
- '16년 한국수소산업협회에 따르면 수소산업 기업은 약 440개 수준으로 부문별로는 부품·설비(34.7%), 연료전지(29.9%), 수소생산(8.2%), 수소저장·운송(5.4%)으로 나타남
- 센터 구축 완료 시 부품·설비, 수소생산 및 저장·운송 관련 중소기업이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사업은 시설장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실제 시공과 장비 설치를 위한 예산이 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행정비용은 낮은 수준임
- 동 사업 예산의 지출은 대다수 시설공사비, 실증설비 제작 및 구축을 위한 사업비 등임
- 동 사업은 기준 보조율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으로서 국고보조율은 50%임
- 다만, 동 사업은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예산편성 시 보조비율이 50%로 확정되었음을 확인함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동 사업은 수소산업 발전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사업의 보조사업자는 2계층 구조이며, 동 사업을 실제 수행하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공모 절차를 통해 선정되었음
- 동 사업 보조사업자는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으로 동 보조사업자는 산업연구원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안전성 센터 건립을 위한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관한 연구를 '18년 9월 완료
- 이를 바탕으로 마련된 공모절차 및 사업자 선정기준을 통해 '18년 12월 (재)대전테크노파크를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하였음
- 간접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준용한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의거하여 구성
- 서면평가, 현장평가, 최종발표평가를 통해 총 4개 지원기관 중 최고점을 획득한 기관을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산업통상자원부는 보조사업 집행을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준용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의거하여 보조사업을 집행하고 있음
- 다만, 동 사업 집행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관리지침을 마련한 것은 아님
- 주관부처는 동 사업 집행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총사업비 관리지침, 간접보조사업자 예산회계규정에 의거하여 동 사업을 관리하고 있음
- 동 사업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며, 2,000만 원 이상 계약 건에 대해선 조달청 발주를 추진하고 있음
- 사업비 집행은 e-나라도움을 통해 비예치형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집행내역을 보조사업자(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및 회계법인을 통해 검토함
- 동 사업의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정보고시 사항 및 기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부 신청 정보 및 사업계획 등 정보를 불이행 없이 공시함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주관부처는 총사업비 관리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재)대전테크노파크 예산회계규정에 따라 부정수급을 관리하고 있음
 -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반환 절차 및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주관부처는 부정수급의 관리를 위해 (재)대전테크노파크 감사규정 역시 활용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 사례는 없음을 확인함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사업은 수소 관련 부품·기계 및 기술 내구성과 신뢰성을 시험·평가하는 실증센터 구축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장비구축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임
- 당초 계획된 바와 같이 '21년말 센터 구축 및 준공을 완료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를 실시하고, 준공 이후 동 사업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단계적 폐지, 2021년말)

3-2 정책 제언

- 동 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사업예산의 실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점임
 - 동 사업의 실집행률은 '18년 2.5%, '19년 23.7%로 매우 낮은 수준임
 - 물론 이는 사업예산 배정이 지연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나, 실집행률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사업이 10개월 이상 지연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철저한 사업관리가 요구됨
 - 다만, 주관부처는 동 사업의 경우 설비 제작 및 설치를 위한 계약이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사업비의 지출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은 '21년말 폐지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 사업관리가 중요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주관부처 차원에서 사업비 부정수급에 관한 관리와 더불어 예산이 계획된 시점에 따라 철저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산업통상자원부
사 업 명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생태계조성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84.0
1. 보조사업의 타당성	70.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10.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4.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7.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2.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4.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사업방식변경 ·국가가 수행해야 할 공공성 책임인 공산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이며, 정부의 주요 정책방향에 부합되는 과제 ·중장기적으로 보다 많은 어린이제품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 ·타 교육프로그램 플랫폼의 연계·활용, 권역별로 설립되는 안전체험관 활용 등을 통해 질 좋은 교육프로그램 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동 보조사업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과 『제품안전기본법』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음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조와 제5조 어린이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책과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동법 제31조는 정부가 안전성이 확인된 어린이 제품의 제조 및 유통 확대를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와 제21조의3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설립근거와 업무범위를 동법 제21조의4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나, 동 보조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근거라기 보다는 포괄적인 예산지원 근거로 볼 수 있음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제31조(안전한 어린이제품에 대한 장려 및 지원)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7조, 제22조, 제25조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어린이제품의 제조 및 유통 확대를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품안전기본법 >

제21조의4(운영 재원) ① 관리원은 제21조의3제11호 및 제12호의 사업 수행에 따른 수수료와 그 밖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리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동 보조사업의 내용은 국정과제 57번 ‘국민의 건강의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중 세부 과제인 ‘공산품 생산·유통·사용 전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 국가가 수행해야할 공공성 책무인 공산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이며,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에 부합되는 과제라고 볼 수 있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보조사업은 '17년 부터 시작되었으며 2개의 내역사업은 유해·안전성 검증분석과 어린이제품 제조기업을 지원하는 '어린이제품 안전확보 역량강화 사업'과 안전교육 선도학교 지원, 안전체험관 구축, 찾아가는 교육을 지원하는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프로그램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음
- 제품 유해성 검증외에 학교현장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는 등 어린이 제품 안전확보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용함.
- 동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최근 3개년간 사업자지원, 선도학교 교육, 안전체험관 구축 등에서 지원의 양적 증가가 있었음

	'17년	'18년	'19년
유해·안전성 검증 분석	10개 품목 시험분석	11개 품목 시험분석	10개 품목 시험분석
사업자지원	10개 기업	18개 기업	25개 기업
선도학교 교육	10개교 1,116명	12개교 2,130명	15개교 2,982명
찾아가는 교육	20개교 1,498명	30개교 1,653명	40개교 1,983명
안전체험관 구축	2개소 (서울 송파/전북 임실)	2개소 (경기 부천/충북 진천)	1개소 (대구)

- 증가하는 어린이 제품군의 안전검사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 보조사업의 물량/단가 및 연차별 투자계획이 전체 어린이 제품군 및 제조사의 숫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음.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보조사업은 어린이제품에 대한 제품안전 기반 구축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제품안전 사고의 선제적인 예방·관리로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다른 사업과 유사·중복성은 없으며, 국회나, 감사원, 과거 보조금사업평가 등에 의한 지적사항도 없었음
- 동 보조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어린이 제품 제조자, 선도학교, 안전체험관 등이나 최종적인 제품사용자와 교육 수혜자가 만 13세 이하 어린이, 일반 학부모 및 교사 및 일반국민(안전체험관의 경우) 라는 점에서 광범위한 직·간접 수혜자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이 높지 않아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학부모·교사를 통한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확산의 필요성이 인정됨

*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인지도 조사 : 학부모 35.1%, 교사 48.0%인지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의 보조율은 100%로 되어 있는데, 이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조와 제5조에 명시된 정부의 안전관련 업무를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 동 보조사업은 '20년~'22년의 예산추계가 되어 있으며, 각 내내역사업별 물량·단가에 대한 투입 증가등을 추산하고 있음
 - 다만, '20년 전체 예산 중 인건비성 경비의 비중이 26.7%를 차지하고 있어 추후 단계적으로 직접비 비중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음

1-5 사회적 가치 실현(가산점)

- '16~'18년 소비지원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안전사고 212,031건 중 34%인 72,341건이 어린이 안전사고에 해당하여 안전사고에 취약한 계층으로 파악함.
- 동 보조사업이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학생, 학부모 일반국민 대상 안전교육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 환경의 유지'와 일부분 합치된다고 볼 수 있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은 별도의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 3의 규정하고 있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업무범위와 동 보조사업의 내용간의 연관성이 인정되며, 매년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는 형태로 지원기관을 관리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을 위해 별도로 제정된 사업관리 지침은 없으며, 부처 차원의 공통지침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조금 집행을 통합관리하고 있음
- 매년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포함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 평가하고 있으며 보조금 교부 결정 시 교부결정 내용(교부조건 포함)을 문서로 통보하고 있음
- 보조사업자 정보공시도 이행하고 있으며, '17년도부터 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회계법인의 정산을 받도록 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17년부터 동 보조사업 부정수급 현장점검 실시하고 있으며, 과반수 이상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보조금사업 운영위원회를 통해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또한, 동 보조사업 종료시점에서 지원기관과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사후에 사업을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해당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보조사업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과 『제품안전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검사와 안전교육 등을 정부의 책무로 강하게 규정하고 있음
-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게 업무가 위탁되어 보조율 100%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
- 동 보조사업이 국정과제 57번 ‘국민의 건강의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와 연계된 과제이며, 최근 3년간 전체 안전사고의 약 34%가 어린이 안전사고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추진 필요성이 인정됨

3-2 정책 제언

- 현재 동 보조사업이 소규모처럼 추진되고 있으나 일반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전체 어린이 사용제품에 대한 유해 및 안정성 검증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전략적·단계적 추진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
- 안전체험관도 권역별로 어떻게 안배하여 신규건립을 추진할지, 기존의 타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안전교육을 추진하는 등 예산투입의 효율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학교방문 등의 교육프로그램도 건립되는 권역별 안전체험관 등을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산업통상자원부
사 업 명	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67.1
1. 보조사업의 타당성	48.6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4.6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1.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15.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8.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 감축 및 사업방식변경 · 유사사업의 이관 및 통합에 따른 사업방식변경과 함께 2021년 ~ 23년 안에 일정 수준의 예산 감축이 필요함 · 전기안전점검이라는 수행업무의 유사성, 근거법령의 유사성, 동일한 보조사업자에 의해 수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산효율화 및 업무효율화 관점에서 ‘전기시설안전점검’ 사업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전기시설안전관리’ 사업을 동 보조사업으로 이관하는 사업방식변경 필요). 사업의 통합을 통한 예산 효율화를 통해 일정 수준의 보조금 규모 감축 가능 · 사용전점검 수행기관이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안전공사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를 일원화함으로써 효과적 사업추진 및 예산 효율화(감축)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성과지표 달성도가 낮으므로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방안 강구 필요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동 보조사업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의 확립,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전기사업법」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전기사업법」 제48조(기금의 설치) 및 제49조(기금의 사용)에서는 동 보조사업의 재원이 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설치목적 및 사용처에 대해 명시하고 있고, 특히 제49조 8항에서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사업’이 기금의 사용처로 특정되고 있음
- 동법 시행령 제34조에서는 동 기금의 사용처 중 하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으로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동 보조사업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음

< 전기사업법 제48, 49조 >

제48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8.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사업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4조 >

제34조(기금의 사용) 법 제49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

- 동 보조사업은 ‘사용전점검’, ‘정기점검’, ‘전기안전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등 세 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전기사업법」 제66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제66조의3(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동법 시행령 제34조 1항 등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음



< 전기사업법 제66조, 제66조의3 >

제66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가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제74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점검(전기판매사업자는 사용전점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6조의3(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주거용만 해당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용상의 불편 해소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안전공사로 하여금 신속히 응급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응급조치의 대상,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동 보조사업의 목적은 근거 법률에 따라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사용중 현장점검과 취약계층 전기고충해소 등 설비 안전도 향상 및 안전 사각지대 해소 등 국가 제반 전기안전 활동수행으로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이는 국가적 타당성과 중요성이 인정됨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저탄소, 에너지 정책 전환의 프로그램 목적 및 전기사고 감축의 단위사업 목적과의 연계성이 인정됨
- 현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와 연계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를 고려할 때 동 보조사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타당성이 있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보조사업은 '사용전점검', '정기점검', '전기안전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등 3개의 내역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사용 전 점검, 사용 중 정기적 점검, 그리고 이들 점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으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체계적이고 적절하게 구성되었다고 판단됨
- '전기사용량대비 전기화재건수', '전기재해 예방효과'를 지표로 설정하여 성과를 관리하고 있으나 '17년과 '18년 실적이 목표에 이르지 못하였고, 특히 '19년에는 전년('17년 및 '18년) 대비 목표를 하향조정하는 등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되지 못하였음

구분	성과지표 단위	구분	17년	18년	19년	측정산식(측정방법)
전기사용량 대비 전기화재건수(하향) (단위: 건)	단위사업	목표	15.3	14.8	15.7	전기사용량 백만MWh당 전기화재건수 [전기화재발생건수 / 전력판매량(100만MWh)]
		실적	15.8	17.5	-	
		달성도	96.7	81.8	-	
전기재해 예방효과(상향) (단위: 점)	단위사업	목표	90.11	92.81	93.37	유효표본 중 1,300명 면접조사 [(전체 응답자 응답별 점수 합산) × 100(점환산) / 전체응답자수 * 8개문항 5점 척도 측정]
		실적	92.74	93.16	93.4	
		달성도	102.9	100.4	100.0	



- 성과지표 설정에 있어 전기사용량 대비 전기화재발생건 수 외에 전기사용량 대비 피해규모액을 고려하여 대규모 전기화재를 사전적으로 예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동 보조사업의 상위 정책목표가 프로그램 목표인 ‘저탄소, 에너지저소비 경제구조로 전환’, 단위사업 목표인 ‘전기안전관리를 통한 전기사고 감축’인데, 앞서 살펴본대로 단위사업 목표 달성도가 미흡하고, 특히 프로그램 목표에의 기여도는 성과지표를 통한 확인이 어려워 명확하지 않음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기술력, 장비 및 인프라 등을 고려할 때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의 자체수행이 어려우며 대체할 민간의 사업주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현행과 같이 전기안전관련 전문성을 가진 민간단체에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수단일 것으로 판단됨
- 동 보조사업과 유사성을 가진 사업으로는 정부 안전관리활동 지원, 취약시기 예방점검 및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고조사 활동 지원, 전기재해 통계분석 등 국가 안전관리정책 수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시설안전관리’ 사업(세부사업)이 있음
 - 두 보조사업이 동일한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이라는 점, 점검대상 및 주기 등에서 차이는 있지만 전기안전점검이라는 수행업무의 유사성, 근거법령의 유사성, 성과지표의 동일성, 동일한 보조사업자에 의해 수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산효율화 및 업무효율화 관점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전기시설안전관리’ 사업을 동 보조사업으로 이관)
- 동 보조사업은 전기안전 관련 제반 예방활동 강화로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하므로 그 혜택은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수혜자의 범위는 광범위하다고 인정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예산 산출내역에서 확인되는 동 보조사업의 주요 추진내용을 볼 때 현행 보조금의 규모는 대체로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판단됨
- 유사사업으로 앞서 언급한 ‘전기시설안전관리’ 사업(세부사업)과의 통합을 통해 일정 수준의 예산 효율화(감축)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기준보조율이 없는 경우로서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 사업관리지침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규정 등에 따라 적정한 보조율(100%)을 설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 한편, 「전기안전관리사업 관리지침」 제4조에 따라 사용전점검 수행기관이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안전공사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전기사업자(한국전력공사)의 점검수행으로 인한 공공성우려, 점검기관 이원화로 인한 중복투자, 설비이력관리 등의 문제가 국회 등을 통해 지적된 바 있어 해소할 필요가 있고, 점검 주관기관을 일원화함으로써 사업추진 및 일정 수준의 예산 효율화(감축)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재정전망 및 재정규모 증가 등을 고려하여 사업기간별(단기·중기·장기) 재정 소요액을 적정하게 추계하고 있음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정부 안전관리활동 지원, 취약시기 예방점검 및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고조사 활동 지원, 전기재해 통계분석 등은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 적극적 조치로 볼 수 있으므로, 동 보조사업은 ‘②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 환경의 유지’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에 일정 부분 기여한다고 판단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 시행 주체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4호) 제13조(주관기관)를 통해 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사업을 포함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의 요건 및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13조 >

제13조(주관기관) ① 주관기관은 기반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관련자료, 사업계획서 제출 및 사업의 수행 등 주관사업의 종합 관리
2. 사업수행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의 부담(해당사업에 한함)
3.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의 보고
4. 사업성과의 활용 및 결과의 보고
5. 기타 기반조성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③ 주관기관은 기반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반조성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④ 장관은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을 동일기관에 지정할 수 있다

- 전기안전관리사업 관리지침 제4조(주관기관)에 전기안전관리사업의 주관기관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를 명시적으로 지정하고 있고, 전기사업법 제74조(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립) 및 제78조(사업)에서 명시하고 있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법적지위 및 사업범위를 볼 때 동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전기안전관리사업 관리지침 제4조 >

제4조 (주관기관)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사업의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3. 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사업

가. 사용전점검 :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제66조의2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나. 정기점검 : 한국전기안전공사

다. 전기안전관리시스템 : 한국전기안전공사

-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교부절차는 전기안전관리사업 관리지침 제9조(사업비의 지급)에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 전담기관), 보조금 교부결정 요청(전담기관 → 산업부), 보조금 교부결정(산업부 → 전담기관), 보조금 교부 결정의 통지(전담기관 → 보조사업자) 등으로 적정히 마련되어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전기안전관리사업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과 관련된 법령과 규정에 의해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수행실태 확인을 위해 주기적으로 진도점검, 성과관리 및 재정집행을 관리·감독하는 체계가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음
 - *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 및 결과 심의 : 연 1회(사업연도 종료 직후)
 - * 현장실태 조사 : 연 1회 또는 필요시
 - * 재정집행, 사업진행현황, 성과지표 달성현황, 사업 추진 문제점 도출 및 제도 개선 시행
 - * 국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실시간 집행현황 점검
- 보조사업 시행 주체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구축된 관리·감독 체계에 따라 점검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관리·감독결과 위법 또는 비효율적 예산 사용 적발시 통제수단으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42조(위반사항의 제재)에 의거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시행하는 등 집행의 적정성을 갖추고 있음
 - 관리·감독결과 위법 또는 비효율적 예산 사용이 없어 현재까지 활용실적은 없음
- 정보공시 관련 내부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준용하고 있으며 매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정보공시 중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사업 시행 주체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동 보조사업과 관련한 법령 및 규정에 의해 보조금 관리체계 구축을 통하여 집행을 관리·감독을 준수하고 있고, 국고보조금 현장 실태조사를 통하여 부정수급 여부 확인점검하는 등 부정수급 관리 체계를 대체로 적절히 갖추고 있음
 - 전문회계법인에 의한 결산감사로 주관기관의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검토 및 부적정 금액 회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전담기관의 실시간 집행현황 점검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 건수 및 사례는 없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최근 3년간 자체적인 부정수급 적발실적이 없어 자체 사업관리 노력에 대한 가산점 요인은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보조사업 및 각 내역사업들은 「전기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동 보조사업의 목적은 근거 법률에 따라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사용중 현장점검과 취약계층 전기고충해소 등 설비 안전도 향상 및 안전 사각지대 해소 등 국가 제반 전기안전 활동수행으로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이는 국가적 타당성과 중요성이 인정됨
- ‘전기사용량대비 전기화재건수’, ‘전기재해 예방효과’를 지표로 설정하여 성과를 관리하고 있으나 ‘17년과 ’18년 실적이 목표에 이르지 못하였고, 특히 ‘19년에는 전년(‘17년 및 ’18년) 대비 목표를 하향조정하는 등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되지 못하였음
- 동 보조사업과 유사성을 가진 사업으로는 정부 안전관리활동 지원, 취약시기 예방점검 및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고조사 활동 지원, 전기재해 통계분석 등 국가 안전관리정책 수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시설안전관리’ 사업(세부사업)이 있음
 - 두 보조사업이 동일한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이라는 점, 점검대상 및 주기 등에서 차이는 있지만 전기안전점검이라는 수행업무의 유사성, 근거법령의 유사성, 성과지표의 동일성, 동일한 보조사업자에 의해 수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산효율화 및 업무효율화 관점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전기시설안전관리’ 사업을 동 보조사업으로 이관하는 사업방식변경 필요)
- 유사사업으로 앞서 언급한 ‘전기시설안전관리’ 사업(세부사업)과의 통합을 통해 예산 효율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기준보조율이 없는 경우로서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 사업관리지침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규정 등에 따라 적절한 보조율(100%)을 설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 집행, 보조사업 사후관리,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 등은 대체적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3-2 정책 제언

- 성과지표 설정에 있어 전기사용량 대비 전기화재발생건 수 외에 전기사용량 대비 피해규모액을 고려하여 대규모 전기화재를 사전적으로 예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전기안전관리사업 관리지침」 제4조에 따라 사용전점검 수행기관이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안전공사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전기사업자(한국전력공사)의 점검수행으로 인한 공공성우려, 점검기관 이원화로 인한 중복투자, 설비이력관리 등의 문제가 국회 등을 통해 지적된 바 있어 해소할 필요가 있고, 점검 주관기관을 일원화함으로써 효과적 사업추진 및 일정 수준의 예산 효율화(감축)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산업통상자원부
사 업 명	전기시설안전관리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60.8
1. 보조사업의 타당성	40.8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4.6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5.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15.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5.2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0.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통폐합 및 감축(전체 내역사업, 2021년) ·유사사업과의 통폐합이 가능하고, 민간자본보조 일부 항목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 미비하여 일정 수준의 감축이 필요함 ·전기안전점검이라는 수행업무의 유사성, 근거법령의 유사성, 동일한 보조사업자에 의해 수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산효율화 및 업무효율화 관점에서 ‘일반용전기시설 안전점검’ 사업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동 보조사업을 ‘일반용전기시설안전점검’ 사업으로 통폐합 필요). 사업의 통합을 통한 예산 효율화를 비롯해, 일부 범용성 안전점검장비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폐지 등을 통해 보조금 규모의 일정 수준 감축이 가능함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이 국가주요행사 개최 등의 목적으로 전기안전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고, 이를 재원으로 보조금 규모를 절감하는 방안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를 권고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동 보조사업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의 확립,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전기사업법」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전기사업법」 제48조(기금의 설치) 및 제49조(기금의 사용)에서는 동 보조사업의 재원이 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설치목적 및 사용처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 동법 시행령 제34조에서는 동 기금의 사용처 중 하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으로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동 보조사업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음

< 전기사업법 제48, 49조 >

제48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7. 전기안전의 조사·연구·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4조 >

제34조(기금의 사용) 법 제49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

- 동 보조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내역사업 중 ‘전기시설안전점검’, ‘중대사고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전기사업법」 제66조의3(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제96조의3(중대한 사고의 통보·조사) 등에 대체로 명확히 제시되어 있음
- 다만, 내역사업 중 ‘전기안전점검장비’의 경우 보조사업자인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반적인 전기안전점검 업무를 위한 범용성 장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고, 이는 반드시 동 보조사업만을 위해 독립적으로 사용된다고 볼 수 없어 그 지원범위가 법적으로 명확하지는 않음



< 전기사업법 제66조의3, 제96조의3 >

제66조의3(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가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공사로 하여금 특별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 그 대상 시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관련 시설

제96조의3(중대한 사고의 통보·조사)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고의 원인·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안전공사

- 동 보조사업의 목적은 근거 법률에 따라 정부 안전관리활동 지원, 취약시기 예방점검 및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고조사 활동 지원, 전기재해 통계분석 등 국가 제반 전기안전 활동수행으로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이는 국가적 타당성과 중요성이 인정됨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저탄소, 에너지 정책 전환의 프로그램 목적 및 전기사고 감축의 단위사업 목적과의 연계성이 인정됨
- 현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와 연계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를 고려할 때 동 보조사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타당성이 있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보조사업은 ‘전기시설안전점검’, ‘전기안전점검장비’, ‘중대사고조사’, ‘전기재해종합분석센터구축’ 등 4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적정성이 대체로 양호하나, ‘전기안전점검장비’의 경우에는 전기안전점검용 장비구입을 민간자본보조의 형식으로 지원하는 내역사업으로서 해당 장비 중 범용성 장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움
- 해당 전기안전점검용 범용장비의 구매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 보조사업 예산에서 전액 삭감하는 것이 타당함
- ‘전기사용량대비 전기화재건수’, ‘전기재해 예방효과’를 지표로 설정하여 성과를 관리하고 있으나 ‘17년과 ’18년 실적이 목표에 이르지 못하였고, 특히 ‘19년에는 전년(‘17년 및 ‘18년) 대비 목표를 하향조정하는 등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되지 못하였음



구분	성과지표 단위	구분	17년	18년	19년	측정산식(측정방법)
전기사용량 대비 전기화재건수(하향) (단위: 건)	단위사업	목표	15.3	14.8	15.7	전기사용량 백만MWh당 전기화재건수 [전기화재발생건수 / 전력판매량(100만MWh)]
		실적	15.8	17.5	-	
		달성도	96.7	81.8	-	
전기재해 예방효과(상향) (단위: 점)	단위사업	목표	90.11	92.81	93.37	유효표본 총 1,300명 면접조사 [(전체 응답자 응답별 점수 합산) × 100(점환산) / 전체응답자수 * 8개문항 5점 척도 측정]
		실적	92.74	93.16	93.4	
		달성도	102.9	100.4	100.0	

- ‘17년 보조사업평가 결과, ’성과지표 설정에 있어 전기사용량 대비 전기화재발생건 수 외에 전기사용량 대비 피해규모액을 고려하여 대규모 전기화재를 사전적으로 예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적절한 사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 동 보조사업의 상위 정책목표가 프로그램 목표인 ‘저탄소, 에너지저소비 경제구조로 전환’, 단위사업 목표인 ‘전기안전관리를 통한 전기사고 감축’인데, 앞서 살펴본대로 단위사업 목표 달성도가 미흡하고, 특히 프로그램 목표에의 기여도는 성과지표를 통한 확인이 어려워 명확하지 않음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기술력, 장비 및 인프라 등을 고려할 때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의 자체수행이 어려우며 대체할 민간의 사업주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현행과 같이 전기안전관련 전문성을 가진 민간단체에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수단일 것으로 판단됨
- 동 보조사업과 유사성을 가진 사업으로는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사용중 현장점검과 취약계층 전기고충해소 등 설비 안전도 향상 및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내용으로 하는 ‘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 사업(세부사업)이 있음
 - 두 보조사업이 동일한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이라는 점, 점검대상 및 주기 등에서 차이는 있지만 전기안전점검이라는 수행업무의 유사성, 근거법령의 유사성, 성과지표의 동일성, 동일한 보조사업자에 의해 수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산효율화 및 업무효율화 관점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동 보조사업의 1차적 수혜자는 전기안전점검의 대상이 되는 국가행사주체 및 시설 등이고, 제반 예방활동 강화로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하므로 그 혜택은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2차적 수혜자의 범위는 광범위하다고 인정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예산 산출내역에서 확인되는 동 보조사업의 주요 추진내용을 볼 때 현행 보조금의 규모는 대체로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고, 보조금의 규모가 행정비용을 감안할 때 보조사업 목표 달성에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됨
- ‘전기안전점검장비’ 내역사업의 경우 앞서 언급한대로 일부 범용성 장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고 한국전기안전공사 운영경비 등 타 재원을 활용 가능하므로 일정 수준의 예산 감축 가능함
- 유사사업으로 앞서 언급한 ‘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 사업(세부사업)과의 통합을 통해서도 예산 효율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기준보조율이 없는 경우로서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 사업관리지침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규정 등에 따라 적절한 보조율(100%)로 지원하고 있음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정부 안전관리활동 지원, 취약시기 예방점검 및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고조사 활동 지원, 전기재해 통계분석 등은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 적극적 조치로 볼 수 있으므로, 동 보조사업은 ‘②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 환경의 유지’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에 일정 부분 기여한다고 판단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 시행 주체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4호) 제13조(주관기관)를 통해 전기시설안전관리사업을 포함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의 요건 및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13조 >

- 제13조(주관기관)** ① 주관기관은 기반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 ②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관련자료, 사업계획서 제출 및 사업의 수행 등 주관사업의 종합 관리
 2. 사업수행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의 부담(해당사업에 한함)
 3.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의 보고
 4. 사업성과의 활용 및 결과의 보고
 5. 기타 기반조성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 ③ 주관기관은 기반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반조성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④ 장관은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을 동일기관에 지정할 수 있다

- 전기안전관리사업 관리지침 제4조(주관기관)에 전기시설안전관리사업의 주관기관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를 명시적으로 지정하고 있고, 전기사업법 제74조(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립) 및 제78조(사업)에서 명시하고 있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법적지위 및 사업범위를 볼 때 동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전기안전관리사업 관리지침 제4조 >

- 제4조 (주관기관)**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사업의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전기시설안전관리사업 : 한국전기안전공사

-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교부절차는 전기안전관리사업 관리지침 제9조(사업비의 지급)에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 전담기관), 보조금 교부결정 요청(전담기관 → 산업부), 보조금 교부결정(산업부 → 전담기관), 보조금 교부 결정의 통지(전담기관 → 보조사업자) 등으로 적정히 마련되어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전기시설안전관리사업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과 관련된 법령과 규정에 의해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수행실태 확인을 위해 주기적으로 진도점검, 성과관리 및 재정집행을 관리·감독하는 체계가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음
 - *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 및 결과 심의 : 연 1회(사업연도 종료 직후)
 - * 현장실태 조사 : 연 1회 또는 필요시
 - * 재정집행, 사업진행현황, 성과지표 달성현황, 사업 추진 문제점 도출 및 제도 개선 시행
 - * 국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실시간 집행현황 점검
- 보조사업 시행 주체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구축된 관리·감독 체계에 따라 점검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관리·감독결과 위법 또는 비효율적 예산 사용 적발시 통제수단으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42조(위반사항의 제재)에 의거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시행하는 등 집행의 적정성을 갖추고 있음
 - 관리·감독결과 위법 또는 비효율적 예산 사용이 없어 현재까지 활용실적은 없음
- 정보공시 관련 내부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준용하고 있으며 매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정보공시 중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사업 시행 주체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동 보조사업과 관련한 법령 및 규정에 의해 보조금 관리체계 구축을 통하여 집행을 관리·감독을 준수하고 있고, 국고보조금 현장 실태조사를 통하여 부정수급 여부 확인점검하는 등 부정수급 관리 체계를 대체로 적정히 갖추고 있음
 - 전문회계법인에 의한 결산감사로 주관기관의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검토 및 부적정 금액 회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전담기관의 실시간 집행현황 점검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 건수 및 사례는 없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최근 3년간 자체적인 부정수급 적발실적이 없어 자체 사업관리 노력에 대한 가산점 요인은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보조사업 및 각 내역사업들은 「전기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동 보조사업의 목적은 근거 법률에 따라 정부 안전관리활동 지원, 취약시기 예방점검 및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고조사 활동 지원, 전기재해 통계분석 등 국가 제반 전기안전 활동수행으로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이는 국가적 타당성과 중요성이 인정됨
- 동 보조사업은 ‘전기시설안전점검’, ‘전기안전점검장비’, ‘중대사고조사’, ‘전기재해종합분석센터구축’ 등 4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적정성이 대체로 양호하나, ‘전기안전점검장비’의 경우에는 전기안전점검용 장비구입을 민간자본보조의 형식으로 지원하는 내역사업으로서 해당 장비 중 범용성 장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움
- ‘전기사용량대비 전기화재건수’, ‘전기재해 예방효과’를 지표로 설정하여 성과를 관리하고 있으나 ‘17년과 ’18년 실적이 목표에 이르지 못하였고, 특히 ‘19년에는 전년(‘17년 및 ’18년) 대비 목표를 하향조정하는 등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되지 못하였음
- 동 보조사업과 유사성을 가진 사업으로는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사용중 현장점검과 취약계층 전기고충해소 등 설비 안전도 향상 및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내용으로 하는 ‘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 사업(세부사업)이 있음
 - 두 보조사업이 동일한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이라는 점, 점검대상 및 주기 등에서 차이는 있지만 전기안전점검이라는 수행업무의 유사성, 근거법령의 유사성, 성과지표의 동일성, 동일한 보조사업자에 의해 수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산효율화 및 업무효율화 관점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동 보조사업을 ‘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 사업으로 통폐합)
- ‘전기안전점검장비’ 내역사업의 경우 앞서 언급한대로 일부 범용성 장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고 한국전기안전공사 운영경비 등 타 재원을 활용 가능하므로 일정 수준의 예산 감축 가능함



- 기준보조율이 없는 경우로서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 사업관리지침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규정 등에 따라 보조율 100%로 적정하게 지원하고 있음
-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 집행, 보조사업 사후관리,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 등은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3-2 정책 제언

-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이 국가주요행사 개최 등의 목적으로 전기안전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고, 이를 재원으로 보조금 규모를 절감하는 방안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를 권고함
 - 「전기사업법」 제75조(안전공사의 운영 등)에 따르면, 점검을 받으려는 자가 내는 수수료,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부담하는 재난예방점검비용 등을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운영경비 재원으로 충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전기사업법 제48, 49조 >

제75조(안전공사의 운영 등) 안전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점검을 받으려는 자가 내는 수수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부담하는 재난예방 점검비용 등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산업통상자원부
사 업 명	전력산업홍보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39.9
1. 보조사업의 타당성	27.4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4.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8.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12.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2.4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2.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2.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감축 · 동 사업은 일부 내역사업의 경우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일부 내역사업의 주요 활동이 홍보 중심이라는 점에서 유사성이 존재함에 따라 2021년 ~ 23년 안에 높은 수준의 예산 감축이 필요함 · 주요 세부활동은 콘텐츠개발(카드뉴스), 온라인 이벤트 및 홍보, 매체광고, 라디오 홍보, 뉴미디어 홍보 등 유사한 활동들로 구성되어 내역사업 간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내역사업별 정책목표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선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내역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사업관리 개선과 더불어, 내역사업의 목표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개발과 이에 따른 성과관리가 요구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전력산업홍보’ 사업은 전력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소통을 증진하기 위해 전력산업 관련 교육·홍보 지원사업으로서의 성격을 지님
- 동 사업의 주요 법적 근거는 「전기사업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등임

<전기사업법>

제4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전력수요 관리사업
3. 전원개발의 촉진사업
4.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5. 전력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
6.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의 석탄산업, 액화천연가스산업 및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7. 전기안전의 조사·연구·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8.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사업
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 9의2.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10.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업
- 10의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이하 “전통시장”이라 한다)의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사업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

제78조(사업) 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전기안전에 관한 기술개발 및 보급
3. 전기안전에 관한 전문교육 및 정보의 제공
4. 전기안전에 관한 홍보
5.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 및 기술지원
6. 제96조의3제3항에 따른 전기사고의 원인·경위 등의 조사
7. 전기안전에 관한 국제기술협력
8. 전기안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



9. 전기설비의 안전진단과 그 밖에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7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과 국제협력
2. 에너지기술의 개발·도입·지도 및 보급
3. 에너지이용 합리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을 위한 자금의 융자 및 지원
4.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업
5. 에너지진단 및 에너지관리지도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촉진
7. 에너지관리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8.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을 위한 토지·건물 및 시설 등의 취득·설치·운영·대여 및 양도
9.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의 촉진을 위한 지원 및 관리
10. 에너지사용기자재·에너지관련기자재의 효율관리 및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
11. 사회취약계층의 에너지이용 지원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 외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그 밖의 기관 등이 위탁하는 에너지이용의 합리화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30조(신·재생에너지의 교육·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① 정부는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를 지정하여 육성·지원할 수 있다.

○ 다만, 상기 제시되어 있는 법적 근거를 동 보조사업의 추진근거로 보기에는 한계가 존재함

- 「전기사업법」 제49조는 정부로 하여금 전력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동 기금의 사용 분야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78조에서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업범위를 규정함

- 「전기사업법」의 관계 조항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조항을 통해 한국전력거래소에 전력시장교육을 위한 보조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야 하는 근거는 될 수 없음

* 주관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 공고를 주요 법적 근거로 제시한 바 있으나, ‘공고’ 자체를 법적 효력을 지닌 실제로 보기엔 한계가 존재함

- 다만,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보조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법적 근거의 타당성이 인정됨

○ 동 사업과 현 정부 국정과제의 연관성은 명확한 근거가 없음



- 전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 사업은 전력정책 관련 이해와 소통을 증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상위 사업 간의 연관성은 일부 인정됨
- 다만, ‘전력안전홍보’ 내역사업의 경우 이는 실제 전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보다 국민안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려움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사업은 '18년 3개 내역사업이었으나, '19년부터 4개 내역사업으로 재편되어 운영 중임
 - '18년 기준 내역사업은 ‘전력시장홍보’, ‘전기절약홍보’, ‘전기안전홍보’ 등으로 구성되었으나, '19년부터는 ‘전력시장교육’, ‘전기절약홍보’, ‘신재생에너지홍보’, ‘전기안전홍보’의 4가지 내역사업으로 추진되었음
 - 내역사업 변화를 살펴보면, '18년 기준 ‘전기절약홍보’ 내역사업에 포함되어 있었던 ‘신재생에너지’ 내역사업이 '19년 ‘신재생에너지홍보’ 내역사업으로 신규 편성, 이는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 추진을 위해 동 내역사업이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결과임
 - 주관부처는 4가지 내역사업을 바탕으로 전력정책의 전략적 홍보를 통해 전력산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소통을 증진하고 국민의 알 권리 제공 및 권익 제고에 기여함을 밝힘
 - 다만, 이는 내역사업 구성의 근거라기보다 정책적 필요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 따라, 전력시장·전기절약·신재생에너지 홍보 등 내역사업이 하나의 세부사업으로서 편성되어 추진되어야 할 근거는 명확하지 않음
- 주관부처는 이러한 내역사업의 변화에 대해 예산편성과정에서 지적을 반영한 결과임을 소명하였음
 - 국회 예산정책처 '13년 예산안 지적에 따라 '14년부터 전력기금 내 홍보사업들을 전력산업홍보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통합하여 운영
 - 다만, '13년도에 제시된 예산검토결과가 '18년부터 '19년까지 내역사업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로는 타당성이 부족함
- 뿐만 아니라 개별 내역사업은 연도별로 활동의 변화폭이 크며, 주관부처가 제출한 활동별 산출근거는 일부 구체적인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예산 산출내역의 합리성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음
 - 또한 내역사업 간 세부활동 역시 콘텐츠개발(카드뉴스), 온라인 이벤트 및 홍보, 매체광고, 라디오 홍보, 뉴미디어 홍보 등 유사한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어, 내역사업별 정책목표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선택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동 사업은 내역사업별 성과관리를 위한 지표가 단순 산출지표로 설정되어 있으며, 사업의 성과 달성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음
 - 주관부처는 동 사업 내역사업 중 ‘전력시장교육’, ‘전기절약홍보’, ‘전기안전홍보’ 등의 경우 성과지표 및 달성도에 관한 근거를 제시하였음, 다만, 동 성과지표의 참여자의 만족도, 캠페인 참여인원, 인식도 등으로 제시되어 명확한 성과지표로 보기 어려움
 - ‘신재생에너지홍보’ 내역사업의 경우 별도 성과지표를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주관부처는 제시하였음, 다만 동 보조사업이 포함된 세부사업의 성과계획서를 확인할 경우, 동 내역사업의 성과지표는 신재생에너지 교육 참여인원으로 추정되며 이 또한 산출지표라는 점에서 성과지표로서의 의의는 낮음
 - 또한 성과지표별 설정된 목표치를 충분히 달성하였는지에 대해서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 전력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소통을 증진시켜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동 사업의 상위 정책적 목표와 비교하여 볼 때, 일부 내역사업의 경우 상위 정책적 목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동 보조사업은 내역사업에 따라 실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전체 차원의 보조사업이 상위 정책적 목표에 충실히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사업은 국민교육과 홍보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문제보다는 동 사업을 추진하는 보조사업자의 고유업무와의 유사·중복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음
 - 전력시장교육의 경우 일반국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보조사업자의 고유업무와 차이가 존재하며, 전기절약홍보의 경우 보조사업자가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보조사업을 통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함
 -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산을 위한 홍보의 경우 일부 중복 가능성이 존재함
- 동 사업의 수혜자는 전력을 활용하게 되는 국민으로 폭넓게 정의하는 것이 가능함
 - 다만, 동 사업은 정보전달 및 캠페인성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동 사업 폐지에 따른 손실은 제한적임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사업은 연도별 총 예산이 50억 미만의 소규모 보조사업으로 동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행정비용의 과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이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함
- 동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상 기준보조율을 준수하여야 하는 유형의 사업이 아니며, 민간보조사업자에 100% 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음
 - 전기안전,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대국민 교육과 홍보라는 점에서 국고보조의 필요성은 일부 인정되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의 고유 업무와의 차별성이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현행 국고보조율의 적용은 합리성이 부족함
 - 뿐만 아니라 실제 보조율에 대해서 규정한 바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보조사업자에 대해 100%의 보조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근거는 확인하기 어려움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동 사업은 전기절약 및 전기안전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근로·생활환경 유지라는 측면에서 사회적가치 실현이 인정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사업의 보조사업자는 총 3개 기관(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별도의 공모절차가 아닌 지정을 통해 선정되었음
 - 주관부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개별 홍보 분야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공공기관으로 상기 3개 기관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였음
 - 상기 3개 기관은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라는 점이 일부 인정되나,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는 한계가 존재함
- 동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관리지침 등에 의거하여 지정된 보조사업자에 사업비를 교부하고 있음
 - 보조금 교부신청, 교부결정 요청, 교부결정, 교부결정의 통지 등 교부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사업비의 교부는 사업계획서 승인 요청, 승인 및 교부통지, 협약체결, 사업비 지급 요청 및 지급 등 관련 지침에 의거하여 진행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관리지침 등에 의거하여 보조사업을 집행하고 있음
 - 다만, 동 사업 집행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관리지침을 마련한 것은 아님
- 주관부처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 추진실태 확인을 위해 주기적으로 진도점검, 성과관리 및 재정집행을 관리·감독하고 있음
 -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 및 결과 심의는 사업연도 종료 직후 연 1회 실시하며, 현장 실태조사는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필요시 추가 실시함
 - 분기별로 진도점검 및 사업성과 점검을 실시하며, 국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있음
 - 관리·감독결과 위법 또는 비효율적 예산 사용 적발 시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참여 제한 및 환수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동 사업의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정보고시 사항 및 기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부 신청 정보 및 사업계획 등 정보를 불이행 없이 공시함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주관부처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관리지침 등에 의거하여 따라 부정수급을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함
 -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반환 절차를 갖추었으며, 제제부가금 부과 및 부과기준 등을 규정함
 - 주관부처 사업담당자는 지침에 따라 부정수급 점검결과에 대한 자체점검을 매년 시행함
-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 사례는 없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사업은 전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국민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일부 인정되나,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높은 수준의 예산 감축을 권고함
- 동 사업은 개별 내역사업을 하나의 세부사업으로서 추진하여야 할 합리적 근거가 미흡하고 예산 산출내역 역시 일부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사업 구성의 합리성이 부족하며 성과관리의 개선이 요구됨
 - 특히 내역사업 간 세부활동 역시 콘텐츠개발(카드뉴스), 온라인 이벤트 및 홍보, 매체광고, 라디오 홍보, 뉴미디어 홍보 등 유사한 활동들로 구성되어 내역사업 간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움
- 따라서 전력산업 홍보를 위해 내역사업별 정책목표를 충실히 달성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선택하고 이에 대한 충실한 사업관리가 필요함

3-2 정책 제언

- 내역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따라, 상기 제시된 예산 감축과 더불어 성과지표 개선을 통한 철저한 성과관리가 필요함
 - 동 사업은 홍보 사업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성과지표 활용에 한계가 있음이 인정되나, 현행 교육참여인원 수 등의 성과지표는 단순 산출지표라는 점에서 성과지표로서 의의가 낮음
 - 이에 따라 내역사업의 목표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개발과 이에 따른 성과관리가 요구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산업통상자원부
사 업 명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50.4
1. 보조사업의 타당성	34.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1.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15.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0.0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6.4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4.4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8.5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 감축 및 사업방식 변경 · 동 사업은 내역사업의 산출근거가 불확실하고, 성과목표 설정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함에 따라 2021년 ~ 23년 안에 높은 수준의 감축이 필요함 · 특히 내역사업이 네트워크 구성·운영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동 사업이 전력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실제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 예산 감축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관리 강화 및 내역사업별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기준보조율 재조정이 요구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동 사업의 주요 법적 근거는 「전기사업법」으로 동법 시행령에서 전력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가능분야로 규정되어 있음

<전기사업법>

제4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전력수요 관리사업
3. 전원개발의 촉진사업
4.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5. 전력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
6.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의 석탄산업, 액화천연가스산업 및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7. 전기안전의 조사·연구·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8.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사업
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 9의2.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10.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사업
- 10의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이하 "전통 시장"이라 한다)의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사업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실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 및 제16조 각 호의 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추진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의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중 법 제49조제5호에 따른 전력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성과를 직접 이용하거나 신청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은 제3항에 따라 성과를 직접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협약에 따라 기술료를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은 납부받은 기술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2에 따른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34조(기금의 사용) 법 제49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

1의2. 법 제5조에 따른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적정한 관리·보존을 위한 사업

2. 법 제6조에 따른 전기의 보편적 공급을 위한 사업

3.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에 대한 기획·관리 및 평가

4. 전력산업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5. 전력산업 분야의 시험·평가 및 검사시설의 구축

6. 전력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7. 전력산업 분야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사업

○ 또한 동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전력산업기반조성과 관련된 사업의 시행을 보조사업자인 한국전력거래소로 하여금 가능하게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보조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일부 구체적이라고 판단됨

○ 동 사업은 전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력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라는 점에서 상위 정책목표 및 사업과의 연관성이 존재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사업은 3개 내역사업(원전해외수출기반구축, 전력수출산업화, 차세대 ICT 융합 및 에너지 효율 국제 경쟁력 강화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그러나 3개 내역사업이 동 사업의 목표를 위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에 대해선 근거가 모호함

- 또한 내역사업에 따라 정례협의회 개최, 인력교류 지원, 컨퍼런스 개최 등 네트워크 중심의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어, 실제 동 사업이 전력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미흡함



- 내역사업 간 연계성과는 별도로, 내역사업별 예산 산출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음
 - 동 사업은 지난 3년간('18~'20년) 예산 변동이 매우 큼, '19년의 경우 전년도 대비 약 26% 감축되었으나, '20년도에 들어 약 50% 증액되었음
 - 특히 주된 예산변화를 가져온 것은 '원전해외수출기반구축' 내역사업으로 주관부처는 외교활동 지원 및 해외인증 취득 지원 등을 이유로 예산을 증액하였음
 - 다만, 이러한 사유를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내역사업의 경우 산출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으며, 제시된 예산증액 사유를 산출내역에서 확인하기 어려움에 따라 사업 구성이 합리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움
 - 또한 나머지 2개 내역사업 역시 명확한 산출근거가 제시되지 않음에 따라 내역사업의 규모 적절성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 동 사업은 내역사업별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성과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성과지표의 경우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
 - '17년의 경우 원전수출상대국 현지정보 분석보고서 건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였으나, '18년부터 원전수출대상국 및 운영국간 협력의제 개발건수로 변경하여 성과지표와의 불일치가 발생함
 - '20년의 경우 상기 논의하였던 성과지표가 다시 변경되었음*
 - * 원전수출대상국 및 원전운영국간 협력의제건수→원전산업수출을 위한 해외시장개척 활동건수
 - 내역사업별 성과지표를 마련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현 지표가 동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서의 대표성을 지니는지에 대한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음
- 전력산업 및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교류 및 마케팅센터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사업은 전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상위 정책적 목표 달성에 일부 기여도가 존재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현재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일부 문제점 해소를 위해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동 사업의 지원 필요성은 일부 인정되나, 동 사업이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되어야만 하는 근거는 명확하지 않음
 - '17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동 사업 내역사업 중 일부는 시장 지원정책이기보다 국제협력적 성격이 강함



- 이에 대하여 주관부처는 기업지원정책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20년부터 국내 원전기자재 관련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인증 지원을 추진할 예정임을 밝힘
- 다만, '차세대 ICT 융합 및 에너지 효율 국제 경쟁력 강화 지원' 내역사업의 경우 해외시장조사, 해외 한국관 운영, 해외 마케팅센터 구축 등이 주요 활동이라는 점에서 이는 산업통상자원부내 타 사업과 중복 가능성이 존재함
- '수출경쟁력강화지원사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지원사업)' 등을 통해서도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동 사업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여야 할 타당성은 낮음
- 동 사업의 직접적 수혜자는 원전·전력 관련 중견·중소기업, 관련 학회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이러한 직접적 수혜자에 대한 명확한 통계자료가 제시되지 않음에 따라 그 규모를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다만, 동 사업을 통해 글로벌시장 진출의 효과가 일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 폐지 시 일부 기업에 피해가 예상되며, 국제협력적 측면에서도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사업은 연도별 총 예산이 50억 미만의 소규모 보조사업으로 동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행정비용의 과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이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함
- 동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상 기준보조율을 준수하여야 하는 유형의 사업이 아니며, 75% 기준보조율을 별도로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다만, 전력산업 관련 대기업의 경우 보조율은 50%가 적용되며, 관련 중소기업이나 대학, 연구소, 협회 등의 경우 75%를 적용함
- 동 기준보조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17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는 민간의 재원부담 비중이 상향되어야 함을 지적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대기업의 경우 부담률을 40%로 조정할 것을 권고함
- 주관부처는 '원전해외수출기반구축' 내역사업 중 해외인증 취득 지원의 경우 보조율을 50%로 설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민간기업 중 대기업의 경우 부담률을 50%로 상향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밝힘



- 다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준보조율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존재함, 특히 앞선 지적과 더불어 중견기업 역시 중소기업에 준해 75%의 보조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선 충분한 근거가 미흡함
- 또한 동 사업은 실집행률이 낮아, 충실한 사업운영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정부행사 취소 등에 따라 '18년 실집행률은 84.6%로 나타남
 - '19년 12월 기준 실집행률은 74.2%로 나타나고 있음, 주관부처는 동 사업의 경우 실질적 종료가 다음 해 3월에서 5월이라는 주관부처는 사업종료 시점에는 실집행률이 98%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다만, 이는 예측치라는 점에서 주관부처의 보다 철저한 사업관리가 요구됨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동 사업은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해외 수출계약 달성 시 긍정적인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일부 사회적가치가 인정됨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주관부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른 동 사업은 직접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를 통해 추진되고 있음
 - 동 사업의 직접보조사업자는 전력기반센터(한전)로 공모가 아닌 지정을 통해 선정됨, 한국전력공사는 전력산업 관련 주요 기관이라는 점에서 그 전문성은 일부 인정되나 지정을 통해 사업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는 한계가 존재함
- 다만, 내역사업별 추진은 간접보조사업자를 통해 개별적으로 추진되며 간접보조사업자는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됨을 확인하였음
 - 주관부처는 내역사업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동 지침에 의거하여 공모절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주관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내역사업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동 사업을 관리하고 있음
 - * 원전산업수출기반구축사업 운영지침, 전력수출산업화사업 운영지침, 차세대 ICT융합 및 에너지 효율화 국제경쟁력 강화지원사업 운영지침 등
- 주관부처는 동 사업 집행 시 내역사업별 운영지침에 따라 전담기관으로부터 사전보고 및 확인 후 승인하는 절차를 통해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음
 -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신청, 교부결정, 교부조건 및 교부결정의 통지 등을 준수하고 있음
 - 문제사업,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진도보고서, 수행계획서, 최종보고서 등의 허위 작성, 정산잔액 납부 지연 등의 사례 발생 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 환수,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회계전문기관의 검증을 통한 사업계획 이행의 적정성, 규정 위배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 동 사업의 경우 관리지침에 따라 정보고시 사항 및 기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교부 신청정보 및 사업계획 등의 정보를 불이행 없이 공시하였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주관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내역사업별 운영지침 등에 따라 부정수급을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함
 - 운영지침에 규정된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조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교부조건 및 교부결정의 통지 등을 준수하고 있음
 - 사업중간·종료평가시 직접보조사업자인 전력기반센터 주관으로 현장 사업실태 점검을 실시함(통장점검 1회 포함)
 - 관리·감독 결과 위법 또는 비효율적 예산 사용에 대해서는 협약의 해지, 사업비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 사례는 없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사업은 전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력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부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사업 추진 상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예산 감축을 권고함
- 동 사업은 보조사업의 효과성 및 필요성에 대한 관련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음
 - 동 사업은 내역사업이 협의회 개최, 해외 한국관 운영, 컨퍼런스 개최 등 네트워크 중심의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어, 동 사업이 전력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 내역사업별 예산 산출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으며, 성과목표 설정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함
 - 또한 유사 공공기관의 국제협력 업무 및 산업통상자원부내 중견·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유사·중복의 가능성이 존재함
- 따라서 상기 문제점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은 높은 수준의 예산 감축이 필요함

3-2 정책 제언

- 상기 제시된 예산 감축을 바탕으로 동 사업 추진 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내역사업에 대한 철저한 성과관리가 요구됨
- 특히 예산 감축과 더불어 내역사업별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기준보조율 재조정을 통해 민간의 재원부담을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산업통상자원부
사 업 명	지역에너지절약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66.7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1.2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8.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1.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5.2
1-5.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5.5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	
총 평	· 감축(시설보조사업, 신산업육성사업) 및 사업방식변경 - (감축)예산산출근거 미비, 사업효과성 미비, 실집행률 저조 등으로 인해 2021년 ~ 23년 안에 높은 수준의 예산 감축이 필요함 - (사업방식변경) 공무원 교육 등 간접적 지원내용으로 사업실효성 낮음 · 예산 산출내역에서 확인되는 동 보조사업의 산출근거가 불분명하고 미비하여 예산 규모 적정성이 낮고, 성과지표상 사업의 효과성도 크지 않아 전반적인 재정지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함. 특히,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이 지속적으로 저조하므로 산출근거의 재검토 및 예산 효율화를 통해 높은 수준의 보조금 지원 규모 감축 필요성이 있음 · ‘지역에너지계획수립지원’ 내역사업은 담당공무원 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직접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사업내용으로 내실화하고 지자체 매칭 비율을 높일 필요 있음 · 민간사업자의 부정수급, 사업의 불성실 수행 등을 면밀히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체화하고 강화할 필요 있음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동 보조사업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과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에너지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에서는 정부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종합적 시책을 강구할 책임이 있다는 점과, 지자체가 관할 지역의 지역에너지시책을 시행할 책무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어, 동 보조사업의 기본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함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조 >

제3조(정부와 에너지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에너지의 수급안정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에너지정책의 효과적인 수행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에너지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 동 보조사업은 ‘시설보조사업’, ‘신산업육성사업’, ‘지역에너지계획수립지원’ 등 3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는데, 각 내역사업별 법적 근거는 대체로 명확함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금융·세제상의 지원)에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업 등에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설보조사업’ 및 ‘신산업육성사업’의 경우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음
- 「에너지법」 제7조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지역에너지계획을 5년을 주기로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강제하면서 정부는 이러한 지자체의 에너지시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역에너지계획수립지원’ 내역사업의 법적 근거 또한 마련되어 있음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 >

제14조(금융·세제상의 지원) ① 정부는 에너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설치·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업과 우수한 에너지절약 활동 및 성과에 대하여 금융상·세제상의 지원,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에너지법 제7조 >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동 보조사업의 목적은 근거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특성에 맞게 중점 추진하는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을 지원하고 에너지 생산 및 이용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에너지신산업 사업모델을 지원함으로써 에너지신산업의 지역 확산과 지역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도모하는 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적 타당성과 중요성이 인정됨
- 프로그램('에너지자원정책') 목적 및 단위사업('에너지이용합리화') 목적과의 연계성이 인정됨
- 현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37.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 육성'과 연계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를 고려할 때 동 보조사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타당성이 있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보조사업은 '시설보조사업', '신산업육성사업', '지역에너지계획수립지원' 등 3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적정성이 대체로 양호함
- 다만, '지역에너지계획수립지원'의 경우에는 「에너지법」 7조에 따라 광역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수립해야하는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담당 공무원 교육을 주된 내용으로 민간경상보조(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와 지자체 경상보조의 형태로 보조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음



- 관련 공무원 교육 등 간접적인 사항은 지자체의 자체재원으로 추진하고, 지역에너지계획 수립과 관련한 직접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사업내용으로 내실화하는 등 사업방식변경이 필요함
- ‘지역에너지절감량’을 지표로 설정하여 성과를 관리하고 있으며 ‘17년에는 목표 달성도가 미흡하였으나 ‘18년 및 ‘19년에는 목표대비 양호한 실적을 거두었음
- 다만, ‘19년 목표치가 전년 대비 예산감축 비율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 면이 있고, 이를 고려할 때 ‘19년 실질적인 목표달성도는 다소 미흡하여 동 보조사업의 효과성이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구분	성과지표 단위	구분	17년	18년	19년	측정산식(측정방법)
지역에너지절감량 (TOE)	세부사업	목표	7,096	7,096	6,527	$\sum_{i=1}^n (\text{각 사업별 지역 에너지 절감량 } i)$ * n = 지역에너지절약 전체 지원사업
		실적	6,972	7,191	6,527	
		달성도	98.2	101.3	100	

- 동 보조사업의 상위 정책목표가 단위사업 목표인 ‘에너지이용합리화’인데, 앞서 살펴본대로 지역에너지절감량 측면의 목표 달성도가 미흡하고 특히 에너지 신산업육성과 관련한 기여도는 성과지표를 통한 확인이 어려워 명확하지 않음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시설보조사업’, ‘신산업육성사업’을 통한 정책효과는 지역의 범위를 넘어 범국가적인 혜택이 예상되고 근거 법령에 따라 중앙부처가 이행해야 할 업무를 일부 지자체 또는 민간단체가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수단일 것으로 판단됨
- 지역의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지원한다는 사업의 목적과 추진내용을 볼 때, 그 고유성이 인정되고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동 보조사업의 1차적 수혜자는 보조금 수혜를 받는 지자체 및 에너지 관련 중소기업 등이 포함되고, 지역별 에너지절약 정책효과가 범국가적인 에너지이용 효율화에 기여하므로 그 혜택은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2차적 수혜자의 범위는 광범위하다고 인정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예산 산출내역에서 확인되는 동 보조사업의 산출근거가 불분명하고 미비하여 예산 규모 적정성은 낮음
- 성과지표상 사업의 효과성이 다소 미흡하여 전반적인 재정지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함
- 특히,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이 지속적으로 저조하므로 산출근거의 재검토 및 예산 효율화를 통해 높은 수준의 보조금 지원 규모 감축 필요성이 있음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17	19,485	19,485	19,485	19,485	5,135	24,620	17,182	-	2,303	88.2
2018	19,170	19,170	19,170	19,170	-	19,170	17,221	1,585	360	89.8
2019	18,715	18,715	18,715	18,715	1,585	20,300	15,348	1,783	1,583	82.0

- ‘시설보조사업’ 및 ‘신산업육사업’의 경우 보조율이 합리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이나, ‘지역 에너지계획수립’의 경우 지자체경상보조의 보조율이 2020년 ‘교육비’ 100%로 조정된 바 그 사업내용과 더불어 지자체 매칭 비율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지역에너지계획수립지원’ 내역사업은 내용상 담당공무원 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그 직접적인 실효성이 높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내용을 지역에너지계획수립과 관련한 직접적 지원으로 재구성할 필요 있고 지자체 매칭 비율을 ‘19년 수준(‘용역비’)으로 높일 필요 있음

구분	18년	19년	20년
시설보조사업 (지자체자본보조)	40%	40%	40%
신산업육성사업 (민간경상보조)	25%	25%	25%
지역에너지계획수립지원 (민간경상보조)	100%	100%	100%
지역에너지계획수립지원 (지자체경상보조)	50% (교육비)	40% (용역비) 50% (교육비)	100% (교육비)

- 중장기 재정 소요액을 추계하고 있으나, 그 근거는 불분명함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 사항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시설보조사업’의 경우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운용지침에 따라 회계연도 전전년도에 사업신청지침을 안내하여 전년도 4월까지 지자체로부터 사업 접수,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에너지절약사업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있어,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규정 및 절차가 적정하게 갖추어지고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운용지침 >

제7조(지원기관) ① 지자체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을 사업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제8조(평가위원회 등) ①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 평가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원기관에 지역에너지절약사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평가위원회는 지식경제부·지원기관 관계자 및 에너지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2. 지원대상사업별 지원 우선순위 결정

③지원기관의 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평가업무 처리절차 등에 관한 내규를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신산업육성사업’의 경우 주관부처 공고를 통해 사업의 운용규정, 선정기준, 사업수행 및 사업비 관리 지침을 안내하며, 접수된 신청 사업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있어,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규정 및 절차가 적정하게 갖추어지고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운용지침 >

제9조(평가위원회) ①전담기관의 장은 기획·평가·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산·학·연 전문가 10명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담당공무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평가위원은 전담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제11조(시행기관 선정 등) ①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시행기관 선정 등에 대해 공고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고내용에는 사업목적, 지원규모, 지원대상,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한, 평가방법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를 활용하여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한 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 ‘지역에너지계획수립지원’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현행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정에 관한 규정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 보완할 필요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각 보조사업에 대해 최소 2회 이상으로 나누어 국고보조금 지급하며, 관련 내부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라 사업비 집행에 대한 상시 점검과 사후정산을 적정하게 실시하고 있음
- 지자체는 사업 운용지침 및 보조금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 등에 의거하여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납하도록 하고 있음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 종료 후 2개월 내 사업비 집행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법인의 정산검토를 거친 결과에 따라 사업비 집행 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도록 하고 있음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부정수급 방지 가이드라인을 적정하게 준수하고 있음
- 민간사업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자의 부정 의도와 관계없이 관계규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부정수급 위험이 높은 만큼, e-나라도움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및 회계법인 협약에 근거한 사업비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음
 - 다만, 민간사업자의 부정수급, 사업의 불성실 수행 등을 면밀히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는 구체화하고 보완할 필요 있음
-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 이력은 없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최근 3년간 자체적인 부정수급 적발실적이 없어 자체 사업관리 노력에 대한 가산점 요인은 없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보조사업 및 각 내역사업들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과 「에너지법」에 대체로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음
- 동 보조사업의 목적은 근거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특성에 맞게 중점 추진하는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을 지원하고 에너지 생산 및 이용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에너지신산업 사업모델을 지원함으로써 에너지신산업의 지역 확산과 지역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도모하는 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적 타당성과 중요성이 인정됨
- ‘지역에너지계획수립지원’의 경우에는 「에너지법」 7조에 따라 광역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수립해야하는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담당공무원 교육을 주된 내용으로 민간경상보조(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와 지자체경상보조의 형태로 보조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음
 - 관련 공무원 교육 등 간접적인 사항은 지자체의 자체재원으로 추진하고, 지역에너지계획 수립과 관련한 직접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사업내용으로 내실화하고 지자체 매칭 비율을 높이는 형태로 사업방식변경이 필요함
- ‘지역에너지절감량’을 지표로 설정하여 성과를 관리하고 있으며 ‘17년에는 목표 달성도가 미흡하였으나 ‘18년 및 ‘19년에는 목표대비 양호한 실적을 거두었음
 - 다만, ‘19년 목표치가 전년 대비 예산감축 비율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 면이 있고, 이를 고려할 때 ‘19년 실질적인 목표달성도는 다소 미흡하여 동 보조사업의 효과성이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 예산 산출내역에서 확인되는 동 보조사업의 산출근거가 불분명하고 미비하여 예산 규모 적정성은 낮음
- ‘지역에너지계획수립지원’ 내역사업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내용상 담당공무원 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그 실효성이 높다고 볼 수 없으며, 성과지표상 사업의 효과성도 크지 않아 전반적인 재정지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함



-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이 지속적으로 저조하므로 산출근거의 재검토 및 예산 효율화를 통해 높은 수준의 보조금 지원 규모 감축 필요성이 있음
-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 집행, 보조사업 사후관리,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 등은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에너지계획수립지원’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현행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정에 관한 규정 및 절차의 구체화 및 보완이 요구됨

3-2 정책 제언

- 민간사업자의 부정수급, 사업의 불성실 수행 등을 면밀히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는 구체화하고 강화할 필요 있음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산업통상자원부
사 업 명	특별지원(발전소주변지역)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4.1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5.8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5.2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5.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7.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6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8.3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4.1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2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1.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본 사업의 검토 결과, 사업방식변경으로 판정함 · 본 사업은 발전소의 주변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켜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목적의 공공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그러나, 연도별 예산은 감소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실집행률이 낮고 에너지 전환정책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 ·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인해 지역사회의 수용도가 높아지고 프로그램 목표인 안정적·효율적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정책 목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사업 지연으로 인한 계속되는 이월금 발생에 장기 미집행 이월금을 회수가 결정되었고, 부적절한 성과지표에 대한 지적 및 원전·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트렌드 등 환경변화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 · 본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과지표 개선, 이월금 회수, 사업평가 강화 등 사업방식 변경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히 완료 되어야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13조에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이 명시되어 있어 본 사업 추진의 근거가 명확함
- 본 사업의 내용은 발전소 건설이 예정되어 있거나 건설 중인 발전소 주변지역을 지원하는 것으로, 법령의 내용과 일치함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0조, 제13조 >

제1조(목적) 이 법은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電源)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별지원사업 :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특별자치도·시·군 및 자치구 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제13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①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부담한다.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27조 >

제22조(특별지원사업)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의 내용은 별표 1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의 종류와 세부 내용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② 특별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에 대하여 시행한다.

제27조(지원금의 결정) ② 제22조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의 지원금 및 가산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금: 발전소 건설비[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를 말한다) 또는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지구입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2. 가산금: 제1호에 따른 건설비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가산금은 건설비의 1천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 전기사업법 제49조 >

제4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켜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목적의 공공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 발전소가 건설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에 속하는 시·군·구에 기본지원사업에 준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발전소 건설관련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발전소 건설을 촉진함으로써 안정적인 전원확보에 기여함
- 발전소 건설을 촉진하여 안정적인 전원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는 단위사업의 목적(전력수급 안정에 기여) 및 프로그램의 목적(안정적, 효율적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과 밀접히 연관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발전소 건설비의 1.5%를 발전소 주변지역 및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방식이 명확하나, 시행자(지자체)의 추진 사업에 대한 설계가 정교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임
 - 지자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종류가 정형화 되어 있으나, 그 외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여 파급효과를 고려한 추진 프로젝트 발굴 및 적정 예산 산정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성과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보조사업의 효과(전원개발촉진에 따른 전력수급안정)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요망됨
 - '18년 성과지표부터 '공급설비 확충량'과 '발전설비 이용률'에 대한 지표는 폐지하고 '신재생에너지 시설용량 증가량'에 대한 지표를 추가하였으며, 기타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지표로 '지역주민과의 소통활동'을 신설하는 등 노력을 기울임
 - 그러나, 이 중 성과지표 중 "신재생에너지 시설용량 증가량"은 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대표성이 미흡하다고 평가됨(국회 지적사항, '18)
-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인해 지역사회의 수용도가 높아지고 프로그램 목표인 안정적·효율적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정책 목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수혜자 만족도 조사 항목 중 '지원제도가 신규 발전소 건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17년 조사결과 및 '18년 조사결과 공통으로 긍정적 답변('17년 59.6%, '18년 45.8%)이 부정적 답변('17년 23.3%, '18년 20.5%) 대비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됨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등의 사업 영역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방식의 필요성이 인정됨
 - 국가 전력수급안정이라는 편익의 범위가 전체 전기소비자까지 확산되는 공익사업으로서, 민간부문에서 수행하기보다, 해당 주변지역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타당함
 - 사업의 1차적인 수혜자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이나, 사업의 파급효과인 전력수급안정을 통해서 대다수의 국민이 2차적인 수혜자가 되어 보조사업 수혜자가 광범위함
- 본 사업은 특별지원 사업으로 기본지원사업과는 본질적으로 발전소 주변의 개발 및 주민 복지를 추진한다는 면에서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나, 지원금 산출 규모와 지원사업 방식에서 차이가 있음
 -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육영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그 밖의 지원사업 등 추진 가능 사업의 종류가 동일하고, 지원 규모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음
 - 그러나, 특별지원사업의 경우 지원범위가 넓고(자치단체 전지역) 랜드마크적 대규모 지역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차별성이 인정됨

구 분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사업목적	주민들의 수용성 제고를 통한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 도모	지역 지원사업을 통해 발전소건설 촉진 및 민원해결 등에 대응
지원시기	가동기간중 (신청시 착공이후 건설기간중 지원)	건설기간중
지원범위 (수혜자)	주변지역 읍·면·동	주변지역 자치단체 전지역
지원금 산출 및 규모	전전년도 발전량(kWh) ×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원/kWh)	건설기본계획상의 건설비(부지구입비 제외)의 1.5%
지원사업 방식	가동기간 중 주변지역 주민편의 위주의 소규모사업 시행	건설초기에 주변지역 및 해당 자치단체 에 비교적 대규모사업 시행
사업 종류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육영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그 밖의 지원사업	

- 현 시점에서 보조사업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나, 향후 신규 발전소에 대한 수요분석 등을 토대로 건설규모 감소 시 사업규모를 감축하는 등 재정비가 필요함
 -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17~'31)에서 원전과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재생 에너지는 대폭 확대('30년 발전량의 20%)하는 친환경 발전원이 구성되어, 향후 발전 종류와 건설 단가를 고려한 중장기 재정규모 산정이 필수적임



기 건설 발전소 미지원금 현황 (단위: 백만원)	
2020년까지 준공발전소(12개)	37411
2021년까지 준공발전소(4개)	104327
2022년도 준공발전소(2개)	176588
2024년도 준공발전소(1개)	52735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사업의 비용구조와 산출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고 기발전소에 대한 연도별 예측이 가능함
 - * 지원금 : 건설비(부지구입비 제외) × 1.5%
 - * 가산금 : 원전 및 유연탄 100만 kW이상 건설시 건설비(부지구입비 제외) × 0.5%
- 단, 해당 예산을 소요하는 지자체별 추진 사업에 대한 예산규모 산출 근거 및 중장기적 예측치 산정이 미흡함
- 연도별 예산은 '17년 1,100억원, '18년 786억원, '19년 538억원, '20년 640억원으로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실집행률이 '17년 62%, '18년 66%, '19년 70%으로 낮았으나,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임
 - 주민의견 수렴, 부지확보, 사업 인허가, 타당성조사, 지자체 의회 승인 등 사업확정 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지연 초래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장기이월금 집행관리 방안('18.7.), 지원금 재이월 금지('19.7.) 등의 개선방안 마련으로 사업 시행자의 이월 관행을 근절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임
 - * 장기미집행 이월금 '14년 이전 교부 14.7억 회수 추진('19.1) 및 '15~16 교부 38.1억 회수 결정('19.12)
 - 그 외에도 사업계획 검토 내실화를 통해 사업지연이 예상 되는 사업기획을 지양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하여 실집행률 제고 전략 수립이 필요함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발전소 건설로 인해 피해를 입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나, 그 파급효과가 직접적이지 않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선정 및 교부절차를 준수해서 보조사업자 선정이 적절하게 수행된 것으로 보임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등 법령과 규정에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절차·관리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 또한,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설명회, 공청회 등 적절한 주민참여 절차와 사업계획 선정과정, 선정결과, 심의지역위원회 회의록 등을 공개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체제가 구축되어 있고, 보조사업 집행 방식은 적정하게 설계된 것으로 보임
 - 보조사업의 집행과 관련된 법령·규정에 따라 단계별 사업관리 강화, 현장점검을 통한 관리를 하고 있음

계획	○ 사업계획 심의 강화를 통한 부실 계획수립 방지 ■ 관행적, 선심성 예산집행사례 근절 ■ 사업관련성이 미흡한 경우 계획 변경 유도
집행	○ 분기별 실적 점검 및 현장실사 모니터링 ○ 집행실적과 지원금교부와의 연계
결산	○ 미집행액에 대한 이월 승인절차 철저시행 감독 ○ 단위사업계획별 부진사유 파악을 통한 단순 정산 지양
평가	○ 실적집행 기준으로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사업비 집행실적 평가시 이월금 포함하여 평가

- 보조사업자의 정산 및 반환, 회계감사 등에 관한 내부규정을 갖추고 있으며 적정하게 수행함
- 그러나, 예산을 매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본 사업의 목적에 맞게 연내에 집행되도록 집행 관리에 보다 노력을 기울여야 함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최근 3년 부정수급 적발은 없었으며, 방지를 위해 주기적인 현장실태점검, 제도개선 등을 시행하고 있어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시행자(지자체장, 발전사업자)가 마을회 등에 재위임 시행하는 방식이 부정수급의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지자체장, 발전사업자)가 직접 시행함.
- 필요시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정한 규칙 등에 따라 마을회 등에 재위임 가능함(시행요령 제18조의2)
- 육영사업의 경우 장학금 수혜자는 해당 주변지역에 최소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 및 실거주하여야 하며, 공모 등을 통한 투명한 지급대상 선정, 선정결과 공개 및 사전·사후 실거주 확인절차 이행 등 부정수급 방지대책 수립 시행을 의무화함(시행요령 제12조)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 실집행 부진사업자 현장점검, 장기미집행 이월금 회수, 사업비 결산 및 평가 강화, 시행자 교육 및 워크숍 개최 등 자체 사업 관리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발전소의 주변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켜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목적의 공공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 성과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보조사업의 효과(전원개발촉진에 따른 전력수급안정)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요망됨
- 사업계획 검토 내실화를 통해 사업지연이 예상 되는 사업계획을 지양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하여 실집행률 제고 전략 수립이 필요함

3-2 정책 제언

- 본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자체적으로 성과지표 개선*, 이월금 회수**, 사업평가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해당 제도개선을 목표시점까지 필수 완료하기를 권고함
 - * 성과지표 후보군 : 지역경제성과 지표(GRDP, 인구, 사업체수, 사업체 수), 사업시행자 지원사업 실집행률, 장기사업계획수립비율(주민 참여절차지표포함), 공급예비율 등
 - ** '21년까지 단계적으로 장기이월금 기준을 강화(3년→2년→1년) 및 회수 유예기간 단축 (1년→9개월→6개월)
 - *** 지원금 집행·관리에 관한 평가 기준을 강화('20.3. 평가지침 마련)해 차년도 지원금 편성·배분에 반영
- 또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17~'31)에서 원전과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는 대폭 확대('30년 발전량의 20%)하는 친환경 발전원이 구성되어,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한 지원 단가, 지원 범위, 지원 방식의 개선이 필요함



평가요약표

기 관 명	산업통상자원부
사 업 명	해외플랜트진출확대
보조유형	민간경상보조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73.0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3.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8.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1.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0.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0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5.0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		
총 평	· 감축 · 성과지표상 사업의 효과성이 미비한 점, ‘조선해양기자재 해외시장 개척 지원’ 내역 사업의 사업운영비가 상대적으로 과도한 점을 고려하여 2021년 ~ 23년 안에 일정 수준의 예산 감축 필요 · 성과지표 목표 대비 실적 달성도가 낮고, 특히 ‘17년 대비 ’18년 및 ’19년의 실적이 더 낮아 사업의 효과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조선해양기자재 해외시장 개척 지원’ 내역사업의 사업운영비(인건비 및 운영비)가 직접사업비 대비 22%로 상대적으로 과도하여 일정 수준의 예산 감축이 필요함 · 플랜트 시장 성장률 하향추세를 감안하여 중장기 재정소요를 조정할 필요 있고, 각 내역사업별 차이점이 분명히 부각될 수 있도록 내역사업별 차별화 또는 통합조정을 권고함					



평가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동 보조사업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외무역법」에 비교적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대외무역법」 제32조(플랜트수출의 촉진 등) 제6항은 정부(산업통상자원부장관)가 플랜트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플랜트수출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음

< 대외무역법 제3조 >

제32조(플랜트수출의 촉진 등)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플랜트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제도개선, 시장조사, 정보교류, 수주 지원, 수주질서 유지, 전문인력의 양성, 금융지원, 우수기업의 육성 및 협동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플랜트수출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이들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동 보조사업은 ‘해외플랜트 시장개척 지원’, ‘중소형플랜트 수출지원’, ‘플랜트 수주지원센터 운영’, ‘플랜트기자재수출지원’, ‘조선해양기자재 해외시장개척 지원’, ‘조선해양기자재 수출역량 강화’ 등 6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는데, 각 내역사업별 법적 근거는 대체로 명확함
- 「대외무역법」 제32조(플랜트수출의 촉진 등)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플랜트수출 촉진 활동에는 제도개선, 시장조사, 정보교류, 수주 지원, 수주질서 유지, 전문인력의 양성, 금융지원, 우수기업의 육성 및 협동화사업 등이 포함되고, 6개 내역사업 각각은 상기 촉진 활동의 범주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됨
- 동 보조사업의 목적은 해외플랜트 신규시장 개척 및 해외 프로젝트 초기 참여 지원을 통한 우리 플랜트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 확대, 플랜트수주지원센터 운영, 플랜트기자재 수출지원, 조선해양기자재 국제인증 및 벤더등록지원 등을 통해 신흥시장 개척 및 중소플랜트업체의 수주경쟁력 강화에 있으며, 이는 국가적 타당성과 중요성이 인정됨
- 프로그램(‘무역진흥’) 목적 및 단위사업(‘수출역량강화’) 목적과의 연계성이 인정됨



- 현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80.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과 연계성이 있고,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와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수립된 '조선산업 활력 제고 방안'과 '조선산업 발전전략'에서도 해외 플랜트 진출 확대 방안이 포함되는 등 동 보조사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타당성이 인정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보조사업은 '해외플랜트 시장개척 지원', '중소형플랜트 수출지원', '플랜트 수주지원센터 운영', '플랜트기자재수출지원', '조선해양기자재 해외시장개척 지원', '조선해양기자재 수출역량 강화' 등 6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내역사업별 차이점이 분명히 부각될 수 있도록 내역사업별 차별화 또는 통합조정이 필요함
- '해외플랜트 시장개척 지원'과 '중소형플랜트 수출지원' 간의 차별성, '플랜트기자재수출지원', '조선해양기자재 해외시장개척 지원', '조선해양기자재 수출역량 강화' 간의 차별성을 분명히 하거나 통합조정이 필요함
- '지원액 대비 수주효과'를 지표로 설정하여 성과를 관리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실적이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17년 대비 '18년 및 '19년의 실적이 더 낮아 사업의 효과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구분	성과지표 단위	구분	17년	18년	19년	측정산식(측정방법)
지원액 대비 수주효과	세부사업	목표	32	30	31	배수=(최근4년 수주누적액)/(최근 4년 지원누적액)
		실적	29.6	23.2	27.3	
		달성도	92.5	77.3	88.1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플랜트산업이 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어서 해외 플랜트 시장 진출 지원을 통한 정책효과는 국가 경제 전반에 혜택이 예상되며, 열악한 해외진출 역량을 가진 중소, 중견 플랜트 기업들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여 국내 플랜트산업을 촉진하는 것은 효과적인 정책수단일 것으로 판단됨
- 국내 유망 주력 산업 중 하나인 플랜트 산업을 지원한다는 사업의 목적과 추진내용을 볼 때, 그 고유성이 인정되고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동 보조사업의 1차적 수혜자는 보조금 수혜를 받는 플랜트 및 플랜트 기자재 기업, 조선해양기자재 기업 등이 포함되고, 플랜트 산업 촉진 정책효과가 국가 경제 전반에 나타나 그 혜택이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2차적 수혜자의 범위는 광범위하다고 인정됨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조선해양기자재 해외시장 개척 지원’ 내역사업의 경우 사업운영비(인건비 및 운영비)가 직접사업비 대비 22%로 상대적으로 과도하여 일정 수준의 예산 감축이 필요함
- 중장기 재정소요를 플랜트 시장 성장률 7.5%로 가정하여 추계하고 있으나 관련 시장분석 보고서에서는 2025년까지 연평균 약 3.5%의 성장세를 전망하고 있는 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중장기 재정소요를 조정할 필요 있음

1-5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 사항 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해외플랜트 시장개척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통해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사업자 공모에 관한 기준 및 절차, 타 보조금과 중복수급에 대한 점검 기준 및 절차, 보조금 교부조건 및 방법에 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적정하게 갖추고 있음
- 전담기관은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신청서 접수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에너지공단과 통합으로 공고를 실시함으로써 중복지원 방지 등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내용에 대한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차기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위원회는 20명 내외의 “플랜트 전문가 그룹” 중 10인 내외로 구성하는 등 사업자 공모를 적정하게 실시하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신청은 연중 수시로 받고 있으나 연간 4~5회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일정은 홈페이지,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플랜트산업협회 및 KOTRA 회원사 등에 공지하는 등 적절한 절차와 체계를 갖추고 있음
- 선정기업과 협약체결 후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선정기업 및 프로젝트를 등록하고 시스템 매뉴얼에 따라 보조금 교부하고 있으며, 사업 완료 후 관리지침에 따라 정산하고 정산 보고서를 통합관리시스템에 공시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중간진행상황 보고서 및 보조금 집행내역 등을 검토하고 추진현황 점검 실시하는 등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은 대체로 양호함
- 사업기간 중간시점에 진행상황 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수시로 보조금관리시스템 상 보조금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있음
- 사업현황 및 보조금 집행현황에 이상이 있을 시 사업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음
- 전문 위탁정산기관을 통해 회계감사 실시하여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음



- 관계법령 및 관리지침에 의하여 사업비 적정 사용여부를 검토하고, 정부지원금 잔액이 발생할 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국고로 반납 처리하고 있음
- 협약 내용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지침에 따라 정보공시를 적정하게 실시하고 있음
- 사업 완료된 보조사업자에 보조금관리시스템 규정에 따라 정보공시 안내를 하고, 매년 4월까지 전년도 사업자 정보공시를 완료함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관리지침 및 협약내용 위반 시 협약 중지 및 사업비 환수 조치를 취하는 등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사업비 유용 등 중대한 협약위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원금 수령 시 협약 중지 또는 해약 조치를 취하고 있고,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재 심의 또는 산업부와 협의하여 사업비 환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비를 환수하고, 기한 내 사업비 미환수 시 추심절차 진행하여 채권 확보를 추진함
- '18년 부정수급 1건을 자체 적발 후 평가위원회 제재 심의를 거쳐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참여제한 5년”을 의결한 바 있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 외주용역비, 해외체재비 등 규모가 큰 비용에 대한 지출의 적격증빙 등을 수시로 점검함
-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구성, 사업추진 단계별로 위원회 개최(3회)를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유관기관 합동 설명회 개최, 홍보 강화를 통한 기업의 활용도 제고 및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한 정부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 동 보조사업 및 각 내역사업들은 「대외무역법」에 비교적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음
- 동 보조사업의 목적은 해외플랜트 신규시장 개척 및 해외 프로젝트 초기 참여 지원을 통한 우리 플랜트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 확대, 플랜트수주지원센터 운영, 플랜트기자재 수출지원, 조선해양기자재 국제인증 및 벤더등록지원 등을 통해 신항시장 개척 및 중소플랜트업체의 수주경쟁력 강화에 있으며, 이는 국가적 타당성과 중요성이 인정됨
- ‘지원액 대비 수주효과’를 지표로 설정하여 성과를 관리하고 있는데, 목표 대비 실적 달성도가 낮고, 특히 ‘17년 대비 ‘18년 및 ‘19년의 실적이 더 낮아 사업의 효과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조선해양기자재 해외시장 개척 지원’ 내역사업의 경우 사업운영비(인건비 및 운영비)가 직접사업비 대비 22%로 상대적으로 과도하여 일정 수준의 예산 감축이 필요함
-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 집행, 보조사업 사후관리,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 등은 대체적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3-2 정책 제언

- 중장기 재정소요를 플랜트 시장 성장률 7.5%로 가정하여 추계하고 있으나 관련 시장분석 보고서에서는 2025년까지 연평균 약 3.5%의 성장세를 전망하고 있는 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중장기 재정소요를 조정할 필요 있음
- ‘해외플랜트 시장개척 지원’과 ‘중소형플랜트 수출지원’ 간의 차별성, ‘플랜트기자재수출지원’, ‘조선해양기자재 해외시장개척 지원’, ‘조선해양기자재 수출역량 강화’ 간의 차별성을 분명히 하거나 필요시 통합조정을 권고함